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756-01

2019년 아동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humanrights.go.kr KOR 국가인권위원회

#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실태조사

2019년도 아동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 12.

연구수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젠더법학연구소)
연구책임자 장명선 (이화여자대학교)
공동연구원 김용수 (김앤이합동법률사무소)
박수희 (가톨릭관동대학교)
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이상균 (가톨릭대학교)
연구보조원 김세현 (이화여자대학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및 연구범위 ····· 6
   1) 연구 내용 ····· 6
   2) 연구 범위 ····· 7
3. 연구 방법 ····· 9
   1) 문헌 연구 및 통계 분석 ····· 9
   2) 실태조사 ····· 9
   3) 심층면접 ····· 11
   4) TFT 운영 ····· 11
   5) 전문가 자문회의 ····· 12
4. 선행연구 ····· 12
5. 기대효과 ····· 21

Ⅱ. 학교폭력 관련 법제 및 처리절차 등 현황분석 ····· 23

1. 학교폭력 현황 및 법제 분석 ····· 25
   1) 학교폭력 현황 ····· 25
   2) 학교폭력 관련 법제 분석 ····· 28
   3)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 36
2. 학교폭력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분석 ····· 46
   1)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소홀 ····· 46
   2)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등 ····· 47
   3) 학교폭력사건 관련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 48
   4) 학교폭력 신고자에 대한 교사의 부적절한 조사 등 ····· 49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5)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학습권침해 ····· 51
6) 학교폭력 조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 등 ····· 51
7) 학교폭력 사건 축소·은폐에 위한 인권침해 ····· 52
8)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 53
9) 학교폭력 피해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 55
3. 학교폭력 관련 판례 분석 ····· 56
1) 대법원 2011. 4. 14.선고 2011다12675 손해배상(기) ····· 56
2)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손해배상(기)
〈집단따돌림 자살 사건〉 ····· 58
3)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손해배상(기) ····· 61
4)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손해배상(기) ····· 64
4. 시사점 ····· 65

**Ⅲ. 학교폭력 관련법제 등에 대한 해외 사례 ····· 67**

1. 미국 ····· 69
1) 법률 ····· 69
2) 학교폭력(따돌림)의 유형 및 실태 ····· 86
3)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 90
2. 영국 ····· 95
1) 발생실태 ····· 95
2) 학교폭력 예방 관련 법령 ····· 96
3)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 101
3. 독일 ····· 107
1) 법률 ····· 107
2) 학교폭력의 유형과 실태 ····· 109
3) 학교폭력 대응 및 처리절차 ····· 113
4)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115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5) 집단따돌림 예방프로그램 ····· 117
4. 일본 ····· 121
1) 법률 ····· 121
2) 학교폭력의 개념과 실태 ····· 128
5. 시사점 ····· 135

## Ⅳ.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39

1. 조사 개요 ····· 141
1) 조사 목적 ····· 141
2) 조사 개요 ····· 141
3) 조사 항목 ····· 141
2. 조사 대상자 특성 ····· 144
1) 학생 ····· 144
2) 학부모 및 관계자 ····· 145
3. 학교폭력 인식 ····· 149
1) 학생 ····· 149
2) 학부모 및 관계자 ····· 171
4. 학교폭력 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인식 ····· 183
1) 학교폭력 피해학생 ····· 183
2) 학교폭력 가해학생 ····· 212
3) 일반학생 ····· 227
4) 피해학생 학부모 ····· 233
5. 학교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절차 개선방안 인식 ····· 257
1) 학생 ····· 257
2) 학부모 및 관계자 ····· 301
6. 요약 및 시사점 ····· 347
1) 조사응답결과 현황 ····· 347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 학생집단의 학교폭력 및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인식 ····· 348
3) 부모 및 관계자의 학교폭력 및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인식 ····· 353
4)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 ····· 357
5)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인식조사에 기반한 시사점 ····· 369

**Ⅴ. 심층면접 결과분석 ····· 373**

1. 조사 개요 ····· 375
1) 조사 목적 ····· 375
2) 조사 내용 ····· 375
3) 조사 대상자 ····· 375
2. 심층면접 결과 분석 ····· 377
1) 개정 전 학교폭력 사건처리 절차 및 과정 현황 ····· 377
2)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후 학교폭력 사건처리 절차 ····· 434
3. 요약 및 시사점 ····· 458
1) 피해학생 ····· 458
2) 가해학생 ····· 460
3) 학교(교사) ····· 463
4) 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465
5) 가해학생 선도조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466

**Ⅵ. 결론 및 정책제언 ····· 469**

**참고문헌 ····· 501**

**부록 ····· 505**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표 목 차

〈표 Ⅱ-1〉 피해유형별 비중 ····· 26
〈표 Ⅱ-2〉 피해장소 ····· 27
〈표 Ⅳ-1〉 조사 개요 ····· 141
〈표 Ⅳ-2〉 조사내용 ····· 142
〈표 Ⅳ-3〉 [학생] 응답자 특성 ····· 145
〈표 Ⅳ-4〉 [학부모 및 관계자] 응답자 특성 ····· 146
〈표 Ⅳ-5〉 [피해학생 학부모] 응답자 특성 ····· 146
〈표 Ⅳ-6〉 [일반 학부모] 응답자 특성 ····· 147
〈표 Ⅳ-7〉 [관계자] 응답자 특성 ····· 148
〈표 Ⅳ-8〉 [학생] 피해경험 유형 (1/2) ····· 150
〈표 Ⅳ-9〉 [학생] 피해경험 유형 (2/2) ····· 151
〈표 Ⅳ-10〉 [학생] 가해경험 유형 (1/2) ····· 153
〈표 Ⅳ-11〉 [학생] 가해경험 유형 (2/2) ····· 154
〈표 Ⅳ-12〉 [학생] 자치위원회 문제해결 경험 ····· 155
〈표 Ⅳ-13〉 [학생] 가해행위 유형별 학교폭력 인식 (1/2) ····· 157
〈표 Ⅳ-14〉 [학생] 가해행위 유형별 학교폭력 인식 (2/2) ····· 157
〈표 Ⅳ-15〉 [학생] 학교폭력 유형별 심각성 (3순위까지의 중복응답결과) (1/2) ··· 159
〈표 Ⅳ-16〉 [학생] 학교폭력 유형별 심각성 (3순위까지의 중복응답결과) (2/2) ··· 160
〈표 Ⅳ-17〉 [학생] 학교폭력 발생빈도 ····· 161
〈표 Ⅳ-18〉 [학생] 학교폭력 심각성 ····· 163
〈표 Ⅳ-19〉 [학생] 학교폭력 발생 원인 (1/2) ····· 164
〈표 Ⅳ-20〉 [학생] 학교폭력 발생 원인 (2/2) ····· 164
〈표 Ⅳ-21〉 [학생] 학교폭력 행사 이유 (1/2) ····· 166
〈표 Ⅳ-22〉 [학생] 학교폭력 행사 이유 (2/2) ····· 166
〈표 Ⅳ-23〉 [학생] 학교폭력 대처 방법 (1/2) ····· 168
〈표 Ⅳ-24〉 [학생] 학교폭력 대처 방법 (2/2) ····· 168
〈표 Ⅳ-25〉 [학생] 폭력서클 유무 ····· 169
〈표 Ⅳ-26〉 [학생] 폭력서클 인식 ····· 171
〈표 Ⅳ-27〉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행위 유형별 학교폭력 인식 (1/2) ····· 172
〈표 Ⅳ-28〉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행위 유형별 학교폭력 인식 (2/2) ····· 173
〈표 Ⅳ-29〉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유형별 심각성 (3순위 중복응답) (1/2) ·· 174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30〉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유형별 심각성(3순위 중복응답) (2/2) ·· 174
〈표 Ⅳ-31〉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발생빈도 ····· 175
〈표 Ⅳ-32〉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심각성 ····· 176
〈표 Ⅳ-33〉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발생 원인 (1/2) ····· 177
〈표 Ⅳ-34〉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발생 원인 (2/2) ····· 178
〈표 Ⅳ-35〉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이유 (1/2) ····· 179
〈표 Ⅳ-36〉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이유 (2/2) ····· 179
〈표 Ⅳ-37〉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발생 대처 (1/2) ····· 180
〈표 Ⅳ-38〉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발생 대처 (2/2) ····· 180
〈표 Ⅳ-39〉 [학부모 및 관계자] 폭력서클 유무 ····· 181
〈표 Ⅳ-40〉 [학부모 및 관계자] 폭력서클 인식 ····· 182
〈표 Ⅳ-41〉 [피해학생] 학교폭력 고통정도 ····· 183
〈표 Ⅳ-42〉 [피해학생] 학교폭력 등교기피 ····· 184
〈표 Ⅳ-43〉 [피해학생] 학교폭력 영향 (1) 자해 경험 ····· 185
〈표 Ⅳ-44〉 [피해학생] 학교폭력 영향 (2) 자살 생각 ····· 186
〈표 Ⅳ-45〉 [피해학생] 학교폭력 영향 (3) 자살 시도 ····· 187
〈표 Ⅳ-46〉 [피해학생] 학교폭력 영향 극복방법 ····· 188
〈표 Ⅳ-47〉 [피해학생] 학교폭력 도움요청 경험 ····· 190
〈표 Ⅳ-48〉 [피해학생] 학교폭력 도움요청 미경험 이유 ····· 191
〈표 Ⅳ-49〉 [피해학생] 학교폭력 도움요청 도움정도 ····· 192
〈표 Ⅳ-50〉 [피해학생] 학교폭력 피해 후 조치 ····· 194
〈표 Ⅳ-51〉 [피해학생] 조치 도움정도 ····· 195
〈표 Ⅳ-52〉 [피해학생] 학교폭력 피해 극복 여부 ····· 196
〈표 Ⅳ-53〉 [피해학생] 학교폭력 피해 극복 계기 (3순위 중복응답) (1/2) ····· 197
〈표 Ⅳ-54〉 [피해학생] 학교폭력 피해 극복 계기 (3순위 중복응답) (2/2) ····· 197
〈표 Ⅳ-55〉 [피해학생] 학교폭력 신고 후 가해학생 태도/반응 ····· 198
〈표 Ⅳ-56〉 [피해학생] 학교폭력 신고 후 주변학생 태도/반응 ····· 200
〈표 Ⅳ-57〉 [피해학생] 자치위원회 경험 (1/2) ····· 202
〈표 Ⅳ-58〉 [피해학생] 자치위원회 경험 (2/2) ····· 203
〈표 Ⅳ-59〉 [피해학생]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여부 ··· 204
〈표 Ⅳ-60〉 [피해학생] 피해학생 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여부 ··· 205
〈표 Ⅳ-61〉 [피해학생] 피해학생 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여부 ····· 206
〈표 Ⅳ-62〉 [피해학생] 가해학생 형사고소 여부 ····· 207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63〉 [피해학생] 가해학생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여부 ····· 208
〈표 Ⅳ-64〉 [피해학생] 학교폭력 사후처리 과정 ····· 210
〈표 Ⅳ-65〉 [피해학생] 학교폭력 이후 전학여부 ····· 211
〈표 Ⅳ-66〉 [가해학생] 학교폭력 행위 인식 ····· 213
〈표 Ⅳ-67〉 [가해학생] 학교폭력 가해 후 조치 ····· 214
〈표 Ⅳ-68〉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도움정도 ····· 215
〈표 Ⅳ-69〉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인식 ····· 216
〈표 Ⅳ-70〉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행동변화 ····· 217
〈표 Ⅳ-71〉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시 교육내용/기관 안내 여부 ····· 218
〈표 Ⅳ-72〉 [가해학생]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인지 여부 ····· 219
〈표 Ⅳ-73〉 [가해학생]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여부 ···· 220
〈표 Ⅳ-74〉 [가해학생]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여부 ····· 221
〈표 Ⅳ-75〉 [가해학생] 학교폭력 지속여부 ····· 222
〈표 Ⅳ-76〉 [가해학생] 학교폭력 중단 계기 ····· 224
〈표 Ⅳ-77〉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경험에 대한 인식 (1/2) ····· 225
〈표 Ⅳ-78〉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경험에 대한 인식 (2/2) ····· 226
〈표 Ⅳ-79〉 [일반학생] 학교폭력 목격경험 ····· 227
〈표 Ⅳ-80〉 [일반학생] 학교폭력 목격후 느낀 감정 ····· 228
〈표 Ⅳ-81〉 [일반학생] 학교폭력 목격 후 행동 ····· 229
〈표 Ⅳ-82〉 [일반학생] 학교폭력 외면 이유 ····· 230
〈표 Ⅳ-83〉 [일반학생] 학교폭력 외면 인식 ····· 231
〈표 Ⅳ-84〉 [일반학생] 학교폭력 효과적 대응 ····· 233
〈표 Ⅳ-85〉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고통정도 ····· 234
〈표 Ⅳ-86〉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영향 (1) 자해 경험 ····· 235
〈표 Ⅳ-87〉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영향 (2) 자살 생각 ····· 235
〈표 Ⅳ-88〉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영향 (3) 자살 시도 ····· 236
〈표 Ⅳ-89〉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도움요청 경험 ····· 237
〈표 Ⅳ-90〉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도움요청 미경험 이유 ····· 238
〈표 Ⅳ-91〉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도움요청 도움도 ····· 239
〈표 Ⅳ-92〉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피해 후 조치 ····· 240
〈표 Ⅳ-93〉 [피해학생 학부모] 자치위원회 피해학생 보호조치 ····· 24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94〉 [피해학생 학부모] 자치위원회 피해학생 보호조치 도움도 ····· 242
〈표 Ⅳ-95〉 [피해학생 학부모] 자치위원회 조치 적절성 ····· 243
〈표 Ⅳ-96〉 [피해학생 학부모] 자치위원회 조치 미흡 이유 ····· 244
〈표 Ⅳ-97〉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신고 후 가해학생 태도/반응 ····· 245
〈표 Ⅳ-98〉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신고 후 주변학생 태도/반응 ····· 246
〈표 Ⅳ-99〉 [피해학생 학부모] 자치위원회 경험 (2/2) ····· 248
〈표 Ⅳ-100〉 [피해학생 학부모] 자치위원회 경험 (1/2) ····· 248
〈표 Ⅳ-101〉 [피해학생 학부모]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여부 ····· 249
〈표 Ⅳ-102〉 [피해학생 학부모] 피해학생 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여부 ····· 250
〈표 Ⅳ-103〉 [피해학생 학부모] 피해학생 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여부 ····· 251
〈표 Ⅳ-104〉 [피해학생 학부모] 가해학생 형사고소 여부 ····· 252
〈표 Ⅳ-105〉 [피해학생 학부모] 가해학생 형사고소 이유 ····· 253
〈표 Ⅳ-106〉 [피해학생 학부모] 가해학생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여부 ····· 254
〈표 Ⅳ-107〉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사후처리 과정 ····· 255
〈표 Ⅳ-108〉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이후 전학여부 ····· 256
〈표 Ⅳ-109〉 [학생] 학교폭력 예방교육 경험 ····· 257
〈표 Ⅳ-110〉 [학생] 학교폭력 예방교육 유형별 도움도 ····· 258
〈표 Ⅳ-111〉 [학생]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문화 ····· 260
〈표 Ⅳ-112〉 [학생] 학교폭력 예방 정책과제 중요도 (1/2) ····· 262
〈표 Ⅳ-113〉 [학생] 학교폭력 예방 정책과제 중요도 (2/2) ····· 262
〈표 Ⅳ-114〉 [학생] 학교폭력예방법 및 자치위원회 인지여부 ····· 264
〈표 Ⅳ-115〉 [학생] 학교폭력예방법 및 자치위원회 필요도 ····· 265
〈표 Ⅳ-116〉 [학생] 학교폭력예방법 및 자치위원회 도움도 ····· 266
〈표 Ⅳ-117〉 [학생]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인식 ····· 267
〈표 Ⅳ-118〉 [학생]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찬성이유 ····· 268
〈표 Ⅳ-119〉 [학생]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기준 ····· 269
〈표 Ⅳ-120〉 [학생]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 (1/2) ····· 271
〈표 Ⅳ-121〉 [학생]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 (2/2) ····· 271
〈표 Ⅳ-122〉 [학생]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반대이유 ····· 273
〈표 Ⅳ-123〉 [학생]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우려사항 ····· 274
〈표 Ⅳ-124〉 [학생]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우려사항 ····· 275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125〉 [학생] 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인식 ····· 277
〈표 Ⅳ-126〉 [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유지 이유 ····· 278
〈표 Ⅳ-127〉 [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삭제 이유 ····· 279
〈표 Ⅳ-128〉 [학생]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도움도 (1/2) ····· 281
〈표 Ⅳ-129〉 [학생]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도움도 (2/2) ····· 282
〈표 Ⅳ-130〉 [학생] 가해학생 일부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유보 인식 ····· 283
〈표 Ⅳ-131〉 [학생] 피해학생 보호조치 도움도 ····· 284
〈표 Ⅳ-132〉 [학생] 자진신고·피해신고 기간 운영 인지여부 ····· 286
〈표 Ⅳ-133〉 [학생] 자진신고·피해신고 기간 운영 도움도 ····· 287
〈표 Ⅳ-134〉 [학생] 화해·관계회복 조정역할 (1/2) ····· 288
〈표 Ⅳ-135〉 [학생] 화해·관계회복 조정역할 (2/2) ····· 288
〈표 Ⅳ-136〉 [학생] 분쟁해결 조정역할 (1/2) ····· 290
〈표 Ⅳ-137〉 [학생] 분쟁해결 조정역할 (2/2) ····· 290
〈표 Ⅳ-138〉 [학생] 전문 상담기관 필요도 ····· 291
〈표 Ⅳ-139〉 [학생] 손배갈등 중재역할 필요도 ····· 292
〈표 Ⅳ-140〉 [학생] 학교안전공제회 인지여부 ····· 293
〈표 Ⅳ-141〉 [학생] Wee클래스 인지여부 ····· 294
〈표 Ⅳ-142〉 [학생] Wee클래스 인지경로 ····· 295
〈표 Ⅳ-143〉 [학생] Wee클래스 이용 프로그램 ····· 296
〈표 Ⅳ-144〉 [학생] Wee클래스 활용 의향 ····· 297
〈표 Ⅳ-145〉 [학생] 학교폭력 예방대책 만족도 (1/3) ····· 299
〈표 Ⅳ-146〉 [학생] 학교폭력 예방대책 만족도 (2/3) ····· 299
〈표 Ⅳ-147〉 [학생] 학교폭력 예방대책 만족도 (3/3) ····· 300
〈표 Ⅳ-148〉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의 학교폭력 해결 능력 ····· 301
〈표 Ⅳ-149〉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의 학교폭력 해결 능력 미흡 이유 ····· 302
〈표 Ⅳ-150〉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문화 (1/2) ····· 303
〈표 Ⅳ-151〉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문화 (2/2) ····· 304
〈표 Ⅳ-152〉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예방 정책 중요도 (1/2) ····· 305
〈표 Ⅳ-153〉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예방 정책 중요도 (2/2) ····· 306
〈표 Ⅳ-154〉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처리절차 인식 (1/2) ····· 307
〈표 Ⅳ-155〉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처리절차 인식 (2/2) ····· 308
〈표 Ⅳ-156〉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처리원칙 우선순위
(2순위 중복응답) (1/2) ····· 309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157〉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처리원칙 우선순위 (2순위 중복응답) (2/2) ····· 310
〈표 Ⅳ-158〉 [학부모 및 관계자] 당사자간 화해절차 필요도 ····· 311
〈표 Ⅳ-159〉 [학부모 및 관계자] 당사자간 화해절차 필요 이유 ····· 312
〈표 Ⅳ-160〉 [학부모 및 관계자] 당사자간 화해 시 자치위원회 반영 정도 ····· 313
〈표 Ⅳ-161〉 [학부모 및 관계자] 자치위원회 역할 만족도 ····· 314
〈표 Ⅳ-162〉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인식 ····· 315
〈표 Ⅳ-163〉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찬성 이유 ····· 316
〈표 Ⅳ-164〉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기준 ····· 317
〈표 Ⅳ-165〉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 (1/2) ····· 318
〈표 Ⅳ-166〉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 (2/2) ····· 318
〈표 Ⅳ-167〉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반대 이유 ····· 319
〈표 Ⅳ-168〉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우려 사항 (1/2) ····· 321
〈표 Ⅳ-169〉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우려 사항 (2/2) ····· 321
〈표 Ⅳ-170〉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인식 (1/2) ····· 322
〈표 Ⅳ-171〉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인식 (2/2) ····· 323
〈표 Ⅳ-172〉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유지 이유 ····· 324
〈표 Ⅳ-173〉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삭제 이유 ····· 325
〈표 Ⅳ-174〉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도움정도 (1/2) ····· 326
〈표 Ⅳ-175〉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도움정도 (2/2) ····· 326
〈표 Ⅳ-176〉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학생 일부 선도조치 기재 유보 인식 ····· 327
〈표 Ⅳ-177〉 [학부모 및 관계자] 피해학생 보호조치 도움정도 ····· 329
〈표 Ⅳ-178〉 [학부모 및 관계자] 화해·관계회복 조정역할 (1/2) ····· 330
〈표 Ⅳ-179〉 [학부모 및 관계자] 화해/관계회복 조정 역할 (2/2) ····· 330
〈표 Ⅳ-180〉 [학부모 및 관계자] 분쟁해결 조정 역할 (1/2) ····· 331
〈표 Ⅳ-181〉 [학부모 및 관계자] 분쟁해결 조정 역할 (2/2) ····· 331
〈표 Ⅳ-182〉 [학부모 및 관계자] 전문 상담기관 필요도 ····· 332
〈표 Ⅳ-183〉 [학부모 및 관계자] 손배갈등 중재역할 필요도 ····· 333
〈표 Ⅳ-184〉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안전공제회 인지 여부 ····· 334
〈표 Ⅳ-185〉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인지 여부 ····· 335
〈표 Ⅳ-186〉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이행도 ····· 336
〈표 Ⅳ-187〉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미흡 이유 (1/2) ····· 337
〈표 Ⅳ-188〉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미흡 이유 (2/2) ····· 338
〈표 Ⅳ-189〉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처리과정 중요도 (1/2) ····· 339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190〉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처리과정 중요도 (2/2) ····· 339
〈표 Ⅳ-191〉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처리과정 만족도 (1/2) ····· 341
〈표 Ⅳ-192〉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처리과정 만족도 (2/2) ····· 341
〈표 Ⅳ-193〉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처리과정 개선방안 필요도 (1/4) ····· 343
〈표 Ⅳ-194〉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처리과정 개선방안 필요도 (2/4) ····· 343
〈표 Ⅳ-195〉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처리과정 개선방안 필요도 (3/4) ····· 344
〈표 Ⅳ-196〉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처리과정 개선방안 필요도 (4/4) ····· 344
〈표 Ⅳ-197〉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예방대책 만족도 (1/3) ····· 346
〈표 Ⅳ-198〉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예방대책 만족도 (2/3) ····· 346
〈표 Ⅳ-199〉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예방대책 만족도 (3/3) ····· 347
〈표 Ⅴ-1〉 심층면접 조사 대상자 특성 ····· 376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연구 내용 조직도 ····· 7
〈그림 Ⅰ-2〉 연구 체계도 ····· 8
〈그림 Ⅱ-1〉 전체 피해응답률 ····· 25
〈그림 Ⅱ-2〉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 26
〈그림 Ⅳ-1〉 [학생] 피해경험 유형 ····· 149
〈그림 Ⅳ-2〉 [학생] 가해경험 유형 ····· 152
〈그림 Ⅳ-3〉 [학생] 자치위원회 문제해결 경험 ····· 155
〈그림 Ⅳ-4〉 [학생] 가해행위유형별 학교폭력 인식 ····· 156
〈그림 Ⅳ-5〉 [학생] 학교폭력 유형별 심각성 (3순위까지의 중복응답) ····· 159
〈그림 Ⅳ-6〉 [학생] 학교폭력 인식 ····· 161
〈그림 Ⅳ-7〉 [학생] 학교폭력 심각성 ····· 162
〈그림 Ⅳ-8〉 [학생] 학교폭력 발생 원인 ····· 163
〈그림 Ⅳ-9〉 [학생] 학교폭력 행사 이유 ····· 165
〈그림 Ⅳ-10〉 [학생] 학교폭력 대처 방법 ····· 167
〈그림 Ⅳ-11〉 [학생] 폭력서클 유무 ····· 169
〈그림 Ⅳ-12〉 [학생] 폭력서클 인식 ····· 170
〈그림 Ⅳ-13〉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행위 유형별 학교폭력 인식 ····· 172
〈그림 Ⅳ-14〉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유형별 심각성 ····· 173
〈그림 Ⅳ-15〉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발생빈도 ····· 175
〈그림 Ⅳ-16〉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심각성 ····· 176
〈그림 Ⅳ-17〉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발생 원인 ····· 177
〈그림 Ⅳ-18〉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이유 ····· 178
〈그림 Ⅳ-19〉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발생 대처 ····· 180
〈그림 Ⅳ-20〉 [학부모 및 관계자] 폭력서클 유무 ····· 181
〈그림 Ⅳ-21〉 [학부모 및 관계자] 폭력서클 인식 ····· 182
〈그림 Ⅳ-22〉 [피해학생] 학교폭력 고통정도 ····· 183
〈그림 Ⅳ-23〉 [피해학생] 학교폭력 등교기피 경험 ····· 184
〈그림 Ⅳ-24〉 [피해학생] 학교폭력 영향 (1) 자해 경험 ····· 185
〈그림 Ⅳ-25〉 [피해학생] 학교폭력 영향 (2) 자살 생각 ····· 186
〈그림 Ⅳ-26〉 [피해학생] 학교폭력 영향 (3) 자살 시도 ····· 187
〈그림 Ⅳ-27〉 [피해학생] 학교폭력 영향 극복방법 ····· 188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Ⅳ-28〉 [피해학생] 학교폭력 영향 도움요청 경험 ····· 189
〈그림 Ⅳ-29〉 [피해학생] 학교폭력 도움요청 미경험 이유 ····· 190
〈그림 Ⅳ-30〉 [피해학생] 학교폭력 도움요청 도움정도 ····· 192
〈그림 Ⅳ-31〉 [피해학생] 학교폭력 피해 후 조치 ····· 193
〈그림 Ⅳ-32〉 [피해학생] 조치 도움정도 ····· 194
〈그림 Ⅳ-33〉 [피해학생] 학교폭력 피해 극복 여부 ····· 195
〈그림 Ⅳ-34〉 [피해학생] 학교폭력 피해 극복 계기 (3순위 중복응답) ····· 196
〈그림 Ⅳ-35〉 [피해학생] 학교폭력 신고 후 가해학생 태도/반응 ····· 198
〈그림 Ⅳ-36〉 [피해학생] 학교폭력 신고 후 주변학생 태도/반응 ····· 199
〈그림 Ⅳ-37〉 [피해학생] 자치위원회 경험 ····· 201
〈그림 Ⅳ-38〉 [피해학생]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여부 ····· 204
〈그림 Ⅳ-39〉 [피해학생] 피해학생 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여부 ····· 205
〈그림 Ⅳ-40〉 [피해학생] 피해학생 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여부 ····· 206
〈그림 Ⅳ-41〉 [피해학생] 가해학생 형사고소 여부 ····· 207
〈그림 Ⅳ-42〉 [피해학생] 가해학생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여부 ····· 208
〈그림 Ⅳ-43〉 [피해학생] 학교폭력 사후처리 과정 ····· 209
〈그림 Ⅳ-44〉 [피해학생] 학교폭력 이후 전학여부 ····· 211
〈그림 Ⅳ-45〉 [가해학생] 학교폭력 행위 인식 ····· 212
〈그림 Ⅳ-46〉 [가해학생] 학교폭력 가해 후 조치 ····· 213
〈그림 Ⅳ-47〉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도움정도 ····· 215
〈그림 Ⅳ-48〉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인식 ····· 216
〈그림 Ⅳ-49〉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행동변화 ····· 217
〈그림 Ⅳ-50〉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시 교육내용/기관 안내 여부 ····· 218
〈그림 Ⅳ-51〉 [가해학생]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인지 여부 ····· 219
〈그림 Ⅳ-52〉 [가해학생]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여부 ····· 220
〈그림 Ⅳ-53〉 [가해학생]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여부 ····· 221
〈그림 Ⅳ-54〉 [가해학생] 학교폭력 지속여부 ····· 222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Ⅳ-55〉 [가해학생] 학교폭력 중단 계기 ····· 223
〈그림 Ⅳ-56〉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경험에 대한 인식 ····· 225
〈그림 Ⅳ-57〉 [일반학생] 학교폭력 목격경험 ····· 227
〈그림 Ⅳ-58〉 [일반학생] 학교폭력 목격후 느낀 감정 ····· 228
〈그림 Ⅳ-59〉 [일반학생] 학교폭력 목격 후 행동 ····· 229
〈그림 Ⅳ-60〉 [일반학생] 학교폭력 외면 이유 ····· 230
〈그림 Ⅳ-61〉 [일반학생] 학교폭력 외면 인식 ····· 231
〈그림 Ⅳ-62〉 [일반학생] 학교폭력 효과적 대응 ····· 232
〈그림 Ⅳ-63〉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고통정도 ····· 233
〈그림 Ⅳ-64〉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영향 (1) 자해 경험 ····· 234
〈그림 Ⅳ-65〉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영향 (2) 자살 생각 ····· 235
〈그림 Ⅳ-66〉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영향 (3) 자살 시도 ····· 236
〈그림 Ⅳ-67〉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도움요청 경험 ····· 237
〈그림 Ⅳ-68〉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도움요청 미경험 이유 ····· 238
〈그림 Ⅳ-69〉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도움요청 도움도 ····· 239
〈그림 Ⅳ-70〉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피해 후 조치 ····· 240
〈그림 Ⅳ-71〉 [피해학생 학부모] 자치위원회 피해학생 보호조치 ····· 241
〈그림 Ⅳ-72〉 [피해학생 학부모] 자치위원회 피해학생 보호조치 도움도 ····· 242
〈그림 Ⅳ-73〉 [피해학생 학부모] 자치위원회 조치 적절성 ····· 243
〈그림 Ⅳ-74〉 [피해학생 학부모] 자치위원회 조치 미흡 이유 ····· 244
〈그림 Ⅳ-75〉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신고 후 가해학생 태도/반응 ····· 245
〈그림 Ⅳ-76〉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신고 후 가해학생 태도/반응 ····· 246
〈그림 Ⅳ-77〉 [피해학생 학부모] 자치위원회 경험 ····· 247
〈그림 Ⅳ-78〉 [피해학생 학부모]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여부 ····· 249
〈그림 Ⅳ-79〉 [피해학생 학부모] 피해학생 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여부 ····· 250
〈그림 Ⅳ-80〉 [피해학생 학부모] 피해학생 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여부 ····· 251
〈그림 Ⅳ-81〉 [피해학생 학부모] 가해학생 형사고소 여부 ····· 252
〈그림 Ⅳ-82〉 [피해학생 학부모] 가해학생 형사고소 이유 ····· 253
〈그림 Ⅳ-83〉 [피해학생 학부모] 가해학생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여부 ····· 254
〈그림 Ⅳ-84〉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사후처리 과정 ····· 255
〈그림 Ⅳ-85〉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이후 전학여부 ····· 256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Ⅳ-86〉 [학생] 학교폭력 예방교육 유형별 도움도 ····· 258
〈그림 Ⅳ-87〉 [학생]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문화 ····· 259
〈그림 Ⅳ-88〉 [학생] 학교폭력 예방 정책 중요도 ····· 261
〈그림 Ⅳ-89〉 [학생] 학교폭력예방법 및 자치위원회 인지여부 ····· 263
〈그림 Ⅳ-90〉 [학생] 학교폭력예방법 및 자치위원회 필요도 ····· 264
〈그림 Ⅳ-91〉 [학생] 학교폭력예방법 및 자치위원회 도움도 ····· 265
〈그림 Ⅳ-92〉 [학생]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에 대한 인식 ····· 266
〈그림 Ⅳ-93〉 [학생]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찬성이유 ····· 268
〈그림 Ⅳ-94〉 [학생]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기준 ····· 269
〈그림 Ⅳ-95〉 [학생]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 ····· 270
〈그림 Ⅳ-96〉 [학생]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반대이유 ····· 272
〈그림 Ⅳ-97〉 [학생]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우려사항 ····· 274
〈그림 Ⅳ-98〉 [학생] 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인식 ····· 276
〈그림 Ⅳ-99〉 [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유지 이유 ····· 277
〈그림 Ⅳ-100〉 [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삭제 이유 ····· 279
〈그림 Ⅳ-101〉 [학생]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도움정도 ····· 280
〈그림 Ⅳ-102〉 [학생] 가해학생 일부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유보 인식 ····· 283
〈그림 Ⅳ-103〉 [학생] 피해학생 보호조치 도움정도 ····· 284
〈그림 Ⅳ-104〉 [학생] 자진신고·피해신고 기간 운영 인지여부 ····· 285
〈그림 Ⅳ-105〉 [학생] 자진신고·피해신고 기간 운영 인지여부 ····· 286
〈그림 Ⅳ-106〉 [학생] 화해·관계회복 조정역할 ····· 287
〈그림 Ⅳ-107〉 [학생] 분쟁해결 조정역할 ····· 289
〈그림 Ⅳ-108〉 [학생] 전문 상담기관 필요도 ····· 291
〈그림 Ⅳ-109〉 [학생] 손해배상갈등 중재역할 필요도 ····· 292
〈그림 Ⅳ-110〉 [학생] 학교안전공제회 인지여부 ····· 293
〈그림 Ⅳ-111〉 [학생] Wee클래스 인지여부 ····· 294
〈그림 Ⅳ-112〉 [학생] Wee클래스 인지경로 ····· 295
〈그림 Ⅳ-113〉 [학생] Wee클래스 이용 프로그램 ····· 296
〈그림 Ⅳ-114〉 [학생] Wee클래스 활용 의향 ····· 297
〈그림 Ⅳ-115〉 [학생] 학교폭력 예방대책 만족도 ····· 298
〈그림 Ⅳ-116〉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의 학교폭력 해결 능력 ····· 301
〈그림 Ⅳ-117〉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의 학교폭력 해결 능력 미흡 이유 ····· 302
〈그림 Ⅳ-118〉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문화 ····· 303
〈그림 Ⅳ-119〉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예방 정책 중요도 ····· 305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Ⅳ-120〉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처리절차 인식 ····· 307
〈그림 Ⅳ-121〉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처리원칙 우선순위 ····· 309
〈그림 Ⅳ-122〉 [학부모 및 관계자] 당사자 간 화해절차 필요도 ····· 310
〈그림 Ⅳ-123〉 [학부모 및 관계자] 당사자 간 화해절차 필요 이유 ····· 311
〈그림 Ⅳ-124〉 [학부모 및 관계자] 당사자 간 화해 시 자치위원회 반영 정도 ···· 312
〈그림 Ⅳ-125〉 [학부모 및 관계자] 자치위원회 역할 만족도 ····· 313
〈그림 Ⅳ-126〉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 자체해결 인식 ····· 314
〈그림 Ⅳ-127〉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찬성 이유 ····· 315
〈그림 Ⅳ-128〉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기준 ····· 316
〈그림 Ⅳ-129〉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 ····· 317
〈그림 Ⅳ-130〉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반대 이유 ····· 319
〈그림 Ⅳ-131〉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우려 사항 ····· 320
〈그림 Ⅳ-132〉 [학부모 및 관계자] 학생 선도조치 기록 인식 ····· 322
〈그림 Ⅳ-133〉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유지 이유 ·· 323
〈그림 Ⅳ-134〉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삭제 이유 ·· 324
〈그림 Ⅳ-135〉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도움정도 ····· 325
〈그림 Ⅳ-136〉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학생 일부 선도조치 기재 유보 인식 ····· 327
〈그림 Ⅳ-137〉 [학부모 및 관계자] 피해학생 보호조치 도움정도 ····· 328
〈그림 Ⅳ-138〉 [학부모 및 관계자] 화해/관계회복 조정 역할 ····· 329
〈그림 Ⅳ-139〉 [학부모 및 관계자] 분쟁해결 조정 역할 ····· 331
〈그림 Ⅳ-140〉 [학부모 및 관계자] 전문 상담기관 필요도 ····· 332
〈그림 Ⅳ-141〉 [학부모 및 관계자] 손해배상갈등 중재역할 필요도 ····· 333
〈그림 Ⅳ-142〉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안전공제회 인지 여부 ····· 334
〈그림 Ⅳ-143〉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인지 여부 ····· 335
〈그림 Ⅳ-144〉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이행도 ····· 336
〈그림 Ⅳ-145〉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미흡 이유 ····· 337
〈그림 Ⅳ-146〉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처리과정 중요도 ····· 338
〈그림 Ⅳ-147〉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처리과정 만족도 ····· 340
〈그림 Ⅳ-148〉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처리과정 개선방안 필요도 ····· 342
〈그림 Ⅳ-149〉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예방대책 만족도 ····· 345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연구요약

## Ⅰ. 서론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을 제정하고 최근까지(2019.8.20.) 24번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사건에 대처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제3차 기본계획(2015-2019)[1]을 시행하고 있음.

○ 이 기본계획의 비전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이고 목표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이었음. 그러나 학교폭력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사이버 학교폭력의 증가 등 유형의 다양화, 초등학교 학교폭력의 증가율 상승, 현행 학교폭력사건 처리과정이나 대응 절차 등에서 학교폭력 당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2차 피해, 교사의 교육적 해결의지를 약화시키고, 피해자와 가해자간 소송 증가 등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부정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음.

○ 최근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생 피해 응답율(3.6%)이 중등학생 피해 응답율(0.8%)에 비해 높고, 학교폭력유형도 언어폭력(35.6%), 집단따돌림(23.2%), 사이버 괴롭힘(8.9%) 등의 순이며 신체폭력의 비중은 2017년부터 낮아지는 추세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개최 건수는 중학교가 가장 많으나 초등학교의 위원회의 경우 50.5%로 대폭 증가해 초등학교 학교폭력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음.

○ 2017학년도 학교급별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중학교(15,576건), 고등학교(9,258건), 초등학교(6,159건) 순이며, 2015년 대비 증가율은 초등학교 50.5%, 중학교 32.3%, 고등학교 21.8%로 초등학생의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가 대폭 상승하였음.

○ 자치위원회 결과에 불복하는 재심 건수는 2013년 764건에서 2017년 1,868건

1) 제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05-2009)을 수립하고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통한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 및 전인적 성장도모를 목표로 하였으며,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10-2014)의 비전은 학교폭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으로 약 245% 증가하였고, 행정심판 건수는 2013년 247건에서 2017년 643건으로 약 260% 증가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학교폭력 진정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로 2010년 36건, 2015년 73건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2016년까지 진정 건수는 421건임. 이 진정사건을 대분류하면 자치위원회 이전 47%, 관련법령과 제도관련 28%, 자치위원회 결정관련 15%, 자치위원회 진행과정 8%, 자치위원회 사후조치 3% 등으로 나타남.

- 학교폭력에 대한 현황 및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정책의 한계점으로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며, 다문화 학생과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도 미흡한 실정임. 또한 학교폭력사안 처리에 대한 학교의 부담이 매우 가중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고, 학교폭력사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분쟁의 심화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학교폭력 발생시 이를 지원해 줄 전문 상담교사가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내용을 반영하면서 학교폭력사건 처리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학교폭력 진정사건 및 판례분석을 통해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법 등의 문제점 및 한계를 검토함.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사건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피해 학생, 가해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관련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분쟁조정의 어려움, 민·형사, 행정소송으로 인한 문제 등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인권적, 법적, 교육적, 회복적 관점에서 검토·분석하여 관련 법제의 정비 및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2)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등에 대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권적, 법적, 교육적 등 다양한 시각에서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관련 법제 및 정책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제1장에서는 연구의 서론으로서 연구배경, 필요성 등에 대해 기술함. 이에는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내용, 연구방법, 선행연구, 기대효과 등임.
- 제2장에서는 현재 학교폭력 관련 법제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판결례 등을 분석하며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알아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제3장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해외사례로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학교폭력 법제 및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아 우리 법제 및 사건 처리절차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제4장에서는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학교폭력사건 처리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함.

○ 제5장에서는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학부모, 업무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학교폭력사건 처리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알아보고자 함.

○ 제6장에서는 학교폭력사건 처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를 근거로 학교폭력사건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을 법제 개정안 및 정책방안을 제시함.

## 3) 연구 방법

### (1) 문헌연구 및 통계분석

○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보고서, 논문, 행정문건 등 관련 선행연구 검토분석, 학교폭력 관련 국내외 법률, 지침 등 관련 법규, 정책, 학교폭력 관련 판결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및 진정 등에 대한 검토·분석함.

### (2) 설문조사

○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의 실태 및 개선방안 등을 발굴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고 실태조사 시 연구진 등이 참여하여 객관성, 정확성 등을 확보하고자 함.

○ 대상자 선정은 지역별, 학교급별,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학생, 학부모, 업무담당자 등 맞춤형설문지를 개발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함.

○ 대상자는 학교폭력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많은 학생 474명, 학부모, 현장전문가 및 업무담당자 306명임.

○ 공통 설문내용은 학교폭력 유형,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및 부정적 경험, 학교폭력사건 처리과정에서의 2차 피해, 처리과정에서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또는 가해학생으로서의 어려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회복적 관계, 자치위원회 조치에 대한 재심 및 불복절차문제, 학교폭력예방교육의 현황 및 효과, 피·가해학생의 재심, 불복절차문제, 분쟁조정시 어려움,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 기재문제, 학교폭력처리절차 및 과정에 대한 개선의견 등임.

### (3) 심층면접

- ○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처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등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학교폭력 등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 학생, 학교종사자, 학부모, 학교폭력현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등을 실시함.
- ○ 대상자는 학교폭력관련 경험이 있는 학생, 학교종사자, 업무담당자, 학부모, 현장전문가 등 46명에 대해 실시함.
- ○ 심층면접 내용은 학교폭력 정의 및 범위, 자치위원회 운영 등의 문제점,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학교폭력 처리절차 및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학교폭력사건 처리과정에서의 관련 당사자들 간의 분쟁조정에서 나타는 어려움 및 해결방안, 학교폭력예방교육,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 기재문제,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법제 정비 및 사건처리 개선에 대한 의견 등임.

### (4) TFT 운영

- ○ 학교폭력 관련법제, 처리절차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계전문가와 현장전문가 등 12명으로 TFT를 구성하여 인권적, 교육학적. 회복적 사법 등의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실천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도출함.

### (5) 전문가 자문회의

- ○ 학교폭력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등에서 나타난 학교폭력사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정책과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이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추진과제를 도출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4) 선행연구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초기 연구는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그 유형을 규명하고 발생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통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촉구하려는 데에 그 기본 방향을 두고 진행되어 옴. 그 후 학교폭력예방법의 제정과 개정이 진행되면서 연구논문은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최근 연구는 학교폭력의 실질적 예방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법의 올바른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제도의 정비·개선을 제안하려는 데에 집중되어 추진되고 있음.

○ 특히 자치위원회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요한 논점 중 하나인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로는 신강숙(2014)의 “행정심판 사례를 통하여 본 학교폭력예방법 고찰”, 조성범 (2017)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해부한다”, 하윤수(2018)의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들 수 있음.

○ 재심제도의 개선방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논문에는 이현정(2017)의 “학교폭력 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가해학생조치별 세부기준 고시를 중심으로”와 김정연(2017)의 “판결 및 불복절차 사례를 통해 본 학교폭력예방법의 비판적 고찰”, 박주형(2012)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 법 시행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등이 있음.

○ 최근 연구의 핵심방향은 회복적 정의를 학교폭력 사건처리의 중점가치로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데에 있는데 이에 관한 주요 연구로는 이유진·이창훈·강지명(2014)의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장다혜·김정연외(2016)의 “공동체 규범 및 분쟁해결 절차와 회복적 실현방안(I) -학교폭력 규범 및 분쟁해결 절차”, 윤태현(2017)의 “회복적 정의를 통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의 발전방안 연구”, 전종익·정상우(2013)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선 방안 연구 : 교육과 예방 및 회복기능을 중심으로”와 장규원(2014)의 “학교문제와 회복적 정의모델에 대한 고찰”, 그리고 이성기(2017)의 “학교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회복적 사법이념을 반영한 학생규칙 제정을 중심으로-”, 이인곤(2018)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으로서 회복적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 등이 있음.

○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해 내려지는 조치들이 그 선도와 교육면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서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과 함께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 연구로는 문영희(2014)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이승현·정제영·강태훈(2014)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 정책의 효과성 분석 연구”, 장혜진(2017)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서면사과 처분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등이 있음.

### 5) 기대효과

- ○ 현재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정비 및 정책개선방안 마련.
- ○ 학교폭력사건의 적절한 처리절차 마련 등으로 학교폭력사건 처리 및 예방의 효율성 증가.
- ○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 내지 사회인식 향상 등으로 관심 환기 효율성 증가.

## II. 학교폭력 관련 법제 및 처리절차 등 현황분석

### 1. 학교폭력 법제분석

### 1) 학교폭력 관련 법제 분석

#### (1) 제정 및 개정 경위

- ○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29일 학교폭력예방법이 공포되어 동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어 옴. 그 후 학교폭력예방법은 계속 심각한 양상을 띠면서 증가하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개정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개정 후에도 기존의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폭력에 대처하는데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개정 논의는 최근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 종전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해서는 사소한 사안의 경우에도 자치위원회에 회부하게 됨에 따라 학교는 사법기관화 되면서 학생들의 건강한 관계회복을 이끌어 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지 못하고 회복적 생활지도라는 본연의 기능이 훼손되고 민원과 불복, 소송에 시달리면서 정상적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사안의 주요 심의기관인 자치위원회의 전문성과 관련된 자질이 계속해서 문제화 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기관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이원화되어 그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러 비판과 함께 개선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됨.

○ 이에 많은 논의 및 의견개진과 다수의 개정안 제안 등을 거친 끝에 2019년 8월 국회의원 11명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법(2016)을 통합 조정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됨. 개정법률은 종전 단위학교에서 개최하던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경미한 학교폭력사안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 종결할 수 있게 하였으며, 기존에 이원화되어 있던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재심절차를 폐지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조치에 불복할 경우 모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처리절차를 일원화하고 있음.

### (2)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

○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상의 문제점의 하나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무조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점임. 즉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의 해석상 피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학교폭력사건의 피해자로 신고를 하고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 사건의 경중을 따질 필요도 없이 무조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 이와 같이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도 규정된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 50여 건에 이르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일일이 사안조사를 한 뒤 법에 따라 자치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였으므로 일선 학교의 업무부담이 과중된 상황임.

○ 학교는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을 조기에 절차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재량권이 없으며, 학교폭력의 사안이 가벼운 경우 교육적 조치로 해결하고자 하여도 섣불리 화해를 권유하게 될 경우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실제로 작은 오해나 마찰이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기도 함.

○ 학교폭력예방법의 당초 목표가 학교폭력의 예방과 사안 처리를 교육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만 점차 형사정책 기조로 변질 되었고, 학교와 교사는 행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와 쟁송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안 발생 시 행정적 절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에만 집중하는 비교육적 구조에 처해 있었음.

○ 학교폭력예방법의 제정과 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자 엄벌주의로 흘러갔고, 그 결과 많은 부작용과 고통을 낳고 있으며, 특히 학교가 점점 사법화되면서 교육기관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됨. 학교폭력은 고립되어 일어나지 않고 개인과 가족, 또래집단, 학교, 지역사회, 사회 규범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각각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생태학적 접근이 필요함.

○ 학생 간에 발생하는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에 포함시켜 징계로만 해결하기는 어려움. 이러한 점에서 경미한 사안과 심각한 사안을 구분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사가 교육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재량권이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 (3) 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 가.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도 도입

○ 학교폭력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인 선도도 필요하다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상으로는 학교폭력이 의심만 되더라도 무조건 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 중 화해를 권유하면 학교폭력의 은폐·축소로 비춰질 수 있어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적 개입이 어려웠으며,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도 법률에 의한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면서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였고, 자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교육부 고시인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중 화해정도 요소를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음.

○ 이와 같이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자치위원회는 선도와 교육, 화해, 분쟁조정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징계와 처벌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계속해서 논란의 핵심이 됨.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정 법률에서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를 도입하게 됨.

○ 즉, 개정법률은 제13조의2에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이하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물론 4가지 요건 즉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아야 하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어야 하고,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아야 하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또한 학교장은 자체해결을 위해서 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②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를 거쳐야 함.

- 경미한 사안조차도 자치위원회에 회부케 할 경우 많은 학생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양산시킬 수 있고 학생 지도에 대한 담임교사들의 자율권과 재량권 위축, 생활지도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고, 사소한 사안도 학생과 학부모간 대화를 통해 화해시키는 노력 없이 자치위원회에 회부하게 될 경우 교사 책무성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일응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교육적 지도가 가능한 경미한 학생간의 다툼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설치된 전담기구의 사안 확인에 따라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은 징계와 처벌 중심이 아닌 화해를 통한 관계회복과 교육적 선도를 우선시한다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태도라 생각됨.
- 반면에 학교폭력 발생 후 학교에 대한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시키지 않고 만나 대화하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학교, 학부모, 학생 모두가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처 능력 면에서 함께 변화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은폐·축소 등의 갈등으로 확대될 우려도 무시할 수는 없음.
- 또한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은 관련학생 및 보호자 모두 동의할 때 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경우는 대부분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도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 하에서 대부분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학교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실제로는 거의 없게 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음.
- 이러한 점에서 향후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라면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는지와 상관없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점과, 학교장이 자체해결에 대한 불만이나 구제수단을 두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의 경우 피해학생의 보호와 관련한 비용의 경우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학교안전공제회 등에서 치료비 등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정된 법률에서는 학교장이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 가해학생이 대한 조치를 종결할 경우에도 피해학생이 학교안전공제회 등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함.

나. 교육지원청 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상 자치위원회는 각급 학교에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기구였음. 학교폭력사건의 증가로 학교폭력사안처리 과정에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자치위원회 조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학교가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늘어났으며, 한편으로는 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전체위원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폭력 처리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높았음. 이에 그 대안으로 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세종시의 경우 교육청)에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었음.

○ 개정 법률은 자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면서 심의위원회의 구성시 학교폭력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일선학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자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함.

○ 그러나 이러한 개정과 관련하여 비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님. 먼저 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학교폭력예방법은 선도와 교육이 아닌 처벌과 징계를 위한 법이 될 것이고, 자치위원회는 학생징계위원회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또한 각급 학교에서는 여전히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필요한 사안조사와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여전히 담당하게 되므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로 기능을 이관한다 하더라도 일선 교사의 업무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도 주장되고 있음.

○ 학교에서 사안조사만 진행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관련 학생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됨.

○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면 외부 전문가를 자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증가하고 있는 자치위원회 개최 건수를 감안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해 보면 여러 개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심의위원들은 한 달에도 수 차례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고 심의위원회에 참가하기 어려움. 따라서 원래 취지인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등 외부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음.

- ○ 그리고 학교폭력 신고사건이 증가하게 되면 신속한 심의위원회 개최가 어려워져 피해학생 보호와 적정한 시기에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징계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모두 절차에서 해방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점 중 하나임. 사실 현재 피해학생이 제기하는 재심이나 가해학생이 제기하는 행정심판의 경우도 1개월에 1회 정도 열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지원청에서 많은 건수의 학교폭력 사건을 신속하게 개최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임.
- ○ 또한 심의위원회가 상설기구화 되어 학교폭력사건을 전담하는 직원과 심의위원이 상주하게 되는 등 법원과 비슷하게 운영되어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모두 마치 재판을 받는 것같이 준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는 학교 내에서 교육적 방법으로 우선 개입하여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에도 크게 어긋날 수 있음. 그 외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교육청에 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는데(세종특별시의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경우 조치결정과 징계조정 및 행정심판을 모두 동일한 기관에서 주관하게 되어 학교폭력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음.
- ○ 이러한 여러 이유로 인하여 교육지원청 단위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정법률의 입법태도와 관련하여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임.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행과정에서의 도출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세부대책이 필요할 것임.

다. 재심제도의 폐지

- ○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서 규정되었던 “재심청구”제도는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폐지되었고, 대신 “행정심판”규정이 신설됨.
- ○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학생을 위한 재심제도와 가해학생을 위한 재심제도가 이원화 되어 있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재심제도를 일원화하는 개선안이 제시되었으나 각급 학교에 설치되었던 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설치하게 되었으므로 상급심 재심제도를 둘 여지가 없어지게 됨. 재심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권리구제 수단이었는데, 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게 되면 재심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고, 곧 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불복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임.

라. 학교폭력조치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미비

○ 종전 가해학생에 대한 자치위원회 조치 결과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한가와 관련하여 찬반대립이 있었고, 나아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법적 근거 없이 훈령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있었음. 개정법률도 가해학생에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 학교폭력 사실의 생기부 기재는 예방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명백한 학교폭력사건처리마저 힘겹게 만들고 있는 실정임. 학교는 낙인이 아니라 회복과 성장을 도모하는 곳이어야 함. 이러한 점에서 교육부는 가해학생처분 1호 내지 3호의 경우 1회에 한하여 학생생활기록부에의 기재를 유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이에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한 다툼이 발생할 우려도 있을 수 있겠으나 기존과 같이 학생생활기록부의 기재를 막기 위한 목적의 소송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타당하다 할 수 있음.

## Ⅲ. 학교폭력 관련 법제 등에 대한 해외 사례

### 1. 미 국

#### 1) 법 률

○ 미국의 학교폭력 개념 안에는 심각한 폭력범죄와 단순 폭행행위가 모두 포함되는데 이러한 학교폭력 중 가장 심각한 유형은 교내 총기사고라고 할 수 있음. 1999년 콜로라도주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미국 사회는 이러한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이 바로 집단따돌림이었다는 사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연방정부는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각 주들도 같은 인식하에 따돌림 방지법(Anti-Bullying Law)을 제정하게 됨.

○ 연방정부는 2010년 4월 안전한 학교법을 개정하여 학교폭력의 유형안에 집단따돌림(Bullying) 또는 괴롭힘(Harassment)을 추가하였고, 1999년 조지아주는 최초로 집단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입법화함. 이러한 주법으로는 그 외에도 뉴욕주의 모든 학생에 대한 존엄법, 뉴저지주의 집단따돌림 방지법, 캘리포니아주의 교육법,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따돌림 방지법, 아이오와주의 따돌림 및 괴롭힘 방지법 등이 있음.

## 2) 학교폭력(따돌림)의 유형 및 실태

○ 집단따돌림(bullying)이란 힘의 차이가 나는 학생들 간의 공격적 행동이 반복되어 발생했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를 의미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주의 법률에서 개념정의하고 있는 집단따돌림에 대한 의미는 각 주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학교폭력의 유형 중 사이버 따돌림과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의 주들의 법률은 이를 규율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 반면에 다른 유형인 집단따돌림과 괴롭힘의 경우에는 주별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뉴욕주법에서는 '집단따돌림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괴롭힘만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조지아주법에서는 괴롭힘 대신 신입생 곯여주기(Hazing)를 규정하고 있음.

○ 국립교육통계센터 2017년 '학교 범죄와 안전에 관한 지표 (Indicators of School Crime and Safety: 2017)'에 의하면,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 30일 기간 동안 학교와 관련된 폭력적 사망으로 인하여 47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2016년에는 12세-18세 연령의 학생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약 749,400 건의 절도 및 비치명적 폭력에 의한 학교폭력 피해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는 2008년의 경우 범죄피해를 경험하였다고 밝힌 1천 2백만 명의 학생중 619,000명이 절도를, 629,800명이 비치명적인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한 것에 비하여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3)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 창의적 갈등해결 프로그램(Resolving Conflict Creatively Program) : 뉴욕주는 '또래조정제도(peer-mediation program)'를 기초로 하고 있는 '창의적 갈등해결 프로그램(Resolving Conflict Creatively Program: 이하 RCCP)'을 채택·운영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뉴욕시의 조사결과 이 프로그램 시행 후, 교사의 71%가 학교에서 신체적 폭력이 크게 감소하였다고 답변하였고, 특히, 전체답변자의 98%가 또래조정제도가 학생의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 세컨드 스텝 프로그램(Second Step Program) : 학생들의 폭력적 행동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임. 학령기 이전의 4세부터 중학교 연령인 14세까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며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인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교사가 실시하는 학급 단위의 교육과정임.
- 공격자, 피해자 및 방관자 입장에서 본 폭력예방을 위한 사고와 행동 프로그램: (Aggression, Victims, and Bystanders: Thinking and Acting to Prevent Violence) 폭력에 많이 노출된 학생들에게 폭력과 부적절한 공격의 예방을 위하여 기획된 프로그램으로서, 총 4주에서 12주 동안 주 1회에서 3회까지 실시되며 1회에 45분간 진행되는 수업으로 보건교사, 언어치료교사, 학교담당경찰관, 체육교사에 의하여 실시되며 청소년들에게 공격자와 피해자, 방관자의 역할을 검토하게 함으로써 문제해결기술을 개발하고 연습을 통하여 폭력을 사용하려는 생각을 재고하게 하며, 갈등에 대하여 생각하고 반응하여 새로운 방법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 영 국

### 1) 발생실태

- 영국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하여 전체적인 학교폭력 피해율은 낮은 편이나 유독 따돌림의 피해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집단따돌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학교폭력문제에 대처해 오고 있음.
- 그동안 영국의 집단따돌림 예방 정책이 다각도로 실시됨에 따라 집단따돌림 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생비율이 많이 감소하긴 하였으나, 다른 유형의 학교폭력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2018년 '어린이를 위한 자선단체'인 NSPCC와 National Children's Bureau에서 만든 '따돌림방지모임(Anti-Bullying Alliance; ABA)'의 조사에서 영국 중·고등학생 중 45%가 따돌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해, 중·고등학교 한 학급에서 한 명꼴로 따돌림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남.

○ 집단따돌림(Bullying)이란 교육부 집단따돌림 방지책자에 의하면 고의로 사람을 해치는 행위로서 일정 기간 여러 차례 반복되는 괴롭힘을 의미함. 교육부의 셰필드 대학 왕따 예방 프로젝트(the DFE Sheffield University Anti Bullying Project)에서는 집단따돌림의 유형으로 ①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소지품을 빼앗는 등 신체적 행위, ② 매도하고 모욕하고 인종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등 언어적 행위, ③ 불쾌한 소문을 퍼뜨리거나, 사회적 집단에서 누군가를 배제하는 등의 간접적 행위를 들고 있음. 그 외에 사이버 따돌림의 형태도 학교폭력에 포함시키고 있음.

## 2) 학교폭력 예방 관련 법령

○ 영국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법률은 1998년에 공표된 학교 표준 및 프레임워크 법률(School Standard and Framework Act)인데 동 법에서는 집단따돌림의 예방과 관련하여 학생지도 및 학생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책임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역할을 명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또한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수 있다고 의심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아동법(The Children Act 1989)에 의하여, 교직원은 지역당국 아동사회보호 기관에 이러한 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학교는 보호조치가 없어도 피해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외부 서비스를 활용하여야 함.

○ 그 외에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과 학부모가 함께 학생의 지도와 단속을 의무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범죄와 무질서 방지법(The Crime and Disorder Act 1998)과 부모가 자녀의 반사회적 행위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취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자녀양육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사회적 행위법(Anti-Social Behavior Act)도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3)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 셰필드 집단따돌림 방지 프로젝트(Sheffield Anti-Bullying Project) : 본 프로그램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 역할극 그리고 독서 세 가지 교육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러한 활동들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맥락에서 그들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경험하는데 도움을 줌.

○ 정서장애학교 (Secondary Support Unit: SSU와 Red-Balloon)의 운영 : 정서장애학교에는 집단따돌림의 가해학생이 가는 곳과 피해학생이 가는 곳 두 종류가 있음.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은 교사와 학교장 그리고 부모의 동의로 정해지며 이들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씩 정서장애학교에서 따로 수업을 받게 되고 주로 정서교육과 미술, 음악을 공부하게 되며 수업은 일대일로 이루어짐. 피해자를 위한 정서장애 학교는 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을 모두 교육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본인들이 다시 학교생활에 적응 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때까지 이곳에 머물면서 교과과정을 이수하게 됨.

○ 일반학교 프로그램 :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교의 특성에 맞는 자체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장은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연수 때마다 이에 관한 사례발표를 하게 되어 있음. 런던의 사립 남녀공학 중학교(11살-16살 학생수 450명, 교사 30명)가 시행하고 있는 예방 프로그램으로는 예를 들면, 부모의 친구하기(Be friend with parents) 점심시간 그룹감찰 모임(Lunchtime Group Supervision Meeting), 또래지원제도(Peer Support System), 시니어 그룹지원(Senior Group Support), 누가 친구인가?(Who's your friend?) 등이 있음.

## 3. 독 일

### 1) 법 률

○ 학교폭력을 규정하고 있는 주법중에서 대표적인 법률이 베를린주의 학교법(Schulgesetz)임. 동 법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내용과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사안의 처리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이 상세히 열거되어 있음.

- 15세~18세 청소년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된 때에는 경찰은 청소년국에 알려야 하고 이 경우 중한 사안의 경우 검찰로 송치되는데, 검찰도 사건의 경중에 따라 여러 가지 조치할 수 있음.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검찰은 조건부 기소유예의 방법으로 폭력치료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안이 중한 경우 공소제기에 의하여 소년법원에서 재판절차가 진행됨. 이 때 판사는 사건의 심각성을 바탕으로 가해학생 행위를 검토하여 필요한 교육적 조치와 형사적 처벌을 하게 됨.
- 정리해 보면 독일의 경우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내 조치나 처리에 관한 규정은 각 주의 학교법에서 규율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심각한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의 개입에 의해 사법절차로 진행되며 이 경우에는 청소년형법이 적용되게 됨.

### 2) 학교폭력의 유형과 실태

- 학교폭력의 한 형태인 집단따돌림의 개념을 한 학생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로부터 부정적인 행동을 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때의 부정적인 행동이란 남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주려는 목적을 지닌 공격적 행동을 의미하는데 여기서의 공격적 행위란 폭행이외에 위협·욕설·배제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범위의 행동을 의미함.
- 독일의 경우 집단따돌림의 개념안에는 "bullying" 외에도 "mobbing"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여기서 "mobbing"이란 괴롭힘과 연관된 다수 익명의 집단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함.
-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사회적 갈등과정에서 학교폭력이 잠시 증가한 바 있으나 1990년대부터 학교폭력예방에 중점을 둔 전문화·특성화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2005년 이후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됨.
- 그러나 지난 7월초 베르텔스만재단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독일 내에 따돌림현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학교폭력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교육 등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였던 독일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으며 이에 독일은 그 예방과 대응을 보다 강화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3) 학교폭력 대응 및 처리절차

○ 독일의 학교폭력 처리상의 특징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는 점임. 즉 경미한 경우 학교 내에서 교육조치나 징계조치를 통해서 처리하나 중대한 사안의 경우 경찰에 신고, 사법절차가 진행됨.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교사는 가해학생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문책하고 이를 학부모에게 통보한 뒤 학부모면담을 거쳐야 하며, 학교내 상담교사는 따돌림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야 함.

○ 심각한 사안인 경우 학교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으며, 부모면담과 학급교체 등이 이루어지거나, 정학퇴학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이 경우 학교와 경찰이 협력하여 학교 외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자살 시도나 가정폭력의 경우 청소년국이나 보건국의 지원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음.

○ 매우 심각한 사안인 경우 학교는 가해학생을 경찰에 신고하여야 하고 경찰은 즉시 개입하여 처리하며, 또한 학교는 즉시 폭력예방과 위기상황 개입을 할 수 있는 교육상담사와 관련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학교책임자와 사고보험기관(Unfallkasse)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가 있은 뒤 경찰은 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해당 청소년청에 사실을 알리고, 15-18세인 경우에는 사건의 정도에 따라 검찰로 송치하여야 함.

### 4)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르며 학교내 조치로는 교육조치와 징계조치가 있음.

○ 베를린법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조치로(Erziehungsmaßnahmen) 는 교사책임하에 ① 학생과의 상담(das erzieherische Gespräch mit der Schülerin oder dem Schüler), ② 전체 약속(gemeinsame Absprachen), ③ 구두 훈계(der mündliche Tadel), ④ 학급일지 기재(die Eintragung in das Klassenbuch), ⑤ 손해의 원상회복(die Wiedergutmachung angerichteten Schadens), ⑥ 물건의 일시적 몰수(die vorübergehende Einziehung von Gegenständen) 등이 있음.

○ 징계조치(Ordnungsmaßnahmen)는 교육적 조치로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거나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베를린 학교법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제63조제1항). 이러한 징계조치에는 ① 서면경고(der schriftliche Verweis), ② 10일 이내의 수업 및 학교행사 제외(der Ausschluss vom Unterricht und anderen schulischen Veranstaltungen bis zu zehn Schultagen), ③ 학급 교체(die Umsetzung in eine Parallelklasse oder eine andere Unterrichtsgruppe), ④ 전학(die Überweisung in eine andere Schule desselben Bildungsgangs), ⑤ 퇴학(die Entlassung aus der Schule, 6세~18세의 의무교육대상자 제외) 등이 있음(베를린 학교법 제63조제2항).

### 5) 집단따돌림 예방프로그램

○ 예방팀 프로젝트(Praevention im Team: PiT), 프라이부르크의 학교 갈등 문화 프로그램(Schulprogramm Konflikt-Kultur aus Freiburg), 책임을 전가하지 않기 프로그램(No Blame Approach – Keine Schuldzuweisung), Übergang 프로젝트 등이 있음.

## 4. 일 본

### 1) 법 률

○ 일본의 경우 학교내 폭력행위와 이지메는 학교교육법에 따라 규율하는 반면, 학교 밖의 폭력은 형사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데 청소년 비행에 대한 형사법으로는 형사소송법, 재판절차법, 소년법, 소년원법 등이 있음.

○ 학교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28일 집단따돌림(이지메) 방지대책추진법(においていじめ防止対策推進法)이 제정되었는데, 동법은 집단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설치자, 학교 및 교직원, 보호자 등의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교장 및 교원 등의 학교교육법(学校教育法)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권한을 인정하고 있음.

○ 가해학생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학교교육법(學校教育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교장 등은 이지메를 한 학생에 대하여 퇴학, 정학 및 훈계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피해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교육위원회에 의한 가해학생의 출석정지처분을 인정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2) 학교폭력의 개념과 실태

○ 학교폭력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다른 국가와 달이 일본의 경우 집단따돌림을 학교폭력 개념 안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유형의 비행으로 분류하여 그 실태와 현상을 조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일본은 집단따돌림을 '이지메(いじめ)'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음. 문무부성의 책자에 의하면 이지메는 자기보다 약한 자에 대하여 일방적인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행함으로써 상대가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나, 반면에 앞서 언급한 집단따돌림방지대책추진법에서는 "학교 학생이 일정한 인간관계에 있는 다른 학생으로부터 심리적·물리적 공격을 받아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학교폭력의 여러 형태 중에서 가장 많은 사회적 논란을 가져온 것은 역시 집단따돌림(이지메)이었음. 일본 사회 모두가 집단따돌림의 문제를 사회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집단따돌림에 대응한 결과 2011년까지 그 발생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그러나 2012년도부터 집단따돌림의 인지 건수가 다른 학교폭력과 비교하여 다시 증가되어 2018년 10월 이지메 발생건수는 41만 4,378건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9만 1,235건이나 급증한 것으로 문무부성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3) 학교폭력 처리절차

○ 학교폭력에 관한 기본적 절차는 집단따돌림(이지메)방지대책추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및 운영방법 등에 따라 진행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도도부현 별 교육위원회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매뉴얼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학교폭력사안 경미한 경우, 학교 내에서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심각한 사안인 경우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매뉴얼을 갖추고 있음.

○ 일단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교사가 상담에 참여하며, 학교 전체가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정신적면을 배려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안이 긴급하거나 심각하여 긴급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피난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하여 별실(상담실, 보건실 등)로 등교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개최되면 피해학생이 신뢰하는 교사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세부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역할분담을 하고 서로 간에 정보공유를 함. 이 프로젝트 팀의 구성원은 담임, 학년주임, 학생지도교사, 교육상담담당자, 보건교사, 학교상담사 등임.
- 그 외에 학교내에서 가해 학생에 대해 취하여야 할 징계조치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음(제25조 또는 제26조). 즉 교장과 학교 교직원은 해당 학교에 재적하는 학생 등이 집단따돌림을 가하는 경우,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교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해당 아동 등에 대해서 징계를 가할 수 있음.

### 4) 집단따돌림(이지메)에 대한 정부정책

- 이지메와 같은 학생의 문제행동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학교교육법에서는 출석정지 요건과 그 절차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출석정지 기간 중 학생에 대한 학습지원규정을 도입하여 200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또한 이지메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학교교육을 개선하고 상담체제를 정비하였음.

## 5. 시사점

- 앞서 본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은 각 국가의 학교폭력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차별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학교폭력관련 예방정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감독자 책임과 관련하여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 앞서 본바와 같이 동 법은 학교폭력의 대상이 학생인 경우뿐만 아니라 교직원에 대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고, 대학의 경우 가장 큰 문제인 신입생 환영을 이유로 각종 행사에서 벌어지는 신입생 곯여주기(Hazing)를 포함하여 규율하고 있음. 현재 학교폭력의 경우 그 수위가 심각해지고 있고 그 피해 대상이 반드시 학생만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예방대책에 보호자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의 규정은 향후 우리의 학교폭력 제도의 개선방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도입할 가치가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됨.

- 주정부 차원에서 상당기간 학교폭력예방 정책을 실시하여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최근 집단따돌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독일의 경험은 학교폭력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정책의 개발을 통해 사회전체가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문제임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유형 가운데 이지메를 별도로 분리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대응매뉴얼과 대응지침도 마련해 두고 있으며 학교폭력 실태조사도 매우 구체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 같이 오랜 기간 철저하고 상세하게 조사하고 이를 수치로 통계화하여 이렇게 누적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일본의 태도는 향후 우리의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대응방향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알게 해 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음.

# Ⅳ.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 1. 조사 개요

- 본 조사의 목적은 학교폭력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법제 및 정책개선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 확보에 있음.
- 본 조사는 학생, 피해학생 학부모, 학부모, 관계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유관기관, 교육청 등의 협조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로 이루어졌음. 조사대상집단은 학생 474명, 부모 및 관계자 306명으로 총 780명으로 이루어졌음.
- 조사에 응답한 학생은 총 474명으로 이 가운데 학교폭력 가해 및 폭력경험이 있는 학생비율은 14.8%임. 부모 및 관계자는 306명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부모는 31.4%, 일반학부모 55.2%, 교사, 교육청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관계자 집단은 13.4%였음.
- 학생 중 여학생은 56.5%, 남학생은 4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학생 30.4%, 고등학생 69.6%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1〉 조사대상집단의 주요특성 개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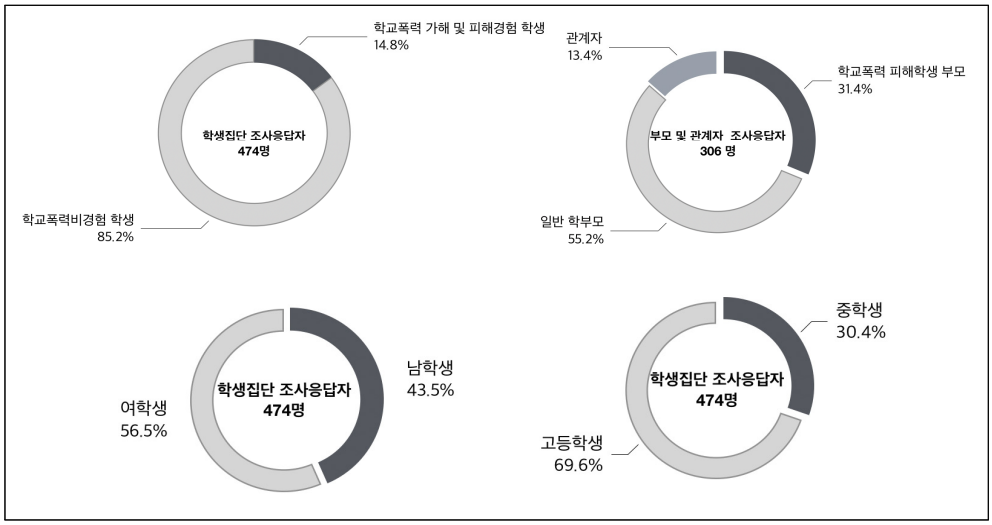


## 2. 설문조사 주요 결과

○ 학교폭력실태와 경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문화 및 예방정책,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조사결과 중 주요한 결과만을 요약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문화 및 예방정책에 대한 인식

○ 학생, 학부모 및 관계자 집단은 모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한 학교문화로 상호협력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적 문화를 응답했음(부모 및 관계자 33.3%, 학생 29.3%). 다음으로 학생인성중심의 문화(부모 및 관계자 26.1%, 학생 26.2%)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학생집단은 학생인권중심의 문화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한 문화로 응답한 비율(23.4%)이 부모 및 관계자집단(13.7%)보다 높았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그림 2〉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문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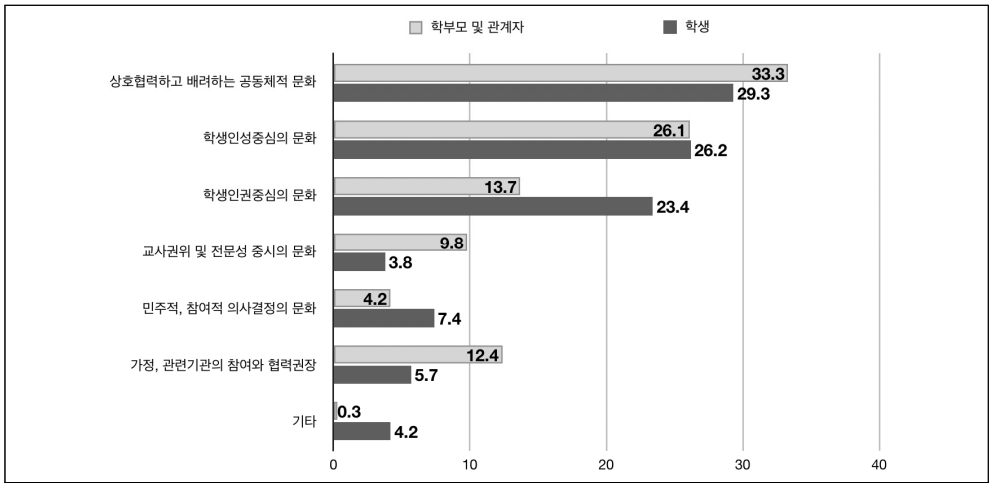


○ 학생,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예방정책은 다소 차이를 보였음.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의 경우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책임을 강화하는 예방정책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반면 학생집단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을 보였음.

### 〈그림 3〉 학교폭력 예방정책의 중요도

(단위: 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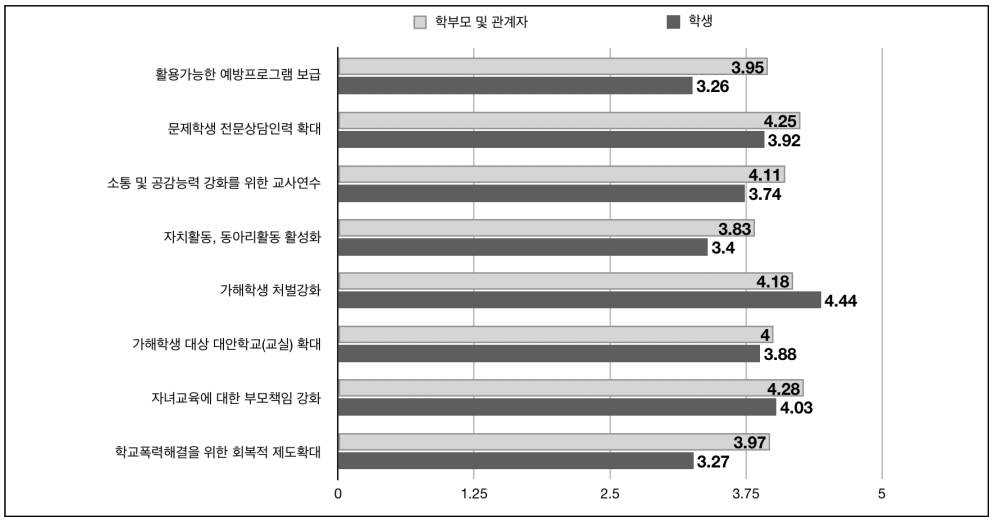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2) 학교폭력사건 처리원칙과 당사자간 해결의 필요성

○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은 학교폭력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주요한 처리원칙으로 피해학생의 정서치유(48.7%)와 가해학생의 잘못 인식과 사과기회의 제공(36.9%)을 꼽았음.

○ 지나치게 사법적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것보다는 피해학생의 치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가해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사과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주요한 처리원칙이라 응답함.

**〈그림 4〉 학교폭력사건 처리원칙의 중요도**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 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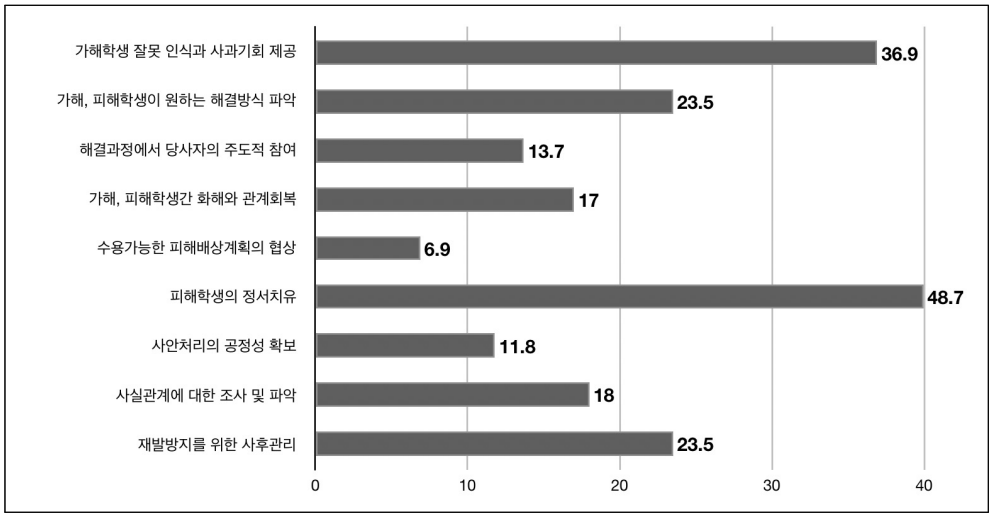


○ 학교폭력 당사자간의 화해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중 78.4%가 그 필요성에 동의하였음. 가해학생의 책임인식과 재발방지, 학생간 관계회복을 위해 당사자간 화해절차가 학교폭력사건의 처리과정에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5〉 학교폭력사건 처리원칙의 중요도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 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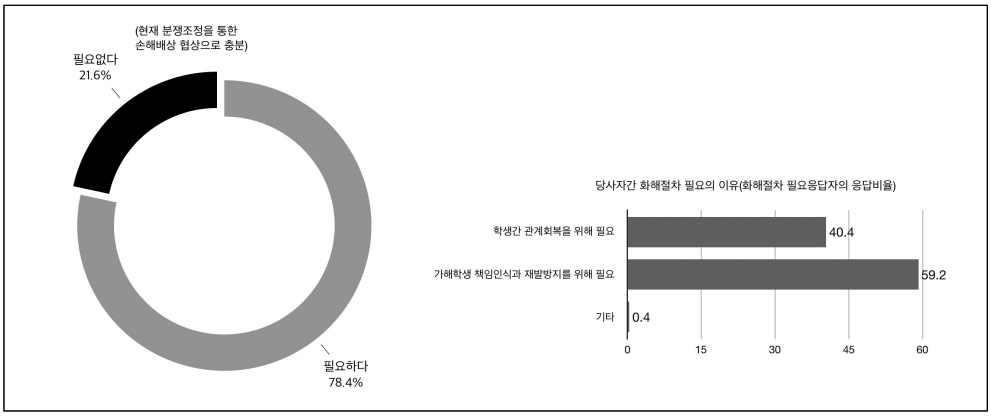


## 3) 학교폭력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학교 및 자치위원회의 해결역량

○ 학교폭력사건의 처리와 관련해 학부모 및 관계자는 대부분 부정적 응답을 보였음. 학교폭력사건을 처리하는 학교의 해결능력에 동의하는 비율은 22.3%에 불과하였음.

〈그림 6〉 학교폭력사건 처리원칙의 중요도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 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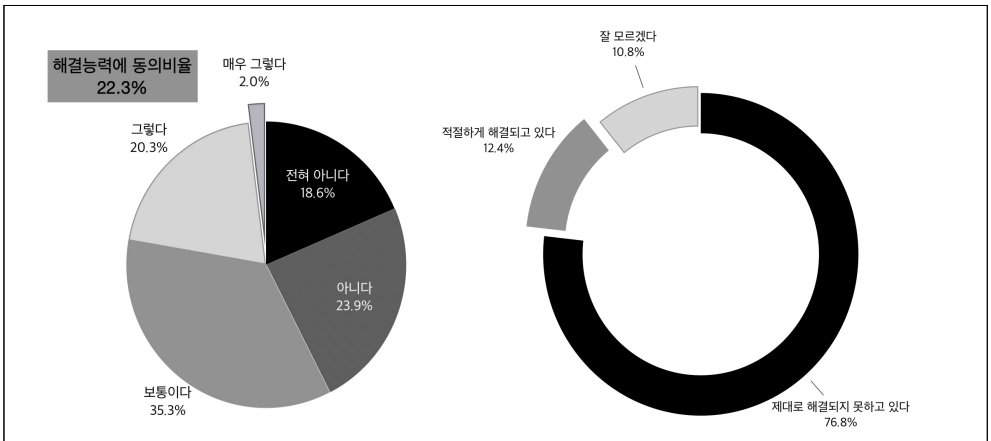


(가) 학교의 학교폭력해결능력 (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해결정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문제 해결정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76.8%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다고 응답함. 이는 학교를 비롯해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사건에 대해 신뢰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 4) 학교폭력사건의 처리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 (1) 경미한 학교폭력사건의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방안에 대한 인식

○ 경미한 학교폭력사건의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방안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 및 관계자 집단 모두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음.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 중 57.8%, 학생집단 중 57.2%는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방안에 대해 과반이 넘는 비율이 반대의견을 응답함.

**〈그림 6〉 경미한 학교폭력사건의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방안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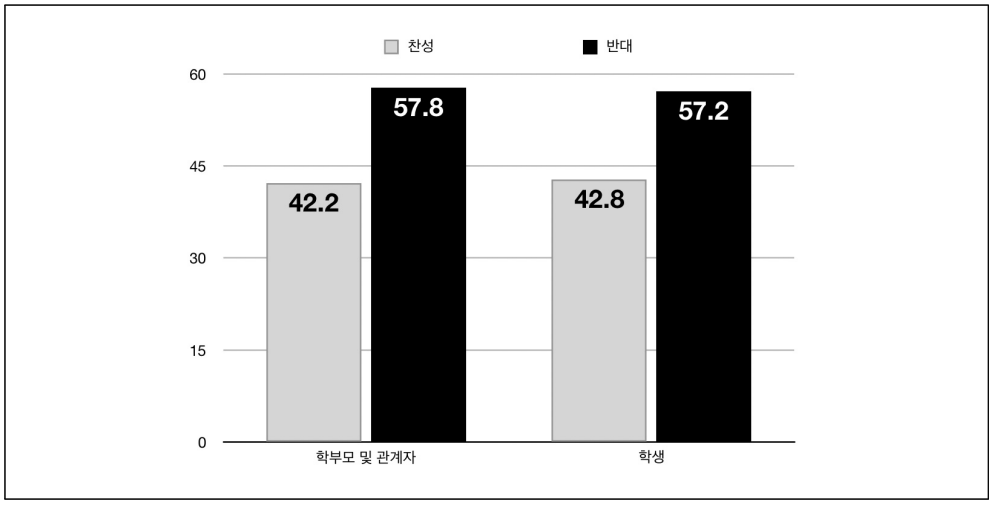


○ 경미한 학교폭력사건의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학교나 가해학생 측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할 위험'이었음.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방안에 반대한 학부모 및 관계자 중 67.2%, 학생 중 70.5%가 경미한 사안으로의 축소 또는 은폐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응답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2)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삭제 방안에 대한 인식

○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를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학부모 및 관계자, 학생집단 모두 반대하는 응답비율이 높았음. 학부모 및 관계자 중 52.9%, 학생집단은 73.8%가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삭제에 반대한다는 응답비율을 보임.

○ 다만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 중 30.4%, 학생집단 중 17.5%는 '일부조치에 대한 졸업시 삭제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함. 학교구성원이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의 도출시 가해학생 일부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유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일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7〉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삭제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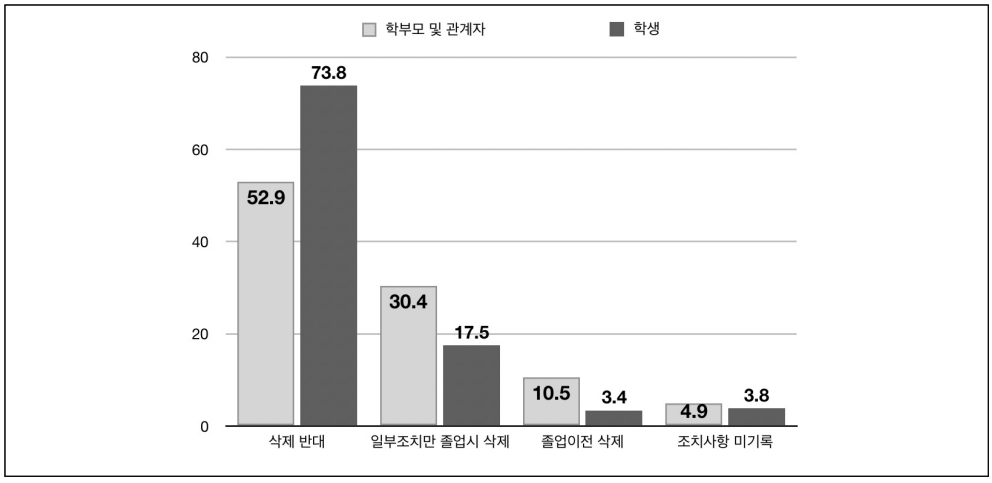


### (3) 가해학생 일부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유보 방안에 대한 인식

○ 가해학생 선도조치 중 1~3호조치에 대해 단계별로 기재를 유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학부모 및 관계자와 학생 모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학부모 및 관계자 집단 중 66%, 학생집단 중 54.3%는 가해학생 일부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유보 방안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8〉 가해학생 일부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유보 방안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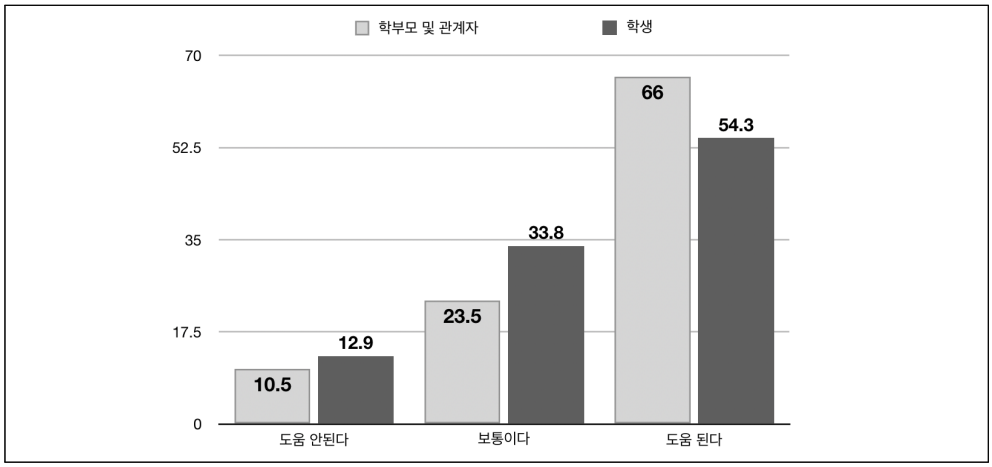


(4)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의 유용성 및 이해정도에 대한 인식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선도·교육조치 중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조치에 대해서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3.85점)과 학생집단(4.05점)은 전학조치를 응답함.

〈그림 9〉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단위: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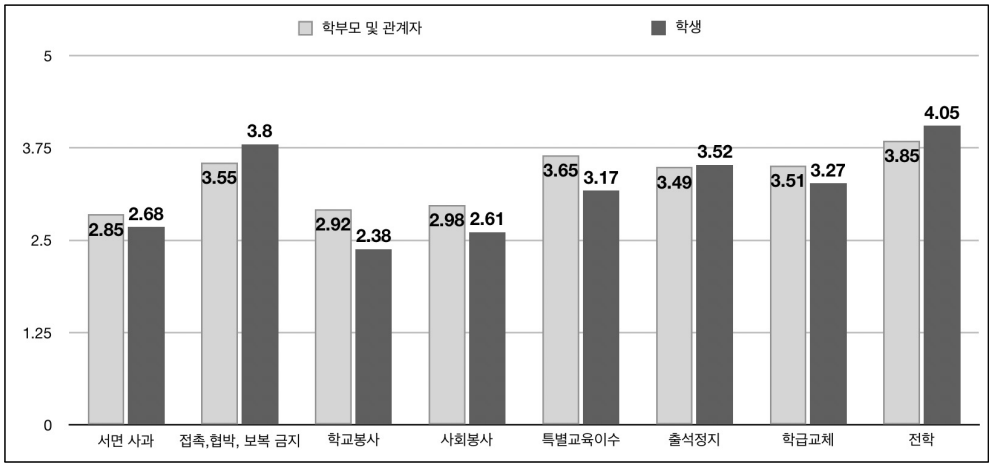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학생집단은 전학조치 다음으로 피해학생과의 접촉, 협박, 보복금지조치(3.8점)가 유용하다고 응답함.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은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수(3.65점)가 전학조치 다음으로 유용하다고 응답한 반면, 특별교육이수조치에 대한 학생집단의 유용성 점수(3.17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조치의 이행정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 전체 중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5%에 불과함. 피해학생 학부모는 12.5%만이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응답함. 일반학부모는 28.4%가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응답함. 교사, 교육청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관계자집단은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6%로 가장 높았음.

**〈그림 10〉 학교폭력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의 이행정도에 대한 인식**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 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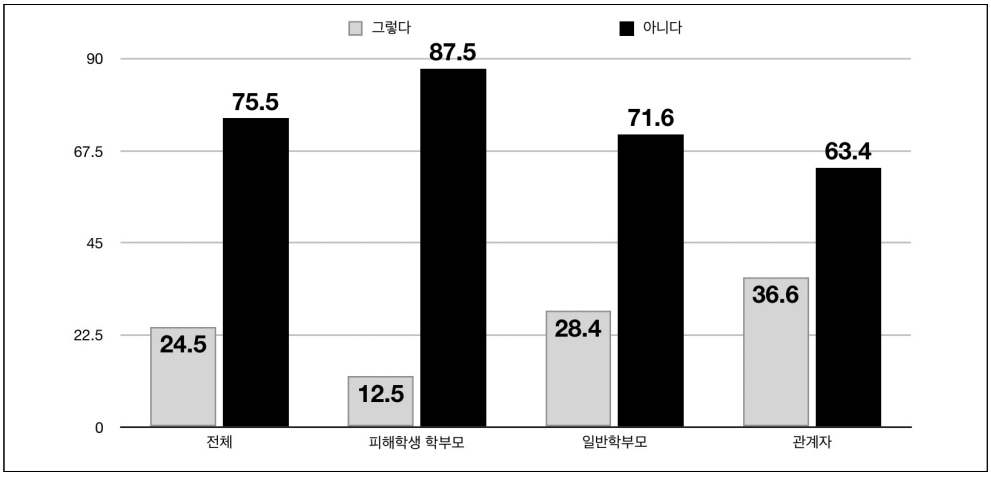


### (5)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제공되는 보호조치의 유용성에 대해서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과 학생집단은 치료 및 요양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학생집단의 경우, 등하교시 교사나 경찰의 동행, 법적·의료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그 밖의 보호조치에 대한 도움정도를 높게 평가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11〉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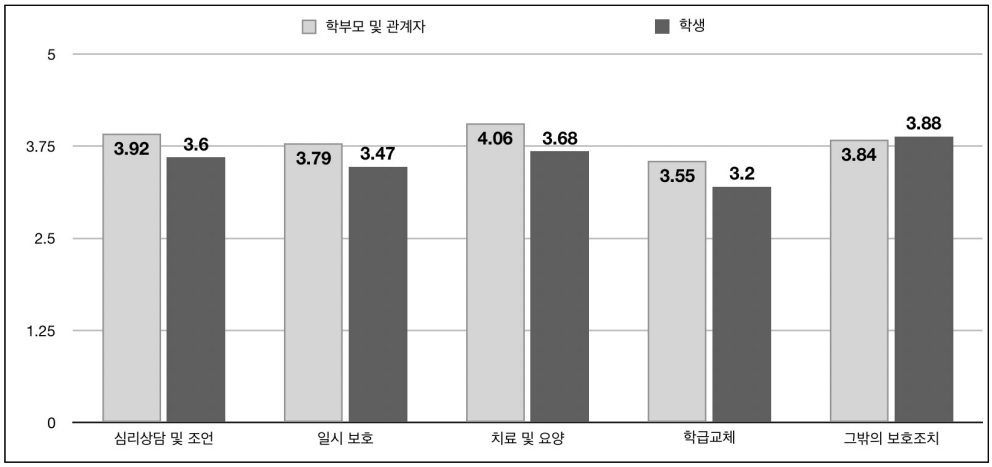


○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학부모)이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중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음. 하지만 학교안전공제회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부모 및 관계자 집단, 학생집단 모두에서 낮게 나타남.

〈그림 12〉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인식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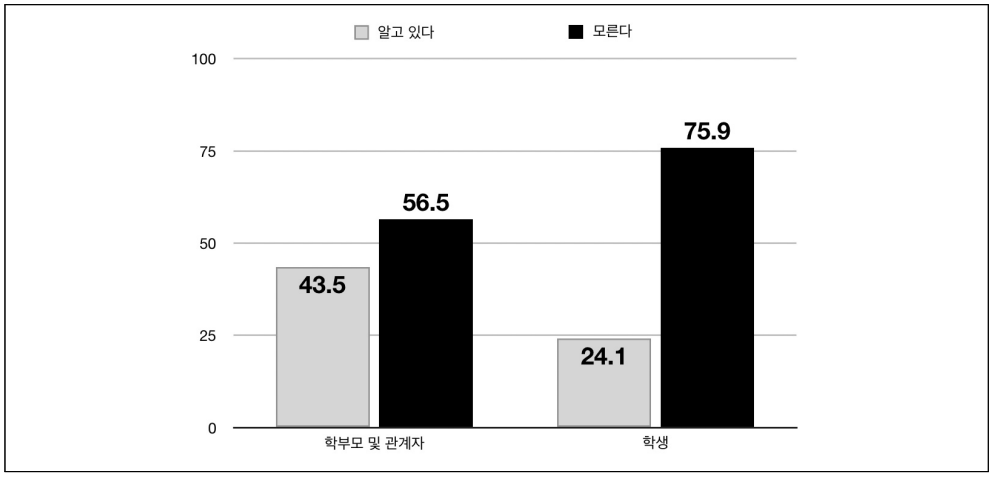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 중 학교안전공제회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3.5%였고, 학생집단은 이보다 낮은 24.1%만이 학교안전공제회를 알고 있다고 대답함. 학교폭력과 관련한 주요한 제도와 지원절차에 대한 인식확대를 위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가해학생뿐만 아니라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이수를 요구할 수 있음. 하지만 가해학생 학부모대상의 특별교육조치에 대해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 중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1%에 불과함.

**〈그림 13〉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특별교육조치에 대한 인식**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 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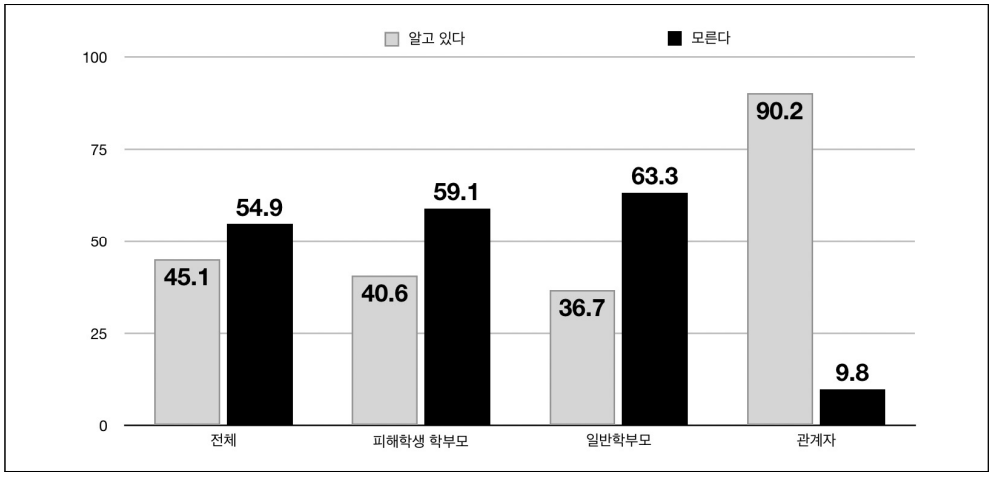


○ 피해학생 학부모 중 가해학생 부모특별교육조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6%였고, 일반학부모는 36.7%로 나타남. 다만 관계자집단은 부모특별교육조치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90.2%로 가장 높았음.

### (6) 학교폭력 화해·관계회복 및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역할의 수행주체 및 필요성

○ 학교폭력사건의 당사자간 화해·관계회복을 위한 조정역할을 수행할 주체로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이 가장 많이 응답한 주체는 중재전문기관 및 외부전문가(50.0%)였음. 학생집단의 경우 학생이 화해·관계회복의 조정역할 수행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224.9%)이 높았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14〉 학교폭력 화해·관계회복을 위한 조정역할의 수행 주체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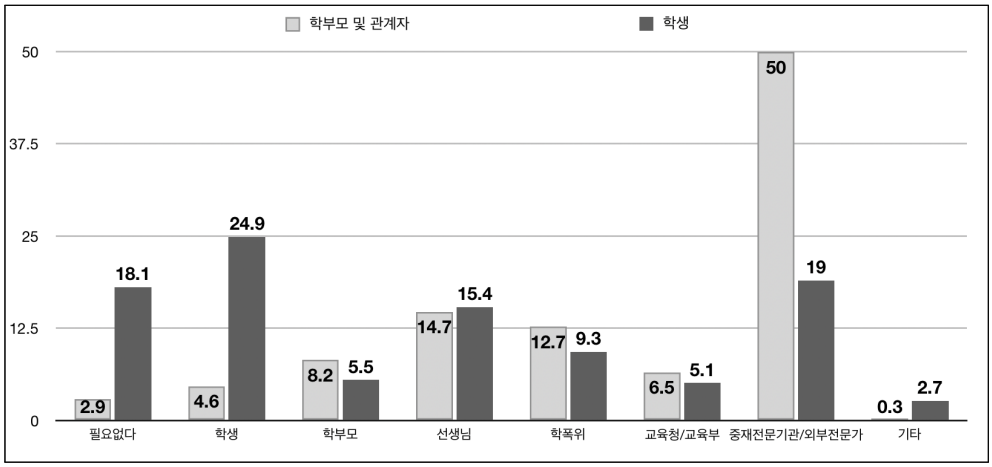


○ 학교폭력사건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역할의 수행 주체로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과 학생집단 모두 중재전문기관 및 외부전문가를 가장 많이 응답함.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 중 60.5%, 학생집단 중 36.9%가 중재전문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고 있음.

**〈그림 15〉 학교폭력 분쟁해결 조정역할의 수행 주체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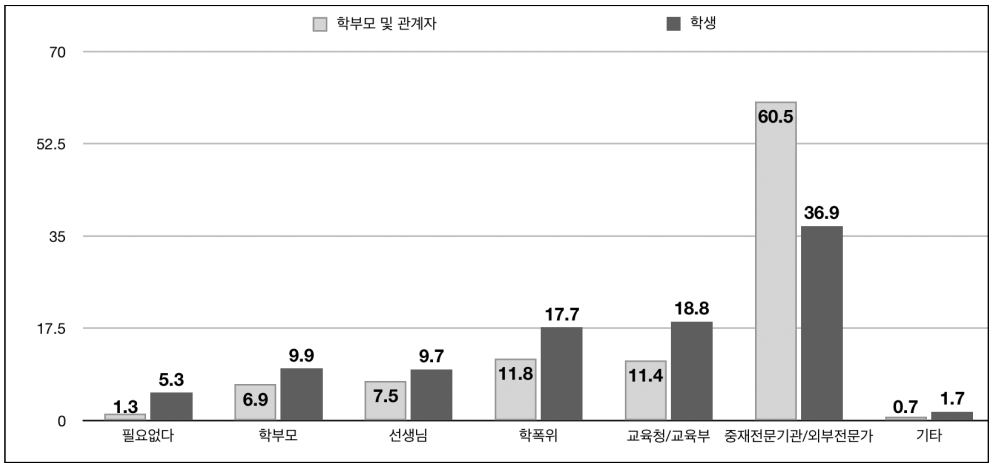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7) 학교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손배갈등 중재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학교폭력 전문상담기관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과 학생집단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로 나타남.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 중 학교폭력전문상담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 비율은 94.8%, 학생집단의 필요성 동의비율은 90.7%로 나타남.

**〈그림 16〉 학교폭력전문상담기관 및 손해배상갈등 중재역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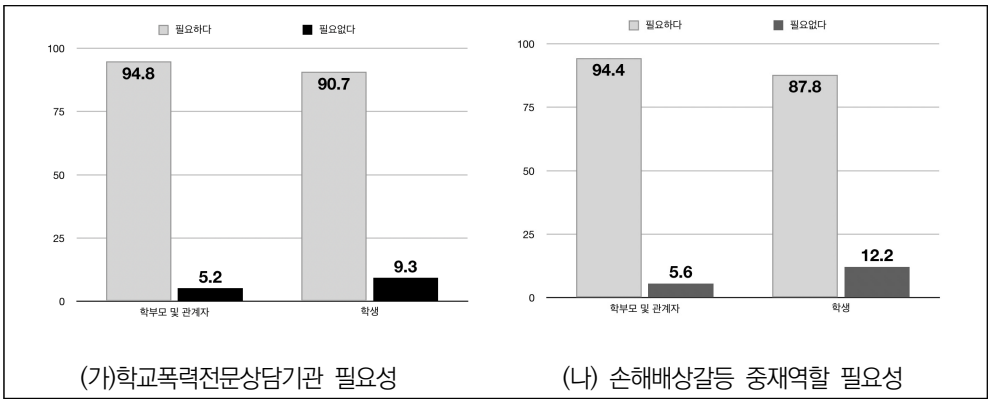


(가)학교폭력전문상담기관 필요성 (나) 손해배상갈등 중재역할 필요성

○ 학교폭력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갈등의 중재역할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과 학생집단 모두 그 필요성에 대해 높은 동의비율을 보였음.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 중 94.4%, 학생집단 중 87.8%는 손해배상갈등의 중재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였음.

### (8) 학교폭력사건 처리과정의 중요도·만족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 학교폭력사건 처리과정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에 대해 물어본 결과,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은 모든 사항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을 보였음. 그 가운데 가장 중요도가 높은 사항은 사안처리의 비밀보장(4.44점)이었고, 학생회복과 성장을 위한 객관성있는 사안처리(4.34점), 자치위원의 중립성(4.33점) 등이었음.

### 〈그림 17〉 학교폭력사건 처리과정의 중요도와 만족도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 응답, 단위: 5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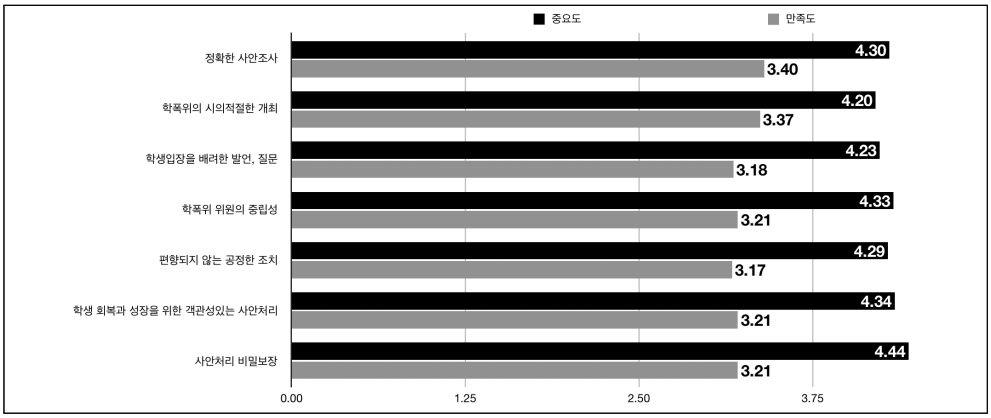


○ 반면 학교폭력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 나타남. 이 중 높은 점수를 보인 사항은 정확한 사안조사(3.40점), 자치위원회의 시의적절한 개최(3.37점)로 나타남.

○ 학교폭력사건의 처리과정과 관련한 개선방안에 대해 대부분의 사항들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임. 그 가운데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들은 대부분 자치위원회 위원의 역할, 전문성, 법적·심리적 안전보장 등과 관련되었음.

### 〈그림 18〉 학교폭력사건 처리과정의 개선방안 필요도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 응답, 단위: 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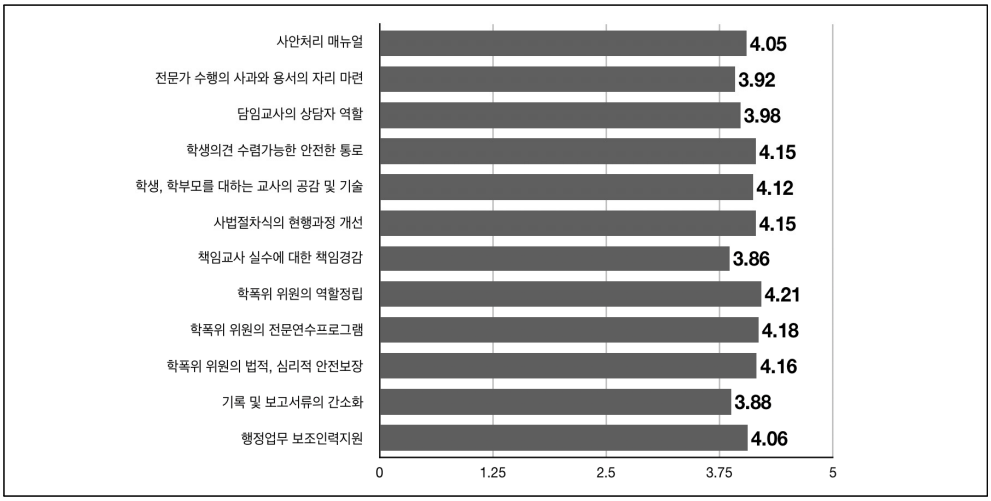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자치위원회 위원의 역할정립(4.21점), 자치위원회 위원의 전문연수프로그램(4.18점), 자치위원회 위원의 법적·심리적 안전보장(4.16점) 등 자치위원회의 전문성, 중립성, 공정성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줌. 이러한 개선방안의 필요성은 개정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5) 주요 조사결과에 기반한 시사점

### (1) 자치위원회의 해결역량에 대한 불신해소방안 필요

○ 조사결과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이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학교의 자율적 해결능력에 동의한 비율은 22.2%로 낮았음. 이는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중립성, 역할 등에 대한 회의와 불명확함이 있기 때문이라 여겨짐.

○ 이와 관련해 향후 교육지원청에 이관치되는 심의위원회의 학부모 위원 비중을 현행 '절반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추고,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비중을 늘린 개정법안의 내용은 이러한 우려를 일정 정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그럼에도 향후 학교폭력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통한 심의위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2) 경미한 학교폭력사건의 자체해결 방안에 대한 우려 불식을 위한 명확한 지침 필요

○ 경미한 학교폭력사건의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방안에 대해서 학생(57.2%), 학부모 및 관계자(57.8%) 모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주요한 반대사유는 학교나 가해학생 측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축소·은폐할 위험이 크다는 것임. 이는 학교의 자체해결에 대한 강한 불신과 연결되는 결과라 보여짐.

○ 향후 가해학생의 입장에서는 교육지원청 산하에 설치·운영되는 심의위원회로 이관하기 전 자체해결을 강하게 선호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개정법률의 도입 초기 학교현장에서의 혼란과 갈등이 일정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짐. 이와 관련해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을 추진할 경우, 피해학생의 동의절차와 형식, 자체 해결사안의 명료한 기준설정, 처리절차의 구체적인 지침을 조속히 개발해 제공할 필요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3)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의 보존·삭제와 관련된 개선 방안의 신중한 검토 필요

○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삭제에 대해 학생(73.8%)과 학부모 및 관계자(52.9%) 중 절반이 넘는 비율이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음. 다만, '일부 조치의 졸업시 삭제'에 대해 학부모 및 관계자 중 적지 않은 비율이 동의하고 있었음.

○ 이러한 조사결과는 현재 학생, 학부모 및 관계자 집단 대부분이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생기부 기재 보존이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에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또 학교현장에서 가해학생의 선도와 변화가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이외의 방법을 통해서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함.

### (4) 가해학생 일부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유보 방안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노력 필요

○ 가해학생의 일부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의견이 존재함. 하지만 단계별·사안별로 선도조치 1~3호의 기재를 유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학생(53.4%)과 학부모 및 관계자(66.0%)에서 과반이 넘고 있음.

○ 이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무조건적인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보다는 학생간 화해와 관계회복을 통해 학교폭력사건을 처리하기를 희망하는 입장이 적지 않음을 보여줌. 피해학생 부모의 58.3%도 가해학생 일부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유보 방안이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해줌.

○ 다만, 전문성과 중립성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가 부족한 현재의 자치위원회 운영구조에서는 1~3호 조치 결정을 통해 학생생활기록부의 기재 유보 결정을 받으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일부 존재하는 점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가해학생 일부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유보의 조속한 정착과 수용을 위해서는 향후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할 심의위원회가 중립성, 투명성, 전문성을 통해 학교폭력 당사자 및 구성원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 (5)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전문기관의 필요

○ 학부모 및 관계자 중 78.4%는 학교폭력사건 당사자간의 화해절차가 필요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응답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당사자간 화해와 관계회복, 분쟁조정의 역할을 수행할 주체로는 중재전문기관 및 외부전문가를 가장 많이 응답함(50.0%). 특히 법적 소송 및 치료비 요구 등 분쟁해결의 조정역할을 수행할 주체로는 학부모 및 관계자 중 60%가 중재전문기관 및 외부전문가를 꼽고 있음.

- 효율적인 화해·분쟁조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폭력사건 처리의 단계별로 화해·분쟁조정의 방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 또 학교폭력사건 처리 초기부터 중재전문기관에서 파견된 외부전문가의 도움과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
- 이를 위해 권역별로 중재전문기관의 위탁·선정을 통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학교현장에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는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아울러 학교장, 교감, 학교폭력 담당교사 등 학교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화해·분쟁조정 지침안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학교현장에서의 조기개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Ⅴ. 심층면접 조사결과

## 1. 조사 개요

- 본 조사는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위해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 학생, 학부모, 학교종사자, 학교폭력 업무담당 공무원, 현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을 실시함.
- 학교폭력의 정의 및 범위,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안조사 및 처리절차 에서의 인권침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환경 조성방안, 재심 및 불복절차, 학교폭력예방교육,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과 보호자의 특별교육이수, 가해학생 조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등 개정 이전의 학교폭력예방법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조사함. 그리고 2019년 8월 2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심의위원회,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과 그 기준에 대하여 조사함.
- 조사대상자는 학교폭력 피·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 각 3명(6명), 학교폭력 관련 NGO 대표 및 실무자, 위탁교육기관 교원, Wee센터 등 현장전문가(10명), 피해학생 학부모 7명, 가해학생 학부모 3명(10명),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장학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관, 장학사, 학교폭력 업무담당 변호사, SPO 등 업무담당 공무원(10명), 교사 6명,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2명과 전문가위원 2명 등의 학교종사자(10명) 총 46명으로 이 중 5명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진행됨.

○ 심층면접대상자들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진술하기를 꺼려 조사는 대부분 일대일 심층면접으로 진행되었으며, 면담목적을 설명하고 승낙하는 경우 내용이 녹취되는 것과 익명으로 처리될 것을 안내함.

## 2. 심층면접조사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실태를 위한 심층면접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1)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범위

○ 학교폭력예방법으로 보호해야 할 피해학생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학교 밖은 물론 국내를 벗어나 국외에서 발생한 사건은 물론 교육활동과 관계없는 사건까지 포함하고 있음.

○ 가정폭력이나 미성년 성매매의 피해자까지 이 법에서 정하는 보호대상이 되어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도 피해학생 참석 없이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도 있어 범위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함.

### 2)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학교장 추천 전학'활용

○ 피해학생이 자치위원회 개최도 원치 않는다며 자발적으로 전학을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근거로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장 추천 전학'이 가능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 제73조제6항, 제89조제5항).

○ 피해학생이 원하는 경우 가족들까지 무리해서 이사를 하거나 불법 전입을 하지 않고도 전학을 갈 수 있도록 학교장 추천 전학을 활용할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3) 장애학생의 경우

- 장애를 가진 학생이 특수학교에 분리되어 교육받지 않고 일반학교에서 비장애 학생과 함께 생활하는 통합교육이 확대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 12월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통합교육을 하는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한 비율은 36.7%나 되었다고 함. 2018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전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1.3%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발생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음.
- 반대로 장애학생이 공격적인 성향이나 충동성 억제 부족 성향을 가진 경우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 되거나 의도치 않게 성추행 가해학생이 되는 사례도 발생됨. 친근감의 표현으로 하는 신체 접촉이 상대방에게는 원치 않는 접촉이 되는 경우 장애학생 부모님들은 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사안조사 단계에서부터 특수교육 전문가가 참여를 요청하여 '장애로 인한 특이행동의 발현'이라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

### 4)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위탁교육시설

-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다른 일반학교로의 전학으로도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위탁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 위탁교육시설의 교육목표는 피해학생이 본교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으로 담임교사와 SNS를 통해서라도 자주 연락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복귀하는 시기가 빨라지고 적응도 성공적이며, 교사와 학생 사이 연결을 위해 노력하는 보호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함.
- 특히 위탁 학생의 본교 선생님이 위탁교육시설을 방문하여 학생과 상담을 하는 경우 굉장히 효과가 좋고 본교에 돌아갔을 때 몇 명의 또래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교사가 돕는 경우 정착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함.
- 전담기구에서 피해학생 관련 시설 및 이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하도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것과 위탁교육시설을 방문하여 학생 상담을 실시하는 본교 교사에게 학교폭력 가산점 부여하자는 제안이 있었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5) 학교안전공제회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비용의 부담 및 지원

- 개정법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의 경우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와 구상권을 행사할 가해학생이 특정되지 않아 학교안전공제회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함.
- 긴급조치가 내려진 경우는 피해학생에게 학교안전공제회의 선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이 있었음.

### 6)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 5호조치는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가해학생의 폭력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치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내려지며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함.
- 피해학생의 심리치료와 달리 가해학생의 폭력성을 위한 심리치료는 가해학생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5호조치로 특별교육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고 함.
- 가해학생의 폭력성을 유발시키는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한 조치와 위탁교육시설이 필요하며, 비용 부담 없이 폭력성을 치료하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해학생의 폭력성 치료를 위한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음.

### 7)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 1호 서면사과와 9호 퇴학 이외에 2호부터 8호까지의 조치가 내려지면 의무적으로 부수적 성격의 특별교육이 가해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부과됨(제17조제3항, 제9항).
- 현재 주말에도 가해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하는 센터가 소수 있기는 하지만 직장이나 생업에 지장 받지 않고 주말이나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주말이나 평일 저녁시간대의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는 센터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8) 자치위원회와 형사고소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 학교폭력으로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선도조치를 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피해학생 보호자가 형사고소를 하거나 성사안같은 경우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그리고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에 신고를 하면서 자치위원회와 형사고소까지 함께 진행되는 수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함.
- 자치위원회의 조치를 받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가해학생은 언제든지 형사고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하는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함.

### 9)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어려움

-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2012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신설된 직책임. 학교폭력 관련 학부모의 민원 등으로 아무도 맡지 않으려고 하는 대표적인 기피직이 되어 초임교사나 새로 전근해 온 교사에게 맡겨지고 연임하는 경우도 줄어들었다고 함.
-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변호사에게 처리 절차나 방법에 대한 문의도 많이 하지만 학폭을 담당했던 전·현직 교사들 약 1,500명이 모여 있는 단체대화방이나 인터넷 카페에서 어려움에 닥치거나 궁금한 것이 있을 때마다 시간 구애 없이 질문을 올리면 서로 답을 해주는 식으로 자신의 일처럼 도우며 머리를 모아 함께 사안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함.

### 10) 학교폭력 유공교원 가산점 제도 변경 제안

-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제11항에서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당 교원 40%에게 부여됨.
- 가산점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학교폭력 예방활동, 학교폭력 발견, 상담활동, 학교폭력 대응 조치, 특수공적 등이 포함되는데 일괄적으로 모든 학교의 40% 교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에게 부여하는 제도라서 오히려 교사들 사이에서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함. 책임교사, 생활지도부장으로 대상을 제한하든지 상훈 수여하든지 하고, 차라리 폐지하는 것도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음.

### 11)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의의

○ 기존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 내의 다양한 갈등을 자치위원회의 필수적 개최와 조치 부과라는 법적절차를 통해 무조건 처벌중심으로 다루다 보니 교육적 해결이 개입될 여지가 없이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결과만 초래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가 교육적 관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시도해보는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의 권한을 법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함.

### 1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교육청)에 심의위원회를 두어 이전법의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모두 이관하도록 함.

○ 그러나 자치위원회의 기능이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로 모두 이관된다고 하여 학교의 업무 부담이 대폭 경감되거나 학교폭력예방법의 징계적 요소가 사라지고 회복적 기능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음.

### 13)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과거에도 '학교의 장의 종결제'라는 것이 법령에는 근거가 없었지만 '사안처리가이드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였음. 개정법의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과의 차이점은 객관적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동의 의사를 번복하여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다는 것임.

○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에 동의를 한 경우 그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하여 보호자가 동의서에 서명하는 순간인지, 학교장 결재를 받는 시점인지 아니면 자치위원회에 보고된 순간인지에 대하여 법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함. 또한 4가지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였지만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에도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하는 것이 교장의 의무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고 함.

○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도를 도입하면서 교육적 해결이라는 명목 등으로 학교폭력 사건의 은폐·축소 시도가 확인된 경우 학교폭력 은폐·축소 교원에 대해 정해진 징계 기준보다 한 단계 높여 가중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음.

### 14) 가해학생 선도조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 교육부는 2019년 1월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과 지난 8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후속조치로 11월 21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 그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인 1~3호를 대상으로는 처음 1회에 한해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학교폭력에서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생기부에 기재하는 근거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가 아닌 교육부훈령에 의한 것으로 자치위원회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를 증가시키는 요소이자 교육적 해결의 전제인 진심어린 사과를 막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기도 함.

○ 심층면접 대상자들 중 생기부 기재가 학교폭력 예방과 사건 처리 과정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 더 많았으며, 생기부 기재 1회 유보가 오히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음. 가해학생에 대한 1~3호 조치 기재 유보를 통해 관계 회복을 위한 시도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도 있었고, 조치 일부 유보는 오히려 현장에서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므로 폐지가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Ⅵ. 결론 및 정책개선방안

## 1. 심의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위한 방안 마련

### 1) 개선방안

#### (1) 심의위원회의 안착을 위한 노력 필요

○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해결능력에 동의한 비율은 22.2%로 낮음. 이는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중립성, 역할 등에 대한 회의와 불명확함이 있기 때문이라 여겨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두는 것으로 개정함. 이 위원회에는 학부모 위원이 현행 '절반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추고,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비중을 늘린다는 것임. 이러한 내용은 현재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우려를 일정정도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됨.

○ 그럼에도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에 대해 학교폭력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2)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의무화 필요

○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중에 변호사, 검사, 학교폭력문제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등이 있으나 이 중에는 학생의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이 있으므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역량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음. 현재는 위원에 대한 학교폭력교육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에 의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임.

○ 현장에서는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시 자발적으로 학부모들이 나서지 않아서 사전에 섭외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학군에서는 전문직 학부모의 비율이 높아 학부모 위원도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많은 분들이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충분하지 않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그러므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 시간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필수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함. 즉 일정한 필수의무교육을 이수한 학부모만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위원 교육은 기본과정, 심화과정, 전문가 과정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심도 있게 하고,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중심으로 심의를 실습해 보는 것도 필요함.

○ 또한 심의위원들이 "모의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실제 학교폭력 사안과 같은 절차 및 역할로 직접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방법이 효율적이고 실제로 심의위원들의 교육이나 전문성 강화에 좋을 것임.

#### (3) 심의위원회 위원 경비지원 및 상설화 필요

○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경비를 지급하는 등 예산확보 및 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이 필요함.

○ 향후 교육지원청에 할당되는 학교폭력 사건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피해학생 재심)와 같이 진행될 것이 매우 염려됨. 사건이 많은 서울, 경기도의 경우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천편일률적인 결정문을 접하게 되며, 또한 내부에서도 1건에 10분 내외라고 하니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자치위원회보다도 못한 형식적인 위원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을 경계하여야 함. 이를 방지하고 각 사건에 대해 심도있는 판단을 위해서는 예산확보 및 상설화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할 것임.

### 2) 법제 정비

○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제정비로 다음을 제시함.

| 현행 | 개선안 |
|---|---|
|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br>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br>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현행 | 개선안 |
| --- | --- |
|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br>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br>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br>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br>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br>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br>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br>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br>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9. 8. 20.〉<br>④ 신설<br>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2019. 8. 20.〉 |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br>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br>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br>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br>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br>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br>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br>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br>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9. 8. 20.〉<br>④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은 매년 2회이상 학교폭력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2019. 8. 20.〉 |

## 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을 위한 명확한 기준 등 마련 필요

### 1) 개선방안

#### (1)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을 위한 기준 구체화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제13조의2에서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그러나 현황 실태조사 결과처럼 이에 대한 불신은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피해학생의 동의 절차와 형식, 자체 해결사안의 명료한 기준과 처리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조속히 개발해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자체해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되거나 이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또한 현재의 4가지 조건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때'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왜냐하면 학생들 간의 장난으로 한 것이 학교폭력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고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하며 또한 피·가해학생들간에는 화해가 되어 지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부모들간의 싸움으로 변해가는 경향도 있기 때문임.

○ 또한 학교폭력은 초등학교에서는 대부분 지속적인 경우가 많으며 명확한 증거가 없는 따돌림의 경우는 지속적이지 않은 사건이 없는데 사실상 자체해결인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도를 시행할 때, ① 경미함을 판단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피해학생 측이 되어야 하며, ② 피해학생의 동의가 전제된 학교장 자체해결제도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하며, ③ 동의서의 양식 마련 필요하며, 동의서에는 재발발생 시 해당 사건을 포함하여 자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할 필요가 있으며, ④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도 기준 외에도 양 측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자치위원회를 원치 않을 경우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도 활용에 대한 예외 규정 마련 필요하며, ⑤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도에 대해 모르는 학부모들이 여전히 압도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을 위해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 새롭게 도입된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원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연수를 시행 할 필요가 있음. 학교급이나 학교폭력 유형 등을 고려한 맞춤형 찾아가는 학교폭력 역량강화를 위해 연수나 워크숍 등을 시행하고 학교의 상담역량강화를 위해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의 상담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시행하교 상호간 역할 분담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3)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을 위한 적극적 홍보 및 모니터링 실시

○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및 각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의 남용을 위해 부적절한 학교의 대응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 학교운영 특성상 주의의무가 강조되는 학교의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해 학교폭력이 은폐·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을 통해 학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2) 법제 정비

○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기준은 매우 구체적인 기준제시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내용 규정 필요함.

| 현행 | 개선안 |
|---|---|
|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br>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br>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br>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br>3. 신설<br>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br>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br>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br>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br>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br>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br>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br>3. 신체·정신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br>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br>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br>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br>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현행 | 개선안 |
| --- | --- |
|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br>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br>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본조신설 2019. 8. 20.] |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br>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br>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본조신설 2019. 8. 20.] |

## 3.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에 대한 행정심판 일원화에 대한 정보제공

### 1) 개선방안

#### (1) 학교폭력 행정심판절차 일원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

○ 기존에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의 재심기관이 지역위원회와 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재심기관을 최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대한 개정으로 재심제도를 폐지하였으며, 피·가해학생 모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심판이 일원화 되었음. 사실 그동안 학교폭력 재심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재심결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었음.

○ 최근 개정으로 재심절차가 폐지되고 당연한 결과로서 행정심판절차가 일원화된 것은 다행이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피·가해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이러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 사실 실태조사에 의하면 피·가해학생과 학부모들이 불복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최근 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2) 행정심판 기간 3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내용 규정

○ 행정심판절차 일원화에 따라 행정심판에 많은 사건이 접수될 텐데 이에 따른 행정력이나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심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에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임. 그러므로 행정심판절차의 일원화로 인해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도모하려면 행정심판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심판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 행정력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이는 행정심판 결정기간이 길어지면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력, 행정력, 예산, 공간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함.

## 2) 법제 정비

○ 행정심판을 일원화함에 따라 이 기간이 길어지면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현재도 서울, 경기의 경우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행정심판 청구시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고 이에 따른 인력지원 및 예산지원 등을 행할 필요가 있음.

| 현행 | 개선안 |
|---|---|
|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br>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br>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br>④ 신설<br>④ 삭제 〈2019. 8. 20.〉<br>⑤ 삭제 〈2019. 8. 20.〉<br>⑥ 삭제 〈2019. 8. 20.〉<br>[본조신설 2012. 1. 26.]<br>[제목개정 2019. 8. 20.] |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br>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br>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다만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2019. 8. 20.〉<br>④ 학교폭력사건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br>④ -⑥ 생략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4.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의 보존·삭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

### 1) 개선방안

#### (1)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범위 확대 필요

○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대상자 대부분은 현재의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보존이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에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학교 현장에서 가해학생의 선도와 변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보여짐. 이러한 조치는 가해학생의 생기부 기재로 인해 재심청구도 많이 생기는 등 그리고 학교가 처벌이 아닌 교육적, 회복적 역할을 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함.

○ 한편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피해학생들은 생기부 기재를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으므로 이러한 개정에 대해 피해학생도 가해학생도 서로 불만이 줄이면서 시행해 나가야 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대해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면 학생생활기록부의 기재내용에서 동 조항 제1항제2호 학적사항을 기재시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 및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는 그 내용을 기재하고, 제1항제3호 출결사항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사항에 따른 것일 경우 그 내용 기재하고 제1항제6호에 의하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 학교폭력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그리고 제7호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도 적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 또한 제21조제2항에 의하면 학교폭력으로 인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등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가해학생이 동일 학교급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초등학생의 경우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생기부에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음. 다만 해당 학생이 동일 학교급에서(초등학생의 경우 3년 내)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항에 따라 적지 않은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7호인 학급교체가 생기부 기재유보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봄.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 하에서도 7호인 학급교체의 경우에 졸업직후에 삭제할 수 있도록 시행한 적이 있음. 한편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기준으로 0~4점까지 점수를 주는데. 가해학생 조치 1~3호 조치의 경우, 3호 조치가 최대 6점에 해당하며, 7호인 학급교체의 경우 13~15점에 해당하는데 1~3호 조치와 함께 7호 조치가 기재유보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학급교체 조치가 학교 내 조치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 법 시행령에서 생기부 기재유보에 제7호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2) 가해학생 일부 선도조치 기재 유보 방안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심의위의 역할 중요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의 1~3호의 생기부 기재를 유보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학생(53.4%)과 학부모 및 관계자(66.0%)에서 과반이 넘게 나타났으므로. 학교폭력사건에 대해 무조건적인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보다는 학생간 화해와 관계회복을 통한 학교폭력사건 처리를 희망하는 의견이 적지 않음을 보여줌. 피해학생 부모의 58.3%도 단계별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유보 방안이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한 결과도 이를 반영해 주고 있음.

○ 사실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기 전의 자치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가 부족한 운영구조에서는 1~3호 조치 결정을 통한 학생생활기록부의 기재 유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음. 즉 가해학생 조치 중 1-3호 조치는 1회에 한해 생기부에 기재를 유보하되 재학기간 중에 추가적인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는 이전에 기재 유보된 조치도 함께 생기부에 기재하도록 하였음. 이에 대한 시행령 예고 내용을 의하면 생기부 기재 유보 조치의 유효기간은 동일 학교급 내로 하되 초등학생의 경우는 중·고등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치일로부터 3년을 유효기간으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가해학생 일부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유보의 조속한 정착과 수용을 위해서는 향후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할 심의위원회가 중립성, 투명성, 전문성과 관련해 학교폭력 당사자 및 구성원의 신뢰를 얻는 일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2) 법제 정비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서 학교폭력 선도조치 사항을 생기부에 기재를 유보하는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행 | 개정안 |
|---|---|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br>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br>① 생략<br>② 제1항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가해학생이 동일 학교급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초등학교의 경우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적지 않는다.<br>③-⑥ 생략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br>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br>① 생략<br>② 제1항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제7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가해학생이 동일 학교급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초등학교의 경우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제7호의 조치사항을 적지 않는다.<br>③-⑥ 생략 |

## 5. 전담기구의 위원의 전문성 강화

### 1) 개선방안

#### (1) 전담기구 구성원에 학교폭력 전문가 포함

○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에 따르면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이 피해사실 및 가해사실 여부를 확인하게끔 되어 있으나, 실제 학교에서는 소속교원(책임교사) 1명이 모든 피해사실과 가해사실 확인 및 조사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책임교사의 열정과 성실성에 따라 사실관계 파악이 크게 달라짐. 현장을 보며 이러한 부분의 개선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꼈음.

○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면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경미한 사안인지 여부)를 전담기구가 심의하고, 그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그리고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의 학부모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전담기구가 심의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자치위원회와 달리 사안의 경중을 판단할 때 보다 전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학교폭력담당경찰관 및 변호사)가 구성원에서 제외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며, 최소한 1명의 전문가는 포함되어야 함.

(2) 전담기구 구성원인 학부모의 전문성 강화

○ 전담기구가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됨으로서 개정 전의 자치위원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임. 따라서 전담기구의 구성원의 전문역량강화는 매우 필요함. 왜냐하면 개정 전의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학부모의 비전문성이 문제점으로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임.

○ 전담기구 구성원의 학부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이해교육, 학교폭력 예방법, 학교폭력 사건 처리절차, 회복적 사법 등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을 필수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이수해야 구성원의 자격을 얻도록 하여야 함. 또한 전담기구 구성원들도 자신들의 시간을 내어 전담기구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경비가 지원되어야 하므로 예산을 책정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전문가 내지 전문교사 양성이 필요하며, 과목교사 또는 학교보안관처럼 각 학교별 상주하는 학교폭력 전담 교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학교폭력 전담교사 양성이 어렵다면 교육지원청에 전문가 풀을 마련하여 학교폭력 발생 학교에 전문가를 투입하여 전담기구의 공정성, 전문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2) 법제 정비

○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전담기구의 역할이 중요해짐. 따라서 전담기구 구성원에 학교폭력담당경찰관, 변호사 등 전문가 등이 적어도 1명은 포함되어야 할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br>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br>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현행 | 개정안 |
| --- | --- |
|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br>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br>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br>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br>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학교폭력 전문가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

## 6. 학교폭력 관련 문서의 관리 강화

### 1) 개선방안

#### (1) 학교폭력 관련 문서관리 강화 방안 마련

-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와 심의에 중요한 자료인 관련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는 것은 중요함. 이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공정한 처리도모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임.
- 현재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률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등에 전담기구의 초사기록을 보존하고 조사결과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등이 작성한 진술서는 전담기구 사안조사에서 생성되는 자료이므로 회의록에 포함되어 관리되는 자료는 아니므로 이를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경기고등학교 사건인 대법원 판례(2010. 6. 10. 선고, 2010두2913)에서도 문제되었던 근거 법률임.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일선 학교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에서 수사나 재판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관련 자료를 요

청할 경우 그 요청하는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원법상 법령준수의무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어떤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위와 같은 수사나 재판상 학교폭력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문서를 제출할 수 있게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이므로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또한 회의록에 대한 정밀하고 세밀한 작성과 보관이 필요하며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상 자치위원회 회의록은 대부분 요약, 생략되어 있고 심지어 왜곡하여 기술된 경우들도 볼 수 있으며,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록의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한 건당 1 내지 1.5페이지에 불과하다거나 심지어 어떤 지역은 일괄 비공개 처리해버려서 회의록 확보가 불가능 한 경우도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처럼 운영되지 않게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비롯한 문서 관리 강화가 필요함.

○ 이러한 문제로 인해 자료분실 및 파기 등의 사건일 발생하고 있으므로 학교장에게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에 관해 확인한 사항을 기록 보전하고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학교폭력 관련 문서의 체계적인 관리, 분실로 인한 소모적인 분쟁방지, 공정한 처리도모 등을 고려할 때 문서관리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2) 법제 정비

○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교폭력 진술서, 회의록 등은 관련문서 등은 해당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함. 학교폭력에 대한 자료의 기록 및 보존에 대한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 | 개정안 |
|---|---|
|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br>①- ③ 생략<br>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br>①- ③ 생략<br>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현행 | 개정안 |
| --- | --- |
|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신설 2019. 8. 20.〉<br>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br>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 5. 8., 2012. 3. 21., 2019. 8. 20.〉<br>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2. 3. 21., 2019. 8. 20.〉<br>⑧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br>⑨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가해 및 피해 사실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록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br>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br>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 5. 8., 2012. 3. 21., 2019. 8. 20.〉<br>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2. 3. 21., 2019. 8. 20.〉<br>⑧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br>⑨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

## 7.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 1) 개선방안

#### (1) 피해학생에 대한 초기상담 활성화

○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초기상담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현재 피해학생 전문지원 및 상담, 사후관리 등을 위한 Wee클래스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학교폭력 2차 피해 및 보복폭력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책을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신체적, 정서적 회복과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학교와 집 등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 우선 교내 상담시 학교폭력에 대해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지역의 Wee센터, 병원형 Wee센터, Wee닥터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상담을 필요로 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함.
- ○ 초기상담을 활성화 및 교내 상담 시 학교폭력에 대해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Wee센터 등에 대한 역할의 확대뿐만 아니라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한 분리 및 지원이 필요함. 현재 Wee센터나 Wee클래스가 학교부적응, 위기청소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피해학생의 심리적 특성상 분리하여 보호 및 치유를 위한 회복적 접근이 필요함.

### (2) 피해학생 2차 피해 예방

-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지속적인 상담 및 관리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 및 학급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강화가 필요함.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반인 경우 담임 및 교과교사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에게도 학교폭력피해 이후 징후를 관찰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다각적인 지원이 요구됨.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전담기관 중 일시보호 기관을 확대하고 학교 안에 피해학생이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학습권이 보장될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함. 현재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인 해맑음센터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여 피해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 회복과 안정을 회복하도록 다면적이고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함.
-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수준이 아니라 심의위원회 진행 시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피해학생 회복을 위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안내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의 안내뿐만 아니라 단위 학교별 피해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정보제공에 대한 의무사항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3) 피해학생 치유 및 지원 확대

○ 피해학생의 치유 및 지원을 위해 현재 안전공제회 등 선치료비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보상 수준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임.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는 안전공제회에 대해 알고 있다는 43.5%, 모르겠다는 56.5%로 모르겠다가 더 높게 나타남. 따라서 학교폭력 발생시 안전공제회 등에 대한 정보 등도 제공이 되어야 하며 공제회 지급대상 범위를 피해로 발생하는 치료비 외에 부대비용도 포함하도록 하고 학교폭력 발생시 피해학생 부모들도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므로 이들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지원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치료비 지급기한을 현행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지급상한액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학교폭력피해 경험은 피해학생들에게 일생동안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 지급기한 연장은 반드시 필요함.

### (4) 피·가해학생을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 피해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률자문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피해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여건에 따라 장·단기적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을 확충하고 피해유형 및 필요한 지원 특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화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을 하여야 함. 즉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력을 통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 상황별, 상태별 전문적이고 신속한 개입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시·도교육청, 지역의 민간단체간에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정보접근성을 보장하여 피해학생과 그 가족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항상 정책을 만들 때 피·가해학생 및 피·가해가족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정책에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정부, 지자체, 교육청, 민간단체,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및 학부모가 함께 논의하는 모니터링 및 소통체계가 형성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정기적으로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및 그 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 도입도 필요함. 특히 제도 시행 초기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피·가해학생측, 심의위원,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의견을 청취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8.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등을 위한 전문시스템 구축

### 1) 개선방안

#### (1)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전문기관 설치

- 효율적인 화해·분쟁조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폭력사건 처리의 단계별로 화해·분쟁조정의 방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 또한 학교폭력사건의 발생초기부터 중재전문기관에서 파견된 외부전문가의 도움과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마련이 필요함.
- 현행법에서 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에 설치되고 여기서 학교폭력사안을 다루면서 더욱 필요하다고 봄. 왜냐하면 많은 사안을 심의위원회가 다룰 경우 심의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형식적으로 심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교와 심의위원회 사이에 학교폭력 화해나 분쟁조정을 위한 전문기관이 설치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임.
- 학생들의 90.7%가 업무담당자들도 50% 이상이 중재기관이 필요성을 주장했고 특히 법적 소송이나 치료비 요구 등의 분쟁해결 등을 위해서는 중재전문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0%를 넘어선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음.
- 이는 학교폭력 피·가해학생들이 받는 조치가 학부모의 경제력으로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적인 기관으로 화해나 분쟁조정 전문기관 설치도 필요하다고 봄.
- 현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에 의하면 동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심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위원회의 의결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음.
- 또한 소위원회의 위원은 5-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이 1/3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심의위원회의 일을 분산하기 위한 것이므로 권역별로 중재전문기관의 위탁·선정을 통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학교현장에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는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아울러 학교장, 교감, 학교폭력 담당교사 등 학교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화해·분쟁조정 지침안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학교현장에서의 조기개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 전담교원의 전문성 강화 필요

○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 내에서 공정한 업무분장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교원이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재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업무가 복잡하고 힘들어 초임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어서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학교폭력 업무담당 교원들의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한 기회를 확대하여 학교업무 담당 전 집중 연수를 시행하고, 학교폭력 전담교원간 워크숍이나 학습공동체 형성 등을 통해 전담교원에 대한 역량을 개발하여야 할 것임. 또한 이는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학교폭력 전담교원의 수업시수 등을 경감시키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교육청 등은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하여야 할 것임.

## 9. 학교폭력에 대한 회복적 사법 시스템 구축

### 1) 개선방안

(1) 학교폭력사안을 처벌보다는 교육차원에서 해결

○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대체로 응보적 관점에서 진행되었음.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만큼 가해학생에게도 '징계'라는 피해를 주어 균형을 맞추고자 한 것임. 하지만 이는 피해학생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했고, 가해학생에게 본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우게 하기에도 부족했음.

○ 이러한 사안처리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가해학생의 관계회복을 전제로 하는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이 법제화되었음. 학교폭력예방법은 일반 형사법과는 달리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더 나아가 두 학생의 갈등을 조정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었으므로 늦었지만 매우 환영할만한 일임. 관계회복이 전제되지 않는 한 재발방지라는 피해학생의 안전은 담보되기 힘들기 때문임.

○ 회복적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이 범죄라는 지금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함. 학교폭력을 미성숙한 학생 간의 갈등에서 기인한 관계적 문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bullying)와 범죄(School violence)로 구별을 필요가 있음. 불링은 관계회복에서 접근하고, 범죄는 형사처벌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지금 선진국은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에게 형벌권을 행사한다는 응보적 사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사회가 중심이 되는 회복적 사법으로 옮겨가고 있음.
- 회복적 사법에서 가정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이고 피해자가 당당하게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신체적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함.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했으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청소년 비행(학교폭력)부터 회복적 사법이 중요한 이유는 가해자는 사과를 하고 피해자는 사과를 받는 것이 당연한 환경에서 성장시키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런 행동습관들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임.

### (2) 회복적 사법적 차원에서의 해결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 '회복적 갈등해결'은 학교폭력 사안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이 사안이 관련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명확히 파악한 후 피해학생에게는 피해의 회복을 가해학생에게는 본인의 잘못을 직면하고 책임지게 하여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진행자가 필요함. 이에 교육부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개발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2019. 12.경(예정) 단위학교에 배포할 예정임.
- 우선 회복적 사법센터(법무부 산하기관)를 만들어서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민간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기관으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그동안의 일처리 관행을 고려할 때 관이 중심이 되면 실적 압박으로 인해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무리하게 일을 진행시킬 우려가 충분하다고 생각됨.
- 회복적 사법센터 구성원으로 가해자의 심리상태와 환경, 자책감과 반성의 정도, 피해자의 입장에 대한 사고 정도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함. 또한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가해자, 피해자 모두)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지자체 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 직원들의 참여도 필요함. 가해자가 진심 어리게 피해자에게 사과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전문가의 도움도 역시 중요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2018년부터 각 교육지원청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조정자문단을 운영하여 단위학교의 갈등조정을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들이 더해지면 학교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평화로운 갈등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피해와 관계를 회복할 힘이 길러질 것임.

○ 분명한 건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피해자 가해자가 모두가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회복적 사법제도가 응보적 사법제도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연구범위
3. 연구 방법
4. 선행연구
5. 기대효과

KOR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을 제정하고 최근 2019년 8월 20일 개정까지 포함해 24번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사건에 대처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제3차 기본계획(2015-2019)[2]을 시행하고 있다. 이 기본계획의 비전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이고 목표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이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사이버 학교폭력의 증가 등 유형의 다양화, 초등학교 학교폭력의 증가율 상승, 현행 학교폭력사건 처리 과정이나 대응 절차 등에서 학교폭력당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2차 피해, 교사의 교육적 해결의지를 약화시키고, 피해자와 가해자간 소송 증가 등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부정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생 피해 응답율(3.6%)이 중등학생 피해 응답율(0.8%)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학교폭력 유형도 언어폭력(35.6%), 집단따돌림(23.2%), 사이버 괴롭힘(8.9%) 등의 순이며 신체폭력의 비중은 2017년부터 낮아지는 추세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개최 건수는 중학교가 가장 많으나 초등학교의 위원회의 개최 건수도 50.5%로 대폭 증가해 초등학교 학교폭력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2017학년도 학교급별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중학교(15,576건), 고등학교(9,258건), 초등학교(6,159건) 순이며, 2015년 대비 증가율은 초등학교 50.5%, 중학교 32.3%, 고등학교 21.8%로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증가율이 대폭 상승하였다.[3]

자치위원회 결과에 불복하는 재심 건수는 2013년 764건에서 2017년 1,868건으로 약 245% 증가하였고, 행정심판 건수는 2013년 247건에서 2017년 643건으로 약 260% 증가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학교폭력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즉 2010년 36건, 2015년 73건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2016년까지 진정 건수는 421건이며, 이 진정사건을 대 분류하면 자치위원회 이전 47%, 관련법령과 제도관련

2) 제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05-2009)을 수립하고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통한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 및 전인적 성장도모를 목표로 하였으며,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10-2014)의 비전은 학교폭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이다.

3) 교육부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28%, 자치위원회 결정관련 15%, 자치위원회 진행과정 8%, 지치위원회 사후조치 3%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한 현황 및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우선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정책의 한계점으로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발생이 증가하고 신체폭행과 금품갈취 등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사이버 폭력,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등 정서적 폭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 둘째 다문화학생과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도 미흡한 실정이다. 교육부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장애학생 수가 2014년 147명에서 2018년 677명으로 6.4배 증가했으며,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피해응답율은 5%로 학교폭력 피해응답율 1.3%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셋째,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학교의 부담이 매우 가중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단순한 다툼이나 장난에 의한 신체접촉 등이 모두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요청되고 있어서 심의 건수가 2014년 19,521건에서 2018년 32,632건으로 증가하였다. 넷째, 학교폭력사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분쟁의 심화가 문제이다. 학교폭력사안 처리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전문성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 및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학교구성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교육적 해결의 어려움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섯째, 학교폭력 전문 상담교사의 부족문제가 대두된다. 학교폭력 전문직 상담교사는 초등학교 6,023개교에 365명(6.06%), 중학교 3,204개교에 1,303명(40.66%), 고등학교 2,341개교에 869명(37.12%)이 배치되고 있다. 학교폭력이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초등학교는 학교 수 대비 전문 상담교사 수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여섯째, 학교폭력 피해 이후 마땅한 도움이나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 후 어떤 도움이나 조치를 받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아무런 도움도 없었다"는 답변이 38.6%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께 도움과 위로를 받았다'(23.5%), '학교 선생님께 도움과 위로를 받았다'(18.3%), '가해 학생의 사과나 보상을 받았다'(9.1%), '병원 치료나 심리상담을 받았다'(3.5%) 등이 뒤를 이었다.[4)]

4) 국가인권위원회 2018 아동 인권 보고대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최근 교육부는 이러한 학교폭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결과와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함께 발표하였으며,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더욱 전문적이고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면서, 교육적 해결(학교 자체해결) 제도와 생활기록부 기재유보를 여러 단계의 안전장치를 조건으로 운영하고 피해자 관점에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어서 국회에서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고(2019년 1월 기준 총 28건), 교원단체, 학교폭력관련자 및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에서도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결과 2019. 8. 2.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8.20 공포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각 학교에 있던 자치위원회 대신에 2020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학교폭력문제를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2019년 9월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도를 도입해 피해학생·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재심절차를 폐지하고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이 조치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 처리절차를 일원화·간소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개정전 학교폭력예방법 내용을 반영하면서 학교폭력 사건처리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학교폭력 진정사건 및 판례분석을 통해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법 등의 문제점 및 한계를 검토하여 학교폭력사건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피해 학생, 가해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관련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분쟁조정의 어려움, 민·형사, 행정소송으로 인한 문제 등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인권적, 법적, 교육적, 회복적 관점에서 검토·분석하여 관련 법제의 정비 및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2. 연구 내용 및 연구범위

###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등에 대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권적, 법적, 교육적 등 다양한 시각에서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관련 법제 및 정책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제1장에서는 연구의 서론으로서 연구배경, 필요성 등에 대해 기술한다. 이에는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내용, 연구방법, 선행연구, 기대효과 등이다.

둘째, 제2장에서는 현재 학교폭력 관련 법제 현황, 판결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분석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해외사례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학교폭력 관련 국제법규 및 현행 법제 및 개정된 내용 등에 대한 분석, 학교폭력에 대한 판결례,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진정사건 등을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제3장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해외 법제 등에 대한 검토·분석을 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국제 법규를 검토하고 해외사례로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학교폭력 법제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아 우리 법제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제4장에서는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학부모,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학교폭력 사건처리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다섯째, 제5장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학생, 학부모, 업무담당자, 변호사 등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학교폭력사건 처리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여섯째, 제6장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처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를 근거로 학교폭력사건 처리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 개정안 및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2) 연구 범위

본 연구는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인권적, 법학적, 교육학적, 회복적 사법 등의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분석하여 학교폭력당사자, 학부모, 업무담당자, 현장 및 학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법제정비 및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경험이 있거나 학교폭력 경험이 있는 중·고생, 학교폭력 업무와 관련된 학교종사자, 학교폭력업무담당공무원, 학교폭력 당사자 부모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법제 및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학교폭력사건에 있어서 문제점 해결과 사회적 관심 환기 및 보다 효율적인 학교폭력예방을 하고자 한다.

**〈그림 Ⅰ-1〉 연구 내용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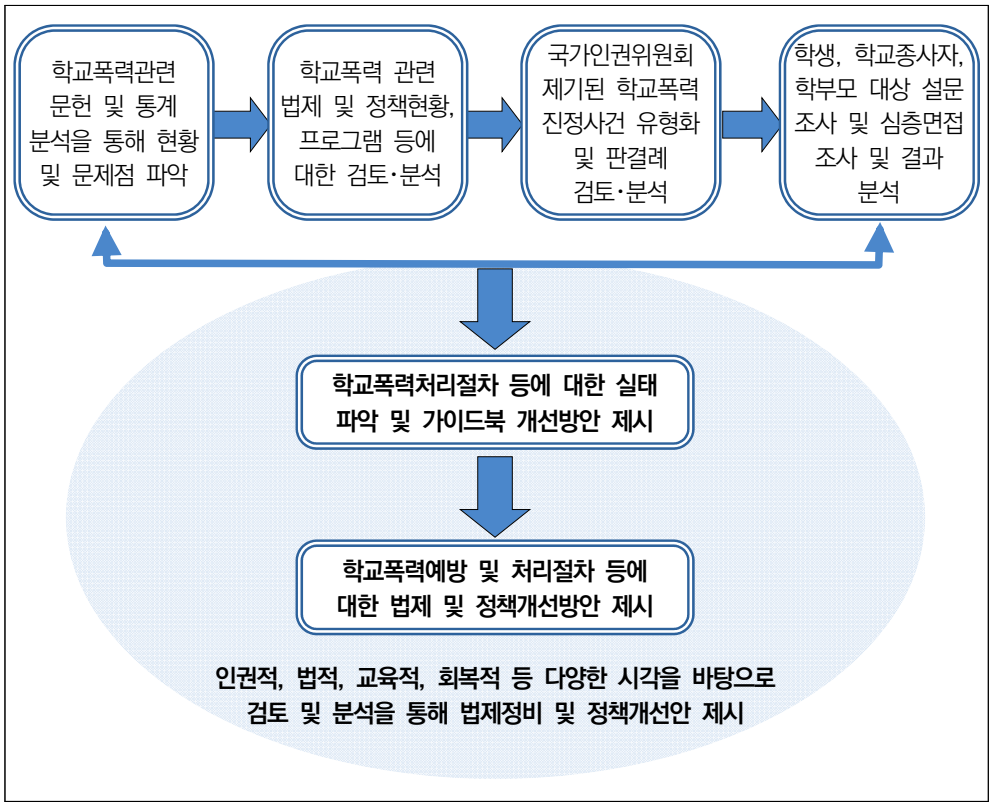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Ⅰ-2〉 연구 체계도**

| 단계 | | 주요 내용 | | |
|---|---|---|---|---|
| **연구 및 조사 설계 단계** | 문헌 및 정책 분석 | ▶ 연구계획 및 연구 방향 수립 | - 연구계획 및 연구방향 수립 | **선행연구, 실태, 정책 및 법제도 등에 대한 검토분석을 통해 연구 방향 수립** |
| | | ▶ 선행연구 및 제도 검토 및 분석 | - 선행연구, 관련 통계 검토 및 분석을 통한 문제점 파악<br>- 관련 법제도 및 정책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 |
| | | ▶ 설문조사지 개발 준비회의 | - 학교폭력 관련 설문조사를 위한 청책회의 | |
| **조사 및 분석 단계** | 조사 연구 및 분석 | ▶ 학교폭력 관련 법제 검토 및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검토<br>▶ 해외사례 검토 | - 현행 법률 검토 분석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건 및 판례 검토분석<br>-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학교폭력 법제 분석 | **현행 학교폭력 사건처리 절차 및 과정에 대한 실태조사, 심층면접 등에 대한 결과분석을 통해 현황과 문제점파악,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시사점 도출** |
| | | ▶ 학생, 학교종사자(공무원 포함),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 | - 설문조사지 대한 Pre-Test 실시. 표본 설정에 따른 지역별, 학급별, 성별, 학교폭력 유형별 등을 고려하여 설문조사 실시<br>-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현황 파악 및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 |
| | | ▶ 학생, 학교종사자(업무담당공무원 포함), 학부모 등에 대한 심층면접 실시 및 결과분석 | -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 여 심층면접 실시 및 결과분석을 통해 학교폭력사건처리에 대한 개선방안 발굴 | |
| | | ▶ 법제 및 정책개선 방안 발굴을 위한 TFT운영 | - 학교폭력 사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
| **법제도 및 정책적 대응 방안 도출 단계** | 법제 및 정책 개선 방안 | ▶ 학교폭력 사건처리절차에 대한 법제 및 정책개선방안 마련 | - 학교폭력 사건 처리과정 관련 법제정비 및 개선정책 방안 제시 | **학교폭력 사건처리 절차 및 과정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정책개선 방안 제시**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3. 연구 방법

## 1) 문헌 연구 및 통계 분석

○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보고서, 논문, 행정문건 등 관련 선행연구 검토분석, 학교폭력 관련 국내외 법률, 지침 등 관련 법규, 정책, 학교폭력 관련 판결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및 진정 등에 대한 검토·분석함.

○ 학교폭력 관련 해외사례로 관련 국제법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검토·분석함.

○ 교육부의 2019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각종 연구보고서 등 관련 통계 등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현황 및 실태 검토·분석함.

## 2) 실태조사

### (1) 사전정책회의 및 설문지 개발 및 Pre-Test

○ 설문조사지 개발을 위해 학생, 학교종사자, 학부모, 현장 및 학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방안제시 등을 위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정책회의 실시 및 설문지 Pre-Test 실시함.

### (2) 설문조사

#### 가. 조사 방법

○ 설문조사의 객관성, 전문성, 정확도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청,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기관과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학교폭력피해 학생보호전담기관, 마을변호사, 학교폭력 관련활동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설문조사 대상자를 확보함.

○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의 실태 및 개선방안 등을 발굴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고 실태조사 시 연구진 등이 참여하여 정확성 등을 확보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대상자 선정은 지역별, 학교급별,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함.

### 나. 조사 대상자 수

○ 학교폭력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많은 학생 450명을 계획했으나 최종적으로는 474명을 함.

○ 학교폭력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포함해, 학교폭력을 목격했거나 관심이 많은 학생 학교폭력 업무 관련자 등 60명, 학부모는 100명을 계획했는데 피해학생 학부모 96명, 일반학부모 169명을 했으며, 이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참교육학부모회, 정치하는 엄마들, 스쿨미투지지시민모임 등에서 학교폭력업무 등에 참여하는 학부모가 포함되어 있어서 교육청 업무관계자, 변호사 등 41명을 합치면 306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다. 조사 내용

○ 설문조사는 조사대상별로 아래의 내용을 중점으로 실시하고자 함.

- 학생 : 학교폭력 유형, 학교처리절차 및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및 부정적 경험, 학교폭력사건 처리과정에서의 2차 피해, 처리과정에서 피해 또는 가해학생으로서의 어려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회복적 관계, 자치위원회 조치에 대한 재심 및 불복절차문제, 학교폭력예방교육의 현황 및 효과,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 기재문제, 학교폭력처리절차 및 과정에 대한 개선의견 등
- 학교종사자(교원 등), 학교폭력전문가 : 학교폭력 정의 및 범위 등 학교폭력예방법상의 문제점,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생폭력 처리절차에서 교권침해 문제, 사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학교폭력사건의 교육적 해결방안,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 및 불복절차문제, 분쟁조정에서의 어려움,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 기재문제, 학교폭력예방법 법제 정비 및 사건처리 개선에 대한 의견 등
- 학부모 : 학교폭력 정의 및 범위 등 학교폭력예방법상의 문제점,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생폭력처리절차 및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부정적 경험, 학교폭력사건의 조정의 어려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 및 불복절차문제, 학교폭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력예방교육,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 기재, 학교폭력예방법 법제 정비 및 사건 처리에 대한 개선의견 등임.

### 3) 심층면접

#### (1) 조사 대상

○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처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등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 및 의견 반영을 위해 최근 학교폭력 등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 학생, 학교종사자, 학부모, 학교폭력현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등을 실시함.

#### (2) 조사 내용

○ 학교폭력 정의 및 범위,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학교폭력예방법 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학생폭력처리절차 및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학교폭력사건 처리과정에서의 관련 당사자들 간의 분쟁조정에서 나타는 어려움 및 해결방안,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환경조성을 위한 방안,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 및 불복절차문제, 학교폭력예방교육,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법제정비 및 사건처리 개선에 대한 의견 등임.

#### (3) 조사 대상자 수

○ 학생폭력관련 경험이 있는 학생, 학교종사자, 업무담당자, 학부모, 현장전문가 등 4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인터뷰를 통해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고자 계획했음.

○ 심층인터뷰 결과 피·가해 학생 6명, 피·가해학부모 10명, 학교폭력 활동을 하는 현장전문가 10명, 변호사, 장학사 등 업무담당자 10명 등 46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음.

### 4) TFT 운영

○ 학교폭력관련 법제, 처리절차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학, 사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계전문가와 현장전문가 등 12명으로 TFT를 구성하여 인권적, 교육학적. 회복적 사법 등의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실천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5) 전문가 자문회의

- ○ 연구단계별로 연구진행에 대해 현장 및 학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 ○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학교폭력 사건처리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등에서 나타난 학교폭력사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정책과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이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추진과제를 도출함.

## 4. 선행연구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초기 연구는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유형을 규명하고 발생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통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촉구하려는 데에 그 기본 방향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전체적인 맥락을 조망하는 효율적인 예방방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고 여러 차례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그 이후의 연구들은 대부분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는 방향[5]에서 진행되었다.

5) 원혜욱(200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제7호, 한국소년정책학회, 157면-190면; 이진국(200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체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입법정책」 제1권 제1호, 한국입법정책학회; 정한중(200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희법학」 제44권 제1호,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 김현철(2010),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시론적 고찰-”, 법교육연구 제5권 제1호, 한국법교육학회 ; 박찬걸(2010), “학교폭력대책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소년보호연구」 제15호, 한국소년정책학회; 이종근(2012),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법제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제61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권오걸(20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문제점”, 「법학논고」 제43권,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용식(2015), “학교폭력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소년정책학회, 87면-120면; 김희균(2016),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소년보호연구」 제29권 제1호, 한국소년정책학회, 61면-94면 참조 ; 조성규(20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법적 문제”, 「행정법연구」 제56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29면-256면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최근 연구는 학교폭력의 실질적 예방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폭력예방법의 올바른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제도의 정비·개선을 제안하려는 데에 집중되어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개선안으로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계성과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조·제고하고자 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나아가 갈등과 분쟁의 실효적 해결을 위하여 학교폭력사건 처리에 있어서 회복적 정의를 중점 가치로 도입하려는 연구의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먼저 학교폭력사건의 각 학교내 대응체계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로는 김순양·손능수(2015)의 "일선 학교현장에서의 학교폭력 대응체계 분석 및 정책적 제언"을 들 수 있다. 즉,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학교폭력의 실태와 문제점을 행정체계, 인력, 프로그램 현황 이렇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심층 분석하고, 학교폭력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교현장의 원스톱 허브(hub)체계의 구축, 통합정보관리 및 신고체계의 확립, 담당인력의 전문성 확보,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의 적실성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6)]

학교폭력 문제 중 특히 자치위원회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요한 논점 중 하나가 자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의 확보방안인데 이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는 이미 다수 진행된 바 있다. 먼저 신강숙(2014)은 "행정심판 사례를 통하여 본 학교폭력예방법 고찰"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기구로 자치위원회를 두되 이 자치위원회에 대하여 심의기능 외에 결정 및 처분의 권한도 부여하여야 하며, 학교폭력사건의 객관적 처리를 위해 학교가 아닌 시·군·구별로 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그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 구성시 판사·검사·변호사중 2인 이상, 해당 학교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1인 이상, 학생생활지도 경력 5년 이상인 교원 2인 이상, 청소년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5년 이상 청소년보호활동을 담당한 전문인 2인 이상을 두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7)] 또한 조성범(2017)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해부한다"에서 역시 현행 자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 구성을 교원, 학부모, 지

6) 김순양·손능수(2015), "일선학교현장에서의 학교폭력 대응체계 분석 및 정책적 제언", 「한국정책과학 학회보」 제19권 제4호, 한국정책과학학회, 241-271면 참조.
7) 신강숙(2014), "행정심판 사례를 통하여 본 학교폭력예방법 고찰" 「강원법학」 제41권 제2호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647면-686면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역사회 인사 및 전문가 등 3자의 비율을 비슷하게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8] 자치위원회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하윤수(2018)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해외 사례들을 예시하여 우리와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현재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한 법률규정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할 것과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장이 종결토록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9]

종전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재심제도의 이원화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먼저 이현정(2017)의 “학교폭력 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기준 고시를 중심으로”에서는 자치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로 자치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가해학생에 대해 내려질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과 동시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에 대한 관할기관이 서로 상이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학교폭력 조치의 재심을 지역위원회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하고, 또한 가해학생도 전학·퇴학 조치뿐만 아니라 모든 조치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심절차에서 피해학생·가해학생 측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며,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10] 역시 재심기구 이원화와 관련하여 김정연(2017)은 “판결 및 불복절차 사례를 통해 본 학교폭력예방법의 비판적 고찰”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하나의 조치를 두고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재심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문제제기 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무상 재심절차를 병합하여 진행하거나 또는 재심담당 기관을 일원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학생, 즉 가해학생의 재심절차의 경우 피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의 재심절차의 경우 가해학생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도 제안하였다.[11] 그 외에 박주형(2012)의 “학교폭력예방법과 동 법 시행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도 재

8) 조성범(2017),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해부한다”, 「우리교육」 2017 가을호, 우리교육, 46면-55면 참조.
9) 하윤수(2018),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아법학」 제78권,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405면-429면 참조.
10) 이현정(2017), “학교폭력의 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기준 고시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8권 제3호, 미국헌법학회, 215면-251면 참조.
11) 김정연(2017), “판결 및 불복절차 사례를 통해 본 학교폭력예방법의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49면-175면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즉 신속한 재심결정으로 학교현장의 조기 안정화를 꾀하고 재심과정에서의 진술기회를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불만을 최소화하고, 법 규정을 명확히 개정하여 입법적 불비를 해소하고, 재심과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재심기구의 전문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교육지원청에 일원화된 재심기구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일원화된 재심절차를 위해서는 현행 '학생징계조정위원회'를 '학생소청심사위원회'로 변경하되 전학과 퇴학만을 다루던 것을 학교폭력 사안 및 학생징계사안을 모두 다루게 하는 방법과 '학교폭력재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현재 지역위원회에서 담당하던 피해자 재심도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12] 이러한 문제제기는 한재경(2018)의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 처리절차에 관한 고찰"에서도 계속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운영되고 있다는 점과 자치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재심기구의 이원화가 교실공동체의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한 뒤, 그 개선방안으로 경미한 학교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 이전 단계인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조정기간을 통해 사안을 종결할 것과, 자치위원회를 지금처럼 일선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것, 그리고 조치결정에 대한 피해학생·가해학생의 재심기구가 이원화되지 않도록 교육청 내에 통일된 재심기구를 설치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13]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중앙부처간 행정체계의 통합 및 연계성 제고를 강조하면서 박헌국(2018)은 "학교폭력 예방대책 운영현황과 연계체계 분석"에서 여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국무총리실 소속 자치위원회로 하여금 중앙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게 하여 부처간 학교폭력예방대책을 평가하고 관련 예산지원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과 또한 광역시·도 단위 뿐 아니라 기초 자치 시·군·구 단위의 학교폭력관련 기관 간에도 연계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어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주도적으로 예방 프로그램을 선정·운영하고 각 기관과 지역사회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의 허브(hub)

12) 박주형·정제영외(2012), "학교폭력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육행정연구」, 제30권 제4호, 303면-323면 참조.
13) 한재경(2018),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처리절차에 관한 고찰", 「공공사회연구」 제8권 제1호, 한국공공사회학회, 131면-161면 참조.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14]

최근 연구의 핵심방향은 회복적 정의를 학교폭력사건 처리의 중점 가치로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데에 있는데 이를 검토 제안하고 있는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유진·이창훈·강지명(2014)의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에서는 가해학생의 반성을 통해 피해학생을 치유하며 피해학생의 용서를 통하여 가해학생을 치료하고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피해회복과 관계복원을 꾀할 수 있는 회복적 해결모형을 개발하여 이를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모형의 도입방안을 학교와 사법기관 두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였고, 그 외 지원체계 구축방안 등도 두루 제안하였다.[15] 또한 장다혜·김정연 외(2016)의 "공동체 규범 및 분쟁해결 절차와 회복적 실현방안(I) -학교폭력 규범 및 분쟁해결 절차"에서는 학교폭력이라는 기제를 통해, 현재 우리사회에서 공동체의 규범과 분쟁해결 절차가 현재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범이 피해회복과 공동체 복원을 위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회복적 사법에 기초한 형사정책적 관점을 공동체 규범절차에 적용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 간의 갈등과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였다.[16] 국가인권위원회(2016)는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의 분쟁완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행 학교폭력사건 처리상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도모한 바 있는데[17] 이 토론회에서 박숙영(2016)은 형사법적 절차에 의한 처벌 중심으로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피해회복과 관계회복 중심으로 변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학교폭력예방법이 그 취지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소년법과 일반 형사법과는 별도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과 절차면에서는 소년법과 일반 형사법의 형사처벌적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의 교육적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적 방식과 구

14) 박헌국(2018), "학교폭력예방대책 운영 현황과 연계체계분석", 「한국경찰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경찰학회, 113면-150면 참조

15) 이유진·이창훈, 강지명외(2014)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면-341면 참조 ; 이유진(2015)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모형개발연구", 「소년보호연구」 제28권 제4호, 한국소년정책학회, 169면-207면 참조.

16) 장다혜·김정연·강지명외(2016), "공동체규범 및 분쟁해결절차와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안(I)",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면-454면 참조.

17) 국가인권위원회(2016), 「학교폭력처리과정에서의 분쟁 완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별되는 조정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그 예로 피해와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가 참여하는 방식인 회복적 정의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교폭력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회복적 서클제도인데 이러한 회복적 대화모임을 통해 공동체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며 가해학생의 경우도 친밀감을 형성하고 자기성찰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회복 과정은 다음과 같다. 즉 먼저 ① 당사자와 공동체에서 발생한 피해조사를 통해 피해 확인을 하고, ② 당사자와 공동체가 참여한 회복적 서클(대화모임)을 통해 해법을 탐색하고, ③ 당사자와 공동체가 피해 회복과 책임을 짐으로써, ④ 공동체가 재통합될 수 있다고 보았다.[18]

그 외에도 윤태현(2017)의 "회복적 정의를 통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의 발전방안 연구"에서는 회복적 정의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러한 회복적 정의에 근거한 것으로 조정 프로그램, 가족협의 프로그램, 서클 프로그램을 설명·제안하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중심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9] 전종익·정상우(2013)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선 방안 연구 : 교육과 예방 및 회복기능을 중심으로"와 장규원(2014) 학교문제와 회복적 정의모델에 대한 고찰"[20], 그리고 이성기(2017) "학교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회복적 사법이념을 반영한 학생규칙 제정을 중심으로-", 이인곤(2018)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으로서 회복적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21] 등 많은 연구논문들에서도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방안으로 회복적 이념에 따른 방안 강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에 중점을 두어 전문적인 상담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로 도중진(2016)의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제고 실효화 방안"에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운데 '심리상담 및 조언'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 배

18) 박숙영(2016),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대처, 어떻게 가능한가?", 「학교폭력처리과정에서의 분쟁 완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63면-73면 참조.
19) 윤태현(2017) "회복적 정의를 통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의 발전방안 연구", 「소년보호연구」 제30권 제2호, 한국소년정책학회, 89면-123면 참조.
20) 전종익·정상우(20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연구 : 교육과 예방 및 회복기능을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대한교육법학회, 205면-229면 ; 장규원(2014), "학교문제와 회복적 정의 모델에 대한 고찰", 「소년보호연구」 제26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71면-195면 참조.
21) 이성기(2017), "학교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회복적 사법이념을 반영한 학생규칙제정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41권 제3호,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연구소,; 이인곤(20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으로서 회복적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6권 제3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53-292면 참조.

KOR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치된 전문상담 교사가 부족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인 전문적인 상담을 시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비판하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가운데 중학생의 비율이 약 3/4 정도임을 감안할 때 중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사를 우선 배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2] 그 외 장사형·김광수(2016)의 "학교폭력문제 대응에 대한 교육적 고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운영을 중심으로"에서는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육기관이 각 교육지원청 산하의 'Wee센터'와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주로 지정됨에 따라 가해학생의 특성에 맞는 전문교육을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 대하여 부과된 특별교육의 경우 이행해야 할 교육의 기간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성과 사회성 증진에 중점을 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야 하며, 또한 피해학생에 대하여도 학교폭력 상황에서 취해야 하는 근본적인 대응방법이나 친구집단 내에서의 관계성을 이해시키고 이에 적응하기 위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위기적 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가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3] 또한 김지혜·신효정(2018)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개선 및 상담 개입 방안에 대한 고찰"에서는 2018년 4월 기준 '학교별 Wee클래스 설치 및 전문 상담교사 배치 현황'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Wee클래스 설치율이 현저히 낮으며, 상담 건수는 가장 높은 반면에 전문적으로 대응해서 이를 해결하여야 할 전문인력의 확보는 오히려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에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상담할 전문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있어 결과중심의 단편적 접근방법에 중점을 두고 실무상으로는 사법처리 중심으로 이를 처리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그 개선방안으로 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학교폭력사안의 처리와 그 예방을 위한 교육적 조정,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개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외 상담심리 관점에서의 전문적인 상황 파악 및 진단, 2차 심리지원 및 치료 연계에 효과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상담심리 전문가를 교육청 단위의 자치위원회에 투입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조기 개입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일부 교육청에서 시행

22) 도중진(2016),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제고 실효화방안", 「피해자학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35면-260면 참조.
23) 장사형·김광수(2016) "학교교육문제 대응에 대한 교육적 고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운영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제60집 한국교육철학회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하는 '학교폭력 갈등조정 자문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24]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해 내려지는 조치들이 그 선도와 교육면에서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과 함께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문영희(2014)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비판적 검토"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유형별로 비판하고 그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① 서면사과는 경미한 폭력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침해가 가벼운 때에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향후 민·형사절차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도록 이를 법문에서 명시해야 하고, ②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와 심리치료를 필수적인 조치로 변경, 이를 다른 처분에 부가하여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사법절차에서의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의 사유로 규정하는 조항을 도입하고, ③ 사회봉사의 경우, 봉사기관이나 그 내용은 물론, 기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고, ④ 출석정지의 경우 구체적인 정지기간을 명시하는 규정 등, 그 세부적 기준을 시행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마련하여야 하고, ⑤ 퇴학처분의 경우 대안학교에의 위탁을 통해 학교 교육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등이 있다. 그 외 가해학생의 퇴학처분의 중간단계로서 대안학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법문에 명시하여 퇴학처분 자체를 억제하는 한편, 가해학생에게 일반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25]

이승현·정제영·강태훈(2014)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 정책의 효과성 분석 연구"에서는 실제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측은 생활기록부 기재를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행정심판이 인용되는 사례가 적으며 피해자와 가해자 측이 서로 각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에 그 절차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잘 아는 학부모들이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함으로써 조치를 무력화 시켜놓은 다음 교육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가해학생의 선도 조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이 논문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법의 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유형화가

24) 김지혜·신효정(2018)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개선 및 상담 개입 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교육학 연구」 제24권 제4호, 안암교육학회, 137-168면 참조.

25) 문영희(201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비판적 검토", 「법과정책연구」 제14집 제4호, 한국정책학회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학교폭력 유형에 따라 절차 진행을 차별화하여,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경찰로의 연계를 통한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나, 단순히 관계 문제에서 비롯되는 사안(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의 경우에는 선도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는 문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별 선도교육방식의 다양화도 제안하고 있어서 초등학교 가해학생의 경우 사법적 접근보다는 학교폭력이 무엇이고 내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한 반면, 일진과 같이 조직폭력 행위를 하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성인범죄자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폭력의 고리를 끊어주는 사법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26] 장혜진(2017)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서면사과 처분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에서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가장 많이 내려지고 있는 조치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의 실효성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가해의 정도와 경위, 가해학생의 평소 소행 등을 고려하여 제일 경미한 조치로 서면사과가 아닌 가해학생이 더이상 폭력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하고 교육하여 신속히 교육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동기가 부여되도록 경고나 주의, 유예조치 등을 최소한의 조치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27]

이상의 선행연구를 검토·분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본 연구는 학교폭력 사건 처리절차와 그 과정에 대한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법학적·인권적·교육적 시각에 기초한 여러 실효적 법제 개선안과 정책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6) 이승현·정제영·강태훈 외 1명(2014)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의 효과성 분석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법적 문제점과 관련하여 박주형·정제영·이주연(2013),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법적 쟁점 분석", 「교육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한국교육법학회 참조.

27) 장혜진(20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서면사과 처분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법과 정책」 제23권 제2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11면-235면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5. 기대효과

○ 현재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정비 및 정책개선방안 마련.

○ 학교폭력사건의 적절한 처리절차마련 등으로 학교폭력사건 처리 및 예방의 효율성 증가.

○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 내지 사회인식 향상 등으로 관심 환기 효율성 증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Ⅱ

# 학교폭력 관련 법제 및 처리절차 등 현황분석

1. 학교폭력 현황 및 법제 분석
2. 학교폭력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분석
3. 학교폭력 관련 판례 분석
4. 시사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1. 학교폭력 현황 및 법제 분석

## 1) 학교폭력 현황

2019년 학교폭력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피해응답율이 1.6%로 2018년도 조사에 비해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1〉 전체 피해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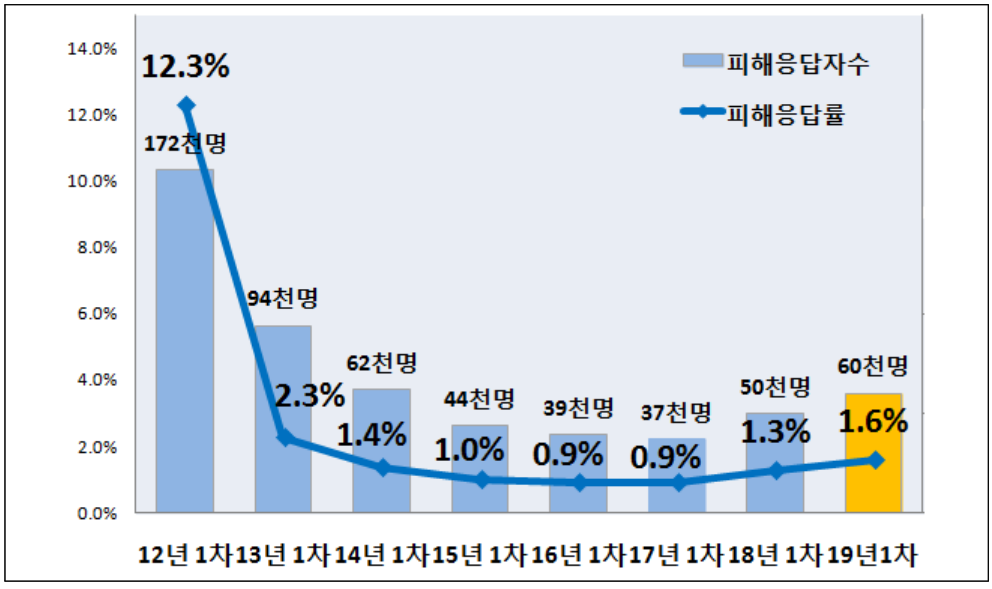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 2019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초등학교 3.6%, 중학교 0.8%, 고등학교 0.4%로 나타나 초등학교의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Ⅱ-2〉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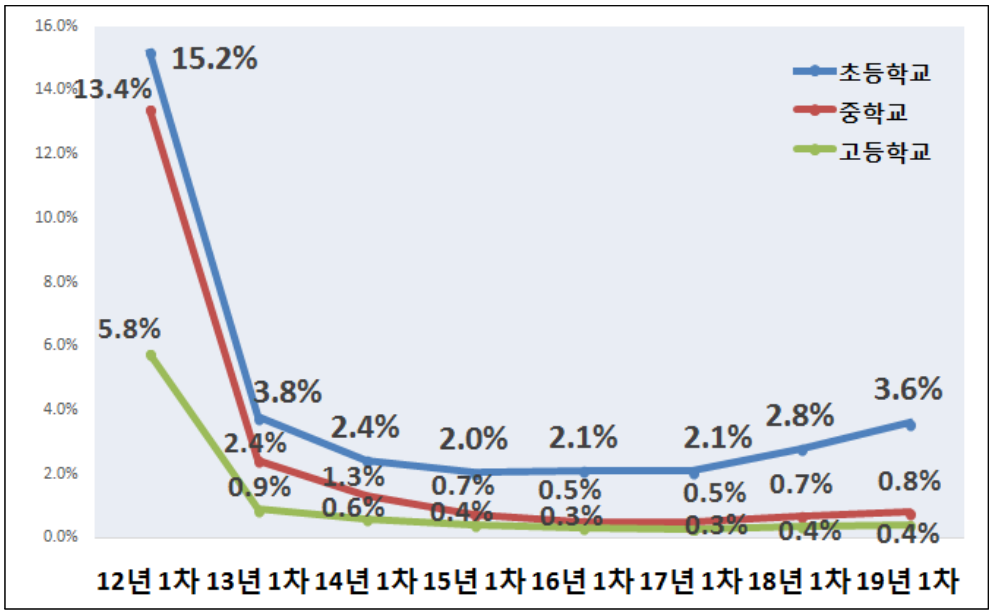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 2019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 피해유형을 보면 신체 폭행이나 금품갈취는 줄어드는 반면 언어폭력 35.6%, 집단따돌림 23.2%, 사이버 괴롭힘 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Ⅱ-1〉 피해유형별 비중

| 구분 | 2013년 1차 | 2014년 1차 | 2015년 1차 | 2016년 1차 | 2017년 1차 | 2018년 1차 | 2019년 1차 | 증감 (%p) |
|---|---|---|---|---|---|---|---|---|
| 언어폭력 | 34.0 | 34.6 | 33.3 | 34.0 | 34.1 | 34.7 | 35.6 | 0.9 |
| 집단따돌림 | 16.6 | 17.0 | 17.3 | 18.3 | 16.6 | 17.2 | 23.2 | 6.0 |
| 사이버 괴롭힘 | 9.1 | 9.3 | 9.2 | 9.1 | 9.8 | 10.8 | 8.9 | -1.9 |
| 스토킹 | 9.2 | 11.1 | 12.7 | 10.9 | 12.3 | 11.8 | 8.7 | -3.1 |
| 신체폭행 | 11.7 | 11.5 | 11.9 | 12.1 | 11.7 | 10.0 | 8.6 | -1.4 |
| 금품갈취 | 10.0 | 8.0 | 7.2 | 6.8 | 6.4 | 6.4 | 6.3 | -0.1 |
| 강제심부름 | 6.1 | 4.7 | 4.2 | 4.3 | 4.0 | 3.9 | 4.9 | 1.0 |
| 성추행·성폭행 | 3.3 | 3.8 | 4.2 | 4.5 | 5.1 | 5.2 | 3.9 | -1.3 |

출처: 교육부, 2019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학교폭력 실태조사 가해응답율을 보면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7.9%, 중학교 2.7%, 고등학교 1.4%로 나타나 초·중학교는 각 1.6%, 0.3% 증가했고 고등학교에서는 0.1% 감소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동학교 같은 반' 48.7%, 동학교 동학년 30.1% 등이며, 가해이유로는 '먼저 괴롭혀서' 29.7%, '장난으로' 17.7%, '오해와 갈등으로' 16.1% 등으로 나타나 학교폭력의 가해와 피해와 아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 목격 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방관' 응답은 30.1%로 지난 해에 비해 0.4% 감소했고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주위에 신고하거나 신고한 응답은 81.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해 사실을 알린 사람은 '가족보호자'가 42.2%, '선생님에게 신고함' 26.9%, '친구선배' 10.2% 등이다. 학교폭력을 보고 미신고 한 이유를 보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25.5%,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24.7%,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18.4%,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 16.5% 등이다.

학교폭력이 일어난 장소는 학교 안에서 69.5%이며 학교 밖에서는 30.5%로 이다 학교 안의 구체적인 장소를 보면 교실 안이 30.6%로 가장 높았으며 복도, 운동자, 급식실, 매점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학교 밖 장소를 보면 놀이터, 사이버 공간, 학교 밖 체험, 학원 주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시간은 '쉬는 시간' 34.4%, '점심시간' 17.7%, '하교이후' 14.1% 등이다.

**〈표 Ⅱ-2〉 피해장소**

| 구분 | 학교 안 (69.5) | | | | | | | 학교 밖 (30.5) | | | | | | 기타 |
|---|---|---|---|---|---|---|---|---|---|---|---|---|---|---|
| | 교실 안 | 복도 | 운동장 | 급식실 매점 | 화장실 | 특별실 | 기숙사 | 놀이터 | 사이버 공간 | 학원 주변 | 학교 밖 체험 | 집 | PC 노래방 | |
| 전체 | 30.6 | 14.5 | 9.9 | 8.7 | 3.5 | 1.9 | 0.4 | 5.6 | 5.4 | 4.2 | 5.0 | 3.2 | 0.9 | 6.2 |
| 초 | 29.3 | 14.2 | 11.5 | 7.7 | 3.4 | 1.8 | 0.2 | 6.7 | 3.9 | 5.0 | 5.5 | 3.7 | 0.7 | 6.4 |
| 중 | 34.0 | 16.0 | 4.9 | 11.8 | 3.8 | 2.0 | 0.5 | 2.2 | 10.3 | 1.9 | 3.6 | 1.8 | 2.1 | 5.3 |
| 고 | 37.0 | 14.0 | 3.7 | 12.6 | 4.0 | 2.6 | 2.2 | 1.7 | 10.5 | 1.3 | 2.8 | 1.2 | 1.3 | 5.2 |

출처: 교육부, 2019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 발생시 대처행동으로는 '학교선생님이나 신고함에 알리겠다' 29.5%, '117신고센터, 경찰관에서 알리겠다' 23%,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 17.4% 등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처리과정에서는 크고 작은 분쟁으로 인해 학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교가 교육기관이 아닌 사법기관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의 증가는 치열한 입시 교육으로 인한 이기주의나 지나친 경쟁이 팽배해 이는 학교전반의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화의 영향도 있으므로 학교 전반의 문화를 개선하고 구성원들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학교공동체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2) 학교폭력 관련 법제 분석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경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29일 학교폭력예방법이 공포되어 동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초로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28)]

그 후 학교폭력예방법은 계속 심각한 양상을 띠면서 증가하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차례 개정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2008년에는 전면개정을 통하여 학교폭력의 개념 속에 성폭력을 포함시키면서 성폭력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을 두었으며(제2조 및 제5조제2항), 피해학생치료비부담에 관한 조항(제16조제5항), 가해학생보호자로 하여금 가해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조항(제17조제8항)을 도입하였다.

2009년은 일부개정에 의하여 긴급상담전화설치 조항(제20조의2), 피해학생의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전담기구에의 조사요구권(제14조제5항),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조항(제17조제1항제2호), 장애인학생보호 규정(제2조제5호, 제16조의2) 등을 신설하였다.

2011년 일부개정에서는 자치위원회의 전체위원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제13조제1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자치

28) 이승현(201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및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6면 이하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제13조제1항, 제21조제3항 단서)하였으며, 교육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위한 홍보물을 연 1회 이상 학부모에게 배포하도록 하였다(제13조제4항).

그 후 2012년에는 일부개정을 통하여 학교폭력개념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로 확대하고 사이버 따돌림도 학교폭력의 유형에 추가하였다(제2조제1호).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하여 ①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 요청 7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였고 ②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할 경우에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진술기회를 주도록 하였다.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감이 바로 비용을 부담한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6조). 그 외 가해학생의 전학 및 퇴학조치에 한정되었던 재심청구를 피해학생에게도 허용하였다(제17조의2). 동시에 가해학생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개정도 추진하였는데,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신고·고발한 학생과도 접촉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인 출석정지에 기간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였다. 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의 요청 14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여 가해학생을 신속하게 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협박 등을 한 경우 가중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또는 전학처분을 받은 경우 가해학생도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17조). 가해학생의 학부모에 대해서도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면서 가해자 부모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학부모의 책임을 강조하였다(제22조제2항). 그밖에 자치위원회의 체계를 개편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두고(제7조),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시·군·구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두었으며(제10조의2),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피악할 수 있도록 연 2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의 조사·상담·치유를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치유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1조제8항, 제9항). 자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제13조제2항),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 교감을 포함하도록 하였다(제14조제2항). 그 외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한 학교장 및 교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11조제10항)를 마련하고,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상훈을 수여하거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하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는 조항을 신설하였다(제11조제11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또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규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제20조의3)

이러한 여러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계속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폭력에 대처하는데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개정 논의가 다시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종전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해서는 사소한 사안의 경우에도 자치위원회에 회부하게 됨에 따라 그 심의와 처리에 집중하게되면서 학생들은 갈등의 해결방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고, 학교는 사법기관화 되면서 학생들의 건강한 관계회복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회복적 생활지도라는 본연의 기능이 훼손되고 민원과 불복, 소송에 시달리면서 정상적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가져와 학교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하고[29]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사안의 주요 심의기관인 자치위원회의 전문성과 관련된 자질이 계속해서 문제화 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기관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이원화되어 그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러 비판과 함께 개선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많은 논의 및 의견개진과 다수의 개정안 제안 등을 거친 끝에 2019년 8월 국회의원 11명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2016)을 통합 조정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개정 법률은 종전 단위학교에서 개최하던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경미한 학교폭력사안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 종결할 수 있게 하였으며, 기존에 이원화되어 있던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재심절차를 폐지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조치에 불복할 경우 모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처리절차를 일원화하고 있다.

### (2)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상의 문제점

#### 가. 과도한 자치위원회에의 회부

(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무조건 자치위원회 개최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의 해석상 피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학교폭력사건의 피해자로 신고를 하고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 사건의 경중을 따질 필요도 없이 무조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했다. 특히 피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피해사실을 주장하며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117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서 학교

29) 이경아·박숙영(2018),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의 한계와 개선 방향」, 민주연구원 이슈브리핑, 1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에 통보가 된 경우에는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했다. 실제로 한 학급 같은 반 아이 대부분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학부모도 있었다. 한 초등학교에서 40명 넘는 아이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 되어 논란이 된 적도 있었는데, 이 경우 신고를 한 학부모는 다른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고를 당한 학부모들은 무차별적인 신고로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소연 했다.

물론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었을 때 일부 학설의 경우 학교폭력 사건 중 중한 사건은 반드시 자치위원회에 회부하고 경미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에 반드시 회부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교과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발간한 책자에는 경미한 학교폭력사건이라도 반드시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 이를 각급 학교에 안내하였다. 즉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전담기구에서 사안조사를 한 후 자치위원회에 회부하면 자치위원들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징계조치 및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사안이 아니라는 결정을 심의·의결하여 '조치 없음' 결정을 하고, 이러한 자치위원회의 '조치없음' 결정에 대하여 피해학생이 불복하는 경우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도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게 되면 모든 사건이 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까지 거치다 보니 일선 학교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사건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처리되어 업무가 과중하고, 특히 욕설의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여 평소 언어 습관에 욕설이 포함되는 경우 많은 학생이 가해자로서 자치위원회에 회부되거나 심지어는 피해학생이라고 주장하는 학생이 가해학생이라고 주장을 하면 일단은 가해학생으로서 자치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지나치게 많은 사건들이 자치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하였다. 교과부에서도 학교폭력사건이 과도하게 자치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기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화해시키고 종결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담임이 종결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교폭력사건이 은폐·축소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하에서 제정되고 운영되어온 학교폭력예방법은 담임종결처리 사안의 경우 과연 담임종결처리 사안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담임종결처리 사안임을 내세워 학교폭력 사건은 은폐·축소하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시비가 끊이지 않아 결국 담임종결처리사안을 폐지하고 더 이상 시행하지 아니하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기에 이르렀다.

개정 법률이 통과되기 이전까지도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학교폭력사건의 은폐·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조차도 모두 자치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교육적인 방법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려는 목적에 어긋나므로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학교장이 재량으로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있어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견해가 일치하지 못하고 사안의 은폐·축소 방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선도함으로써 학교에 재량권을 충분히 부여하자는 의견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었다.

종전 학교폭력 피해신고가 되면 학교는 규정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으며, 섣불리 화해를 권유하게 될 경우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실제로 작은 오해나 마찰이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개정의 요구가 끊임없이 주장되어 왔었다[30].

(나)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자치위원회 개최

학교폭력사안의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쪽에서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신고라는 입장으로 대립하는 경우도 많았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아이들의 부모들은 신고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면서 통상 그 나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 대부분이고 사과까지 했는데 막무가내로 자치위원회에 신고한 것은 고의로 가해학생을 괴롭힐 의도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례도 많았다. 학교측에서도 현행법 하에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을 조기에 절차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재량권이 없으며, 50여 건에 이르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일일이 사안조사를 한 뒤 법에 따라 자치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였으므로 난감한 입장에 처할 수 밖에 없었다. 같은 반에서 많은 학생들이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담임교사는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가해학생의 입장을 반영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어린 학생들의 모든 다툼을 자치위원회에서 다루게 하는 건 교육적이지 않고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점점 늘

30) JTBC뉴스, 2018. 9. 14.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미한 사안의 경우는 학교장이나 학교 외부 전문가에게 조정 권한을 주자는 대안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사건 축소나 은폐 시비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31].

### 나. 교사의 생활교육을 위축시키는 학교폭력예방법

교사의 교육 전문성에는 교과교육 외에 비교과교육인 생활교육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상에서 교사들은 생활교육시 위축감과 주저하는 마음이 드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폭력의 사안이 가벼운 경우 교육적 조치로 해결하고자 하여도 사안의 은폐·축소 시비 문제에 휘말릴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측에 불만이 생길 수 있고, 민원이 생기면 학교폭력 은폐 여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은 은폐의 오해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소한 폭력이라도 자치위원회에 회부할 수밖에 없었다. 교육부가 보급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유의사항에는 학교폭력 사안을 축소·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면 교사는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인지했을 경우 신고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이에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교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없다.

지속성·고의성·심각성 등의 요소를 갖춘 학교폭력 사안은 엄밀한 조사를 거쳐 잘못을 가리고 피해 학생의 상처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학생 간에 발생하는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에 포함시켜 징계로만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경미한 사안과 심각한 사안을 구분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사가 교육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재량권이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것이다.[32]

### 다. 사실상 사법기관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자치위원회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만든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이 오히려 학교 현장을 멍들게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처벌 위주의 현행법에 가해

31) SBS 뉴스, 2018. 9. 17.
32) 경향신문, 2018. 9. 17.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학생과 학부모들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불사하고, 피해학생과 학부모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억울해 하였다. 교사들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온갖 민원과 소송에 힘겨워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보다 학교폭력 처리가 더 중요해졌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피해가 신고되면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하다 보니 교사가 사소한 갈등이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학생들을 화해시켰다간 오히려 학교폭력을 은폐했다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다보니 사소한 말다툼도 자치위원회의 개최로 이어지게 된다. 학교폭력사안 조사시 작성해야 하는 공문은 50여개나 된다. 절차를 하나라도 허투루 여겼다간 소송의 빌미가 되었다. 교사가 학생 진술을 듣고 사안을 조사하는 사실상 ‘경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수사권은 없다 보니 엇갈리는 진술을 확인하려고 따져 묻거나 훈계조로 얘기하는 것도 강압조사나 학생인권침해로 몰릴 수 있었다.

자치위원회에서 가장 가벼운 처분(서면사과)을 받아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다. 이는 입시에 불리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이 학부모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가해학생 학부모들은 전문가가 아닌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자치위원회가 내린 처분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생기부 기재를 막으려고 변호사를 앞세워 학교, 교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한 것이다.[33]

### 라. 학생간의 불신을 없애고 교육적 방법으로 화해하기 어려운 구조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이 공포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자 엄벌주의로 흘러갔고, 그 결과 많은 부작용과 고통을 낳고 있으며, 특히 학교가 점점 사법화되면서 교육기관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학교폭력은 고립되어 일어나지 않고 개인과 가족, 또래집단, 학교, 지역사회, 사회 규범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각각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생태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2013년 17,749건이던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가 2016년 23,673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경미한 사안도 자치위원회를 열어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소한 갈등의 초기 단계가 대화와 소통으로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기회이지만 모든

33) 동아일보, 2018. 8.3 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사건이 자치위원회로 연결되며 이 기회마저 놓치고 있는 현실이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당초 목표가 학교폭력의 예방과 사안 처리를 교육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만 점차 형사정책 기조로 변질 되었고, 학교와 교사는 행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와 쟁송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안 발생 시 행정적 절차에만 집중하는 비교육적 구조에 처해 있었다.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은 절차 과정에서 공동체 구성원간에 불신과 자기방어를 강화하고 공동체 안에 배제와 혐오의 분위기를 증폭시켜 오히려 관계 악화와 공동체성 붕괴를 초래하고 있었다.[34]

### 마. 교육적 효과가 없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해 갔다.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상 자치위원회 제도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학교폭력으로 보았다.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일이 발생하면 무조건 자치위원회가 열려야 하고, 가해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교육적 관점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는 없어진다.

학교 안에서 책임질 수 없는 학교폭력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화해와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 조사권도 없고 전문성도 부족한 자치위원회가 선입견에 입각해 이분법으로 결정을 내리니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당사자 간 기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해자가 100% 잘못한 사건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반성하고 성찰을 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한쪽만 낙인을 찍어버리니 교육적인 효과가 전혀 없었다.[35]

---

34) 박숙영(2017), 좋은교사 교육정책포럼, 좋은교사운동 회복적생활교육센터, 1면.
35) 주간경향 2017. 7. 1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3)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 (1)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제도[36]도입

##### 가. 개정이유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여 모든 학교폭력 사건을 자치위원회에 회부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이 제기되었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가 점점 어려져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그 대상이 되었으며,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보호와 사안처리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공평하고 엄중한 처리절차도 중요하지만 갈등이 조정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사회적 관심과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안처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에 관계개선의 기회가 부족하였다. 학교폭력 사안처리과정 중 화해를 권유하면 학교폭력의 은폐·축소로 비춰질 수 있어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적 개입이 어려웠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교육이 아닌 처벌위주의 응보적 조치로 인식되었으며,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도 법률에 의한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면서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였고, 자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교육부 고시인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중 화해정도 요소를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었다[37].

학교폭력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인 선도도 필요하다는 입법 취

---

36) 개정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7) 주소연(2018),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39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지와는 달리,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상으로는 학교폭력이 의심만 되더라도 무조건 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학생들의 대화의 과정에서 언어 습관적으로 욕설이 오갈 수 있으나, 이를 발견한 교원은 즉각적인 교육적 지도를 통한 언어 사용습관의 개선을 도모하기보다 해당 사실에 대하여 언어폭력으로 신고하고, 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를 처벌하는 구조로 분쟁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구조라고 할 수 있었다[38].

이와 같이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자치위원회는 선도와 교육, 화해, 분쟁조정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징계와 처벌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계속해서 논란의 핵심이 되었다.[39]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정 법률에서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물론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 하에서도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담임종결처리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즉 담임교사는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체처리할 수 있었으며 사안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화해를 지도하거나, 담임교사가 사안 인지 후 7일 이내에 미 해결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담임 종결 사안의 조치사항도 반드시 학교장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담임교사가 종결할 때는 담임교사 종결 사안 확인서를 피해학생 및 학부모, 가해학생 및 학부모에게 받아야 하였다.

그러나 담임교사가 종결한 사안에 대해 불만을 가진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담임교사종결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즉, 담임교사가 화해를 무리하게 시도하거나 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나 가해자, 해당 부모로부터 오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고 종결처리 이후에도 피해자 측이 억울함을 다시 호소하는 사례 역시 많아 교육부는 담임종결 절차가 오히려 다툼 조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담임종결제를 폐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이라도 처음부터 자치위원회에서 다

38) 이종근(2018),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법 개정토론회-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24-25면 참조.
39) 전수민(2018),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법 개정토론회-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56-57면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루도록[40] 하였다.

경미한 사안조차도 자치위원회에 회부케 할 경우 많은 학생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양산시킬 수 있고 학생 지도에 대한 담임교사들의 자율권과 재량권 위축, 생활지도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하며, 사소한 학교폭력마저도 학생, 학부모간 대화와 중재를 통해 화해시키는 노력 없이 사안별로 자치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면 교사 책무성 약화와 스스로 방관자적·소극적 자세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담임종결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견해[41]도 있었다. 개정 법률은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 하에서 담임종결처리사안과 그 요건과 절차가 비슷한 규정을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로 그 처리자를 바꾸어 규정하고 있다.

### 나. 주요 내용과 문제점

개정 법률은 제13조의2에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4가지 요건 즉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아야 하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어야 하고,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아야 하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장은 자체해결을 위해서 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②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이 학교의 장의 종결처리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자치위원회를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생간의 경미한 다툼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설치된 전담기구의 확인을 통해 학교의 장이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치위원회의 구성시 학교폭력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일선학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자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 하려는 데에 있다.

본질상 폭력이라는 형사사건을 학교폭력예방법을 제정하면서까지 학교에서 처리하는 절차를 둔 것은 무조건 징계와 처벌 중심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화해를 통한 관계회

40) 국제신문, 학폭 처리 담임교사는 손 떼라는 교육부, 2014. 10. 22.
41) 에듀뉴스, 한국교총, 교육부는 담임종결제 폐지 즉각 철회하라, 2014. 11. 2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복 및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선도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적 지도가 가능한 경미한 학생 간의 다툼에 대해서는 학교별 설치된 전담기구의 사안 확인에 따라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태도라 생각된다.[42]

종전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되어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면, 폭력의 사안이 아주 경미하더라도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일정한 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학교폭력 사안이 그 행태상 형사상의 문제와 동일한 경우도 있고, 형사상의 문제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지는 경우도 있다. 형사상의 문제에 대하여도 발생경위, 피해의 정도,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하는 기소유예제도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기소를 통해 국가형벌권을 발동하는 것보다 범죄자를 선도하고 재발방지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인정되고 있는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형사상의 문제에도 인정되고 있는 유예 제도를 형사상의 문제보다 더 낮을 수 있는 사안의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해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타당한 개정방향이라 생각된다.[43]

반면에 이러한 학교장 종결처리제도에 반대하는 견해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데 그 논점은 종전 담임종결처리사안의 경우에도 학교폭력 사건이 은폐·축소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폐지하기에 이르렀는데, 거의 유사한 요건 하에 학교장이 경미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종결처리하게 한다면 공식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수단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축소 은폐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학교장에게 명시적으로 부과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역량을 제고하여야 한다.[44]

---

42) 이종근(2018), 앞의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법 개정토론회, 24-25면 참조.

43) 장혜진(2017),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있어 근본적인 대안 모색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안모색 토론회, 33-34면 참조.

44)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장이 종결처리하는 제도에 반대하는 법률 개정안으로는 안민석의원외 11인이 2018.1. 24. 제안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있다. 제안이유를 "학교폭력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단순·경미한 사건의 경우 학교장과 교원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학교장이나 교원이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축소보고하거나 은폐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며,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또한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은 처벌과 사안처리 위주에 초점을 맞춘 측면이 있고, 교육적 해결의 필요성이 있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이 되나, 폭력 발생 후 학교에 대한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시키지 않고 만나게 하고 대화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학교, 학부모, 학생 모두가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처 능력 면에서 함께 변화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은폐·축소 등의 갈등으로 확대될 우려도 무시할 수는 없다.[45]

경미한 학교폭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적·사법적 접근이 아닌 학생들의 관계회복을 도모하는 교육적 접근을 통하여 피해회복과 관계개선을 중심에 둔 학교폭력 재발방지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의 경중을 가려, 중대한 사안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이 가해자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피해회복의 관점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46].

다만 학교장 종결권제도는 관련학생 및 보호자 모두 동의할 때 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피해학생측과 가해학생측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만 운영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 제도는 피해학생측의 반대로 인하여 활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우려도 높다. 또한 학교장 종결권이 도입되면 학교폭력에 명시된 학교장의 의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책무성이 더 높아지는 것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내용이며, 이러한 이유로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사안을 은폐·축소하는 학교장의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양측이 종결에 대한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예시: 피해자측은 가해자측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은 반면 가해측은 자치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기 위해 형식적 사과를 하려는 경우)에 대한 충분한 탐색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학교장 종결 이후에 재발 또는 양측간의 관계악화 및 상황변동 등 이유로 문제제기를 할 경우 축소나 은폐에

---

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고의적 축소 및 은폐에 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축소 및 은폐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정도 등에 따라 가중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45) 최희영(2018),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73면.

46) 박숙영(2017), 앞의 좋은교사 교육정책포럼, 1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대한 오해나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많다. 특히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피해학생의 회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학교장 종결권으로 교육적이고 신속하게 사안을 종결하려는 성급한 시도를 하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도지 않을 경우 오히려 갈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47]. 생각컨대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종전 비판적 의견을 수렴한 입법태도라 할 수 있으나 개정 법률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만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사실상 심의위원회 개최여부가 결정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경우는 대부분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도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 하에서 대부분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 학교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실제로는 거의 없게 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라면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는지와 상관없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점과, 학교장이 자체해결에 대한 불만이나 구제수단을 두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의 경우 피해학생의 보호와 관련한 비용의 경우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학교안전공제회 등에서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조[48]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정된 법률에서는 학교장이 경미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하여 가해학생이 대한 조치를 종결할 경우에도 피해학생이 학교안전공제회 등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 (2) 교육지원청 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상 자치위원회는 각급 학교에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기구이다. 학교폭력사건의 증가로 학교폭력사안처리 과정에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

47) 김승혜(2018),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74-75면.

48)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6항.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고, 자치위원회 조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학교가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늘어나자, 그 대안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세종시의 경우 교육청)에 설치하자는 주장이 반영되어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었다. 즉 최근 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2013년 약 17,800건에서 2015년 약 19,900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담당 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에도 자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어 담당교원 및 학교에서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해 교육적 해결을 도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전체위원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폭력 처리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높았다.

이에 개정 법률은 자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변칭을 변경하여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면서[49] 심의위원회의 구성시 학교폭력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일선학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자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심의위원회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구이므로, 자치위원회의 결정으로 가해학생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예방하거나 추가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비록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사법적 판단은 아닐지라도 그 결정으로 인해 가해학생·피해학생 모두의 청소년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에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한다. 또한 심의위원회 원들은 청소년문제, 학교폭력 문제 등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학교폭력의

---

49)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0.〉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다양한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자치위원회에서는 법률적 전문가, 교육학적 전문가, 정신의학적 전문가, 청소년 상담전문가 등이 참여해야 한다.

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세종시의 경우 교육청)에 설치할 경우 학교폭력 전문가를 위촉하기 용이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니 형평성의 문제도 사라질 것이며, 해당 학교의 학부모위원들이 위원에서 배제되기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피해·가해 학생측과의 관계에 따른 공정성의 문제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복수의 피해학생이 각각 학교가 다른 경우에 학교마다 자치위원회가 열려 전혀 다른 조치가 내려질 우려도 줄고, 공동자치위원회를 열기 위한 복잡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교육지원청에 하나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속된 모든 학교의 학교폭력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교육지원청별로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위원 pool을 구성하고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그 pool을 기초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을 심의·의결하고 단위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사안조사를 통해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으면, 교육지원청에 자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교육장은 자치위원회원 pool을 기초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때 학교폭력전담기구가 학교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해당학교의 전담기구의 소속 교사가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여 사안조사 내용과 학교의 상황 등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하도록 한다. 이는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공정성 및 중립성 보장, 단위학교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50]

그러나 이러한 개정과 관련하여 비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학교폭력예방법은 선도와 교육이 아닌 처벌과 징계를 위한 법이 될 것이고, 자치위원회는 학생징계위원회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는 여전히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필요한 사안조사와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여전히 담당하게 되므로 교육지원청으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이관한

50) 이현정 (2017), 학교폭력 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가해학생 조치별 세부기준 고시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8권 제3호, 241-242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다 하더라도 일선 교사의 업무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도 주장되고 있다. 즉 학교폭력 담당자의 사안조사, 관련자료 제출 및 심의위원회 사안보고 등의 업무는 계속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 경감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사안조사만 진행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관련학생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면 외부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증가하고 있는 자치위원회 개최를 위해서는 여러 개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한 달에도 수차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고 심의위원회에 참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래 취지인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등 외부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학교폭력 신고사건이 증가하게 되면 신속한 심의위원회 개최가 어려워져 피해학생 보호와 적정한 시기에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징계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모두 절차에서 해방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꾸준이 제기되는 문제점 중 하나다. 사실 현재 피해학생이 제기하는 재심이나 가해학생이 제기하는 행정심판의 경우도 1개월에 1회 정도 열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지원청에서 많은 건수의 학교폭력 사건을 신속하게 개최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심의위원회가 상설기구화 되어 학교폭력사건을 전담하는 직원과 심의원이 상주하게 되는 등 법원과 비슷하게 운영되어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모두 마치 재판을 받는 것같이 준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는 학교 내에서 교육적 방법을 우선 개입하여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에도 크게 어긋날 수 있다. 그 외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교육청에 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는데(세종특별시의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경우 조치결정과 징계조정 및 행정심판을 모두 동일한 기관에서 주관하게 되어 학교폭력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인하여 교육지원청 단위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정 법률의 입법태도와 관련하여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행과정에서의 도출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세부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3) 재심제도의 폐지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서 규정되었던 “재심청구”제도는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폐지되었고, 대신 “행정심판”[51]규정이 신설되었다.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학생을 위한 재심제도와 가해학생을 위한 재심제도가 이원화 되어 있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재심제도를 일원화 하는 개선안이 제시되었으나 각급 학교에 설치되었던 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으므로 심급상 재심제도를 둘 여지가 없어지게 되었다. 재심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권리구제 수단이었는데, 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게 되면 재심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고, 곧 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불복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 (4) 학교폭력조치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미비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상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자치위원회 조치결과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법적 근거 없이 훈령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에서도 가해학생에 심의위원회의 조치결과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지침에 따른 내용이 기재되도록 하였는데 이점이 행정부단과 민원소송, 화해방해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면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하였다. 학교폭력 처리과정에

---

51)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서 발생하는 절차상의 하자를 찾고, 가해, 피해에 대한 판단에 불만이 있는 경우 재심, 소송 등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경우의 상당부분이 자치위원회 조치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 때문이었다. 피해학생의 입장에서는 학교폭력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불이익 주기를 통해 일방적 가해를 했건, 서로 싸웠건 간에 반성과 용서라는 관계회복에 앞서서 낙인과 잘라내기의 징벌적 효과를 강조하게 된다. 이때부터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시비 싸움이 되고 교육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 사실의 생기부 기재는 예방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명백한 학교폭력사건 처리마저 힘겹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었다[52].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각 주체별 다양한 욕구와 문제 해결방식의 차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차이 및 감정적 대응 등으로 인해 사안이 확대된다. 이러한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확대는 대상자의 심리적,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초래함은 물론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회복하고 안전하게 학교로 복귀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하였다[53]. 학교는 낙인이 아니라 회복과 성장을 도모하는 곳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가해학생처분 1호 내지 3호의 경우 1회에 한하여 학생생활기록부에의 기재를 유보하는 교육부의 정책숙의제가 진행 중에 있다. 1호 내지 3호 처분의 경우 가재를 유보하였다가 재발시에 기록하는 방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한 다툼이 발생할 우려도 있을 수 있으나 기존과 같이 학생생활기록부의 기재를 막기 위한 목적의 소송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타당하다 할 수 있겠다.

## 2. 학교폭력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분석

### 1)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소홀

#### (1) 사건의 개요

위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 한 후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신고를 한 후 상담선생님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화해를 주선한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학생 7명과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억지로 화해를 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52) 김찬일(2018),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54면,
53) 최희영(2018),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71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피해학생을 가해학생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등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안이다.

### (2) 사건에 대한 평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에는 학교폭력 신고 관련 규정이며, 학교폭력 신고방법은 구두(학생들이 스스로 교사에게 말하는 경우, 교사가 개별적인 학생 면담 시간을 통해 파악한 경우, 학부모나 목격자가 구두로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함, 이메일(담임교사의 메일, 책임교사의 메일, 학교명의 메일), 홈페이지(학교 홈페이지 비밀 게시판), 휴대폰(전담기구 소속교사인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의 휴대폰, 담임교사의 휴대폰, 학교 공동 휴대폰 (학교 이름으로 되어 있는 휴대폰) 및 문자, 음성녹음, 통화의 방법 등으로 신고를 받는다.

학교폭력 신고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의 상태 파악과 신변보호를 하여야 한다. 피해상황을 알게 된 교사는 가정 먼저 피해학생의 상태와 신변보호를 생각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심리적·정신적 상태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의 위험이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되면, 귀가시 하교길이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 귀가하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위험도가 매우 높을 시에는 경호서비스를 연계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위 진정사건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음에도 피해학생을 분리시키거나 가해학생들의 접촉 및 협박을 금지시켜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피해학생을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며, 피해학생의 욕구는 가해학생으로부터 분리 및 접촉협박금지 등 피해학생보호가 가장 중요한 욕구임을 알 수 있는 사건이며, 피해학생으로서는 학교폭력 신고를 한 이후에는 학교나 제도적으로 자신을 보호해 줄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 2)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등

### (1) 사건의 개요

위 사건은 학교폭력 신고 이후 학교폭력 사안조사 과정에서 가해학생을 특정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이유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을 직접 지목하라면서 피해자인 어린 초등학교 여학생이 고학년인 가해학생에게 그 신분이 노출되어 학교폭력 사안조사에서 피해학생이 보호되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학생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는 등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사건이다.

#### (2) 사건에 대한 평가

학교폭력사건의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폭력을 신고하였을 경우 피해학생의 신분이 가해학생 측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을 직접 지목해 보라는 방법으로 사안조사를 한 것은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느꼈던 학교폭력 당시 불안과 공포심을 다시 느끼게 하는 한편, 학교폭력 신고를 한 후 보복폭행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사안조사 방식으로서 학교폭력 신고 후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자치위원회 개최 등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불안, 공포,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처리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 학교폭력사건 관련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 (1) 사건의 개요

친구를 놀린 것이 원인이 되어 교실 문 유리 부분을 깨드리는 과정에서 처음 놀렸던 학생이 유리파편에 신체가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고, 놀림을 당했던 학생도 교실유리문을 깨뜨리는 과정에서 팔이 찢어져 다쳤다. 이후 2명 모두 학교폭력으로 자치위원회에 회부되기 전 교실 문 유리문을 깨뜨린 학생의 아버지가 처음 놀렸던 학생이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진정인이 유리파편에 다친 것을 목격한 학생을 직접 찾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수업중인 교사는 이런 교실 문 유리문을 깨뜨린 학생의 아버지가 교실에서 하는 행동을 제대로 제지하지 않았으며,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처음 친구를 놀렸던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사건의 내용, 피해자의 이름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배포한 사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2) 사건에 대한 평가

위 사건에서 직접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교사가 수업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폭력 목격학생을 색출하려는 학부모의 행위는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나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1조제1항).

학교폭력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자치위원이나 교원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많은 개인적인 정보를 얻게 된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들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함으로써 가급적 그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밀누설금지 의무와 회의 비공개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조치, 분쟁조정을 위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비밀누설 금지 의무는 현직 자치위원회 위원은 물론 전직 자치위원회 위원도 이에 해당된다. 또한 자치위원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자치위원회 서기나 전문상담교사, 교육감 등 학교폭력예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역시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다.

위 사건의 경우는 학교폭력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적절히 보호되지 못하고 가해학생의 보호자의 위협에 직면하였음에도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였고, 심지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된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건이므로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자치위원회 회의 내용 및 조치 결과 등이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피해학생에 대한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4) 학교폭력 신고자에 대한 교사의 부적절한 조사 등

### (1) 사건의 개요

담임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인 피해학생에게 같은 반 학생이 전부 있는 교실 안에서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하였는데, 피해학생이 창피하여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하였고, 자치위원회에서 자치위원들이 개별 발언을 통해 피해학생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였고, 학교폭력에 대해 관대하게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야 한다는 등 자치위원으로서 공정성 및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는 사건이다.

### (2) 사건에 대한 평가

학교폭력사건 피해학생의 신분이 가해학생측이나 다른 학생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피해학생에게 피해사실을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 해보라는 담임교사의 조치나 행위는 용기를 내어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한 피해학생에게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으며,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된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비록 자치위원들의 개인별 발언이 자치위원회 회의록에서 공개되지 아니할 수 있지만, 자치위원회 회의를 녹음한 녹음 내용 등이 피해학생측이나 가해학생측에게 알려질 경우 자치위원으로서 객관성·공정성을 의심 받을 수 있으며, 만일 자치 위원회 개최 전에 특정 자치위원이 객관성·공정성을 의심 받을 경우라면 기피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치위원회는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 사건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같은 반 학생이나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담임선생님은 비밀누설금지 의무가 있음에도 공개된 같은 반 학생들 앞에서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한 것은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이며, 피해학생 보호에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으며, 자치위원들이 자치위원회에서 객관성·공정성을 의심 받을 만한 개인별 발언을 하는 것은 자치위원의 자질 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자치위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5)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학습권침해

#### (1)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업시간(영어, 수학)에 수업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한 사건이다.

#### (2) 사건에 대한 평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사안을 조사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보고하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자 및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자치위원회 개최일시를 통보한다. 사안조사는 서면 조사, 해당학생 및 증인의 면담 조사, 사안현장 조사 등을 모두 실시하며, 면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자들의 진술서를 받는다. 전담기구 소속교사는 학생, 학부모, 목격자, 담임교사 등을 면담 조사한 후에 면담조사 일지를 작성한다.

학생조사 및 지도는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수업시간 이외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교과 교사에게 사전 통보하여 협조를 얻은 후 수업시간을 하도록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학생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동의 없이 피해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면서 피해학생으로부터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피해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피해학생의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목격학생이든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사사하는 사건이다.

### 6) 학교폭력 조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 등

#### (1) 사건의 개요

중학교 1학년생인 진정인의 담임교사는 피해학생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아가면서 진정인이 잘못한 것을 적어내라고 하였고, 학교폭력 목격학생들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 반을 찾아다니면서 진정인을 전학 보낼테니 진정인에 대한 학교폭력 목격사실을 쓸게 없는 학생은 만들어서라도 쓰라고 하였고, 진정인에게 욕설을 가였으며, 생기부장 선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생님은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이 전부 모인 강당에서 진정인에게 폭언을 하면서 빗자루로 종아리를 때리는 체벌을 한 사건이다.

### (2) 사건에 대한 평가

담임교사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단정하는 예단을 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안조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욕적인 언사나 사안조사 내용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목격학생 진술을 받아내려고 한 것은 형법상 모욕죄나 강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이 될 것으로도 보인다.

생활부장 선생님은 현행법상 금지된 도구를 가지고 체벌을 가하였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만일 생활부장 선생님이 자치위원회원을 겸하고 있다면 자치위원회원으로서 객관성·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건이므로 기피신청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이 될 것으로도 보인다.

위 사건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과정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선입견이나 예단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 객관성·공정성을 해치고 가해학생으로 의심 받는 학생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의무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일 될 뿐만 아니라 별도의 모욕죄나 강요죄나 폭행죄가 성립하는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법과 규정에 다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사실상 징계를 하는 것은 목격학생이나 일반학생에게도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는 사건으로 보인다.

## 7) 학교폭력 사건 축소·은폐에 위한 인권침해

### (1) 사건의 개요

틱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학생이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칼로 위협당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음에도 위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과 학교폭력 전담교사는 피해학생에 대한 적정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 했으며, 사안조사과정에서 가해학생들 보호자로 하여금 피해학생을 쌍방폭행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하게 몰아가면서 합의를 종용하면서 가해학생들에게 유리한 자치위원회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직적으로 학교폭력사건은 축소·은폐하였고, 교내방문일지 등의 관리 소홀로 학부모 등 방문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건이다.

### (2) 사건에 대한 평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여 장애학생이 피해학생인 경우에 자치위원회는 장애인 전문상담가의 상담이나 장애인 전문치료기관의 요양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제16조의2제2항).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할 수 있는 보호조치 중 하나인 '심리상담 및 조언'과 '치료를 위한 요양'이 장애학생에 대해서도 적용되지만 이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과 '치료를 위한 요양'에 대해 일반적인 조치이외에 장애학생에 대한 특화된 조치를 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에서 요청한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 학교장은 이를 반드시 조치하여야 하며(제16조의2제3항), 장애학생에 대해 자치위원회에서 요청한 보호조치에 대해 학교장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장애학생의 경우 일반 피해학생보다 더 보호를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학교폭력 사안처리과정에서 가해학생 및 보호자,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의 경우 과거 상담을 받은 기록이나 치료를 받은 기록 및 생활기록부 등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사건이다.

## 8)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 (1) 사건의 개요

피해학생은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며, 가해학생들은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여 피해학생을 따돌리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는데, 피해학생이 위클래스(WeeClass)상담교사 및 담임교사 및 학교장에게 보호조치를 요구하였지만, 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교장은 오히려 피해자측에 이런 일은 선생님들이 도와줄 수 없소 애들끼리 해결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충격으로 결석을 하다가 출석일수 미달로 유급되는 결과에 이르렀다는 사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2) 사건에 대한 평가

위 사건의 경우는 학교폭력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적절한 심리상담 등을 받지 못하였고, 학교폭력으로 신고 된 이후에는 사안조사 및 자치위원회 개최 등 법과 규정에 다른 절차를 진행하여야 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피해학생이 보호받지 못하여 결석을 하였고, 결국 출석일수 부족으로 유급되어 학습권이 침해되었다.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못했을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학교의 장이 인정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학생이 등교거부로 결석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자치위원회의 결과조치로써 피해학생이 치료 및 요양을 할 수 있으나, 자치위원회 소집 전에 피해학생이 등교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도 역시 학교에서는 피해학생이 그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은 것이 증명된다면(병원 의사의 진단서 등) 출석일수로 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학생이 심리상담 및 조언이나 그 밖의 보호조치 결정을 받고 결석한 경우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학교장이 피해학생이 심리상담 및 조언이나 그 밖의 보호조치 결정을 받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결석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인정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교장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인해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피해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호조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성적평가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시보호나 치료를 위한 요양조치 등으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장·단기간 결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성적평가를 위한 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학교학업 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피해학생이 장·단기간 결석하게 되는 경우 교장은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 사건이 신고된 이후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와 신속한 사안조사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학습권보장에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9) 학교폭력 피해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 (1) 사건의 개요

피해학생이 장애가 있는 학생인데, 좀비게임을 빙자하여 좀비라고 놀리거나 걸음걸이를 흉내내거나 달팽이보다 느리다고 이야기 하거나 인생이 망했다고 이야기 하는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으나 학교폭력 신고 접수를 만류하면서 학교폭력 신고 접수를 지연시켰으며, 학교폭력 신고를 한 이후에도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장난을 한 것인데 장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학생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면서, 신고가 능사가 아니라고 이야기 하거나 학생들의 괴롭힘, 왕따 등에 대해 학교폭력으로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은폐·조작하였고, 학교폭력 신고 이후에 수차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학교폭력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진정인을 상대로 성고충 신고를 접수하였다는 사건이다.

#### (2) 사건에 대한 평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여 장애학생이 피해학생인 경우에 자치위원회는 장애인 전문상담가의 상담이나 장애인 전문치료기관의 요양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제16조의2제2항).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할 수 있는 보호조치 중 하나인 '심리상담 및 조언'과 '치료를 위한 요양'이 장애학생에 대해서도 적용되지만 이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과 '치료를 위한 요양'에 대해 일반적인 조치이외에 장애학생에 대한 특화된 조치를 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에서 요청한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 학교장은 이를 반드시 조치하여야 하며(제16조의2제3항). 장애학생에 대해 자치위원회에서 요청한 보호조치에 대해 학교장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장애학생의 경우 일반 피해학생보다 더 보호를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따돌림·집단따돌림·사이버 따돌림 등 따돌림의 경우 형법이나 특별형법상 처벌규정이 없는 따돌림·집단 따돌림·사이버 따돌림 등의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며, 따돌림·집단 따돌림·사이버 따돌림을 하는 방법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공갈, 협박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수단으로 사용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공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갈,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다. 따돌림·집단따돌림·사이버 따돌림 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진료를 받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판례는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학교폭력 신고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의 상태 파악과 신변보호를 하여야 한다. 피해상황을 알게 된 교사는 가정 먼저 피해학생의 상태와 신변보호를 생각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심리적·정신적 상태도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따돌림이나 괴롭힘의 경우 피해학생 측의 학교폭력 신고를 접한 후 즉시 피해학생보호조치와 자치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절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다.

## 3. 학교폭력 관련 판례 분석

### 1) 대법원 2011. 4. 14.선고 2011다12675 손해배상(기)

#### (1) 사건의 개요

K도 소재 J공립 고등학교에 입학한 정신지체 2급의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남학생을 같은 학교, 같은 학급에 다니는 가해학생 7명이 바보라고 놀리고, 손으로 때리고, 가해학생 들 중 일부학생은 자신에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의 뺨을 때렸으며, 가을소풍 날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지기 싫어하는 피해학생을 물에 빠뜨릴 것처럼 장난을 치고, 난로에 데워진 뜨거운 동전을 피해학생이 줍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함으로써 괴롭혀 왔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고, 입원 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향후 불특정 장기간 동안 외래 치료와 상담치료를 요하고, 보호자의 일상생활 관리 및 감독도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태의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았다. 한편 가해학생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들은 폭행 또는 상해로 각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소년법 제32조제1항 제1호의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부모 및 남동생은 가해학생들 및 그들의 부모와 지방자치단체인 K도의 교육책임자인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 (2) 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및 대법원 2007.6.15. 선고 2004다48775 판결 '손해배상(기)'등에서 꾸준히 가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보호자, 학교장, 담임교사,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왔다. 이러한 판결들은 가해학생이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그 보호자에게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고, 또한 학교장이나, 담임교사 및 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도 공동책임을 인정한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들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의 쟁점은 ①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가한 행위가 고등학교 남학생들끼리 통상적으로 장난을 치는 정도로 볼 것인가, 아니면 피해학생을 만만하게 보고 지속적으로 놀리고 때리는 등 단순한 장난의 정도를 넘어서는 일종의 집단따돌림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과, ② 가해학생들이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행위와 피해학생이 정신분열증의 상해를 입게 된 것과 인과관계가 있는가 하는 점과, ③ 고등학교 1학년이 미성년자인 가해학생들의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보호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수 있는가 하는 점과, ④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이 사건에서 제1, 2심 모두 ① 가해학생들의 행위는 피해학생의 정신지체장애를 이유로 약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놀리고 때리는 등의 행위는 당하는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단순한 장난의 정도를 넘어서는 일종의 집단따돌림으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② 피해학생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를 가진 학생으로 장애가 없는 학생들에 비하여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에 취약한 점, 고등학교 2학년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또래와 관계를 중요시 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정신적 장애가 없는 학생이라도 같은 반 다수의 학생에게 약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집단따돌림을 받는다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정신병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가해학생들의 집단괴롭힘과 피해학생의 정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신분열증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③ 가해학생들은 불법행위자로서 피해학생 및 부모와 동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고, 가해학생들의 부모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지속적,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가해학생들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들과 각자 피해학생측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④ 또한 지방자치단체인 K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보았다.

### 2)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손해배상(기) 〈집단따돌림 자살 사건〉

#### (1) 사건의 개요

K도가 설치·운영하는 W 여자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망인)는 소외 1, 2, 3과 망인 등 4인은 같은 반 친구들로 2001. 3.경부터 배타적으로 어울리는 작은 집단을 형성하여 지내다가 소외 1이 위 집단을 주도하면서 망인을 집단에서 배척하였다가 다시 끼워주는 것을 되풀이하였다. 여름방학 이후부터는 망인이 말을 걸어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등 망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망인이 교복을 줄여 입은 모습을 보면서 놀리거나 점심시간에 학교급식소에서 망인이 같은 식탁에 앉아 식사하려고 할 때 다른 식탁으로 옮겨 피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2001. 9. 24. 망인의 필통이 없어지자 망인은 소외 1과 소외 2가 이를 숨긴 것으로 알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이들에게 따졌다가 자신의 오해로 밝혀져 이들에게 사과하였으나 이들이 망인의 사과를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망인을 몰아세움으로써 소외 1 등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후 망인은 2001. 9. 26.경에는 교복 대신 검은 스웨터를 입고 오고 자율학습 시간에 자주 교실을 드나드는 등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소외 3에게 자신과 함께 놀아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소외 1, 2로부터 '소외 3이 니 쫑이냐'라는 말과 함께 면박을 당하였다. 망인은 2001. 9. 27. 등굣길에 다른 반 친구에게 전날 소외 1 등으로부터 면박 당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왕따 당하니까 괴롭고 힘들다. 소외 2가 니 쫑이냐고 말하여 상처받았다'고 말하였다.

같은 날 점심시간에 소외 1과 소외 2가 다른 학생들에게 '망인의 성격이 이상하다, 같이 놀지 마라'며 학교급식소로 몰려가 자신만이 남게 되자, 어머니인 원고에게 전화하여 '엄마, 나 사실은 왕따야. 전학시켜 줘. 죽을 것 같아'라고 울면서 이야기하였다. 같은 날 하굣길에 소외 1과 소외 2가 망인에게 약을 올리며 몰아세우기도 했는데, 망인은 귀가한 직후인 같은 날 17:00경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자살하였다.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망인이 3학년에 들어와 1학기부터 소외 1 등과의 교우관계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망인에게 필요하면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하였으나 망인이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여 달리 담임교사 등과 상담하지 않았고, 망인이 자살 당일 전화할 때까지 망인이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망인의 담임교사는 2001. 3.경 다른 중학교에서 폭행사건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전학 온 소외 1에 대하여 1교사 1학생 결연 상담 제도에 따라 소외 1의 학교생활 전반에 관하여 상담지도를 하였는데, 망인이 학기 초에 소외 1과 급속히 가까워지자 이를 염려하여 망인에게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사귈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담임교사는 소외 1 등이 망인과 집단을 형성하여 친밀하게 지내면서 망인을 집단에서 배척하였다가 다시 끼워주는 등의 갈등이 있음을 알았으나 학창 시절 교우관계에서 겪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고, 필통분실 사건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으나, 2001. 9. 26. 망인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느껴 망인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2001. 9. 27. 임원회의에 참석한 원고로부터 망인이 그날 점심 때 울면서 전화한 사정을 듣게 되자, 소외 1등이 봄부터 망인을 집단에 끼워주었다 빼놨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잘 지낼 테니 걱정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하지 말아라, 자신이 잘 이야기해 보겠다고 하였다. 망인은 담임교사와 자주 상담을 하였으나 주로 공부문제에 관하여만 상담하였을 뿐 교우관계에 관한 어려움을 이야기한 일은 없다.

### (2) 판결의 의의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여 집단따돌림의 정의를 규정하였다.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교장이나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따돌림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학생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집단따돌림의 내용이 이와 같은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살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급우들 사이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따돌림의 정도와 행위의 태양, 피해학생의 평소 행동 등에 비추어 담임교사에게 피해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자살의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하였으나, 다만 학생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여 교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집단따돌림의 피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3)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손해배상(기)

#### (1) 사건의 개요

K도가 설치·운영하는 G시 소재 M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하던 A(망인)는 2001. 11. 15. 망인의 집인 G시 소재 아파트 4층에서 12m 아래 아파트 화단으로 추락하여 2001. 11. 30. 사망하였다. 망인은 2001. 3.경부터 2001. 10.경까지 같은 반 급우인 가해학생들로부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신들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으로 폭행과 괴롭힘을 당하였는데, 구체적인 일시 장소가 밝혀진 폭행이 2001. 8.경부터 2001. 10. 17.경까지 사이에 7회가 되고 위 폭행 중 2회는 쉬는 시간에 학교 교실에서, 4회는 쉬는 시간에 학교 화장실에서, 1회는 학교 인근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루어졌다.

망인은 가해학생들로부터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폭행 등을 당하면서도 폭행사실을 어른들에게 알리면 죽여 버리겠다는 가해학생들의 협박 때문에 부모나 담임교사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담임교사 T는 2001. 10. 17.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망인이 가해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망인과 가해학생들을 추궁한 후에야 비로소 망인이 가해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담임교사 T는 2001. 10. 18. 망인과 가해학생들 부모를 모두 학교로 불러 대책을 협의하였고 위 자리에서 망인 A의 부모들이 가해학생들을 전학시키거나 다른 반으로 보내는 등 격리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담임교사 T와 학교장 P는 전학 등은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하고, 일단은 망인과 친한 친구로 하여금 망인을 보살피도록 하고 가해학생들을 철저히 지도하겠다면서 모든 문제를 학교를 믿고 맡기라고 하였다.

망인은 가해학생들의 위와 같은 폭행 등으로 평소 집중력 장애, 불안, 우울증상에 시달렸고, 이로 인하여 A의 부모가 2001. 9. 25. 담임교사 T와 상담을 하기도 하였는데, 2001. 10. 18. 정신과 의사의 진찰 결과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로 상당기간 약물치료와 상담치료가 필요하고 망인의 불안심리가 높아 반을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에 망인 A의 부모가 담임교사 T와 학교장 P에게 반을 옮겨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망인 A의 부모는 2001. 10. 29.부터 2001. 10. 31.까지 2박 3일간의 수학여행에서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망인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였다가, 담임교사 T가 수학여행 중 망인을 가해학생들과 격리해 놓고 다른 남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교사로 하여금 특별히 감독하겠다는 약속을 함에 따라 망인을 수학여행에 보냈으나, 담임교사 T는 수학여행 중 망인에게 친한 친구 한 명을 붙여주는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학생인 B와 같은 방을 사용하도록 배정하고 약속과 달리 남자 교사가 감독도 하지 않아 망인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도록 하였다.

망인 A는 자신의 부모가 수학여행에서의 일에 대하여 담임교사 T에게 항의한 일로 인하여 2001. 11. 2. 담임교사 T로부터 심하게 꾸중을 듣게 되고 친구들로부터도 왕따를 당하게 되자, 그 이후에는 우울증세가 더욱 심해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망인은 2001. 11. 15.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자기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고 의자 위에 올라서서 창문 밖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창문 밖으로 투신하였고, 이로 인하여 급성 경막하 혈종, 중증 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고 U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1. 11. 30. 사망하였다. 이에 A의 부모는 망인의 담임교사였던 T 및 M초등학교의 교장 P 및 B, C, D 등 망인과 같은 반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의 보호자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2) 판결의 의의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괴롭힘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그 고통과 그에 따른 정신장애로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경우, 다른 요인이 자살에 일부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 괴롭힘이 주된 원인인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이다.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법정감독의무자와 이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이 각각 부담하는 보호·감독책임의 범위 및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

KOR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과 사립학교 설치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서 "교사는 학교설치자의 피용자인 지위에 있으므로, 사용자인 학교 설치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한 감독자인 교장 등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교사가 그 업무의 집행 중에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교사에게 민법 제755조제2항 소정의 대리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여 바로 대리감독자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한 감독자에게 당연히 민법 제755조제2항에 의한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려면 책임무능력자의 가해행위에 관하여 그 대리감독자에게 고의·과실이 인정됨으로써 별도로 불법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국·공립학교의 교사는 공무원이고, 공무원인 교사의 주의의무의 위반내용은 실질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권력작용으로서의 학교교육활동에 관한 것이므로 국·공립학교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민법 제75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국가배상법 제2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나 경영자 개인이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교사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경과실만으로는 개인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4)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손해배상(기)

#### (1) 사건의 개요

I 광역시가 설치·운영하는 H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A(당시 만14세 4개월 정도)는 1996. 12. 14. 10:00경 체육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들어와 쉬는 시간에 같은 반 학생인 B등으로부터 A 등이 체육시간에 학교 담을 넘어 나갔다 오다가 들키는 바람에 체육교사인 소외 T로부터 같은 반 학생들이 단체로 약 5분 정도에 걸쳐 쪼그려뛰기 20회, 엎드렸다 일어나기 20회, 팔벌려뛰기 20회의 벌을 받아 화가 났기 때문에 폭행을 당하여 좌측 안와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B는 비록 공부를 못하고 성격이 급하나 본성이 착하여 평소 친구들을 때리거나 괴롭힌 일이 없으며, 피해자인 A와 같은 급우로서 별문제 없이 지내왔고, A도 비록 공부는 못하나 심성이 고운 학생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학생이었다. 이에 A의 보호자는 가해학생 B, B의 보호자 및 H중학교를 설치·운영하는 I광역시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2) 판결의 의의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에 관한 판례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만 14세 4개월의 중학교 2년생이 체육시간에 피해자의 잘못으로 체육교사로부터 단체기합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직후의 휴식기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KOR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경우, 가해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단체기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체육교사 또는 담임교사 등에게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본 사례이다.

## 4. 시사점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피해학생의 권리를 강조하면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의 수위를 높이자는 견해와 가해학생의 경우에도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도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었다. 다만 어느 견해이든 피해학생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자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가해학생의 조치를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도 자치위원회에 회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었지만 개정 법률은 교육적인 방법으로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화해시켜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에 일정한 재량을 주고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하도록 하고, 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일선 학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종전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교육지원청 내 심의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정방향은 일응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가해학생도 모두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목적과 회복적 사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내년 3월 새로운 개정 법률은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다. 모든 찬반의 견해를 반영한 완벽한 입법 자체가 가능할 수 없기에 개정 법률에 대해 우려와 비판적 견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개정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철저한 준비를 갖추어 충분히 예상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이번 개정을 통하여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향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화함으로써 학교폭력예방법이 더욱 진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및 대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의 치유와 가해학생의 재발방지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안전한 학교는 물론 학부모, 교사 등 관련 대상자의 회복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및 학교의 처리 과정,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 가해학생 재발방지 및 선도, 교사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안전한 학교, 학부모의 올바른 인식 등이 모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함께 개선되지 않고 어느 한편의 입장으로만 치우치면 기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54]

54) 최희영, 앞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76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Ⅲ

# 학교폭력 관련법제 등에 대한 해외 사례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5. 시사점

KOR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1. 미국

## 1) 법률

### (1) 연방법률

#### 가. 개관

미국의 경우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연방차원의 단일화된 법률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는 교육에 관한 권한이 각 주에 있고 따라서 각 주법에서 이를 규율하며 연방의 역할은 그 예방을 위한 지원활동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연방정부의 지원과 노력은 그동안 제정·개정을 거친 여러 연방법률 규정안에 잘 반영되어 있으며 다양한 교육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먼저 폭력 없는 학교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방이 지원하여야 할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법률로는 1994년 제정된 미국학교 개선법(The improving America' Schools Act of 1994)의 제4장 안전하고 약물없는 학교 및 지역사회를 위한 법률(Title IV: Safe And Drug-Free Schools And Communities Act : 이하 '안전한 학교법')을 들 수 있다. 동 법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연방정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재정지원외에도,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하에 학교폭력 방지 프로그램 개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한 전략 수립·시행, 폭력예방 프로그램 평가제 수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동 법에 의하면 각 학교는 학생의 술·담배·마약의 사용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 등의 소유·판매 등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년에 맞는 수준이어야 하며 그 내용으로는 학생 개인의 책임과 징계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동 법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략의 설계와 실천과정에서 학교 및 교직원, 학부모, 학생, 검찰과 경찰, 법원 관계자, 지역사회 유지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학교마다 상담, 위기개입, 또래상담, 지역사회프로그램,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과 안전대책 등 다양한 폭력예방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55]

학생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NCLB)의 '제4장 21세기 학교(Title

55) http://www2.ed.gov/programs/dvpsafeschools/index.html.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Ⅳ:21st century schools: Title Ⅳ)'에서도 안전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언급하고 있다. 즉 동 법에서는 연방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각 주와 각 지역 교육기관에 대하여 폭력과 약물로부터 모든 학교가 안전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학교폭력의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안전한 학교로 전학할 기회를 주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U.S. DOE, 2002).

미국의 경우 1999년 이전까지 연방법률상의 학교폭력 개념안에 집단따돌림(bullying)이나 괴롭힘(harassment)은 포함되지 않았었다. 교육기관에서의 집단따돌림을 연방 수정헌법이나 민권법(the Civil Rights Act), 수정교육법, 장애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종·피부색·종교 등에 따른 차별적 괴롭힘(discriminatory harassment)과 그 의미가 같은 것으로 이해하였던 까닭에 연방차원의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방교육부 민권국(U.S. Department of Education's Office of Civil Rights)이나 연방법무부 민권과(U.S. Department of Justice's Civil Rights Division)에 이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한 법률의 제정은 각 주에 일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56]

그러한 이유로 실제 집단따돌림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연방법률을 열거한다면 상당히 다양한데, 연방 수정헌법 제1조, 제4조, 제14조, 연방교육법 제9부(Title Ⅸ of the Education Act of 1972), 민권법 제6부(Title Ⅵ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인장애법 제2부(Title Ⅱ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장애인교육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IDEA)),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안전한 학교법(Safe and Drug Free Schools and Communities Act), 연방교육기록보호법(The Federal Educational Records Protection Act(FERPA)) 외 다수의 법률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1999년 콜로라도주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의 총기난사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연방정부는 모든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이 집단따돌림에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집단따돌림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각 주들도 같은 인식하에 앞 다투어 따돌림 방지법(Anti-Bullying Law)을 제정하게 되었다.

56) 염철연(2013), "미국의 따돌림 방지법 제정 동향 및 한국교육에의 시사점", 「교육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대한교육법학회, 188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먼저 연방정부는 2010년 4월 앞에서 언급한 안전한 학교법을 개정하여 집단따돌림과 괴롭힘을 학교폭력의 개념 안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학교 내 마약과 폭력을 근절하고 학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환경의 조성을 목표로 하여 학생의 마약 사용·소지·판매를 금지하고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상의 학교폭력 유형 안에 집단따돌림(Bullying) 내지 괴롭힘(Harassment)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2013년에는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중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을 계기로 1965년에 제정된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을 개정하여 안전한 학교 개선법(Safe School Improvement Act(SSCI))을 제정하게 되었다. 동 법은 초·중등학교에서 발생하는 집단따돌림과 괴롭힘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인 손상을 입히게 되어 잠재적 성취기반을 약화시키며 피해학생의 중퇴와 결석률을 높이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학업 성취도를 떨어뜨리게 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그 입법목적이 안전한 학교환경을 긍정적으로 조성하려는 데에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 법은 연방정부로 하여금 '지역 교육당국(local education agency)'에 대하여 따돌림 예방을 위한 모든 학교프로그램에 학생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적대적·학대적 교육환경을 예방·금지하는 정책들을 수립하도록 지시할 것과, 주 교육부 장관에 대하여서는 초·중등학교 내 따돌림 예방프로그램과 정책들에 관하여 격년제로 평가하여 이를 보고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다.[57]

이상의 제·개정 작업 외에도 연방정부는 집단따돌림의 예방을 위하여 각종 보조금의 지원과 따돌림 관련 정보수집 및 보고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연방차원의 입법작업을 여러 차례 시도한 바 있다. 예를 들면 1968년의 범죄 일괄 관리 및 안전한 거리 조성법(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s Act)의 개정을 통해서, 따돌림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에 연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연방법무장관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정부와 지방정부에게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따돌림 예방 및 개입에 관한 법안(Bullying Prevention and Intervention Act)이 2011년 1월 하원사법위원회(House Judiciary Committee)의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다. 그 외 지방교육의 의사결정에 관한 권한 위임법(Empowering Local

57) Nathan Bowling/Terry Beehr(2006), "Workplace Harassment from the Victim's Perspective: A Theoretical Model and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1-5, p. 998-1012.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Educational Decisionmaking Act)이 2011년 9월 발의되어 보건·교육·노동·연금 위원회(Committee on Health, Education, Labor, and Pension)에 상정되었는데, 이 법률안은 1965년의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청소년의 약물복용, 학교폭력, 집단따돌림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보조금의 지원,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강화시키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나. 안전한 학교법 운영 및 지원 시스템[58)]

안전한 학교법의 핵심내용인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활동은 연방교육부의 '안전하고 약물이 없는 학교정책실 (Office of Safe and Drug-Free Schools)'이 담당하고 있었다. 이는 2011년 9월부터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연방교육부의 '초·중등교육정책실(Offic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산하 '안전하고 건강한 학생정책실(Office of Safe and Healthy Students)'로 바뀌었는데 미의회가 2010년부터 학교폭력 근절과 관련하여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한 주(state)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재정지원 방식을 바꾸게 됨에 따라 이루어진 개편이라 할 수 있다.

연방정부가 행하는 주에 대한 재정지원은 공식에 의한 재원 배분(Formula Grant)과 경쟁에 의한 차등 재원배분(Discretionary Grants)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전자가 주정부와 지역교육청 등으로 골고루 배분되는 것이라면 후자는 공모나 경쟁선정 방식으로 특정 지역의 프로그램에 재원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정부의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와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등 다양한 정부부처가 협력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교육부와 법무무가 공동으로 행하는 학교폭력 자료 조사업무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연방교육부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보의 축적 및 관리를 위하여 재정지원을 받는 각 주정부에 대하여 학교폭력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보고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근거로 학교폭력예방 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고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58) 박주형·정제영(2012), "한국과 미국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관련 법령 및 정책 비교연구", 「초등교육연구」 제25집 제4호, 111면-114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또한 연방교육부의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역할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방교육부는 ① 건강, 정신건강, 환경건강, 체육 프로그램, ② 약물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각주 프로그램, ③ 약물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연방 프로그램, ④ 인격 및 시민교육 프로그램, ⑤ 정책 및 융합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민간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 후, 그 효과성에 대한 검증도 실시하고 있다:

안전한 학교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자문역할을 하는 '안전하고 약물이 없는 학교 및 지역사회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동 위원회는 연방과 지역중심의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에 대한 협조를 통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연구와 서비스 제공을 막고, 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 자료를 모으고 평가체제를 구축하며 나아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들의 확산을 촉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동 위원회 구성원은 교육부 장관을 비롯하여 정부행정기관 및 주정부와 지방정부, 교육기관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학자인 민간전문가도 포함될 수 있다. 위원회는 '교육과학연구원(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과 협동으로 교육, 연구, 평가, 프로그램 개발자, 지역 및 주 정부 대표자, 사업, 고등교육기관, 병원 및 법학단체로부터 뽑힌 15명의 인사로 구성된 '안전하고, 잘 훈육되고, 약물이 없는 학교를 위한 전문가 패널(Safe, Disciplined, and Drug-Free Schools (SDDFS) Expert Panel ; 이하 '전문가 패널'이라 약칭)'을 구성한다. 이 전문가 패널은 효과적인 학교의 폭력 예방 및 근절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선정하는 과정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공정성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동 기관이 우수한 사례로 평가한 프로그램은 단위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다. 무관용 정책[59]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무관용 정책(zero tolerance)'을 들 수 있다. 이는 비행의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비행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정책을 말하는데 총기나 마약 사건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채택된 것이다.

59) 강경래(2012), "학교폭력의 무관용정책(Zero Tolerance)", 「소년보호연구」 제19권, 한국소년정책학회, 129-166면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마약에 대한 '무관용 정책'이 법제화된 것이 학교마약금지법 (Drug-Free Schools and Campuses Act of 1989)이다. 이 법은 학교 내에서 희생과 교직원의 마약이나 알코올의 불법적인 사용·소지·배포를 금지하고 있으며 학교가 동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계적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연방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교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무관용 정책'을 채택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1994년 제정된 학교안전법은 미국교육개혁법이 규정한 2000년까지 미국 내의 모든 학교가 마약 없고,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는 점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어서 연방의회는 학교총기금지법(Gun Free 8choo1s Act of 1994)을 제정하였고 이 법률에 의하여 '무관용 정책'은 마약에 이어 학교 내 무기사용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되게 되었다. 이 법률은 연방기금 수령조건으로 학교 내에서 총기를 소지한 경우 각 주가 적어도 1년의 퇴학을 부과하는 주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무관용 정책'은 본래 총기, 무기 혹은 마약의 소지 등과 같은 중범죄의 경우에 적용되었지만 점차 흡연과 신체폭력과 언어폭력에서 발생한 소란행위까지 적용되는 방향으로 확대됨으로써 학교가 정한 모든 규칙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일관적이고 단호한 규정적용의 의미로 그 본래의 개념이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무관용 정책'을 소년사법에 도입할 것인가와 관련된 찬반 과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무관용정책'이 학교현장에 적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정책이 학교폭력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다수의 견해들[60]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들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기 학생들에 대해 실수도 용서하지 않는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처벌보다는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학교풍토와 학교공동체 의식을 개선시킴으로써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2) 각 주의 법률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사건 후 조지아주를 시작(1999년)으로 대부분의 주들이 집단 따돌림방지법을 제정하여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차별이나 폭력 및 따돌림 등을

60) 이에 대해서는 정일환·김영환(2012), "미국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제22권 제4호, 25면-50면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금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각 주별로 입법내용과 운영제도 등은 각기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예컨대 따돌림의 의의에 관한 정의규정을 법률안에 명시하는 주가 있는가 하면 다른 부처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는 주도 있다. 대부분의 주들은 법률안에 따돌림에 관한 정의조항을 두고 있으나 하와이, 메인, 뉴멕시코, 버지니아, 스콘신과 같은 주들은 주교육부에 이를 위임하기도 하고, 애리조나, 미네소타 주들은 지역 교육구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61] 이와 같이 각 주별로 따돌림 관련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이하기는 하나 대체로 따돌림의 보고 및 조사절차, 개입절차와, 징계절차, 기록과정, 부모관여 등을 그 구성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가. 조지아주의 법

1999년 미국 내에서 집단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최초로 입법화한 주는 조지아 주이다. 조지아 주의 집단따돌림방지법(Anti-Bullying Law)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집단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을 예방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동 법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공립학교 내에서의 집단따돌림 등을 금지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20-2-751.4), 집단따돌림 등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모든 학생들에게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20-2-145). 그외 학생 행동강령 안에 학교버스에 대한 안전규칙을 포함시키도록 할 것(§20-2-751.5)과 교사·학교버스 운전사 또는 기타 학교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한 신체적 폭력(§20-2-751.6)을 범한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을 규정하고((§20-2-751.6) 있으며, 나아가 학교버스나 학교버스 정류장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규정(§20-2-1181)도 함께 규율하고 있다. 또한 동 법에서는 학교폭력의 하나인 신입생 괴롭여주기(Hazing)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는데, 이는 학교내 단체 가입을 조건으로 신입생을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를 집단따돌림과 구별하여 독립된 다른 조항(§16-5-61)에서 따로 규율하고 있다.

조지아주법에서는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20-2-751.4). 이에 의하면 따돌림이란 ① 타인에게 해를 가하기 위한 고의적인 시도나 협박, ②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즉각적인 신체상해가 예상되는 폭력의 의

61) 염철연(2013), 앞의 논문, 191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도적 표현행위, 그 외에 ③ 협박, 괴롭힘 또는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는 고의의 글·언어적·신체적 행위로서 a) §16-5-23.1에서 의미하는 상당한 신체적 손상 또는 §16-5-23.1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시적인 신체적 손상을 유발시키는 행위, b) 학생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c) 너무 심각하고 집요하거나 만연하여 두렵거나 위협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d) 학교의 질서정연한 운영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학교재산, 학교차량이나 지정된 학교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학교 관련 행사나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모두 따돌림에 해당한다. 여기서 학교재산(School property)이란 학교버스뿐만 아니라 학교의 재산 경계 내에 있는 건물, 구조, 운동장, 놀이터, 주차장 또는 토지를 의미하며, 학교행사(School function)는 학생클럽, 댄스, 견학 및 주외 여행과 같이 학교가 후원하는 과외 행사 또는 활동을 의미한다.

사이버 따돌림(Cyberbullying)과 관련하여 동 법은 앞서 언급한 행위들이 학교의 컴퓨터나 컴퓨터시스템, 컴퓨터네트워크, 기타 지역사회 시스템의 전자기술을 통하여 접근되는 데이터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경우 전자적 의사소통이 a) 특히 학생 또는 학교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b) 구체적으로 명시된 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주로 학교의 질서있는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의도된 경우, 그리고 c) 학생 또는 학교 직원의 인격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합리적인 우려가 있거나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고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 밖에서 발생한 때에도 동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전자적 의사소통이란 전선, 라디오, 전자기시스템, 사진 전자시스템이나 사진 광학시스템에 의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전송되는 모든 표시, 신호, 글, 이미지, 음향, 데이터 또는 정보지식의 전송을 포함하며, 전자기술에는 휴대전화, 컴퓨터 및 태블릿과 같은 장치 및 장비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사이트, 문자메시지, 채팅 및 웹사이트를 포함한 통신도구도 포함된다.

동 법에 의하면 조지아 교육구는 따돌림을 금지하는 정책을 채택할 때에 학생의 행동강령 안에 이러한 정책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6학년 이상 12학년 학생이 한 학년에서 세 번 이상 집단 따돌림 행위를 한 경우 가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킴으로써 학교폭력 피해 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을 분리시키도록 해야 한다(§ 20-2-751.4 (b)). 그 외 조지아 교육구는 집단따돌림의 신고·보고 및 조사 절차, 집단따돌림에 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한 결과조치, 집단따돌림에 따른 보복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단따돌림 정책관련 주 모델의 구성 요소를 추가로 채택할 수 있다. 징계조치나 상담을 포함하여 집단따돌림 관련 정책의 필수 구성 요소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조지아 교육구는 주 보조금의 지원에서 배제된다. 조지아주의 집단따돌림 방지법에 의하여 조지아 교육구는 집단따돌림 예방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모든 학년 수준에 맞는 종합적인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하며, 조지아주 교육부는 지역 학교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집단따돌림 예방 교육프로그램 및 자료에 관한 웹사이트 정보를 개발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동 법에서는 집단따돌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부모를 참여시키기 위하여 조지아 교육구로 하여금 학생이 괴롭힘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괴롭힘의 피해자인 경우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62]

### 나. 뉴욕주의 법

뉴욕주의 경우 모든 학생에 대한 존엄법(The Dignity for All Students Act); 이하 DASA이라 약칭에서 학교폭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011년 7월 뉴욕주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종이나 성별, 성적 취향, 종교, 장애여부, 체중 등을 이유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차별이나 폭력 및 괴롭힘 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법률(DASA)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2012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DASA)에 의하면 학교 따돌림에는 집단적인 괴롭힘은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행해지는 개인적인 관계도 모두 포함된다.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에는 괴롭힘, 집단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이 있다. 괴롭힘과 집단따돌림의 개념과 관련하여서 동 법은 학교 내에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협박과 위협이나 학대를 의미한다고 정의하면서(Education Law §11(7)) 이러한 행위, 협박과 학대 유형으로는 a) 학생의 교육성과·기회 또는 혜택, 정신적·정서적 또는 신체적 건강을 불합리하고 실질적으로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행위 등, b) 학생이 신체적 안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는 행위 등, c) 학생에게 신체적 상해나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행위 등, d) 학교재산 밖에서 발생하지만 학교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지는 학교환경 내에 상당한

62) https://www.stopbullying.gov/laws/georgia/index.html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혼란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거나 혼란을 가져오는 행위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동 법은 사람의 실제 또는 인지된 인종, 피부색, 체중, 국적, 민족 집단, 종교, 종교적 행위, 장애, 성적 취향, 성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따돌림에 대해서도 이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 규정에 의할 때에 "위협, 협박 또는 학대"의 개념에는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본 조항이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 될 것이다. 사이버 따돌림이란 위에서 언급된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이 전자통신의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63]

동 법에 따라 학교와 교육구는 집단 따돌림을 금지하고 폭력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동 규범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러한 행동규범에 각 연령수준에 적합한 정책을 포함시켜야 하며, 모든 학교는 따돌림 사건을 처리할 책임 있는 존엄법 조정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는 따돌림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최소 1년에 한 번 뉴욕주 교육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건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고된 집단따돌림 사건에 대하여서는 문제가 발생한 학교가 아닌 제 3의 기관이 조사를 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가해자의 강제전학이나 피해자의 안전한 학교로의 전학을 주선한다. 특히 죄질이 심각한 집단적 괴롭힘의 경우, 다수의 가해자들을 멀리 떨어진 여러 학교로 분산시킴으로써 조직적인 만남을 방지하고 있으며 나아가 가해자들로 하여금 전에 다니던 학교로부터 500미터 이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를 금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이 내려지기도 한다. 학교외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하여서는 경찰이 바로 대응하여 형사처벌 할 수 있으며 학칙이 아닌 제 3자로 구성된 학교 교육위원회의 처벌 규정에 따라 카운셀링 세션, 점심시간 구금, 방과 후 봉사활동, 정학, 퇴학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64] 그러나 2013년 개정을 통하여 사이버따돌림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도 학교환경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동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게 되었다.[65]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교육을 통한 선도프로그램(Education reform program Social Services)에 관한 규정(Section 458-L)을 두고 있으며, 가해학생의 감독자인 부모, 교사, 학교, 주 교육부의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학교폭력 발생시 위기개입,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와 관리, 지역 전체 학교안전에 관한 계획과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여

63) http://www.p12.nysed.gov/dignityact(최종방문일 2019. 8.13)
64) www.gaok.or.kr/gaok/cmm/fms/FileDown.do?atchField=FILE....2
65) http://archive.advocate.nyc.gov/bullying/DASA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채택하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학교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66]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주요정책으로는 교육국이 주관이 되어 학생들간에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사건들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따돌림 인지법과 방지법 교육을 실시한다. 뉴욕주내 모든 학교는 복도에 따돌림 사건을 신고하는 핫라인 전화번호 알림판을 교내 곳곳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학교폭력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학교폭력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학교는 의무적으로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정시간의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선적이고 최대한의 피해자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따돌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는 중학교 과정부터 과목별로 능력별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조직화를 막고 또한 방과 후 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귀가 시간을 다양화시킴으로써 학생들 사이에 부딪칠 기회를 봉쇄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67]

### 다. 뉴저지주의 법

2010년 뉴저지 러커스 주립대에서 발생한 사이버 폭력에 의한 자살 사건이 미국 언론에 부각되면서 학교내 따돌림과 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재논의되자 뉴저지주는 2002년 제정된 집단따돌림방지법(Anti-Bullying Bill of Rights Act)의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이에 2011년 7월 집단따돌림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한층 강화된 입법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집단따돌림방지법이 마련되어 통과되었다. 동 법은 미국 내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 중 가장 엄격한 법률로 알려져 있다.

동 법도 집단따돌림에 대한 정의조항을 두고 있다(Title 18 A: 37-4). 특이한 것은 집단따돌림의 개념 안에 폭력이나 위협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학생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는 행동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 법에 의하면 괴롭힘, 협박 또는 집단따돌림이란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별, 성적 취향, 성적 정체성 및 표현 또는 정신적·신체적·인지적 장애와 같은 실제적 특징이나 인지된 특징, 기타 다른 눈에 띄는 특징에 의해 그 동기가 유발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되

66) 백경희·송승훈외(2019), "학교폭력의 범위 및 가해학생과 그 감독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미국의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논집」 제23권 제3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24-125면.

67) http://archive.advocate.nyc.gov/bullying/DASA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며, 일회성이든 연속적이든 상관없이 교내, 각종 학교 후원행사 및 활동, 스쿨버스 내 또는 공법(P.L.2010, c.122(C.18A: 37-15.3)) 제16조에서 규정하는 학교외 지역에서 발생하고 학교의 질서정연한 운영이나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상당한 수준으로 방해하는 모든 행동과 글, 말, 신체적 행동 또는 전자적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그 외 a) 합리적인 사람이 주어진 상황하에서 판단하건데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해를 입히거나 재산의 피해를 초래하거나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해가 자신에게 가해지거나 자신의 재산을 손상시킬 것이라는 합리적인 공포를 느끼게 하고, b) 학생이나 학생이 속한 그룹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c)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거나 해당 학생에게 지나치거나 과도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끼쳐 적대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모든 행동과 글, 말, 신체적 행동 또는 전자적 의사소통도 이에 해당한다.

동 법에 의하여 각 교육구는 교내, 각종 학교 후원 행사 및 활동, 스쿨버스에서의 괴롭힘, 협박, 집단따돌림 금지 정책을 채택하여야 하며 정책채택과정에 학부모나 보호자, 교직원, 자원봉사자, 학생, 행정 담당자, 지역 사회 대표들이 참가하여야 한다(Title 18 A: 37-15 a).

집단따돌림 사건이 목격되거나 이에 관한 신뢰할만한 정보가 접수된 경우에는 교직원들은 당일 집단따돌림 등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 학교장에게 구두로 보고한 뒤 2일 이내에 서면보고를 해야 하며, 학교장은 해당 사건에 관련된 모든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Title 18 A: 37-15 b(5)).

그 외 동 법은 집단따돌림 등의 조사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처벌대책의 내용은 뉴욕주와 비슷하나 다만 해당 학교장이 사건조사의 총괄자가 되고 처벌결정에도 교육위원회와 함께 참여하게 된다. 즉 학교폭력 사안은 발생당일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조사는 학교운영일 기준 1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는데, '학교 집단따돌림 전문가'가 이 조사를 수행한다. 조사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 되어야 하며 집단따돌림 등의 사건이 서면으로 보고된 날로부터 1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주 교육위원회가 제정한 규칙들을 준수하여 조사 종료 후 학교 운영일 기준 2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교육감은 조사 내용의 결과에 따라 중재 서비스 제공, 집단따돌림 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수립, 학교환경 개선, 처벌, 상담명령을 결정하거나 다른 적절한 조치들을 실행, 추천할 수 있다. 조사가 종료된 이후 각 조사결과는 첫 교육위원회 소집일 이전에 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에 보고되어야 하며 이 경우 제공된 모든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수립된 훈련 프로그램, 부과된 처벌 내용, 교육감이 실행하거나 추천한 기타 다른 조치들이 함께 보고되어야 한다(Title 18 A: 37-15b(6) (a), (b),(c)). 위원회는 보고서 수령 이후 열리는 첫 교육위원회 모임에서 교육감의 결정을 확정, 거부, 또는 수정하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과 규칙이 명시하는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고 이는 교육국장에게 하여야 한다(Title 18 A: 37-15b(6)(e)).

집단따돌림의 당사자의 부모나 보호자에 대한 관련 정보제공 조항과 청문회 요구권에 관한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즉 집단따돌림의 당사자 부모 등은 연방 또는 주법과 규칙에 따라 조사의 성격을 비롯해 해당 교육위원회가 집단따돌림의 증거를 찾았는지, 처벌이 부과될 것인지, 집단따돌림 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인지 등 해당 조사에 관한 정보를 수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조사 결과가 위원회에 보고된 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부모나 보호자는 해당 정보를 받은 뒤 위원회를 상대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청문회는 해당 요청이 있은 지 1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청문회는 학생의 비밀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Title 18 A: 37-15b(6)(d)).

각 학교 내에 학교장이 임명하는 '학교 집단따돌림 방지 전문가(School anti-bullying specialist)'를 두도록 하며 그 임명절차와 의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각 학교 학교장은 '학교 집단따돌림 방지 전문가'를 임명하여야 하는데 이는 주로 상담교사나 학교 심리상담사, 이와 유사한 훈련을 받은 자로 임명한다. '학교 집단따돌림 방지 전문가'는 학교 안전팀의 의장으로서 학교 내 집단따돌림 사건의 조사를 주도하며, 집단따돌림의 예방, 발견, 해결하는데 주된 역할을 담당한다(Title 18 A: 37-20 a).

또한 교육감은 교육구 직원 중에서 '교육구 집단따돌림 방지 조정인(District anti-bullying Coodinator)'을 임명해야 한다. 이는 집단따돌림을 예방·발견·개선하는 교육구 정책을 조정하고, '학교 집단따돌림 방지 전문가', 교육위원회, 교육감 등과 협력하여 집단따돌림을 예방·발견하거나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교육감과 협력하여 집단따돌림과 관련된 자료를 교육부에 제공하며, 교육감이 요구하는 집단따돌림과 연계된 기타 다른 의무사항들도 수행한다. '교육구 집단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따돌림 방지 조정인'은 매 학년마다 최소 두 번 이상 교육구내 '학교 집단따돌림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고 해당 교육구 내의 괴롭힘, 협박, 집단따돌림을 예방·발견·개선하기 위한 절차와 정책을 논의하고 강화해야 한다(Title 18 A: 37-20 b, c).

동 법에 따라 각 학교는 바람직한 학교 환경을 개발·조성·유지하고 따돌림과 같은 학교 환경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 안전팀(The school safety team)'을 만들어서 한 학년 당 적어도 2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학교 안전팀은 학교장과 학교장이 지명하는 학교 상급 행정책임자, 학교 교사, '학교 집단따돌림방지전문가', 학부모로 구성되며 의장은 '학교 집단따돌림 방지 전문가'가 맡는다. '학교 안전팀'은 교장에게 보고된 집단따돌림 고발장과 집단따돌림 사건의 조사 이후 작성된 모든 보고서의 사본을 접수하며, 집단따돌림의 양상을 확인·개선하고, 집단따돌림 예방과 개선을 위해 학교 환경과 학교 정책을 재검토하고 강화한다. 그 외 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해 학생, 교사, 행정직원과 학부모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교육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교육구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교육구의 집단따돌림 방지 조정인들과 협력한다(Title 18 A: 37-21 a, b, c).

그 외 집단따돌림의 가해학생의 처벌을 강화시켰고 학교내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따돌림사건의 법적 책임을 학교와 교육당국이 지도록 하며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한 교육관계자 자격박탈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집단따돌림 방지정책과 연결되는 링크가 교육구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눈에 쉽게 띄도록 게재되어야 하며, 해당 교육구 내의 학교에 입학한 학생을 둔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해마다 배포되어야 하며 '지역 집단따돌림 방지 조정인'의 이름, 학교 전화번호, 학교 주소, 학교 이메일 주소 등도 교육구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야 한다. 또한 각 학교의 웹사이트 홈페이지에도 학교 집단따돌림전문가 및 교육구 집단따돌림방지 조정인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가 게시되어야 한다(Title 18 A: 37-15b(12)).

학교와 교육구는 집단따돌림 예방 프로그램을 매년 수립·실행·기록·평가해야 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집단따돌림 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이때 교육구는 교육부, 뉴저지 주 변호사 협회 또는 기타 다른 단체의 협조를 받아 이용 가능한 집단따돌림 예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Title 18 A: 37-17a, b).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뉴저지주에서는 매년 10월 첫 번째 월요일로 시작하는 주간을 "존경의 주간"으로 지정해서 각 학년 눈높이에 맞는 집단 따돌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프로그램 필수사항으로 법집행 요원을 초청해야 하고,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측 모든 직원도 학교폭력을 인식 및 대처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학부모의 참여를 이끄는 방안도 구성해야 한다(Title 18 A: 37-29).

### 라. 캘리포니아주의 법

캘리포니아주는 교육법에서 학교폭력을 유형화하여 개념정의하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다양한 제재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로 집단따돌림, 괴롭힘, 사이버 성적 괴롭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에 따르면 집단따돌림이란 서면이나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작성된 의사소통을 포함하여, 심각하거나 교묘한 신체적 또는 언어적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끼치기 위해 다른 학생을 유도하는 것, 이성적(일반적) 학생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실질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일반 학생의 학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도록 유발하는 것, 일반 학생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이나 특권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상당히 방해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캘리포니아주 법에서는 특이하게 사이버 성적 괴롭힘(Cyber Sexual Bullying)을 학교폭력 안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 또는 기타 시각적 기록을 다른 학생 또는 학교 직원에게 보급하거나 배포하려거나 전자적 행위를 통해 이를 보급하거나 유포 또는 선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괴롭힘(Hazing)의 경우 학생에게 심각한 신체 손상이나 신체적 손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 조직이나 기관에 의한 행위를 의미한다(§§ 48900-48900.9.).

이상의 학교폭력을 행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퇴학, 사회봉사, 교사와의 면담, 학교 상담사 등에 상담을 의뢰하는 것, 심리 사회적 또는 정신 분석적 평가를 의뢰하는 것, 사회적 행동이나 분노 관리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에 등록하게 하는 것,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참여하도록 하는 것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48900). 4학년 이상 12학년 학생의 경우 학교 직원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대, 위협 또는 협박에 의하여 수업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거나 그 권리를 침해한 경우 학생이나 직원의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에게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가해학생의 출석이 다른 학생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 정학 외에 다른 적절한 교정수단이 없을 때에는 정학처분을 할 수 있다.[68]

### 마.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법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따돌림 방지법은 몇 가지 점에서 다른 주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먼저 학생외에 교직원도 학교폭력의 피해대상자로 하고 있다는 점과, 통상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학교폭력을 규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학교의 범위를 전문대학과 대학으로 확장하였으며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그 내용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신입생을 괴롭리는 행위(Hazing)를 금지하면서 이를 2급 경범죄로 처벌하며(Article 9. § 14-35), 18세 이상인 학생이 컴퓨터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직원을 위협하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사이버 따돌림을 행한 경우도 2급 경범죄로 처벌하는 규정(Article 9. § 14-458.2)을 두고 있다. '신입생을 괴롭리는 행위(Hazing)'는 단체, 운동팀, 남학생클럽, 여학생클럽 혹은 다른 유사한 그룹 등 학교그룹에 들어가기 위한 선발과정의 일부나 회원의 전제조건으로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따돌림 내지 괴롭힘(Bullying and Harassing behavior)'을 들고 있는데 동 법에 의하면 학교 교내, 학교 소유지, 스쿨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① 학생이나 학교 직원에 대하여 신체적 상해 혹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실제적인 위험에 노출시키거나, ② 학생의 교육성과, 기회 또는 혜택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거나 악화시키는 적대적인 환경(A Hostile Environment)을 창출하는 신체적 행동을 비롯하여 서면, 사이버 또는 구두에 의한 의사소통하는 행위, 위협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의 표현을 의미한다.

또한 동 법에서는 사이버 따돌림의 세부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상세히 나열하여 명문화하고 있다(Article 9. § 14-458.1). 전자 메일이나 기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특정인 등 대하여 저속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Flaming), 반복적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이메일 등을 통해 공격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Online harassment)과 같이 일반적인 사이버 따돌림 이외에 가짜 웹사이트를 구축하거나, 인터넷 채팅방, 전자우편, 단

68) 백경희·송승훈외(2019), 앞의 논문, 125면-126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문메시지에서 피해자인 척하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와 관련된 은밀하고 개인적인 혹은 성적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타인이 올리도록 권유하는 행위, 인터넷에 피해자의 실제 혹은 변형된 이미지 게시하거나 암호 보호 계정에 침입하거나 암호를 훔치거나 하는 것을 포함하여 컴퓨터 네트워크, 컴퓨터 데이터,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접근, 변경 또는 삭제하는 행위, 피해자를 스토킹하거나 괴롭히도록 제3자를 자극할 의도를 가지고 글을 작성 배포하는 행위,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고통을 줄 목적으로 음란물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하는 행위, 피해자의 허가 없이 전자우편 목록에 등록시키거나, 신참에게 협박 또는 고통을 줄 목적으로 정크 메일 메시지 및 인스턴트 메시지를 수령하게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69]

### 바. 아이오와주의 법

괴롭힘과 따돌림을 안전한 학교환경을 유지하려는 교직원의 노력과, 학습하고 성취하려는 학생의 능력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짓고 아이오와주내 모든 학교의 괴롭힘과 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하여 따돌림 및 괴롭힘 방지법(Iowa Code § 280.28 (2012)이 제정되었다.

동 법에 의하면 “괴롭힘(harassment)”과 “따돌림(bullying)”이란, 피해 학생의 실제적 또는 지각된 기질이나 특성에 기초하여, a) 학생 개인이나 재산에 대해 손상을 입히려는 의도로 공포감을 주는 행위. b) 학생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실질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 c) 학생의 학업성취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d) 학교가 제공하는 제반 활동에 참여하거나 그런 활동으로부터 향유할 수 있는 혜택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적대적인 학교환경을 조성하려는 전자적, 문어적, 구어적, 신체적 행동이나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학생의 기질 또는 특성(trait or characteristic of the student)”이란, 연령, 피부색, 신조, 국적, 인종, 종교, 결혼여부, 성별, 성적 취향, 젠더 정체성, 신체적 특성,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 장애, 조상, 정당선호도, 정치신념,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동 법에서는 면책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채택된 정책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교육구는 공인된 비공립학교가 지정한 교직원에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괴롭힘이나 집단따돌림 사건을 신고하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에 대하여 사건과

69) 백경희·송승훈외(2019), 앞의 논문, 127면-128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관련하여 초래되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그 외 동 법에서는 따돌림 방지 정책의 공표, 예방프로그램의 개발과 보조금의 사용 범위, 교육구와 학교의 책임한계, 자료수집에 관한 시스템 개발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70]

## 2) 학교폭력(따돌림)의 유형 및 실태

### (1) 유형

미국의 학교폭력 개념 안에는 심각한 폭력범죄와 단순 폭행행위가 모두 포함되는데 이러한 학교폭력 중 가장 심각한 유형은 교내 총기사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폭력적 사망(Violent Deaths)'이라 부르는데 학교 교내, 학교소유 부동산, 통학로 등의 장소에서 수업·통학·공식적인 학교행사 참석 중에 발생한 학생·교직원 등에 대한 살인·자살, 공권력을 통한 체포과정 중의 살해 행위로 정의된다. 1999년 총기난사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미국사회는 이러한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이 바로 집단따돌림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주들은 집단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괴롭힘 등을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따돌림방지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집단따돌림(bullying)이란 힘의 차이가 나는 학생들간의 공격적 행동이 반복되어 발생했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를 의미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주의 법률에서 개념정의하고 있는 집단따돌림에 대한 의미는 각 주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각 주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집단따돌림의 개념과 관련하여 그 공통된 요소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의 유형중 사이버 따돌림과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의 주들의 법률은 이를 규율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반면에 다른 유형인 집단따돌림(Bullying)과 괴롭힘(Harassment)의 경우에는 주별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뉴욕주 법에서는 '집단따돌림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괴롭힘만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조지아주 법에서는 괴롭힘 대신 신입생 곯여주기(Hazing)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각 주는 집단따돌림에 대한한 통일된 정의를 내리는 대신 '집단따돌림'과 '괴롭힘'을 분리 또는 조합하여 정의를 내리거나, 집단따돌림의 정의에 괴롭힘의 정의

70) 염철연(2013), 앞의 논문, 194면-195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를 포함시켜 규정하기도 한다. 즉 개념정의와 관련하여서 볼 때 사이버따돌림에 대한 정의는 각 주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집단따돌림과 괴롭힘의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규정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대부분의 주들은 이 두 유형의 폭력을 동일한 의미로 보아 함께 정의하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각각의 정의를 따로 규정하는 주들도 있다. 예컨대 플로리다주의 공립학교 내 집단따돌림에 관한 법률(Act relating to Bullying in the Public School System)에서는 이를 각기 다른 개념으로 보아 달리 설명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집단따돌림을 놀림, 사회적 배제, 위협, 협박, 스토킹, 신체적 폭력, 절도, 성적·종교적 인종적 괴롭힘, 굴욕감, 재산파괴 등을 수반하여 학생 1인 이상에게 체계적이고 만성적으로 신체피해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1006.147(3)(a))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괴롭힘은 학생이나 교직을 대상으로 하여 1) 학생이나 교직원이 본인이나 본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타당한 공포를 느끼게 하거나, 2) 학생의 성적이나 기회, 이익을 상당히 방해하거나, 3) 학교운영의 질서를 상당히 저해하는 위협이나 모욕, 인간성 말살행위, 데이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서면 또는 구두, 신체에 의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006.147(3)(c)).

미국 주들 대부분이 학교 내 따돌림이라 하여 교내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로만 한정하여 이를 이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교내, 운동장 스쿨버스 안이나 스쿨버스 주차장은 물론 수업이 끝난 직후, 수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밖 장소, 학교 후원 활동이나 행사, 교직원이 현장에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학교폭력으로 보고 관련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따돌림의 경우 학교내 시스템의 전자적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대상이 학생이나 교직원인 경우에는 학교폭력을 본다는 규정들이 도입되었다.

또한 집단따돌림의 수단을 폭넓게 인정하여 문자, 언어적·신체적 행위, 전자통신에 의한 경우를 모두 망라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행위가 일시적으로 행하여졌던 지속적이든 묻지 않는다. 즉 대부분의 주들은 따돌림의 수단으로 문자, 언어(verbal), 신체(physical) 등을 나열하고 있으며 비교적 최근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해 증가추세에 있는 전자통신에 의한 따돌림이 포함되게 되었다. 따라서 정신적·신체적·감정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따돌림이 욕, 조롱, 무시, 가혹한 비난, 중상모략, 인종차별 비방, 경멸의 발언 등 언어의 형태를 띤 경우, 때리기, 질식시키기, 차기, 물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기, 꼬집기, 할퀴기, 팔다리 비틀기, 침 뱉기, 소지품 등의 훼손과 같은 신체적 형태의 폭력 외에 찡그리고, 비웃고, 얕보듯이 낄낄 웃고, 소외감을 나타내는 몸짓 언어와 같은 미묘한 제스처를 통해 고립, 배척 소외의 형태로 발생한 경우 모두 학교폭력의 범주 안에 포함되게 된다. 최근에는 사이버 따돌림의 유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사이버 따돌림은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 등을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이에 국한되지 않고 인터넷 게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성매매 사이트 등 불법, 음란 사이트에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노출시키는 행위로 적용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이유와 근거를 자세히 나열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는 육체적인 외모, 인종이나 민족, 성별, 장애, 종교, 성적(性的) 취향 등이 있다.

### (2) 실태

미국 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관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이를 통계화하고 있는 미교육부 산하 국립교육통계센터(National Educational Statisti- cs)와 미 법무부 산하 법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tsics)의 보고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은 매해 30-60건이 발생하며 매년 10명 이상의 학생이 사망하고 5명-10명의 학생이 자살하고 있다.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 38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에서 15명이 살해당하고 7명이 자살한 것으로 밝혀졌다.[71] 또 국립교육통계센터 2017년 '학교 범죄와 안전에 관한 지표 (Indicators of School Crime and Safety: 2017)'에 의하면,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 30일 기간 동안 학교와 관련된 폭력적 사망으로 인하여 47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72] 이러한 통계에 의할 때 학교폭력 유형중 가장 심각한 형태인 폭력적 사망의 경우 매해 평균 건수 안에서 큰 증가나 감소 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에는 12세-18세 연령의 학생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약 749,400 건의 절도 및 비치명적 폭력에 의한 학교폭력 피해사건이 발생하였다.[73] 이는 2008년의 경우 범죄피해를 경험하였다고 밝힌 1천 2백 만 명의 학생중 619,000명이

71) 김효진(2012), "미국의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 실태 및 법률현황", 「보건복지포럼」, 161면
72) 백경희·송승훈외(2019), 앞의 논문, 121면
73) 백경희·송승훈외(2019), 위의 논문, 121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절도를, 629,800명이 비치명적인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한 것에 비하여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학교폭력의 발생장소로는 학교안의 발생률이 학교 밖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나 흉악폭력의 경우에는 학교 밖의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 내에서는 1천 명 당 47명이 범죄피해를 경험하고 학교 밖에서는 1천 명 당 38명이 피해를 경험하였으나 흉악 폭력범죄의 경우 학교 내에서는 1천 명 당 4명이었으나 학교 밖은 1천 명 당 8명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 내보다 높았다. 학교폭력 피해아동 특성을 살펴보면 여학생 보다 남학생의 발생률이 높았으며 흑인학생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다. 가구의 소득이 15,000달러 이하인 학생의 학교폭력 발생률은 1천 명당 7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폭력의 경우 최하소득 가구인 경우 1천 명 당 54명이 발생하여 가장 높았다. 반면 75,000달러 이상 가구의 경우 심각한 폭력이 1천 명당 1명으로 모든 소득구간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관련하여 2008년-2009년 동안 12~18세 학생의 28.0%가 피해를 경험한 나타났고, 2011년에는 9학년-12학년생 중, 20.1%가 따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는데,[74] 이 비율은 2009년의 19.9%보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성별로는 여학생 (22.0%)이 남학생(12.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고, 학년별로는 9학년(24.2%), 10학년(22.4%), 11학년(17.1%), 12학년(14.2%) 순으로 고학년일수록 따돌림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별로는 백인(22.9%), 히스패닉(17.6%), 흑인(11.7%) 순으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75]

사이버 따돌림의 경우 2011년 9학년-12학년생 중 이메일, 채팅방, 인스턴트 메시징, 웹사이트, 문자 메시지 등 '전자도구를 통한 따돌림(electronically bullied)'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16.2%를 나타났는데 성별로는 남성(10.8%)보다 여성(22.1%)이 두 배 이상 많았다.[76] 학교폭력의 대상이 교사인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2014년-2016년 동안에 공립학교 교사 중 10%가 학생들로부터 협박을 받은 바 있고, 6%는 신체적 공격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77]

---

74)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June 8, 2012, p.9.
75)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June 8, 2012, p.9.
76) 염철현, 앞의 논문, 186면.
77)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Indicators of School Crime and Safety: 2017. 32·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민간 조사업체인 월릿허브(Wallethub)에서는 매해 교내와 사이버에서 발생한 따돌림 사건의 비율, 현황, 가해학생당 상담사 및 치료사의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 발생률이 적고 이에 대한 규제와 대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주의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2018년에는 매사츠세츠주의 경우 학교폭력의 발생률이 가장 적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다음으로는 버몬트주, 델라웨어주, 버지니아주, 콜로라도주, 워싱턴 DC, 캘리포니아주 등이 선정되었다.[78]

### 3)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 (1) 창의적 갈등해결 프로그램(Resolving Conflict Creatively Program)[79]

뉴욕주는 '또래조정제도(peer-mediation program)'를 기초로 하고 있는 '창의적 갈등해결 프로그램(Resolving Conflict Creatively Program: 이하 RCCP)'을 채택·운영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뉴욕시의 조사결과 이 프로그램 시행 후, 교사의 71%가 학교에서 신체적 폭력이 크게 감소하였다고 답변하였고, 특히, 전체답변자의 98%가 또래조정 제도가 학생의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교육대학의 '협력과 갈등 해결을 위한 국제센터'에서 뉴욕시의 대안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또래조정 제도와 관련하여 갈등 해결 훈련을 받은 학생들의 경우 스스로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갈등이나 폭력의 피해를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뉴욕주의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교육자 모임(Educators for Social Responsibility; ESR)과 뉴욕 주 교육위원회가 공동 개발한 것으로 미국 전역에서 16개 교육청과 400여 학교가 실시하고 있다. 이는 동료간에 친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하여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도록 가르치는 프로그램으로서 동료간 갈등상황을 동료가 제 3자 관점에서 중재하거나 조정하게 하는 훈련으로 이루어져 있다.

'창의적 갈등해결 프로그램'의 내용에는 교사가 가르치는 18시간~24시간 동안의

33. https://nces.ed.gov/pubs2018/2018036.pdf (최종방문일 2019. 8. 13.).

78) https://wallethub.com/edu/best-worst-states-at-controlling-bullying/9920/ (최종방문일 2019. 8.13.)

79) 류병관(2013) "학교폭력 예방책으로서 "또래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미국학교의 또래조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23권, 한국소년정책학회, 61면-84면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교육이수 후, 창조적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수업을 듣게 하는 것과 '동료학생 중재자(Peer Mediators)'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학교장 교육, 학부모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기술의 습득과 갈등상황에 대한 접근방법, 그리고 학생들 상호간 집단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상승시키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려는 데에 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갈등상황에서 수동성과 공격성 이외에 다른 반응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준 후, 이러한 반응으로 인한 선택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나타날 수 있도록 돕는 훈련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문화를 존중하도록 하고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도록 가르친다. 교과과정은 모두 51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건강한 의사소통, 효과적인 감정표현과 인식들을 위한 학습, 갈등분석 및 해결, 선입견 및 편견억제,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의 인식, 정서 경험, 협동심, 자기주장 개진 훈련 등이 있다.

뉴욕주의 프로그램이 기초로 하고 있는 또래조정제도는 중립적 위치에 있는 학생이 갈등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분쟁을 평화롭게 중재하는 제도이다. 즉 동년배가 겪는 갈등 또는 분쟁을 같은 또래가 조정자가 되어 제3의 관점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서 갈등하는 두 또래가 서로의 갈등을 이해하고 해소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자신의 갈등문제에 대하여 듣고 질문하는 방법을 통해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개발하게 하려는 것이다. 동료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훈련을 통해 자신들의 갈등이 객관적이면서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이러한 조정정과정을 통하여 공정성을 인지함으로써 갈등문제에 대한 객관적 판단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갈등의 해결수단으로서 매우 유익한 학습방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래조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참가자들 간에 논쟁자와 조정자가 지켜야할 기본 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조정자는 중립을 지켜야 하고, 논쟁자들은 욕설이나 상호비난과 방해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모두 다른 논쟁자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기본규칙이 제시되면 바로 조정과정이 진행된다. 이 경우 논쟁자 중 한명이 갈등의 한 단면을 주장하면 중재자는 논쟁의 당사자가 그 쟁점을 들을 수 있도록 다시 이 주장자의 의견을 반복하여 들려주고 또 다른 논쟁자도 자기 갈등의 단면을 소개하고 중재자가 반복한 뒤, 두 논쟁자는 서로에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감정이 어떠한지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을 하게 된다. 그 다음 양쪽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단계를 거친다. 두 논쟁자는 조정자와 비공개로 그들의 문제와 감정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후에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두 논쟁자는 조정자의 조정안들을 기록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두 논쟁자는 두 사람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중재안이 나올 때까지 조정안의 수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다만 논쟁의 당사자들이 조정자와의 대화를 사전에 거부하였거나, 문제해결에 가깝게 다가가지 못했다면 절차는 더 진행되지 않는다. 마지막 단계에서 두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게 되면 또래조정회의에 참여하였던 학생들은 조정안을 작성하게 된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그 조정안에 동의하였다는 이유에서 스스로 구속받게 되어 그에 따른 의무를 더 잘 이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뉴욕시 외에 뉴멕시코나 코네티컷의 학교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는데 특히 코네티컷의 이스트 하트퍼드 고등학교에서는 본 프로그램을 실시한 첫해에 정학처분 수가 2,570건에서 1,438건으로 44% 감소하는 좋은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 (2) 세컨드 스텝 프로그램(Second Step Program)

학생들의 폭력적 행동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학령기 이전의 4세부터 중학교 연령인 14세까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며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인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교사가 실시하는 학급 단위의 교육과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공격적인 행동이 사회적 기술의 결여에서 기인되었다는 연구결과에 기초한다. 즉 폭력성향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공감능력, 충동조절능력, 문제해결능력, 분노조절기술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역할극, 언어 중재 기법들을 통해 청소년의 공감능력이나 대인관계 문제해결 능력, 충동·분노조절능력 등을 배양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시애틀 교육청이 시범사업으로 출발하였으며, 운영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통제집단 학생보다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80]

80) 이승현·노성호(2014) 청소년 따돌림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총서 13- AA- 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8면-199면 참조.

KOR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 충동성에 대한 통제, 분노조절의 발달 등을 통해 아동의 사회관계에 필요한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충동적·공격적인 행동을 줄여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며 긍정적·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려는 데에 있다. 이 프로그램은 모델링, 리허설, 역할극, 그리고 언어중재과정(verbal mediation)의 활동기법을 사용하며 이러한 기법들은 관점채택(공감)이나 충동통제, 분노조절과 같은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 프로그램은 연령에 따라 두 그룹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취학연령 이전부터 5학년까지이고 다른 하나는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그룹이다. 전자의 경우 1년에 20~25과목을 이수하며, 후자의 경우 처음 1년은 15과목을 이수하고 나머지 2년은 1~8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교수방법으로는 토론, 교사 모델링, 역할극이 포함되며, 학급토론, 역할극, 모델링, 교정적 피드백, 긍정적 강화가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로 강조되어 사용된다.[81]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2회 30분씩 각 학급별로 진행되며 유치원생의 경우 6주간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현재 플로리다주내 67개 중 13개의 교육국에서 시행되고 있다.[82]

### (3) 공격자, 피해자 및 방관자 입장에서 본 폭력예방을 위한 사고와 행동 프로그램 (Aggression, Victims, and Bystanders: Thinking and Acting to Prevent Violence)

폭력에 많이 노출된 학생들에게 폭력과 부적절한 공격의 예방을 위하여 기획된 프로그램으로서, 총 4주에서 12주 동안 주 1회에서 3회까지 실시되며 1회에 45분간 진행되는 수업으로 보건교사, 언어치료교사, 학교담당경찰관, 체육교사에 의하여 실시되며 청소년들에게 공격자와 피해자, 방관자의 역할을 검토하게 함으로써 문제해결기술을 개발하고 연습을 통하여 폭력을 사용하려는 생각을 재고하게 하며, 갈등에 대하여 생각하고 반응하여 새로운 방법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학생들이 갈등상황이 생길 경우 잠시 멈추고 사고를 할 수 있게 도와주어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준다.[83]

---

81) www.promoteprevent.org/publications/ebi-factsheets/second-step-violence-prevention-curriculum.
82) Florida Department of Education, Florida Safe and Drug-Free Schools Program: State Report for 2009~2010.
83) 이승현·노성호(2014) 앞의 연구보고서, 199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4) 가해학생 선도 및 관계회복프로그램[84]

연방정부는 민간 학교폭력방지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지원하고 각 주들도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워싱턴의 해밀턴 피시 연구소(Hamilton Fish Institute)는 학교 차원의 예방 전략을 개발·평가하고, 학교안전에 대한 종합대책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오레곤주 레인시의 레인교육서비스지구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레인스쿨은 가장 심각한 행동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안적 환경을 제공하는 공립학교이다. 1학급당 학생 수를 3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4학급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가해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학교의 복귀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학교의 프로그램은 개별화된 개입을 하여, 타인과의 의사소통 문제 해결과 학업성취도 향상에 중점을 두며 레인스쿨의 교사는 학교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분명한 규칙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분노감정에 대한 대안적 반응을 교육하며, 공격 행동에 대하여 조기에 개입하고 확실한 처벌을 통해 가해 행동을 조기에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 (5) 기타

현재 총기사고와 같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3단계 예방모델이 있다. 먼저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개념과 위험성을 인식시키는 교육을 실시하고 두 번째 단계로 학생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류 등을 회수하여 학교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조기에 제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해학생을 학교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다. 그 밖에 가족치료·약물예방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으로 '청사진 프로그램(blue print program)'이 있다.[85]

1999년 콜로라도 고등학교 총기사고 후 교육부와 대통령경호실에서 실시한 정책으로서 안전한 학교 프로그램(Safe School Initiative)이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의 생각과 계획, 사전행동 등을 연구해서 공격적 행동을 하기 전에 나타나는 행동을 사전에 찾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

84) 이승현·정제영외(2014),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 정책의 효과성 분석연구, 연구총서 14-AA-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6면-157면.

85) 정향기(2017), "학교폭력 예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동다대학교 대학원, 75면-83면 ; www.promoteprevent.org/publications/ebi-factsheets/peers-making-peace(최종방문일 2019. 8. 15.)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2. 영국

### 1) 발생실태

영국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하여 전체적인 학교폭력 피해율은 낮은 편이나 유독 따돌림의 피해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집단따돌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학교폭력문제에 대처해 오고 있다.

2008년 영국의 "국가 집단따돌림 조사(UK's National Bullying Survey)"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율은 4% 정도로 나타나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으나, 반면 집단따돌림의 경우에는 그 피해를 경험하였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부모의 87%는 자녀의 따돌림을 경험한 바 있다고 하였고, 아동의 경우 69%가 그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아동의 20%는 따돌림을 가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집단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아동도 8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영국의 집단따돌림 예방 정책이 다각도로 실시됨에 따라 집단따돌림 발생비율이 많이 감소하였다고 해도, 다른 유형의 학교폭력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12세~25세의 조사대상자 중 54%가 따돌림을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22%는 타인에게 신체적 폭행을 가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2018년 '어린이를 위한 자선단체'인 NSPCC와 National Children's Bureau에서 만든 '따돌림방지모임(Anti-Bullying Alliance; ABA)'이 행한 조사에서 영국 중·고등학생 중 45%가 따돌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해, 중·고등학교 한 학급에서 한 명꼴로 따돌림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11세에서 16세 사이 학생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4%에 해당하는 학생이 매일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했고, 지난 6개월 사이에 한 번이라도 따돌림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45%, 사이버 폭력을 받았다는 응답도 34%였다. 그외 6개월 사이에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한 학생도 87%나 되었으며 집단따돌림이 일어나는 장소는 학교가 75%로 가장 높았으며, 야외활동에서도 15%가 집단따돌림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86]

86) The Hanin Herald Korean Newspaper, 2018. 11. 12일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집단따돌림(Bullying)이란 교육부 집단따돌림 방지책자에 의하면 고의로 사람을 해치는 행위로서 일정 기간 여러 차례 반복되는 괴롭힘을 의미한다. 즉 손발로 때리고 위협·욕을 하는 행위 외에 아무 말을 하지 않는 행위도 집단따돌림에 해당된다. 교육부의 셰필드 대학 왕따 예방 프로젝트(the DFE Sheffield University Anti Bullying Project)에서는 집단따돌림의 유형으로 ①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소지품을 빼앗는 등 신체적 행위, ② 매도하고 모욕하고 인종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등 언어적 행위, ③ 불쾌한 소문을 퍼뜨리거나, 사회적 집단에서 누군가를 배제하는 등의 간접적 행위를 들고 있다. 그 외에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영국도 휴대전화나 소셜네트워킹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협박·명예훼손 행위와 같은 사이버 따돌림의 형태도 학교폭력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집단따돌림은 신체적·언어적 또는 정신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위협하거나 두려워하게 만드는 지속적인 고의적·의식적 공격행위로 이해하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고 일정기간에 걸쳐 자주 반복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회적인 행위라도 피해자가 재발의 우려를 인식한 경우에는 집단따돌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무언가를 하도록 강요하는 물리적 공격도 이에 포함된다.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가해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영국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모든 집단따돌림 방지정책(Anti Bullying Campagin)에 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 2) 학교폭력 예방 관련 법령

#### (1) 학교 표준 및 프레임워크 법(Sschool Standard and Framework Act)

영국의 경우 학교폭력의 최초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던 법은 1996년의 교육법(The Education Act 1996)이었다. 동 법은 학생들의 무단결석과 퇴학생·자퇴생의 증가가 청소년 범죄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못하는 문제학생, 퇴학생 및 자퇴생에 대한 교육대책을 세워서 이를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다음 해인 1997년에는 이 법을 개정하여 학교가 품행이 나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도입하였고, 그 후 동 법은 2011년 다시 개정되어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교사에 대하여 사이버폭력 사건을 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사할 수 있는 권한과 부정적인 이미지 등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추가하게 되었다.

영국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법률은 1998년에 공표된 학교 표준 및 프레임워크 법률(School Standard and Framework Act)인데 이 법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교장에게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집단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학교행정의 핵심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 법은 집단따돌림의 예방과 관련하여 학생지도 및 학생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책임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역할을 명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모든 학교는 집단따돌림을 금지하고 이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즉 학교는 집단따돌림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 집단따돌림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또한 집단따돌림의 징후를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사로 하여금 수업시간 중 집단따돌림이 감지되지 않고 지나치지 않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들에 대해 집단따돌림이 발생한 경우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집단따돌림 사건의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에 대해 반드시 면담을 받도록 하고 있다. 조사결과 집단따돌림의 심각성과 그 빈도에 따라 견책, 구두경고, 정학 퇴학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 외에도 학교는 학부모에 대하여 집단따돌림에 관한 여러 징후들을 알리면서 집단따돌림이 의심되는 경우 학교에 이를 알릴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해학생의 부모에 대해서는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자녀를 안심시키고 따돌림이 발생한 시간·장소·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학교에 추가사건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가해학생의 부모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하여 집단따돌림이 잘못된 행위임을 설명하도록 하고 학교와 함께 집단따돌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자녀와의 대화 방법에 대해 논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87]

이후 2006년에 제정된 교육 및 감찰에 관한 법률(Education and Inspections Act)에서는 집단따돌림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할 학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모든 학교는 학생들의 좋은 행동을 장려하고 모든 형태의 집단따돌림이나 괴롭힘을

87) http://www.porthcawschool.co.uk.../anti-bullying-po; pilgrimsway.southwark.sch.uk/anti-bullying-policy(최종방문일 2019. 8.14)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이를 학교행동정책으로 수립하여 모든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에게 적용하여야 하며 교장은 교내에서 발생한 비행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교직원의 법적 통제에 있지 않는 학교 밖의 비행에 대해서도 학생을 훈련할 권한을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89(5)).

또한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수 있다고 의심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아동법(The Children Act 1989)에 의하여, 교직원은 지역당국 아동사회보호 기관에 이러한 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학교는 보호조치가 없어도 피해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외부 서비스를 활용하여야 한다. 교사는 괴롭힘 방지법(the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악의적 의사소통법(the Malicious Communications Act 1988), 공공 명령법(the Public Order Act 1986) 위반으로 판단되면 경찰의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이외에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기본법으로는 1998년 제정된 범죄와 무질서 대응법(The Crime and Disorder Act 1998)이 있으며, 그 외 반사회적 행위법(Anti-Social Behavior Act 2003)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학생의 부모에게 법원명령이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2) 범죄와 무질서 방지법(The Crime and Disorder Act 1998)

이 법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회복적 소년사법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동 법은 소년의 보호와 사회의 안전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소년사법을 개혁하였는데 이러한 개혁의 주된 초점은 회복적 사법이념 도입, 피해자에 대한 배상, 부모의 책임인정에 있었다.[88]

이 법률은 청소년범죄에 대해 회복적 사법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와의 화해 및 피해보상이 최종경고(final warning), 위탁명령(referral order), 배상명령(reparation order), 세부실천계획명령(action plan order) 그리고 감독명령(supervision order) 등의 처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이는 모든 소년사법 처분 중 하나가 되었다.

88) 김지선(2005), 법원의 부모교육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05-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60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동 법에서는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과 학부모가 함께 학생을 지도하고 단속할 것을 의무화 하는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경찰로 하여금 야간 통행금지 시간을 정하도록 하여 통행금지를 위반한 학생을 귀가시키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설에서 보호하게 하는 등 학교폭력을 비롯한 학교 내외의 사고를 예방하고 단속하는데 경찰에게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내에 파견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최후경고제(Final Warnings)를 실시하여 이 법을 위반한 소년범의 처리문제를 결정하고 있다. 즉 가벼운 초범의 경우 1차 경고하고 재범시에 최종경고 후 지역 '청소년범죄예방팀(Youth Offending Team)'에게 신속히 인도하여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 번째 위반한 경우 마지막으로 형사처분하게 된다.[89]

동 법에서는 또한 부모의 적절한 책임감을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양육협약과 자녀양육명령이라는 두 가지 제도를 모두 규정하고 있다. 자녀양육협약은 범죄나 반사회적 행위에 연루되었거나 연루 가능성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범죄 예방팀과 자녀의 범죄예방을 위한 부모의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협의를 의미하며, 자녀양육명령은 유사한 상황에서 형사법원, 가사소송법원 혹은 민사관할권하의 하급법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민사적 성격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90] 이에 따라서 16세 이하의 자녀가 동 법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3개월 동안 상담·생활지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부모와 자녀를 함께 교육하는 자녀동반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학칙으로 제정·운영토록 할 수 있다.

그 외 동 법에서는 지역사회의 치안질서와 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경찰, 지방정부, 보호관찰국, 보건복지국, 민간조직과 지역사회 간에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과 실효적인 전략을 개발·수행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따라서 동 법에 의하여 모든 지방에 사회사업가, 건강교육당국, 보호찰국, 경찰의 대표로 구성된 '청소년범죄예방팀(Youth Offending Team)'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었다. 이러한 팀을 지역별로 설치한 이유는 지역문제는 지역에 맞는 해결책을 필요로 하고, 범죄를 감소시키는데 있어 지역당국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이 팀은 소년사법서비스를 제공·감독하고, 범죄감소의 목표를 각 지역에서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관한 '소년사

89) 정향기(2017), 앞의 논문, 82면-83면.
90) 김지선(2005), 앞의 연구보고서, 64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법계획(youth justice plans)'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청소년범죄예방팀을 국가적 수준에서 지도·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년사법위원회(Youth Justice Board : YJB)가 설립되었다.

### (3) 반사회적 행위법(Anti-Social Behavior Act)

반사회적 행위법(Anti-Social Behavior Act 2003)에 따라 청소년범죄예방팀은 부모가 자녀의 반사회적 행위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취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러한 행동이 지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 법원에 '자녀양육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교육당국도 심각한 비행으로 인하여 장기간 학교를 결석하는 경우에 '자녀양육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부모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그 새로운 입법적 대안으로서 영미를 중심으로 부모책임법(Parental Responsi- bility Law)의 제정 움직임이 확산된 바 있었다. 미국의 이러한 부모책임법에 해당하는 것이 영국의 자녀양육명령이다. 청소년의 비행과 반사회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모에 대한 자녀양육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는 범죄와 무질서대응법의 s8, 반사회적 행위법"의 s18, 26-29, 형사사법(2003)의 s294와 schedule 28을 들 수 있다.

자녀양육명령에는 독립적인 자녀양육명령과 유죄판결이나 아동에 대한 명령과 함께 부과되는 자녀양육명령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전자의 경우, 청소년범죄예방팀은 아동의 가족환경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부모에게 자녀양육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 법원에 자녀양육명령을 신청하는데 이러한 신청을 하는 이유는 아동이 범죄행위나 반사회적 행위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가 범죄나 반사회적 행위의 초기 형태를 저지하는 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범죄예방팀은 원칙적으로 자녀양육협약에서 부모의 협력을 얻는데 실패한 경우 독립적인 자녀양육명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원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범죄나 반사회적 행위에 관여하였고 이러한 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심각한 범죄나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데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녀양육명령을 부과하여야 한다. 법원은 아동안전명령(child safety order)이 부과되거나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반사회적 행위명령(anti-social behavior order) 또는 성범죄자 명령(sex offender order)이 부과되거나 아동이나 청소년이 유죄판결을 받을 때, 위탁명령(referral order)이 발해지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나 청소년범죄자패널(Youth Offender Panel)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청소년범죄자 패널에 의해서 부모가 다시 법원으로 위탁되었을 때 법원은 자녀양육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아동이 비행혐의나 다른 이유로 법정에 출석할 때에 부모나 후견인은 절차의 모든 단계에 출석하여야 한다. 자녀양육명령의 핵심내용은 부모로 하여금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통상의 경우 이러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은 12번의 회합으로 3개월간 지속되며 교육의 내용은 주로 청소년의 갈등과 도전적인 행위 동을 다루기,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감독과 관리, 청소년에 대한 경계와 규칙 세우고 유지하기, 부모자식간의 의사소통 개선하기, 가족간 갈등에 대처하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부모와 후견인이 합숙과정에 참석하는 것이 자녀양육명령을 야기한 청소년의 반복적인 비행을 예방하는 데에 효과적일 때에 합숙을 포함할 수도 있다.[91]

### 3)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영국에서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대응책은 초기에는 노르웨이 등 다른 국가의 집단따돌림 방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행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학교폭력을 배경으로 하는 자살이 다수 발생하면서 다른 국가의 프로그램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영국 고유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독자적인 예방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영국의 집단따돌림 예방정책(Anti Bullying Campaign; 이하 'ABC 정책'이라 약칭)은 조직적·종합적인 신속한 대응을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예방정책으로는 따돌림에 관련된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시설인 정서장애학교(가해학생 : Secondary Support Unit, 피해학생, Red Balloon)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재입학을 위한 튜터링, 멘터링 프로그램, 부모와의 관계 설정 프로그램 등을 운영 외에 친구 되어주기, 가정방문 등의 방안을 들 수 있겠다.

다른 국가와 차별화되는 영국정부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특징으로는 첫째, 아동을 중심으로 학교·가정·지원조직, 그리고 국가차원으로 대응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 따돌림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확한 관찰과 즉각적인 보고와 연대책임을 요구하며 또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학생과

91) 김지선, 앞의 연구보고서, 43면-65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와 피해학생 모두에게 공정한 정책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먼저 영국의 학교폭력 예방정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해 학교와 학부모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대처를 하고 있다. 교육당국에서 학교장과 지방교육청장 등에 대해 정규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사들을 대상으로 시청각교육을 통한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제공하고 교육부 홈페이지 안에 폭력사이트를 운영하여 다양한 교육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92] 사법부의 협조도 눈에 띄는데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단호하고 엄중하게 처리하면서도 사법부소속 소년원에서 범죄심리학 전공 전문가들이 가해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교육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처벌보다는 교화를 중심으로 대응하게 된다. 또한 영국의 경우 집단따돌림과 괴롭힘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학교장이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사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외부 전문 조직 및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학부모의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 학교폭력의 징후가 있는지를 살펴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학교에 알려야 할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에 해당하는 사례별로 자신의 자녀에 대하여 대화를 통하여 학교폭력에 대처하거나 이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행동에 옮기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필요한 경우 각 예방 프로그램에 부모가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학교폭력 등의 비행이나 범죄에 부모가 적절한 대처와 필요한 조취를 다 취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녀양육명령을 처분 받을 수도 있다.

영국의 경우 학교폭력의 문제는 사후 처리보다 예방에 초점을 두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교사에 대해 사전에 정확한 관찰을 통하여 집단따돌림의 징후를 감지내지 파악하도록 요구하고 교직원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학생간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예방 전략을 개발하여야 한다. 조기발견만큼 조기대응도 강력히 요구되어 집단따돌림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해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인식시켜주기 위하여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합리적인 훈육조치를 취하고 있다.

영국의 집단따돌림 예방정책의 목표는 피해자가 본인의 문제를 교사나 부모와 의논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는 학생들이 보다 쉽게 학교폭력을 신고

92) 류영숙(2012)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9권 제4호, 한국교언교육학회, 626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학교환경과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학교는 지속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며 이 문제는 결코 혼자서는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996년 영국 교육부가 학교와 부모, 그리고 학생들에 대하여 폭력에 대한 마음가짐과 대처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따돌림 혼자 고민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은 그 좋은 예에 해당된다. 여기에서는 따돌림을 털어놓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취해야할 자세와 대화법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① 조용히 침착하게 말해야 하며, ② 따돌림에 대하여 털어놓는 행위는 올바른 일이라며 아동을 안심시키며, ③ 따돌림 없이도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아동에게 표현해 주기 등 이 있다.

영국의 학교폭력예방 정책(ABC정책)은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그 주된 특징으로 한다. 가해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인 Secondary Support Unit, 피해학생을 위한 Red Balloon과 같은 대안교실을 마련하여 괴롭힘과 관련된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시설을 운용하고 있다.

### (1) 셰필드 집단따돌림 방지 프로젝트(Sheffield Anti-Bullying Project)

셰필드의 집단따돌림 방지 프로젝트는 노르웨이 예방정책(Anti-Bullying Campaign)의 성공에 영향을 받아 1985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학생들에 대한 이해심을 가지게 하며 폭력행동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에는 세 가지 교육활동이 있다.

먼저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발견하여 이를 실행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 기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품질관리모임(Quality Circles)을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이 모임은 5명-12명의 학생들로 구성되는데 정기적인 논의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속한 학급이나 학교의 문제점을 분석·의논하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다음 드라마와 역할놀이 활동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여러 관점에서 학교 폭력문제를 이해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드라마와 역할놀이를 통하여 가해학생, 피해학생, 교사는 모두 개인적인 경험, 가해행위의 동기, 폭력행동이 가져오는 영향, 학교 폭력을 중지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에 관한 이슈에 관한 독서, 토론활동, 글짓기 등의 활동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맥락에서 그들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경험하는데 도움을 준다.

학교폭력 상황에 관련되어 있는 개별 학생들과의 상담은 학생들과 관련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와 같은 상담기법을 활용한 방안은 특히 한 집단의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한 명 이상의 학생을 괴롭힐 때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그 목적은 같은 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이 공존할 수 있는 기본규칙을 세우게 하려는 데에 있다.[93]

### (2) 정서장애학교(Secondary Support Unit: SSU와 Red-Balloon)의 운영

정서장애학교에는 집단 따돌림의 가해학생이 가는 곳과 피해학생이 가는 곳 두 종류가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은 교사와 학교장 그리고 부모의 동의로 정해지며 이들은 일주일에 하루정도씩 정서장애학교에서 따로 수업을 받게 되고 주로 정서교육과 미술, 음악을 공부하게 되며 수업은 일대일로 이루어진다. 먼저 상담자와 피상담자들 간에 관계를 형성하여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각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 경우 보통 “남을 놀리는 거나 때리는 행위를 할 것인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에 피해를 입히는 것에 재미를 느끼는지? 그리고 남들보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지? 스마트하다고 생각하는지? 친구나 타인에 대한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고 “친구란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서로서로 도와줄 때 자존감을 느낀다” “친구는 그들의 어려움을 비난해서는 안된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토론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보통 한 학기 단위로 실시하며 한 질문이 끝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느낀 점 등을 글로 남기도록 되어 있다.

피해자를 위한 정서장애 학교도 운영이 되는데 이 기관의 대표적인 예가 캠브리지에 소재하는 Red-Balloon이다. 이곳은 가해자들이 가는 기관하고는 달리 학교의 정규 교

93) 도중진·박광섭·박행령(2012), “한국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수립 용역, 2012 대전광역시 용역과제, 충남대학교, 31면-32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과과정을 모두 교육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본인들이 다시 학교생활에 적응가능 하다고 판단이 될 때까지 이곳에 머물면서 교과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이 기관은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장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은퇴한 뜻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이곳을 거쳐 간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간 후에도 정기적인 전화 상담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원만한 학교생활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94]

### (3) 일반학교 프로그램

영국 학교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교의 특성에 맞는 자체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장은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연수 때마다 이에 관한 사례발표를 하게 되어있다. 런던의 사립 남녀공학 중학교(11살~16살 학생수 450명, 교사 30명)가 시행하고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부모의 친구하기(Be friend with parents) 점심시간 그룹감찰 모임(Lunchtime Group Supervision Meeting), 또래지원제도(Peer Support System), 시니어그룹지원(Senior Group Support), 누가 친구인가?(Who's your friend?) 등이 있다. 교사들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방과 후에 가해자와 교사가 학급의 일을 함께 하는 제도가 있다. 점심시간 감찰프로그램은 영국 학교에서의 학교폭력이 대부분 쉬는 시간에 교정(校庭)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파악하여 점심시간에 학생의 식사 시중이나 안전확보를 맡고 있는 점심시간 슈퍼바이저(점심시간 지도원)에게 훈련을 실시하여 폭력을 발견하거나 집단따돌림 발견한 경우 유효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학교는 학부모와 교사간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모임(Meeting)을 가지며 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과 학생들에 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진다. 학부모의 교육은 학교장이 직접 담당하고 주로 시청각 교재를 통하여 집단따돌림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95]

### (4) 정책운영 기관

영국의 정부가 집단따돌림 예방 정책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DfES)를 중심으로 관련기관이 협력하고

94) 구효진(2002), "영국 내의 Anti Bullying Campaign에 관한 소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발표문,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95) 구효진(2002), 앞의 논문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여기에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부의 집단따돌림 예방정책의 목표는 피해자가 스스럼없이 본인의 피해를 보고할 수 있게 하려는 데에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3가지 방침을 마련하였는데 첫째 학업부담을 줄여주기(Don t suffer in science). 둘째(집단따돌림을 성장의 필연적인 한 부분으로 여기지 않기(Being bullied is not an inevitable part of growing up), 마지막으로 필요한 정보 제공하기(Knowledge is Power)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첫째, 학기별로 학교장, 정서장애학교장과 지방교육청장에 대하여 정규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실천에 주력하고 있다. 이중 하나가 시청각 교육을 통한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접하게 하는 것인데 이를 통하여 노르웨이에서 실시되고 있는 또래상담제도(Peer Counselling)가 런던 내 중고등학교에 도입된 바 있다. 둘째, 교육부는 홈페이지에 집단따돌림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여 일선교사의 의견과 대안을 수렴하고 있다. 학부모들도 이러한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들의 학교 내 집단따돌림 대상여부를 진단해 주는 설문지를 제공받게 된다.

지방교육청 (Local Education Authority: LEA)은 각 학교에 전문상담원을 파견하여 상담 및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학교 자치단체와의 공조체제를 이루어 홍보활동을 펼친 바 있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집단따돌림을 예방하는데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문상담원은 학교 내의 집단따돌림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정부차원이 아닌 자체 내에서 자발적으로 집단따돌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정부에 소속된 기관들과는 달리 사법부 소속의 소년원(Young Offenders House)에서는 협력연구기관을 통하여 범죄심리학 전공자인 상담가(Consultant)들을 파견받아 집단따돌림의 가해자로 들어온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게 한다. 이러한 상담가들은 원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함으로써 그들이 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국의 연구기관들은 집단따돌림 방지에 관한 지침서와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연구기관들로는 'Bullying Hot Line', 'Kidscape', 'The Nature and Prevention of Bullying' 등이 있다. 특히 영국의 대학부설 연구 기관들은 인접 유럽 연합국들과 '집단따돌림과의 전쟁을 선도하기 위한 유럽 컨포런스(European

KOR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Conference on Initiatives to Combat Bullying)'라는 정기 학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용하여 응용·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연구 기관의 특징은 인터넷과 놀이를 통한 치료법을 개발하고 각 학교장이 그 재량에 따라 그들이 개발한 놀이를 실시하는 데에 있는데, 대표적 단체중 하나인 학부모 연합회에서 하는 역할 극 (role play)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연구기관들이 주장하는 집단따돌림 방지교육에는 폭력에 관한 비디오·영화·소설을 교재로 사용하며, ① 집단 따돌림이 행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깨닫기 위한 학급단위의 상담, ② 따돌림받는 친구를 위한 자기주장이나 자기표현의 훈련(Assertive training), ③ 아동들의 상담, 학교법정·따돌림 재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3. 독일

### 1) 법률

독일의 경우 학교와 관련된 16개 사항을 각 주별로 결정하게 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대응절차나 학교 내 조치 및 그 예방 방안과 관련하여 연방법이 이를 규율하지 하지 않고 각주에서 개별적으로 제정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기본법(Grundgesetz) 제70조에 의하여 입법권과 행정권을 연방이 아니라 각주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방의 청소년 복지지원법(Kinder-und Jugendhilfegesetz)에서는 학교폭력 문제를 포함하여 학생들의 사회적 차별을 줄이기 위한 원조와 보호조치를 취할 것과 학생과 그 가족들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문제 발생을 예방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연방법은 학교 사회복지사들의 활동근거를 위한 대강의 기초만 제공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적인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는 주단위의 학교법과 청소년지원법에 의해서 마련되고 있다.[96]

독일의 학교폭력에 관한 각주들의 법률의 주요 내용은 크게 보험(Versicherung)과 보고(Bericht)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각주들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주 청소년국(Jugendamt)'과 해당 부모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처리 절차의 단계별

96) 김상곤·배진형외(2013), "영국, 미국, 노르웨이, 독일의 학교폭력 예방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처 방안 분석연구, 「학교사회복지」 제25권, 340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보고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기관과 연계하여 보상을 진행하도록 하고 규정하는 조항들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보험기관의 역할이 사후처리 차원에서 소극적인 피해보상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지게 된다.

독일의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기본 방향은 '다이버전 제도'를 광범위하고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상 소추가 가능한 소년범죄의 약 절반 이상이 이 '다이버전' 방식으로 절차가 종료된다.[97] 독일도 앞서 살펴본 영국과 마찬가지로 학교 내의 범죄처리에서 '학교전담 경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관련 법령이 선도와 교육보다는 경찰개입을 통한 형사법적 처벌을 중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이 '다이버전'의 광범위하고도 적극적인 활용이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을 규정하고 있는 주법 중에서 대표적인 법률이 베를린주의 학교법(Schulgesetz)이다. 동 법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내용과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사안의 처리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이 상세히 열거되어 있다. 학생의 정보권(제47조), 학교의 감독의무(제51조), 교육조치(제62조), 징계조치(제63조) 등에 관한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동 법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교당국은 '주(州) 청소년국(Jugendamt)'에 그 사안을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사안에 대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조치 등에 대하여 학부모의 참석을 의무화하여야 하며, 학교폭력의 피해가 가볍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 및 징계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소년형법과 청소년 복지지원법은 14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법적 절차를 명시한 법이다.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형사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15세~18세 청소년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된 때에는 경찰은 청소년국에 알려야 하고 이 경우 중한 사안의 경우 검찰로 송치되는데, 검찰도 사건의 경중에 따라 여러 가지 조치할 수 있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검찰은 조건부 기소유예의 방법으로 폭력치료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안이 중한 경우 공소제기에 의

97) 이승헌(2010), "소년법상 다이버전의 새로운 동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하여 소년법원에서 재판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이 때 판사는 사건의 심각성을 바탕으로 가해학생 행위를 검토하여 필요한 교육적 조치와 형사적 처벌을 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조정을 통한 합의가 필요하게 된다. 가해학생에게 일정 기간 사회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소년법원은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구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말 구금 또는 단기구금에 처하기도 한다. 매우 심각한 사건이나 반복성을 보이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소년교도소 구금이나 폐쇄형 대안치료 교육센터 입소 등의 명령이 내려진다.

청소년 복지지원법은 모든 양육권자는 교육이나 안전의 위협을 받을 때 아동·청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원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법은 학교폭력으로 문제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 대하여 민간단체 등의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이 학교와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98]

정리해 보면 독일의 경우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내 조치나 처리에 관한 규정은 각 주의 학교법에서 규율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심각한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의 개입에 의해 사법절차로 진행되며 이 경우에는 청소년형법이 적용되게 된다.

## 2) 학교폭력의 유형과 실태

### (1) 유형

독일의 학교폭력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먼저 개인적 폭력(Personale Gewalt)과 구조적 폭력(Strukturelle Gewalt)으로 구분된다. 개인적 폭력은 다시 심리적 폭력(Psychische Gewalt)과 신체적 폭력(Physische Gewalt)으로 나누어진다. 즉, 신체적 폭력에는 성폭력(SexuelleGewalt)이나 물건손괴(Vandalismus)도 포함되며, 심리적 폭력에는 비언어적 폭력(Non- verbale Gewalt)과 언어적 폭력(VerbaleGewalt)이 모두 포함된다.[99]

학교폭력의 한 형태인 집단따돌림의 개념을 “한 학생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로부터 부정적인 행동을 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

98) 이승현·정제영외(2014),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 정책의 효과성 분석, 연구총서14-Aa-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3면.
99) 위의 연구보고서, 160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다. 이때의 부정적인 행동이란 남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주려는 목적을 지닌 공격적 행동을 의미하는데 여기서의 공격적 행위란 폭행 이외에 위협·욕설·배제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범위의 행동을 의미한다.[100] 그런데 독일의 경우 집단따돌림의 개념안에는 "bullying" 외에도 "mobbing"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mobbing"이란 괴롭힘과 연관된 다수 익명의 집단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폭력으로서의 따돌림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직접적 따돌림과 간접적 따돌림, 원형적 따돌림과 비원형적 따돌림, 관계적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이 있다. ① 직접적 따돌림·괴롭힘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발생하며 신체적 행위뿐만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신체적 행위로는 때리기, 치기, 발 걸기, 붙잡기, 가두기 등의 신체적 폭력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돈 뺏기, 위협하기, 학용품이나 개인 물건을 손괴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되나 이러한 행위들은 손괴나 재물취득이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제한된다. 그 외 언어적 공격에는 모욕, 깎아내리기, 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협, 조롱하기 등이 있다. ② 간접적 따돌림은 괴롭힘이 은폐되고 때때로 피해자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소문을 퍼뜨리거나, 비방하거나, 관련 서류를 몰래 조작하거나 소유 물건을 몰래 파괴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공동체의 주변으로 내모는 사회적 배제도 이에 해당되며 직접적 접촉을 피함으로써 가해자는 스스로를 숨긴 상태에서 행동할 수 있고 피해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야 따돌림이 있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 ③ 원형적인 따돌림은 흔하게 발생하는 괴롭힘을 지칭하며 호전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신체를 통한 공격을 말하는데 직접적 따돌림의 신체적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④ 비원형적 따돌림은 보통 호전적인 성향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공격적 행위로서 간접적으로 행해지고 심리적 또는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이 문제되며 관계적 따돌림은 이안에 포함된다. ⑤ 관계적 따돌림은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를 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행위로서 배제, 평판을 해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101] ⑥ 스마트폰 보급이나 인터넷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사이버 따돌림도 집단따돌림의 한 유형에 해당하게 되었다. 사이버 따돌림은 이메일, 휴대전화, SNS 등 디지털

100) 이승현, 노성호(2014), 청소년청소년 따돌림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총서, 13-AA-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7면-228면.
101) 이승현·노성호(2014), 앞의 연구보고서 232면-234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서비스를 활용하여 악성댓글이나 굴욕스러운 사진 등을 올림으로써 이루어지는 개인에 대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의미한다. 사이버 따돌림은 보통 인터넷서비스 아이디를 도용하여 거짓 정보를 올리거나, 문자로 루머를 퍼뜨리는 등의 행위가 대표적이다. 또한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학생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 성매매사이트 등 불법 사이트 등에 피해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키는 행위 등도 이에 포함된다.

### (2) 발생현황과 실태

독일의 경우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된 연구는 독일범죄예방포럼(DFK)과 독일청소년연구소(DJ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왔다. 특히 학교폭력예방위원회가 연방과 각주에 설치, 운영되어 있는데 이들 위원회는 학교, 청소년복지서비스, 경찰심리상담서비스, 정책입안자, 청소년 법정대리인협회, 스포츠클럽 등에서 선정된 대표자들로 구성되었다. 종전의 보고에 의하면 통일 이후 사회적 갈등과정에서 학교폭력이 잠시 증가한 바 있으나 1990년대부터 학교폭력예방에 중점을 둔 전문화·특성화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2005년 이후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이는 통계상으로도 입증되어 2005년 91,037건이던 학교폭력은 2010년에는 71,323건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2010년까지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기는 하였으나 계속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7월초 베르텔스만재단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독일내에 따돌림 현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독일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이번 연구에 따르면, 무려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또래들에게 놀림이나 따돌림,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독일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또한 응답자 중 4분의 1은 학교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어서 사안의 심각성도 함께 드러냈다. 이번 조사는 8세에서 14세 사이 3,448명을 대상으로 초·중등학교에서의 일상 경험에 대해 묻는 인터뷰를 실시해 얻어진 결과이다. 초·중등학교를 통틀어 응답자의 약 65%가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정도 '좋지 않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또래들에게 '공격'을 당한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 응답자 중 30%가 한 달 이내에 다른 학생에게 놀림이나 집단따돌림·구타 등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반면에 어떤 형태의 폭력도 당하지 않았다는 초등학생은 22%에 불과했다. 그룬트슐레(Grundschule)라고 불리는 독일의 초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등학교는 4학년까지만 해당된다.

중등학교는 초등학교에 비해 비율이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중등학교 응답자의 36~43% 정도는 집단따돌림이나 폭력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났다. 5년제로 직업인을 양성하는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 6년제이고 실업계지만 추후 관심과 성적에 따라 대학 진학도 가능한 레알슐레(Realschule), 이러한 구분 없이 통합된 형태인 게잠트슐레(Gesamtschule) 등 각각 다른 형태의 중등학교에서는 약 5명 중 1명이 한 달 이내에 이러한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학력이 가장 좋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김나지움에서는 10명 중 단 1명 만이 이와 같은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학교에서의 경험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응답자들은 '학교에 가는 길이나 기타 학교 밖의 장소 또는 소셜 미디어에서도 이런 학대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응답하는 등 단순히 교내에서만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학교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4분의 1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학교의 범주는 교내를 넘어 학교를 둘러싼 지역사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집을 안전한 장소라고 꼽았지만 약 8.6%의 응답자는 심지어 집에서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연구의 또 다른 유의미한 측면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자주 학교폭력을 경험한다는 점에 있다. 응답자의 약 52%가 가족의 경제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는데 이 아이들이 또래들에게 놀림·소외·구타 등을 더 자주 겪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독일 사회가 학교폭력에 보다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데는 지난 해 발생한 교내 살인사건의 영향이 크다. 이 사건은 2018년 1월 독일 서부의 라인-베스트팔렌주의 공업도시인 뤼넨의 케터 콜비츠 학교에서 발생했다. 다소 공격적인 성향으로 알려져 있던 15세의 학생이 14세의 동급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이었는데 당초 이 학교의 학생이었던 피의자는 이 '공격적 성향'이 문제가 돼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됐는데 사건이 일어난 당일 아침 다시 이 학교에 돌아오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학교를 찾았다가 살인을 저질렀던 것이다.

이전에도 학교폭력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교육 등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였던 독일은 지난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후 그 예방과 대응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따라서 규칙 위반시 더 엄격한 조치가 취해지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도 관련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학교 안팎에서 관련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2월 작센안할트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교내 폭력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부모들의 도움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교사들은 이 편지에서 수업 중 혹은 쉬는 시간에 벌어지는 극도의 물리적 폭력을 비롯해 지속적인 수업 방해, 급우들에 대한 공격 등을 언급하며 학교라는 울타리 밖에서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교내폭력과 청소년 범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나아가 학생들 간에 폭력뿐만 아니라 교사에 대한 폭력 문제도 최근 들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독일 최대 교원노조인 교육보육교원단체(VBE)가 한 연구 기관에 의뢰한 내용에 따르면 독일 학교 4곳 중 한 곳에서 교사들에 대한 물리적인 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절반의 학교에서 교사들이 언어적 위협을 받거나 모욕을 당한 적이 있고 5개 중 1개의 학교 교사들은 사이버 폭력의 희생자로 밝혀졌다. 교사에 대한 폭력은 학교 내 폭력의 또 다른 형태로 학생들 간 폭력 문제와 결코 분리된 사례가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102]

### 3) 학교폭력 대응 및 처리절차

독일의 학교폭력 처리상의 특징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는 점이다. 즉 경미한 경우 학교 내에서 교육조치나 징계조치를 통해서 처리하나 중대한 사안의 경우 경찰에 신고, 사법절차가 진행된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교사는 가해학생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문책하고 이를 학부모에게 통보한 뒤 학부모면담을 거쳐야 하며, 학교내 상담교사는 따돌림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야 한다. 심각한 사안인 경우 학교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으며, 부모면담과 학급교체 등이 이루어지거나, 정학·퇴학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와 경찰이 협력하여 학교 외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자살 시도나 가정폭력의 경우 청소년국이나 보건국의 지원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매우 심각한 사안인 경우 학교는 가해학생을 경찰에 신고하여야 하고 경찰은 즉시 개입하여 처리하며, 또한 학교는 즉시 폭력예방과 위기상황 개입을 할 수 있는 교육상담사와 관련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학교

102) 한국경제매거진 제1235호, 2019. 7. 3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책임자와 사고보험기관(Unfallkasse)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가 있은 뒤 경찰은 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해당 청소년청에 사실을 알리고, 15-18세인 경우에는 사건의 정도에 따라 검찰로 송치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문제를 학교 내에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경찰, 교육심리학자, 교육상 담사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두어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분쟁조정이 '행위중재(Tat-Ausgleich)'와 '가해자-피해자 조정(Täter-Opfer-Ausgleich)'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쟁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전제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징계조치의 방법, 정도 등이 영향을 받는다.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 1차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중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동시에 개별상담을 실시하며 스포츠 활동 기타 여러 교육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선도하여야 한다. 폭력사건이 재발하면 가해자의 수업참여권 박탈하거나 퇴학 등의 불이익 조치(3회상 폭력사건이 발생 시 전학조치 가능)를 취할 수 있고, 폭력사건이 다회 발생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경찰이나 청소년국(Jugendamt)에 신고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하여는 법적 절차 등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단 발생한 모든 학교폭력사안은 청소년국(Jugendamt)에 보고되어야 한다. 저위험의 1단계 사건에 대해서는 학교의 책임하에 절차가 진행되는데 그 결과로 교육조치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학교가 교육적 문제 해결을 시도하기가 어렵거나 외부기관이나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이를 보고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위험의 2단계 사건은 학교와 경찰이 협력하여 학교외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자살시도나 가정폭력의 경우 청소년국이나 보건국의 지원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고위험의 3단계 사건은 학교가 경찰 110 또는 소방서 112신고를 하고, 경찰이 즉시 개입하여 처리한다. 학교는 즉시 폭력예방과 위기상황개입을 할 수 있는 교육상담사와 관련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학교책임자와 사고보험기관(Unfallkasse)에 즉시 신고한다. 이 경우 대응 직후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분쟁조정은 '행위 중재(Tat-Ausgleich)'와 '가해자-피해자 조정(Täter-Offer-Ausgleich)'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 먼저 2011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위 중재제도는 학교에서 폭력이나 따돌림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외부의 분쟁조정자가 개입하여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중재는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분노, 공포, 걱정 등을 줄여 주며, 가해학생이 자신이 한 행위를 분명히 인지하고 책임을 느끼게 하려는 데에 효과가 있다. 12세 이상의 학생은 중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재가 끝나면 당사자는 분쟁조정에 관한 결과를 통지받게 되고,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분쟁조정자와 사법기관도 함께 통지를 받는다. 가해자-피해자조정제도는 1991년부터 재판외 중재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조정에서는 손해배상 해결만이 아니라 폭력으로 인한 분노나 원상회복의 방법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이러한 조정제도는 합의 중재와 달리 중대한 학교폭력에만 적용할 수 있다. 조정자가 조정 결과를 사법기관에 보고하면 이 결과를 참고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103]

### 4)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르며 학교내 조치로는 교육조치와 징계조치가 있다.

베를린법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조치로(Erziehungsmaßnahmen) 는 교사책임 하에 ① 학생과의 상담(das erzieherische Gespräch mit der Schülerin oder dem Schüler), ② 전체 약속(gemeinsame Absprachen), ③ 구두 훈계(der mündliche Tadel), ④ 학급일지 기재(die Eintragung in das Klassenbuch), ⑤ 손해의 원상회복(die Wiedergutmachung angerichteten Schadens), ⑥ 물건의 일시적 몰수(die vorübergehende Einziehung von Gegenständen) 등이 있다. 교사는 교육적 책임의 범위 내에서 당시 상황 및 학생의 연령, 성격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교육적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보를 해야 한다(베를린 교육법 제62조제3항).

징계조치(Ordnungsmaßnahmen)는 교육적 조치로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거나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베를린 학교법 제 63

103) 이승현·정제영외(2014), 앞의 보고서, 165면-166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조제1항). 이러한 징계조치에는 ① 서면경고(der schriftliche Verweis), ② 10일 이내의 수업 및 학교행사 제외(der Ausschluss vom Unterricht und anderen schulischen Veranstaltungen bis zu zehn Schultagen), ③ 학급교체(die Umsetzung in eine Parallelklasse oder eine andere Unterrichtsgruppe), ④ 전학(die Überweisung in eine andere Schule desselben Bildungsgangs), ⑤ 퇴학(die Entlassung aus der Schule, 6세~18세의 의무교육대상자 제외) 등이 있다(베를린 학교법 제63조제2항).

이중 서면경고(제1호)와 10일 이내의 수업제외 조치(제2호)는 학급운영위원회(회(Klassenkonferenz)에서 결정하고, 학급교체(제3호)의 조치는 전체교사회의(Gesamtkonferenz oder bei Oberstufenzentren)에서 결정한다. 사안이 중요하거나 학교폭력이 반복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제4호 전학조치와 제5호 퇴학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전학과 퇴학의 조치는 사전에 반드시 서면 경고가 있어야 하며 학교장, 교사대표(4인), 학부모대표(4인), 외부인사(1인), 학생대표(4인)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Schulkonferenz)에서 결정하여야 한다(베를린 학교법 제63조제5항). 다만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는 교장의 퇴학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수업과 학교행사에서의 제외조치나 학급 및 교실교체 조치를 먼저 취하게 할 수도 있다. 퇴학의 조치는 의무교육이 끝나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조치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나 학부모가 교사, 교장, 교육청 순으로 당해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요청은 할 수 있는 반면에 징계조치는 학생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기타 베를린의 경우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명령(Verordnung über die Verarbeitung personenbezogener Daten im Schulwesen: SchuldatenVO)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학교 생활기록부와 비슷한 학생기록부(Schülerbögen, Schülerakteien, Klassenbücher)에는 성별,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일반 신상정보와 학생에 대한 징계사항이 기록되게 된다. 징계 사항과 관련된 기록은 다른 조치를 받지 않으면, 이후 3년 지나면 삭제된다(제11조제2항). 교육 조치 중, 학급일지에 대한 기재도 3년 후에 삭제된다(제11조제1항제4호).[104]

104) 이승현·정제영외(2014), 앞의 보고서, 166면-167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5) 집단따돌림 예방프로그램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1987년 미국과 프랑스의 학교폭력 예방 모델을 기초로 하여 정부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90년 독일통일 후의 급격한 사회상의 변화는 학교내 갈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에 따라 1990년대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2002년 에르푸르트(Erfurt) 김나지움의 총기난사 사건은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독일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하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지원에 민간보험사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학교폭력 사고와 자살 등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피해보상의 책임이 있는 보험사들의 경제적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보험사들이 학교폭력 실태조사, 예방프로그램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대학 등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졌고, 학교 및 교육청과 연계하여 예방프로그램 개발 역시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학교폭력 예방정책은 각 주교육청과 개별학교가 서로 연계하여 실질적인 예방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고 있다. 즉 각주와 학교가 중심이 되어 필요한 법률과 학교규칙을 규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예방 중심적 정책을 중심으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주정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및 수업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각 대학 산하 연구기관들은 이에 대한 통계와 연구를 담당하고, 이를 다시 실제적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으며, 각 보험사들은 2000년대 이후 대학 등의 연구기관과 연합하여 학교폭력 관련 학문적 연구에 투자하고 있다,

#### (1) 예방팀 프로젝트(Praevention im Team: PiT)

예방팀 프로젝트는 헤센주의 폭력방지를 위한 네트워크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으로서 헤센주의 교육부·내무체육부·사회복지부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방팀은 교사·경찰·청소년지원대표자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한 공동의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중등 1학년을 대상으로 1년 단위로 실시함으로써 학생으로 하여금 따돌림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게 하고 폭력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양한 대처방안을 알려줌으로써 폭력을 예방하고자 한다. 2007년부터 헤센주 전지역에서 확대실시하고 있다.[105]

### (2) 프라이부르크의 학교 갈등 문화프로그램(Schulprogramm Konflikt-Kultur aus Freiburg)

갈등을 조정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학교 프로그램이다. 학교위원회는 공동으로 좋은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구체적이고 심사 가능한 사회적 행동규칙을 제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참여하게 된다. 규칙 위반이 일어날 경우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대응에 학생들이 감정적으로 승인하고 필요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학생-분쟁조정, 외부 전문가를 통한 교사와 학생 간 갈등조정, 학생에 의한 중대한 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가해자-피해자-조정이 포함된다.[106]

### (3) 책임을 전가하지 않기 프로그램(No Blame Approach - Keine Schuldzuweisung)

따돌림의 피해자가 치유 받고 개선되기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학교폭력 가해자와 가담자 학급모범생들로 구성된 집단에게 묻고 그들이 직접 그 제안을 찾도록 한 뒤 이를 근거로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과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눔으로써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며, 가해자에게 따돌림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데에 건설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특징을 보인다. 세 단계로 진행되는데 첫째, 교사가 부모와 합의하에 피해 청소년과 현재의 심정과 따돌림 가담자들이 누구인지 개별 질문을 하고, 둘째, 따돌림 가해자, 그 밖에 가담자 그리고 해당 학급에서 건설적이고 사회적인 행동을 했던 학생이 참가하는 부조그룹을 형성하고 교사는 따돌림을 받는 학생이 어떻게 느끼는지 설명해 주면서 피해자가 현재보다 더 좋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제안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셋째로, 일주일 후에 교사는 개별적으로 피해자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 학생과 그 동안 어떤 일이 생겼는지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다.[107]

---

105) http://www.praevention-im-team.eu/ 참조.
106) 이승현·노승현(2014), 앞의 연구보고서 237면.
107) 이승현·노승현(2014), 위의 연구보고서 238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4) 일반학교 프로그램

독일은 최소한 3년 담임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격이나 적성을 파악해서 진로지도를 정확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3년 동안 지켜보고 상담하고 친밀도가 높기 때문에 아이들 간에 학교폭력 발생빈도도 감소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독일의 상담제도는 진학선택에 있어서부터 학교가 담당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 거의 모든 학교에 상담교사 배치되어 있고, 상담교사는 학생에 대한 개인상담과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를 한다.

예전부터 ADHD같은 증상을 질환으로 인정하여 아이들만 가는 소아, 청소년 정신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연계하기도 한다. 학교뿐 아니라 지역마다 청소년 센터에 상주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별로 인터넷에 상담교사의 연락처가 적혀 있어 언제든지 쉽게 상담이 가능하다.

칼 슘레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 스테이션'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학교는 지난 7, 80년 동안 이주민들이 독일에 유입되면서 소외계층 주민들이 다니는 학교이고 따라서 학생간의 폭력사건 또한 끊이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많던 학교였으나 이러한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학교폭력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

이 '학교 스테이션'에서는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을 반성시키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일단 학생들이 분노를 조절하기 어렵거나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싶어 할 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동기구들을 마련해주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이 학생들 옆에서 끊임없이 조언해주고 다독여줌으로써 학생들이 바로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된다. 학교폭력 학생들이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은 따로 사회복지사와 함께 수업을 받는 시스템이 적용된다. 가장 큰 특징은 싸움중재자 프로그램인데 학생들을 싸움 중재자 역할을 시켜 학생들끼리 토론을 하는 역할극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는 질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직접 싸움을 제 3자의 입장에서 조언해주고 중재시키면서 한층 넓은 시각과 학교폭력으로 불거질 수 있는 오해들을 미리 없애게 된다. 그리고 이 '싸움중재' 교육을 이수 받은 학생들은 실제로 매일 교내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분쟁이나 오해들로 인한 싸움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학생 싸움 중재자들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운동장을 돌아다니며 혹시나 있을 학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생들의 싸움을 주시하고 싸움이 일어났을 경우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5) Übergang 프로젝트

가해학생과 직접 관련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1997년부터 베를린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아동정신과 의사에 의해 일반 학교시스템에 입학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평가되어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험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 일반 학급에 수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평가되는 학생에 대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징계조치를 받아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 아이들이 이전 학교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쉽게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수업을 기피하거나, 계속해서 폭력적 성향을 표출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프로젝트는 주로 교사상담(Lehrerberatung), 학부모 상담(Eltern- beratung), 학급에의 융화(Integration in den Klassenverband), 임시 학습그룹(Übergangsklasse), 학교와 청소년지원자의 조정(Kooperation zwischen Schule und Jugendhilfe) 등을 활용한다.

Übergang 프로젝트에의 참여할지 여부는 매년 개최되는 통합전문위원회(Integrationsfachkonferenz)에서 결정하며, 아동의 프로젝트 참여기간은 1년에서 3년 사이이다. 학생의 참여가 결정되면 당해 학생은 기본적인 학교 수업에 참석하고 일주일에 4회,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임시 학습그룹에 참석하여 정서발달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독일은 사전예방적인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가해 학생이 되기 이전의 단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폭력 행위 방지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헤센 주의 PiT프로그램(Prävention in Team)이 대표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4. 일본

## 1) 법률

### (1) 개관

일본의 경우 1980년대에 이지메(いじめ, Bullying)로 대표되는 집단따돌림 행위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1983년부터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하는 등 다른 국가에 비하여 비교적 일찍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대처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도 학교폭력이 점차 저연령화·흉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1995년 이후에는 등교거부, 원조교제, 약물남용 등으로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108]

일본에서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교내폭력을 말하며, 이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연루된 폭력사건과 학교 기물파괴 등을 포함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한 모든 폭력사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학생지도문제와 관련하여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폭력행위를 들 수 있는데, 이에는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력, 다른 학생에 대한 폭력, 제3자에 대한 폭력, 기물손괴 등이 포함된다. 둘째로 집단따돌림(이지메)인데 이는 학생이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입어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로 무단결석으로서 이는 심리적·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학생이 등교하지 않거나 등교하고 싶어도 질병이나 경제적 빈곤 등의 이유로 등교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넷째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며, 그 원인이 이지메에 의한 것이든 인터넷폭력에 의한 것이든 묻지 않는다.[109]

일본의 경우 학교 내 폭력행위와 이지메는 학교교육법에 따라 규율하는 반면, 학교 밖의 폭력은 형사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에 대한 형사법으로는 형사소송법, 재판절차법, 소년법, 소년원법 등이 있는데, 특히 소년법의 경우, 2001년 개정을 통해서 형사법원으로 이송가능한 연령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4세 이상으로 낮아졌으며, 2007년 개정에 의해서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도 범죄를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4세 미만자에

108) 이현승(2016), "한중일 3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비교", 「법학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법학회, 145면.

109) 文部科學省,(2011) "兒童生徒の問題行動等生徒指導上の諸問題," 平成23年, 文部科學省初等中等教育局 兒童生徒課,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대한 소년원 송치도 가능하게 되었다.

학교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28일 집단따돌림(이지메) 방지대책추진법(においていじめ防止対策推進法)이 제정되었는데, 동 법은 집단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설치자, 학교 및 교직원, 보호자 등의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교장 및 교원 등의 학교교육법(学校教育法)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권한을 인정하고 있고,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학교 내 조사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이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조사결과는 지방자치단체나 피해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학교폭력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가 경찰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였다. 그외 인터넷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지메(사이버 따돌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설립자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국가 등이 아동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지메에 연루되어 있지 않은지를 감시하는 기관의 활동을 지원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가해학생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학교교육법(學校教育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교장 등은 이지메를 한 학생에 대하여 퇴학, 정학 및 훈계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피해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교육위원회에 의한 가해학생의 출석정지처분을 인정하고 있다. 즉 자치 교육위원회는 이지메 등을 한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아동의 출석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 교육위원회는 출석정지명령을 받은 아동의 출석정지 기간 동안, 학습에 대한 지원 및 그 외의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 외 청소년인터넷 규제법(2011)에서는 사이버 따돌림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위험을 알리는 필터링 서비스를 의무화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휴대전화 회사, 웹사이트 관리자 등은 유해한 내용을 즉시 삭제하거나 필터링 소프트 회사에 유해사이트라는 것을 자진 신고하거나 연령확인 후 패스워드를 통한 로그인 인정 회원제를 실시하여 청소년의 유해사이트 열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정보제공업자나 개인은 물론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와 이를 이용한 커뮤니티 관리자 등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2) 집단따돌림방지대책추진법(いじめ防止対策推進法)

2013년 6월에 제정된 동 법은 청소년의 집단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이념과 기본방침을 정함으로써 집단따돌림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을 두고 있다(제1조). 이 법에서 밝히고 있는 집단따돌림 방지대책의 기본방향은 집단따돌림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통한 효율적인 대응에 있다. 즉 일본의 경우도 학교폭력에 대해여 발생 후 사안의 해결보다는 학교 내외를 불문하고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한 정책에는 학교폭력 없이 아동 등이 안심하고 학습 및 기타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 등이 학교폭력을 인식하면서 이를 방치하지 않고 학교폭력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문제에 대해 아동 등의 이해를 증진 내지 강화시키는 취지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 지방조직 공공단체, 지역주민, 가정, 학교, 기타 관계자의 협력 아래, 따돌림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추진되어야 한다(제3조).

집단따돌림과 관련하여 동 법은 이에 관한 개념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집단따돌림이란 “해당 학교의 학생이 그와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다른 학생에 대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터넷을 통해서 행해지는 것을 포함)이며, 이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심신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학교란 중등교육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또는 특별지원 학교(유치부 제외)를 의미하고, “아동 등”이란 학교에 재학하는 중이거나 아동 또는 학생을 말한다.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보호자의 책무(제5조 또는 제9조)

동 법에 의하여 국가는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여 실시할 책무를 지게 되며 필요한 재정적 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제5조, 제10조)). 이를 위해 문부과학부 장관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연계하여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제11조). 지방공공단체는 국가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지역의 상황에 맞는 예방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제6조), 관계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위원회, 법무국과 지방법무국, 도도부형경찰, 아동상담소, 기타 관계자로 구성된 ‘학교폭력문제대책 연락협의회’를 둘 수 있다(제14조제1항). 이러한 협의회를 구성한 도도부현의 경우에는,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 시정촌 지역 학교에서 해당협의회와 학교폭력예방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활용할 수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있도록 해당 '학교폭력문제대책 연락협의회'와 해당 시정촌의 교육위원회와 연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14조제2항). 해당협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연계에 따라, 지방 학교폭력방지기본방침에 기초한 지역 학교폭력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에 부속 기관으로써 필요한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제14조제3항).

이 법에서는 학교 설립자의 책무와 학교 및 교직원의 책무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학교설립자는 학교 내 집단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제7조), 학교는 학교폭력방지 기본방침에 따른 예방조치를 자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학교와 교직원은 해당 학교 학생 등의 부모, 지역사회 주민, 아동상담소 그리고 기타 관계자와의 연대를 도모하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집단따돌림을 방지하고 이를 조기 발견하여야 하며, 집단따돌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때는 신속하게 이를 처리할 책임을 진다(제8조).

동 법에서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일차적 책임이 그 보호자에게 있음을 명시하면서 집단따돌림과 관련된 보호자의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제9조). 먼저 보호자는 자녀들이 학교폭력을 범하지 않도록 자녀에 대해 규범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도를 해야 하며,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경우 적절하게 자녀를 보호하여야 하고, 나아가 국가·지방공공단체·학교의 설립자·학교가 시행하는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나. 집단따돌림방지 처리절차

집단따돌림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예방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하여 도덕교육 및 체험활동과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등을 내실화하고 상담체제를 정비하여야 하고 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조치와 사이버 따돌림에 관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이 국가·지방공공단체·학교 등에 요청된다. 또한 국가 등은 학교폭력을 예방에 필요한 양호교사, 전문교원, 심리상담가와 복지전문가와 같은 인적자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연구조사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이러한 일반적인 정책 외에도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별적 폭력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각 학교와 지방공공단체에 요청하고 있다.

이에 학교안에 학교 교직원, 심리복지전문가 및 기타 관계자로 구성된 학교폭력방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지대책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고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제23조).

학교의 교직원 및 보호자 등은 학교폭력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고를 받은 학교는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 결과를 학교 설립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학교폭력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학교는 학교폭력을 중단시키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학교 교직원은 심리·복지 전문가의 협력을 얻어 피해학생 등 그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가해학생에 대한 지도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조언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직원이 지원 도는 지도내지 조언을 함에 있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보호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폭력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보호자와 공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급 이외에 장소에서 수업을 받도록 하는 등 피해아동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학교는 학교폭력의 사안이 중대하여 이를 범죄행위로 다루어야 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와 연계하여 이 문제에 대처하여야 하며 학생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에 적절한 도움을 받기 위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그 외에 학교 내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취하여야 할 징계조치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제25조 또는 제26조). 즉 교장과 학교 교직원은 해당 학교에 재적하는 학생 등이 집단따돌림을 가하는 경우,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교 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해당 아동 등에 대해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또한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집단따돌림을 가한 학생 등의 부모에게 학교교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정지를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소속 학교가 다른 경우에도 학교는 학교 상호간의 연계 및 협력 체제를 정비하여 피해아동이나 그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가해학생의 지도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하여야 한다.

### 다. 조기발견을 위한 조치

일본 학교폭력 예방정책의 기본방향에 부합하게 동 법은 조기발견을 위한 여러 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치를 규정하고 있다(제16조). 먼저 학교는 해당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을 조기에 발견을 위하여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는 학교폭력의 신고 및 상담 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는 해당 학교학생 등이나 그 보호자 및 해당 학교 교과직원이 집단따돌림에 관한 상담을 시행할 수 있는 상담 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학교가 이러한 상담체제를 정비할 경우에는 지역사회, 가정 등과의 협력하에 피해아동 등의 교육받을 권리 또는 기타의 권리이익이 옹호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라. 중대 사태 발생 시의 대처

동 법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아동 등 생명, 심신, 재판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있거나 아동 등이 상당기간 학교를 결석하는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를 중대사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학교의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의 설립자 또는 학교는 중대사태에 대처하고 이와 유사한 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조사를 하여야,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여야 한다. 나아가 중대사태의 발생한 경우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관할 도도부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공공단체가 설립한 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각각의 장들은 위의 중대사태의 조사와 재조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 마. 사이버폭력에 대한 규제

동 법은 인터넷을 통해 행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19조). 이를 위하여 학교는 사이버 따돌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몽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이버 따돌림 예방 및 조사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규제처리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사이버 학교폭력이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와 발신자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바. 인적자원의 확보

그 외 동 법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종사하는 인재를 확보하고 그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명시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를 지원하고,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 지도·지원하며, 전문지식에 기초한 효율적인 학교폭력예방정책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과 연수를 통하여 자질을 갖춘 교원을 양성하고 교원의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학생지도체제의 내실화를 괴하기 위하여 교사·양호교사·복지 및 심리 전문가를 확보하여 이를 교육상담에 배치시키며 학교폭력대처에 관하여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3) 학교교육법

일본의 학교교육법은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징계조치와 관련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 법에 의하여 만 6세 이상의 이동은 9년의 보통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학교교육법 제16조, 제17조). 또한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교육상 필요한 경우 교장과 교원의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징계의 하나로 체벌을 행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교장 또는 교원이 아동 등을 징계할 때는 아동 등의 심신 발달을 참고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여러 가지 배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26조). 징계처분에는 퇴학과 정학 및 훈계가 있는데 그 처분은 교장이 하여야 한다(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징계는 ① 품행이 좋지 못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 ② 학력 미달로 인한 학업 성취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된 학생,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을 자주 하는 학생, ④ 학교의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벗어난 학생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내려진다(동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시정촌교육위원회는 ① 다른 아동에 상해, 심신의 고통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주는 행위, ② 교직원에게 상해 또는 심신의 고통을 주는 행위, ③ 시설 또는 설비를 파손하는 행위, ④ 수업 및 그 외 교육활동의 시행을 방해하는 행위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반복하여서 하는 등 품행이 불량하고 다른 아동의 교육에 방해된다고 인정되는 아동이 있을 때는 그 보호자에 대해 아동의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다(학교교육법 제35조제1항). 이러한 출석정지를 명할 때는 미리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사유 및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기간을 기재한 문서를 교부해야 한다(제35조제2항). 시정촌교육위원회는 출석정지 명령을 받은 아동의 출석정지 기간 중의 학습 및 기타 교육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학교교육법 제35조제4항).

## 2) 학교폭력의 개념과 실태

### (1) 개념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매년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발생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의 문제행동 등 학생지도상 문제에 관한 조사(児童生徒の問題行動等生徒指導上の諸問題に関する調査)에서는 조사대상이 되는 문제행동을 학교폭력, 이지메, 출석정지, 부등교, 중도퇴학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경우 학교폭력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사에 대한 폭력, 학생에 대한 폭력, 기타 타인에 대한 폭력, 물건손괴 등 네 가지 유형을 의미한다. 학교폭력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다른 국가와 달리 일본의 경우 집단따돌림을 학교폭력 개념 안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유형의 비행으로 분류하여 그 실태와 현상을 조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집단따돌림을 '이지메(いじめ)'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문무부성의 책자에 의하면 이지메는 자기보다 약한 자에 대하여 일방적인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행함으로써 상대가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나, 경찰청에서는 '이지메'를 단독 또는 복수의 특정인에 대해 신체에 대한 물리적 공격 또는 언동에 의한 위협, 괴롭힘, 배제, 무시 등의 심리적 압박을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함으로써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앞서 언급한 집단따돌림방지대책추진법에서는 이지메를 "학교 학생이 일정한 인간관계에 있는 다른 학생으로부터 심리적·물리적 공격을 받아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집단따돌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형식적·표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판단하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서 '일정한 인간관계가 있는 사람'이란 학교의 안과 밖을 모두 포함하여 관련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같은 학교·학급이나 동아리의 사람, 해당학생과 연관이 있는 동료나 그가 속한 집단(그룹)내에 사람을 의미한다. '공격'이란 따돌림이나 집단에 의한 무시 등 직접적인 압박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상대에게 고통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주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이지메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어서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폭력을 이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상모략을 하거나 비방하는 하는 행위도 그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 2007년 일본정부는 이러한 이지메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이지메를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사람까지 가해자로 규정하고, 학생과 그 부모가 희망할 경우 이지메를 이유로 한 전학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 (2) 실태

1983년부터 일본은 문부과학성이 주체가 되어 학교폭력 발생실태를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1996년까지는 공립 중·고등학교만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가 1997년부터는 공립 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조사를 하였고 2006년에는 사립학교까지 조사범위를 넓혔다. 문부과학성의 조사결과에 의한 중학생의 학교폭력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고등학생의 발생비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발생률은 낮았으나, 2006년부터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성별을 놓고 보면 남학생의 학교폭력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하여 중학교 남학생의 학교폭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의 여러 형태 중에서 가장 많은 사회적 논란을 가져온 것은 역시 집단따돌림이었다. 집단따돌림은 발생 빈도와 심각성을 기준으로 3개의 시기로 구분하는데 시기별로 정의와 판단 기준도 변화하여 왔다. 집단따돌림의 정의는 제1기 1985년 처음 발생한 집단따돌림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기초로 하여 개념화되었는데, 제2기 집단따돌림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 방법을 재검토하여 학교로 하여금 집단따돌림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2006년 제3기 집단따돌림이 발생하면서 그 정의가 피해아동의 입장에 집단따돌림 여부를 판단하는 개념으로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었다.[110]

일본 사회 모두가 집단따돌림의 문제를 사회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집단따돌림에 대응한 결과 2011년까지 일본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인 집단따돌림의 발생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었다. 문부과학성의 2011년 9월 통계에 의하면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학생간 폭력행위 발생건수는 2006년 23,264건에서 2011년 32,045건으로 증가한 반면에 이지메에 대한 인지건수는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0) 정기향(2017), 앞의 학위 논문, 108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러나 2012년도에 집단따돌림의 인지 건수가 다른 학교폭력과 비교하여 다시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지메 증가 현상은 해가 갈수록 확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7년 6월 일본 문무부성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전국 초·중고에서 신고된 이지메사건은 모두 32만 3,808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15년보다 10만 건이나 늘어난 것으로 수치인데 특히 초등학생의 이지메가 증가율이 두드러져 전년보다 8만 6,229건 늘어난 23만 7,921건으로 전체의 73.4%를 차지했다. 이어 중학생이 7만 1,309건(전년대비 1만 1,807건 증가), 고등학교는 1만 2,874건(전년대비 210건 증가)으로 조사되었다. 자살한 학생도 2015년 보가 29명 늘어난 244명이나 되었다.[111] 이러한 이지메 증가현상은 현재까지도 계속되어 2018년 10월 이지메 발생건수는 41만 4,378건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9만 1,235건이나 급증한 것으로 문무부성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31만 7,121건, 중학교 8만 424건, 고등학교 1만 4,789건으로 나타났으며 사이버 따돌림도 전년도 대비 1,853건 증가한 1만 2,632건으로 이는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생명이나 신체안전이 위협받는 중대 사태 수준의 이지메 건수도 초등학교 145건, 중학교 224건, 고교 102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70%는 피해자가 등교하지 않는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지메로 자살한 경우는 10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하다. 연간 30일 이상 결석하는 이른바 등교 거부 학생수는 14만 4,031명으로 1998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60%는 초등학생 956명이며 중학생은 4,281명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의 제정으로 이지메의 조기발견이 확대되고 국가 차원의 예방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 등을 포함한 중대사태의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각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112]

한편 일본에서는 작년 2월 등교 거부 학생들이 학원에서라도 배울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한다는 내용의 교육기회확보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도쿄도는 등교 거부 학생 자택에 임상심리사를 파견하거나 자연체험 숙박 등을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경험케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113]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 대해 취해지는 조치 역시 매우 다양한데, 전체적으로는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 지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초등학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111) https://news.joins.com/article/22056946.
112) https://www.msn.com/ko-kr/news/world/...dlwlaprjstn.../ar-BBOUKm8.
113) https://www.msn.com/ko-kr/news/world/...dlwlaprjstn.../ar-BBOUKm8.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조치로는 “피해자 등에 대한 사과지도, 규범의식 양성지도, 친구 관계 개선지도, 가족관계 개선 및 조정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피해자 등에 대한 사과지도, 규범의식 양성지도, 가족관계 개선 및 조정, 교직원과의 관계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규범의식 양성지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피해자 등에 대한 사과 지도, 친구 관계 개선지도, 가족관계 개선 및 조정, 개별학습지원” 순으로 조치가 이루어졌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지도는 대부분 초·중학생의 경우에 높고 반면에 고등학생 경우에는 규범의식 양성지도를 많이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114]

### (3) 학교폭력처리 절차

학교폭력에 관한 기본적 절차는 집단따돌림(이지메)방지대책추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및 운영방법 등에 따라 진행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도도부현 별 교육위원회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매뉴얼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교폭력사안이 경미한 경우, 학교 내에서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심각한 사안인 경우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일단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교사가 상담에 참여하며, 학교 전체가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정신적면을 배려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안이 긴급하거나 심각하여 긴급피난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하여 별실(상담실, 보건실 등)로 등교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교사가 직접 인지하거나, 보호자나 지역주민 등의 제보로 인하여 학교폭력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학교는 즉시 피해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학교가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하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의 상담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를 준비하여 신속히 학교장과 관계직원에게 보고한 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실확인을 하고 앞으로의 대응방안 및 지도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개최되면 피해학생이 신뢰하는 교사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세부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역할분담을 하고 서로 간에 정보공유를 한다. 이 프로젝트 팀의 구성원은 담임, 학년주임, 학생지도교사, 교육상담담당자, 보건교사, 학교상담사 등이고 사안에 따라 구성원을 변경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팀에서는 피해학생과

114) 정기향(2017), 앞의 논문, 108면-109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현재의 상황, 앞으로의 대응내용과 그 절차, 지도, 지원방침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전달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리적 안정을 요구하거나 학교와 보호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다.

### (4) 집단따돌림(이지메)에 대한 정부정책

일본의 학교폭력 등 문제행동 방지를 위한 기본정책은 청소년의 정신적인 부분에 적절하게 대비하여 사회성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① 즐거운 학교만들기와 알기 쉬운 수업, 인성교육의 확대, ② 학생지도체제의 확대를 위한 교직원의 자질과 능력 제고, ③ 교육상담체제의 확대, ④ 학교·가정·지역·관계기관과 함께 학교폭력을 사전 예방하는 것 등을 그 목표로 하고 시행되고 있다.

#### 가. 출석정지제도 활용

이지메와 같은 학생의 문제행동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학교교육법에서는 출석정지 요건과 그 절차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출석정지 기간 중 학생에 대한 학습 지원규정을 도입하여 200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즉, 출석정지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행위를 열거하고 이를 반복하여 행한 경우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였으며 출석정지 조치시 의무적으로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며, 출석정지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문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등 출석정지절차 규정을 정비하였다. 또한 출석정지기간 중 교직원이 가해학생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와 교육상담을 하거나 관계기관의 직원과 연계하여 지도하는 등 출석정지 기간 중 충분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두고 있다.

#### 나. 교육상담시스템 강화

일본은 이지메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학교교육을 개선하여, 교육과정기준을 개선하고, 심성교육을 강화하며 풍부한 체험활동을 추진하면서, 이지메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응을 위해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학생, 교사, 보호자 등이 상담교사에게 상시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 등교거부나 문제행동 등을 미연에 방지 또는 조기발견하기 위해 학생상담원(상급생이 하급생을 상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해주는 제도)과 학부모 상담원을 1,410개교에 배치하고, 학생지도체제의 충실과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추진하는 학생지도추진협력원도 550개교에 배치하였다. 2005년 문부과학성은 '학교폭력 등 문제행동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청소년의 심리적 부분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사회성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위해 ① 알기 쉬운 수업, 즐거운 학교 만들기와 인성교육 강화, ② 학생지도체제의 강화를 위한 교원의 자질능력 향상, ③ 교육상담체제 강화, ④ 학교·가정·지역·관계기관의 연계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등을 그 목표로 하였으며 학교는 일체가 되어 학생의 다양한 고민을 받아주고, 적극적으로 교육상담을 해야 하며. 학생의 규범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지메나 폭력행위 등에 관한 결과와 대응의 기준을 명확하게 한 내용을 보호자나 지역주민 등에게 공표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문제행동 특히 학교 내에서 상해 등 범죄행위가 발생한 경우 학교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협력하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 다. 교원자질의 개선[115]

2012년 5월 15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지메와 등교거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직원 자질을 향상시키는 종합방안을 발표하였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교육인재 육성상의 변화가 요구되며 이지메, 등교거부와 같은 학교폭력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고, ICT 활용 등의 과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원의 자질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교원상의 확립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위원회와 대학과의 제휴·협동을 통해 교직생활내 배움을 지속하는 교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교원 자격과 관련하여 교원면허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일반자격증'과 '기초자격증'으로 구분된다. 일반자격증은 탐구력,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힘, 교과나 교직에 관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 새로운 배움을 전개할 수 있는 실천적 지도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보증하며, 반면에 기초자격증은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교육적 애정, 교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기능, 교직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기능을 보증한다. '일반자격증'은 학부 4년 과정과 1년부터 2년 정도의 석사과정을 표준으로 하고, '기초면허장(가칭)'은 학사과정 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115) 교원자질향상 개선안 주요내용은 http://www.mext.go.jp/b_menu/shingi/hukyo/chukyo11/sonota/__icsFiles/ afieldfile/2012/05/15/1321079_1.pdf,.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학교경영, 학생지도, 진로지도, 교과지도(교과마다), 특별지원교육, 외국인아동학생교육, 정보교육 등 특정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가진 것을 증명 하는 '전문자격증'제도도 도입하였다.[116]

### 라. 군마현(群馬県)의 집단따돌림 방지 학생지도 매뉴얼[117]

도쿄 인근 군마 캔 교육위원회에서는 집단 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한 매우 상세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지역의 모범적 모델이 되고 있다. 이 매뉴얼에서는 집단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하여 먼저 교사가 학급을 충실히 운영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학생에 대해 교사는 수용적·공감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이 서로를 인정하는 학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나아가 학생들의 자치적 활동을 보장해 규율을 준수하면서도 활기가 넘치는 학급 분위기를 형성하여야 한다. 그 밖에 학생들에 대한 도덕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집단괴롭힘을 소재로 채택하는 역할연기나 도덕수업을 진행하고 집단괴롭힘이 허용되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갖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이 매뉴얼에서는 이지메와 무관한 학생과 방관자 학생들은 같은 교실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따돌림을 교사에게 제대로 알리거나 중단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집단따돌림을 예방하는 데에 있어서 이러한 이지메 방관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118]

## (5) 가해학생 선도 정책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문제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선도 정책이 추진된 바 있다. 먼저 2004년 문부과학성에 의하여 학교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학생의 문제행동에 관한 프로젝트팀'이 설치되어 학생의 문제행동 대책 중점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며, 이후 2006년 국립교육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학생지도체제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에 근거하여, 문제학생의 행동을 개선하는 기본적 지침과 함께 초·중·고등학생에 맞는 진보적 개별 대책 프로그램이 개발·시행되었다.

---

116) 이승현·노성호(20124), 앞의 연구보고서, 217면-218면.
117) 日本文部科学省, "生徒指導体制の在り方について", 調査研究報告書(概要) - 規範意識の醸成を目指して -, 2006, p. 2 참조.
118) 정재준(2012),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한국·일본의 비교법적 연구", 「법학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제53권 제2호, 88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007년 2월 5일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학생에 대한 지도에 대하여(問題行動を起こす児童生徒に対する指導について)」라는 통지문에서는 학생의 문제행동이 발생했을 때에 교육위원회와 학교가 취해야 하는 출석정지, 징계 및 처벌 등과 같은 지도방법을 제시하고 있다.[119] 출석정지는 징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내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학생의 교육을 충실히 받을 권리를 확보하려는 조치이다. 학교의 지도가 효과가 없고, 집단따돌림 등의 문제행동이 지속되어서 정상적인 교육환경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출석정지제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출석정지를 명하는 경우 원활한 복귀를 위하여 학교는 문제학생의 학습을 보완·지원해 주고, 학급담임 등이 규칙적인 가정방문을 하여야 하며, 독서 등의 과제를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시정촌교육위원회도 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기간 중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별 지도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각종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지도교사나 학교상담사를 파견하거나, 교직원의 추가배치나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학교나 시정촌교육위원회를 지원한다. 실질적인 출석정지제도의 운영에 대하여는 2001년 문부과학성 초·중등교육 국장의 통지인 '출석정지제도의 운영 형태에 대하여(出席 停止制度の運用の在り方について)'에 따라 실시한다. 그 외, 교장과 교직원은 교육 운영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학생에게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이러한 징계저치에는 정학과 퇴학 등의 처분이 포함된다.

## 5. 시사점

앞서 본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은 각 국가의 학교폭력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차별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학교폭력관련 예방정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감독자 책임과 관련하여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동 법은 학교폭력의 대상이 학생인 경우뿐만 아니라 교직원에 대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고, 대학의 경우 가장 큰 문제인 신입생환영을 이유로 각종 행사에서 벌어지는 신입생 곯여주기(Hazing)를 포함하여 규율하고 있고, 그 외 감독자에 대하여 위기상황의 발생시 적극적 개입을 위한 조치를

119) http://www.mext.go.jp/a_menu/shotou/seitoshidou/07020609.htm#a01.

KOR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취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현재 학교폭력의 경우 그 수위가 심각해지고 있고 그 피해 대상이 반드시 학생만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예방대책에 보호자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의 규정은 향후 우리의 학교폭력 제도의 개선방안에서 도입할 가치가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각종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이 '학생-학부모-학교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효과적인 예방프로그램이 민간 또는 정부기관의 지원을 통해 개발되어 학교에 확산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이라는 우리의 과제를 실현하는 데에 고려할 수 있는 좋은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갈등해결과 또래중재방식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가해학생의 퇴학이나 중도 탈락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며, 가해학생이 치료적·심리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학교생활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례도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가 중심을 이루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정부 차원에서 상당기간 학교폭력예방 정책을 실시하여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최근 집단따돌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독일의 경험은 학교폭력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정책의 개발을 통해 사회전체가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문제임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3단계 대응을 통해 사안을 분류하고 각 상황에 맞는 전문가의 개입을 시도하여 학교내에서 처리할 사안과 경찰이 즉시 개입할 사안을 구분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는 학교내 조치와 형사절차를 통한 처분이 구분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좋은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적용에 있어서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는 학교폭력에 대해 어떠한 사후 대처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우리 학교폭력방지 정책을 수립·운영할 때에 기본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할 내용이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유형 가운데 이지메를 별도로 분리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대응매뉴얼과 대응지침도 마련해 두고 있으며 학교폭력 실태조사도 매우 구체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오랜 기간 철저하고 상세하게 조사하고 이를 수치로 통계화하여 이렇게 누적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로 새로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일본의 태도는 향후 우리의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대응방향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알게 해 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일본 역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연계와 협조 체제를 잘 갖추고 있다. 집단 따돌림에 대한 조기대응과 그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고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 전체가 조직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학교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지역관계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게 함으로써 사안별·단계별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고 있다. 앞서 언급한 미국의 경험 외에 이러한 일본의 사례도 우리의 모형으로 참고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학교를 둘러싼 여러 단체들간의 협력적 관계를 통하여 예방적·회복적 관점에 집중하면서도 학부모의 교육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 영국의 사례도 가해자의 처분과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이 중심을 이루는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해 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Ⅳ

#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조사 개요
2. 조사 대상자 특성
3. 학교폭력 인식
4. 학교폭력 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인식
5. 학교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절차 개선방안 인식
6. 요약 및 시사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1. 조사 개요

## 1) 조사 목적

본 조사의 목적은 학교폭력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인권적, 법적, 교육적, 회복적 측면에서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법제 및 정책개선방안 마련의 기초자료 확보에 있다.

## 2) 조사 개요

조사대상은 피해학생, 가해학생, 일반학생을 포함한 학생 집단과 피해학생 학부모 집단 일반 학부모 및 관계자 집단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의 확보는 학교폭력 유관기관 및 각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총 780명의 유효표본을 확보하였다. 조사기간은 2019년 10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사의 방법은 오프라인/온라인/모바일 웹 설문을 통해 실시하였다.

**〈표 Ⅳ-1〉 조사 개요**

| 구분 |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에 대한 인식조사 |
|---|---|
| 조사 대상 | 학생(피해학생, 가해학생, 일반학생), 피해학생 학부모, 학부모, 관계자 |
| 조사 방법 | 학교폭력 유관기관, 교육청 등의 협조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
| 조사 지역 | 전국 |
| 분석 사례수 | 780명<br>(학생 474명, 피해학생 학부모 96명, 학부모 및 관계자 210명) |
| 조사 기간 | 2019. 10. 02 ~ 10. 30. |

## 3) 조사 항목

조사항목은 조사대상별 응답자 특성 문항과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절차 및 과정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절차 개선방안 인식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으며,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에 대한 인식의 경우 피해학생, 가해학생, 일반학생, 피해학생 학부모별로 문항을 구성하여 질의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실태조사에 활용한 문항들은 학교폭력실태조사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그동안 수행되어온 다수의 연구에서 개발·수행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학교폭력의 실태와 가해·피해경험에 관한 문항들은 학교폭력실태를 다룬 연구(교육부, 2018; 김이경·한유경·김성기, 2015; 정도철·박효정·김현진·김진구, 2017; 정세영·김성기·선미숙, 2017; 푸른나무청예단, 2018; 한유경·김성식·이희숙·이윤희, 2015; 한유경·김성식·이희숙·이윤희·이주연, 2014; 한유경·김성식·이희숙·황혜영, 2017)를 참고해 활용하였다.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와 분쟁해결절차와 관련된 조사문항은 학교폭력 당사자간 화해·분쟁조정과 사건처리절차를 다룬 연구(신윤미·장형윤·이제정, 2015; 이경상·김승혜, 2018; 이근영·박숙영·윤소민·최보라, 2018; 이승현·정제영·강태훈·김무영, 2014; 장다혜·김정연·강지명·설경옥, 2016; 정세영·김성기·김화영, 2016; 푸른나무청예단, 2018; 홍선영·구혜경, 2017)에서 개발·수행한 문항들을 참고해 사용하였다. 아울러 연구진이 수행한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학부모, 교사 및 학교폭력예방 관련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수행한 초점집단면접 조사결과에 기반해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아래의 표는 실태조사에 사용한 설문문항의 특성별 문항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피해학생 학부모, 학부모 및 관계자 등이 응답한 조사문항영역을 보여준다.

**〈표 Ⅳ-2〉 조사내용**

| 구분 | | 질문내용 | 조사대상 | | |
|---|---|---|---|---|---|
| | | | 학생 | 피해 학생 학부모 | 학부모 및 관계자 |
| 응답자 특성 | | 성별 | ○ | ○ | ○ |
| | | 학년별, 학교유형별, 학업수준별 | ○ | | |
| | | 가족유형별, 지역별 | ○ | ○ | |
| | | 학생과의 관계, 가정경제 수준 | | ○ | |
| | | 나이, 직업, 경력, 경력,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원 관여경험 | | | ○ |
| 학교폭력 인식 | | 학교폭력 인식 및 유형별 심각성, 학교폭력 발생빈도, 학교폭력 심각성, 발생 원인 및 이유, 학교폭력 발생 대처, 폭력서클 유무 및 인식 | ○ | ○ | ○ |
| | 학생 공통 | 피해 및 가해경험 유형, 자치위원회 문제해결 경험 | ○ | |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구분 | | 질문내용 | 조사대상 | | |
|---|---|---|---|---|---|
| | | | 학생 | 피해 학생 학부모 | 학부모 및 관계자 |
| 학교 폭력 사건 처리 절차 및 과정 인식 | 피해 학생 | 학교폭력 고통정도, 등교기피, 학교폭력 영향 및 극복방법, 학교폭력 도움요청 경험 및 도움도, 학교폭력 피해 후 조치, 보호조치 및 도움도, 학교폭력 피해 극복 여부 및 계기, 가해학생 태도/반응, 신고후 경험, 자치위원회 경험,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여부 및 안내여부, 형사고소 여부 및 이유,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여부, 학교폭력 사후처리 과정, 전학여부 | ○ | | |
| | 가해 학생 | 학교폭력 행위 인식, 가해 후 조치, 선도/교육조치 및 도움도, 선도/교육조치 인식 및 행동변화, 선도/교육조치 후 행동변화, 교육내용/기관 안내 여부,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인지 여부 및 여부,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여부, 학교폭력 지속여부 및 중단 계기, 자치위원회 경험 | ○ | | |
| | 일반 학생 | 학교폭력 목격경험 및 인식, 목격 후 행동, 학교폭력 외면 이유, 목격 후 대응 | ○ | | |
| | 피해 학생 학부모 | 학교폭력 고통정도 및 영향, 도움요청 경험 및 이유, 도움요청 도움도, 피해 후 조치, 보호조치 및 도움도, 조치 적절성 및 이유, 가해학생 태도/반응, 신고후 경험, 자치위원회 경험,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여부 및 안내여부, 형사고소 여부 및 이유,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여부, 학교폭력 사후처리 과정, 전학여부 | | ○ | |
| 학교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절차 개선방안 인식 | | 학교폭력 예방교육 경험 및 도움도, 학교폭력예방법 및 자치위원회 인지여부, 학교폭력예방법 및 자치위원회 필요도 및 도움도, 자진신고/피해신고 기간 운영 인지여부 및 도움도, Wee클래스 인지여부, 인지경로, 이용 프로그램, 활용의향 | ○ | | |
| | | 대화모임(회복조정) 자녀참여 의향 및 이유, 대화모임(회복조정) 선호 진행자, 학교폭력 발생시 조치 적절성, 학교폭력 신고 후 조사 신속성 | | ○ | |
| | | 학교의 학교폭력 해결 능력 및 이유, 학교폭력 처리절차 인식, 학교폭력 처리원칙 우선순위, 당사자간 화해절차 필요도 및 이유, 당사자간 화해 시 자치위원회 반영 정도, 자치위원회 역할 만족도,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인지여부,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이행도,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미흡 이유, 학교폭력 처리과정 중요도, 학교폭력 처리과정 만족도, 학교폭력 처리과정 개선방안 필요도 | | ○ | ○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구분 | 질문내용 | 조사대상 | | |
|---|---|---|---|---|
| | | 학생 | 피해 학생 학부모 | 학부모 및 관계자 |
| | 학교폭력 예방 학교문화, 학교폭력 예방 정책 중요도, 학교 자체해결 인식 및 이유, 학교 자체해결 기준 및 사안, 학교 자체해결 우려사항, 학생 선도조치 기록 인식 및 이유,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도움도, 피해학생 보호조치 도움도, 화해/관계회복 조정역할, 분쟁해결 조정역할, 전문 상담기관 필요도, 손해배상갈등 중재역할 필요도, 학교안전공제회 인지여부, 학교폭력 예방대책 만족도 | ○ | ○ | ○ |

## 2. 조사 대상자 특성

### 1) 학생

학생은 총 474명이 응답하였으며, 이 중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은 13명(2.7%),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은 34명(7.2%),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모두 있는 학생은 23명(4.9%), 경험이 없는 학생은 404명(85.2%)이다.

응답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56.5%로, '남학생'(43.5%)보다 많았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69.6%로, '중학생'(30.4%)에 비해 많았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고'가 76.4%로 '전문고'(23.6%)에 비해 많았다.

가족 유형별로는 '양부모가족'이 80.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부모가족'(11.2%)의 순이었고, 조손가족 등의 '기타' 가족 유형이 8.0%로 나타났다. 조사대상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는 '인천/경기'가 32.1%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서울'(24.5%), '부산/울산/경남'(12.7%), '대구/경북'(9.1%), '광주/전라'(8.9%) 등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수준별로는 '우수'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35.4%였으며, '보통'은 42.8%, '저조'는 2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3〉 [학생] 응답자 특성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 |
|---|---|---|---|
| 전 체 | | (474) | 100.0 |
| 학교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2.7 |
| | 피해경험 | (34) | 7.2 |
| | 가해/피해경험 | (23) | 4.9 |
| | 비경험 | (404) | 85.2 |
| 성별 | 남성 | (206) | 43.5 |
| | 여성 | (268) | 56.5 |
| 학교급별 | 중학생 | (144) | 30.4 |
| | 고등학생 | (330) | 69.6 |
| 학교 유형별 | 일반고 | (252) | 76.4 |
| | 전문고 | (78) | 23.6 |
| 가족 유형별 | 양부모가족 | (383) | 80.8 |
| | 한부모가족 | (53) | 11.2 |
| | 기타 | (38) | 8.0 |
| 지역별 | 서울 | (116) | 24.5 |
| | 인천/경기 | (152) | 32.1 |
| | 대전/충청/세종 | (36) | 7.6 |
| | 부산/울산/경남 | (60) | 12.7 |
| | 대구/경북 | (43) | 9.1 |
| | 광주/전라 | (42) | 8.9 |
| | 강원/제주 | (25) | 5.3 |
| 학업 수준별 | 저조 | (103) | 21.7 |
| | 보통 | (203) | 42.8 |
| | 우수 | (168) | 35.4 |

## 2) 학부모 및 관계자

### (1) 응답자 특성별 구분

학부모 및 관계자는 총 306명 응답하였으며, 이 중 피해학생 학부모는 96명(31.4%), 일반 학부모는 169명(55.2%), 관계자는 41명(13.4%)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4〉 [학부모 및 관계자] 응답자 특성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 |
|---|---|---|---|
| 전 체 | | (306) | 100.0 |
| 집단 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31.4 |
| | 일반 학부모 | (169) | 55.2 |
| | 관계자 | (41) | 13.4 |

### (2) 피해학생 학부모

피해학생 학부모집단의 응답자 성별로는 '여성'이 81.3%로, '남성'(18.8%)에 비해 많았다. 가족 유형별로는 '양부모가족'이 66.7%로 많았고, 다음으로 '한부모가족'(25.0%), '기타'(8.3%) 등의 순이었다.

거주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이 39.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천/경기'(15.6%), '광주/전라'(13.5%), '부산/울산/경남'(11.5%) 등의 순이었다. 학생과의 관계는 '어머니'인 경우가 81.3%였으며, '아버지'인 경우는 10.4%로 나타났고, 조부모, 친척 등 '기타' 관계도 8.3%로 나타났다. 가정경제 수준별로 '높음'은 11.5%였으며, '보통'이 47.9%, '낮음'이 40.6%의 분포를 보였다.

〈표 Ⅳ-5〉 [피해학생 학부모] 응답자 특성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 |
|---|---|---|---|
| 피해학생 학부모 | | (96) | 100.0 |
| 성별 | 남성 | (18) | 18.8 |
| | 여성 | (78) | 81.3 |
| 가족 유형별 | 양부모가족 | (64) | 66.7 |
| | 한부모가족 | (24) | 25.0 |
| | 기타 | (8) | 8.3 |
| 지역별 | 서울 | (38) | 39.6 |
| | 인천/경기 | (15) | 15.6 |
| | 대전/충청/세종 | (6) | 6.3 |
| | 부산/울산/경남 | (11) | 11.5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구분 | | 사례수 | % |
|---|---|---|---|
| | 대구/경북 | (6) | 6.3 |
| | 광주/전라 | (13) | 13.5 |
| | 강원/제주 | (7) | 7.3 |
| 학생과의 관계 | 아버지 | (10) | 10.4 |
| | 어머니 | (78) | 81.3 |
| | 기타 | (8) | 8.3 |
| 가정 경제 수준 | 낮음 | (39) | 40.6 |
| | 보통 | (46) | 47.9 |
| | 높음 | (11) | 11.5 |

### (3) 일반 학부모

일반학부모집단의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82.8%로, '남성'(17.2%)에 비해 많았다. 연령별로 '30대'가 50.3%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40대'(45.6%), '50대'(3.0%), '20대'(1.2%) 등의 순이었다.

자치위원회 관여경험별로는 '직접경험'이 있는 경우는 13.0%였고, '간접경험'이 있는 경우는 32.5%로 나타났다. '경험없음'은 54.4%였다.

**〈표 Ⅳ-6〉 [일반 학부모] 응답자 특성**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 |
|---|---|---|---|
| 일반 학부모 | | (169) | 100.0 |
| 성별 | 남성 | (29) | 17.2 |
| | 여성 | (140) | 82.8 |
| 연령별 | 20대 | (2) | 1.2 |
| | 30대 | (85) | 50.3 |
| | 40대 | (77) | 45.6 |
| | 50대 | (5) | 3.0 |
| 자치위원회 관여경험 | 직접경험 | (22) | 13.0 |
| | 간접경험 | (55) | 32.5 |
| | 경험없음 | (92) | 54.4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4) 관계자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해 종사하는 관계자집단의 응답자 성별은 '여성'이 58.5%로, '남성'(41.5%)에 비해 많았다. 연령별로 '30대'가 4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26.8%), '50대'(22.0%), '20대'(4.9%) 등의 순이었다.

관계자집단의 직업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상담사'가 4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사'(41.5%), '교육청 공무원'(9.8%)의 순이었다. 관계자집단의 경력은 '6~10년'이 3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1년 이상'(26.8%), '1~2년'(24.4%), '3~5년'(17.1%) 등의 순이었다.

관계자집단의 자치위원회 참여경험별로는 '직접경험'은 26.8%, '간접경험'은 39.0%였고, '경험없음'은 34.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 [관계자] 응답자 특성**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 |
|---|---|---|---|
| 관계자 | | (41) | 100.0 |
| 성별 | 남성 | (17) | 41.5 |
| | 여성 | (24) | 58.5 |
| 연령별 | 20대 | (2) | 4.9 |
| | 30대 | (19) | 46.3 |
| | 40대 | (11) | 26.8 |
| | 50대 | (9) | 22.0 |
| 직업 | 교사 | (17) | 41.5 |
| | 교육청 공무원 | (4) | 9.8 |
| | 사회복지사/상담사 | (20) | 48.8 |
| 경력별 | 1~2년 | (10) | 24.4 |
| | 3~5년 | (7) | 17.1 |
| | 6~10년 | (13) | 31.7 |
| | 11년 이상 | (11) | 26.8 |
| 자치위원회 관여경험 | 직접경험 | (11) | 26.8 |
| | 간접경험 | (16) | 39.0 |
| | 경험없음 | (14) | 34.1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3. 학교폭력 인식

## 1) 학생

### (1) 학교폭력 피해경험 유형

학생들이 응답한 학교폭력 피해경험 유형으로는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42.6%)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17.5%),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16.2%), '다른 학생에게 맞은 적이 있다'(12.0%), '협박이나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11.4%), '성적인 놀림과 접촉을 당한 경험이 있다'(9.1%), '사이버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8.4%), '돈이나 물건을 뺏긴 적이 있다'(7.0%), '강요, 강제 심부름을 당한 적이 있다'(4.4%) 등의 순으로 피해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Ⅳ-1〉 [학생] 피해경험 유형**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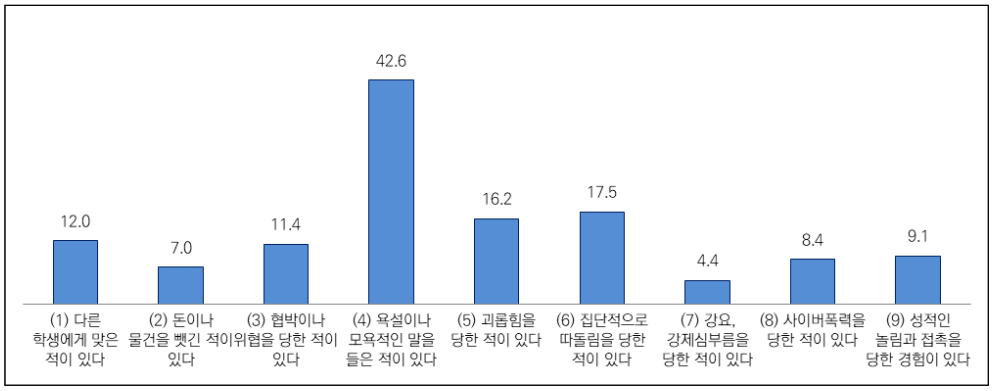


응답자의 학교폭력 경험별, 성별, 학교급별, 학교 유형별로 가해경험집단은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가 모든 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별 피해경험 유형을 비교해 본 결과, 남학생집단이 '다른 학생에게 맞은 적이 있다'(17.5%, $F=10.413$, $p<0.001$)에서 유의미하게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집단은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24.3%, $F=20.156$, $p<0.001$)에서 유의미하게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가 '강요, 강제심부름을 당한 적이 있다'(5.2%, $F=4.217$, $p<0.05$)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응답비율이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표 Ⅳ-8〉 [학생] 피해경험 유형 (1/2)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다른 학생에게 맞은 적이 있다 | 돈이나 물건을 뺏긴 적이 있다 | 협박이나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 |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 |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
|---|---|---|---|---|---|---|---|
| 전 체 | | (474) | 12.0 | 7.0 | 11.4 | 42.6 | 16.2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23.1 | 0.0 | 7.7 | 46.2 | 15.4 |
| | 피해경험 | (34) | 35.3 | 23.5 | 35.3 | 73.5 | 52.9 |
| | 가해/피해경험 | (23) | 26.1 | 21.7 | 34.8 | 56.5 | 43.5 |
| | 비경험 | (404) | 8.9 | 5.0 | 8.2 | 39.1 | 11.6 |
| | 통계량 | - | F=9.428, p=0.000 | F=8.966, p=0.000 | F=12.894, p=0.000 | F=5.900, p=0.001 | F=19.518, p=0.000 |
| 성별 | 남성 | (206) | 17.5 | 6.8 | 8.3 | 43.2 | 16.5 |
| | 여성 | (268) | 7.8 | 7.1 | 13.8 | 42.2 | 16.0 |
| | 통계량 | - | F=10.413, p=0.001 | F=0.015, p=0.901 | F=3.570, p=0.059 | F=0.051, p=0.821 | F=0.018, p=0.893 |
| 학교급 별 | 중학생 | (144) | 16.0 | 8.3 | 12.5 | 47.2 | 16.0 |
| | 고등학생 | (330) | 10.3 | 6.4 | 10.9 | 40.6 | 16.4 |
| | 통계량 | - | F=3.052, p=0.081 | F=0.599, p=0.439 | F=0.250, p=0.617 | F=1.794, p=0.181 | F=0.011, p=0.916 |
| 학교 유형별 | 일반고 | (252) | 11.1 | 6.3 | 12.7 | 39.7 | 16.3 |
| | 전문고 | (78) | 7.7 | 6.4 | 5.1 | 43.6 | 16.7 |
| | 통계량 | - | F=0.750, p=0.387 | F=0.000, p=0.985 | F=3.528, p=0.061 | F=0.375, p=0.541 | F=0.007, p=0.934 |

C1. 다음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피해경험이 있다면 해당되는 곳에 V표기해 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9〉 [학생] 피해경험 유형 (2/2)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 강요, 강제 심부름을 당한 적이 있다 | 사이버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 성적인 놀림과 접촉을 당한 경험이 있다 |
|---|---|---|---|---|---|---|
| 전 체 | | (474) | 17.5 | 4.4 | 8.4 | 9.1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15.4 | 15.4 | 0.0 | 7.7 |
| | 피해경험 | (34) | 50.0 | 17.6 | 29.4 | 17.6 |
| | 가해/피해경험 | (23) | 47.8 | 13.0 | 26.1 | 26.1 |
| | 비경험 | (404) | 13.1 | 2.5 | 5.9 | 7.4 |
| | 통계량 | - | F=16.400, p=0.000 | F=8.866, p=0.000 | F=11.757, p=0.000 | F=4.230, p=0.006 |
| 성별 | 남성 | (206) | 8.7 | 3.9 | 8.3 | 10.2 |
| | 여성 | (268) | 24.3 | 4.9 | 8.6 | 8.2 |
| | 통계량 | - | F=20.156, p=0.000 | F=0.256, p=0.613 | F=0.016, p=0.898 | F=0.555, p=0.457 |
| 학교급별 | 중학생 | (144) | 14.6 | 5.6 | 9.7 | 10.4 |
| | 고등학생 | (330) | 18.8 | 3.9 | 7.9 | 8.5 |
| | 통계량 | - | F=1.225, p=0.269 | F=0.617, p=0.433 | F=0.439, p=0.508 | F=0.452, p=0.502 |
| 학교 유형별 | 일반고 | (252) | 18.3 | 5.2 | 7.1 | 9.5 |
| | 전문고 | (78) | 20.5 | 0.0 | 10.3 | 5.1 |
| | 통계량 | - | F=0.198, p=0.657 | F=4.217, p=0.041 | F=0.793, p=0.374 | F=1.480, p=0.225 |

C1. 다음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피해경험이 있다면 해당되는 곳에 V표기해 주세요

### (2) 학교폭력 가해경험 유형

학생들이 응답한 학교폭력 가해경험 유형으로는 '다른 학생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23.4%)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다른 학생을 때린 적이 있다'(12.2%), '다른 학생을 집단적으로 따돌린 적이 있다'(7.6%), '다른 학생에게 협박이나 위협을 한 적이 있다', '다른 학생에게 성적인 놀림과 접촉을 한 경험이 있다'(각 5.1%), '다른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적이 있다'(4.2%), '다른 학생에게 사이버폭력을 가한 적이 있다'(3.0%), '다른 학생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다'(2.7%), '다른 학생에게 강요, 강제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다'(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Ⅳ-2〉 [학생] 가해경험 유형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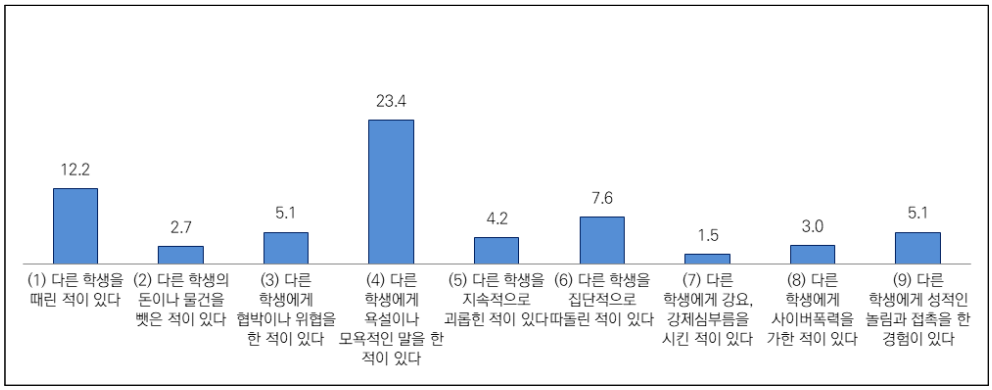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별로 가해경험집단과 피해경험집단, 비경험집단은 '다른 학생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가해/피해경험집단은 '다른 학생을 때린 적이 있다'가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 학교급별, 학교 유형별로는 '다른 학생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가 모든 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별 가해경험 유형을 비교해 본 결과, 성별은 남학생집단이 '다른 학생을 때린 적이 있다'(18.4%, $F=13.400$, $p<0.001$), '다른 학생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29.6%, $F=7.891$, $p<0.01$), '다른 학생에게 강요, 강제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다'(2.9%, $F=5.197$, $p<0.05$)에서 유의미하게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은 중학생집단이 '다른 학생을 때린 적이 있다'(20.1%, $F=12.289$, $p<0.001$), '다른 학생을 집단적으로 따돌린 적이 있다'(11.8%, $F=5.261$, $p<0.05$)에서 유의미하게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가 '다른 학생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24.6%, $F=6.095$, $p<0.05$)에서 유의미하게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표 Ⅳ-10〉 [학생] 가해경험 유형 (1/2)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다른 학생을 때린 적이 있다 | 다른 학생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다 | 다른 학생에게 협박이나 위협을 한 적이 있다 | 다른 학생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 다른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적이 있다 |
|---|---|---|---|---|---|---|---|
| 전 체 | | (474) | 12.2 | 2.7 | 5.1 | 23.4 | 4.2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23.1 | 0.0 | 30.8 | 46.2 | 23.1 |
| | 피해경험 | (34) | 20.6 | 5.9 | 5.9 | 29.4 | 14.7 |
| | 가해/피해경험 | (23) | 52.2 | 30.4 | 30.4 | 43.5 | 13.0 |
| | 비경험 | (404) | 8.9 | 1.0 | 2.7 | 21.0 | 2.2 |
| | 통계량 | - | F=15.212, p=0.000 | F=28.243, p=0.000 | F=19.858, p=0.000 | F=3.675, p=0.012 | F=10.242, p=0.000 |
| 성별 | 남성 | (206) | 18.4 | 2.9 | 4.9 | 29.6 | 3.9 |
| | 여성 | (268) | 7.5 | 2.6 | 5.2 | 18.7 | 4.5 |
| | 통계량 | - | F=13.400, p=0.000 | F=0.039, p=0.843 | F=0.033, p=0.856 | F=7.891, p=0.005 | F=0.101, p=0.750 |
| 학교급 별 | 중학생 | (144) | 20.1 | 1.4 | 7.6 | 27.8 | 6.9 |
| | 고등학생 | (330) | 8.8 | 3.3 | 3.9 | 21.5 | 3.0 |
| | 통계량 | - | F=12.289, p=0.000 | F=1.419, p=0.234 | F=2.860, p=0.091 | F=2.193, p=0.139 | F=3.815, p=0.051 |
| 학교 유형별 | 일반고 | (252) | 9.9 | 4.4 | 4.0 | 24.6 | 3.2 |
| | 전문고 | (78) | 5.1 | 0.0 | 3.8 | 11.5 | 2.6 |
| | 통계량 | - | F=1.705, p=0.193 | F=3.539, p=0.061 | F=0.002, p=0.962 | F=6.095, p=0.014 | F=0.075, p=0.784 |

C2. 다음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해경험이 있다면 해당되는 곳에 V표기해 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11〉 [학생] 가해경험 유형 (2/2)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다른 학생을 집단적으로 따돌린 적이 있다 | 다른 학생에게 강요, 강제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다 | 다른 학생에게 사이버폭력을 가한 적이 있다 | 다른 학생에게 성적인 놀림과 접촉을 한 경험이 있다 |
|---|---|---|---|---|---|---|
| 전 체 | | (474) | 7.6 | 1.5 | 3.0 | 5.1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23.1 | 7.7 | 15.4 | 15.4 |
| | 피해경험 | (34) | 14.7 | 2.9 | 5.9 | 5.9 |
| | 가해/피해경험 | (23) | 30.4 | 4.3 | 21.7 | 30.4 |
| | 비경험 | (404) | 5.2 | 1.0 | 1.2 | 3.2 |
| | 통계량 | - | F=9.572, p=0.000 | F=1.979, p=0.116 | F=14.634, p=0.000 | F=13.106, p=0.000 |
| 성별 | 남성 | (206) | 5.3 | 2.9 | 2.9 | 6.8 |
| | 여성 | (268) | 9.3 | 0.4 | 3.0 | 3.7 |
| | 통계량 | - | F=2.644, p=0.105 | F=5.197, p=0.023 | F=0.002, p=0.963 | F=2.277, p=0.132 |
| 학교급 별 | 중학생 | (144) | 11.8 | 2.1 | 2.8 | 6.9 |
| | 고등학생 | (330) | 5.8 | 1.2 | 3.0 | 4.2 |
| | 통계량 | - | F=5.261, p=0.022 | F=0.521, p=0.471 | F=0.022, p=0.882 | F=1.521, p=0.218 |
| 학교 유형별 | 일반고 | (252) | 5.6 | 1.6 | 3.2 | 4.0 |
| | 전문고 | (78) | 6.4 | 0.0 | 2.6 | 5.1 |
| | 통계량 | - | F=0.080, p=0.778 | F=1.250, p=0.264 | F=0.075, p=0.784 | F=0.196, p=0.658 |

C2. 다음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해경험이 있다면 해당되는 곳에 V표기해 주세요

### (3) 자치위원회 문제해결 경험

자치위원회를 통한 문제해결 경험이 있는가를 물어본 결과, '경험해 본 적이 없다'(85.2%)가 가장 많았다, '학교폭력 피해자로 경험해 본 적이 있다'(7.2%),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로 둘 다 경험해 본 적이 있다'(4.9%), '학교폭력 가해자로 경험해본 적이 있다'(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Ⅳ-3〉 [학생] 자치위원회 문제해결 경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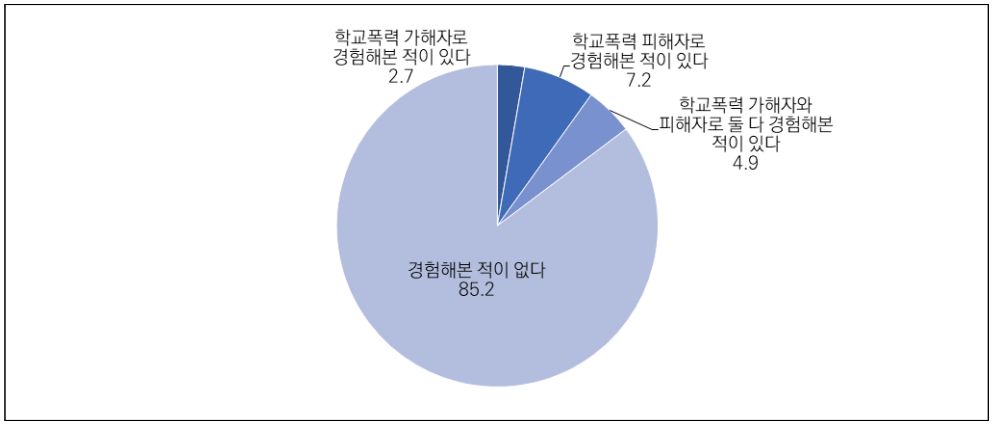


학생들의 성별, 학교급, 학교유형별로는 자치위원회를 통한 문제해결 경험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Ⅳ-12〉 [학생] 자치위원회 문제해결 경험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통계량 |
|---|---|---|---|---|---|---|---|
| 전 체 | | (474) | 2.7 | 7.2 | 4.9 | 85.2 | -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100.0 | 0.0 | 0.0 | 0.0 | $x^2$=1,422.000, p=0.000 |
| | 피해경험 | (34) | 0.0 | 100.0 | 0.0 | 0.0 | |
| | 가해/피해경험 | (23) | 0.0 | 0.0 | 100.0 | 0.0 | |
| | 비경험 | (404) | 0.0 | 0.0 | 0.0 | 100.0 | |
| 성별 | 남성 | (206) | 2.9 | 5.8 | 3.4 | 87.9 | $x^2$=2.845, p=0.416 |
| | 여성 | (268) | 2.6 | 8.2 | 6.0 | 83.2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44) | 2.8 | 5.6 | 5.6 | 86.1 | $x^2$=0.985, p=0.805 |
| | 고등학생 | (330) | 2.7 | 7.9 | 4.5 | 84.8 | |
| 학교 유형별 | 일반고 | (252) | 3.2 | 7.5 | 4.8 | 84.5 | $x^2$=1.061, p=0.786 |
| | 전문고 | (78) | 1.3 | 9.0 | 3.8 | 85.9 | |

C3. 자치위원회를 통한 문제해결을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까?
(1) 학교폭력 가해자로 경험해 본 적이 있다
(2) 학교폭력 피해자로 경험해 본 적이 있다
(3)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로 둘 다 경험해 본 적이 있다
(4)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4) 가해행위 유형별 학교폭력 인식

학생들이 학교폭력이라고 인식하는 가해행위 유형으로는 '친구가 싫어하는데 심부름을 시킨다'(95.4%)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말을 듣게 하려고 무섭게 겁을 준다'(93.9%),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놀린다'(88.8%), '하기 싫은데 억지로 선후배 신고식과 졸업식 뒤풀이를 한다'(88.0%), '놀이나 게임을 하는 중에 때리거나 괴롭힌다'(73.2%), '욕을 하거나 별명을 부르며 놀린다'(57.0%), '상대방이 먼저 때리거나 욕을 해서 나도 때리고 욕한다'(5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4〉 [학생] 가해행위유형별 학교폭력 인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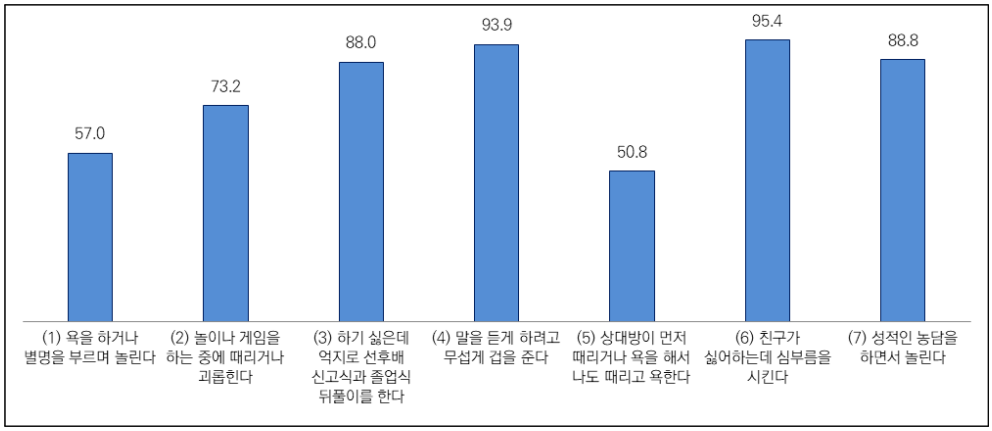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별로 가해경험집단은 '말을 듣게 하려고 무섭게 겁을 준다', '친구가 싫어하는데 심부름을 시킨다'가, 피해경험집단은 '말을 듣게 하려고 무섭게 겁을 준다', 가해/피해경험집단과 비경험집단은 '친구가 싫어하는데 심부름을 시킨다'가 높게 나타났다. 성별, 학교급별, 학교 유형별로는 모두 '친구가 싫어하는데 심부름을 시킨다'가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응답자의 특성별 인식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을 비교해 본 결과, 성별은 여학생집단이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놀린다'(92.2%, $F=7.024$, $p<0.01$)가 유의미하게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가 '상대방이 먼저 때리거나 욕을 해서 나도 때리고 욕한다'(55.2%, $F=9.029$, $p<0.01$)에서 유의미하게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표 Ⅳ-13〉 [학생] 가해행위 유형별 학교폭력 인식 (1/2)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
| 전 체 | | (474) | 57.0 | 73.2 | 88.0 | 93.9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46.2 | 61.5 | 84.6 | 92.3 |
| | 피해경험 | (34) | 64.7 | 73.5 | 88.2 | 94.1 |
| | 가해/피해경험 | (23) | 65.2 | 65.2 | 87.0 | 87.0 |
| | 비경험 | (404) | 56.2 | 74.0 | 88.1 | 94.3 |
| | 통계량 | - | F=0.727, p=0.536 | F=0.592, p=0.620 | F=0.057, p=0.982 | F=0.699, p=0.553 |
| 성별 | 남성 | (206) | 58.3 | 74.8 | 86.9 | 91.7 |
| | 여성 | (268) | 56.0 | 72.0 | 88.8 | 95.5 |
| | 통계량 | - | F=0.247, p=0.620 | F=0.445, p=0.505 | F=0.401, p=0.527 | F=2.895, p=0.090 |
| 학교급 별 | 중학생 | (144) | 62.5 | 71.5 | 88.9 | 93.8 |
| | 고등학생 | (330) | 54.5 | 73.9 | 87.6 | 93.9 |
| | 통계량 | - | F=2.591, p=0.108 | F=0.296, p=0.587 | F=0.163, p=0.687 | F=0.006, p=0.937 |
| 학교 유형별 | 일반고 | (252) | 55.2 | 75.8 | 88.5 | 95.2 |
| | 전문고 | (78) | 52.6 | 67.9 | 84.6 | 89.7 |
| | 통계량 | - | F=0.161, p=0.689 | F=1.902, p=0.169 | F=0.820, p=0.366 | F=3.170, p=0.076 |

B1. 다음 문장을 읽고 각각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과 가까운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1) 욕을 하거나 별명을 부르며 놀린다.
(2) 놀이나 게임을 하는 중에 때리거나 괴롭힌다.
(3) 하기 싫은데 억지로 선후배 신고식과 졸업식 뒤풀이를 한다.
(4) 말을 듣게 하려고 무섭게 겁을 준다.

### 〈표 Ⅳ-14〉 [학생] 가해행위 유형별 학교폭력 인식 (2/2)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5) | (6) | (7) |
|---|---|---|---|---|---|
| 전 체 | | (474) | 50.8 | 95.4 | 88.8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38.5 | 92.3 | 76.9 |
| | 피해경험 | (34) | 55.9 | 85.3 | 85.3 |
| | 가해/피해경험 | (23) | 60.9 | 95.7 | 82.6 |
| | 비경험 | (404) | 50.2 | 96.3 | 89.9 |
| | 통계량 | - | F=0.706, p=0.549 | F=2.979, p=0.031 | F=1.201, p=0.309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구분 | | 사례수 | (5) | (6) | (7) |
|---|---|---|---|---|---|
| 성별 | 남성 | (206) | 52.9 | 94.7 | 84.5 |
| | 여성 | (268) | 49.3 | 95.9 | 92.2 |
| | 통계량 | - | F=0.622, p=0.431 | F=0.400, p=0.527 | F=7.024, p=0.008 |
| 학교급별 | 중학생 | (144) | 51.4 | 95.1 | 90.3 |
| | 고등학생 | (330) | 50.6 | 95.5 | 88.2 |
| | 통계량 | - | F=0.024, p=0.876 | F=0.022, p=0.881 | F=0.442, p=0.506 |
| 학교 유형별 | 일반고 | (252) | 55.2 | 96.0 | 89.3 |
| | 전문고 | (78) | 35.9 | 93.6 | 84.6 |
| | 통계량 | - | F=9.029, p=0.003 | F=0.816, p=0.367 | F=1.244, p=0.266 |

B1. 다음 문장을 읽고 각각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과 가까운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5) 상대방이 먼저 때리거나 욕을 해서 나도 때리고 욕한다.
(6) 친구가 싫어하는데 심부름을 시킨다.
(7)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놀린다.

### (5) 학교폭력 유형별 심각성

학교폭력 유형별 심각성을 3순위까지 응답한 결과로 살펴볼 때, '싫은데도 옷을 벗기거나 내 몸을 만지려하는 등 성(性)적으로 괴롭힘'(59.3%)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친구를 때리거나 다치게 함'(46.6%), '사이버(인터넷, 휴대폰 등)에서 욕을 하거나 사진, 영상을 올려 괴롭힘'(43.5%),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따돌림'(40.7%), '돈이나 물건 등을 가져가거나 빼앗음'(31.9%), '좁은 곳이나 특정 공간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함'(27.6%), '욕을 하거나 나쁜 소문을 냄'(24.7%), '친구가 싫다고 하는 데 심한 장난을 치며 괴롭힘'(18.1%), '친구가 싫어하는데 심부름을 시킴'(4.2%), '말을 듣게 하려고 무섭게 겁을 줌'(3.4%) 등의 순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Ⅳ-5〉 [학생] 학교폭력 유형별 심각성 (3순위까지의 중복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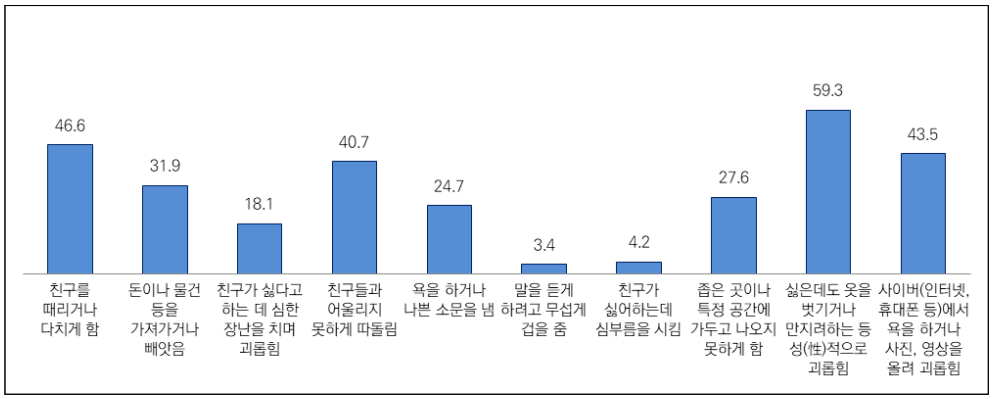


응답자의 학교폭력 경험별로 살펴보면, 가해경험집단은 '친구를 때리거나 다치게 함'이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경험집단과 가해/피해경험집단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따돌림'이, 비경험 집단은 '싫은 데도 옷을 벗기거나 내 몸을 만지려하는 등 성(性)적으로 괴롭힘'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집단은 '친구를 때리거나 다치게 함'이, 여학생은 '싫은데도 옷을 벗기거나 내 몸을 만지려하는 등 성(性)적으로 괴롭힘'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 학교 유형별로는 '싫은데도 옷을 벗기거나 내 몸을 만지려하는 등 성(性)적으로 괴롭힘' 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Ⅳ-15〉 [학생] 학교폭력 유형별 심각성 (3순위까지의 중복응답결과) (1/2)

(단위 : %, 1+2+3순위)

| 구분 | | 사례수 | 친구를 때리거나 다치게 함 | 돈이나 물건 등을 가져가거나 빼앗음 | 친구가 싫다고 하는 데 심한 장난을 치며 괴롭힘 |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따돌림 | 욕을 하거나 나쁜 소문을 냄 |
|---|---|---|---|---|---|---|---|
| 전 체 | | (474) | 46.6 | 31.9 | 18.1 | 40.7 | 24.7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61.5 | 23.1 | 38.5 | 46.2 | 15.4 |
| | 피해경험 | (34) | 47.1 | 29.4 | 17.6 | 50.0 | 44.1 |
| | 가해/피해경험 | (23) | 43.5 | 39.1 | 13.0 | 47.8 | 43.5 |
| | 비경험 | (404) | 46.3 | 31.9 | 17.8 | 39.4 | 22.3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구분 | | 사례수 | 친구를 때리거나 다치게 함 | 돈이나 물건 등을 가져가거나 빼앗음 | 친구가 싫다고 하는 데 심한 장난을 치며 괴롭힘 |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따돌림 | 욕을 하거나 나쁜 소문을 냄 |
|---|---|---|---|---|---|---|---|
| 성별 | 남성 | (206) | 59.2 | 42.2 | 27.2 | 37.4 | 29.1 |
| | 여성 | (268) | 36.9 | 23.9 | 11.2 | 43.3 | 21.3 |
| 학교급별 | 중학생 | (144) | 50.7 | 35.4 | 19.4 | 34.0 | 25.0 |
| | 고등학생 | (330) | 44.8 | 30.3 | 17.6 | 43.6 | 24.5 |
| 학교 유형별 | 일반고 | (252) | 47.6 | 31.7 | 19.0 | 41.3 | 23.8 |
| | 전문고 | (78) | 35.9 | 25.6 | 12.8 | 51.3 | 26.9 |

B2. 다음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1+2+3순위)

**〈표 Ⅳ-16〉 [학생] 학교폭력 유형별 심각성 (3순위까지의 중복응답결과) (2/2)**

(단위 : %, 1+2+3순위)

| 구분 | | 사례수 | 말을 듣게 하려고 무섭게 겁을 줌 | 친구가 싫어하는데 심부름을 시킴 | 좁은 곳이나 특정 공간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함 | 싫은데도 옷을 벗기거나 내 몸을 만지려하는 등 성(性)적으로 괴롭힘 | 사이버 (인터넷, 휴대폰 등)에서 욕을 하거나 사진, 영상을 올려 괴롭힘 |
|---|---|---|---|---|---|---|---|
| 전 체 | | (474) | 3.4 | 4.2 | 27.6 | 59.3 | 43.5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0.0 | 0.0 | 46.2 | 30.8 | 38.5 |
| | 피해경험 | (34) | 8.8 | 8.8 | 20.6 | 47.1 | 26.5 |
| | 가해/피해경험 | (23) | 4.3 | 17.4 | 26.1 | 39.1 | 26.1 |
| | 비경험 | (404) | 3.0 | 3.2 | 27.7 | 62.4 | 46.0 |
| 성별 | 남성 | (206) | 4.4 | 6.3 | 19.9 | 43.7 | 30.6 |
| | 여성 | (268) | 2.6 | 2.6 | 33.6 | 71.3 | 53.4 |
| 학교급별 | 중학생 | (144) | 3.5 | 6.3 | 31.3 | 56.3 | 38.2 |
| | 고등학생 | (330) | 3.3 | 3.3 | 26.1 | 60.6 | 45.8 |
| 학교 유형별 | 일반고 | (252) | 4.0 | 3.2 | 26.6 | 59.1 | 43.7 |
| | 전문고 | (78) | 1.3 | 3.8 | 24.4 | 65.4 | 52.6 |

B2. 다음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1+2+3순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6) 학교폭력 발생빈도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폭력 발생빈도는 '가끔·간혹 발생한다'(62.7%)가 가장 높았다. '자주·빈번하게 발생한다'(15.2%)를 포함하면, 약 80% 수준의 발생빈도를 보인다. 다음으로 '발생하지 않는다'(17.7%),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6〉 [학생] 학교폭력 인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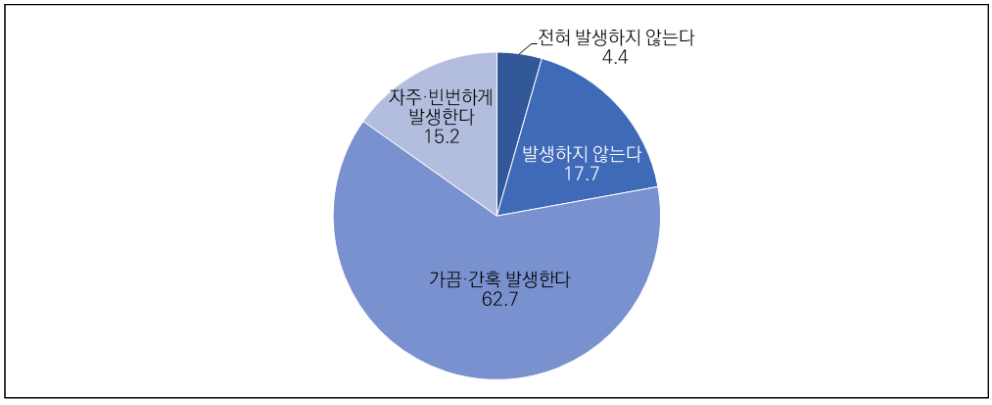


학교폭력 발생빈도에 대한 응답비율은 가해경험집단(69.2%), 비경험집단(76.3%), 피해경험집단(91.2%), 가해/피해경험집단(9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로는 '여학생집단'(85.1%),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78.5%),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80.2%)에서 학교폭력 발생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Ⅳ-17〉 [학생] 학교폭력 발생빈도**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 발생하지 않는다 | 가끔·간혹 발생한다 | 자주·빈번하게 발생한다 | 통계량 |
|---|---|---|---|---|---|---|---|
| 전 체 | | (474) | 4.4 | 17.7 | 62.7 | 15.2 | -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23.1 | 7.7 | 61.5 | 7.7 | $\chi^2$ =26.482, p=0.002 |
| | 피해경험 | (34) | 0.0 | 8.8 | 58.8 | 32.4 | |
| | 가해/피해경험 | (23) | 0.0 | 8.7 | 65.2 | 26.1 | |
| | 비경험 | (404) | 4.5 | 19.3 | 62.9 | 13.4 |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구분 | | 사례수 |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 발생하지 않는다 | 가끔·간혹 발생한다 | 자주·빈번하게 발생한다 | 통계량 |
|---|---|---|---|---|---|---|---|
| 성별 | 남성 | (206) | 7.3 | 24.3 | 58.3 | 10.2 | $\chi^2$=22.621, p=0.000 |
| | 여성 | (268) | 2.2 | 12.7 | 66.0 | 19.0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44) | 4.2 | 19.4 | 56.3 | 20.1 | $\chi^2$=5.070, p=0.167 |
| | 고등학생 | (330) | 4.5 | 17.0 | 65.5 | 13.0 | |
| 학교유형별 | 일반고 | (252) | 4.8 | 15.1 | 67.9 | 12.3 | $\chi^2$=3.730, p=0.292 |
| | 전문고 | (78) | 3.8 | 23.1 | 57.7 | 15.4 | |

B3. 현재 학교폭력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7) 학교폭력 심각성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폭력 심각성과 관련해 '심각하다'는 응답이 79.3%, '보통'은 15.0%,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5.7%로 나타났다. 5점 만점으로 본 응답결과의 평균점수는 4.05점으로 조사대상 학생들은 학교폭력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림 Ⅳ-7〉 [학생] 학교폭력 심각성**

(단위 : %, 5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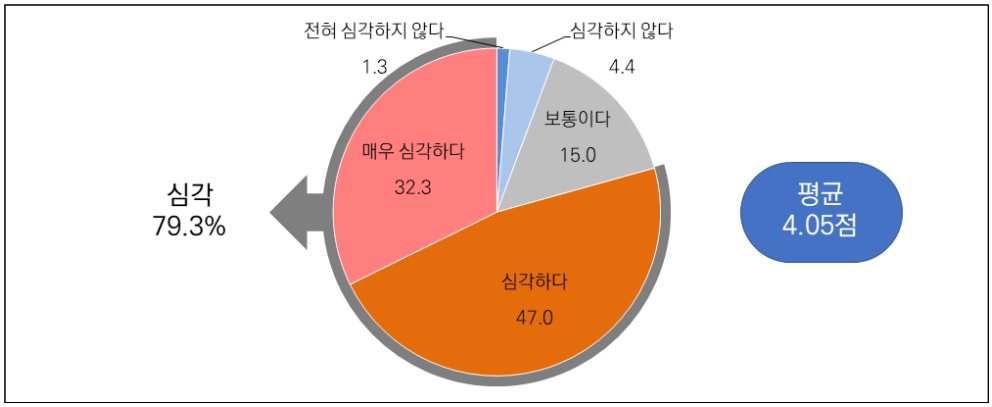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별로는 '비경험'집단(4.08점)에서 심각성 인식이 가장 높았고, 성별로는 '여학생집단'(4.13점),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4.06점),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고'(4.10점)에서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성별(F=6.315, p<0.05)은 여학생집단(4.13점)이 남학생집단(3.93점)에 비해 유의미하게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높게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18〉 [학생] 학교폭력 심각성

(단위 :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비심각 | 보통 | 심각 | 평균 | 통계량 |
|---|---|---|---|---|---|---|---|
| 전 체 | | (474) | 5.7 | 15.0 | 79.3 | 4.05 | -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15.4 | 15.4 | 69.2 | 3.46 | F=2.529, p=0.057 |
| | 피해경험 | (34) | 5.9 | 23.5 | 70.6 | 3.94 | |
| | 가해/피해경험 | (23) | 4.3 | 26.1 | 69.6 | 3.91 | |
| | 비경험 | (404) | 5.4 | 13.6 | 80.9 | 4.08 | |
| 성별 | 남성 | (206) | 6.8 | 17.0 | 76.2 | 3.93 | F=6.315, p=0.012 |
| | 여성 | (268) | 4.9 | 13.4 | 81.7 | 4.13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44) | 7.6 | 13.2 | 79.2 | 4.02 | F=0.177, p=0.674 |
| | 고등학생 | (330) | 4.8 | 15.8 | 79.4 | 4.06 | |
| 학교 유형별 | 일반고 | (252) | 3.6 | 14.3 | 82.1 | 4.10 | F=2.116, p=0.147 |
| | 전문고 | (78) | 9.0 | 20.5 | 70.5 | 3.94 | |

B4. 학교폭력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까?

### (8) 학교폭력 발생 원인

학생들이 응답한 학교폭력 발생 원인으로는 '가해학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46.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교사·학교의 무관심 때문에'(16.7%), '부모 등 가정 문제 때문에'(11.4%), '폭력적인 문화 매체 때문에'(9.7%), '학업스트레스·입시위주 교육 때문에'(7.0%), '기타'(4.6%), '피해학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4.2%) 등의 순이었다.

〈그림 Ⅳ-8〉 [학생] 학교폭력 발생 원인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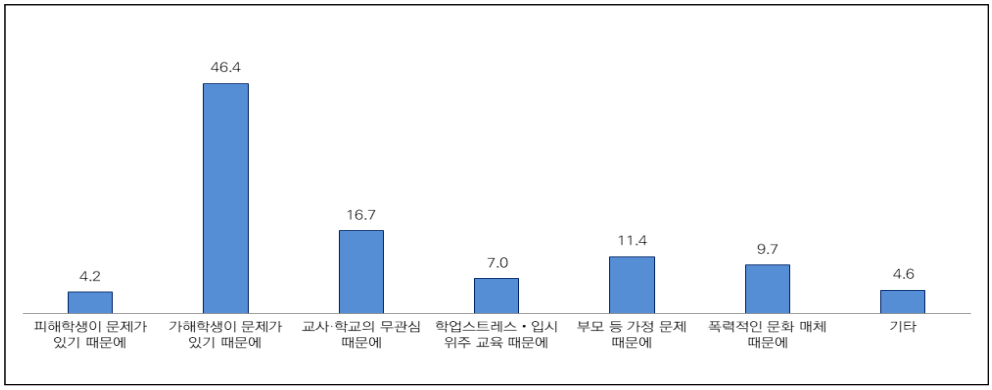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응답자의 학교폭력 경험별, 성별, 학교급별, 학교 유형별 모든 유형에서 '가해학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별 학교폭력 발생 원인을 비교해 본 결과, 학교급별($\chi^2$=19.782,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해학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은 고등학생집단(51.8%)이 중학교집단(34.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Ⅳ-19〉 [학생] 학교폭력 발생 원인 (1/2)**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피해학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가해학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교사·학교의 무관심 때문에 | 학업스트레스·입시 위주 교육 때문에 |
|---|---|---|---|---|---|---|
| 전 체 | | (474) | 4.2 | 46.4 | 16.7 | 7.0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15.4 | 38.5 | 23.1 | 15.4 |
| | 피해경험 | (34) | 8.8 | 38.2 | 20.6 | 5.9 |
| | 가해/피해경험 | (23) | 4.3 | 34.8 | 17.4 | 13.0 |
| | 비경험 | (404) | 3.5 | 48.0 | 16.1 | 6.4 |
| 성별 | 남성 | (206) | 5.8 | 47.1 | 15.0 | 6.8 |
| | 여성 | (268) | 3.0 | 45.9 | 17.9 | 7.1 |
| 학교급별 | 중학생 | (144) | 4.9 | 34.0 | 20.8 | 11.8 |
| | 고등학생 | (330) | 3.9 | 51.8 | 14.8 | 4.8 |
| 학교 유형별 | 일반고 | (252) | 4.0 | 53.2 | 13.9 | 5.2 |
| | 전문고 | (78) | 3.8 | 47.4 | 17.9 | 3.8 |

B5.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표 Ⅳ-20〉 [학생] 학교폭력 발생 원인 (2/2)**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부모 등 가정 문제 때문에 | 폭력적인 문화 매체 때문에 | 기타 | 통계량 |
|---|---|---|---|---|---|---|
| 전 체 | | (474) | 11.4 | 9.7 | 4.6 | -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0.0 | 7.7 | 0.0 | $\chi^2$=14.725, p=0.681 |
| | 피해경험 | (34) | 14.7 | 8.8 | 2.9 | |
| | 가해/피해경험 | (23) | 17.4 | 8.7 | 4.3 | |
| | 비경험 | (404) | 11.1 | 9.9 | 5.0 | |
| 성별 | 남성 | (206) | 12.6 | 8.3 | 4.4 | $\chi^2$=4.182, p=0.652 |
| | 여성 | (268) | 10.4 | 10.8 | 4.9 |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구분 | | 사례수 | 부모 등 가정 문제 때문에 | 폭력적인 문화 매체 때문에 | 기타 | 통계량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44) | 13.9 | 11.8 | 2.8 | $\chi^2$=19.782, p=0.003 |
| | 고등학생 | (330) | 10.3 | 8.8 | 5.5 | |
| 학교 유형별 | 일반고 | (252) | 9.5 | 9.1 | 5.2 | $\chi^2$=2.192, p=0.901 |
| | 전문고 | (78) | 12.8 | 7.7 | 6.4 | |

B5.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9) 학교폭력 행사 이유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이유 없음'(32.3%)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장난'(27.6%), '오해와 갈등'(12.0%), '스트레스 때문에'(11.4%), '화가 나서'(9.9%), '친구나 선배 등이 시켜서'(3.6%), '피해학생이 잘못해서'(1.7%), '보복'(1.5%) 등의 순이다.

**〈그림 Ⅳ-9〉 [학생] 학교폭력 행사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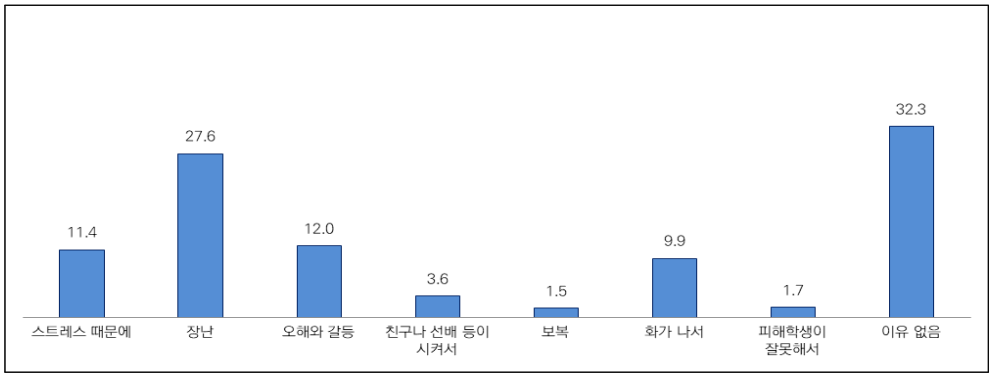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별로 가해경험학생은 '장난', 피해경험학생과 비경험학생은 '이유 없음', 가해·피해경험집단은 '화가 나서'가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집단은 '장난', 여학생집단은 '이유 없음'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 학교 유형별로 모두 '이유 없음'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별 학교폭력 행사 이유를 비교해 본 결과 학교폭력 경험별($\chi^2$ = 40.870, $p<0.01$)과 성별($\chi^2$ =19.907,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화가 나서'는 가해/피해경험집단(21.7%), '이유 없음'은 비경험집단(33.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성별은 '장난'은 남학생집단(35.4%)이 여학생집단(21.6%)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유 없음'은 여학생집단(36.2%)이 남학생집단(27.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Ⅳ-21〉 [학생] 학교폭력 행사 이유 (1/2)**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스트레스 때문에 | 장난 | 오해와 갈등 | 친구나 선배 등이 시켜서 | 보복 |
|---|---|---|---|---|---|---|---|
| 전 체 | | (474) | 11.4 | 27.6 | 12.0 | 3.6 | 1.5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15.4 | 30.8 | 15.4 | 7.7 | 0.0 |
| | 피해경험 | (34) | 20.6 | 11.8 | 14.7 | 11.8 | 0.0 |
| | 가해/피해경험 | (23) | 4.3 | 17.4 | 17.4 | 8.7 | 8.7 |
| | 비경험 | (404) | 10.9 | 29.5 | 11.4 | 2.5 | 1.2 |
| 성별 | 남성 | (206) | 14.1 | 35.4 | 10.2 | 3.9 | 1.0 |
| | 여성 | (268) | 9.3 | 21.6 | 13.4 | 3.4 | 1.9 |
| 학교급별 | 중학생 | (144) | 13.2 | 24.3 | 12.5 | 5.6 | 2.1 |
| | 고등학생 | (330) | 10.6 | 29.1 | 11.8 | 2.7 | 1.2 |
| 학교 유형별 | 일반고 | (252) | 11.5 | 29.8 | 11.1 | 3.2 | 1.6 |
| | 전문고 | (78) | 7.7 | 26.9 | 14.1 | 1.3 | 0.0 |

B6.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표 Ⅳ-22〉 [학생] 학교폭력 행사 이유 (2/2)**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화가 나서 | 피해학생이 잘못해서 | 이유 없음 | 통계량 |
|---|---|---|---|---|---|---|
| 전 체 | | (474) | 9.9 | 1.7 | 32.3 | -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0.0 | 7.7 | 23.1 | $x^2$=40.870, p=0.006 |
| | 피해경험 | (34) | 14.7 | 0.0 | 26.5 | |
| | 가해/피해경험 | (23) | 21.7 | 4.3 | 17.4 | |
| | 비경험 | (404) | 9.2 | 1.5 | 33.9 | |
| 성별 | 남성 | (206) | 6.3 | 1.9 | 27.2 | $x^2$=19.907, p=0.006 |
| | 여성 | (268) | 12.7 | 1.5 | 36.2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44) | 10.4 | 1.4 | 30.6 | $x^2$=4.562, p=0.713 |
| | 고등학생 | (330) | 9.7 | 1.8 | 33.0 | |
| 학교 유형별 | 일반고 | (252) | 9.1 | 2.0 | 31.7 | $x^2$=4.505, p=0.720 |
| | 전문고 | (78) | 11.5 | 1.3 | 37.2 | |

B6.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10) 학교폭력 대처 방법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한 것은 '경찰서에 신고한다'(22.8%)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알린다'(22.2%),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19.0%), '선생님이나 학교에 알린다'(15.6%), '함께 싸운다'(6.8%), '친구와 방법을 의논한다'(5.7%), '상대방을 피하거나 이사 또는 전학을 간다'(5.3%), '말로 하지 말라고 한다'(2.1%), '그냥 참으면 해결된다'(0.6%) 등의 순이다.

**〈그림 Ⅳ-10〉 [학생] 학교폭력 대처 방법**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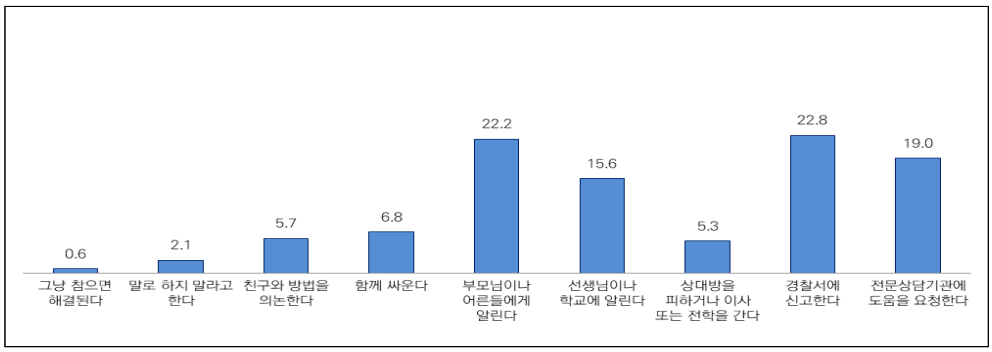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별로 가해경험집단은 '함께 싸운다',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알린다', '경찰서에 신고한다'가, 피해경험집단과 가해/피해경험집단은 '경찰서에 신고한다', 비경험집단은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알린다'가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남학생집단은 '경찰서에 신고한다', 여학생집단은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알린다'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중학생은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알린다', 고등학생은 '경찰서에 신고한다'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 일반고는 '경찰서에 신고한다', 전문고는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알린다'가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별 학교폭력 대처 방법을 비교해 본 결과 학교폭력 경험별($\chi^2$ = 36.660, $p<0.05$)과 성별($\chi^2$ =23.438,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친구와 방법을 의논한다'가 가해경험집단(15.4%), '선생님이나 학교에 알린다'가 비경험집단(17.1%), '경찰서에 신고한다'가 가해/피해경험집단(39.1%),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가 비경험집단(20.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방을 피하거나 이사 또는 전학을 간다'가 여학생(7.8%)이 남학생(1.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표 Ⅳ-23〉 [학생] 학교폭력 대처 방법 (1/2)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그냥 참으면 해결된다 | 말로 하지 말라고 한다 | 친구와 방법을 의논한다 | 함께 싸운다 |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알린다 |
|---|---|---|---|---|---|---|---|
| 전 체 | | (474) | 0.6 | 2.1 | 5.7 | 6.8 | 22.2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0.0 | 0.0 | 15.4 | 23.1 | 23.1 |
| | 피해경험 | (34) | 0.0 | 0.0 | 5.9 | 17.6 | 20.6 |
| | 가해/피해경험 | (23) | 0.0 | 0.0 | 8.7 | 17.4 | 17.4 |
| | 비경험 | (404) | 0.7 | 2.5 | 5.2 | 4.7 | 22.5 |
| 성별 | 남학생집단 | (206) | 1.0 | 3.9 | 7.8 | 9.2 | 18.9 |
| | 여성 | (268) | 0.4 | .7 | 4.1 | 4.9 | 24.6 |
| 학교급 별 | 중학생 | (144) | 0.0 | 1.4 | 7.6 | 4.9 | 28.5 |
| | 고등학생 | (330) | 0.9 | 2.4 | 4.8 | 7.6 | 19.4 |
| 학교 유형별 | 일반고 | (252) | 0.8 | 2.8 | 5.2 | 8.7 | 17.5 |
| | 전문고 | (78) | 1.3 | 1.3 | 3.8 | 3.8 | 25.6 |

B.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 피해학생으로서 대처하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표 Ⅳ-24〉 [학생] 학교폭력 대처 방법 (2/2)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선생님이나 학교에 알린다 | 상대방을 피하거나 이사 또는 전학을 간다 | 경찰서에 신고한다 | 전문상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 통계량 |
|---|---|---|---|---|---|---|---|
| 전 체 | | (474) | 15.6 | 5.3 | 22.8 | 19.0 | -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7.7 | 0.0 | 23.1 | 7.7 | $\chi^2$=36.660, p=0.047 |
| | 피해경험 | (34) | 8.8 | 8.8 | 29.4 | 8.8 | |
| | 가해/피해경험 | (23) | 4.3 | 4.3 | 39.1 | 8.7 | |
| | 비경험 | (404) | 17.1 | 5.2 | 21.3 | 20.8 | |
| 성별 | 남성 | (206) | 18.0 | 1.9 | 20.9 | 18.4 | $\chi^2$=23.438, p=0.003 |
| | 여성 | (268) | 13.8 | 7.8 | 24.3 | 19.4 | |
| 학교급 별 | 중학생 | (144) | 17.4 | 4.9 | 19.4 | 16.0 | $\chi^2$=10.489, p=0.232 |
| | 고등학생 | (330) | 14.8 | 5.5 | 24.2 | 20.3 | |
| 학교 유형별 | 일반고 | (252) | 15.1 | 3.6 | 24.2 | 22.2 | $\chi^2$=13.753, p=0.088 |
| | 전문고 | (78) | 14.1 | 11.5 | 24.4 | 14.1 | |

B7.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 피해학생으로서 대처하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11) 폭력서클 존재에 대한 인식

학교에 폭력서클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집단의 비율은 23.4%였으며, '없다'는 비율은 48.7%, '모르겠다'는 응답비율은 27.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1〉 [학생] 폭력서클 유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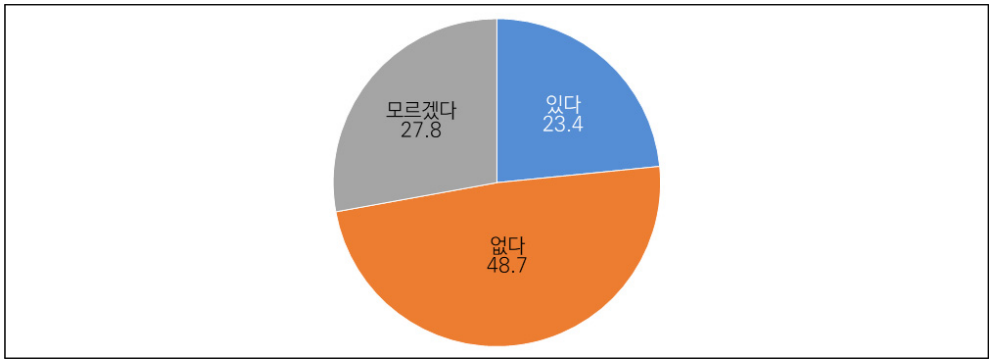


응답자의 학교폭력 경험별로 살펴보면, 가해경험집단과 피해경험집단은 현재 학교에 폭력서클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해/피해경험집단과 비경험집단은 폭력서클이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 학교급별, 학교 유형별로는 폭력서클이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별 폭력서클 유무를 비교해 본 결과 성별($\chi^2$=9.600, p<0.01)과 학교급별($\chi^2$=14.146, p<0.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폭력서클이 '없다'는 응답비율은 남학생집단(56.8%)이 여학생집단(42.5%)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폭력서클이 '있다'는 응답비율은 중학생(34.0%)이 고등학생(18.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Ⅳ-25〉 [학생] 폭력서클 유무**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있다 | 없다 | 모르겠다 | 통계량 |
|---|---|---|---|---|---|---|
| 전 체 | | (474) | 23.4 | 48.7 | 27.8 | -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46.2 | 30.8 | 23.1 | $\chi^2$=10.085, p=0.121 |
| | 피해경험 | (34) | 35.3 | 32.4 | 32.4 | |
| | 가해/피해경험 | (23) | 26.1 | 56.5 | 17.4 | |
| | 비경험 | (404) | 21.5 | 50.2 | 28.2 |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구분 | | 사례수 | 있다 | 없다 | 모르겠다 | 통계량 |
|---|---|---|---|---|---|---|
| 성별 | 남성 | (206) | 20.4 | 56.8 | 22.8 | $\chi^2$=9.600, p=0.008 |
| | 여성 | (268) | 25.7 | 42.5 | 31.7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44) | 34.0 | 45.1 | 20.8 | $\chi^2$=14.146, p=0.001 |
| | 고등학생 | (330) | 18.8 | 50.3 | 30.9 | |
| 학교 유형별 | 일반고 | (252) | 18.3 | 50.0 | 31.7 | $\chi^2$=0.423, p=0.809 |
| | 전문고 | (78) | 20.5 | 51.3 | 28.2 | |

B8. 현재 학교에 '일진회'와 같은 폭력 서클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12) 폭력서클에 대한 인식

응답학생이 응답한 폭력서클에 대한 인식으로는 '없어져야 하며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64.6%)가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고 분위기를 흐린다'(22.4%), '나와 상관없다 내 자녀(또는 학생)과 상관없다'(11.0%), '폭력서클 학생은 생각보다 괜찮고 평범하다'(2.1%) 등의 순이다.

**〈그림 Ⅳ-12〉 [학생] 폭력서클 인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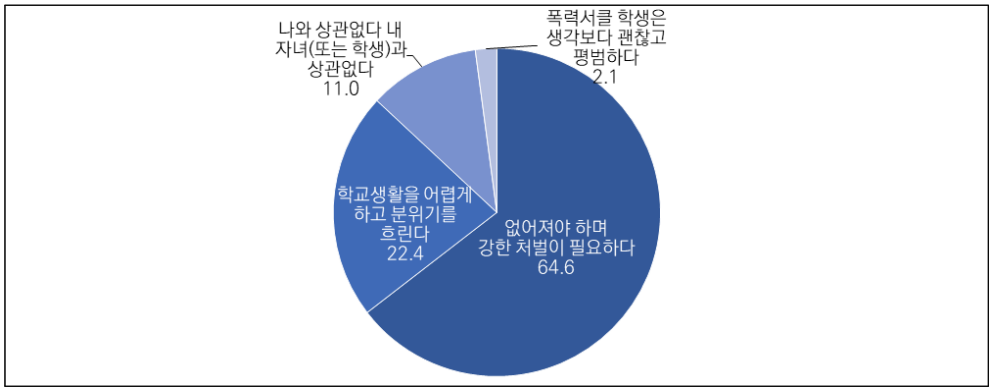


응답자의 학교폭력 경험별로, 성별, 학교급별, 학교 유형별로 모두 폭력서클에 대한 인식으로 '없어져야 하며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별 폭력서클 인식을 비교해 본 결과 성별($\chi^2$=12.528,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없어져야 하며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학생집단(69.8%)이 남학생집단(57.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26〉 [학생] 폭력서클 인식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없어져야 하며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고 분위기를 흐린다 | 나와 상관없다 내 자녀 (또는 학생)과 상관없다 | 폭력서클 학생은 생각보다 괜찮고 평범하다 | 통계량 |
|---|---|---|---|---|---|---|---|
| 전 체 | | (474) | 64.6 | 22.4 | 11.0 | 2.1 | -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53.8 | 30.8 | 7.7 | 7.7 | $\chi^2$=15.841, p=0.070 |
| | 피해경험 | (34) | 64.7 | 14.7 | 20.6 | 0.0 | |
| | 가해/피해경험 | (23) | 43.5 | 34.8 | 13.0 | 8.7 | |
| | 비경험 | (404) | 66.1 | 22.0 | 10.1 | 1.7 | |
| 성별 | 남성 | (206) | 57.8 | 23.3 | 15.5 | 3.4 | $\chi^2$=12.528, p=0.006 |
| | 여성 | (268) | 69.8 | 21.6 | 7.5 | 1.1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44) | 59.0 | 25.0 | 13.2 | 2.8 | $\chi^2$=2.993, p=0.393 |
| | 고등학생 | (330) | 67.0 | 21.2 | 10.0 | 1.8 | |
| 학교 유형별 | 일반고 | (252) | 66.7 | 21.0 | 11.1 | 1.2 | $\chi^2$=3.658, p=0.301 |
| | 전문고 | (78) | 67.9 | 21.8 | 6.4 | 3.8 | |

B9. '폭력서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2) 학부모 및 관계자

### (1) 학교폭력 인식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이 학교폭력으로 인식하는 가해행위로는 '말을 듣게 하려고 무섭게 겁을 준다',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놀린다'(각 92.5%)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친구가 싫어하는데 심부름을 시킨다'(91.2%), '놀이나 게임을 하는 중에 때리거나 괴롭힌다'(86.9%), '하기 싫은데 억지로 선후배 신고식과 졸업식 뒤풀이를 한다'(85.9%), '욕을 하거나 별명을 부르며 놀린다'(74.2%), '상대방이 먼저 때리거나 욕을 해서 나도 때리고 욕한다'(6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Ⅳ-13〉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행위 유형별 학교폭력 인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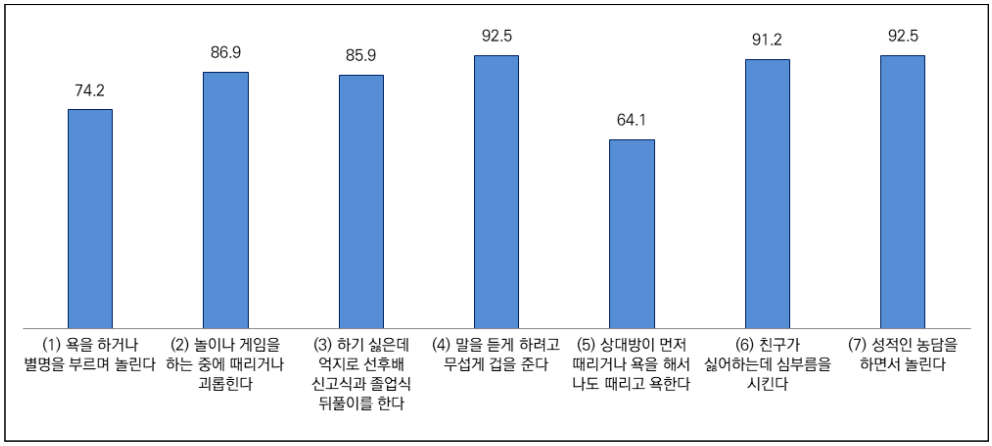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의 유형별로는 피해학생 학부모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선후배 신고식과 졸업식 뒤풀이를 한다'(74.0%, F=9.036, p<0.001), '친구가 싫어하는데 심부름을 시킨다'(81.3%, F=8.998, p<0.001)에서, 관계자가 '욕을 하거나 별명을 부르며 놀린다'(58.5%, F=3.069, p<0.05)에서 유의하게 응답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일반 학부모는 '말을 듣게 하려고 무섭게 겁을 준다'(96.4%, F=4.661, p<0.01),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놀린다'(97.6%, F=8.261, p<0.001)에서 유의미하게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Ⅳ-27〉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행위 유형별 학교폭력 인식 (1/2)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
| 전 체 | | (306) | 74.2 | 86.9 | 85.9 | 92.5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76.0 | 81.3 | 74.0 | 86.5 |
| | 일반 학부모 | (169) | 76.9 | 89.9 | 90.5 | 96.4 |
| | 관계자 | (41) | 58.5 | 87.8 | 95.1 | 90.2 |
| | 통계량 | - | F=3.069, p=0.048 | F=2.058, p=0.129 | F=9.036, p=0.000 | F=4.661, p=0.010 |

B1. 다음 문장을 읽고 각각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과 가까운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1) 욕을 하거나 별명을 부르며 놀린다.
(2) 놀이나 게임을 하는 중에 때리거나 괴롭힌다.
(3) 하기 싫은데 억지로 선후배 신고식과 졸업식 뒤풀이를 한다.
(4) 말을 듣게 하려고 무섭게 겁을 준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28〉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행위 유형별 학교폭력 인식 (2/2)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5) | (6) | (7) |
|---|---|---|---|---|---|
| 전 체 | | (306) | 64.1 | 91.2 | 92.5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61.5 | 81.3 | 84.4 |
| | 일반 학부모 | (169) | 64.5 | 95.9 | 97.6 |
| | 관계자 | (41) | 68.3 | 95.1 | 90.2 |
| | 통계량 | - | F=0.305, p=0.737 | F=8.998, p=0.000 | F=8.261, p=0.000 |

B1. 다음 문장을 읽고 각각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과 가까운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5) 상대방이 먼저 때리거나 욕을 해서 나도 때리고 욕한다.
(6) 친구가 싫어하는데 심부름을 시킨다.
(7)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놀린다.

## (2) 학교폭력 유형별 심각성

학부모 및 관계자 집단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학교폭력유형은 '친구를 때리거나 다치게 함'(48.7%)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이버(인터넷, 휴대폰 등)에서 욕을 하거나 사진, 영상을 올려 괴롭힘'(45.1%), '싫은 데도 옷을 벗기거나 내 몸을 만지려하는 등 성(性)적으로 괴롭힘'(43.5%),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따돌림'(39.9%), '친구가 싫다고 하는 데 심한 장난을 치며 괴롭힘'(38.2%), '돈이나 물건 등을 가져가거나 빼앗음'(23.2%), '욕을 하거나 나쁜 소문을 냄'(20.3%), '좁은 곳이나 특정 공간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함'(19.9%), '친구가 싫어하는데 심부름을 시킴'(10.8%), '말을 듣게 하려고 무섭게 겁을 줌'(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4〉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유형별 심각성

(단위 : %, 1+2+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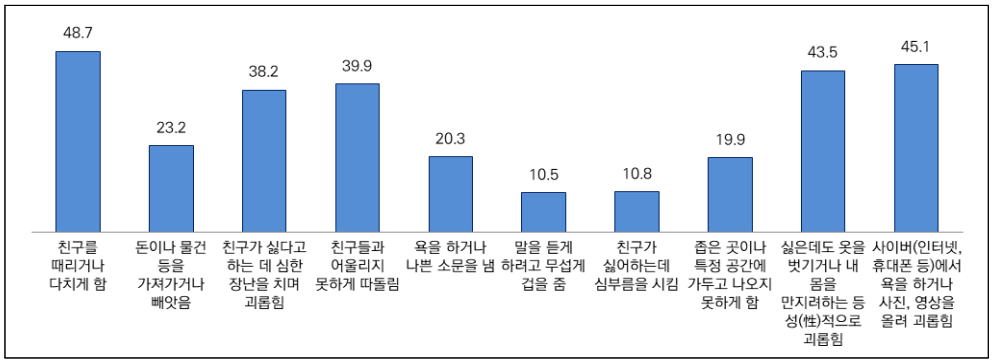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표 Ⅳ-29〉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유형별 심각성 (3순위 중복응답) (1/2)

(단위 : %, 1+2+3순위)

| 구분 | | 사례수 | 친구를 때리거나 다치게 함 | 돈이나 물건 등을 가져 가거나 빼앗음 | 친구가 싫다고 하는 데 심한 장난을 치며 괴롭힘 |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따돌림 | 욕을 하거나 나쁜 소문을 냄 |
|---|---|---|---|---|---|---|---|
| 전 체 | | (306) | 48.7 | 23.2 | 38.2 | 39.9 | 20.3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39.6 | 26.0 | 41.7 | 50.0 | 26.0 |
| | 일반 학부모 | (169) | 56.2 | 23.1 | 36.7 | 33.7 | 16.0 |
| | 관계자 | (41) | 39.0 | 17.1 | 36.6 | 41.5 | 24.4 |

B2. 다음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1+2+3순위)

### 〈표 Ⅳ-30〉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유형별 심각성(3순위 중복응답) (2/2)

(단위 : %, 1+2+3순위)

| 구분 | | 사례수 | 말을 듣게 하려고 무섭게 겁을 줌 | 친구가 싫어하는 데 심부름을 시킴 | 좁은 곳이나 특정 공간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함 | 싫은데도 옷을 벗기거나 내 몸을 만지려 하는 등 성(性)적으로 괴롭힘 | 사이버(인터넷, 휴대폰 등)에서 욕을 하거나 사진, 영상을 올려 괴롭힘 |
|---|---|---|---|---|---|---|---|
| 전 체 | | (306) | 10.5 | 10.8 | 19.9 | 43.5 | 45.1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13.5 | 16.7 | 16.7 | 32.3 | 37.5 |
| | 일반 학부모 | (169) | 7.1 | 5.9 | 23.7 | 49.1 | 48.5 |
| | 관계자 | (41) | 17.1 | 17.1 | 12.2 | 46.3 | 48.8 |

B2. 다음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1+2+3순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3) 학교폭력 발생빈도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이 인식하는 학교폭력 발생빈도와 관련해 '자주·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응답이 54.3%로 가장 많았다. '가끔·간혹 발생한다'(42.5%), '발생하지 않는다'(2.6%),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5〉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발생빈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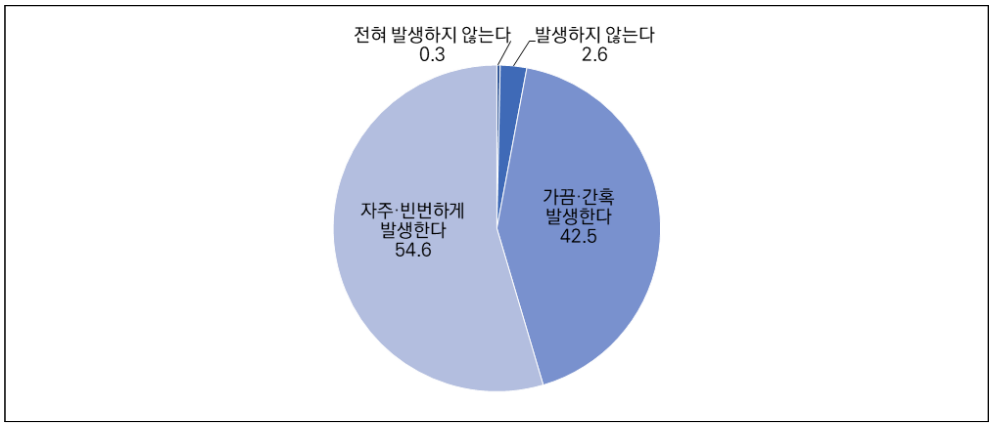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의 유형별로는 학교폭력 발생빈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관계자집단의 경우, 자치위원회 참여경험이 없는 관계자들이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Ⅳ-31〉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발생빈도**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 발생하지 않는다 | 가끔·간혹 발생한다 | 자주·빈번하게 발생한다 | 통계량 |
|---|---|---|---|---|---|---|---|
| 전 체 | | (306) | 0.3 | 2.6 | 42.5 | 54.6 | -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0.0 | 5.2 | 44.8 | 50.0 | $x^2$=7.514, p=0.276 |
| | 일반 학부모 | (169) | 0.6 | 0.6 | 42.0 | 56.8 | |
| | 관계자 | (41) | 0.0 | 4.9 | 39.0 | 56.1 | |

B3. 현재 학교폭력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4) 학교폭력 심각성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86.9%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1.4%, '심각하지 않다'는 비율은 1.6%였다. 5점만점 점수로 환산할 경우 평균 4.22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6〉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심각성**

(단위 : %, 5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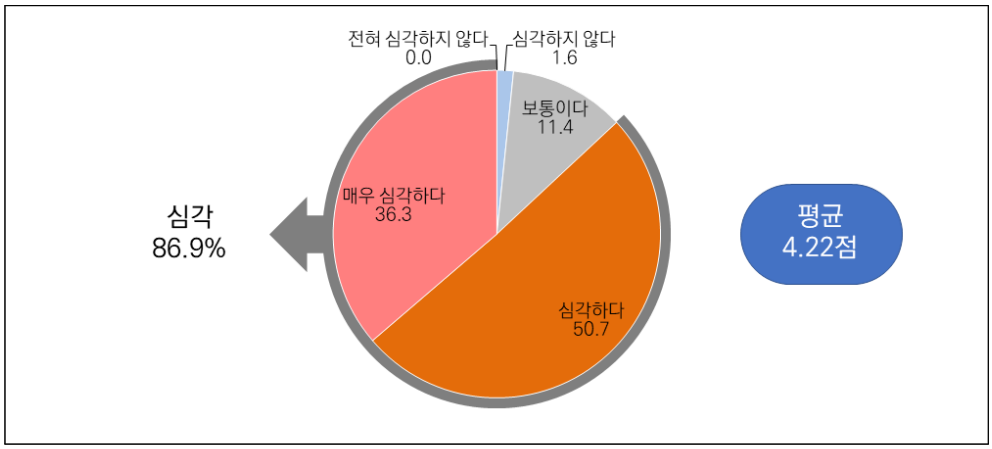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의 유형별로 학교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32〉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심각성**

(단위 :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비심각 | 보통 | 심각 | 평균 | 통계량 |
|---|---|---|---|---|---|---|---|
| 전 체 | | (306) | 1.6 | 11.4 | 86.9 | 4.22 | -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2.1 | 13.5 | 84.4 | 4.20 | F=0.860, p=0.424 |
| | 일반 학부모 | (169) | 1.2 | 8.9 | 89.9 | 4.25 | |
| | 관계자 | (41) | 2.4 | 17.1 | 80.5 | 4.10 | |

B4. 학교폭력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5) 학교폭력 발생 원인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은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가해학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25.8%)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부모 등 가정 문제 때문에'(20.9%), '교사·학교의 무관심 때문에'(19.0%), '폭력적인 문화 매체 때문에'(14.7%), '학업스트레스·입시위주 교육 때문에'(13.7%), '기타'(5.2%), '피해학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7〉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발생 원인**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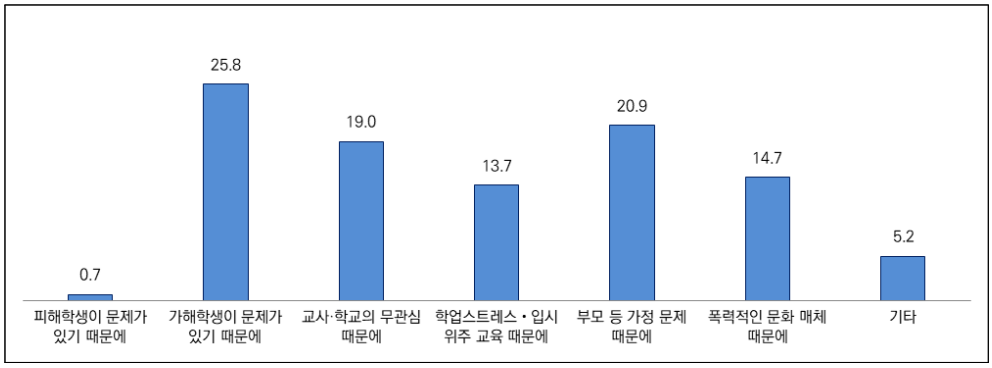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 유형별($x^2$=23.084, p<0.05)로 피해학생 학부모는 '교사·학교의 무관심 때문에'(21.9%), 일반 학부모는 '가해학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32.5%), 관계자는 '부모 등 가정 문제 때문에'(31.7%)를 가장 많이 답해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표 Ⅳ-33〉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발생 원인 (1/2)**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피해학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가해학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교사·학교의 무관심 때문에 | 학업스트레스·입시 위주 교육 때문에 |
|---|---|---|---|---|---|---|
| 전 체 | | (306) | 0.7 | 25.8 | 19.0 | 13.7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0.0 | 18.8 | 21.9 | 17.7 |
| | 일반 학부모 | (169) | 1.2 | 32.5 | 17.8 | 9.5 |
| | 관계자 | (41) | 0.0 | 14.6 | 17.1 | 22.0 |

B5.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34〉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발생 원인 (2/2)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부모 등 가정 문제 때문에 | 폭력적인 문화 매체 때문에 | 기타 | 통계량 |
|---|---|---|---|---|---|---|
| 전 체 | | (306) | 20.9 | 14.7 | 5.2 | -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18.8 | 13.5 | 9.4 | $\chi^2$ =23.084, p=0.027 |
| | 일반 학부모 | (169) | 19.5 | 16.6 | 3.0 | |
| | 관계자 | (41) | 31.7 | 9.8 | 4.9 | |

B5.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6) 학교폭력 이유

학부모 및 관계자 집단이 인식하는 학교폭력 이유로는 '오해와 갈등', '이유 없음'(각 20.9%)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장난'(19.3%), '스트레스 때문에'(17.6%), '친구나 선배 등이 시켜서'(10.5%), '화가 나서'(6.9%), '보복'(3.9%) 등의 순이다.

〈그림 Ⅳ-18〉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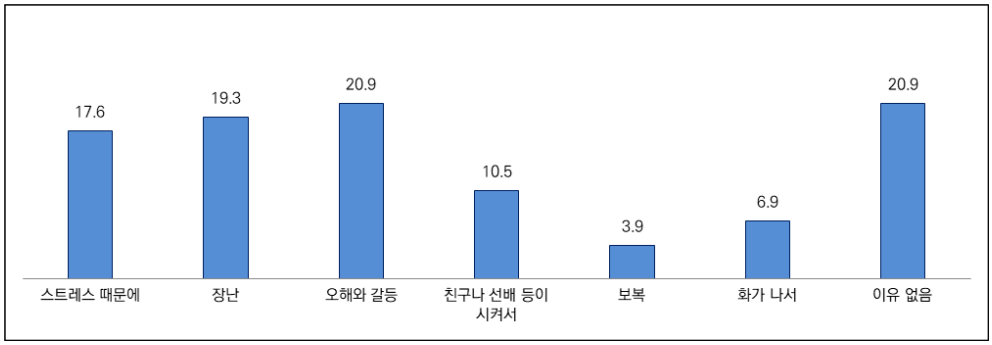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의 유형별로는 학교폭력 이유에 대한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35〉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이유 (1/2)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스트레스 때문에 | 장난 | 오해와 갈등 | 친구나 선배 등이 시켜서 |
|---|---|---|---|---|---|---|
| 전 체 | | (306) | 17.6 | 19.3 | 20.9 | 10.5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13.5 | 19.8 | 14.6 | 16.7 |
| | 일반 학부모 | (169) | 20.1 | 20.1 | 22.5 | 5.9 |
| | 관계자 | (41) | 17.1 | 14.6 | 29.3 | 14.6 |

B6.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표 Ⅳ-36〉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이유 (2/2)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보복 | 화가 나서 | 이유 없음 | 통계량 |
|---|---|---|---|---|---|---|
| 전 체 | | (306) | 3.9 | 6.9 | 20.9 | -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6.3 | 6.3 | 22.9 | $x^2$ =15.895, p=0.196 |
| | 일반 학부모 | (169) | 3.0 | 7.7 | 20.7 | |
| | 관계자 | (41) | 2.4 | 4.9 | 17.1 | |

B6.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7) 학교폭력 발생 대처방법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은 학생들이 학교폭력 발생시 할 수 있는 좋은 대처방법으로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알린다'(46.1%)를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18.3%), '선생님이나 학교에 알린다'(14.4%), '경찰서에 신고한다'(7.5%), '친구와 방법을 의논한다', '상대방을 피하거나 이사 또는 전학을 간다'(각 4.2%), '함께 싸운다'(3.6%), '말로 하지 말라고 한다'(1.6%) 등의 순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Ⅳ-19〉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발생 대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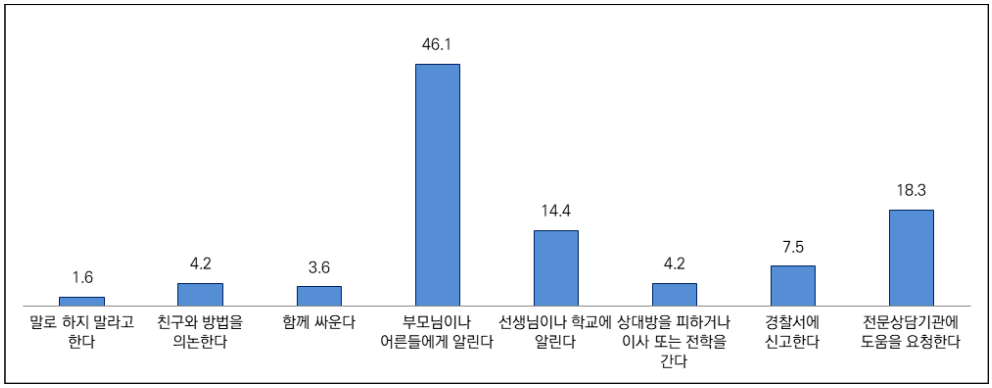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의 유형별로 학교폭력 발생 대처방법에 대한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37〉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발생 대처 (1/2)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말로 하지 말라고 한다 | 친구와 방법을 의논한다 | 함께 싸운다 |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알린다 |
|---|---|---|---|---|---|---|
| 전 체 | | (306) | 1.6 | 4.2 | 3.6 | 46.1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3.1 | 5.2 | 5.2 | 50.0 |
| | 일반 학부모 | (169) | 1.2 | 2.4 | 3.0 | 46.2 |
| | 관계자 | (41) | 0.0 | 9.8 | 2.4 | 36.6 |

B7.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 피해학생으로서 대처하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표 Ⅳ-38〉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발생 대처 (2/2)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선생님이나 학교에 알린다 | 상대방을 피하거나 이사 또는 전학을 간다 | 경찰서에 신고한다 |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 통계량 |
|---|---|---|---|---|---|---|---|
| 전 체 | | (306) | 14.4 | 4.2 | 7.5 | 18.3 | -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10.4 | 3.1 | 4.2 | 18.8 | $\chi^2$=13.588, p=0.481 |
| | 일반 학부모 | (169) | 15.4 | 4.7 | 9.5 | 17.8 | |
| | 관계자 | (41) | 19.5 | 4.9 | 7.3 | 19.5 | |

B7.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 피해학생으로서 대처하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8) 폭력서클 존재에 대한 인식

학부모 및 관계자 집단이 학교내 폭력서클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르겠다'(27.5%), '없다'(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20〉 [학부모 및 관계자] 폭력서클 유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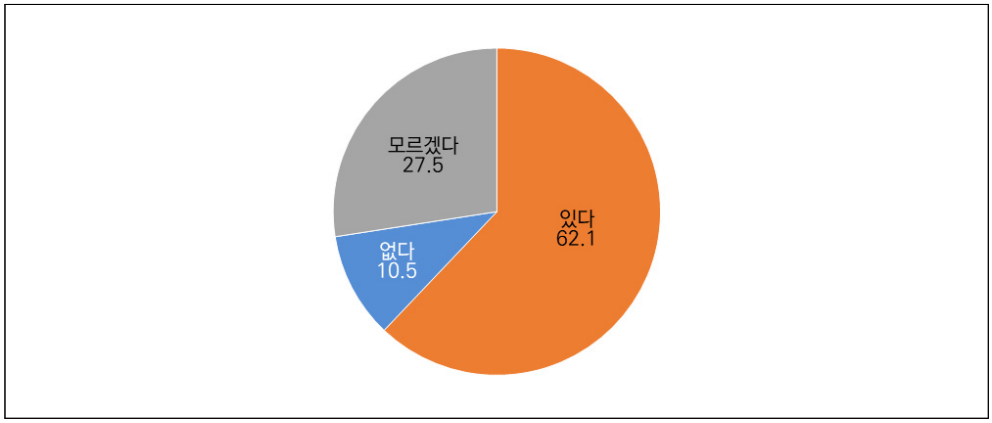


학부모 및 관계자 집단유형별($x^2$=12.542, p<0.05)로 일반 학부모(66.9%)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관계자(61.0%), 피해학생 학부모(54.2%) 등의 순이다.

**〈표 Ⅳ-39〉 [학부모 및 관계자] 폭력서클 유무**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있다 | 없다 | 모르겠다 | 통계량 |
|---|---|---|---|---|---|---|
| 전 체 | | (306) | 62.1 | 10.5 | 27.5 | -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54.2 | 12.5 | 33.3 | $x^2$=12.542, p=0.014 |
| | 일반 학부모 | (169) | 66.9 | 6.5 | 26.6 | |
| | 관계자 | (41) | 61.0 | 22.0 | 17.1 | |

B8. 현재 학교에 '일진회'와 같은 폭력서클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9) 폭력서클에 대한 인식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이 가지고 있는 폭력서클에 대한 인식은 '없어져야 하며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76.5%)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고 분위기를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흐린다'(18.0%), '나와 상관없다 내 자녀(또는 학생)과 상관없다'(3.9%), '폭력서클 학생은 생각보다 괜찮고 평범하다'(1.0%), '폭력서클은 멋있고 나도 속하고 싶다'(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21〉 [학부모 및 관계자] 폭력서클 인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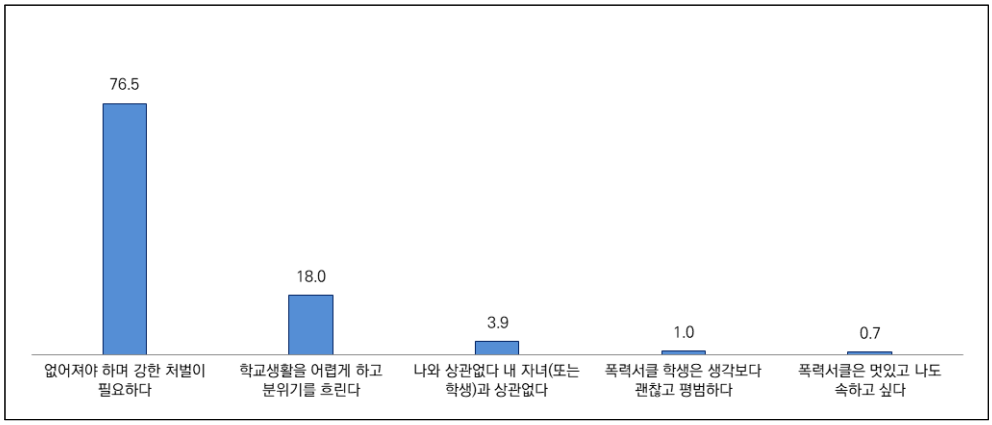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 유형별로 모든 유형에서 '없어져야 하며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 유형별($\chi^2$=27.084, p<0.001)로는 일반 학부모(84.0%)가 다른 집단유형에 비해 응답비율이 높았다.

**〈표 Ⅳ-40〉 [학부모 및 관계자] 폭력서클 인식**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5) | 통계표 |
|---|---|---|---|---|---|---|---|---|
| 전 체 | | (306) | 76.5 | 18.0 | 3.9 | 1.0 | 0.7 | -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66.7 | 20.8 | 10.4 | 2.1 | 0.0 | $\chi^2$=27.084, p=0.001 |
| | 일반 학부모 | (169) | 84.0 | 14.2 | 0.6 | 0.0 | 1.2 | |
| | 관계자 | (41) | 68.3 | 26.8 | 2.4 | 2.4 | 0.0 | |

B9. '폭력서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 없어져야 하며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2)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고 분위기를 흐린다.
(3) 나와 상관없다 내 자녀(또는 학생)과 상관없다.
(4) 폭력서클 학생은 생각보다 괜찮고 평범하다.
(5) 폭력서클은 멋있고 나도 속하고 싶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4. 학교폭력 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인식

## 1) 학교폭력 피해학생

### (1) 학교폭력 고통정도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통정도와 관련해 '고통스럽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3.7%였다.

**〈그림 Ⅳ-22〉 [피해학생] 학교폭력 고통정도**

(단위 : %, 10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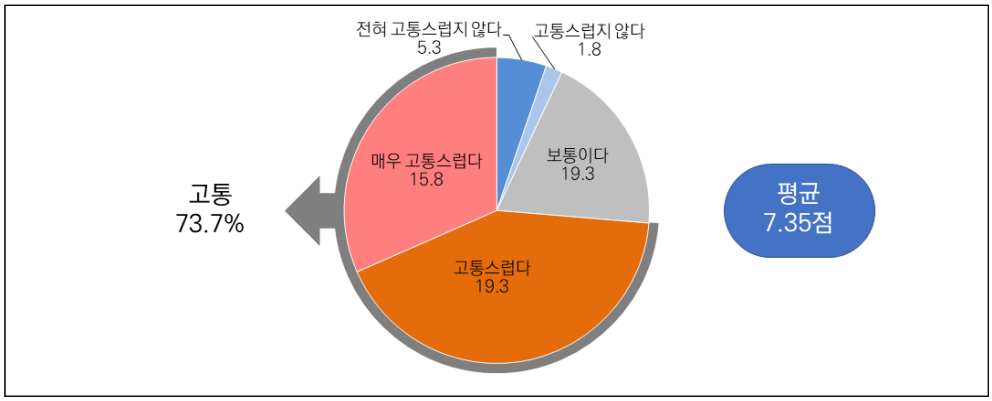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별로는 '피해경험'집단(7.88점, F=5.918, p<0.05)이, 성별로는 '남학생집단'(7.88점, F=5.407, p<0.05)이 유의미하게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통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Ⅳ-41〉 [피해학생] 학교폭력 고통정도**

(단위 : %, 10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고통스럽지 않음 | 보통 | 고통스러움 | 평균 | 통계량 |
|---|---|---|---|---|---|---|---|
| 전 체 | | (57) | 7.0 | 19.3 | 73.7 | 7.35 | - |
| 학교폭력 경험별 | 피해경험 | (34) | 2.9 | 14.7 | 82.4 | 7.88 | F=5.918, p=0.018 |
| | 가해/피해경험 | (23) | 13.0 | 26.1 | 60.9 | 6.57 | |
| 성별 | 남성 | (19) | 2.9 | 14.7 | 82.4 | 7.88 | F=5.407, p=0.024 |
| | 여성 | (38) | 13.0 | 26.1 | 60.9 | 6.57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6) | 10.5 | 31.6 | 57.9 | 6.47 | F=1.487, p=0.228 |
| | 고등학생 | (41) | 5.3 | 13.2 | 81.6 | 7.79 | |

C4.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2) 학교폭력 등교기피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등교를 기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피해학생비율은 68.4%였다. '보통'은 22.8%, '그렇지 않다'는 8.8%였고, 5점 만점 기준 평균 3.9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23〉 [피해학생] 학교폭력 등교기피 경험**

(단위 : %, 5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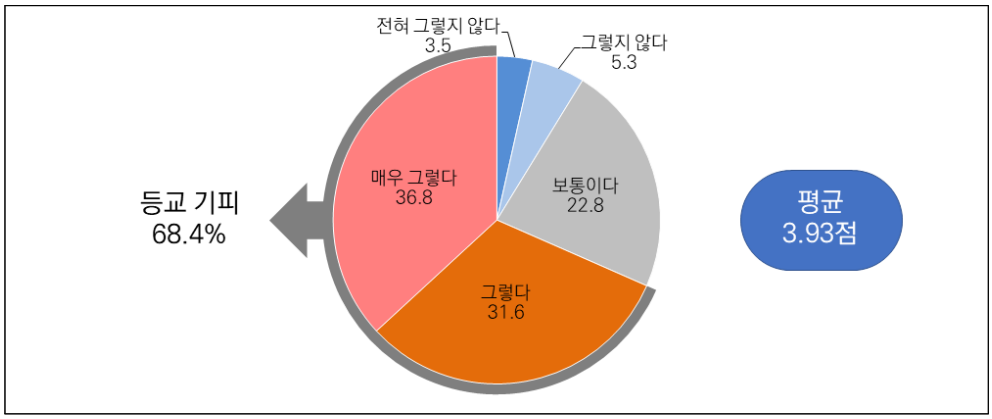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별로는 '피해경험'집단(4.24점, F=7.742, p<0.01)이, 성별로는 '여학생집단'(4.24점, F=11.157, p<0.01)에서 유의미하게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등교를 기피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Ⅳ-42〉 [피해학생] 학교폭력 등교기피**

(단위 :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부정 | 보통 | 긍정 | 평균 | 통계량 |
|---|---|---|---|---|---|---|---|
| 전 체 | | (57) | 8.8 | 22.8 | 68.4 | 3.93 | - |
| 학교폭력 경험별 | 피해경험 | (34) | 2.9 | 17.6 | 79.4 | 4.24 | F=7.742, p=0.007 |
| | 가해/피해경험 | (23) | 17.4 | 30.4 | 52.2 | 3.48 | |
| 성별 | 남성 | (19) | 15.8 | 36.8 | 47.4 | 3.32 | F=11.157, p=0.002 |
| | 여성 | (38) | 5.3 | 15.8 | 78.9 | 4.24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6) | 25.0 | 18.8 | 56.3 | 3.56 | F=2.719, p=0.105 |
| | 고등학생 | (41) | 2.4 | 24.4 | 73.2 | 4.07 | |

C5.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3) 학교폭력에 따른 자해경험 및 자살생각

#### 가. 자해 경험

학교폭력의 영향으로 자해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비율은 45.6%였다. 세부적으로 '일 년에 1~2번'(21.1%), '한 달에 1~2번'(10.5%), '일주일에 1~2번', '하루에 1번 이상'(각 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24〉 [피해학생] 학교폭력 영향 (1) 자해 경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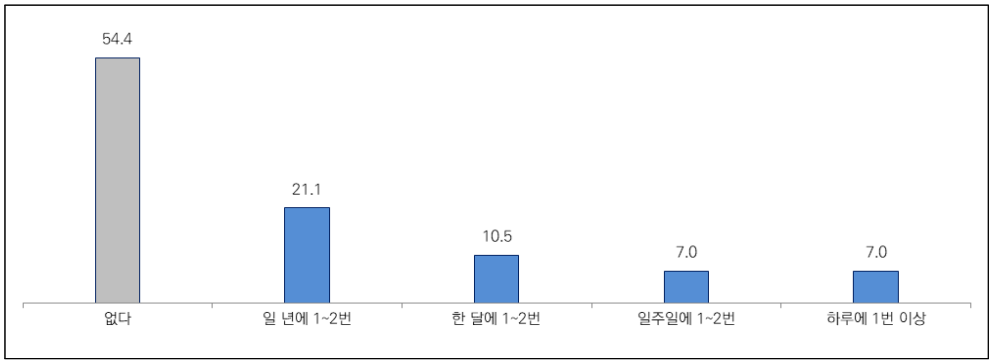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별로 '가해/피해경험집단'(47.8%)이, 성별로는 '여학생집단'(52.6%), 학교급별로는 '중학생'(50.0%)에서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자해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Ⅳ-43〉 [피해학생] 학교폭력 영향 (1) 자해 경험**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없다 | 일 년에 1~2번 | 한 달에 1~2번 | 일주일에 1~2번 | 하루에 1번 이상 | 통계량 |
|---|---|---|---|---|---|---|---|---|
| 전 체 | | (57) | 54.4 | 21.1 | 10.5 | 7.0 | 7.0 | - |
| 학교폭력 경험별 | 피해경험 | (34) | 55.9 | 14.7 | 8.8 | 11.8 | 8.8 | $\chi^2$=4.977, p=0.290 |
| | 가해/피해경험 | (23) | 52.2 | 30.4 | 13.0 | 0.0 | 4.3 | |
| 성별 | 남성 | (19) | 68.4 | 26.3 | 5.3 | 0.0 | 0.0 | $\chi^2$=6.157, p=0.188 |
| | 여성 | (38) | 47.4 | 18.4 | 13.2 | 10.5 | 10.5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6) | 50.0 | 31.3 | 12.5 | 6.3 | 0.0 | $\chi^2$=2.839, p=0.585 |
| | 고등학생 | (41) | 56.1 | 17.1 | 9.8 | 7.3 | 9.8 | |

C6.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자녀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1)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자해를 한 적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나. 자살 생각

학교폭력의 영향으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66.7%였다. 세부적으로 '일 년에 1~2번', '하루에 1번 이상'(각 21.1%), '일주일에 1~2번'(14.0%), '한 달에 1~2번'(10.5%) 등의 순이다.

**〈그림 Ⅳ-25〉 [피해학생] 학교폭력 영향 (2) 자살 생각**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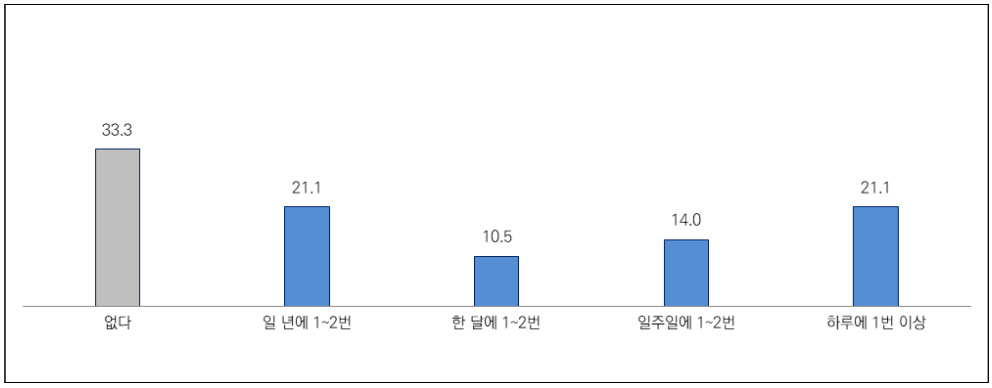


학교피해학생 중 '여학생집단'(78.9%)이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자살 생각을 해본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4〉 [피해학생] 학교폭력 영향 (2) 자살 생각**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없다 | 일 년에 1~2번 | 한 달에 1~2번 | 일주일에 1~2번 | 하루에 1번 이상 | 통계량 |
|---|---|---|---|---|---|---|---|---|
| 전 체 | | (57) | 33.3 | 21.1 | 10.5 | 14.0 | 21.1 | - |
| 학교폭력 경험별 | 피해경험 | (34) | 29.4 | 14.7 | 8.8 | 20.6 | 26.5 | $x^2$=5.986, p=0.200 |
| | 가해/피해경험 | (23) | 39.1 | 30.4 | 13.0 | 4.3 | 13.0 | |
| 성별 | 남성 | (19) | 57.9 | 26.3 | 0.0 | 10.5 | 5.3 | $x^2$=12.158, p=0.016 |
| | 여성 | (38) | 21.1 | 18.4 | 15.8 | 15.8 | 28.9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6) | 37.5 | 25.0 | 12.5 | 6.3 | 18.8 | $x^2$=1.379, p=0.848 |
| | 고등학생 | (41) | 31.7 | 19.5 | 9.8 | 17.1 | 22.0 | |

C6.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자녀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2)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죽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다. 자살 시도

학교폭력의 영향으로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47.4%였다. 세부적으로 '일 년에 1~2번'(17.5%), '한 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각 12.3%), '하루에 1번 이상'(5.3%) 등의 순이다.

**〈그림 Ⅳ-26〉 [피해학생] 학교폭력 영향 (3) 자살 시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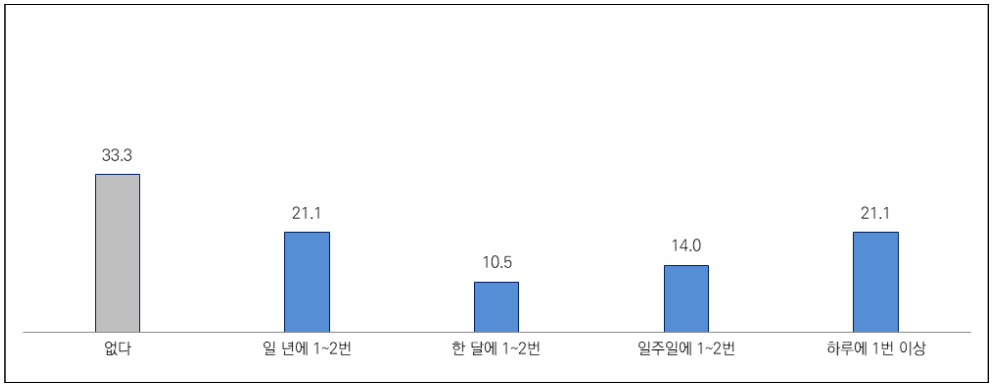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별로는 '피해경험집단'(47.1%), '가해/피해경험집단'(47.8%)의 자살 시도경험은 비슷한 수준이었고, 성별, 학교급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45〉 [피해학생] 학교폭력 영향 (3) 자살 시도**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없다 | 일 년에 1~2번 | 한 달에 1~2번 | 일주일에 1~2번 | 하루에 1번 이상 | 통계량 |
|---|---|---|---|---|---|---|---|---|
| 전 체 | | (57) | 52.6 | 17.5 | 12.3 | 12.3 | 5.3 | - |
| 학교폭력 경험별 | 피해경험 | (34) | 52.9 | 14.7 | 14.7 | 11.8 | 5.9 | $\chi^2$=.872, p=0.929 |
| | 가해/피해경험 | (23) | 52.2 | 21.7 | 8.7 | 13.0 | 4.3 | |
| 성별 | 남성 | (19) | 78.9 | 5.3 | 5.3 | 10.5 | 0.0 | $\chi^2$=8.914, p=0.063 |
| | 여성 | (38) | 39.5 | 23.7 | 15.8 | 13.2 | 7.9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6) | 50.0 | 6.3 | 18.8 | 18.8 | 6.3 | $\chi^2$=3.204, p=0.524 |
| | 고등학생 | (41) | 53.7 | 22.0 | 9.8 | 9.8 | 4.9 | |

C6.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자녀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3)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4) 학교폭력 영향 극복방법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영향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내 편이 있다고 생각한다'(26.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19.3%), '부모님을 생각한다'(17.5%), '기타'(15.8%), '관심·이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12.3%),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한다'(8.8%) 등의 순이다.

**〈그림 Ⅳ-27〉 [피해학생] 학교폭력 영향 극복방법**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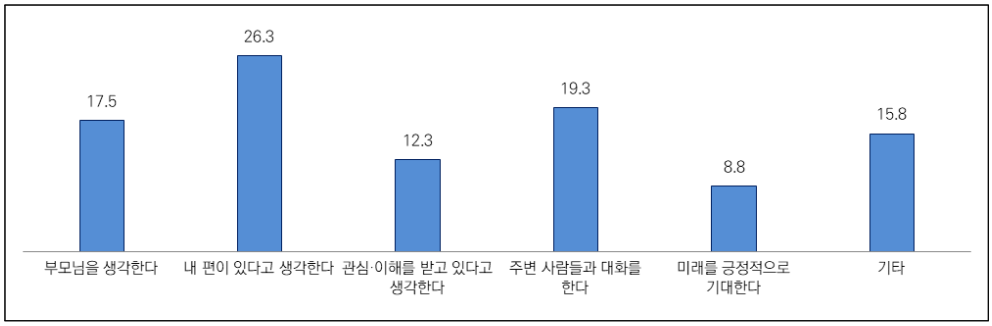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별, 성별, 학교급별로 학교폭력 영향을 극복하는 방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표 Ⅳ-46〉 [피해학생] 학교폭력 영향 극복방법**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5) | (6) | 통계량 |
|---|---|---|---|---|---|---|---|---|---|
| 전 체 | | (57) | 17.5 | 26.3 | 12.3 | 19.3 | 8.8 | 15.8 | - |
| 학교폭력 경험별 | 피해경험 | (34) | 26.5 | 23.5 | 14.7 | 8.8 | 11.8 | 14.7 | $\chi^2$=10.193, p=0.070 |
| | 가해/피해경험 | (23) | 4.3 | 30.4 | 8.7 | 34.8 | 4.3 | 17.4 | |
| 성별 | 남성 | (19) | 21.1 | 21.1 | 10.5 | 15.8 | 15.8 | 15.8 | $\chi^2$=2.353, p=0.798 |
| | 여성 | (38) | 15.8 | 28.9 | 13.2 | 21.1 | 5.3 | 15.8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6) | 25.0 | 18.8 | 18.8 | 12.5 | 0.0 | 25.0 | $\chi^2$=5.626, p=0.344 |
| | 고등학생 | (41) | 14.6 | 29.3 | 9.8 | 22.0 | 12.2 | 12.2 | |

C7. 자해·자살 생각·자살 시도 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1) 부모님을 생각한다.
(2) 내 편이 있다고 생각한다.
(3) 관심·이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4)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
(5)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한다.
(6) 기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5) 학교폭력 도움요청

#### 가. 도움요청 경험

학교폭력 피해 시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피해학생의 비율은 82.5%였다. 세부적으로 '학교 선생님께 도움을 청했다'(36.8%)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모님께 도움을 청했다'(31.6%),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22.8%), '청소년 상담실에 도움을 청했다'(19.3%), '학교폭력전문기관에 도움을 청했다'(8.8%), '학교폭력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했다'(7.0%), '117에 신고하여 도움을 청했다'(1.8%)의 순이었다.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17.5%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Ⅳ-28〉 [피해학생] 학교폭력 영향 도움요청 경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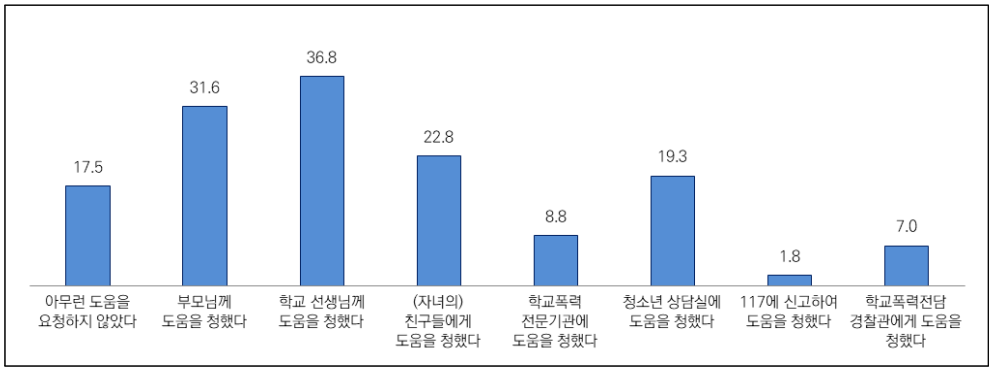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별로 피해경험집단, 가해/피해경험집단 모두 '학교 선생님께 도움을 청했다'가 높았고, 성별로 남학생집단은 '부모님께 도움을 청했다', 여학생집단은 '학교 선생님께 도움을 청했다'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은 '(자녀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청소년 상담실(예: Wee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고등학생은 '학교 선생님께 도움을 청했다'가 높게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47〉 [피해학생] 학교폭력 도움요청 경험

(단위 : %, 복수응답)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5) | (6) | (7) | (8) |
|---|---|---|---|---|---|---|---|---|---|---|
| 전 체 | | (57) | 17.5 | 31.6 | 36.8 | 22.8 | 8.8 | 19.3 | 1.8 | 7.0 |
| 학교폭력 경험별 | 피해경험 | (34) | 17.6 | 35.3 | 41.2 | 23.5 | 8.8 | 14.7 | 0.0 | 2.9 |
| | 가해/피해경험 | (23) | 17.4 | 26.1 | 30.4 | 21.7 | 8.7 | 26.1 | 4.3 | 13.0 |
| 성별 | 남성 | (19) | 10.5 | 47.4 | 36.8 | 31.6 | 10.5 | 15.8 | 0.0 | 15.8 |
| | 여성 | (38) | 21.1 | 23.7 | 36.8 | 18.4 | 7.9 | 21.1 | 2.6 | 2.6 |
| 학교급별 | 중학생 | (16) | 12.5 | 25.0 | 25.0 | 31.3 | 12.5 | 31.3 | 0.0 | 6.3 |
| | 고등학생 | (41) | 19.5 | 34.1 | 41.5 | 19.5 | 7.3 | 14.6 | 2.4 | 7.3 |

C8.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1)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2) 부모님께 도움을 청했다.
(3) 학교 선생님께 도움을 청했다.
(4) (자녀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5) 학교폭력전문기관(예:학교폭력피해자전담기관)에 도움을 청했다.
(6) 청소년 상담실(예:Wee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7) 117에 신고하여 도움을 청했다.
(8) 학교폭력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했다.

### 나. 도움 미요청 이유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피해 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각 30.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20.0%), '야단맞을 것 같아서', '일이 커질 것 같아서'(각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29〉 [피해학생] 학교폭력 도움요청 미경험 이유

(Base: 도움 미요청 응답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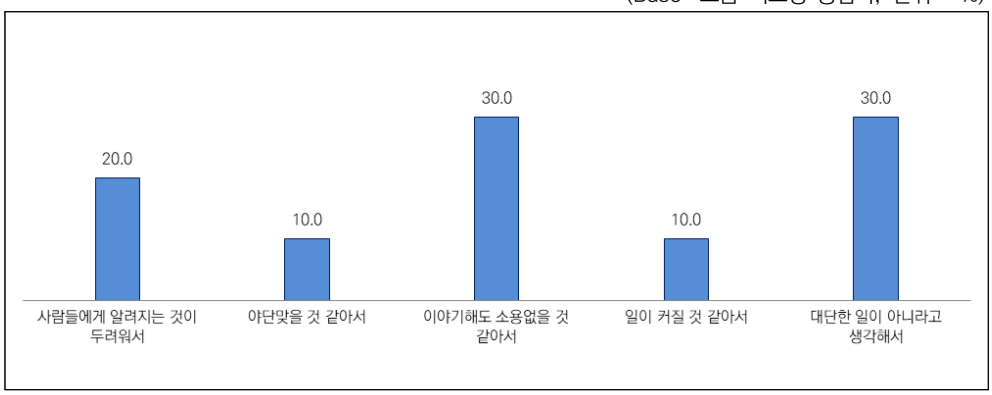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학교폭력 경험별로는 피해경험집단에서는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가해/피해경험집단에서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높았다. 성별로는 남학생집단은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일이 커질 것 같아서', 여학생집단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고등학생은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가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별 학교폭력 도움요청 미경험 이유를 비교해 본 결과, 학교폭력 경험별($\chi^2$=10.000, p<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33.3%), '야단맞을 것 같아서'(16.7%),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50.0%)가 피해경험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이 커질 것 같아서'(25.0%),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75.0%)가 가해/피해경험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48〉 [피해학생] 학교폭력 도움요청 미경험 이유**

(Base: 도움 미요청 응답자,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5) | 통계량 |
|---|---|---|---|---|---|---|---|---|
| 전 체 | | (10) | 20.0 | 10.0 | 30.0 | 10.0 | 30.0 | - |
| 학교폭력 경험별 | 피해경험 | (6) | 33.3 | 16.7 | 50.0 | 0.0 | 0.0 | $\chi^2$=10.000, p=0.040 |
| | 가해/피해경험 | (4) | 0.0 | 0.0 | 0.0 | 25.0 | 75.0 | |
| 성별 | 남성 | (2) | 0.0 | 0.0 | 50.0 | 50.0 | 0.0 | $\chi^2$=5.833, p=0.212 |
| | 여성 | (8) | 25.0 | 12.5 | 25.0 | 0.0 | 37.5 | |
| 학교급별 | 중학생 | (2) | 0.0 | 0.0 | 0.0 | 0.0 | 100.0 | $\chi^2$=5.833, p=0.212 |
| | 고등학생 | (8) | 25.0 | 12.5 | 37.5 | 12.5 | 12.5 | |

C8-1. 피해를 당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2) 야단맞을 것 같아서.
(3)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4) 일이 커질 것 같아서.
(5)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다. 도움요청 도움도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도움을 요청한 경우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4%로 나타났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8.3%,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21.3%였다.

**〈그림 Ⅳ-30〉 [피해학생] 학교폭력 도움요청 도움정도**

(Base: 도움 요청 응답자, 단위 : %, 5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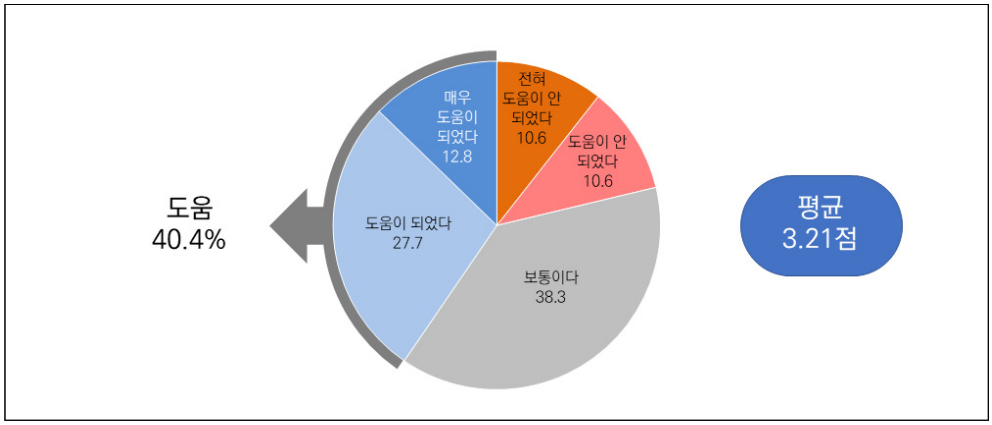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유형별, 성별, 학교급별로 학교폭력 도움요청의 도움정도는 유의미하게 차이나는 응답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Ⅳ-49〉 [피해학생] 학교폭력 도움요청 도움정도**

(Base: 도움 요청 응답자, 단위 :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비도움 | 보통 | 도움 | 평균 | 통계량 |
|---|---|---|---|---|---|---|---|
| 전 체 | | (47) | 21.3 | 38.3 | 40.4 | 3.21 | - |
| 학교폭력 경험별 | 피해경험 | (28) | 28.6 | 32.1 | 39.3 | 3.07 | F=1.065, p=0.308 |
| | 가해/피해경험 | (19) | 10.5 | 47.4 | 42.1 | 3.42 | |
| 성별 | 남성 | (17) | 17.6 | 35.3 | 47.1 | 3.35 | F=0.397, p=0.532 |
| | 여성 | (30) | 23.3 | 40.0 | 36.7 | 3.13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4) | 35.7 | 35.7 | 28.6 | 2.93 | F=1.244, p=0.271 |
| | 고등학생 | (33) | 15.2 | 39.4 | 45.5 | 3.33 | |

C8-2. 요청한 도움 방법이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6) 학교폭력 피해 후 조치

#### 가. 피해 후 조치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학교폭력 피해 후 이루어진 조치로 '학교 선생님께 도움과 위로를 받았다'(28.1%)를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가해학생에게 사과를 받았다'(22.8%), '부모님께 도움과 위로를 받았다'(19.3%), '가해학생에게 물질적인 보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았다', '병원 치료 혹 심리 상담을 받았다',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았다'(각 8.8%)의 순이었고,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28.1%)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림 Ⅳ-31〉 [피해학생] 학교폭력 피해 후 조치**

(단위 :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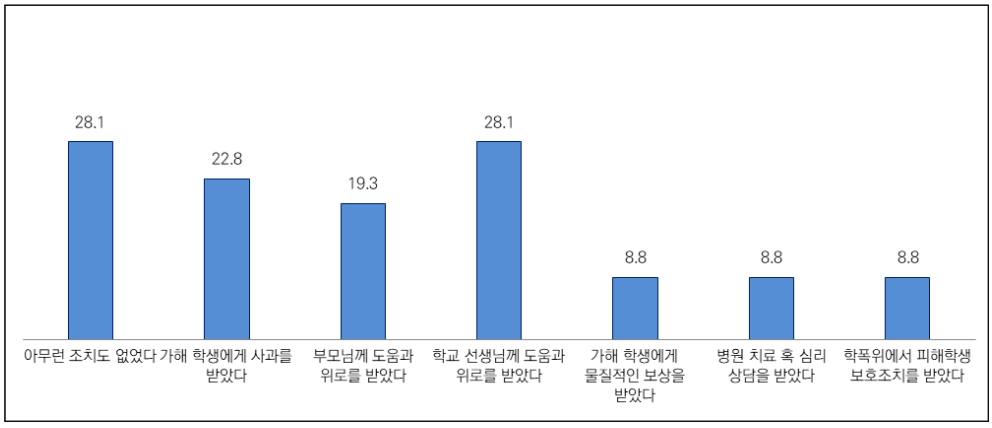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별로는 피해경험집단은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가해/피해경험집단은 '학교 선생님께 도움과 위로를 받았다'가 높았다. 성별로는 남학생집단은 '학교 선생님께 도움과 위로를 받았다'가 높게 나타난 반면, 여학생집단은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은 '학교 선생님께 도움과 위로를 받았다', 고등학생집단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가 높게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50〉 [피해학생] 학교폭력 피해 후 조치

(단위 : %, 복수응답)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5) | (6) | (7) |
|---|---|---|---|---|---|---|---|---|---|
| 전 체 | | (57) | 28.1 | 22.8 | 19.3 | 28.1 | 8.8 | 8.8 | 8.8 |
| 학교폭력 경험별 | 피해경험 | (34) | 29.4 | 26.5 | 20.6 | 20.6 | 5.9 | 14.7 | 8.8 |
| | 가해/피해경험 | (23) | 26.1 | 17.4 | 17.4 | 39.1 | 13.0 | 0.0 | 8.7 |
| 성별 | 남성 | (19) | 15.8 | 21.1 | 26.3 | 36.8 | 0.0 | 5.3 | 15.8 |
| | 여성 | (38) | 34.2 | 23.7 | 15.8 | 23.7 | 13.2 | 10.5 | 5.3 |
| 학교급별 | 중학생 | (16) | 12.5 | 18.8 | 18.8 | 37.5 | 12.5 | 12.5 | 6.3 |
| | 고등학생 | (41) | 34.1 | 24.4 | 19.5 | 24.4 | 7.3 | 7.3 | 9.8 |

C9.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후 다음 중 어떠한 조치를 받았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1)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2) 가해학생에게 사과를 받았다.
(3) 부모님께 도움과 위로를 받았다. (4) 학교 선생님께 도움과 위로를 받았다.
(5) 가해학생에게 물질적인 보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았다.
(6) 병원 치료 혹 심리 상담을 받았다. (7)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았다.

### 나. 조치 도움도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 후 이루어진 조치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6%였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5.1%,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40.4%였다.

〈그림 Ⅳ-32〉 [피해학생] 조치 도움정도

(단위 : %, 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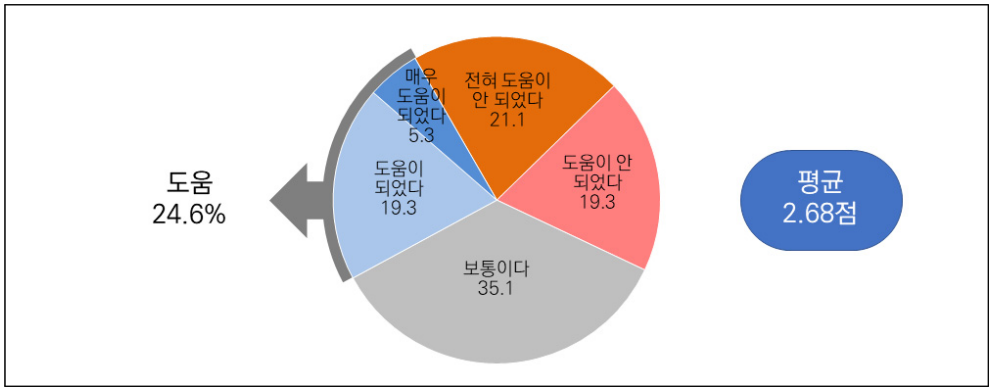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별, 성별, 학교급별로 학교폭력 피해조치의 도움정도와 관련해 유의미하게 차이나는 응답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51〉 [피해학생] 조치 도움정도

(단위 :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비도움 | 보통 | 도움 | 평균 | 통계량 |
|---|---|---|---|---|---|---|---|
| 전 체 | | (57) | 40.4 | 35.1 | 24.6 | 2.68 | - |
| 학교폭력 경험별 | 피해경험 | (34) | 50.0 | 29.4 | 20.6 | 2.50 | F=2.141, p=0.149 |
| | 가해/피해경험 | (23) | 26.1 | 43.5 | 30.4 | 2.96 | |
| 성별 | 남성 | (19) | 36.8 | 47.4 | 15.8 | 2.74 | F=0.057, p=0.812 |
| | 여성 | (38) | 42.1 | 28.9 | 28.9 | 2.66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6) | 50.0 | 18.8 | 31.3 | 2.63 | F=0.056, p=0.813 |
| | 고등학생 | (41) | 36.6 | 41.5 | 22.0 | 2.71 | |

C10. 여러분이 받은 조치가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7) 학교폭력 피해 극복

#### 가. 극복 여부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에서 벗어났다'고 응답한 비율은 87.7%로 다수를 차지하나, '아직도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경우도 12.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33〉 [피해학생] 학교폭력 피해 극복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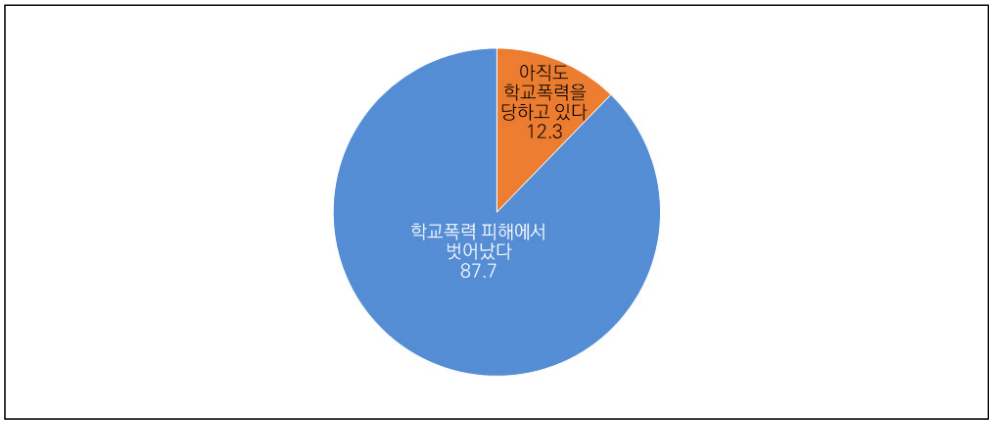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별로는 피해경험집단이, 성별로는 여학생집단, 학교급별로 고등학생집단에서 '학교폭력 피해에서 벗어났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52〉 [피해학생] 학교폭력 피해 극복 여부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아직도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 | 학교폭력 피해에서 벗어났다 | 통계량 |
|---|---|---|---|---|---|
| 전 체 | | (57) | 12.3 | 87.7 | - |
| 학교폭력 경험별 | 피해경험 | (34) | 8.8 | 91.2 | $x^2$=0.935, p=0.334 |
| | 가해/피해경험 | (23) | 17.4 | 82.6 | |
| 성별 | 남성 | (19) | 21.1 | 78.9 | $x^2$=2.036, p=0.154 |
| | 여성 | (38) | 7.9 | 92.1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6) | 18.8 | 81.3 | $x^2$=0.864, p=0.353 |
| | 고등학생 | (41) | 9.8 | 90.2 | |

C12. 학교폭력 피해에서 벗어났습니까?

### 나. 피해극복의 계기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로 가장 많이 답한 것은 '혼자 힘으로 해결했다'(50.0%)였다. 다음으로 '학교 선생님께 알려 도움을 받았다'(42.0%), '환경이 바뀌었다'(36.0%), '학교폭력전문기관이나 청소년상담실에서 도움을 받았다'(34.0%), '부모님께 알려 도움을 받았다'(32.0%), '친구들에게 알려 도움을 받았다'(26.0%), '학교폭력 전담기구 및 자치위원회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았다' (22.0%), '117, 학교폭력전담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았다'(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34〉 [피해학생] 학교폭력 피해 극복 계기 (3순위 중복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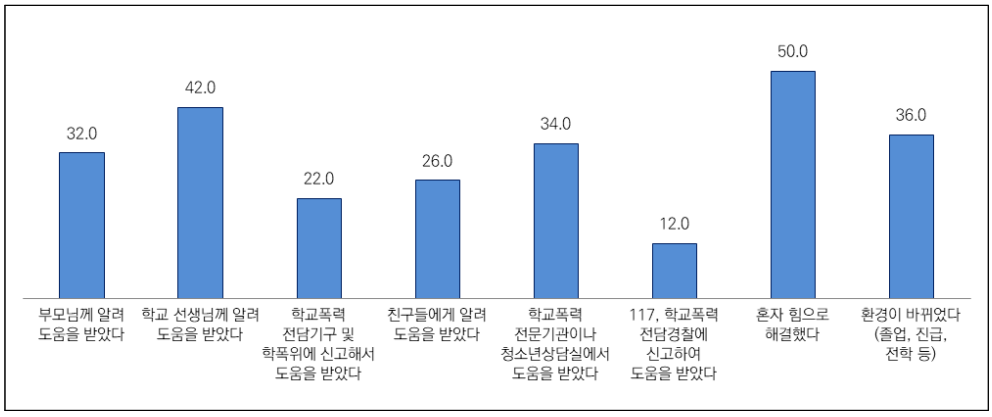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학교폭력 경험별로는 피해경험집단은 '환경이 바뀌었다', 가해/피해경험집단은 '혼자 힘으로 해결했다'가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집단은 '학교 선생님께 알려 도움을 받았다', '혼자 힘으로 해결했다', 여학생집단은 '혼자 힘으로 해결했다'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중학생집단은 '학교폭력전문기관이나 청소년 상담실에서 도움을 받았다'가 높은 반면, 고등학생집단은 '혼자 힘으로 해결했다'가 높게 나타났다.

**〈표 Ⅳ-53〉 [피해학생] 학교폭력 피해 극복 계기 (3순위 중복응답) (1/2)**

(Base: 피해 극복 응답자, 단위 : %, 1+2+3순위)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
| 전 체 | | (50) | 32.0 | 42.0 | 22.0 | 26.0 |
| 학교폭력 경험별 | 피해경험 | (31) | 32.3 | 45.2 | 22.6 | 22.6 |
| | 가해/피해경험 | (19) | 31.6 | 36.8 | 21.1 | 31.6 |
| 성별 | 남성 | (15) | 33.3 | 46.7 | 26.7 | 33.3 |
| | 여성 | (35) | 31.4 | 40.0 | 20.0 | 22.9 |
| 학교급별 | 중학생 | (13) | 30.8 | 53.8 | 30.8 | 15.4 |
| | 고등학생 | (37) | 32.4 | 37.8 | 18.9 | 29.7 |

C12-1. 학교폭력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부터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1+2+3순위)

(1) 부모님께 알려 도움을 받았다.
(2) 학교 선생님께 알려 도움을 받았다.
(3) 학교폭력 전담기구 및 자치위원회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았다.
(4) 친구들에게 알려 도움을 받았다.

**〈표 Ⅳ-54〉 [피해학생] 학교폭력 피해 극복 계기 (3순위 중복응답) (2/2)**

(Base: 피해 극복 응답자, 단위 : %, 1+2+3순위)

| 구분 | | 사례수 | (5) | (6) | (7) | (8) |
|---|---|---|---|---|---|---|
| 전 체 | | (50) | 34.0 | 12.0 | 50.0 | 36.0 |
| 학교폭력 경험별 | 피해경험 | (31) | 25.8 | 6.5 | 45.2 | 45.2 |
| | 가해/피해경험 | (19) | 47.4 | 21.1 | 57.9 | 21.1 |
| 성별 | 남성 | (15) | 33.3 | 6.7 | 46.7 | 26.7 |
| | 여성 | (35) | 34.3 | 14.3 | 51.4 | 40.0 |
| 학교급별 | 중학생 | (13) | 61.5 | 30.8 | 30.8 | 23.1 |
| | 고등학생 | (37) | 24.3 | 5.4 | 56.8 | 40.5 |

C12-1. 학교폭력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부터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1+2+3순위)

(5) 학교폭력 전문기관이나 청소년상담실에서 도움을 받았다.
(6) 117, 학교폭력전담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았다.
(7) 혼자 힘으로 해결했다.
(8) 환경이 바뀌었다.(졸업, 진급, 전학 등)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8) 학교폭력 신고 후 변화

### 가. 가해학생 반응

학교폭력 신고 후 나타난 가해학생 태도 및 반응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결과는 '폭력은 멈추었지만 반성과 사과는 하지 않았다'(56.1%)였다. 다음으로 '신고 이후에도 학교폭력을 멈추지 않았다'(21.1%),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했다'(14.0%), '신고 이후 더 심하게 학교폭력을 가했다'(8.8%) 등의 순이었다.

**〈그림 Ⅳ-35〉 [피해학생] 학교폭력 신고 후 가해학생 태도/반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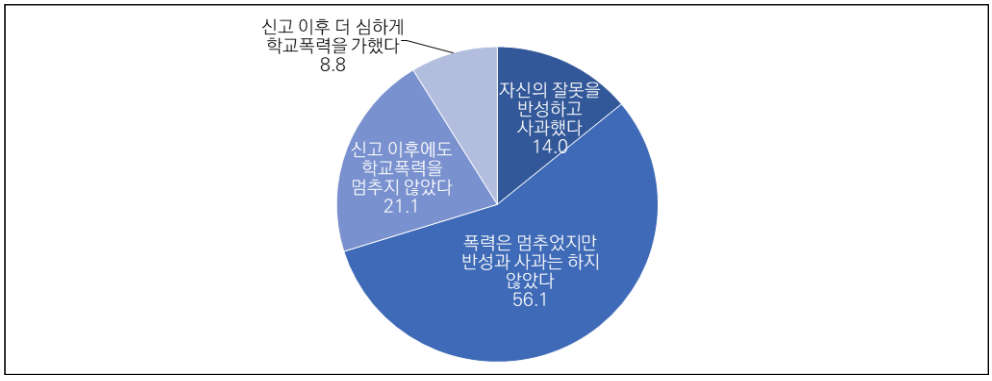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별, 성별, 학교급별 모든 유형에서 '폭력은 멈추었지만 반성과 사과는 하지 않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Ⅳ-55〉 [피해학생] 학교폭력 신고 후 가해학생 태도/반응**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통계량 |
|---|---|---|---|---|---|---|---|
| 전 체 | | (57) | 14.0 | 56.1 | 21.1 | 8.8 | - |
| 학교폭력 경험별 | 피해경험 | (34) | 8.8 | 61.8 | 26.5 | 2.9 | $\chi^2$=6.546, p=0.088 |
| | 가해/피해경험 | (23) | 21.7 | 47.8 | 13.0 | 17.4 | |
| 성별 | 남성 | (19) | 15.8 | 42.1 | 26.3 | 15.8 | $\chi^2$=3.038, p=0.386 |
| | 여성 | (38) | 13.2 | 63.2 | 18.4 | 5.3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6) | 6.3 | 56.3 | 31.3 | 6.3 | $\chi^2$=2.221, p=0.528 |
| | 고등학생 | (41) | 17.1 | 56.1 | 17.1 | 9.8 | |

C13. 학교폭력 사건 신고 후 가해학생의 태도나 반응은 어땠습니까?
(1)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했다.
(2) 폭력은 멈추었지만 반성과 사과는 하지 않았다.
(3) 신고 이후에도 학교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4) 신고 이후 더 심하게 학교폭력을 가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나. 주변학생 반응

학교폭력 신고 후 주변학생 반응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주변 학생들이 가해학생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3.39점)를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주변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3.12점), '주변 학생들은 피해학생을 위로하며 도와주려 했다'(2.81점), '주변 학생들이 가해학생이 잘못했다고 말하며 가해학생을 나무라는 태도를 보였다'(2.53점) 등의 순이었다.

**〈그림 Ⅳ-36〉 [피해학생] 학교폭력 신고 후 주변학생 태도/반응**

(단위 : 5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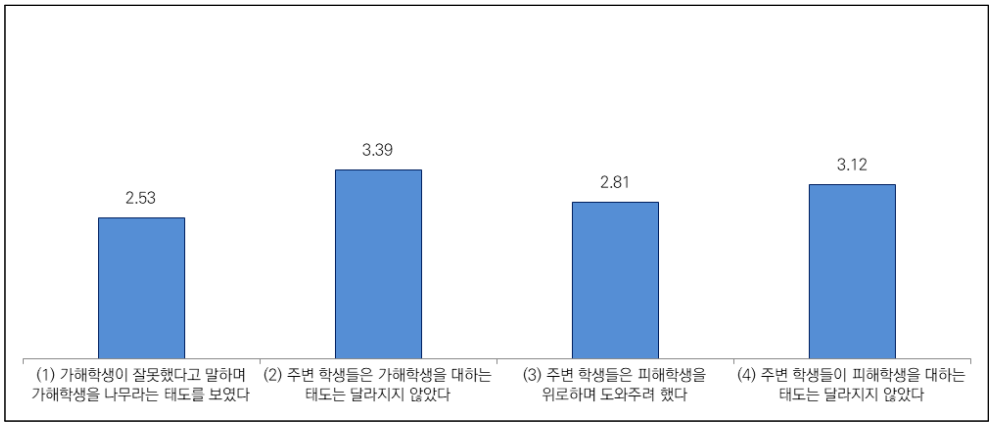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별로는 피해경험집단은 '주변 학생들은 가해학생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가해/피해경험집단은 '주변 학생들은 피해학생을 위로하며 도와주려 했다'는 응답이 높았고, 성별, 학교급별로 모두 '주변 학생들은 가해학생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피해경험집단(3.79점, $F=14.999$, $p<0.001$)에서 가해학생을 대하는 주변 학생들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은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56〉 [피해학생] 학교폭력 신고 후 주변학생 태도/반응

(단위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주변 학생들이 가해학생이 잘못했다고 말하며 가해학생을 나무라는 태도를 보였다 | 주변 학생들은 가해학생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 주변 학생들은 피해학생을 위로하며 도와주려 했다 | 주변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
|---|---|---|---|---|---|---|
| 전 체 | | (57) | 2.53 | 3.39 | 2.81 | 3.12 |
| 학교폭력 경험별 | 피해경험 | (34) | 2.59 | 3.79 | 2.79 | 3.35 |
| | 가해/피해경험 | (23) | 2.43 | 2.78 | 2.83 | 2.78 |
| | 통계량 | - | F=0.222, p=0.639 | F=14.999, p=0.000 | F=0.012, p=0.912 | F=3.979, p=0.051 |
| 성별 | 남성 | (19) | 2.42 | 3.32 | 2.47 | 2.74 |
| | 여성 | (38) | 2.58 | 3.42 | 2.97 | 3.32 |
| | 통계량 | - | F=0.217, p=0.643 | F=0.118, p=0.732 | F=2.917, p=0.093 | F=3.773, p=0.057 |
| 학교급별 | 중학생 | (16) | 2.13 | 3.06 | 2.56 | 2.88 |
| | 고등학생 | (41) | 2.68 | 3.51 | 2.90 | 3.22 |
| | 통계량 | - | F=2.571, p=0.115 | F=2.026, p=0.160 | F=1.188, p=0.280 | F=1.160, p=0.286 |

C14. 학교폭력 사건 신고 후에 경험한 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 (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경험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자치위원회 경험과 관련해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사안조사 과정 중 피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3.25점)가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치위원회 조치/결과 중 가해학생이 불복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불편하였거나 불안하였다'(3.21점), '사안조사 과정 중 피해학생(부모)으로서 충분하게 사안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2.95점), '자치위원회 개최 과정 중 피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2.86점), '자치위원회 개최 과정 중 피해학생 및 학부모로서 적정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보장되었다'(2.84점), '자치위원회 개최 과정 중 피해학생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적이 있다'(2.79점), '사안조사 과정 중 피해학생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적이 있다'(2.75점), '자치위원회 조치/결과 중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일반학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생(목격학생)은 적정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편이다'(2.63점), '자치위원회 조치/결과 중 가해학생에 대해 내린 조치에 만족한다'(2.51점), '자치위원회 조치/결과 중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해학생이 잘 이행했다고 생각한다'(2.47점) 등의 순이었다.

자치위원회 경험별로는 피해경험집단은 '가해학생이 불복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불편하였거나 불안하였다', 가해/피해경험집단은 '피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학생집단은 '가해학생이 불복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불편하였거나 불안하였다', 여학생집단은 '피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집단은 '피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 고등학생집단은 '가해학생이 불복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불편하였거나 불안하였다'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집단(3.44점, $F=6.569$, $p<0.05$)에서 가해학생이 불복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불편하였거나 불안한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37〉 [피해학생] 자치위원회 경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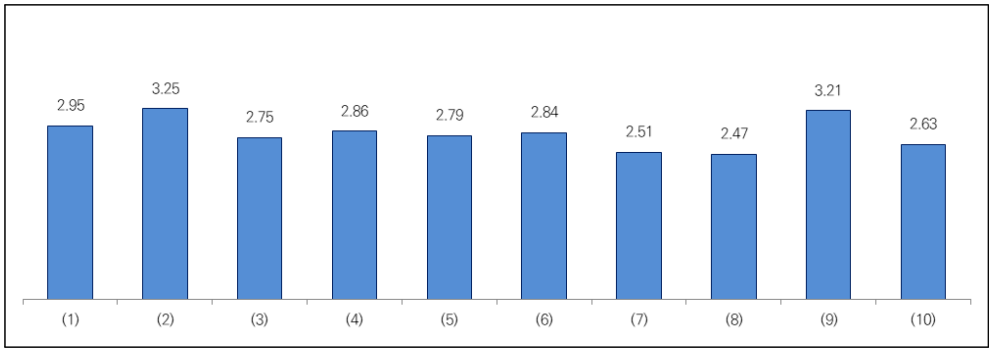


(1) 피해학생으로서 충분하게 시안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2) 피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
(3) 피해학생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적이 있다.
(4) 피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
(5) 피해학생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적이 있다.
(6) 피해학생으로서 적정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보장되었다.
(7) 가해학생에 대해 내린 조치에 만족한다.
(8)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해학생이 잘 이행했다고 생각한다.
(9) 가해학생이 불복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불편하였거나 불안하였다.
(10)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일반학생(목격학생)은 적정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표 Ⅳ-57〉 [피해학생] 자치위원회 경험 (1/2)

(단위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사안조사 과정 | | | 개최 과정 | |
|---|---|---|---|---|---|---|---|
| | | | 피해학생으로서 충분하게 사안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 피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 | 피해학생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적이 있다 | 피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 | 피해학생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적이 있다 |
| 전 체 | | (57) | 2.95 | 3.25 | 2.75 | 2.86 | 2.79 |
| 학교 폭력 경험별 | 피해경험 | (34) | 3.00 | 3.12 | 2.79 | 2.85 | 2.82 |
| | 가해/피해경험 | (23) | 2.87 | 3.43 | 2.70 | 2.87 | 2.74 |
| | 통계량 | - | F=0.155, p=0.695 | F=1.164, p=0.285 | F=0.085, p=0.772 | F=0.003, p=0.959 | F=0.060, p=0.807 |
| 성별 | 남성 | (19) | 2.89 | 2.89 | 3.00 | 2.79 | 2.74 |
| | 여성 | (38) | 2.97 | 3.42 | 2.63 | 2.89 | 2.82 |
| | 통계량 | - | F=0.052, p=0.820 | F=3.061, p=0.086 | F=1.115, p=0.296 | F=0.101, p=0.752 | F=0.049, p=0.826 |
| 학교급별 | 중학생 | (16) | 3.19 | 3.13 | 2.88 | 3.25 | 3.00 |
| | 고등학생 | (41) | 2.85 | 3.29 | 2.71 | 2.71 | 2.71 |
| | 통계량 | - | F=0.865, p=0.356 | F=0.269, p=0.606 | F=0.206, p=0.651 | F=2.537, p=0.117 | F=0.613, p=0.437 |

C15. 학교폭력 사안조사 과정 및 자치위원회 개최 및 조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표 Ⅳ-58〉 [피해학생] 자치위원회 경험 (2/2)

(단위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개최 과정 | 조치/결과 | | | |
|---|---|---|---|---|---|---|---|
| | | | 피해학생으로서 적정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보장되었다 | 가해학생에 대해 내린 조치에 만족한다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해학생이 잘 이행했다고 생각한다 | 가해학생이 불복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불편하였거나 불안하였다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일반학생(목격학생)은 적정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
| 전 체 | | (57) | 2.84 | 2.51 | 2.47 | 3.21 | 2.63 |
| 학교 폭력 경험별 | 피해경험 | (34) | 2.94 | 2.38 | 2.26 | 3.50 | 2.59 |
| | 가해/피해경험 | (23) | 2.70 | 2.70 | 2.78 | 2.78 | 2.70 |
| | 통계량 | - | F=0.681, p=0.413 | F=0.833, p=0.365 | F=2.513, p=0.119 | F=6.029, p=0.017 | F=0.147, p=0.703 |
| 성별 | 남성 | (19) | 3.05 | 2.42 | 2.68 | 3.32 | 2.58 |
| | 여성 | (38) | 2.74 | 2.55 | 2.37 | 3.16 | 2.66 |
| | 통계량 | - | F=1.048, p=0.311 | F=0.134, p=0.716 | F=0.838, p=0.364 | F=0.244, p=0.623 | F=0.073, p=0.788 |
| 학교급별 | 중학생 | (16) | 3.19 | 2.44 | 2.56 | 2.63 | 2.44 |
| | 고등학생 | (41) | 2.71 | 2.54 | 2.44 | 3.44 | 2.71 |
| | 통계량 | - | F=2.248, p=0.140 | F=0.069, p=0.794 | F=0.115, p=0.736 | F=6.569, p=0.013 | F=0.789, p=0.378 |

C15. 학교폭력 사안조사 과정 및 자치위원회 개최 및 조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10) 자치위원회 불복 조치

### 가. 가해학생 불복 여부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자치위원회 결과에 가해학생이 불복하여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5%였으며, '없다'는 75.4%, 잘 모르겠다는 14.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38〉 [피해학생]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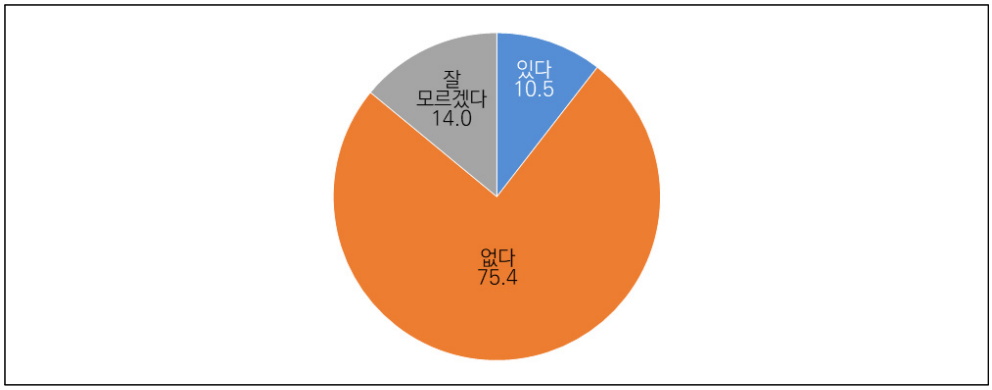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별로 '피해경험'집단이, 성별로는 '남학생'집단,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집단에서 불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Ⅳ-59〉 [피해학생]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여부**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있다 | 없다 | 잘 모르겠다 | 통계량 |
|---|---|---|---|---|---|---|
| 전 체 | | (57) | 10.5 | 75.4 | 14.0 | - |
| 학교폭력 경험별 | 피해경험 | (34) | 11.8 | 76.5 | 11.8 | $\chi^2$=0.444, p=0.801 |
| | 가해/피해경험 | (23) | 8.7 | 73.9 | 17.4 | |
| 성별 | 남성 | (19) | 15.8 | 73.7 | 10.5 | $\chi^2$=1.012, p=0.603 |
| | 여성 | (38) | 7.9 | 76.3 | 15.8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6) | 12.5 | 75.0 | 12.5 | $\chi^2$=0.120, p=0.942 |
| | 고등학생 | (41) | 9.8 | 75.6 | 14.6 | |

C16.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가 내린 조치에 불복해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나. 피해학생 불복 여부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자치위원회 결과에 피해학생이 불복하여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3%였다.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94.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39〉 [피해학생] 피해학생 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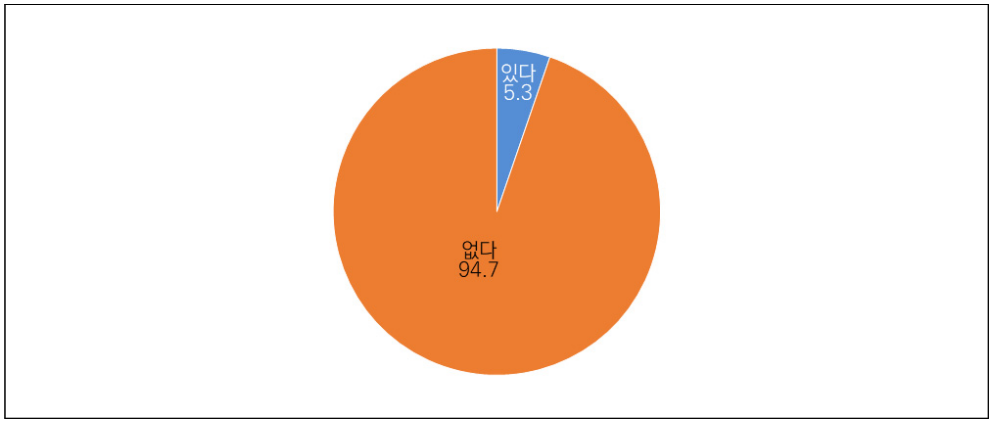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별로 '가해·피해경험'집단이,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집단에서 불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Ⅳ-60〉 [피해학생] 피해학생 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여부**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있다 | 없다 | 통계량 |
|---|---|---|---|---|---|
| 전 체 | | (57) | 5.3 | 94.7 | - |
| 학교폭력 경험별 | 피해경험 | (34) | 2.9 | 97.1 | $\chi^2$=0.911, p=0.340 |
| | 가해/피해경험 | (23) | 8.7 | 91.3 | |
| 성별 | 남성 | (19) | 5.3 | 94.7 | $\chi^2$=0.000, p=1.000 |
| | 여성 | (38) | 5.3 | 94.7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6) | 6.3 | 93.8 | $\chi^2$=0.043, p=0.835 |
| | 고등학생 | (41) | 4.9 | 95.1 | |

C17. 피해학생 및 학부모로서 자치위원회가 내린 조치에 불복해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다. 피해학생 불복절차 안내 여부

자치위원회 결과에 대해 피해학생이 불복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14.0%였고,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86.0%로 나타났다.

**〈그림 Ⅳ-40〉 [피해학생] 피해학생 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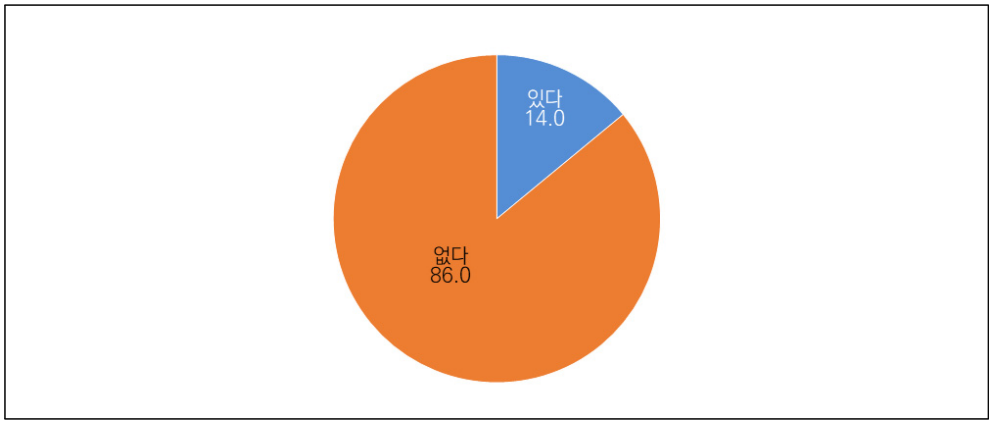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별, 성별, 학교급별 모두 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Ⅳ-61〉 [피해학생] 피해학생 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여부**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있다 | 없다 | 통계량 |
|---|---|---|---|---|---|
| 전 체 | | (57) | 14.0 | 86.0 | - |
| 학교폭력 경험별 | 피해경험 | (34) | 17.6 | 82.4 | $\chi^2$=0.911, p=0.340 |
| | 가해/피해경험 | (23) | 8.7 | 91.3 | |
| 성별 | 남성 | (19) | 15.8 | 84.2 | $\chi^2$=0.073, p=0.787 |
| | 여성 | (38) | 13.2 | 86.8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6) | 12.5 | 87.5 | $\chi^2$=0.043, p=0.835 |
| | 고등학생 | (41) | 14.6 | 85.4 | |

C18. 피해학생 및 학부모로서 자치위원회가 내린 조치에 불복했을 때 할 수 있는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관해 안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11) 법적 조치

### 가. 가해학생 형사고소 여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형사고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였으며,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7.2%,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19.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41〉 [피해학생] 가해학생 형사고소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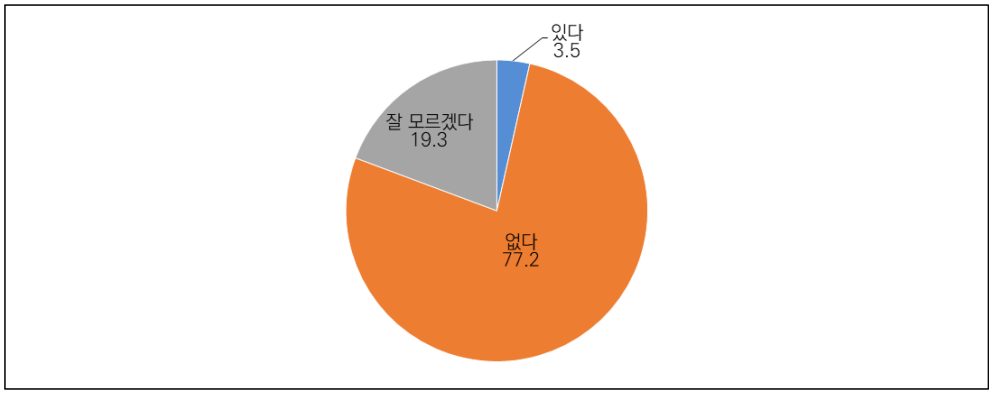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별로는 '가해/피해경험'집단이, 성별로는 '남학생집단',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집단에서 형사고소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고소를 한 이유로는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 조치 이후에도 사과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비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서'가 각 1명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2〉 [피해학생] 가해학생 형사고소 여부**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있다 | 없다 | 잘 모르겠다 | 통계량 |
|---|---|---|---|---|---|---|
| 전 체 | | (57) | 3.5 | 77.2 | 19.3 | - |
| 학교폭력 경험별 | 피해경험 | (34) | 2.9 | 73.5 | 23.5 | $x^2$=1.006, p=0.605 |
| | 가해/피해경험 | (23) | 4.3 | 82.6 | 13.0 | |
| 성별 | 남성 | (19) | 10.5 | 78.9 | 10.5 | $x^2$=5.148, p=0.076 |
| | 여성 | (38) | 0.0 | 76.3 | 23.7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6) | 6.3 | 68.8 | 25.0 | $x^2$=1.057, p=0.590 |
| | 고등학생 | (41) | 2.4 | 80.5 | 17.1 | |

C19. 피해학생 및 학부모로서 가해학생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나. 가해학생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여부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가해학생을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였으며,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8.9%,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9.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42〉 [피해학생] 가해학생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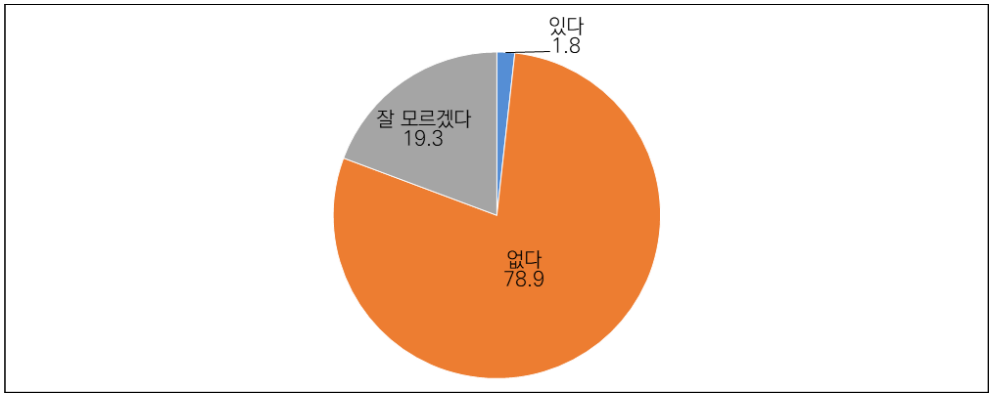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별로는 '가해·피해경험'집단이, 성별로는 '남학생',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집단에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3〉 [피해학생] 가해학생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여부**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있다 | 없다 | 잘 모르겠다 | 통계량 |
|---|---|---|---|---|---|---|
| 전 체 | | (57) | 1.8 | 78.9 | 19.3 | - |
| 학교폭력 경험별 | 피해경험 | (34) | 0.0 | 85.3 | 14.7 | $x^2$=2.829, p=0.243 |
| | 가해/피해경험 | (23) | 4.3 | 69.6 | 26.1 | |
| 성별 | 남학생집단 | (19) | 5.3 | 73.7 | 21.1 | $x^2$=2.145, p=0.342 |
| | 여성 | (38) | 0.0 | 81.6 | 18.4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6) | 6.3 | 68.8 | 25.0 | $x^2$=3.230, p=0.199 |
| | 고등학생 | (41) | 0.0 | 82.9 | 17.1 | |

C20. 피해학생 및 학부모로서 가해학생에 대해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12) 사후처리 과정

학교폭력 사후처리 과정에 대해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치료 및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요양비용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3.14점)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가해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소장작성이나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쉬운 편이다'(2.84점), '가해학생이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 피해학생으로서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나 절차 참여가 충분히 보장된다'(2.82점), '치료 및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받는 요양비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2.72점) 등의 순이었다.

**〈그림 Ⅳ-43〉 [피해학생] 학교폭력 사후처리 과정**

(단위 : 5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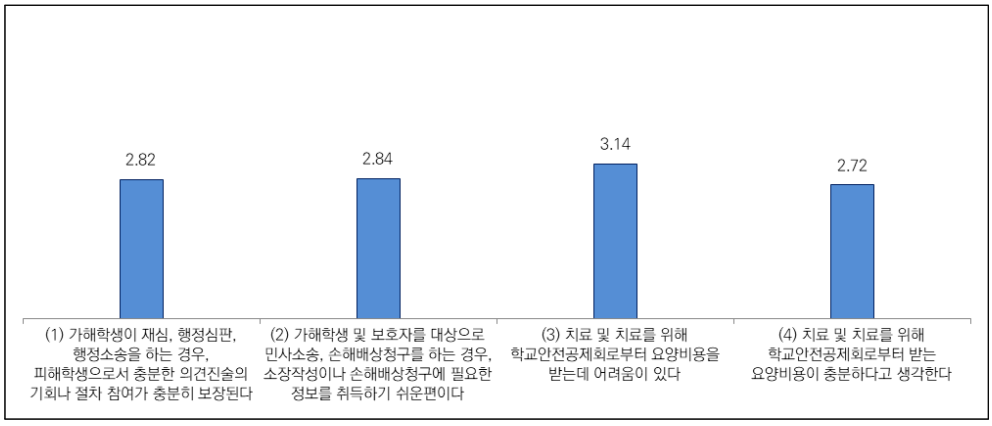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별, 성별, 학교급별로 모든 유형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요양비용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피해경험집단(3.44점, $F=10.685$, $p<0.01$)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요양비용을 받는 어려움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표 Ⅳ-64〉 [피해학생] 학교폭력 사후처리 과정

(단위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
| 전 체 | | (57) | 2.82 | 2.84 | 3.14 | 2.72 |
| 학교 폭력 경험별 | 피해경험 | (34) | 3.03 | 2.97 | 3.44 | 2.88 |
| | 가해/피해경험 | (23) | 2.52 | 2.65 | 2.70 | 2.48 |
| | 통계량 | - | F=3.203, p=0.079 | F=1.412, p=0.240 | F=10.685, p=0.002 | F=2.848, p=0.097 |
| 성별 | 남성 | (19) | 2.58 | 2.68 | 3.05 | 2.68 |
| | 여성 | (38) | 2.95 | 2.92 | 3.18 | 2.74 |
| | 통계량 | - | F=1.512, p=0.224 | F=0.712, p=0.402 | F=0.259, p=0.613 | F=0.042, p=0.838 |
| 학교급 별 | 중학생 | (16) | 2.63 | 2.50 | 3.00 | 2.44 |
| | 고등학생 | (41) | 2.90 | 2.98 | 3.20 | 2.83 |
| | 통계량 | - | F=0.769, p=0.384 | F=2.703, p=0.106 | F=0.519, p=0.474 | F=2.221, p=0.142 |

C21.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사후처리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가해학생이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 피해학생으로서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나 절차 참여가 충분히 보장된다.

(2) 가해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소장작성이나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쉬운 편이다.

(3) 치료 및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요양비용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4) 치료 및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받는 요양비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13) 학교폭력 이후 전학 여부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학교폭력 이후 다른 학교나 기관으로 옮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8%였고,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7.9%, '옮기지는 않았지만, 고민했었다'는 응답비율은 26.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44〉 [피해학생] 학교폭력 이후 전학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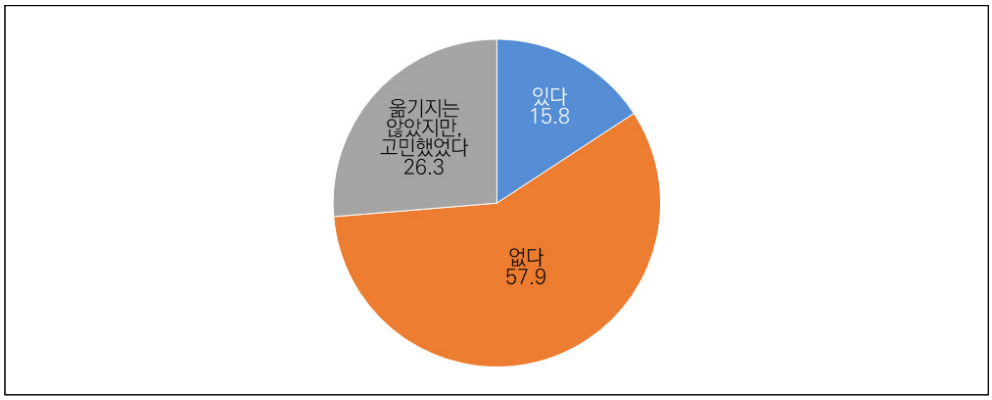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별로는 '피해경험'집단이, 성별로는 '여학생'집단,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집단에서 전학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5〉 [피해학생] 학교폭력 이후 전학여부**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있다 | 없다 | 옮기지는 않았지만, 고민했었다 | 통계량 |
|---|---|---|---|---|---|---|
| 전 체 | | (57) | 15.8 | 57.9 | 26.3 | - |
| 학교폭력 경험별 | 피해경험 | (34) | 17.6 | 52.9 | 29.4 | $x^2$=0.848, p=0.654 |
| | 가해/피해경험 | (23) | 13.0 | 65.2 | 21.7 | |
| 성별 | 남성 | (19) | 10.5 | 63.2 | 26.3 | $x^2$=0.636, p=0.727 |
| | 여성 | (38) | 18.4 | 55.3 | 26.3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6) | 12.5 | 62.5 | 25.0 | $x^2$=0.249, p=0.883 |
| | 고등학생 | (41) | 17.1 | 56.1 | 26.8 | |

C22. 학교폭력사건을 경험한 후, 다니던 학교에서 다른 학교나 기관으로 옮긴 적이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2) 학교폭력 가해학생

### (1) 학교폭력 행위 인식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 '후회한다'(25.0%)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피해학생에게 미안하다'(22.2%), '부끄럽다'(16.7%), '난 잘못하지 않았다'(13.9%), '아무 생각 없다'(11.1%), '내 행동이 지나쳤다', '기타'(각 5.6%) 등의 순이었다.

**〈그림 Ⅳ-45〉 [가해학생] 학교폭력 행위 인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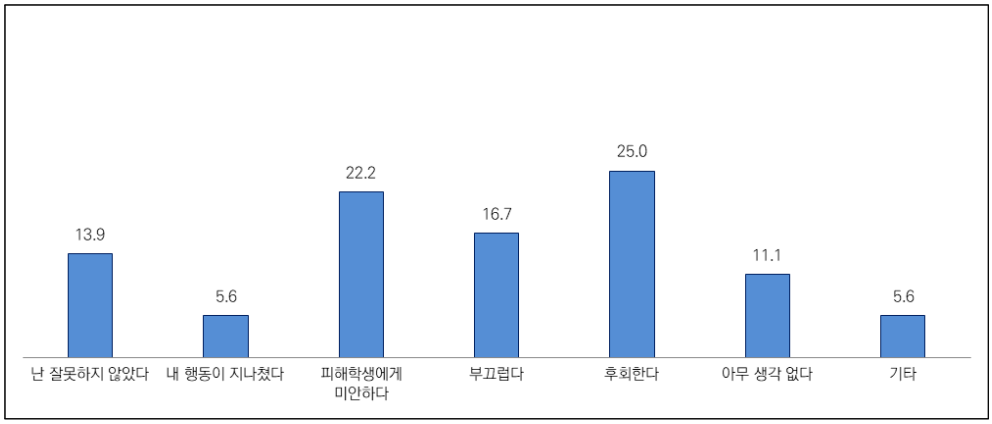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별로 가해경험집단은 '난 잘못하지 않았다', 가해/피해경험집단은 '후회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후회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고, 남학생집단의 경우 '난 잘못하지 않았다', '피해학생에게 미안하다'는 인식도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중학생집단은 '난 잘못하지 않았다', '아무 생각 없다'는 인식이 높은 반면, 고등학생집단은 '후회한다'가 높게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66〉 [가해학생] 학교폭력 행위 인식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난 잘못하지 않았다 | 내 행동이 지나쳤다 | 피해학생에게 미안하다 | 부끄럽다 | 후회한다 | 아무 생각 없다 | 기타 | 통계량 |
|---|---|---|---|---|---|---|---|---|---|---|
| 전 체 | | (36) | 13.9 | 5.6 | 22.2 | 16.7 | 25.0 | 11.1 | 5.6 | - |
| 학교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30.8 | 7.7 | 23.1 | 7.7 | 23.1 | 0.0 | 7.7 | $\chi^2$=7.790, p=0.254 |
| | 가해/피해경험 | (23) | 4.3 | 4.3 | 21.7 | 21.7 | 26.1 | 17.4 | 4.3 | |
| 성별 | 남성 | (13) | 23.1 | 7.7 | 23.1 | 7.7 | 23.1 | 0.0 | 15.4 | $\chi^2$=8.223, p=0.222 |
| | 여성 | (23) | 8.7 | 4.3 | 21.7 | 21.7 | 26.1 | 17.4 | 0.0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2) | 25.0 | 0.0 | 16.7 | 16.7 | 16.7 | 25.0 | 0.0 | $\chi^2$=7.475, p=0.279 |
| | 고등학생 | (24) | 8.3 | 8.3 | 25.0 | 16.7 | 29.2 | 4.2 | 8.3 | |

C23. 여러분이 다른 학생에게 한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2) 선도·교육 조치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가해 후 받은 조치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피해학생에게 사과했다'(44.4%)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학교 선생님이 아셔서 꾸지람을 듣거나 벌을 받았다'(33.3%),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았다', '부모님께 꾸지람을 들었다'(각 19.4%),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받았다'(13.9%), '피해학생에게 물질적인 보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했다'(11.1%), '경찰서에 신고되어 조사 및 법적 처벌을 받았다'(8.3%) 등의 순이었다.

〈그림 Ⅳ-46〉 [가해학생] 학교폭력 가해 후 조치

(단위 :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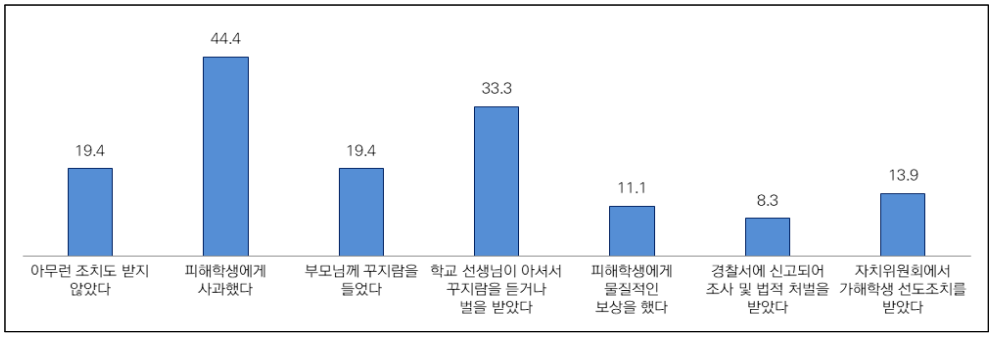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학교폭력 경험별로는 가해경험집단과 가해·피해경험집단 모두 '피해학생에게 사과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남학생집단은 '피해학생에게 사과했다', 여학생집단은 '학교 선생님이 아셔서 꾸지람을 듣거나 벌을 받았다'가 많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학교급별로 '피해학생에게 사과했다'가 중학생, 고등학생 집단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중 자치위원회 선도·교육조치를 받은 응답자는 5명이었으며, 이 중 1명은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각 2명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조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7〉 [가해학생] 학교폭력 가해 후 조치**

(단위 : %, 복수응답)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5) | (6) | (7) |
|---|---|---|---|---|---|---|---|---|---|
| 전 체 | | (36) | 19.4 | 44.4 | 19.4 | 33.3 | 11.1 | 8.3 | 13.9 |
| 학교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15.4 | 61.5 | 23.1 | 38.5 | 23.1 | 7.7 | 15.4 |
| | 가해/피해경험 | (23) | 21.7 | 34.8 | 17.4 | 30.4 | 4.3 | 8.7 | 13.0 |
| 성별 | 남성 | (13) | 7.7 | 76.9 | 30.8 | 38.5 | 7.7 | 7.7 | 23.1 |
| | 여성 | (23) | 26.1 | 26.1 | 13.0 | 30.4 | 13.0 | 8.7 | 8.7 |
| 학교급별 | 중학생 | (12) | 16.7 | 41.7 | 8.3 | 16.7 | 8.3 | 8.3 | 16.7 |
| | 고등학생 | (24) | 20.8 | 45.8 | 25.0 | 41.7 | 12.5 | 8.3 | 12.5 |

C24. 학교폭력을 행한 후에 다음 중 어떤 조치를 받았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1)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았다.
(2) 피해학생에게 사과했다.
(3) 부모님께 꾸지람을 들었다.
(4) 학교 선생님이 아셔서 꾸지람을 듣거나 벌을 받았다.
(5) 피해학생에게 물질적인 보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했다.
(6) 경찰서에 신고되어 조사 및 법적 처벌을 받았다.
(7)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받았다.

### (3) 선도·교육 조치 도움도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 선도·교육 조치가 학교폭력을 멈추고 반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9%였다. 보통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9%, 도움되지 않았다는 응답비율은 22.2%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Ⅳ-47〉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도움정도

(단위 : %, 5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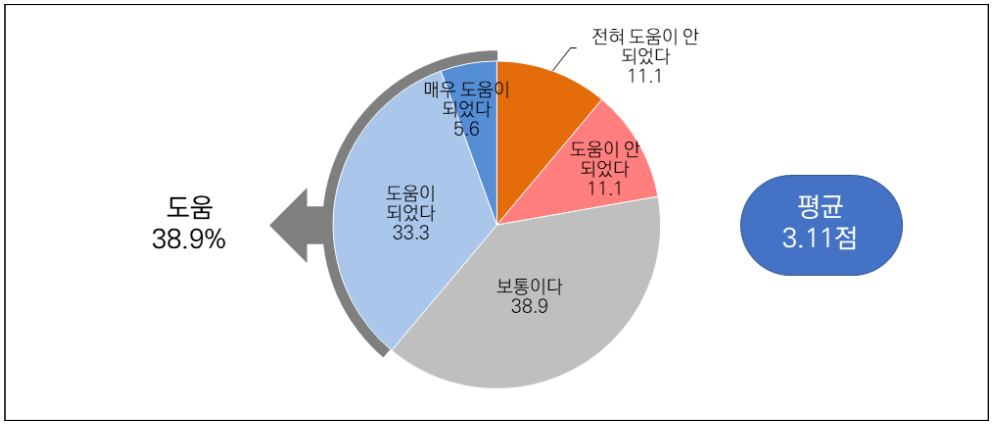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가해경험유형별, 성별, 학교급별로 선도·교육조치의 도움정도와 관련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응답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Ⅳ-68〉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도움정도

(단위 :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비도움 | 보통 | 도움 | 평균 | 통계량 |
|---|---|---|---|---|---|---|---|
| 전 체 | | (36) | 22.2 | 38.9 | 38.9 | 3.11 | - |
| 학교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30.8 | 38.5 | 30.8 | 2.92 | $x^2$=0.833, p=0.659 |
| | 가해/피해경험 | (23) | 17.4 | 39.1 | 43.5 | 3.22 | |
| 성별 | 남성 | (13) | 15.4 | 53.8 | 30.8 | 3.00 | F=0.217, p=0.644 |
| | 여성 | (23) | 26.1 | 30.4 | 43.5 | 3.17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2) | 25.0 | 33.3 | 41.7 | 3.08 | F=0.012, p=0.914 |
| | 고등학생 | (24) | 20.8 | 41.7 | 37.5 | 3.13 | |

C25. 여러분이 받은 선도·교육 조치가 학교폭력을 멈추고 반성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4) 선도·교육 조치 인식

선도·교육 조치 후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가장 많이 응답한 인식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반성했다'(47.2%)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16.7%), '조치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했다'(13.9%), '피해학생에게 보복하고

싶었다'(11.1%), '이번에는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다'(8.3%), '기타'(2.8%) 등의 순이었다.

**〈그림 Ⅳ-48〉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인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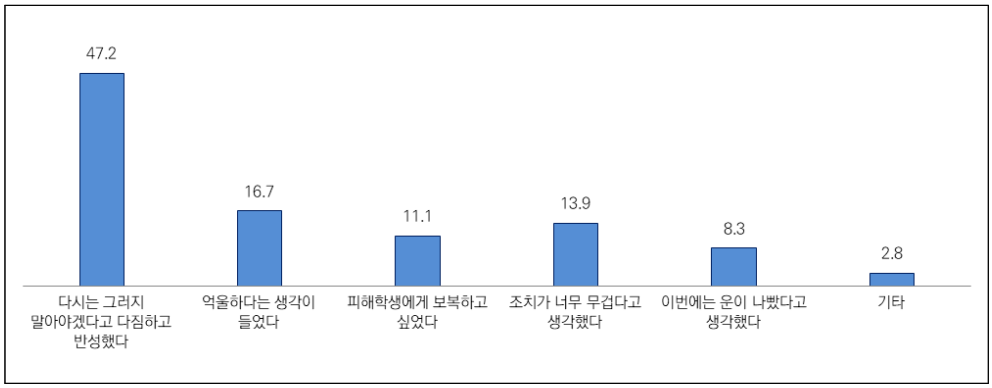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별, 성별, 학교급별 모두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반성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Ⅳ-69〉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인식**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반성했다 |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피해학생에게 보복하고 싶었다 | 조치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했다 | 이번에는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다 | 기타 | 통계량 |
|---|---|---|---|---|---|---|---|---|---|
| 전 체 | | (36) | 47.2 | 16.7 | 11.1 | 13.9 | 8.3 | 2.8 | - |
| 학교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46.2 | 30.8 | 7.7 | 15.4 | 0.0 | 0.0 | $\chi^2$=4.941, p=0.423 |
| | 가해/피해경험 | (23) | 47.8 | 8.7 | 13.0 | 13.0 | 13.0 | 4.3 | |
| 성별 | 남성 | (13) | 38.5 | 15.4 | 23.1 | 7.7 | 15.4 | 0.0 | $\chi^2$=5.315, p=0.379 |
| | 여성 | (23) | 52.2 | 17.4 | 4.3 | 17.4 | 4.3 | 4.3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2) | 25.0 | 25.0 | 8.3 | 25.0 | 16.7 | 0.0 | $\chi^2$=6.357, p=0.273 |
| | 고등학생 | (24) | 58.3 | 12.5 | 12.5 | 8.3 | 4.2 | 4.2 | |

C26. 자치위원회의 선도·교육 조치를 받고 나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5) 선도·교육 조치 후 행동변화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 선도·교육조치 후 행동이 '변화'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2%,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6.1%, '변하지 않았다'는 응답비율은 16.7%였다.

**〈그림 Ⅳ-49〉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행동변화**

(단위 : %, 5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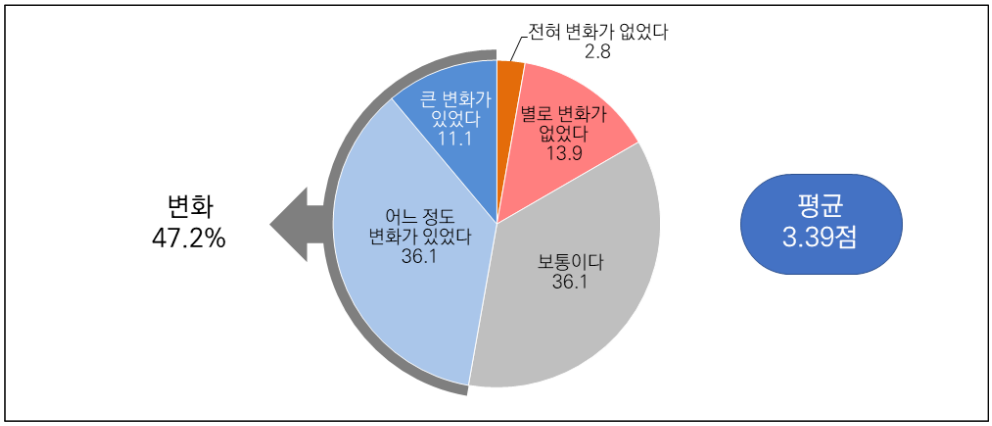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경우, 가해경험유형별, 성별, 학교급별로 선도·교육조치로 인한 행동변화와 관련해 유의미하게 차이나는 응답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Ⅳ-70〉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행동변화**

(단위 :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불변 | 보통 | 변화 | 평균 | 통계량 |
|---|---|---|---|---|---|---|---|
| 전 체 | | (36) | 16.7 | 36.1 | 47.2 | 3.39 | - |
| 학교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30.8 | 23.1 | 46.2 | 3.15 | F=1.216, p=0.278 |
| | 가해/피해경험 | (23) | 8.7 | 43.5 | 47.8 | 3.52 | |
| 성별 | 남성 | (13) | 15.4 | 53.8 | 30.8 | 3.15 | F=1.216, p=0.278 |
| | 여성 | (23) | 17.4 | 26.1 | 56.5 | 3.52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2) | 16.7 | 25.0 | 58.3 | 3.42 | F=0.015, p=0.905 |
| | 고등학생 | (24) | 16.7 | 41.7 | 41.7 | 3.38 | |

C27. 자치위원회의 선도·교육 조치를 받고 나서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6) 선도·교육 시 교육내용·교육기관 안내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 선도·교육 조치 시 교육내용·기관 안내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3%였으며,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8%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50〉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시 교육내용/기관 안내 여부**

(단위 : %, 5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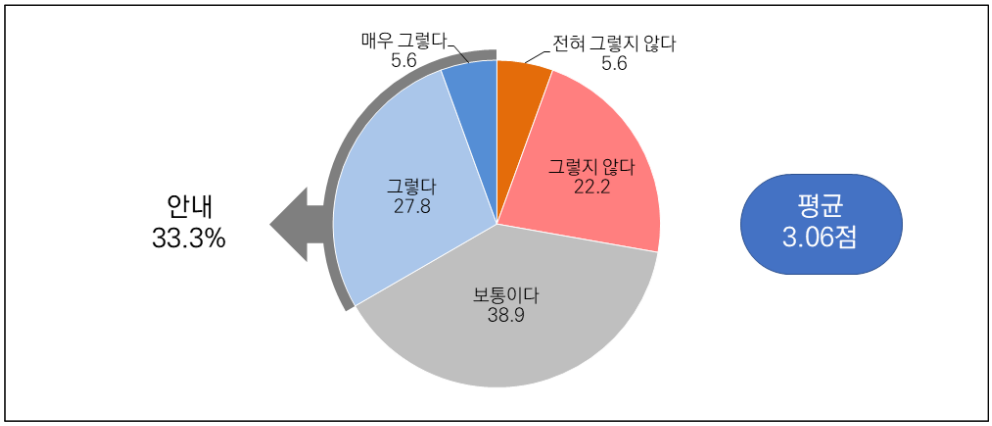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경우, 가해경험 유형, 성별, 학교급별로 선도·교육조치의 교육 및 기관안내 응답에서 유의미하게 차이나는 응답을 보이지 않았다.

**〈표 Ⅳ-71〉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시 교육내용/기관 안내 여부**

(단위 :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부정 | 보통 | 긍정 | 평균 | 통계량 |
|---|---|---|---|---|---|---|---|
| 전 체 | | (36) | 27.8 | 38.9 | 33.3 | 3.06 | - |
| 학교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38.5 | 38.5 | 23.1 | 2.77 | F=1.760, p=0.193 |
| | 가해/피해경험 | (23) | 21.7 | 39.1 | 39.1 | 3.22 | |
| 성별 | 남성 | (13) | 15.4 | 61.5 | 23.1 | 3.23 | F=0.638, p=0.430 |
| | 여성 | (23) | 34.8 | 26.1 | 39.1 | 2.96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2) | 25.0 | 41.7 | 33.3 | 3.00 | F=0.056, p=0.815 |
| | 고등학생 | (24) | 29.2 | 37.5 | 33.3 | 3.08 | |

C28.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 학교에서 교육내용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안내가 있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7) 자치위원회 불복

#### 가. 선도·교육 조치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인지 여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 선도·교육 조치 불복 시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6%,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69.4%로 나타났다.

**〈그림 Ⅳ-51〉 [가해학생]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인지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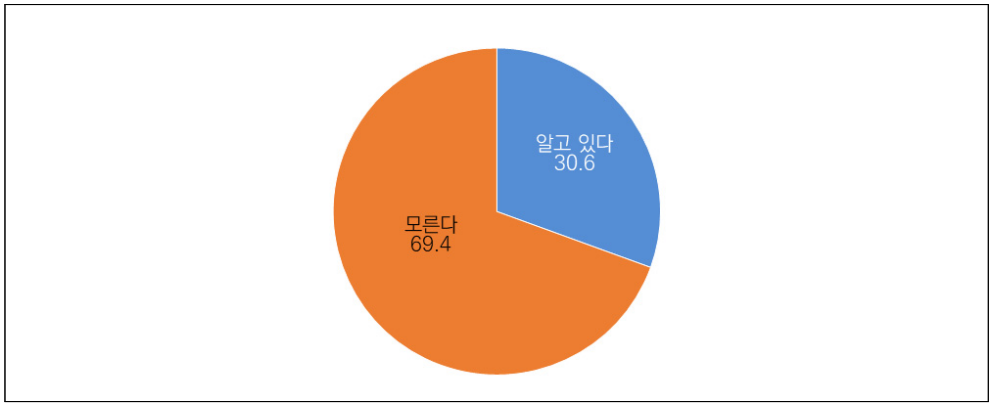


학교폭력 가해학생집단에서 학교폭력 경험별, 성별, 학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Ⅳ-72〉 [가해학생]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인지 여부**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알고 있다 | 모른다 | 통계량 |
|---|---|---|---|---|---|
| 전 체 | | (36) | 30.6 | 69.4 | - |
| 학교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38.5 | 61.5 | $\chi^2$=0.599, p=0.439 |
| | 가해/피해경험 | (23) | 26.1 | 73.9 | |
| 성별 | 남성 | (13) | 30.8 | 69.2 | $\chi^2$=0.000, p=0.983 |
| | 여성 | (23) | 30.4 | 69.6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2) | 41.7 | 58.3 | $\chi^2$=1.047, p=0.306 |
| | 고등학생 | (24) | 25.0 | 75.0 | |

C29. 자치위원회의 선도·교육 조치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재심절차, 행정심판, 소송 등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나. 재심 여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 선도·교육 조치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2%,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81.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52〉 [가해학생]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여부**

(Base: 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인지 응답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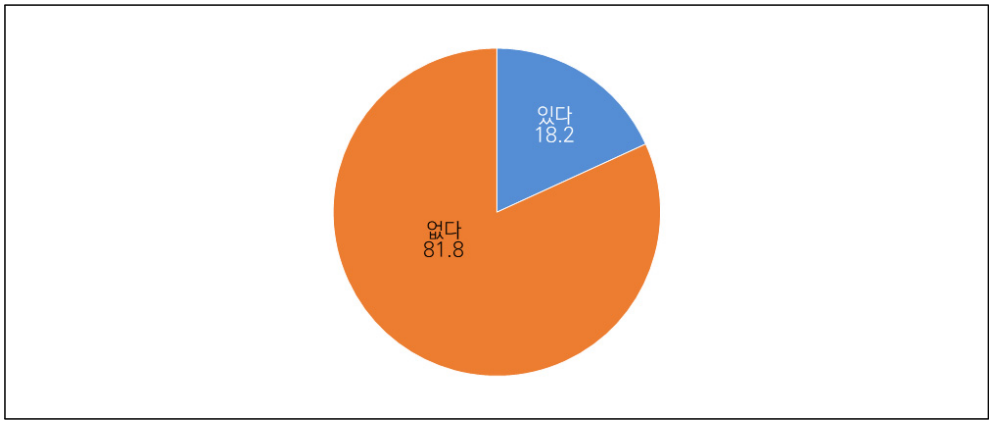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별, 성별, 학교급별 모두 선도·교육 조치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Ⅳ-73〉 [가해학생]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여부**

(Base: 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인지 응답자,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있다 | 없다 | 통계량 |
|---|---|---|---|---|---|
| 전 체 | | (11) | 18.2 | 81.8 | - |
| 학교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5) | 40.0 | 60.0 | $\chi^2$=2.933, p=0.087 |
| | 가해/피해경험 | (6) | 0.0 | 100.0 | |
| 성별 | 남성 | (4) | 0.0 | 100.0 | $\chi^2$=1.397, p=0.237 |
| | 여성 | (7) | 28.6 | 71.4 | |
| 학교급별 | 중학생 | (5) | 20.0 | 80.0 | $\chi^2$=0.020, p=0.887 |
| | 고등학생 | (6) | 16.7 | 83.3 | |

C29-1. 재심절차를 알고 있다면, 재심절차를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다.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여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1%,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88.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53〉 [가해학생]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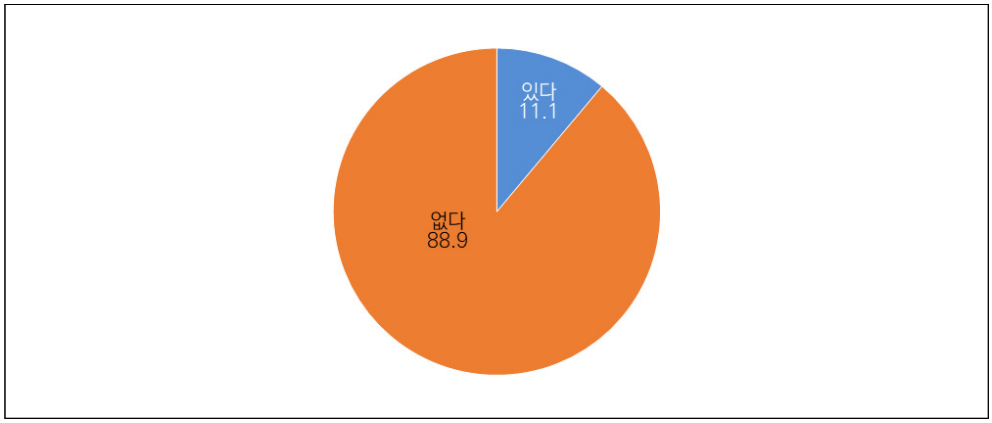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별, 성별, 학교급별 모두 폭위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Ⅳ-74〉 [가해학생]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여부**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있다 | 없다 | 통계량 |
|---|---|---|---|---|---|
| 전 체 | | (36) | 11.1 | 88.9 | - |
| 학교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15.4 | 84.6 | $\chi^2$=0.376, p=0.540 |
| | 가해/피해경험 | (23) | 8.7 | 91.3 | |
| 성별 | 남성 | (13) | 23.1 | 76.9 | $\chi^2$=2.950, p=0.086 |
| | 여성 | (23) | 4.3 | 95.7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2) | 8.3 | 91.7 | $\chi^2$=0.141, p=0.708 |
| | 고등학생 | (24) | 12.5 | 87.5 | |

C30. 자치위원회의 선도·교육 조치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재심절차, 행정심판, 소송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8) 학교폭력 지속여부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현재 '학교폭력을 그만두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97.2%로 나타났고, '학교폭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비율은 2.8%로 나타났다.

**〈그림 Ⅳ-54〉 [가해학생] 학교폭력 지속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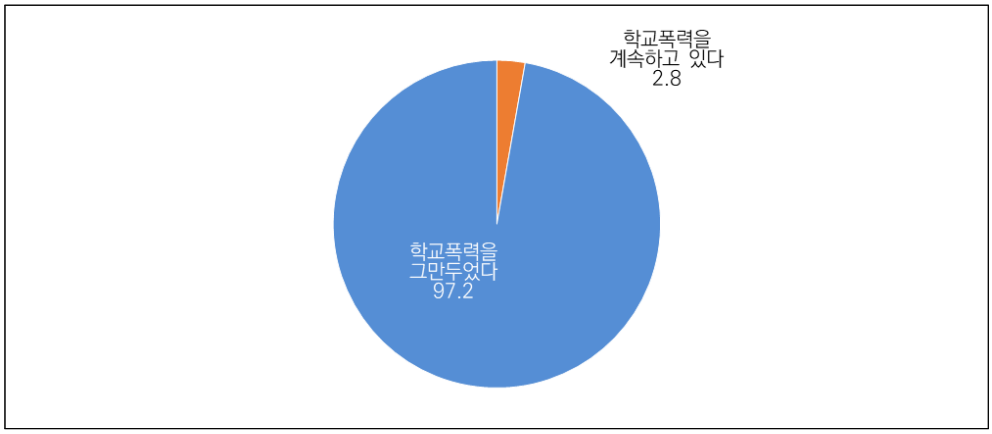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경우, 가해경험유형, 성별, 학교급별로 학교폭력 지속여부에서 유의미하게 차이나는 응답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Ⅳ-75〉 [가해학생] 학교폭력 지속여부**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학교폭력을 계속하고 있다 | 학교폭력을 그만두었다 | 통계량 |
|---|---|---|---|---|---|
| 전 체 | | (36) | 2.8 | 97.2 | - |
| 학교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0.0 | 100.0 | $\chi^2$=0.581, p=0.446 |
| | 가해/피해경험 | (23) | 4.3 | 95.7 | |
| 성별 | 남성 | (13) | 0.0 | 100.0 | $\chi^2$=0.581, p=0.446 |
| | 여성 | (23) | 4.3 | 95.7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2) | 8.3 | 91.7 | $\chi^2$=2.057, p=0.151 |
| | 고등학생 | (24) | 0.0 | 100.0 | |

C31. 학교폭력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9) 학교폭력 중단 계기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중단하게 된 계기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스스로 나쁜 행동임을 알게 되어서'(54.3%)였다. 다음으로 '부모님에게 꾸지람을 듣거나 교육을 받아서'(20.0%), '학교 선생님에게 꾸지람을 듣거나 교육을 받아서'(8.6%), '학교폭력 교육을 받고 생각이 바뀌어서'(5.7%), '자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아서', '경찰서에 신고 되어서', '피해 친구와 떨어져 지내서(학급교체, 접촉금지, 출석정지 등)', '환경이 바뀌어서 (전학, 졸업 등)'(각 2.9%) 등의 순이었다.

**〈그림 Ⅳ-55〉 [가해학생] 학교폭력 중단 계기**

(Base: 학교폭력 중단 응답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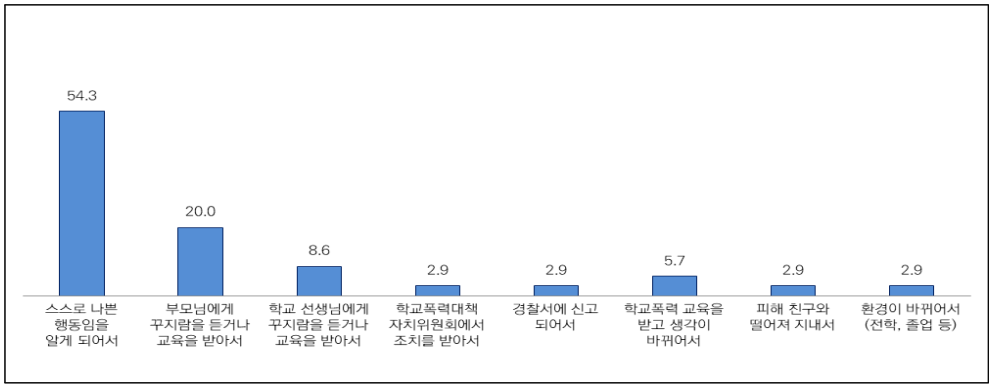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별로 가해경험집단, 가해·피해경험집단 모두 '스스로 나쁜 행동임을 알게 되어서'라는 응답이 과반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집단은 '부모님에게 꾸지람을 듣거나 교육을 받아서', 여학생집단은 '스스로 나쁜 행동임을 알게 되어서'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에서는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스스로 나쁜 행동임을 알게 되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76〉 [가해학생] 학교폭력 중단 계기**

(Base: 학교폭력 중단 응답자,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5) | (6) | (7) | (8) | 통계량 |
|---|---|---|---|---|---|---|---|---|---|---|---|
| 전 체 | | (35) | 54.3 | 20.0 | 8.6 | 2.9 | 2.9 | 5.7 | 2.9 | 2.9 | - |
| 학교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53.8 | 15.4 | 7.7 | 7.7 | 0.0 | 0.0 | 7.7 | 7.7 | $\chi^2$=7.089, p=0.420 |
| | 가해/피해경험 | (22) | 54.5 | 22.7 | 9.1 | 0.0 | 4.5 | 9.1 | 0.0 | 0.0 | |
| 성별 | 남성 | (13) | 30.8 | 38.5 | 0.0 | 7.7 | 7.7 | 7.7 | 0.0 | 7.7 | $\chi^2$=13.214, p=0.067 |
| | 여성 | (22) | 68.2 | 9.1 | 13.6 | 0.0 | 0.0 | 4.5 | 4.5 | 0.0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1) | 45.5 | 27.3 | 0.0 | 9.1 | 9.1 | 9.1 | 0.0 | 0.0 | $\chi^2$=7.630, p=0.366 |
| | 고등학생 | (24) | 58.3 | 16.7 | 12.5 | 0.0 | 0.0 | 4.2 | 4.2 | 4.2 | |

C31-1. 학교폭력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스스로 나쁜 행동임을 알게 되어서.
(2) 부모님에게 꾸지람을 듣거나 교육을 받아서
(3) 학교 선생님에게 꾸지람을 듣거나 교육을 받아서.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아서.
(5) 경찰서에 신고 되어서.
(6) 학교폭력 교육을 받고 생각이 바뀌어서.
(7) 피해친구와 떨어져 지내서(학급교체, 접촉금지, 출석정지 등).
(8) 환경이 바뀌어서 (전학, 졸업 등).

### (1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경험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자치위원회 경험과 관련한 인식을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자치위원회 조치·결과 중 가해학생인 나에게 내린 조치를 잘 이행했다고 생각한다'(3.03점)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자치위원회 조치/결과 중 가해학생인 나에게 내린 조치에 만족한다'(2.97점), '자치위원회 조치/결과 중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일반학생(목격학생)은 적정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편이다'(2.94점), '사안조사 과정 중 가해학생인 나의 인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2.81점), '사안조사 과정 중 가해학생으로서 충분하게 사안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2.67점), '자치위원회 개최 과정 중 가해학생인 나의 인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 '자치위원회 개최 과정 중 가해학생으로서 적정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보장되었다'(각 2.56점), '사안조사 과정 중 가해학생인 나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적이 있다', '자치위원회 조치/결과 중 피해학생이 불복하는 경우 가해학생의 입장에서 불편하였거나 불안하였다'(각 2.50점), '자치위원회개최 과정 중 가해학생인 나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적이 있다'(2.42점)의 순이었다. 여학생(3.30점, $F=6.428$, $p<0.05$)의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일반학생(목격학생)은 적정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Ⅳ-56〉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경험에 대한 인식

(단위 : 5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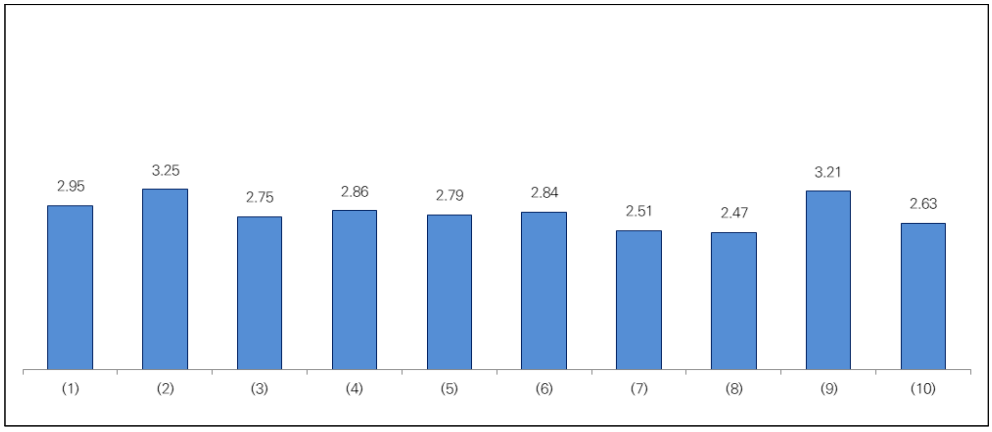


(1) 가해학생으로서 충분하게 사안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2) 기해학생인 나의 인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
(3) 기해학생인 나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적이 있다.
(4) 가해학생인 나의 인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
(5) 가해학생인 나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적이 있다.
(6) 가해학생으로서 적정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보장되었다.
(7) 가해학생인 나에게 내린 조치에 만족한다.
(8) 가해학생인 나에게 내린 조치를 잘 이행했다고 생각한다.
(9) 피해학생이 불복하는 경우 가해학생의 입장에서 불편하였거나 불안하였다.
(10)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일반학생(목격학생)은 적정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표 Ⅳ-77〉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경험에 대한 인식 (1/2)

(단위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사안조사과정 | | | 개최과정 | |
|---|---|---|---|---|---|---|---|
| | | | 가해학생으로서 충분하게 사안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 기해학생인 나의 인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 | 기해학생인 나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적이 있다 | 가해학생인 나의 인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 | 가해학생인 나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적이 있다 |
| 전 체 | | (36) | 2.67 | 2.81 | 2.50 | 2.56 | 2.42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2.62 | 3.08 | 2.38 | 2.62 | 2.62 |
| | 가해/피해경험 | (23) | 2.70 | 2.65 | 2.57 | 2.52 | 2.30 |
| | 통계량 | - | F=0.038, p=0.847 | F=1.104, p=0.301 | F=0.281, p=0.599 | F=0.064, p=0.802 | F=0.622, p=0.436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 | | | | | | |
|---|---|---|---|---|---|---|---|
| 성별 | 남성 | (13) | 2.38 | 3.00 | 2.54 | 2.46 | 2.46 |
| | 여성 | (23) | 2.83 | 2.70 | 2.48 | 2.61 | 2.39 |
| | 통계량 | - | F=1.187, p=0.284 | F=0.558, p=0.460 | F=0.031, p=0.861 | F=0.158, p=0.694 | F=0.031, p=0.861 |
| 학교급별 | 중학생 | (12) | 2.83 | 3.00 | 2.50 | 2.50 | 2.33 |
| | 고등학생 | (24) | 2.58 | 2.71 | 2.50 | 2.58 | 2.46 |
| | 통계량 | - | F=0.358, p=0.554 | F=0.493, p=0.487 | F=0.000, p=1.000 | F=0.049, p=0.827 | F=0.095, p=0.760 |

C32. 학교폭력 사안조사 과정 및 자치위원회 개최 및 조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표 Ⅳ-78〉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경험에 대한 인식 (2/2)**

(단위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개최과정 | 결과/조치 | | | |
|---|---|---|---|---|---|---|---|
| | | | 가해학생으로서 적정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보장되었다 | 가해학생인 나에게 내린 조치에 만족한다 | 가해학생인 나에게 내린 조치를 잘 이행했다고 생각한다 | 피해학생이 불복하는 경우 가해학생의 입장에서 불편하였거나 불안하였다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일반학생(목격학생)은 적정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
| 전 체 | | (36) | 2.56 | 2.97 | 3.03 | 2.50 | 2.94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2.23 | 3.23 | 3.23 | 2.38 | 3.00 |
| | 가해/피해경험 | (23) | 2.74 | 2.83 | 2.91 | 2.57 | 2.91 |
| | 통계량 | - | F=2.101, p=0.156 | F=0.863, p=0.360 | F=0.547, p=0.465 | F=0.197, p=0.660 | F=0.041, p=0.840 |
| 성별 | 남성 | (13) | 2.38 | 2.77 | 2.85 | 2.23 | 2.31 |
| | 여성 | (23) | 2.65 | 3.09 | 3.13 | 2.65 | 3.30 |
| | 통계량 | - | F=0.557, p=0.461 | F=0.527, p=0.473 | F=0.436, p=0.513 | F=1.102, p=0.301 | F=6.428, p=0.016 |
| 학교급별 | 중학생 | (12) | 2.50 | 2.58 | 2.50 | 2.08 | 2.50 |
| | 고등학생 | (24) | 2.58 | 3.17 | 3.29 | 2.71 | 3.17 |
| | 통계량 | - | F=0.051, p=0.822 | F=1.771, p=0.192 | F=3.555, p=0.068 | F=2.422, p=0.129 | F=2.501, p=0.123 |

C32. 학교폭력 사안조사 과정 및 자치위원회 개최 및 조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3) 일반학생

### (1) 학교폭력 목격 경험

학교폭력과 관련한 가해 및 피해경험이 없는 일반학생집단 중 최근 1년간 학교폭력 목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7%, '없다'는 응답비율은 7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 학교급별 모두 학교폭력 목격 경험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Ⅳ-57〉 [일반학생] 학교폭력 목격경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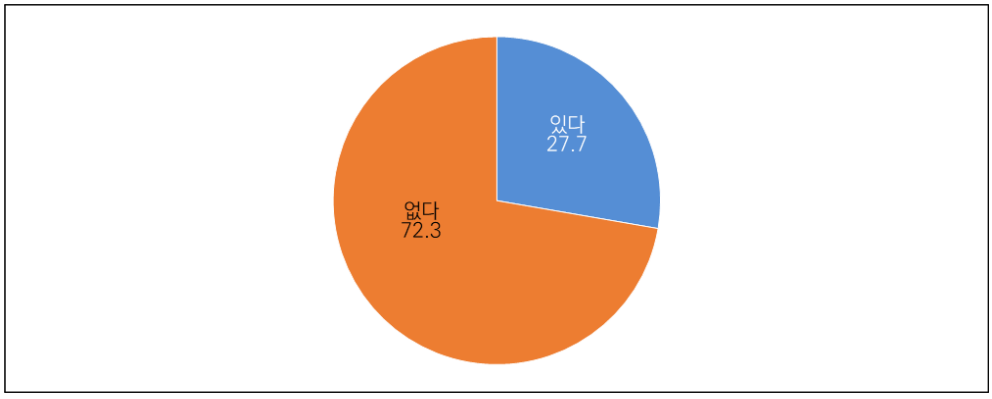


일반학생의 학교급별($\chi^2$=7.846,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목격 경험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고등학생집단(76.4%)에서 중학생집단(62.9%)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Ⅳ-79〉 [일반학생] 학교폭력 목격경험**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있다 | 없다 | 통계량 |
|---|---|---|---|---|---|
| 전 체 | | (404) | 27.7 | 72.3 | - |
| 성별 | 남성 | (181) | 26.0 | 74.0 | $\chi^2$=0.505, p=0.477 |
| | 여성 | (223) | 29.1 | 70.9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24) | 37.1 | 62.9 | $\chi^2$=7.846, p=0.005 |
| | 고등학생 | (280) | 23.6 | 76.4 | |

C33.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2) 학교폭력 목격 후 느낀 감정

일반학생집단은 학교폭력을 목격한 후 느낀 감정으로 '피해학생이 안타깝다'(53.6%)를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화가 난다'(41.1%), '도와줄 수 없어 속상하다'(40.2%), '무섭다'(30.4%), '우울하다'(9.8%), '별 느낌 없다'(8.9%), '기타'(3.6%) 등의 순이었다.

**〈그림 Ⅳ-58〉 [일반학생] 학교폭력 목격후 느낀 감정**

(Base: 학교폭력 목격 응답자, 단위 :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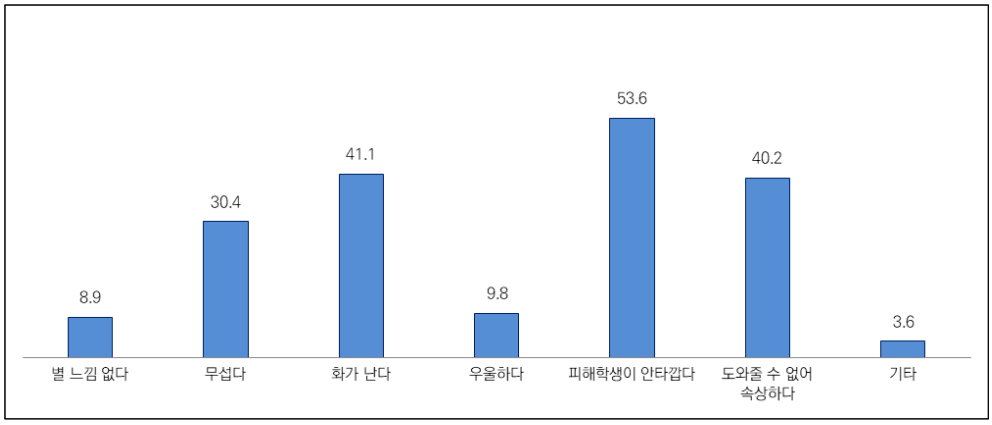


**〈표 Ⅳ-80〉 [일반학생] 학교폭력 목격후 느낀 감정**

(Base: 학교폭력 목격 응답자, 단위 : %, 복수응답)

| 구분 | | 사례수 | 별 느낌 없다 | 무섭다 | 화가 난다 | 우울 하다 | 피해 학생이 안타 깝다 | 도와 줄 수 없어 속상 하다 | 기타 |
|---|---|---|---|---|---|---|---|---|---|
| 전 체 | | (112) | 8.9 | 30.4 | 41.1 | 9.8 | 53.6 | 40.2 | 3.6 |
| 성별 | 남성 | (47) | 17.0 | 23.4 | 29.8 | 6.4 | 51.1 | 34.0 | 2.1 |
| | 여성 | (65) | 3.1 | 35.4 | 49.2 | 12.3 | 55.4 | 44.6 | 4.6 |
| 학교급별 | 중학생 | (46) | 10.9 | 34.8 | 37.0 | 8.7 | 67.4 | 41.3 | 2.2 |
| | 고등학생 | (66) | 7.6 | 27.3 | 43.9 | 10.6 | 43.9 | 39.4 | 4.5 |

C33-1.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들었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들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3) 학교폭력 목격 후 취한 행동

일반학생집단이 학교폭력 목격 후 취한 행동은 '피해학생을 돕거나 위로했다'(31.3%)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선생님께 알렸다', '모른척했다'(각 30.4%), '직접 말렸다'(14.3%), '부모님께 알렸다'(11.6%), '경찰에 신고했다'(8.0%), '상담센터에 알렸다'(0.9%) 등의 순이었다.

**〈그림 Ⅳ-59〉 [일반학생] 학교폭력 목격 후 행동**

(Base: 학교폭력 목격 응답자, 단위 :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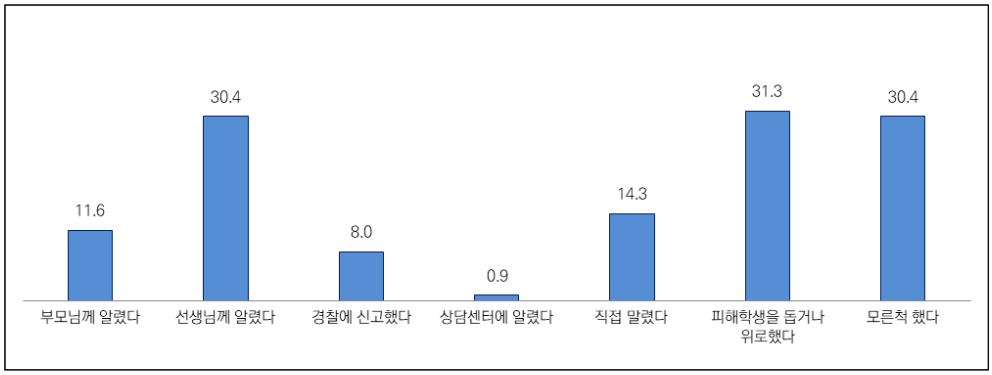


일반학생 중 남학생은 '선생님께 알렸다', '모른척했다'의 응답비율이 높은 반면, 여학생은 '피해학생을 돕거나 위로했다'에 보다 많이 답했다.

**〈표 Ⅳ-81〉 [일반학생] 학교폭력 목격 후 행동**

(Base: 학교폭력 목격 응답자, 단위 : %, 복수응답)

| 구분 | | 사례수 | 부모님께 알렸다 | 선생님께 알렸다 | 경찰에 신고했다 | 상담센터에 알렸다 | 직접 말렸다 | 피해학생을 돕거나 위로했다 | 모른척했다 |
|---|---|---|---|---|---|---|---|---|---|
| 전 체 | | (112) | 11.6 | 30.4 | 8.0 | .9 | 14.3 | 31.3 | 30.4 |
| 성별 | 남성 | (47) | 10.6 | 27.7 | 14.9 | 2.1 | 23.4 | 25.5 | 27.7 |
| | 여성 | (65) | 12.3 | 32.3 | 3.1 | 0.0 | 7.7 | 35.4 | 32.3 |
| 학교급별 | 중학생 | (46) | 8.7 | 30.4 | 8.7 | 0.0 | 17.4 | 30.4 | 30.4 |
| | 고등학생 | (66) | 13.6 | 30.3 | 7.6 | 1.5 | 12.1 | 31.8 | 30.3 |

C33-2. 학교폭력을 목격한 다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4) 학교폭력 외면 이유

일반학생 중 학교폭력 목격하고도 외면한 경우 그 이유로 '같이 피해를 당할까봐'(29.4%)를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23.5%),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서', '도와줘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각 14.7%), '관심이 없어서'(11.8%), '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5.9%) 등의 순이었다.

**〈그림 Ⅳ-60〉 [일반학생] 학교폭력 외면 이유**

(Base: 학교폭력 목격 후 외면 응답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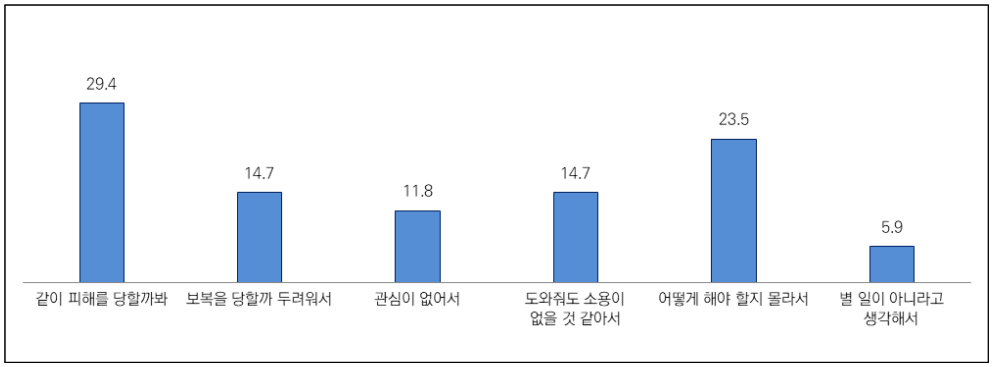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을 외면한 이유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를 가장 많이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82〉 [일반학생] 학교폭력 외면 이유**

(Base: 학교폭력 목격 후 외면 응답자,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같이 피해를 당할까봐 |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서 | 관심이 없어서 | 도와줘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 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 통계량 |
|---|---|---|---|---|---|---|---|---|---|
| 전 체 | | (34) | 29.4 | 14.7 | 11.8 | 14.7 | 23.5 | 5.9 | - |
| 성별 | 남성 | (13) | 30.8 | 15.4 | 15.4 | 7.7 | 15.4 | 15.4 | $\chi^2$=4.782, p=0.443 |
| | 여성 | (21) | 28.6 | 14.3 | 9.5 | 19.0 | 28.6 | 0.0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4) | 42.9 | 28.6 | 7.1 | 7.1 | 7.1 | 7.1 | $\chi^2$=8.713, p=0.121 |
| | 고등학생 | (20) | 20.0 | 5.0 | 15.0 | 20.0 | 35.0 | 5.0 | |

C33-3.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모른 척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5) 학교폭력 외면 학교폭력

일반학생들은 학교폭력을 외면하는 것도 학교폭력인가라는 질문에 '학교폭력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3.6%였다. 다음으로 '잘 모르겠다'(26.0%), '학교폭력이 아니다'(10.4%) 등의 순이었다.

**〈그림 Ⅳ-61〉 [일반학생] 학교폭력 외면 인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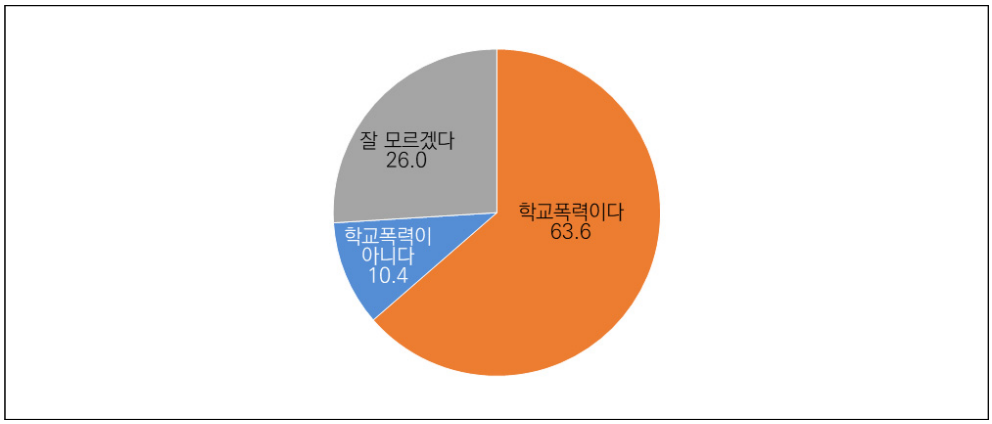


일반학생집단의 성별, 학교급별로 모든 유형에서 '학교폭력이다'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Ⅳ-83〉 [일반학생] 학교폭력 외면 인식**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학교폭력이다 | 학교폭력이 아니다 | 잘 모르겠다 | 통계량 |
|---|---|---|---|---|---|---|
| 전 체 | | (404) | 63.6 | 10.4 | 26.0 | - |
| 성별 | 남성 | (181) | 63.5 | 11.0 | 25.4 | $x^2$=0.177, p=0.915 |
| | 여성 | (223) | 63.7 | 9.9 | 26.5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24) | 59.7 | 11.3 | 29.0 | $x^2$=1.211, p=0.546 |
| | 고등학생 | (280) | 65.4 | 10.0 | 24.6 | |

C34.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보고 모르는 척 하는 것도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6) 학교폭력 목격 후 대응

일반학생집단은 학교폭력 목격 후 취한 대응으로 '117 또는 경찰에 신고한다'(37.9%)를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담임선생님에게 알린다'(28.2%), '어떤 방법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20.5%), '부모님께 알린다'(6.9%), '학교에 알린다'(5.0%), '친구나 선배에게 말한다'(1.5%) 등의 순이었다.

**〈그림 Ⅳ-62〉 [일반학생] 학교폭력 효과적 대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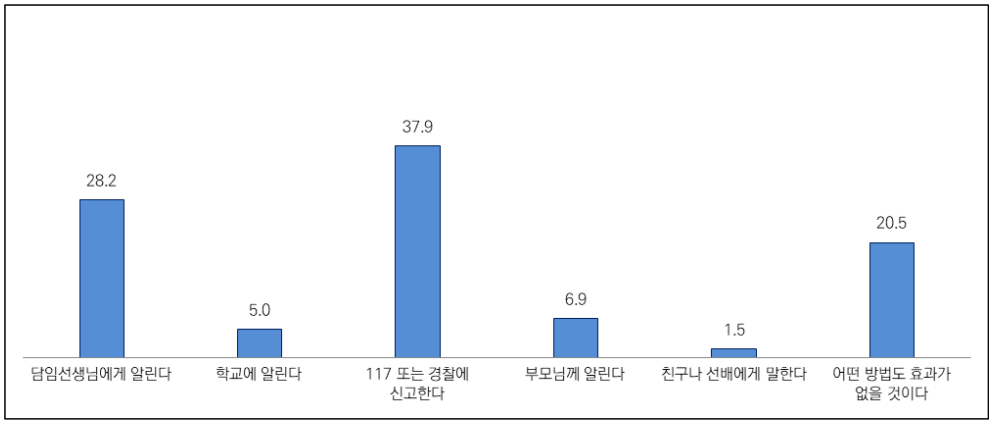


학교폭력 목격 후 취한 대응을 비교해 본 결과, 성별($\chi^2$=23.014, p<0.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담임선생님에게 알린다'가 남학생(33.7%)이 여학생(23.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어떤 방법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3.3%로 남학생의 응답비율 17.1%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여학생은 '부모님께 알린다'는 응답비율이 11.1%로 남학생의 1.7%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84〉 [일반학생] 학교폭력 효과적 대응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담임 선생님에게 알린다 | 학교에 알린다 | 117 또는 경찰에 신고한다 | 부모님께 알린다 | 친구나 선배에게 말한다 | 어떤 방법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 통계량 |
|---|---|---|---|---|---|---|---|---|---|
| 전 체 | | (404) | 28.2 | 5.0 | 37.9 | 6.9 | 1.5 | 20.5 | - |
| 성별 | 남성 | (181) | 33.7 | 6.1 | 38.7 | 1.7 | 2.8 | 17.1 | $x^2$=23.014, p=0.000 |
| | 여성 | (223) | 23.8 | 4.0 | 37.2 | 11.2 | 0.4 | 23.3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24) | 32.3 | 6.5 | 34.7 | 7.3 | 2.4 | 16.9 | $x^2$=4.545, p=0.474 |
| | 고등학생 | (280) | 26.4 | 4.3 | 39.3 | 6.8 | 1.1 | 22.1 | |

C35. 학교폭력 목격 시 다음 중 어떤 행동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 4) 피해학생 학부모

### (1) 학교폭력 고통정도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고통에 대해 '고통스럽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3.7%였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9.3%, '고통스럽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7.0%로 나타났다.

〈그림 Ⅳ-63〉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고통정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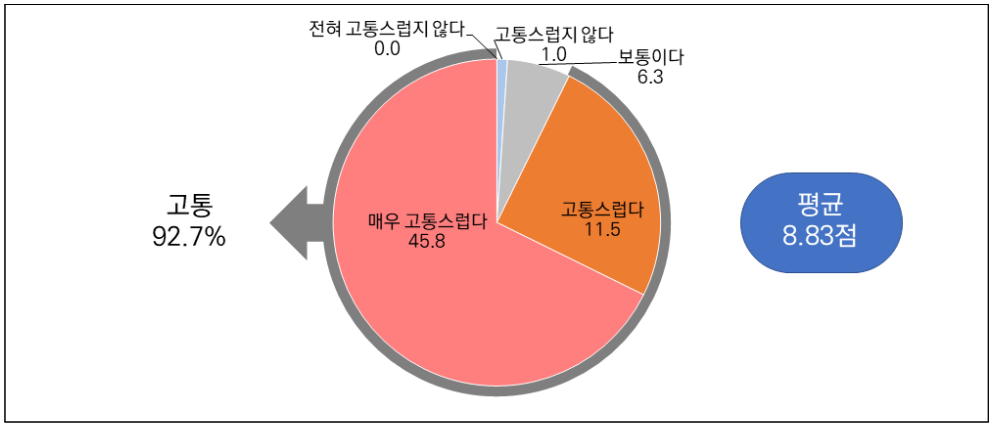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의 성별로는 여성(9.10점, F=17.586, p<0.001)이 남성보다 학교폭력에 대한 고통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응답했다.

**〈표 Ⅳ-85〉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고통정도**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고통스럽지 않음 | 보통 | 고통스러움 | 평균 | 통계량 |
|---|---|---|---|---|---|---|---|
| 전 체 | | (96) | 1.0 | 6.3 | 92.7 | 8.83 | - |
| 성별 | 남성 | (18) | 5.6 | 22.2 | 72.2 | 7.67 | F=17.586, p=0.000 |
| | 여성 | (78) | 0.0 | 2.6 | 97.4 | 9.10 | |

C4.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 (2)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녀의 자해경험 및 자살생각·시도

#### 가. 자해 경험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 중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녀가 자해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2%였다. 세부적으로 '일 년에 1~2번'(22.9%), '한 달에 1~2번'(17.7%), '일주일에 1~2번'(9.4%), '하루에 1번 이상'(4.2%) 등의 순이었다.

**〈그림 Ⅳ-64〉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영향 (1) 자해 경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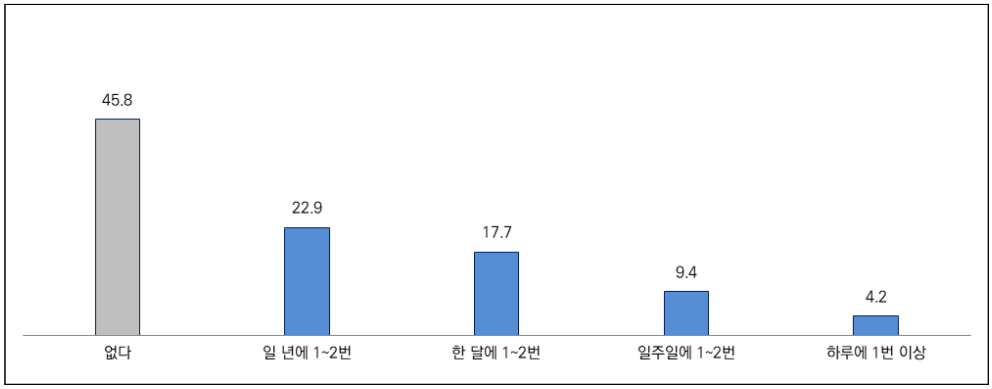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의 성별과 관련해 피해자녀의 자해경험에서는 유의미하게 차이나는 응답은 나타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86〉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영향 (1) 자해 경험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없다 | 일 년에 1~2번 | 한 달에 1~2번 | 일주일에 1~2번 | 하루에 1번 이상 | 통계량 |
|---|---|---|---|---|---|---|---|---|
| 전 체 | | (96) | 45.8 | 22.9 | 17.7 | 9.4 | 4.2 | - |
| 성별 | 남성 | (18) | 38.9 | 22.2 | 27.8 | 11.1 | 0.0 | $\chi^2$=2.501, p=0.645 |
| | 여성 | (78) | 47.4 | 23.1 | 15.4 | 9.0 | 5.1 | |

C6.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자녀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1)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자해를 한 적이 있다.

## 나. 자살 생각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 중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6.7%였다. 세부적으로 '한 달에 1~2번'(20.8%), '일 년에 1~2번'(19.8%), '일주일에 1~2번'(18.8%), '하루에 1번 이상'(8.3%) 등의 순이었다.

〈그림 Ⅳ-65〉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영향 (2) 자살 생각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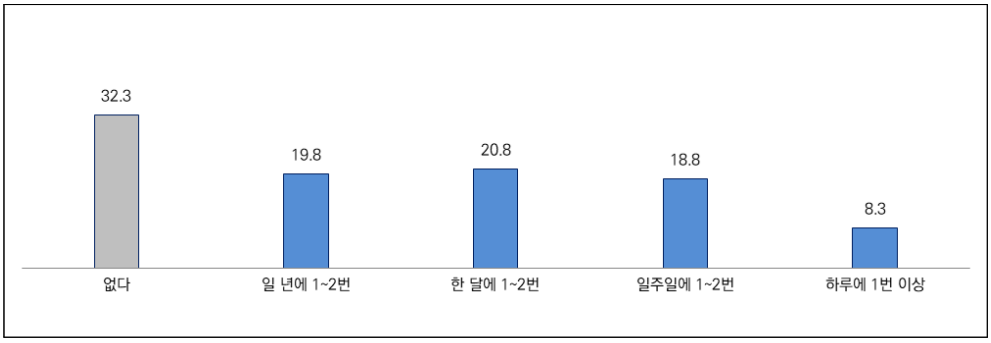


〈표 Ⅳ-87〉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영향 (2) 자살 생각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없다 | 일 년에 1~2번 | 한 달에 1~2번 | 일주일에 1~2번 | 하루에 1번 이상 | 통계량 |
|---|---|---|---|---|---|---|---|---|
| 전 체 | | (96) | 32.3 | 19.8 | 20.8 | 18.8 | 8.3 | - |
| 성별 | 남성 | (18) | 27.8 | 16.7 | 16.7 | 38.9 | 0.0 | $\chi^2$=7.072, p=0.132 |
| | 여성 | (78) | 33.3 | 20.5 | 21.8 | 14.1 | 10.3 | |

C6.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자녀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2)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적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다. 자살 시도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 중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4%였다. 세부적으로 '일 년에 1~2번'(14.6%), '한 달에 1~2번'(9.4%), '일주일에 1~2번'(8.3%), '하루에 1번 이상'(2.1%) 등의 순이다.

**〈그림 Ⅳ-66〉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영향 (3) 자살 시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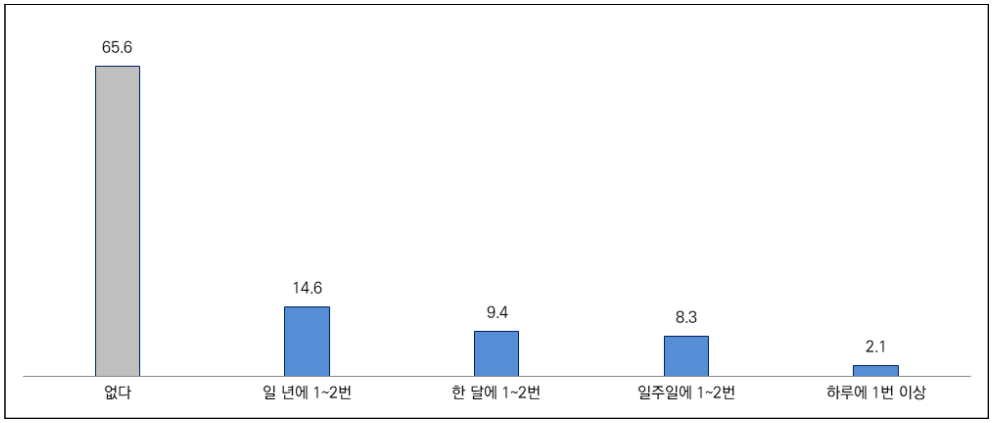


**〈표 Ⅳ-88〉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영향 (3) 자살 시도**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없다 | 일 년에 1~2번 | 한 달에 1~2번 | 일주일에 1~2번 | 하루에 1번 이상 | 통계량 |
|---|---|---|---|---|---|---|---|---|
| 전 체 | | (96) | 65.6 | 14.6 | 9.4 | 8.3 | 2.1 | - |
| 성별 | 남성 | (18) | 50.0 | 22.2 | 5.6 | 16.7 | 5.6 | $\chi^2$=5.184, p=0.269 |
| | 여성 | (78) | 69.2 | 12.8 | 10.3 | 6.4 | 1.3 | |

C6.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자녀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3)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자살을 시도해 본적이 있다.

## (3) 학교폭력 도움요청

### 가. 도움요청 경험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 중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 시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4.4%였다. 세부적으로 '학교 선생님께 도움을 청했다'(39.6%), '(자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18.8%), '학교폭력전문기관(예:학교폭력피해자전담기관)에 도움을 청했다'(13.5%), '청소년 상담실(예:Wee센터)에 도움을 청했다'(11.5%), '117에 신고하여 도움을 청했다', '학교폭력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했다'(각 2.1%)의 순이었고,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15.6%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Ⅳ-67〉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도움요청 경험**

(단위 :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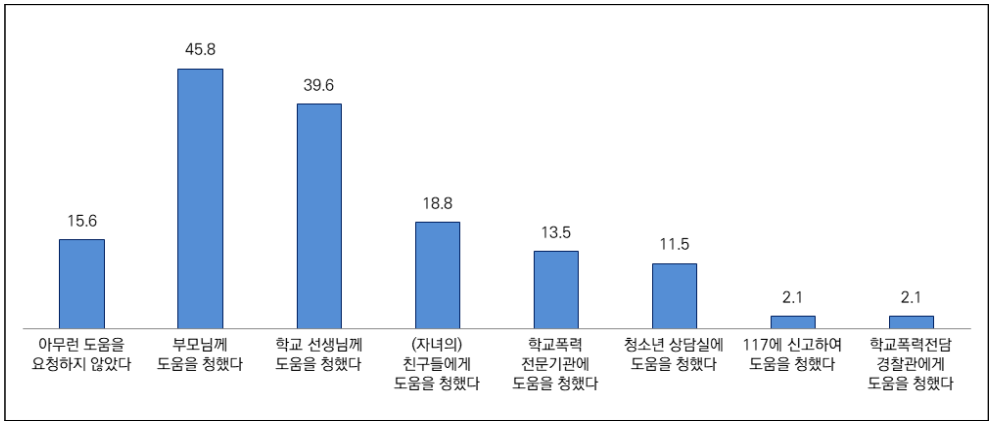


**〈표 Ⅳ-89〉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도움요청 경험**

(단위 : %, 복수응답)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5) | (6) | (7) | (8) |
|---|---|---|---|---|---|---|---|---|---|---|
| 전 체 | | (96) | 15.6 | 45.8 | 39.6 | 18.8 | 13.5 | 11.5 | 2.1 | 2.1 |
| 성별 | 남성 | (18) | 5.6 | 38.9 | 27.8 | 38.9 | 16.7 | 11.1 | 0.0 | 0.0 |
| | 여성 | (78) | 17.9 | 47.4 | 42.3 | 14.1 | 12.8 | 11.5 | 2.6 | 2.6 |

C8.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1)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2) 부모님께 도움을 청했다.
(3) 학교 선생님께 도움을 청했다. (4) (자녀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5) 학교폭력전문기관(예:학교폭력피해자전담기관)에 도움을 청했다.
(6) 청소년 상담실(예:Wee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7) 117에 신고하여 도움을 청했다.
(8) 학교폭력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나. 도움 미요청 이유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는 피해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33.3%)를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20.0%), '야단맞을 것 같아서',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가해자로부터 보복 당할 것 같아서'(각 13.3%), '일이 커질 것 같아서'(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68〉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도움요청 미경험 이유**

(Base: 자녀 학교폭력 도움 미요청 응답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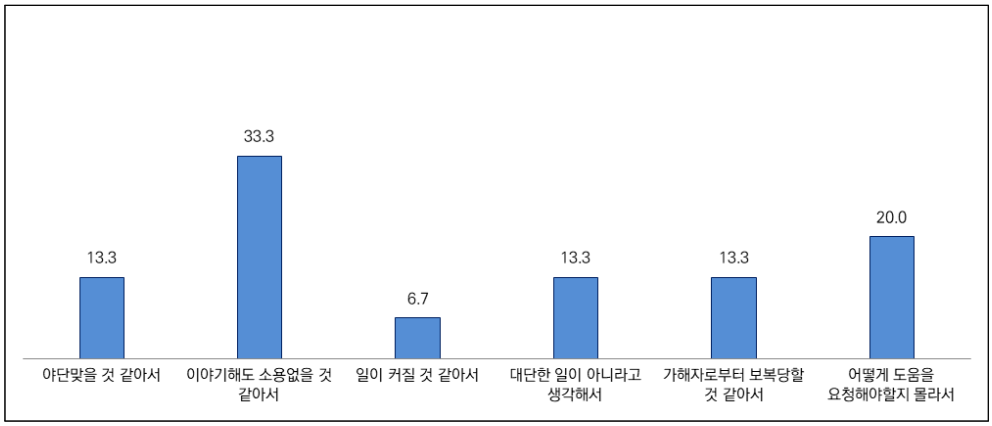


**〈표 Ⅳ-90〉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도움요청 미경험 이유**

(Base: 자녀 학교폭력 도움 미요청 응답자,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5) | (6) | 통계량 |
|---|---|---|---|---|---|---|---|---|---|
| 전 체 | | (15) | 13.3 | 33.3 | 6.7 | 13.3 | 13.3 | 20.0 | - |
| 성별 | 남성 | (1) | 0.0 | 0.0 | 0.0 | 0.0 | 0.0 | 100.0 | $x^2$ =4.286, p=0.509 |
| | 여성 | (14) | 14.3 | 35.7 | 7.1 | 14.3 | 14.3 | 14.3 | |

C8-1. 피해를 당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야단맞을 것 같아서.
(2)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3) 일이 커질 것 같아서.
(4)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5) 가해자로부터 보복당할 것 같아서.
(6)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할지 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다. 도움요청 도움정도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 중 도움을 요청한 경우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8%였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7.0%,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27.2%였다.

**〈그림 Ⅳ-69〉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도움요청 도움도**

(Base: 자녀학교 폭력 도움요청 응답자, 단위 : %, 5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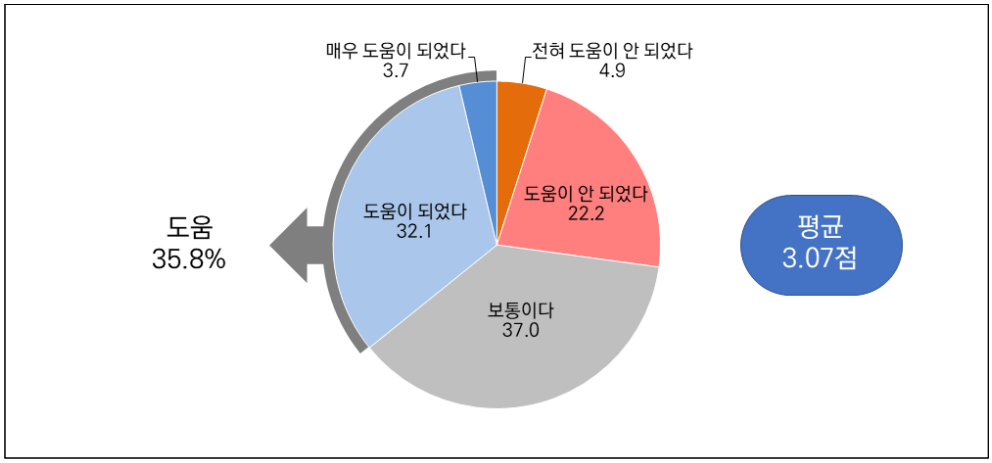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 중 남성(3.47점, F=3.920, p=0.051)이 도움을 요청한 경우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Ⅳ-91〉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도움요청 도움도**

(Base: 자녀학교 폭력 도움요청 응답자, 단위 :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비도움 | 보통 | 도움 | 평균 | 통계량 |
|---|---|---|---|---|---|---|---|
| 전 체 | | (81) | 27.2 | 37.0 | 35.8 | 3.07 | - |
| 성별 | 남성 | (17) | 5.9 | 47.1 | 47.1 | 3.47 | F=3.920, p=0.051 |
| | 여성 | (64) | 32.8 | 34.4 | 32.8 | 2.97 | |

C8-2. 요청한 도움 방법이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 (4) 학교폭력 피해 후 조치

### 가. 피해 후 조치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가 학교폭력 피해 후 이루어진 조치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학교 선생님께 도움과 위로를 받았다'(31.3%)였다. 다음으로 '가해학생에게 사과를 받았다'(25.0%), '부모님께 도움과 위로를 받았다'(20.8%), '병원 치료 혹 심리 상담을 받았다'(15.6%), '가해학생에게 물질적인 보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았다'(7.3%),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았다'(5.2%) 등의 순이었다.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24.0%)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림 Ⅳ-70〉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피해 후 조치**

(단위 :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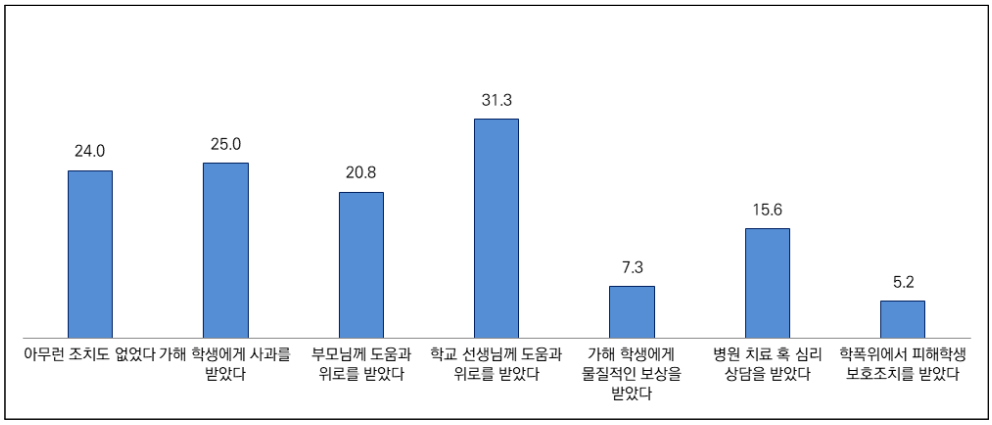


**〈표 Ⅳ-92〉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피해 후 조치**

(단위 : %, 복수응답)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5) | (6) | (7) |
|---|---|---|---|---|---|---|---|---|---|
| 전 체 | | (96) | 24.0 | 25.0 | 20.8 | 31.3 | 7.3 | 15.6 | 5.2 |
| 성별 | 남성 | (18) | 22.2 | 22.2 | 33.3 | 27.8 | 11.1 | 16.7 | 0.0 |
| | 여성 | (78) | 24.4 | 25.6 | 17.9 | 32.1 | 6.4 | 15.4 | 6.4 |

C9.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후 다음 중 어떠한 조치를 받았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1)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2) 가해학생에게 사과를 받았다.
(3) 부모님께 도움과 위로를 받았다.
(4) 학교 선생님께 도움과 위로를 받았다.
(5) 가해학생에게 물질적인 보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았다.
(6) 병원 치료 혹 심리 상담을 받았다.
(7)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나. 자치위원회 피해학생 보호조치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는 자치위원회로부터 받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1호 심리상담 및 조언'(80.0%)이었다. 다음으로 '2호 일시 보호'(20.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71〉 [피해학생 학부모] 자치위원회 피해학생 보호조치**

(Base: 자치위원회 보호조치 응답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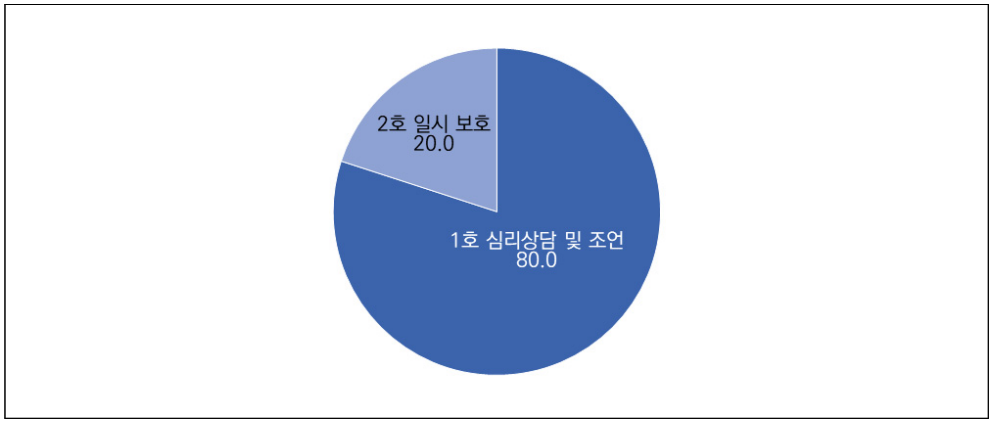


**〈표 Ⅳ-93〉 [피해학생 학부모] 자치위원회 피해학생 보호조치**

(Base: 자치위원회 보호조치 응답자,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 2호 일시 보호 | 통계량 |
|---|---|---|---|---|---|
| 전 체 | | (5) | 80.0 | 20.0 | - |
| 성별 | 남성 | (0) | - | - | - |
| | 여성 | (5) | 80.0 | 20.0 | |

C9-1. 자치위원회에서 받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무엇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다. 조치 도움도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 중 학교폭력 피해 후 이루어진 조치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32.3%였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1.3%,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6.5%였다.

**〈그림 Ⅳ-72〉 [피해학생 학부모] 자치위원회 피해학생 보호조치 도움도**

(단위 : %, 5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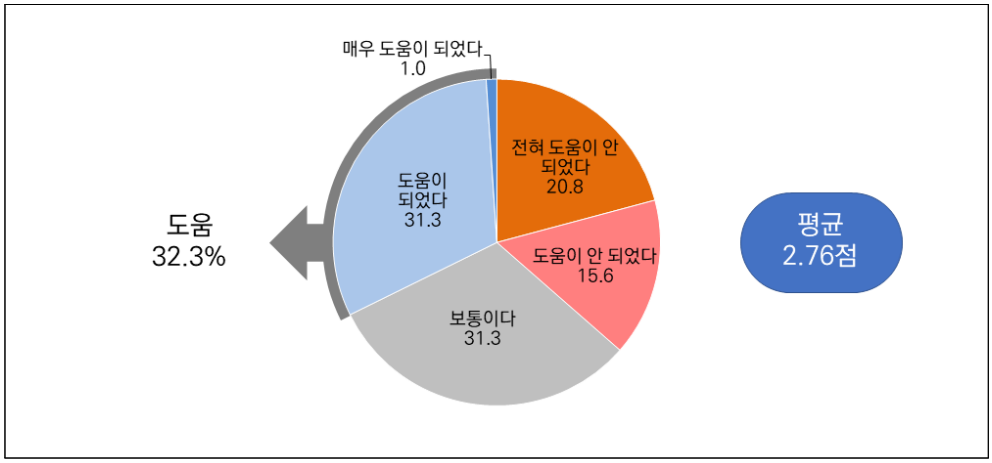


**〈표 Ⅳ-94〉 [피해학생 학부모] 자치위원회 피해학생 보호조치 도움도**

(단위 :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비도움 | 보통 | 도움 | 평균 | 통계량 |
|---|---|---|---|---|---|---|---|
| 전 체 | | (96) | 36.5 | 31.3 | 32.3 | 2.76 | - |
| 성별 | 남성 | (18) | 27.8 | 38.9 | 33.3 | 3.00 | F=0.978, p=0.325 |
| | 여성 | (78) | 38.5 | 29.5 | 32.1 | 2.71 | |

C10. 여러분이 받은 조치가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5) 자치위원회 조치 적절성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 중 자치위원회 조치에 대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7.1%였으며,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72.9%로 나타났다.

**〈그림 Ⅳ-73〉 [피해학생 학부모] 자치위원회 조치 적절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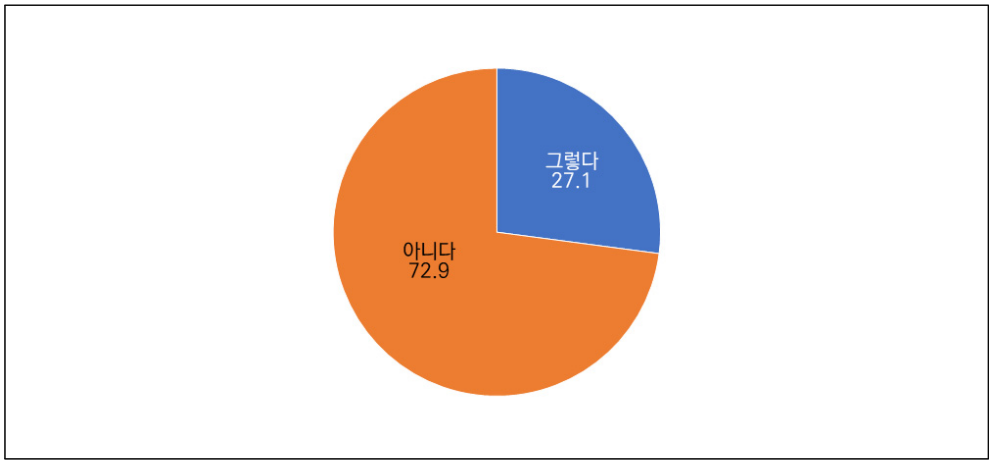


**〈표 Ⅳ-95〉 [피해학생 학부모] 자치위원회 조치 적절성**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그렇다 | 아니다 | 통계량 |
|---|---|---|---|---|---|
| 전 체 | | (96) | 27.1 | 72.9 | - |
| 성별 | 남성 | (18) | 27.8 | 72.2 | $\chi^2$=0.005, p=0.941 |
| | 여성 | (78) | 26.9 | 73.1 | |

C11. 자치위원회의 조치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6) 자치위원회 조치 미흡 이유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가 자치위원회 조치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자녀한테 학교폭력을 가한 아이에 대한 벌이 너무 가벼워서'(42.9%)였다. 다음으로 '학교 선생님이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한 것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서'(38.6%), '자녀한테 학교폭력을 가한 아이한테서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해서'(28.6%), '자녀가 힘들어 하는데 선생님이 자녀에게 상담을 잘 안 해주어서' (14.3%), '기타'(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74〉 [피해학생 학부모] 자치위원회 조치 미흡 이유**

(Base: 자치위원회 조치 미흡 응답자, 단위 :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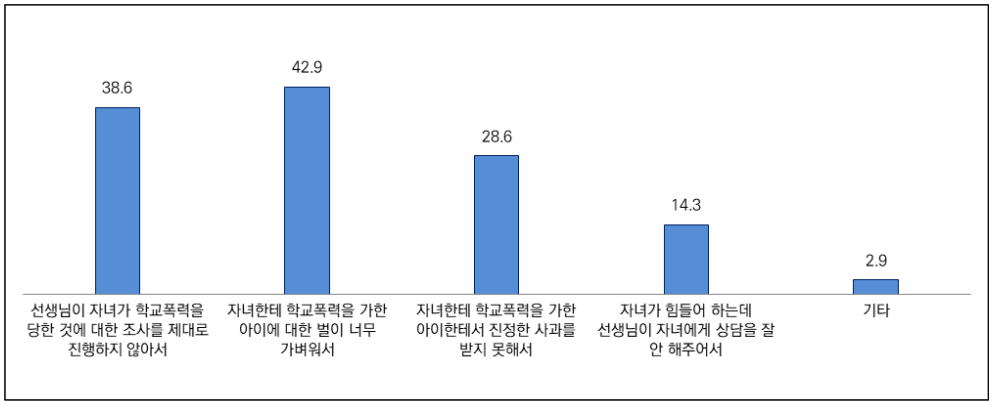


**〈표 Ⅳ-96〉 [피해학생 학부모] 자치위원회 조치 미흡 이유**

(Base: 자치위원회 조치 미흡 응답자, 단위 : %, 복수응답)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5) |
|---|---|---|---|---|---|---|---|
| 전 체 | | (70) | 38.6 | 42.9 | 28.6 | 14.3 | 2.9 |
| 성별 | 남성 | (13) | 38.5 | 53.8 | 30.8 | 15.4 | 0.0 |
| | 여성 | (57) | 38.6 | 40.4 | 28.1 | 14.0 | 3.5 |

C11-1. 자치위원회의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 응답 가능)

(1) 학교 선생님이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한 것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서.
(2) 자녀한테 학교폭력을 가한 아이에 대한 벌이 너무 가벼워서.
(3) 자녀한테 학교폭력을 가한 아이한테서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해서.
(4) 자녀가 힘들어 하는데 선생님이 자녀에게 상담을 잘 안 해주어서.
(5) 기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7) 학교폭력 신고 후 변화

### 가. 가해학생 반응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가 인식한 학교폭력 신고 후 가해학생의 태도 및 반응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폭력은 멈추었지만 반성과 사과는 하지 않았다'(50.0%)였다. 다음으로 '신고 이후에도 학교폭력을 멈추지 않았다'(24.0%),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했다'(19.8%), '신고 이후 더 심하게 학교폭력을 가했다'(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75〉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신고 후 가해학생 태도/반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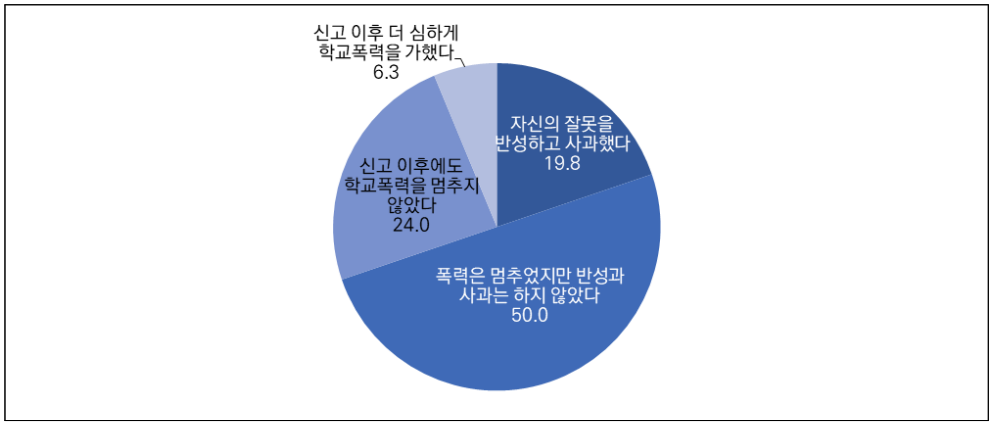


**〈표 Ⅳ-97〉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신고 후 가해학생 태도/반응**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통계량 |
|---|---|---|---|---|---|---|---|
| 전 체 | | (96) | 19.8 | 50.0 | 24.0 | 6.3 | - |
| 성별 | 남성 | (18) | 16.7 | 55.6 | 22.2 | 5.6 | $x^2$=0.291, p=0.962 |
| | 여성 | (78) | 20.5 | 48.7 | 24.4 | 6.4 | |

C13. 학교폭력 사건 신고 후 가해학생의 태도나 반응은 어땠습니까?

(1)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했다.
(2) 폭력은 멈추었지만 반성과 사과는 하지 않았다.
(3) 신고 이후에도 학교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4) 신고 이후 더 심하게 학교폭력을 가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나. 주변학생 반응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가 인식한 학교폭력 신고 후 주변학생 반응에 대해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주변 학생들은 가해학생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3.31점)가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변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3.21점), '주변 학생들은 피해학생을 위로하며 도와주려 했다'(2.78점), '주변 학생들이 가해학생이 잘못했다고 말하며 가해학생을 나무라는 태도를 보였다'(2.5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76〉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신고 후 가해학생 태도/반응**

(단위 : 5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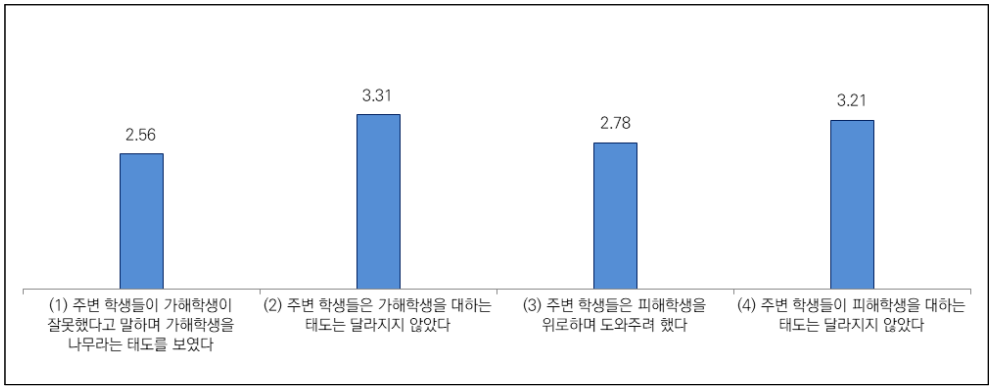


**〈표 Ⅳ-98〉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신고 후 주변학생 태도/반응**

(단위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
| 전 체 | | (96) | 2.56 | 3.31 | 2.78 | 3.21 |
| 성별 | 남성 | (18) | 2.94 | 3.33 | 2.78 | 2.94 |
| | 여성 | (78) | 2.47 | 3.31 | 2.78 | 3.27 |
| | 통계량 | - | F=3.026, p=0.085 | F=0.008, p=0.929 | F=0.000, p=0.987 | F=1.806, p=0.182 |

C14. 학교폭력 사건 신고 후에 경험한 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주변 학생들이 가해학생이 잘못했다고 말하며 가해학생을 나무라는 태도를 보였다.
(2) 주변 학생들은 가해학생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3) 주변 학생들은 피해학생을 위로하며 도와주려 했다.
(4) 주변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경험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자치위원회 경험과 관련해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자치위원회 조치·결과 중 가해학생이 불복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불편하였거나 불안하였다'(3.63점)가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안조사 과정 중 피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3.45점), '자치위원회 개최 과정 중 피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3.34점), '사안조사 과정 중 피해학생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적이 있다'(3.26점), '자치위원회 개최 과정 중 피해학생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적이 있다'(3.22점), '사안조사 과정 중 피해학생(부모)으로서 충분하게 사안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2.96점), '자치위원회 개최 과정 중 피해학생 및 학부모로서 적정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보장되었다'(2.95점), '자치위원회 조치·결과 중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일반학생(목격학생)은 적정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편이다'(2.73점), '자치위원회 조치·결과 중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해학생이 잘 이행했다고 생각한다'(2.60점), '자치위원회 조치·결과 중 가해학생에 대해 내린 조치에 만족한다'(2.4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 중 남성집단(3.00점, F=5.883, p<0.05)이 '가해학생에 대해 내린 조치에 만족하는 정도'의 점수가 여성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Ⅳ-77〉 [피해학생 학부모] 자치위원회 경험**

(단위 : 5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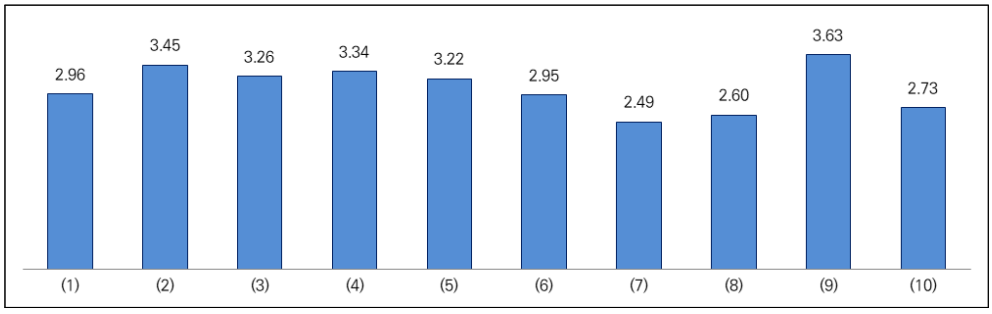


(1) 피해학생(부모)으로서 충분하게 사안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2) 피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
(3) 피해학생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적이 있다.
(4) 피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
(5) 피해학생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적이 있다.
(6) 피해학생 및 학부모로서 적정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보장되었다.
(7) 가해학생에 대해 내린 조치에 만족한다.
(8)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해학생이 잘 이행했다고 생각한다.
(9) 가해학생이 불복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불편하였거나 불안하였다.
(10)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일반학생(목격학생)은 적정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표 Ⅳ-99〉 [피해학생 학부모] 자치위원회 경험 (2/2)

(단위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개최 과정 | 결과/조치 | | | |
|---|---|---|---|---|---|---|---|
| | | | 피해학생 및 학부모로서 적정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보장되었다 | 가해학생에 대해 내린 조치에 만족한다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해학생이 잘 이행했다고 생각한다 | 가해학생이 불복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불편하였거나 불안하였다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일반학생(목격학생)은 적정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
| 전 체 | | (96) | 2.95 | 2.49 | 2.60 | 3.63 | 2.73 |
| 성별 | 남성 | (18) | 3.17 | 3.00 | 2.78 | 3.61 | 3.06 |
| | 여성 | (78) | 2.90 | 2.37 | 2.56 | 3.63 | 2.65 |
| | 통계량 | - | F=1.041, p=0.310 | F=5.883, p=0.017 | F=0.666, p=0.417 | F=0.004, p=0.952 | F=3.056, p=0.084 |

C15. 학교폭력 사안조사 과정 및 자치위원회 개최 및 조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 〈표 Ⅳ-100〉 [피해학생 학부모] 자치위원회 경험 (1/2)

(단위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사안조사 과정 | | | 개최 과정 | |
|---|---|---|---|---|---|---|---|
| | | | 피해학생(부모)으로서 충분하게 사안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 피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 | 피해학생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적이 있다 | 피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 | 피해학생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적이 있다 |
| 전 체 | | (96) | 2.96 | 3.45 | 3.26 | 3.34 | 3.22 |
| 성별 | 남성 | (18) | 3.17 | 3.17 | 3.39 | 3.11 | 3.06 |
| | 여성 | (78) | 2.91 | 3.51 | 3.23 | 3.40 | 3.26 |
| | 통계량 | - | F=0.995, p=0.321 | F=2.112, p=0.149 | F=0.312, p=0.578 | F=1.100, p=0.297 | F=0.567, p=0.453 |

C15. 학교폭력 사안조사 과정 및 자치위원회 개최 및 조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불복 조치

#### 가. 가해학생 불복 여부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 중 자치위원회 결과에 대해 가해학생이 불복하여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4%였다. '없다'는 응답비율은 89.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78〉 [피해학생 학부모]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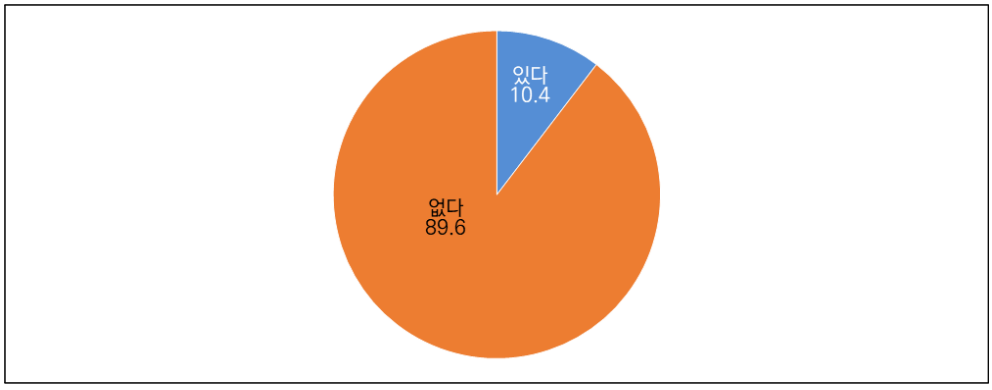


**〈표 Ⅳ-101〉 [피해학생 학부모]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여부**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있다 | 없다 | 통계량 |
|---|---|---|---|---|---|
| 전 체 | | (96) | 10.4 | 89.6 | - |
| 성별 | 남성 | (18) | 16.7 | 83.3 | $\chi^2$=0.927, p=0.336 |
| | 여성 | (78) | 9.0 | 91.0 | |

C16.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가 내린 조치에 불복해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나. 피해학생 불복 여부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 중 자치위원회 결과에 대해 피해학생이 불복하여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3%, '없다'는 응답비율은 9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79〉 [피해학생 학부모] 피해학생 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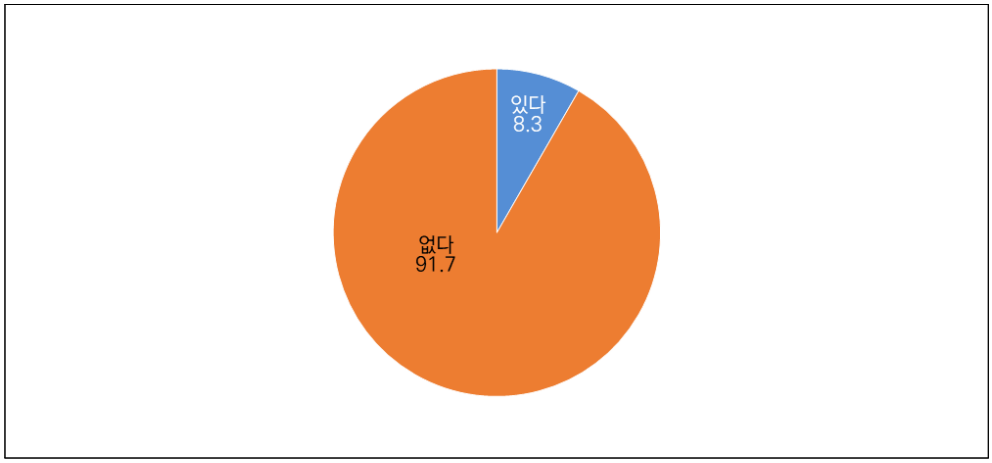


**〈표 Ⅳ-102〉 [피해학생 학부모] 피해학생 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여부**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있다 | 없다 | 통계량 |
|---|---|---|---|---|---|
| 전 체 | | (96) | 8.3 | 91.7 | - |
| 성별 | 남성 | (18) | 16.7 | 83.3 | $\chi^2$=2.014, p=0.156 |
| | 여성 | (78) | 6.4 | 93.6 | |

C17. 피해학생 및 학부모로서 자치위원회가 내린 조치에 불복해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다. 피해학생 불복 절차 안내 여부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 중 자치위원회 결과에 대해 피해학생이 불복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0%,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6.0%로 나타났다.

**〈그림 Ⅳ-80〉 [피해학생 학부모] 피해학생 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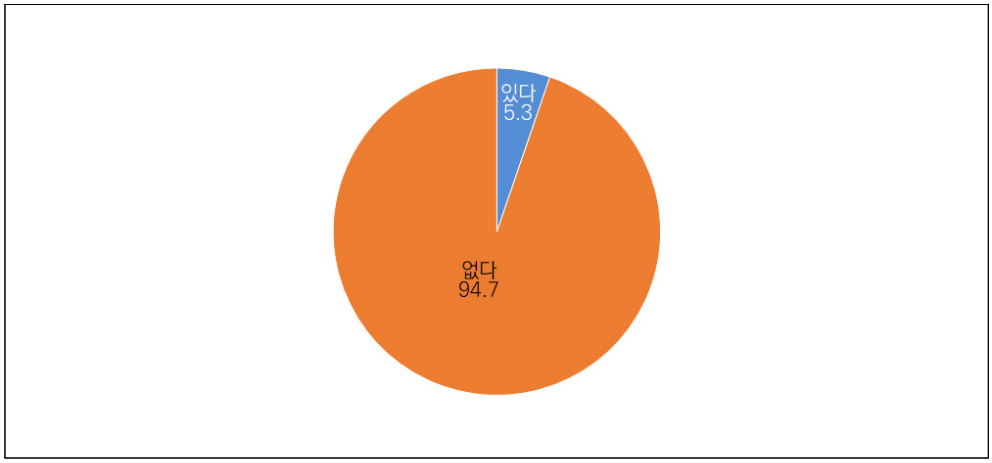


**〈표 Ⅳ-103〉 [피해학생 학부모] 피해학생 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여부**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있다 | 없다 | 통계량 |
|---|---|---|---|---|---|
| 전 체 | | (96) | 24.0 | 76.0 | - |
| 성별 | 남성 | (18) | 33.3 | 66.7 | $\chi^2$=1.069, p=0.301 |
| | 여성 | (78) | 21.8 | 78.2 | |

C18. 피해학생 및 학부모로서 자치위원회가 내린 조치에 불복했을 때 할 수 있는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관해 안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10) 법적 조치

### 가. 가해학생 형사고소 여부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 중 가해학생을 형사고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3%였으며, '없다'는 응답비율은 92.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81〉 [피해학생 학부모] 가해학생 형사고소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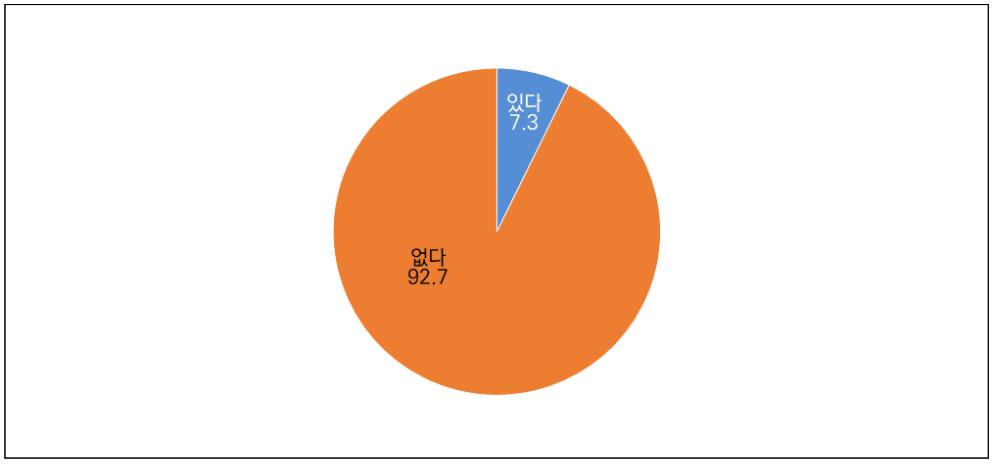


**〈표 Ⅳ-104〉 [피해학생 학부모] 가해학생 형사고소 여부**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있다 | 없다 | 통계량 |
|---|---|---|---|---|---|
| 전 체 | | (96) | 7.3 | 92.7 | - |
| 성별 | 남성 | (18) | 11.1 | 88.9 | $\chi^2$=0.478, p=0.489 |
| | 여성 | (78) | 6.4 | 93.6 | |

C19. 피해학생 및 학부모로서 가해학생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나. 가해학생 형사고소 이유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 중 가해학생을 형사고소한 경우, 그 이유로 가장 많이 답한 것은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 조치 이후에도 사과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71.4%)였다. 다음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자치위원회 조치가 지나치게 경미하였기 때문에'(2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82〉 [피해학생 학부모] 가해학생 형사고소 이유**

(Base: 가해학생 형사고소 응답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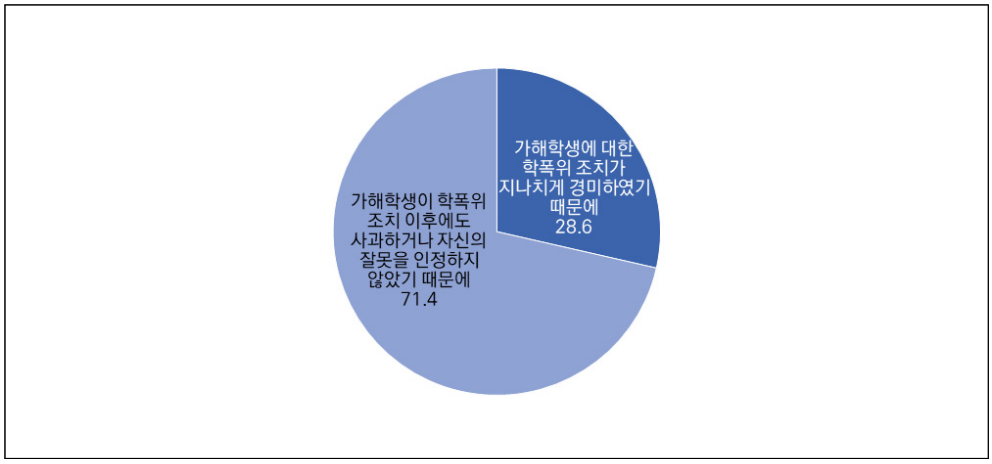


**〈표 Ⅳ-105〉 [피해학생 학부모] 가해학생 형사고소 이유**

(Base: 가해학생 형사고소 응답자,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가해학생에 대한 자치위원회 조치가 지나치게 경미하였기 때문에 |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 조치 이후에도 사과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 통계량 |
|---|---|---|---|---|---|
| 전 체 | | (7) | 28.6 | 71.4 | - |
| 성별 | 남성 | (2) | 0.0 | 100.0 | $\chi^2$=1.120, p=0.290 |
| | 여성 | (5) | 40.0 | 60.0 | |

C19-1. 가해학생에 대해 형사고소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다. 가해학생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여부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 중 가해학생을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였다.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94.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83〉 [피해학생 학부모] 가해학생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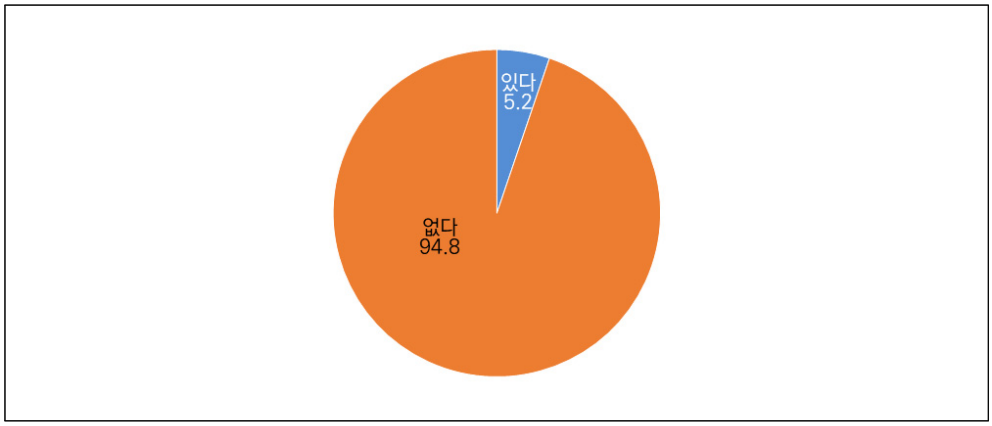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 중 남성집단(16.7%, $\chi^2$=5.891, p<0.05)이 '민사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 경험'이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06〉 [피해학생 학부모] 가해학생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여부**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있다 | 없다 | 통계량 |
|---|---|---|---|---|---|
| 전 체 | | (96) | 5.2 | 94.8 | - |
| 성별 | 남성 | (18) | 16.7 | 83.3 | $\chi^2$=5.891, p=0.015 |
| | 여성 | (78) | 2.6 | 97.4 | |

C20. 피해학생 및 학부모로서 가해학생에 대해서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 (11) 학교폭력 사후처리 과정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학교폭력 사후처리 과정에 대해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치료 및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요양비용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3.44점)가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해학생이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송을 하는 경우, 피해학생으로서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나 절차 참여가 충분히 보장된다'(2.82점), '치료 및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받는 요양비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2.65점), '가해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소장작성이나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쉬운 편이다'(2.6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84〉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사후처리 과정**

(단위 : 5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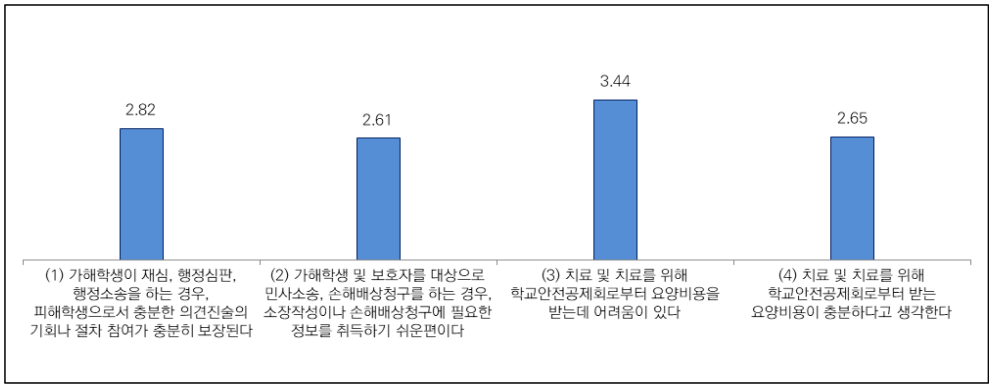


**〈표 Ⅳ-107〉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사후처리 과정**

(단위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
| 전 체 | | (96) | 2.82 | 2.61 | 3.44 | 2.65 |
| 성별 | 남성 | (18) | 3.06 | 2.72 | 3.28 | 3.00 |
| | 여성 | (78) | 2.77 | 2.59 | 3.47 | 2.56 |
| | 통계량 | - | F=1.430, p=0.235 | F=0.261, p=0.611 | F=0.515, p=0.475 | F=3.475, p=0.065 |

C21.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사후처리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가해학생이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 피해학생으로서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나 절차 참여가 충분히 보장된다

(2) 가해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소장작성이나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쉬운편이다

(3) 치료 및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요양비용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4) 치료 및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받는 요양비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12) 학교폭력 이후 전학여부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 중 학교폭력 피해 이후 자녀를 다른 학교나 기관으로 옮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9%였다. '없다'는 응답비율은 38.5%, '옮기지는 않았지만, 고민했었다'는 응답비율은 39.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85〉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이후 전학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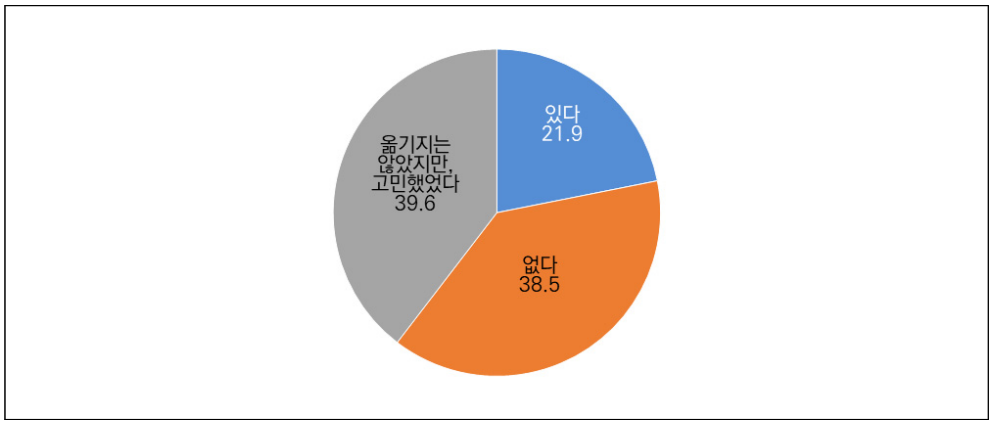


응답자의 성별로는 여성집단에서 '전학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Ⅳ-108〉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이후 전학여부**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있다 | 없다 | 옮기지는 않았지만, 고민했었다 | 통계량 |
|---|---|---|---|---|---|---|
| 전 체 | | (96) | 21.9 | 38.5 | 39.6 | - |
| 성별 | 남성 | (18) | 5.6 | 38.9 | 55.6 | $\chi^2$ =4.126, p=0.127 |
| | 여성 | (78) | 25.6 | 38.5 | 35.9 | |

C22. 학교폭력사건을 경험한 후, 다니던 학교에서 다른 학교나 기관으로 옮긴 적이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5. 학교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절차 개선방안 인식

## 1) 학생

### (1) 학교폭력 예방 교육 경험

#### 가. 학교폭력 예방 교육 경험

조사에 응답한 모든 학생집단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8.0%,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경험을 비교해 본 결과 학교 폭력 경험별($\chi^2$ = 52.501, p<0.001)과 학교급별($\chi^2$ =4.212, p<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폭력 비경험' 집단(92.1%)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피해경험' 집단(73.5%), '가해경험' 집단(69.2%), '가해·피해경험' 집단(4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 집단(90.0%)이 '중학생' 집단(83.3%)에 비해 예방교육 경험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Ⅳ-109〉 [학생] 학교폭력 예방교육 경험**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있다 | 없다 | 통계량 |
|---|---|---|---|---|---|
| 전 체 | | (474) | 88.0 | 12.0 | -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69.2 | 30.8 | $\chi^2$ =52.501, p=0.000 |
| | 피해경험 | (34) | 73.5 | 26.5 | |
| | 가해/피해경험 | (23) | 47.8 | 52.2 | |
| | 비경험 | (404) | 92.1 | 7.9 | |
| 성별 | 남성 | (206) | 88.8 | 11.2 | $\chi^2$ =0.255, p=0.614 |
| | 여성 | (268) | 87.3 | 12.7 | |
| 학교급 별 | 중학생 | (144) | 83.3 | 16.7 | $\chi^2$ =4.212, p=0.040 |
| | 고등학생 | (330) | 90.0 | 10.0 | |

D6.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나. 예방교육 유형별 도움정도

학교폭력 예방교육 유형별 도움정도를 물어본 결과, '학급단위의 교육'(2.71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학년별 교육'(2.58점), '강당에 모여서 교육'(2.34점), '방송을 통한 교육'(2.20점), '가정통신문 자료배포'(1.8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경험별로 가해경험집단과 가해·피해경험집단, 비경험집단은 '학급단위의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교육', 피해경험집단은 '학년별 교육'에 대한 도움정도 점수가 높았다. 응답자의 성별, 학교급별 모든 유형에서 '학급단위의 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생집단의 성별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교육 유형별 도움정도를 비교해 본 결과 남학생집단(2.86점)이 여학생집단(2.59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Ⅳ-86〉 [학생] 학교폭력 예방교육 유형별 도움도**

(Base: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수 응답자, 단위 : 5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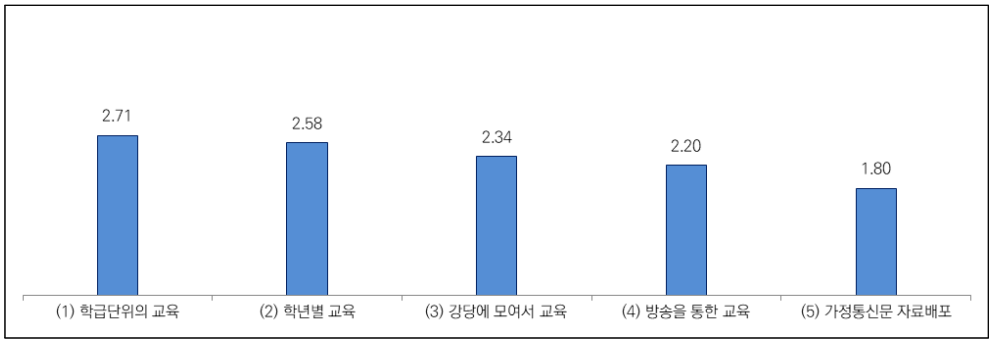


**〈표 Ⅳ-110〉 [학생] 학교폭력 예방교육 유형별 도움도**

(Base: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수 응답자, 단위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학급단위의 교육 | 학년별 교육 | 강당에 모여서 교육 | 방송을 통한 교육 | 가정 통신문 자료배포 |
|---|---|---|---|---|---|---|---|
| 전 체 | | (417) | 2.71 | 2.58 | 2.34 | 2.20 | 1.80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9) | 2.44 | 2.33 | 2.00 | 2.00 | 1.56 |
| | 피해경험 | (25) | 2.36 | 2.40 | 2.24 | 2.00 | 1.76 |
| | 가해/피해경험 | (11) | 2.91 | 2.73 | 2.55 | 2.27 | 2.00 |
| | 비경험 | (372) | 2.73 | 2.59 | 2.35 | 2.22 | 1.81 |
| | 통계량 | - | F=1.293, p=0.276 | F=0.505, p=0.679 | F=0.540, p=0.655 | F=0.474, p=0.700 | F=0.390, p=0.760 |
| 성별 | 남성 | (183) | 2.86 | 2.70 | 2.39 | 2.28 | 1.91 |
| | 여성 | (234) | 2.59 | 2.47 | 2.31 | 2.14 | 1.72 |
| | 통계량 | - | F=7.044, p=0.008 | F=5.191, p=0.023 | F=0.595, p=0.441 | F=2.081, p=0.150 | F=4.042, p=0.045 |
| 학교급별 | 중학생 | (120) | 2.73 | 2.66 | 2.39 | 2.31 | 1.89 |
| | 고등학생 | (297) | 2.69 | 2.54 | 2.32 | 2.16 | 1.77 |
| | 통계량 | - | F=0.123, p=0.726 | F=1.088, p=0.298 | F=0.360, p=0.549 | F=1.795, p=0.181 | F=1.504, p=0.221 |

D6-1. 받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유형별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문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문화로 학생집단이 응답한 것은 '학생·교사·학부모가 상호협력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적 학교문화'(29.3%)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학생 인성 중시의 학교문화'(26.2%), '학생 인권 존중의 학교문화'(23.4%),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의 학교문화'(7.4%), '가정 및 관련 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권장되는 학교문화'(5.7%), '기타'(4.2%), '교사의 권위 및 전문성 중시의 학교문화'(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87〉 [학생]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문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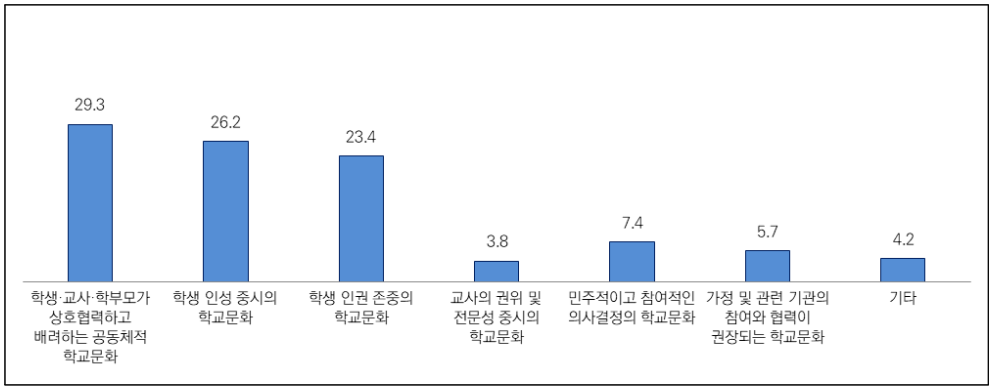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별로 가해경험집단은 '학생 인성 중시의 학교문화'과 '학생 인권 존중의 학교문화', 피해경험집단과 가해·피해경험집단은 '학생 인권 존중의 학교문화', 비경험집단은 '학생·교사·학부모가 상호협력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적 학교문화'가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집단은 '학생·교사·학부모가 상호협력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적 학교문화'가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집단은 '학생 인성 중시의 학교문화'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학생·교사·학부모가 상호협력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적 학교문화'가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문화를 비교해 본 결과 학교 폭력 경험별($\chi^2$=42.270, p<0.001)과 학교급별($\chi^2$=12.806, p<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111〉 [학생]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문화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5) | (6) | (7) | 통계량 |
|---|---|---|---|---|---|---|---|---|---|---|
| 전 체 | | (474) | 29.3 | 26.2 | 23.4 | 3.8 | 7.4 | 5.7 | 4.2 | -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0.0 | 30.8 | 30.8 | 23.1 | 7.7 | 7.7 | 0.0 | $\chi^2$=42.270, p=0.001 |
| | 피해경험 | (34) | 20.6 | 26.5 | 32.4 | 8.8 | 5.9 | 2.9 | 2.9 | |
| | 가해/피해경험 | (23) | 21.7 | 13.0 | 30.4 | 17.4 | 4.3 | 4.3 | 8.7 | |
| | 비경험 | (404) | 31.4 | 26.7 | 22.0 | 2.0 | 7.7 | 5.9 | 4.2 | |
| 성별 | 남성 | (206) | 33.0 | 23.3 | 22.8 | 3.9 | 7.3 | 3.9 | 5.8 | $\chi^2$=7.223, p=0.301 |
| | 여성 | (268) | 26.5 | 28.4 | 23.9 | 3.7 | 7.5 | 7.1 | 3.0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44) | 25.0 | 23.6 | 21.5 | 6.9 | 11.1 | 7.6 | 4.2 | $\chi^2$=12.806, p=0.046 |
| | 고등학생 | (330) | 31.2 | 27.3 | 24.2 | 2.4 | 5.8 | 4.8 | 4.2 | |

D7. 학교폭력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학교문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학생·교사·학부모가 상호협력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적 학교문화
(2) 학생 인성 중시의 학교문화
(3) 학생 인권 존중의 학교문화
(4) 교사의 권위 및 전문성 중시의 학교문화
(5)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의 학교문화
(6) 가정 및 관련 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권장되는 학교문화
(7) 기타

### (3) 학교폭력 예방 정책과제 중요도

학생집단에게 학교폭력 예방정책의 중요도와 관련해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4.44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4.03점), '정서, 행동 상의 문제 학생을 위한 전문상담 인력 확대'(3.92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및 대안교실 확대'(3.88점), '학생과의 소통 및 공감능력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3.74점),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활동 활성화'(3.40점),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인 제도 확대'(3.27점),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보급'(3.26점) 등의 순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Ⅳ-88〉 [학생] 학교폭력 예방 정책 중요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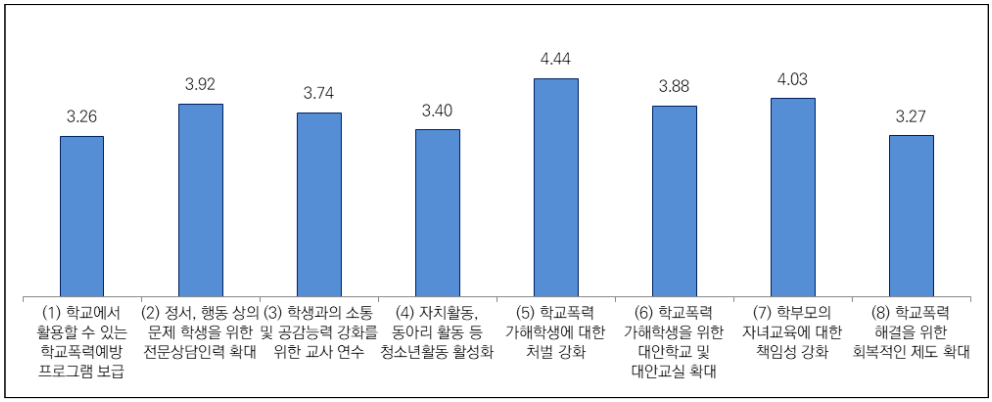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별로 가해경험집단은 '학생과의 소통 및 공감능력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경험집단은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 가해·피해경험집단과 비경험집단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가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 학교급별, 학교 유형별, 가족 유형별, 지역별, 학업 수준별로 모든 유형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별 학교폭력 예방 정책 중요도를 비교해 본 결과 학교 폭력 경험별로 비경험집단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보급'(3.34점, $F=5.718$, $p<0.001$), '정서, 행동 상의 문제 학생을 위한 전문상담인력 확대'(4.01점, $F=10.328$, $p<0.001$), '학생과의 소통 및 공감능력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3.81점, $F=4.607$, $p<0.0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4.52점, $F=9.656$, $p<0.001$),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및 대안교실 확대'(3.94점, $F=2.937$, $p<0.05$),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4.07점, $F=5.178$, $p<0.01$),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인 제도 확대'(3.32점, $F=3.972$, $p<0.01$)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집단은 '정서, 행동 상의 문제 학생을 위한 전문상담인력 확대'(4.09점, $F=19.341$, $p<0.00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4.60점, $F=21.116$, $p<0.001$),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및 대안교실 확대'(4.00점, $F=6.664$, $p<0.01$)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표 Ⅳ-112〉 [학생] 학교폭력 예방 정책과제 중요도 (1/2)

(단위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
| 전 체 | | (474) | 3.26 | 3.92 | 3.74 | 3.40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2.54 | 3.00 | 3.69 | 3.00 |
| | 피해경험 | (34) | 2.76 | 3.35 | 3.32 | 3.09 |
| | 가해/피해경험 | (23) | 3.04 | 3.65 | 3.22 | 3.26 |
| | 비경험 | (404) | 3.34 | 4.01 | 3.81 | 3.44 |
| | 통계량 | - | F=5.718, p=0.001 | F=10.328, p=0.000 | F=4.607, p=0.003 | F=2.008, p=0.112 |
| 성별 | 남성 | (206) | 3.20 | 3.70 | 3.65 | 3.49 |
| | 여성 | (268) | 3.30 | 4.09 | 3.82 | 3.33 |
| | 통계량 | - | F=1.011, p=0.315 | F=19.341, p=0.000 | F=3.401, p=0.066 | F=2.626, p=0.106 |
| 학교급별 | 중학생 | (144) | 3.37 | 3.99 | 3.72 | 3.44 |
| | 고등학생 | (330) | 3.21 | 3.89 | 3.76 | 3.38 |
| | 통계량 | - | F=2.193, p=0.139 | F=0.915, p=0.339 | F=0.169, p=0.681 | F=0.314, p=0.575 |

D8.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 과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1)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보급
(2) 정서, 행동 상의 문제 학생을 위한 전문상담인력 확대
(3) 학생과의 소통 및 공감능력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
(4)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활동 활성화

### 〈표 Ⅳ-113〉 [학생] 학교폭력 예방 정책과제 중요도 (2/2)

(단위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5) | (6) | (7) | (8) |
|---|---|---|---|---|---|---|
| 전 체 | | (474) | 4.44 | 3.88 | 4.03 | 3.27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3.69 | 3.46 | 2.92 | 2.31 |
| | 피해경험 | (34) | 4.00 | 3.65 | 4.06 | 2.97 |
| | 가해/피해경험 | (23) | 4.04 | 3.43 | 4.00 | 3.30 |
| | 비경험 | (404) | 4.52 | 3.94 | 4.07 | 3.32 |
| | 통계량 | - | F=9.656, p=0.000 | F=2.937, p=0.033 | F=5.178, p=0.002 | F=3.972, p=0.008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구분 | | 사례수 | (5) | (6) | (7) | (8) |
|---|---|---|---|---|---|---|
| 성별 | 남성 | (206) | 4.24 | 3.74 | 3.98 | 3.30 |
| | 여성 | (268) | 4.60 | 4.00 | 4.07 | 3.24 |
| | 통계량 | - | F=21.116, p=0.000 | F=6.664, p=0.010 | F=1.043, p=0.308 | F=0.287, p=0.593 |
| 학교급별 | 중학생 | (144) | 4.37 | 3.90 | 4.11 | 3.42 |
| | 고등학생 | (330) | 4.47 | 3.88 | 4.00 | 3.20 |
| | 통계량 | - | F=1.482, p=0.224 | F=0.025, p=0.875 | F=1.197, p=0.275 | F=3.640, p=0.057 |

D8.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 과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5)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
(6)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및 대안교실 확대
(7)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
(8)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인 제도 확대

## (4) 학교폭력예방법 및 자치위원회에 대한 인식

### 가. 학교폭력예방법 및 자치위원회 인지여부

학생집단 중 학교폭력예방법 및 자치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75.1%로 나타났다. '모르겠다'는 응답비율도 24.9%로 나타났다.

**〈그림 Ⅳ-89〉 [학생] 학교폭력예방법 및 자치위원회 인지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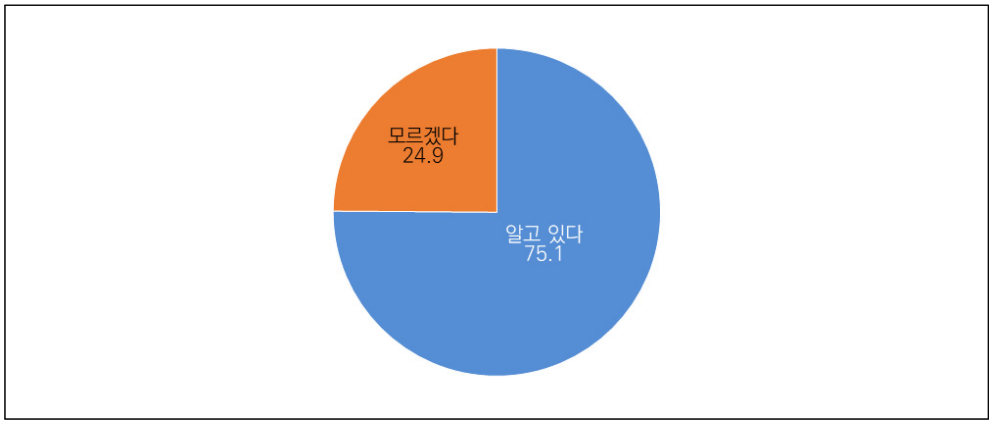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114〉 [학생] 학교폭력예방법 및 자치위원회 인지여부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알고 있다 | 모르겠다 | 통계량 |
|---|---|---|---|---|---|
| 전 체 | | (474) | 75.1 | 24.9 | -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84.6 | 15.4 | $\chi^2$=5.525, p=0.137 |
| | 피해경험 | (34) | 70.6 | 29.4 | |
| | 가해/피해경험 | (23) | 56.5 | 43.5 | |
| | 비경험 | (404) | 76.2 | 23.8 | |
| 성별 | 남성 | (206) | 75.7 | 24.3 | $\chi^2$=0.076, p=0.783 |
| | 여성 | (268) | 74.6 | 25.4 | |
| 학교급 별 | 중학생 | (144) | 71.5 | 28.5 | $\chi^2$=1.416, p=0.234 |
| | 고등학생 | (330) | 76.7 | 23.3 | |

D13. 학교폭력 예방 법률 및 자치위원회를 알고 있습니까?

### 나. 학교폭력예방법 및 자치위원회의 필요성

학생집단은 학교폭력예방법 및 자치위원회의 필요성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6.9%, '필요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1%로 나타났다. 학생집단 중 절대 다수가 학교폭력예방법 및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Ⅳ-90〉 [학생] 학교폭력예방법 및 자치위원회 필요도

(Base: 학교폭력예방법 및 자치위원회 인지 응답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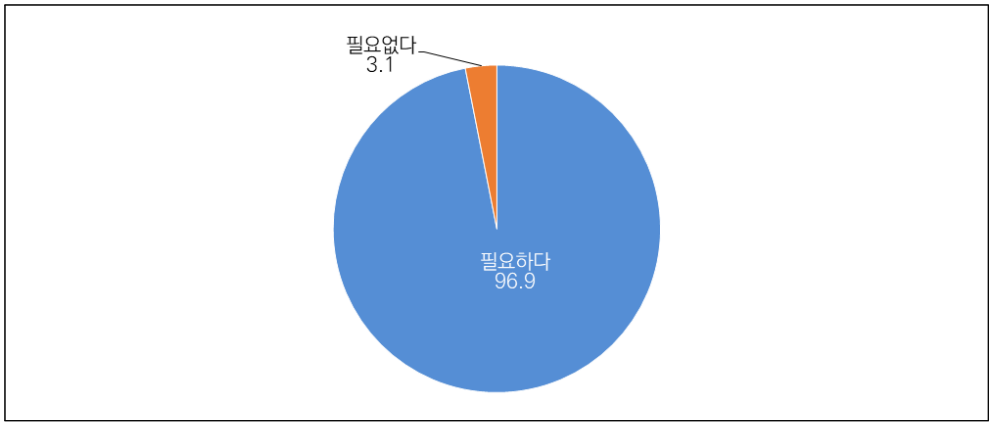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115〉 [학생] 학교폭력예방법 및 자치위원회 필요도

(Base: 학교폭력예방법 및 자치위원회 인지 응답자,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필요하다 | 필요없다 | 통계량 |
|---|---|---|---|---|---|
| 전 체 | | (356) | 96.9 | 3.1 | -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1) | 90.9 | 9.1 | $x^2$=1.859, p=0.602 |
| | 피해경험 | (24) | 95.8 | 4.2 | |
| | 가해/피해경험 | (13) | 100.0 | 0.0 | |
| | 비경험 | (308) | 97.1 | 2.9 | |
| 성별 | 남성 | (156) | 95.5 | 4.5 | $x^2$=1.811, p=0.178 |
| | 여성 | (200) | 98.0 | 2.0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03) | 94.2 | 5.8 | $x^2$=3.621, p=0.057 |
| | 고등학생 | (253) | 98.0 | 2.0 | |

D13-1. 학교폭력 예방 법률 및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다. 학교폭력예방법 및 자치위원회의 도움정도

학생집단 중 학교폭력예방법 및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7%,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6.0%,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비율은 12.4%였다.

〈그림 Ⅳ-91〉 [학생] 학교폭력예방법 및 자치위원회 도움도

(Base: 학교폭력예방법 및 자치위원회 인지 응답자, 단위 : %, 5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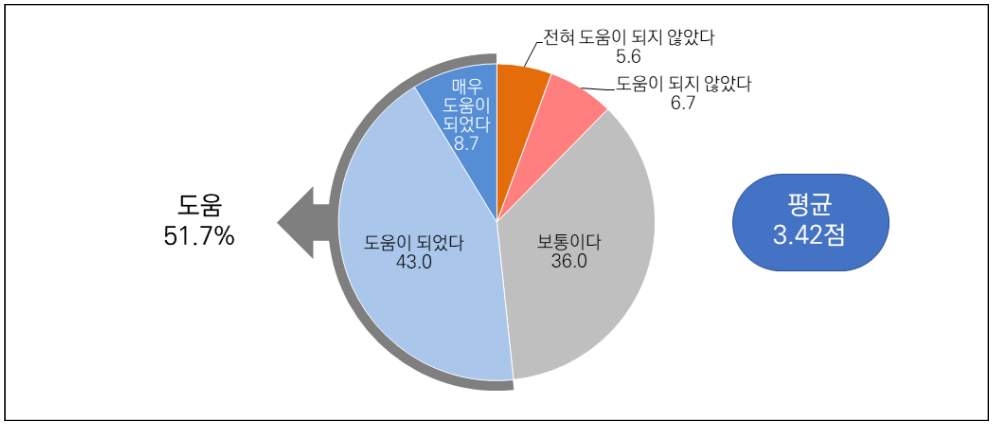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별로는 가해·피해경험집단(3.92점, F=4.515, p<0.01)이, 학교급별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는 중학생집단(3.61점, F=5.783, p<0.05)이 학교폭력예방법 및 자치위원회의 도움정도와 관련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Ⅳ-116〉 [학생] 학교폭력예방법 및 자치위원회 도움도**

(Base: 학교폭력예방법 및 자치위원회 인지 응답자, 단위 :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비도움 | 보통 | 도움 | 평균 | 통계량 |
|---|---|---|---|---|---|---|---|
| 전 체 | | (356) | 12.4 | 36.0 | 51.7 | 3.42 | -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1) | 27.3 | 18.2 | 54.5 | 3.00 | F=4.515, p=0.004 |
| | 피해경험 | (24) | 33.3 | 33.3 | 33.3 | 2.92 | |
| | 가해/피해경험 | (13) | 7.7 | 15.4 | 76.9 | 3.92 | |
| | 비경험 | (308) | 10.4 | 37.7 | 51.9 | 3.46 | |
| 성별 | 남성 | (156) | 13.5 | 33.3 | 53.2 | 3.47 | F=0.783, p=0.377 |
| | 여성 | (200) | 11.5 | 38.0 | 50.5 | 3.39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03) | 11.7 | 25.2 | 63.1 | 3.61 | F=5.783, p=0.017 |
| | 고등학생 | (253) | 12.6 | 40.3 | 47.0 | 3.35 | |

D13-2. 학교폭력 예방 법률 및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 (5) 경미한 학교폭력사건의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방안

#### 가.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방안에 대한 인식

학생집단이 경미한 학교폭력사건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2.8%였고, '반대한다'는 응답비율은 57.2%로 나타났다.

**〈그림 Ⅳ-92〉 [학생]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에 대한 인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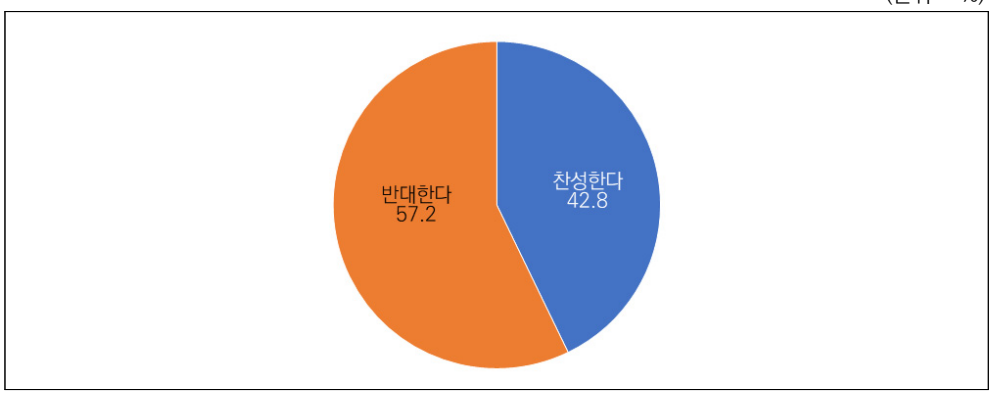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학교폭력 경험별($\chi^2$=7.956, p<0.05), 성별($\chi^2$=16.628, p<0.001), 학교급별($\chi^2$=6.192, p<0.05)에서 경미한 학교폭력사안의 자체해결에 대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응답결과를 보였다. 학교폭력 경험별로 가해경험집단(76.9%)이 가장 높았고, 피해경험집단(47.1%), 비경험집단(42.1%), 가해·피해경험집단(3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집단(53.4%),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집단(51.4%)에서 경미한 사안에 대한 학교의 자체해결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Ⅳ-117〉 [학생]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인식**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찬성한다 | 반대한다 | 통계량 |
|---|---|---|---|---|---|
| 전 체 | | (474) | 42.8 | 57.2 | -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76.9 | 23.1 | $\chi^2$=7.956, p=0.047 |
| | 피해경험 | (34) | 47.1 | 52.9 | |
| | 가해/피해경험 | (23) | 30.4 | 69.6 | |
| | 비경험 | (404) | 42.1 | 57.9 | |
| 성별 | 남성 | (206) | 53.4 | 46.6 | $\chi^2$=16.628, p=0.000 |
| | 여성 | (268) | 34.7 | 65.3 | |
| 학교급 별 | 중학생 | (144) | 51.4 | 48.6 | $\chi^2$=6.192, p=0.013 |
| | 고등학생 | (330) | 39.1 | 60.9 | |

D15.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담임교사나 학교장의 재량종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방안의 찬성이유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에 찬성하는 학생들은 그 이유로 '자치위원회 진행에 따른 피·가해학생과 보호자 사이의 갈등 확대 방지'(42.4%)를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처벌보다는 교육적 선도와 해결이 필요'(41.9%), '자치위원회 행정업무 감소로 교사 본연의 학생교육이 수행'(12.3%), '기타'(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Ⅳ-93〉 [학생]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찬성이유

(Base: 자체해결 찬성 응답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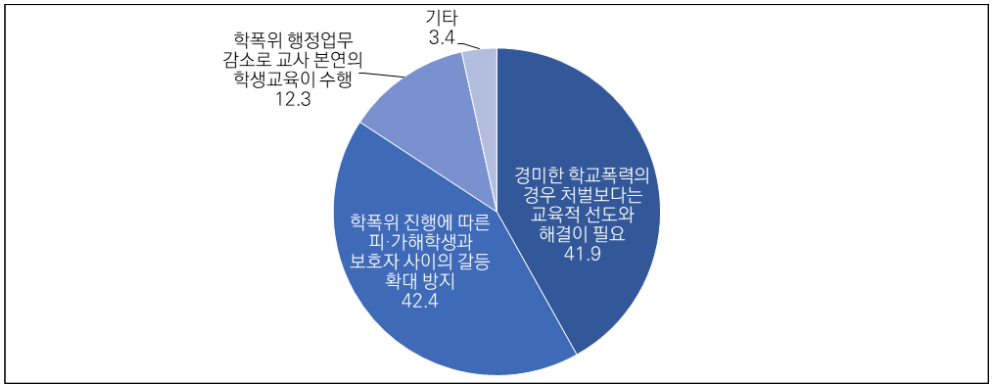


학생집단의 경우, 학교폭력 경험, 성별, 학교급별로 경미한 학교폭력사건의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찬성이유와 관련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Ⅳ-118〉 [학생]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찬성이유

(Base: 자체해결 찬성 응답자,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처벌보다는 교육적 선도와 해결이 필요 | 자치위원회 진행에 따른 피·가해 학생과 보호자 사이의 갈등 확대 방지 | 자치위원회 행정업무 감소로 교사 본연의 학생교육이 수행 | 기타 | 통계량 |
|---|---|---|---|---|---|---|---|
| 전 체 | | (203) | 41.9 | 42.4 | 12.3 | 3.4 | -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0) | 40.0 | 30.0 | 20.0 | 10.0 | $\chi^2$=12.301, p=0.197 |
| | 피해경험 | (16) | 25.0 | 43.8 | 31.3 | 0.0 | |
| | 가해/피해경험 | (7) | 71.4 | 14.3 | 14.3 | 0.0 | |
| | 비경험 | (170) | 42.4 | 44.1 | 10.0 | 3.5 | |
| 성별 | 남성 | (110) | 41.8 | 41.8 | 13.6 | 2.7 | $\chi^2$=0.719, p=0.869 |
| | 여성 | (93) | 41.9 | 43.0 | 10.8 | 4.3 | |
| 학교급별 | 중학생 | (74) | 41.9 | 44.6 | 10.8 | 2.7 | $\chi^2$=0.538, p=0.910 |
| | 고등학생 | (129) | 41.9 | 41.1 | 13.2 | 3.9 | |

D15-1.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학교 자체해결(담임교사나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다.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의 폭력유형 기준

학생집단은 학교가 자체해결할 수 있는 학교폭력유형으로 '단순싸움(말싸움)'(38.9%)을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헛소문/뒷말'(26.1%), '따돌림'(17.7%), '폭행'(13.8%), '상해'(2.0%), '기타'(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94〉 [학생]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기준**

(Base: 자체해결 찬성 응답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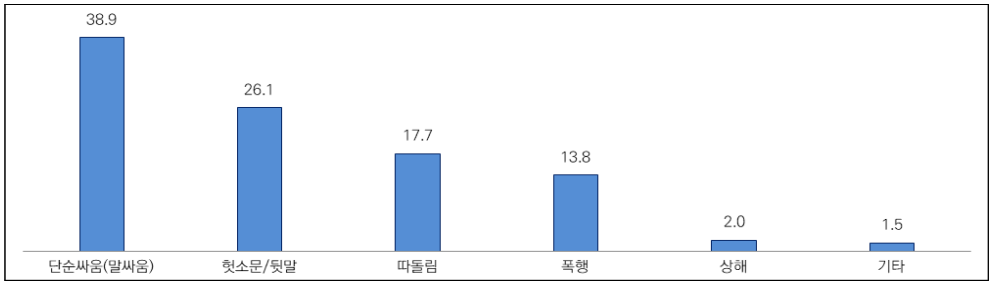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별로 가해경험집단과 가해·피해경험집단, 비경험집단은 '단순싸움(말싸움)', 피해경험집단은 '따돌림'과 '폭행'을 많이 응답했다. 성별, 학교급별로는 모든 유형에서 '단순싸움(말싸움)' 수준은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19〉 [학생]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기준**

(Base: 자체해결 찬성 응답자,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단순싸움(말싸움) | 헛소문/뒷말 | 따돌림 | 폭행 | 상해 | 기타 | 통계량 |
|---|---|---|---|---|---|---|---|---|---|
| 전 체 | | (203) | 38.9 | 26.1 | 17.7 | 13.8 | 2.0 | 1.5 | -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0) | 30.0 | 20.0 | 20.0 | 20.0 | 0.0 | 10.0 | $\chi^2$=24.803, p=0.053 |
| | 피해경험 | (16) | 18.8 | 12.5 | 31.3 | 31.3 | 6.3 | 0.0 | |
| | 가해/피해경험 | (7) | 57.1 | 14.3 | 0.0 | 14.3 | 14.3 | 0.0 | |
| | 비경험 | (170) | 40.6 | 28.2 | 17.1 | 11.8 | 1.2 | 1.2 | |
| 성별 | 남성 | (110) | 35.5 | 23.6 | 16.4 | 18.2 | 3.6 | 2.7 | $\chi^2$=10.827, p=0.055 |
| | 여성 | (93) | 43.0 | 29.0 | 19.4 | 8.6 | 0.0 | 0.0 | |
| 학교급별 | 중학생 | (74) | 35.1 | 33.8 | 14.9 | 13.5 | 1.4 | 1.4 | $\chi^2$=3.842, p=0.572 |
| | 고등학생 | (129) | 41.1 | 21.7 | 19.4 | 14.0 | 2.3 | 1.6 | |

D15-2. 학교 자체해결(담임교사나 학교의 장의의 자체해결)을 원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의 조건

학생집단은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의 조건으로 '피해학생 또는 부모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절차를 원하지 않는 경우'(33.5%)를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16.3%), '사안이 학교폭력 판단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13.8%),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13.3%), '학교폭력으로 분류되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화해와 관계회복이 이루어진 경우'(11.8%), '교사로서 판단하기에 대등한 당사자 간의 싸움으로 생활지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경우'(10.8%), '기타'(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95〉 [학생]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

(Base: 자체해결 찬성 응답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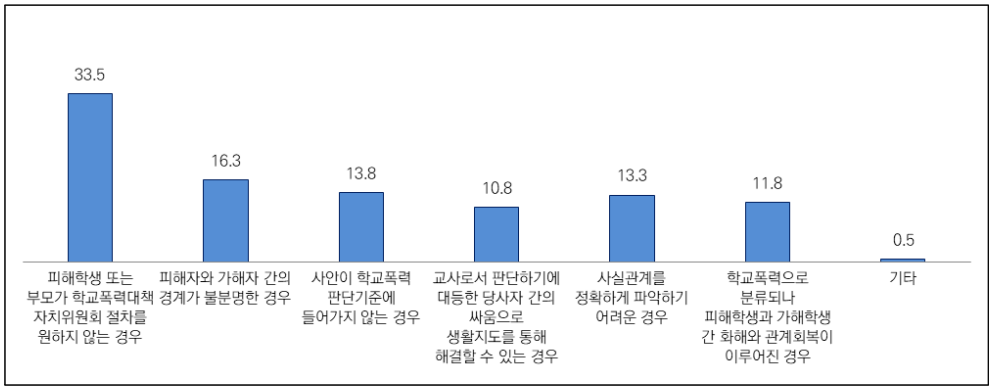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별로 가해경험집단은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경험집단은 '사안이 학교폭력 판단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교사로서 판단하기에 대등한 당사자 간의 싸움으로 생활지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경우', 가해·피해경험집단과 비경험집단은 '피해학생 또는 부모가 자치위원회 절차를 원하지 않는 경우'를 가장 많이 답했다.

응답자의 특성별 학교 자체해결 사안을 비교해 본 결과 성별($\chi^2$=13.544, $p<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피해학생 또는 부모가 자치위원회 절차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여학생집단(43.0%)이 남학생(25.5%)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교사로서 판단하기에 대등한 당사자 간의 싸움으로 생활지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남학생집단(15.5%)이 여학생집단(5.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표 Ⅳ-120〉 [학생]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 (1/2)

(Base: 자체해결 찬성 응답자,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
| 전 체 | | (203) | 33.5 | 16.3 | 13.8 | 10.8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0) | 20.0 | 20.0 | 0.0 | 20.0 |
| | 피해경험 | (16) | 18.8 | 12.5 | 25.0 | 25.0 |
| | 가해/피해경험 | (7) | 28.6 | 14.3 | 14.3 | 14.3 |
| | 비경험 | (170) | 35.9 | 16.5 | 13.5 | 8.8 |
| 성별 | 남성 | (110) | 25.5 | 17.3 | 15.5 | 15.5 |
| | 여성 | (93) | 43.0 | 15.1 | 11.8 | 5.4 |
| 학교급 별 | 중학생 | (74) | 32.4 | 14.9 | 14.9 | 14.9 |
| | 고등학생 | (129) | 34.1 | 17.1 | 13.2 | 8.5 |

D15-3. 어떤 사안인 경우 자치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학교 자체해결(담임교사나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하시길 원하십니까?

(1) 피해학생 또는 부모가 자치위원회 절차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3) 사안이 학교폭력 판단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4) 교사로서 판단하기에 대등한 당사자 간의 싸움으로 생활지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경우.

### 〈표 Ⅳ-121〉 [학생]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 (2/2)

(Base: 자체해결 찬성 응답자,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5) | (6) | (7) | 통계량 |
|---|---|---|---|---|---|---|
| 전 체 | | (203) | 13.3 | 11.8 | 0.5 | -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0) | 30.0 | 10.0 | 0.0 | $x^2$=12.407, p=0.826 |
| | 피해경험 | (16) | 12.5 | 6.3 | 0.0 | |
| | 가해/피해경험 | (7) | 14.3 | 14.3 | 0.0 | |
| | 비경험 | (170) | 12.4 | 12.4 | 0.6 | |
| 성별 | 남성 | (110) | 16.4 | 10.0 | 0.0 | $x^2$=13.544, p=0.035 |
| | 여성 | (93) | 9.7 | 14.0 | 1.1 | |
| 학교급 별 | 중학생 | (74) | 14.9 | 8.1 | 0.0 | $x^2$=4.165, p=0.654 |
| | 고등학생 | (129) | 12.4 | 14.0 | 0.8 | |

D15-3. 어떤 사안인 경우 자치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학교 자체해결(담임교사나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하시길 원하십니까?

(5)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6) 학교폭력으로 분류되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화해와 관계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7) 기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마.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방안의 반대이유

학생집단 중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을 반대하는 경우, 그 반대이유로 '학교나 가해학생 측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할 위험'(70.5%)을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모든 학교폭력은 경미하지 않은 폭력으로 보고 대처'(14.8%), '경미한 학교폭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11.4%), '기타'(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96〉 [학생]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반대이유**

(Base: 자체해결 반대 응답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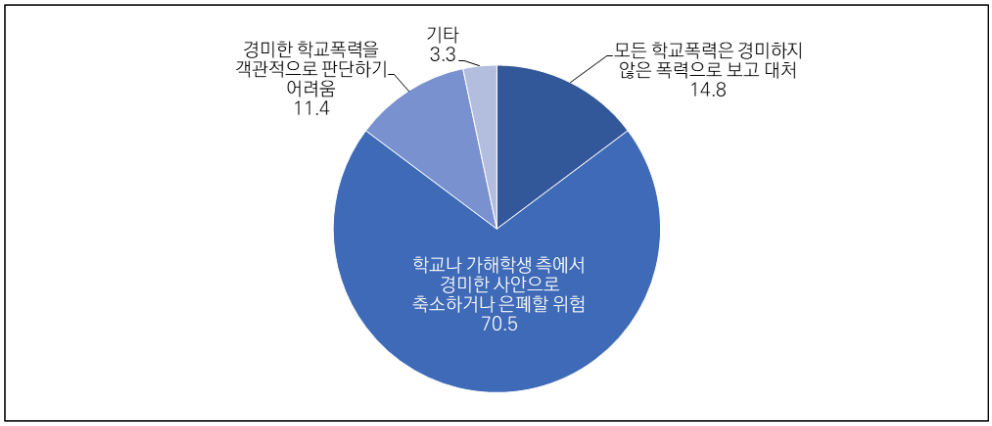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별로 가해경험집단은 '모든 학교폭력은 경미하지 않은 폭력으로 보고 대처', 피해경험집단과 가해/피해경험집단, 비경험집단은 '학교나 가해학생 측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할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 학교급별로 모든 유형에서 '학교나 가해학생 측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할 위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122〉 [학생]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반대이유

(Base: 자체해결 반대 응답자,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모든 학교폭력은 경미하지 않은 폭력으로 보고 대처 | 학교나 가해학생 측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할 위험 | 경미한 학교폭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기타 | 통계량 |
|---|---|---|---|---|---|---|---|
| 전 체 | | (271) | 14.8 | 70.5 | 11.4 | 3.3 | -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3) | 66.7 | 33.3 | 0.0 | 0.0 | $\chi^2$=8.535, p=0.481 |
| | 피해경험 | (18) | 22.2 | 66.7 | 11.1 | 0.0 | |
| | 가해/피해경험 | (16) | 12.5 | 68.8 | 12.5 | 6.3 | |
| | 비경험 | (234) | 13.7 | 71.4 | 11.5 | 3.4 | |
| 성별 | 남성 | (96) | 14.6 | 68.8 | 15.6 | 1.0 | $\chi^2$=4.669, p=0.198 |
| | 여성 | (175) | 14.9 | 71.4 | 9.1 | 4.6 | |
| 학교급별 | 중학생 | (70) | 14.3 | 74.3 | 11.4 | 0.0 | $\chi^2$=3.343, p=0.342 |
| | 고등학생 | (201) | 14.9 | 69.2 | 11.4 | 4.5 | |

D15-4.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학교 자체해결(담임교사나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바.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방안에 대한 우려사항

학생집단은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시 우려사항으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우려'(24.9%)를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가해학생의 잘못 인식과 진정한 반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우려'(20.7%),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조치가 재범방지를 위해 비효과적이라는 우려'(15.4%),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에 대한 우려'(9.5%), '가해학생 부모들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7.2%), '피해학생 부모들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6.8%), '없다'(6.3%),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 짓기 어려워 자치위원회 처리가 적합하지 않음'(5.3%), '향후 재심에 대한 우려'(2.3%), '기타'(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Ⅳ-97〉 [학생]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우려사항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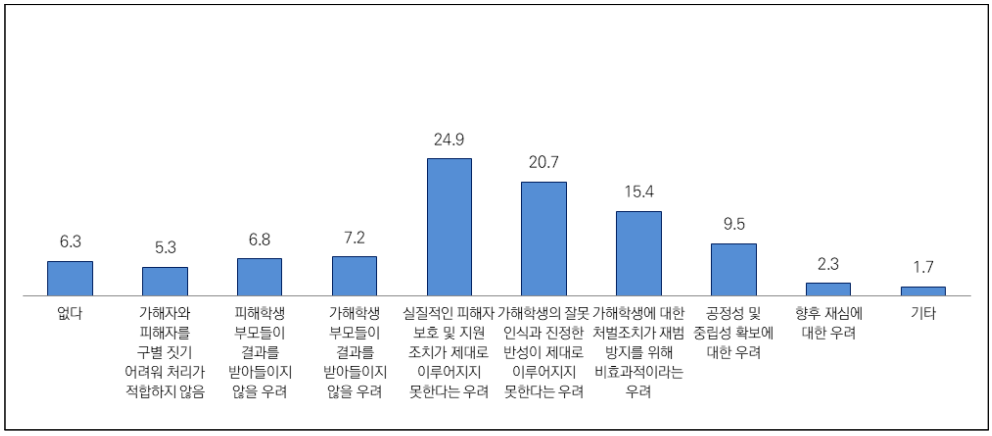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별로 가해경험집단, 피해경험집단, 비경험집단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우려', 가해·피해경험집단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조치가 재범방지를 위해 비효과적이라는 우려'가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집단에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우려'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 중학생집단에서 '가해학생의 잘못 인식과 진정한 반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우려', 고등학생집단에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우려'가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별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시 우려사항을 비교해 본 결과, 학교 폭력 경험별($\chi^2$=44.343, p<0.05)과 성별($\chi^2$=27.814, p<0.001), 학교급별($\chi^2$=16.912, p<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Ⅳ-123〉 [학생]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우려사항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5) | (6) |
|---|---|---|---|---|---|---|---|---|
| 전 체 | | (474) | 6.3 | 5.3 | 6.8 | 7.2 | 24.9 | 20.7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23.1 | 0.0 | 7.7 | 15.4 | 30.8 | 15.4 |
| | 피해경험 | (34) | 2.9 | 5.9 | 14.7 | 17.6 | 26.5 | 8.8 |
| | 가해/피해경험 | (23) | 4.3 | 0.0 | 17.4 | 4.3 | 21.7 | 4.3 |
| | 비경험 | (404) | 6.2 | 5.7 | 5.4 | 6.2 | 24.8 | 22.8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5) | (6) |
|---|---|---|---|---|---|---|---|---|
| 성별 | 남성 | (206) | 11.7 | 5.8 | 9.2 | 6.8 | 19.9 | 18.9 |
| | 여성 | (268) | 2.2 | 4.9 | 4.9 | 7.5 | 28.7 | 22.0 |
| 학교급별 | 중학생 | (144) | 10.4 | 7.6 | 8.3 | 7.6 | 16.7 | 19.4 |
| | 고등학생 | (330) | 4.5 | 4.2 | 6.1 | 7.0 | 28.5 | 21.2 |

D16. 자치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학교 자체해결(담임교사나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시 우려 점은 무엇입니까?

(1) 없다.
(2)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 짓기 어려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리가 적합하지 않음.
(3) 피해학생 부모들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
(4) 가해학생 부모들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
(5)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우려.
(6) 가해학생의 잘못 인식과 진정한 반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우려.

### 〈표 Ⅳ-124〉 [학생]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우려사항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7) | (8) | (9) | (10) | 통계량 |
|---|---|---|---|---|---|---|---|
| 전 체 | | (474) | 15.4 | 9.5 | 2.3 | 1.7 | -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0.0 | 7.7 | 0.0 | 0.0 | $\chi^2$=44.343, p=0.019 |
| | 피해경험 | (34) | 20.6 | 0.0 | 0.0 | 2.9 | |
| | 가해/피해경험 | (23) | 30.4 | 17.4 | 0.0 | 0.0 | |
| | 비경험 | (404) | 14.6 | 9.9 | 2.7 | 1.7 | |
| 성별 | 남성 | (206) | 12.1 | 11.2 | 2.4 | 1.9 | $\chi^2$=27.814, p=0.001 |
| | 여성 | (268) | 17.9 | 8.2 | 2.2 | 1.5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44) | 16.7 | 9.0 | 3.5 | 0.7 | $\chi^2$=16.912, p=0.050 |
| | 고등학생 | (330) | 14.8 | 9.7 | 1.8 | 2.1 | |

D16. 자치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학교 자체해결(담임교사나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시 우려 점은 무엇입니까?

(7)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조치가 재범방지를 위해 비효과적이라는 우려.
(8)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에 대한 우려.
(9) 향후 재심에 대한 우려.
(10) 기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6) 가해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삭제에 대한 인식

#### 가. 가해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삭제

학생집단은 가해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삭제와 관련해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73.8%)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다. 다음으로 '일부조치만 졸업 시 즉시 삭제한다'(17.5%), '조치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3.8%), '졸업 이전에 삭제한다'(3.4%), '기타'(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98〉 [학생] 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인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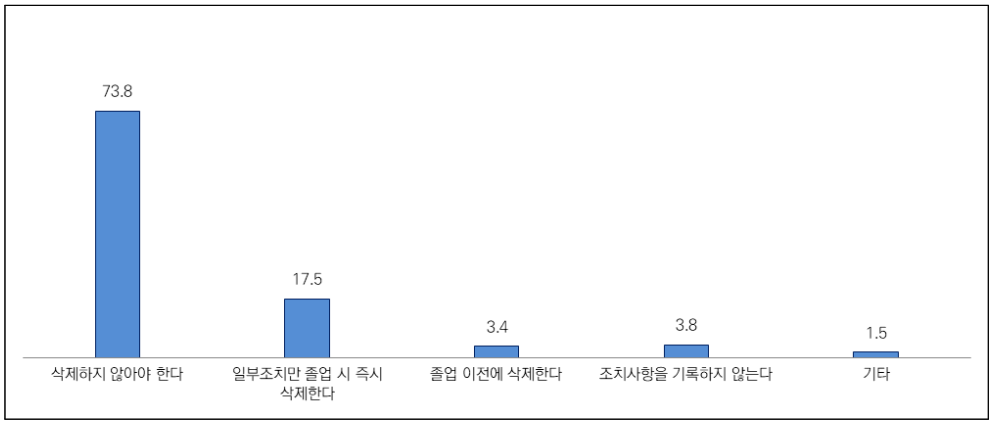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별로 가해경험집단은 '일부조치만 졸업 시 즉시 삭제한다', 피해경험집단, 가해·피해경험집단, 비경험집단은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가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 학교급별로 모든 유형에서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응답자의 특성별 가해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인식을 비교해 본 결과, 학교 폭력 경험별($\chi^2$ =80.215, $p<0.001$)과 성별($\chi^2$=12.109, $p<0.05$), 학교급별($\chi^2$=10.352, $p<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125〉 [학생] 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인식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 | 일부조치만 졸업 시 즉시 삭제한다 | 졸업 이전에 삭제한다 | 조치 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 기타 | 통계량 |
|---|---|---|---|---|---|---|---|---|
| 전 체 | | (474) | 73.8 | 17.5 | 3.4 | 3.8 | 1.5 | -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15.4 | 46.2 | 7.7 | 30.8 | 0.0 | $\chi^2$=80.215, p=0.000 |
| | 피해경험 | (34) | 67.6 | 14.7 | 5.9 | 8.8 | 2.9 | |
| | 가해/피해경험 | (23) | 43.5 | 21.7 | 21.7 | 13.0 | 0.0 | |
| | 비경험 | (404) | 78.0 | 16.6 | 2.0 | 2.0 | 1.5 | |
| 성별 | 남성 | (206) | 67.5 | 20.9 | 4.4 | 6.3 | 1.0 | $\chi^2$=12.109, p=0.017 |
| | 여성 | (268) | 78.7 | 14.9 | 2.6 | 1.9 | 1.9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44) | 70.8 | 18.8 | 2.1 | 7.6 | 0.7 | $\chi^2$=10.352, p=0.035 |
| | 고등학생 | (330) | 75.2 | 17.0 | 3.9 | 2.1 | 1.8 | |

D17. 현재는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졸업 시나 일정 기간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조치 기록을 어떻게 하는

### 나. 가해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유지의 이유

학생집단 중 가해학생 선도조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 '미기재시 가해학생들의 반성을 이끌어내기 어려움'(45.4%)을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 효과가 약화'(43.7%), '피해학생 보호 효과가 줄어듦'(8.3%), '기타'(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99〉 [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유지 이유

(Base: 선도조치 기록유지 응답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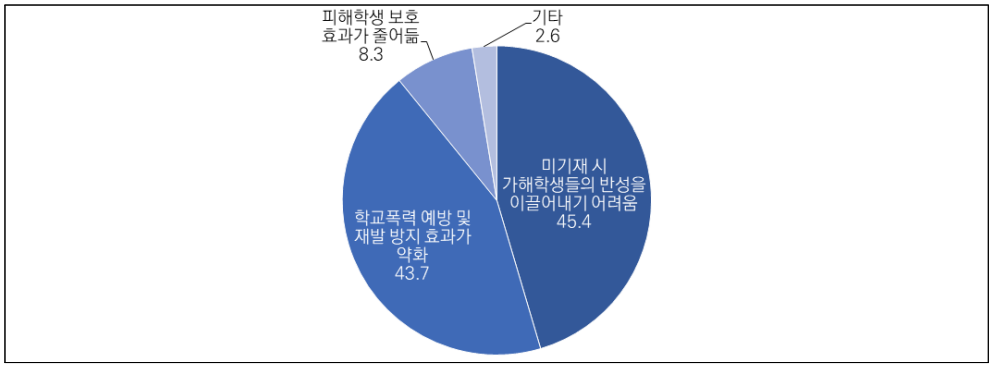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학교폭력 경험별로 가해경험집단은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 효과가 약화', 피해경험집단과 비경험집단은 '미기재시 가해학생들의 반성을 이끌어내기 어려움', 가해·피해경험집단은 '미기재시 가해학생들의 반성을 이끌어내기 어려움',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 효과가 약화'가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미기재시 가해학생들의 반성을 이끌어내기 어려움'에 대한 응답비율이 가장 많았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집단에서 '미기재시 가해학생들의 반성을 이끌어내기 어려움', 고등학생집단은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 효과가 약화'가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별 가해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유지 이유를 비교해 본 결과. 학교급별($\chi^2$ = 7.840, p<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Ⅳ-126〉 [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유지 이유**

(Base: 선도조치 기록유지 응답자,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미기재 시 가해학생들의 반성을 이끌어내기 어려움 |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 효과가 약화 | 피해학생 보호 효과가 줄어듦 | 기타 | 통계량 |
|---|---|---|---|---|---|---|---|
| 전 체 | | (350) | 45.4 | 43.7 | 8.3 | 2.6 | -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2) | 0.0 | 100.0 | 0.0 | 0.0 | $\chi^2$=5.777, p=0.762 |
| | 피해경험 | (23) | 52.2 | 34.8 | 13.0 | 0.0 | |
| | 가해/피해경험 | (10) | 50.0 | 50.0 | 0.0 | 0.0 | |
| | 비경험 | (315) | 45.1 | 43.8 | 8.3 | 2.9 | |
| 성별 | 남성 | (139) | 43.9 | 42.4 | 10.8 | 2.9 | $\chi^2$=2.037, p=0.565 |
| | 여성 | (211) | 46.4 | 44.5 | 6.6 | 2.4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02) | 55.9 | 34.3 | 8.8 | 1.0 | $\chi^2$=7.840, p=0.049 |
| | 고등학생 | (248) | 41.1 | 47.6 | 8.1 | 3.2 | |

D17-1. 삭제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다. 가해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삭제 이유

학생집단 중 가해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를 삭제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 '가해학생이 반성한 경우에도 낙인효과가 남는 것을 방지'(71.1%)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미기재시 교사가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는 가능성'(16.9%), '가해학생 반발에 따른 가·피해학생 간 법적 다툼 발생을 완화'(8.4%), '기타'(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00〉 [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삭제 이유**

(Base: 선도조치 기록삭제 응답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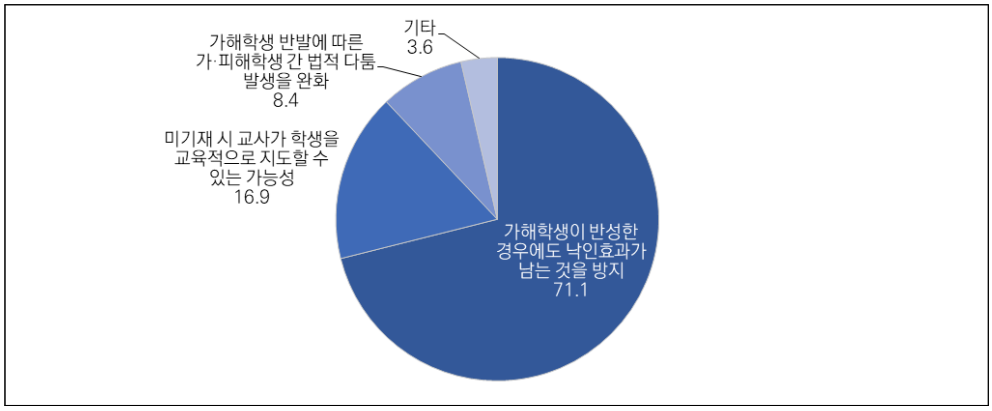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별, 성별, 학교급별로 모든 유형에서 '가해학생이 반성한 경우에도 낙인효과가 남는 것을 방지'가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별 가해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삭제 이유를 비교해 본 결과, 학교폭력 경험별($\chi^2$=25.489,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Ⅳ-127〉 [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삭제 이유**

(Base: 선도조치 기록삭제 응답자,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가해학생이 반성한 경우에도 낙인효과가 남는 것을 방지 | 미기재 시 교사가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가능성 | 가해학생 반발에 따른 가·피해학생 간 법적 다툼 발생을 완화 | 기타 | 통계량 |
|---|---|---|---|---|---|---|---|
| 전 체 | | (83) | 71.1 | 16.9 | 8.4 | 3.6 | -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6) | 66.7 | 0.0 | 0.0 | 33.3 | $\chi^2$=25.489, p=0.002 |
| | 피해경험 | (5) | 60.0 | 20.0 | 0.0 | 20.0 | |
| | 가해/피해경험 | (5) | 100.0 | 0.0 | 0.0 | 0.0 | |
| | 비경험 | (67) | 70.1 | 19.4 | 10.4 | 0.0 |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구분 | | 사례수 | 가해학생이 반성한 경우에도 낙인효과가 남는 것을 방지 | 미기재 시 교사가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가능성 | 가해학생 반발에 따른 가·피해학생 간 법적 다툼 발생을 완화 | 기타 | 통계량 |
|---|---|---|---|---|---|---|---|
| 성별 | 남성 | (43) | 69.8 | 18.6 | 9.3 | 2.3 | $x^2$ =0.671, p=0.880 |
| | 여성 | (40) | 72.5 | 15.0 | 7.5 | 5.0 | |
| 학교급별 | 중학생 | (27) | 74.1 | 22.2 | 3.7 | 0.0 | $x^2$ =3.239, p=0.356 |
| | 고등학생 | (56) | 69.6 | 14.3 | 10.7 | 5.4 | |

D17-2. 삭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7)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도움정도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도움정도는 '전학'(4.05점)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피해학생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3.80점), '출석정지'(3.52점), '학급교체'(3.27점),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3.17점),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68점), '사회봉사'(2.61점), '학교에서의 봉사'(2.3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01〉 [학생]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도움정도**

(단위 : 5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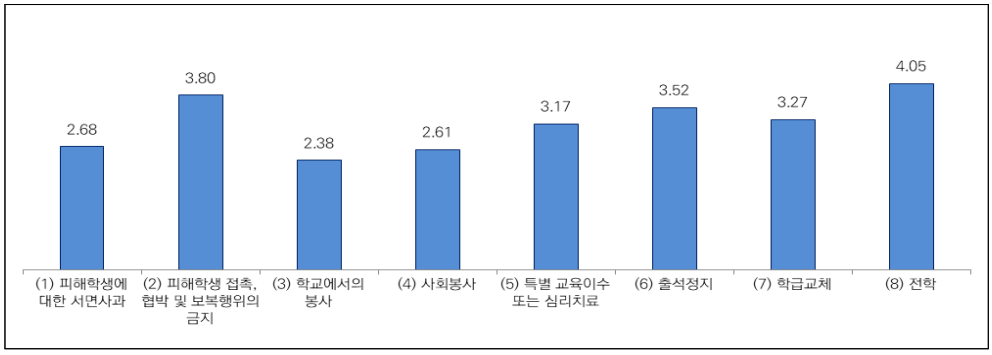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별, 성별, 학교급별로 모든 유형에서 '전학'이 가장 도움정도가 높은 것으로 답했다. 응답자의 특성별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도움정도를 비교해 본 결과, 학교폭력 경험별 가해/피해경험집단은 '사회봉사'(3.35점, F=3.068, p<0.05)가 유의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미하게 도움 정도가 높은 것으로 응답했다. 비경험집단은 '피해학생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3.86점, F=3.463, p<0.05),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3.22점, F=3.514, p<0.05), '전학'(4.09점, F=2.882, p<0.05)에서 유의미하게 도움 정도가 높은 것으로 응답했다.

여학생집단은 '피해학생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3.97점, F=14.546, p<0.001)에서 유의미하게 도움 정도가 높은 것으로 응답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집단이 '학교에서의 봉사'(2.64점, F=10.090, p<0.01), '사회봉사'(2.86점, F=8.646, p<0.01) '출석정지' (3.69점, F=3.986, p<0.05)에서 유의미하게 도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답했다.

**〈표 Ⅳ-128〉 [학생]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도움도 (1/2)**

(단위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
| 전 체 | | (474) | 2.68 | 3.80 | 2.38 | 2.61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2.46 | 3.15 | 2.08 | 2.46 |
| | 피해경험 | (34) | 2.59 | 3.38 | 2.41 | 2.71 |
| | 가해/피해경험 | (23) | 2.78 | 3.83 | 3.00 | 3.35 |
| | 비경험 | (404) | 2.68 | 3.86 | 2.35 | 2.56 |
| | 통계량 | - | F=0.285, p=0.836 | F=3.463, p=0.016 | F=2.494, p=0.059 | F=3.068, p=0.028 |
| 성별 | 남성 | (206) | 2.65 | 3.58 | 2.46 | 2.65 |
| | 여성 | (268) | 2.69 | 3.97 | 2.32 | 2.58 |
| | 통계량 | - | F=0.166, p=0.684 | F=14.546, p=0.000 | F=1.524, p=0.218 | F=0.306, p=0.581 |
| 학교급별 | 중학생 | (144) | 2.82 | 3.83 | 2.64 | 2.86 |
| | 고등학생 | (330) | 2.61 | 3.79 | 2.27 | 2.50 |
| | 통계량 | - | F=3.261, p=0.072 | F=0.167, p=0.683 | F=10.090, p=0.002 | F=8.646, p=0.003 |

D18. 다음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선도·교육 조치입니다. 다음 방법들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129〉 [학생]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도움도 (2/2)

(단위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5) | (6) | (7) | (8) |
|---|---|---|---|---|---|---|
| 전 체 | | (474) | 3.17 | 3.52 | 3.27 | 4.05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2.15 | 2.85 | 3.08 | 3.23 |
| | 피해경험 | (34) | 3.09 | 3.68 | 3.41 | 3.97 |
| | 가해/피해경험 | (23) | 3.04 | 3.65 | 3.17 | 3.96 |
| | 비경험 | (404) | 3.22 | 3.52 | 3.27 | 4.09 |
| | 통계량 | - | F=3.514, p=0.015 | F=1.560, p=0.198 | F=0.273, p=0.845 | F=2.882, p=0.035 |
| 성별 | 남성 | (206) | 3.13 | 3.47 | 3.17 | 3.95 |
| | 여성 | (268) | 3.20 | 3.57 | 3.34 | 4.13 |
| | 통계량 | - | F=0.401, p=0.527 | F=0.778, p=0.378 | F=2.093, p=0.149 | F=3.357, p=0.068 |
| 학교급 별 | 중학생 | (144) | 3.33 | 3.69 | 3.38 | 4.08 |
| | 고등학생 | (330) | 3.10 | 3.45 | 3.22 | 4.03 |
| | 통계량 | - | F=3.813, p=0.051 | F=3.986, p=0.046 | F=1.606, p=0.206 | F=0.221, p=0.639 |

D18. 다음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선도·교육 조치입니다. 다음 방법들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5)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 (8) 가해학생 일부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유보방안에 대한 인식

가해학생 선도조치 중 단계별로 일부기재를 유보하는 방안에 대해 '도움이 될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53.4%였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3.8%, '도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2.9%였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Ⅳ-102〉 [학생] 가해학생 일부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유보 인식

(단위 : %, 5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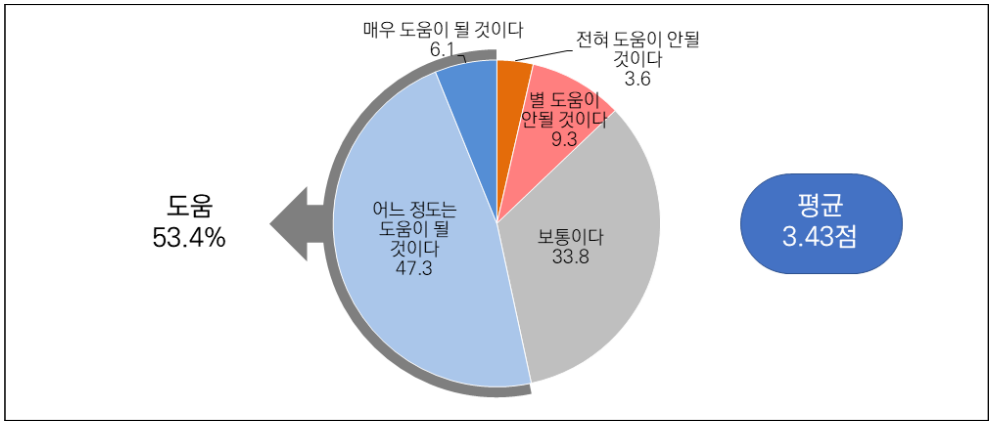


〈표 Ⅳ-130〉 [학생] 가해학생 일부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유보 인식

(단위 :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비도움 | 보통 | 도움 | 평균 | 통계량 |
|---|---|---|---|---|---|---|---|
| 전 체 | | (474) | 12.9 | 33.8 | 53.4 | 3.43 | -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23.1 | 30.8 | 46.2 | 3.15 | F=2.316, p=0.075 |
| | 피해경험 | (34) | 17.6 | 50.0 | 32.4 | 3.12 | |
| | 가해/피해경험 | (23) | 8.7 | 39.1 | 52.2 | 3.61 | |
| | 비경험 | (404) | 12.4 | 32.2 | 55.4 | 3.46 | |
| 성별 | 남성 | (206) | 12.6 | 38.8 | 48.5 | 3.38 | F=1.040, p=0.308 |
| | 여성 | (268) | 13.1 | 29.9 | 57.1 | 3.47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44) | 10.4 | 31.3 | 58.3 | 3.53 | F=2.937, p=0.087 |
| | 고등학생 | (330) | 13.9 | 34.8 | 51.2 | 3.38 | |

D19.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선도·교육 조치 중 1호~3호는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는 대신, 아래와 같은 3단계 안전장치를 적용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방안이 학교폭력의 처리

### (9) 피해학생 보호조치 도움정도

학생집단에게 피해학생 대상의 보호조치 도움정도를 5점 만점으로 물어본 결과, '기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3.88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3.68점), '심리상담 및 조언'(3.60점), '일시 보호'(3.47점), '학급교체'(3.2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Ⅳ-103〉 [학생] 피해학생 보호조치 도움정도

(단위 : 5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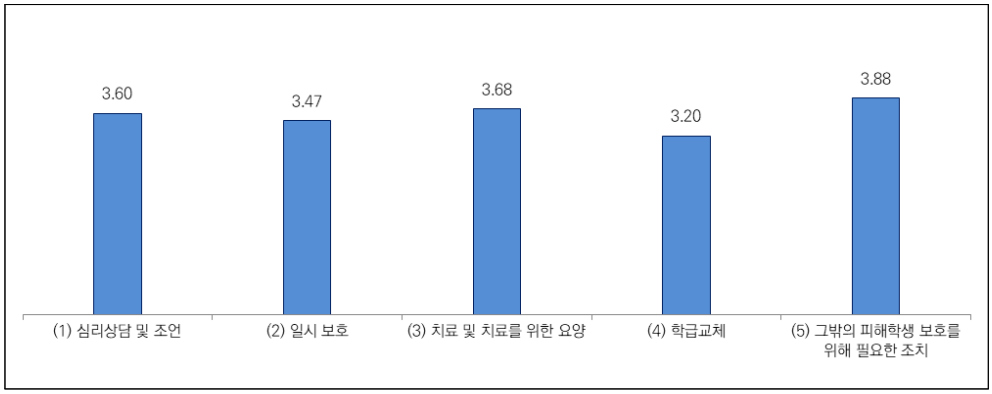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별, 성별, 학교급별로 모든 유형에서 '그 밖의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별 피해학생 보호조치 도움도를 비교해 본 결과, 학교폭력 비경험집단은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3.73점, F=2.793, p<0.05)에서 유의미하게 도움 정도가 높은 것으로 응답했다. 여학생집단은 '심리상담 및 조언'(3.74점, F=11.053, p<0.001), '일시 보호'(3.60점, F=10.140, p<0.01),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3.85점, F=20.559, p<0.001), '학급교체'(3.34점, F=9.344, p<0.01), '그 밖의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4.03점, F=16.109, p<0.001)에서 남학생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로 답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집단이 '일시 보호'(3.65점, F=5.816, p<0.05)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로 응답했다.

〈표 Ⅳ-131〉 [학생] 피해학생 보호조치 도움도

(단위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5) |
|---|---|---|---|---|---|---|---|
| 전 체 | | (474) | 3.60 | 3.47 | 3.68 | 3.20 | 3.88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3.31 | 3.15 | 3.15 | 3.23 | 3.54 |
| | 피해경험 | (34) | 3.35 | 3.29 | 3.44 | 3.26 | 3.59 |
| | 가해/피해경험 | (23) | 3.61 | 3.65 | 3.43 | 3.09 | 3.78 |
| | 비경험 | (404) | 3.63 | 3.49 | 3.73 | 3.20 | 3.92 |
| | 통계량 | - | F=1.230, p=0.298 | F=1.000, p=0.392 | F=2.793, p=0.040 | F=0.108, p=0.955 | F=1.912, p=0.127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5) |
|---|---|---|---|---|---|---|---|
| 성별 | 남성 | (206) | 3.43 | 3.30 | 3.45 | 3.01 | 3.68 |
| | 여성 | (268) | 3.74 | 3.60 | 3.85 | 3.34 | 4.03 |
| | 통계량 | - | F=11.053, p=0.001 | F=10.140, p=0.002 | F=20.559, p=0.000 | F=9.344, p=0.002 | F=16.109, p=0.000 |
| 학교급별 | 중학생 | (144) | 3.64 | 3.65 | 3.80 | 3.32 | 3.85 |
| | 고등학생 | (330) | 3.59 | 3.40 | 3.63 | 3.14 | 3.89 |
| | 통계량 | - | F=0.264, p=0.608 | F=5.816, p=0.016 | F=3.085, p=0.080 | F=2.283, p=0.132 | F=0.124, p=0.725 |

D20. 다음은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에게 취해지는 보호조치입니다. 다음 방법들이 피해학생의 보호와 안정을 취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 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밖의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 (10) 학교폭력 자진신고·피해신고 기간에 대한 인식

### 가. 자진신고·피해신고기간에 대한 인지여부

학생집단이 자진신고·피해신고 기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2%,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65.8%로 나타났다.

**〈그림 Ⅳ-104〉 [학생] 자진신고·피해신고 기간 운영 인지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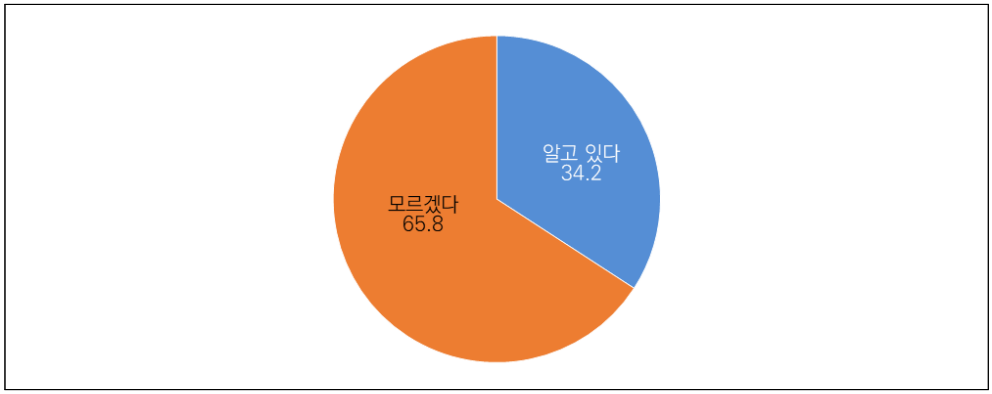


응답자의 성별로는 남학생(40.8%)이 여학생(29.1%)에 비해 유의하게($\chi^2$=7.054, p<0.01)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132〉 [학생] 자진신고·피해신고 기간 운영 인지여부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알고 있다 | 모르겠다 | 통계량 |
|---|---|---|---|---|---|
| 전 체 | | (474) | 34.2 | 65.8 | -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23.1 | 76.9 | $\chi^2$=1.647, p=0.649 |
| | 피해경험 | (34) | 32.4 | 67.6 | |
| | 가해/피해경험 | (23) | 43.5 | 56.5 | |
| | 비경험 | (404) | 34.2 | 65.8 | |
| 성별 | 남성 | (206) | 40.8 | 59.2 | $\chi^2$=7.054, p=0.008 |
| | 여성 | (268) | 29.1 | 70.9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44) | 34.0 | 66.0 | $\chi^2$=0.002, p=0.964 |
| | 고등학생 | (330) | 34.2 | 65.8 | |

D21.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나. 자진신고·피해신고 기간 운영 도움도

학생집단 중 자진신고·피해신고 기간운영의 도움정도와 관련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1%로 나타났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3.2%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비율은 16.7%였다.

〈그림 Ⅳ-105〉 [학생] 자진신고·피해신고 기간 운영 인지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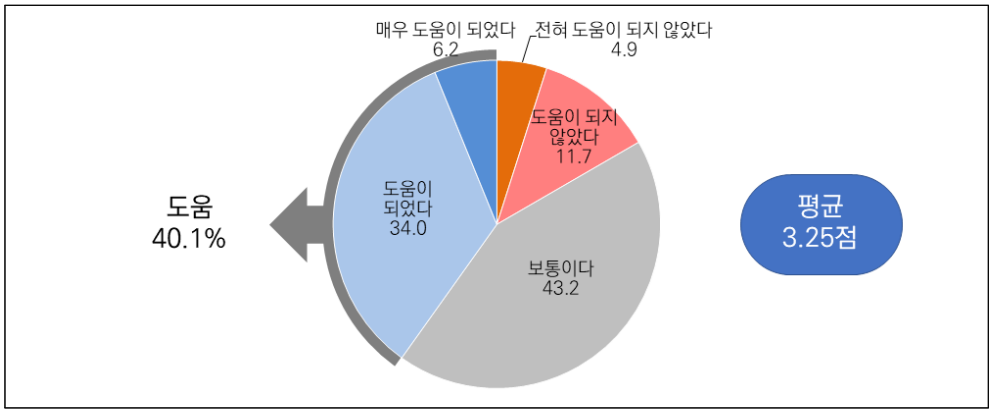


학교폭력 비경험집단(3.32점, F=3.002, p〈0.05)에서 '자진신고·피해신고 기간 운영의 도움'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133〉 [학생] 자진신고·피해신고 기간 운영 도움도

(Base: 자진신고/피해신고 기간 운영 인지 응답자, 단위 :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비도움 | 보통 | 도움 | 평균 | 통계량 |
|---|---|---|---|---|---|---|---|
| 전 체 | | (162) | 16.7 | 43.2 | 40.1 | 3.25 | -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3) | 33.3 | 66.7 | 0.0 | 2.33 | F=3.002, p=0.032 |
| | 피해경험 | (11) | 45.5 | 45.5 | 9.1 | 2.64 | |
| | 가해/피해경험 | (10) | 10.0 | 50.0 | 40.0 | 3.20 | |
| | 비경험 | (138) | 14.5 | 42.0 | 43.5 | 3.32 | |
| 성별 | 남성 | (84) | 15.5 | 40.5 | 44.0 | 3.32 | F=1.147, p=0.286 |
| | 여성 | (78) | 17.9 | 46.2 | 35.9 | 3.17 | |
| 학교급별 | 중학생 | (49) | 12.2 | 38.8 | 49.0 | 3.43 | F=2.772, p=0.098 |
| | 고등학생 | (113) | 18.6 | 45.1 | 36.3 | 3.17 | |

D21-1.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이 학교폭력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 (11) 화해·관계회복 조정역할

학교폭력으로 또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화해 및 관계회복을 조정하는 역할은 '학생'(24.9%)이 수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재전문기관 및 외부 전문가'(19.0%), 선생님'(15.4%), '자치위원회'(9.3%), '학부모'(5.5%), '교육청·교육부'(5.1%), '기타'(2.7%)의 순이었으며, '필요없다'는 18.1%로 나타났다.

〈그림 Ⅳ-106〉 [학생] 화해·관계회복 조정역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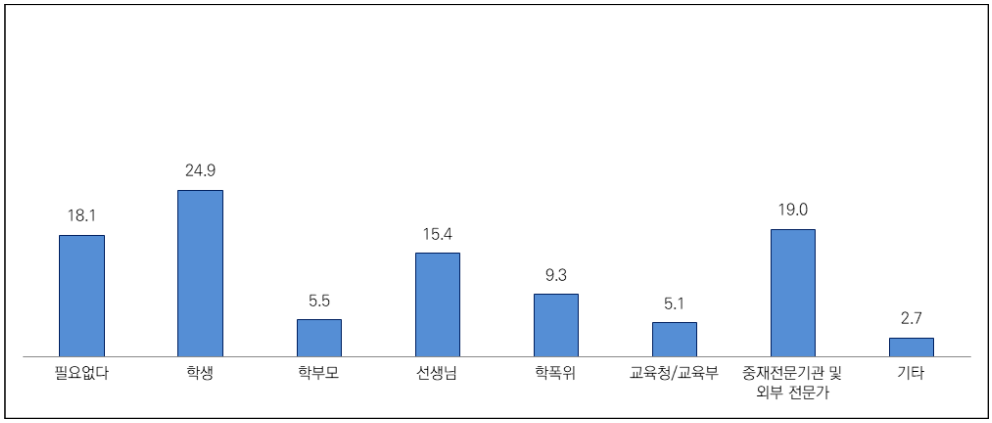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학교폭력 경험별로 가해경험집단, 가해·피해경험집단, 비경험집단은 '학생', 피해경험집단은 '필요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집단은 '학생'이 높았고, 여학생집단은 '중재전문기관 및 외부 전문가'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모든 유형에서 '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별 화해 및 관계회복을 조정하는 역할을 비교해 본 결과, 학교폭력 경험별($\chi^2$=47.062, p<0.001)과 성별($\chi^2$=16.653, p<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Ⅳ-134〉 [학생] 화해·관계회복 조정역할 (1/2)**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필요없다 | 학생 | 학부모 | 선생님 | 자치위원회 |
|---|---|---|---|---|---|---|---|
| 전 체 | | (474) | 18.1 | 24.9 | 5.5 | 15.4 | 9.3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7.7 | 53.8 | 7.7 | 23.1 | 7.7 |
| | 피해경험 | (34) | 29.4 | 20.6 | 8.8 | 17.6 | 2.9 |
| | 가해/피해경험 | (23) | 4.3 | 26.1 | 13.0 | 13.0 | 8.7 |
| | 비경험 | (404) | 18.3 | 24.3 | 4.7 | 15.1 | 9.9 |
| 성별 | 남성 | (206) | 14.1 | 29.1 | 5.3 | 20.4 | 9.2 |
| | 여성 | (268) | 21.3 | 21.6 | 5.6 | 11.6 | 9.3 |
| 학교급별 | 중학생 | (144) | 15.3 | 24.3 | 6.9 | 17.4 | 13.2 |
| | 고등학생 | (330) | 19.4 | 25.2 | 4.8 | 14.5 | 7.6 |

D22. 학교폭력으로 또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화해 및 관계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화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표 Ⅳ-135〉 [학생] 화해·관계회복 조정역할 (2/2)**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교육청/교육부 | 중재전문기관 및 외부 전문가 | 기타 | 통계량 |
|---|---|---|---|---|---|---|
| 전 체 | | (474) | 5.1 | 19.0 | 2.7 | -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0.0 | 0.0 | 0.0 | $\chi^2$=47.062, p=0.001 |
| | 피해경험 | (34) | 11.8 | 5.9 | 2.9 | |
| | 가해/피해경험 | (23) | 21.7 | 4.3 | 8.7 | |
| | 비경험 | (404) | 3.7 | 21.5 | 2.5 | |
| 성별 | 남성 | (206) | 5.3 | 14.1 | 2.4 | $\chi^2$=16.653, p=0.020 |
| | 여성 | (268) | 4.9 | 22.8 | 3.0 |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구분 | | 사례수 | 교육청/교육부 | 중재전문기관 및 외부 전문가 | 기타 | 통계량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44) | 5.6 | 16.0 | 1.4 | $\chi^2$=8.165, p=0.318 |
| | 고등학생 | (330) | 4.8 | 20.3 | 3.3 | |

D22. 학교폭력으로 또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화해 및 관계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화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12) 분쟁해결 조정역할 수행주체

학생집단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법적 소송 및 치료비 요구 등의 분쟁 해결 조정역할을 수행할 주체로 '중재전문기관 및 외부 전문가'(36.9%)를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교육청·교육부'(18.8%), '자치위원회'(17.7%), '학부모'(9.9%), '선생님'(9.7%), '기타'(1.7%)의 순이었고, '필요없다'는 5.3%로 나타났다.

**〈그림 Ⅳ-107〉 [학생] 분쟁해결 조정역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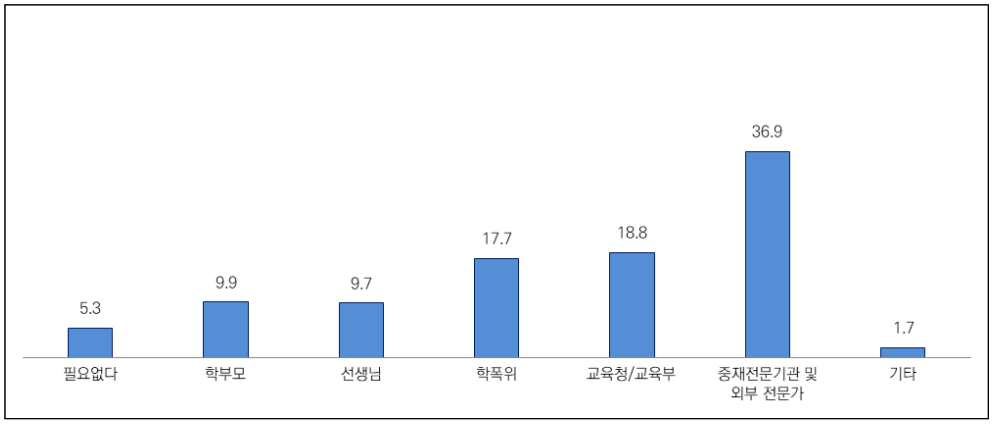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별로 가해경험집단은 '자치위원회', 피해경험집단은 '교육청·교육부', 가해·피해경험집단은 '자치위원회'와 '교육청·교육부', 비경험집단은 '중재전문기관 및 외부 전문가'를 가장 많이 답했다. 응답자의 성별, 학교급별 모든 유형에서 '중재전문기관 및 외부전문가'를 통한 분쟁 해결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별 분쟁 해결 조정역할을 비교해 본 결과, 학교폭력 경험별($\chi^2$ = 33.099, $p<0.05$)과 성별($\chi^2$ =23.793, $p<0.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136〉 [학생] 분쟁해결 조정역할 (1/2)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필요없다 | 학부모 | 선생님 | 자치위원회 |
|---|---|---|---|---|---|---|
| 전 체 | | (474) | 5.3 | 9.9 | 9.7 | 17.7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15.4 | 7.7 | 23.1 | 30.8 |
| | 피해경험 | (34) | 8.8 | 8.8 | 20.6 | 11.8 |
| | 가해/피해경험 | (23) | 8.7 | 4.3 | 13.0 | 30.4 |
| | 비경험 | (404) | 4.5 | 10.4 | 8.2 | 17.1 |
| 성별 | 남성 | (206) | 4.9 | 14.6 | 12.6 | 21.4 |
| | 여성 | (268) | 5.6 | 6.3 | 7.5 | 14.9 |
| 학교급 별 | 중학생 | (144) | 4.9 | 10.4 | 11.8 | 20.8 |
| | 고등학생 | (330) | 5.5 | 9.7 | 8.8 | 16.4 |

D23. 학교폭력으로 법적 소송 및 치료비 요구 등이 생길 경우 분쟁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표 Ⅳ-137〉 [학생] 분쟁해결 조정역할 (2/2)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교육청/ 교육부 | 중재전문기관 및 외부 전문가 | 기타 | 통계량 |
|---|---|---|---|---|---|---|
| 전 체 | | (474) | 18.8 | 36.9 | 1.7 | -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7.7 | 15.4 | 0.0 | $x^2$=33.099, p=0.016 |
| | 피해경험 | (34) | 26.5 | 20.6 | 2.9 | |
| | 가해/피해경험 | (23) | 30.4 | 8.7 | 4.3 | |
| | 비경험 | (404) | 17.8 | 40.6 | 1.5 | |
| 성별 | 남성 | (206) | 17.5 | 27.2 | 1.9 | $x^2$=23.793, p=0.001 |
| | 여성 | (268) | 19.8 | 44.4 | 1.5 | |
| 학교급 별 | 중학생 | (144) | 17.4 | 32.6 | 2.1 | $x^2$=3.629, p=0.727 |
| | 고등학생 | (330) | 19.4 | 38.8 | 1.5 | |

D23. 학교폭력으로 법적 소송 및 치료비 요구 등이 생길 경우 분쟁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13) 학교폭력 전문상담기관의 필요성

학교폭력 전문상담기관의 필요성과 관련해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은 90.7%로 나타났으며, '필요없다'는 응답비율은 9.3%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Ⅳ-108〉 [학생] 전문 상담기관 필요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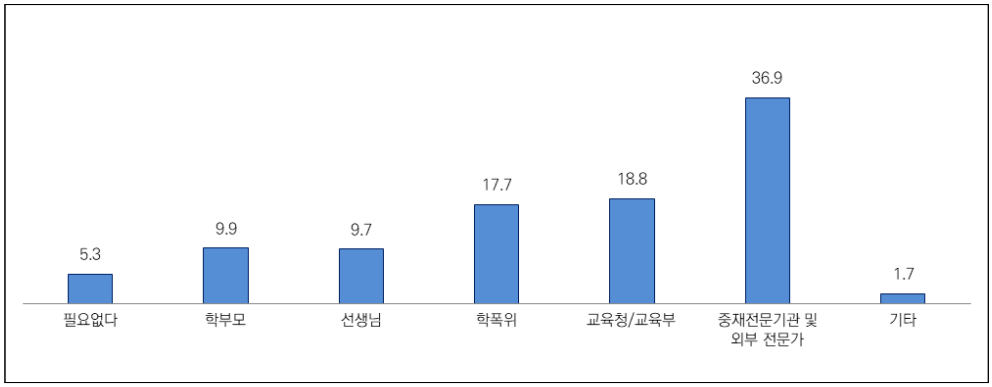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별 전문 상담기관 필요도를 비교해 본 결과, 학교폭력 경험별($x^2$ = 27.181, p<0.001)과 성별($x^2$ =9.948,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폭력 '비경험' 집단(93.6%)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다음으로 '가해·피해경험' 집단(78.3%), '피해경험' 집단(73.5%), '가해경험' 집단(6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 집단(94.4%)이 전문상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을 상대적으로 많이 했다.

〈표 Ⅳ-138〉 [학생] 전문 상담기관 필요도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필요하다 | 필요 없다 | 통계량 |
|---|---|---|---|---|---|
| 전 체 | | (474) | 90.7 | 9.3 | -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69.2 | 30.8 | $x^2$ =27.181, p=0.000 |
| | 피해경험 | (34) | 73.5 | 26.5 | |
| | 가해/피해경험 | (23) | 78.3 | 21.7 | |
| | 비경험 | (404) | 93.6 | 6.4 | |
| 성별 | 남성 | (206) | 85.9 | 14.1 | $x^2$ =9.948, p=0.002 |
| | 여성 | (268) | 94.4 | 5.6 | |
| 학교급 별 | 중학생 | (144) | 91.7 | 8.3 | $x^2$ =0.221, p=0.638 |
| | 고등학생 | (330) | 90.3 | 9.7 | |

D24. 학교폭력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14) 손해배상갈등 중재역할의 필요도

학생집단은 학교폭력 발생 시 손해배상과 관련된 갈등중재 역할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7.8%, '필요 없다'는 응답비율은 12.2%로 나타났다.

**〈그림 Ⅳ-109〉 [학생] 손해배상갈등 중재역할 필요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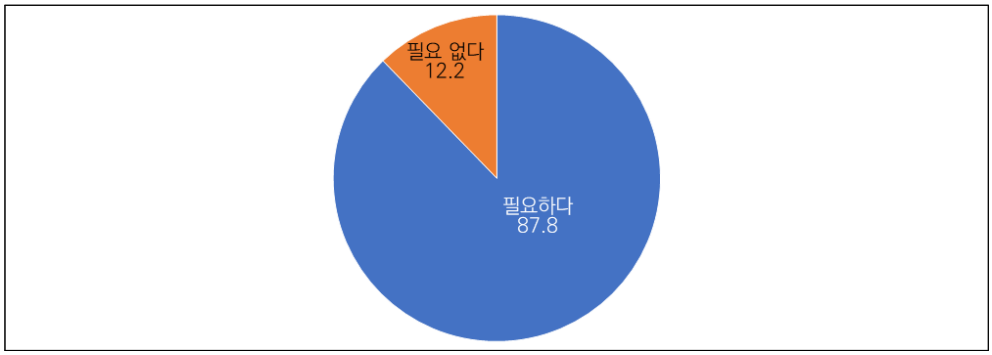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별 손해배상 갈등 중재역할 필요도를 비교해 본 결과, 학교폭력 경험별($\chi^2$=20.679, p<0.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폭력 경험별로 '비경험'집단(90.6%)이 가장 높았고, '피해경험'집단(73.5%), '가해·피해경험'집단(69.6%), '가해경험'집단(6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139〉 [학생] 손배갈등 중재역할 필요도**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필요하다 | 필요 없다 | 통계량 |
|---|---|---|---|---|---|
| 전 체 | | (474) | 87.8 | 12.2 | -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69.2 | 30.8 | $\chi^2$=20.679, p=0.000 |
| | 피해경험 | (34) | 73.5 | 26.5 | |
| | 가해/피해경험 | (23) | 69.6 | 30.4 | |
| | 비경험 | (404) | 90.6 | 9.4 | |
| 성별 | 남성 | (206) | 85.9 | 14.1 | $\chi^2$=1.150, p=0.283 |
| | 여성 | (268) | 89.2 | 10.8 | |
| 학교급 별 | 중학생 | (144) | 88.9 | 11.1 | $\chi^2$=0.244, p=0.621 |
| | 고등학생 | (330) | 87.3 | 12.7 | |

D25. 학교폭력 발생 시 손해배상(치료비, 금전적)갈등 또는 분쟁이 생겼을 경우 다른 사람이 중재(화해)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15) 학교안전공제회 인지여부

학생집단 중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1%, '모르겠다'는 응답비율은 75.9%로 나타났다.

**〈그림 Ⅳ-110〉 [학생] 학교안전공제회 인지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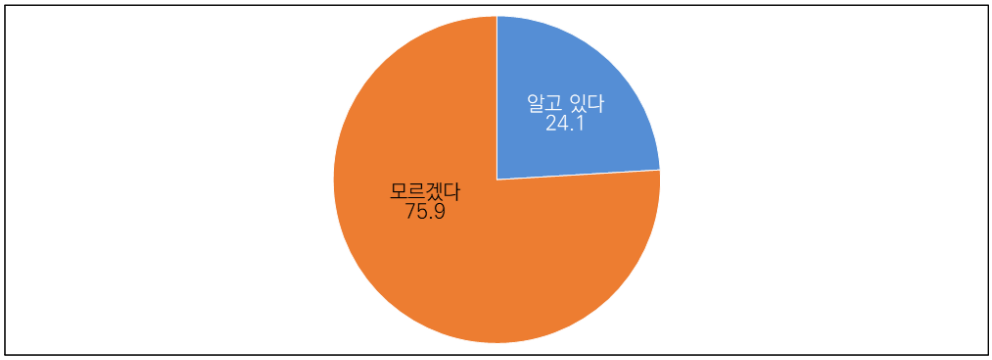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별 학교안전공제회 인지여부를 비교해 본 결과, 성별($\chi^2$=11.228, p<0.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집단(31.6%)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40〉 [학생] 학교안전공제회 인지여부**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알고 있다 | 모르겠다 | 통계량 |
|---|---|---|---|---|---|
| 전 체 | | (474) | 24.1 | 75.9 | -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23.1 | 76.9 | $\chi^2$=3.652, p=0.302 |
| | 피해경험 | (34) | 17.6 | 82.4 | |
| | 가해/피해경험 | (23) | 39.1 | 60.9 | |
| | 비경험 | (404) | 23.8 | 76.2 | |
| 성별 | 남성 | (206) | 31.6 | 68.4 | $\chi^2$=11.228, p=0.001 |
| | 여성 | (268) | 18.3 | 81.7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44) | 26.4 | 73.6 | $\chi^2$=0.619, p=0.431 |
| | 고등학생 | (330) | 23.0 | 77.0 | |

D26.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를 선지원 받을 수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16) Wee클래스에 대한 인식

### 가. Wee클래스 인지여부

학생집단 중 Wee클래스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92.4%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알고 있고 이용해 본 적 있다'는 35.9%, '알고 있지만, 이용해 본 적은 없다'는 56.5%, '모른다'는 7.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11〉 [학생] Wee클래스 인지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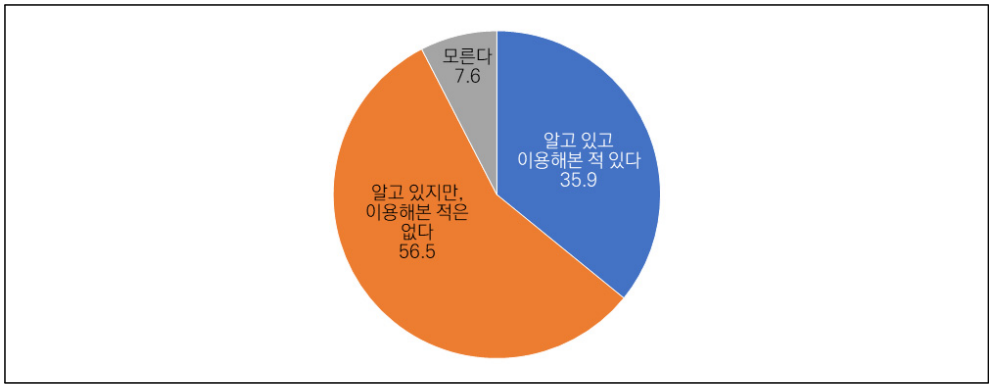


**〈표 Ⅳ-141〉 [학생] Wee클래스 인지여부**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알고 있고 이용해본 적 있다 | 알고 있지만, 이용해본 적은 없다 | 모른다 | 통계량 |
|---|---|---|---|---|---|---|
| 전 체 | | (474) | 35.9 | 56.5 | 7.6 | -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15.4 | 76.9 | 7.7 | $x^2$=8.439, p=0.208 |
| | 피해경험 | (34) | 41.2 | 44.1 | 14.7 | |
| | 가해/피해경험 | (23) | 43.5 | 43.5 | 13.0 | |
| | 비경험 | (404) | 35.6 | 57.7 | 6.7 | |
| 성별 | 남성 | (206) | 30.6 | 60.2 | 9.2 | $x^2$=4.967, p=0.083 |
| | 여성 | (268) | 39.9 | 53.7 | 6.3 | |
| 학교급별 | 중학생 | (144) | 32.6 | 56.9 | 10.4 | $x^2$=2.775, p=0.250 |
| | 고등학생 | (330) | 37.3 | 56.4 | 6.4 | |

D28. 학교에서 운영하는 Wee클래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나. Wee클래스를 알게 된 경로

학생집단 중 Wee클래스를 알게 된 경로로 가장 많이 답한 것은 '선생님'(65.3%)이었다. 다음으로 '친구'(20.0%), '기타'(10.6%), '학교전담경찰관'(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12〉 [학생] Wee클래스 인지경로**

(Base: Wee클래스 인지 응답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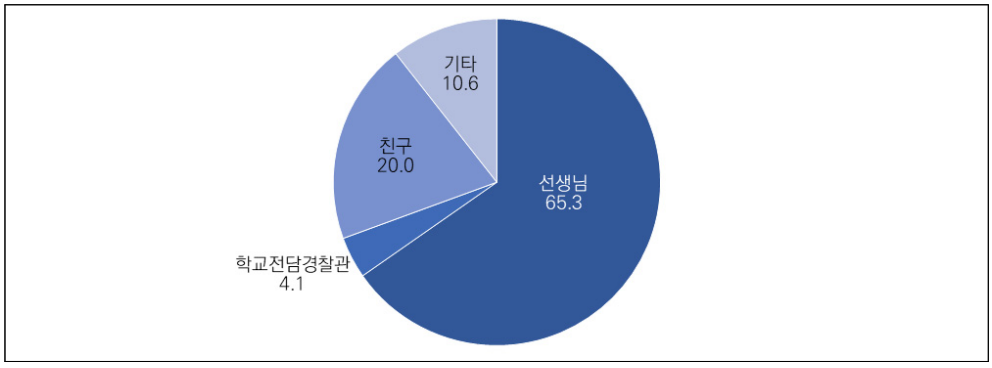


학교폭력 경험별($\chi^2$=24.092, p<0.01)로 Wee클래스 인지경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폭력 가해집단을 제외하고, 피해경험집단(78.6%), 가해·피해경험집단(50.0%), 비경험집단(66.0%) 모두 선생임을 통해 Wee클래스를 알게 되었다고 답했다.

**〈표 Ⅳ-142〉 [학생] Wee클래스 인지경로**

(Base: Wee클래스 인지 응답자,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선생님 | 학교전담 경찰관 | 친구 | 기타 | 통계량 |
|---|---|---|---|---|---|---|---|
| 전 체 | | (170) | 65.3 | 4.1 | 20.0 | 10.6 | -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2) | 0.0 | 0.0 | 0.0 | 100.0 | $\chi^2$=24.092, p=0.004 |
| | 피해경험 | (14) | 78.6 | 7.1 | 7.1 | 7.1 | |
| | 가해/피해경험 | (10) | 50.0 | 0.0 | 20.0 | 30.0 | |
| | 비경험 | (144) | 66.0 | 4.2 | 21.5 | 8.3 | |
| 성별 | 남성 | (63) | 68.3 | 6.3 | 15.9 | 9.5 | $\chi^2$=2.304, p=0.512 |
| | 여성 | (107) | 63.6 | 2.8 | 22.4 | 11.2 | |
| 학교급별 | 중학생 | (47) | 61.7 | 0.0 | 25.5 | 12.8 | $\chi^2$=4.088, p=0.252 |
| | 고등학생 | (123) | 66.7 | 5.7 | 17.9 | 9.8 | |

D28-1. Wee클래스를 알게 된 경로가 어떻게 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다. Wee클래스 이용 프로그램

Wee클래스 이용 프로그램은 '진로 및 학업 상담'(60.0%)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14.1%), '기타'(12.4%), '멘토, 멘티 프로그램'(11.2%),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13〉 [학생] Wee클래스 이용 프로그램**

(Base: Wee클래스 인지 응답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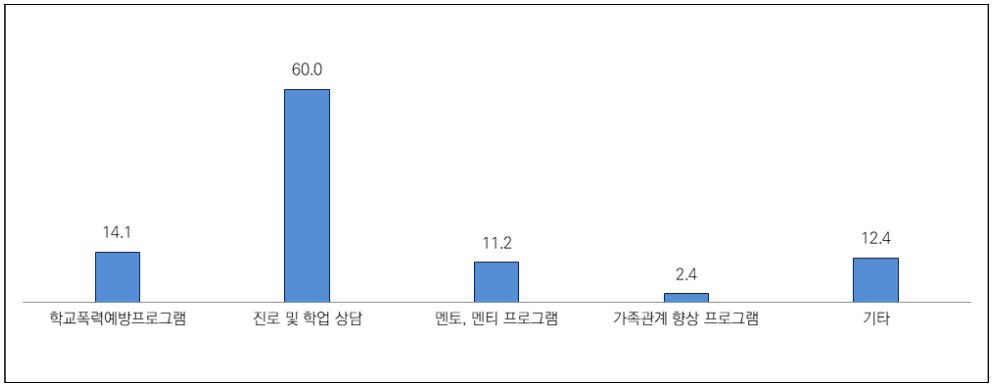


**〈표 Ⅳ-143〉 [학생] Wee클래스 이용 프로그램**

(Base: Wee클래스 인지 응답자,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학교 폭력 예방 프로 그램 | 진로 및 학업 상담 | 멘토, 멘티 프로 그램 | 가족 관계 향상 프로 그램 | 기타 | 통계량 |
|---|---|---|---|---|---|---|---|---|
| 전 체 | | (170) | 14.1 | 60.0 | 11.2 | 2.4 | 12.4 | -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2) | 0.0 | 100.0 | 0.0 | 0.0 | 0.0 | $\chi^2$=15.512, p=0.215 |
| | 피해경험 | (14) | 35.7 | 28.6 | 14.3 | 7.1 | 14.3 | |
| | 가해/피해경험 | (10) | 30.0 | 70.0 | 0.0 | 0.0 | 0.0 | |
| | 비경험 | (144) | 11.1 | 61.8 | 11.8 | 2.1 | 13.2 | |
| 성별 | 남성 | (63) | 19.0 | 60.3 | 7.9 | 1.6 | 11.1 | $\chi^2$=3.039, p=0.551 |
| | 여성 | (107) | 11.2 | 59.8 | 13.1 | 2.8 | 13.1 | |
| 학교급 별 | 중학생 | (47) | 17.0 | 51.1 | 14.9 | 4.3 | 12.8 | $\chi^2$=3.064, p=0.547 |
| | 고등학생 | (123) | 13.0 | 63.4 | 9.8 | 1.6 | 12.2 | |

D28-2. Wee클래스에서 이용한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17) Wee클래스 이용의향

향후 Wee클래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2%로 나타났다.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5.8%로 나타났다.

**〈그림 Ⅳ-114〉 [학생] Wee클래스 활용 의향**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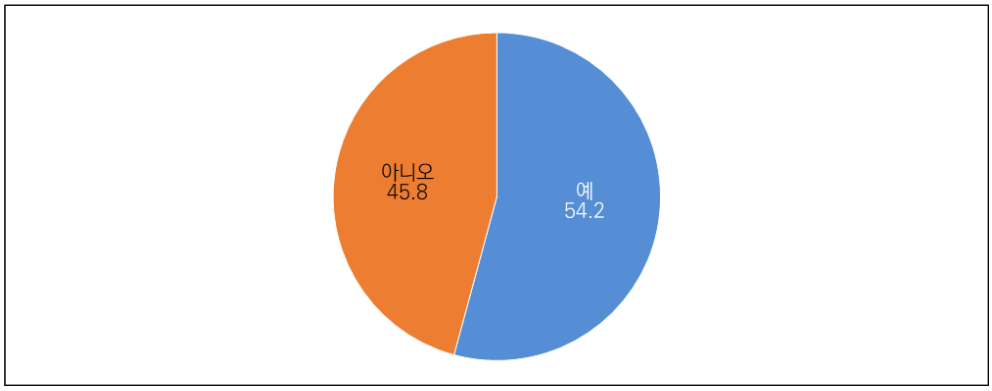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별 향후 Wee클래스를 활용의향을 비교해 본 결과, 성별($x^2$=5.240, p<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집단(60.2%)에서 향후 Wee클래스를 활용할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144〉 [학생] Wee클래스 활용 의향**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예 | 아니오 | 통계량 |
|---|---|---|---|---|---|
| 전 체 | | (474) | 54.2 | 45.8 | -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53.8 | 46.2 | $x^2$=2.536, p=0.469 |
| | 피해경험 | (34) | 41.2 | 58.8 | |
| | 가해/피해경험 | (23) | 56.5 | 43.5 | |
| | 비경험 | (404) | 55.2 | 44.8 | |
| 성별 | 남성 | (206) | 60.2 | 39.8 | $x^2$=5.240, p=0.022 |
| | 여성 | (268) | 49.6 | 50.4 | |
| 학교급 별 | 중학생 | (144) | 52.8 | 47.2 | $x^2$=0.173, p=0.677 |
| | 고등학생 | (330) | 54.8 | 45.2 | |

D29.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Wee클래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18) 학교폭력 예방대책 만족도

학생집단에게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3.87점)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학교내 CCTV 설치확대 및 CCTV 모니터링'(3.75점),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강화'(3.72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확대'(각 3.70점),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확대 및 학교지원 강화'(3.61점), '학교별 전문상담인력 확대배치 및 전문화'(3.58점), '교원의 상담, 생활지도 강화'(3.54점), '배움터지킴이 등 학교내 학생보호인력 배치', 'Wee 프로젝트 확대'(각 3.33점), '학생 자치활동 확대', '체육, 스포츠 활동 확대'(각 3.21점),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3.1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15〉 [학생] 학교폭력 예방대책 만족도**

(단위 : 5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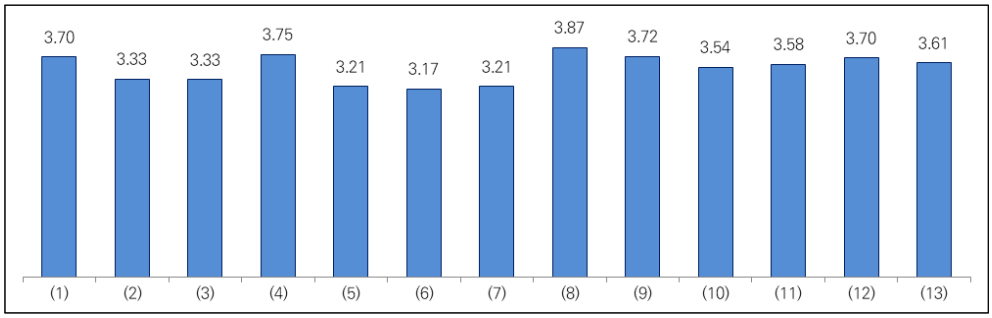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별 학교폭력 예방대책 만족도를 비교해 본 결과. 학교폭력 경험별 비경험집단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3.81점, F=11.077, p<0.001), '배움터지킴이 등 학교내 학생보호인력 배치'(3.42점, F=7.293, p<0.001), 'Wee 프로젝트 확대'(3.38점, F=3.253, p<0.05), '학교내 CCTV 설치확대 및 CCTV 모니터링'(3.81점, F=3.585, p<0.05).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강화'(3.77점, F=2.806, p<0.05), '교원의 상담, 생활지도 강화'(3.61점, F=5.481, p<0.001), '학교별 전문상담인력 확대배치 및 전문화'(3.64점, F=4.829, p<0.01),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확대'(3.76점, F=3.510, p<0.05),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확대 및 학교지원 강화'(3.66점, F=2.921, p<0.05) 등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집단은 '체육, 스포츠 활동 확대'(3.43점, F=13.788, p<0.001), '교원의 상담, 생활지도 강화'(3.65점, F=3.964, p<0.05)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표 Ⅳ-145〉 [학생] 학교폭력 예방대책 만족도 (1/3)

(단위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5) |
|---|---|---|---|---|---|---|---|
| 전 체 | | (474) | 3.70 | 3.33 | 3.33 | 3.75 | 3.21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2.46 | 2.31 | 2.54 | 3.08 | 2.85 |
| | 피해경험 | (34) | 3.41 | 2.97 | 3.12 | 3.47 | 3.03 |
| | 가해/피해경험 | (23) | 3.04 | 3.00 | 3.22 | 3.43 | 3.09 |
| | 비경험 | (404) | 3.81 | 3.42 | 3.38 | 3.81 | 3.24 |
| | 통계량 | - | F=11.077, p=0.000 | F=7.293, p=0.000 | F=3.253, p=0.022 | F=3.585, p=0.014 | F=0.894, p=0.444 |
| 성별 | 남성 | (206) | 3.74 | 3.41 | 3.37 | 3.77 | 3.43 |
| | 여성 | (268) | 3.68 | 3.28 | 3.29 | 3.74 | 3.04 |
| | 통계량 | - | F=0.336, p=0.562 | F=1.814, p=0.179 | F=0.708, p=0.401 | F=0.101, p=0.750 | F=13.788, p=0.000 |
| 학교급 별 | 중학생 | (144) | 3.77 | 3.35 | 3.37 | 3.77 | 3.26 |
| | 고등학생 | (330) | 3.68 | 3.32 | 3.31 | 3.74 | 3.18 |
| | 통계량 | - | F=0.759, p=0.384 | F=0.080, p=0.777 | F=0.309, p=0.578 | F=0.085, p=0.771 | F=0.395, p=0.530 |

D33. 다음의 각 대책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2) 배움터지킴이 등 학교내 학생보호인력 배치
(3) Wee 프로젝트 확대
(4) 학교내 CCTV 설치확대 및 CCTV 모니터링
(5) 체육, 스포츠 활동 확대

### 〈표 Ⅳ-146〉 [학생] 학교폭력 예방대책 만족도 (2/3)

(단위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6) | (7) | (8) | (9) |
|---|---|---|---|---|---|---|
| 전 체 | | (474) | 3.17 | 3.21 | 3.87 | 3.72 |
| 학교 폭력 경험별 | 가해경험 | (13) | 2.92 | 2.77 | 3.38 | 3.00 |
| | 피해경험 | (34) | 3.09 | 2.94 | 3.76 | 3.53 |
| | 가해/피해경험 | (23) | 3.09 | 3.13 | 3.43 | 3.39 |
| | 비경험 | (404) | 3.19 | 3.25 | 3.92 | 3.77 |
| | 통계량 | - | F=0.311, p=0.817 | F=1.651, p=0.177 | F=1.998, p=0.113 | F=2.806, p=0.039 |
| 성별 | 남성 | (206) | 3.13 | 3.20 | 3.93 | 3.80 |
| | 여성 | (268) | 3.20 | 3.22 | 3.82 | 3.65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구분 | | 사례수 | (6) | (7) | (8) | (9) |
|---|---|---|---|---|---|---|
| | 통계량 | - | F=0.439, p=0.508 | F=0.060, p=0.807 | F=0.835, p=0.361 | F=1.722, p=0.190 |
| 학교급별 | 중학생 | (144) | 3.30 | 3.24 | 3.92 | 3.77 |
| | 고등학생 | (330) | 3.11 | 3.20 | 3.85 | 3.69 |
| | 통계량 | - | F=2.663, p=0.103 | F=0.091, p=0.763 | F=0.317, p=0.574 | F=0.461, p=0.498 |

D33. 다음의 각 대책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7) 학생 자치활동 확대
(8)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9)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강화

**〈표 Ⅳ-147〉 [학생] 학교폭력 예방대책 만족도 (3/3)**

(단위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10) | (11) | (12) | (13) |
|---|---|---|---|---|---|---|
| 전 체 | | (474) | 3.54 | 3.58 | 3.70 | 3.61 |
| 학교폭력경험별 | 가해경험 | (13) | 2.62 | 2.62 | 3.08 | 2.77 |
| | 피해경험 | (34) | 3.24 | 3.44 | 3.47 | 3.50 |
| | 가해/피해경험 | (23) | 3.22 | 3.26 | 3.26 | 3.39 |
| | 비경험 | (404) | 3.61 | 3.64 | 3.76 | 3.66 |
| | 통계량 | - | F=5.481, p=0.001 | F=4.829, p=0.003 | F=3.510, p=0.015 | F=2.921, p=0.034 |
| 성별 | 남성 | (206) | 3.65 | 3.61 | 3.73 | 3.69 |
| | 여성 | (268) | 3.45 | 3.56 | 3.67 | 3.54 |
| | 통계량 | - | F=3.964, p=0.047 | F=0.185, p=0.667 | F=0.303, p=0.582 | F=2.052, p=0.153 |
| 학교급별 | 중학생 | (144) | 3.65 | 3.69 | 3.78 | 3.65 |
| | 고등학생 | (330) | 3.49 | 3.53 | 3.66 | 3.59 |
| | 통계량 | - | F=2.060, p=0.152 | F=2.206, p=0.138 | F=1.122, p=0.290 | F=0.316, p=0.574 |

D33. 다음의 각 대책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 교원의 상담, 생활지도 강화
(11) 학교별 전문상담인력 확대배치 및 전문화
(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확대
(13)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확대 및 학교지원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2) 학부모 및 관계자

### (1) 학교의 학교폭력 해결 능력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 중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의 자율적 해결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2.2%에 불과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5.3%,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2.5%였다.

**〈그림 Ⅳ-116〉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의 학교폭력 해결 능력**

(단위 : %, 5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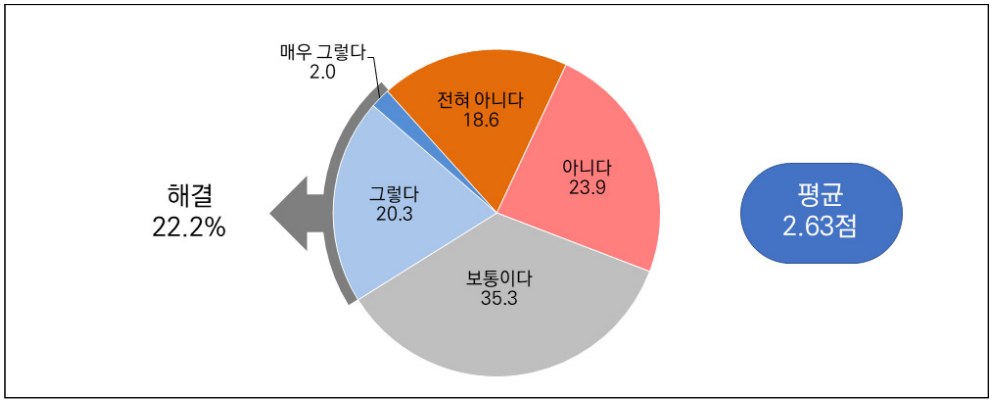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의 유형별로는 학교의 학교폭력 해결 능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148〉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의 학교폭력 해결 능력**

(단위 :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부정 | 보통 | 긍정 | 평균 | 통계량 |
|---|---|---|---|---|---|---|---|
| 전 체 | | (306) | 42.5 | 35.3 | 22.2 | 2.63 | -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40.6 | 37.5 | 21.9 | 2.61 | F=0.328, p=0.721 |
| | 일반 학부모 | (169) | 44.4 | 33.1 | 22.5 | 2.61 | |
| | 관계자 | (41) | 39.0 | 39.0 | 22.0 | 2.76 | |

D5. 현재 학교는 학교폭력 발생시, 사건을 공정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위기개입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2) 학교의 학교폭력 해결 능력 미흡 이유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 중학교의 학교폭력 해결 능력이 미흡하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 '학교폭력사건 처리의 전문성 부족'(52.6%)을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학교 평가에 대한 부담'(24.6%), '특정 학생에 대한 우호적·부정적 평가(선호·편견)'(15.8%), '학부모 등의 민원', '담당자의 업무과중 및 비합리적인 업무분장'(각 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17〉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의 학교폭력 해결 능력 미흡 이유**

(Base: 학교 해결능력 미흡 응답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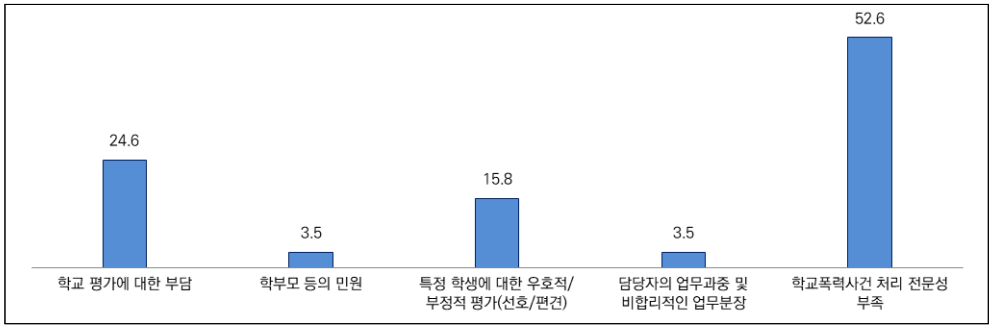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의 유형별($x^2$=18.052, p<0.05)로 피해학생 학부모(71.4%)집단의 '학교폭력사건 처리 전문성 부족'에 대한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Ⅳ-149〉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의 학교폭력 해결 능력 미흡 이유**

(Base: 학교 해결능력 미흡 응답자,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5) | 통계량 |
|---|---|---|---|---|---|---|---|---|
| 전 체 | | (57) | 24.6 | 3.5 | 15.8 | 3.5 | 52.6 | -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21) | 19.0 | 0.0 | 9.5 | 0.0 | 71.4 | $x^2$=18.052, p=0.021 |
| | 일반 학부모 | (32) | 31.3 | 3.1 | 21.9 | 3.1 | 40.6 | |
| | 관계자 | (4) | 0.0 | 25.0 | 0.0 | 25.0 | 50.0 | |

D5-1. 사건을 공정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 학교평가에 대한 부담
(2) 학부모 등의 민원
(3) 특정 학생에 대한 우호적/ 부정적 평가(선호/편견)
(4) 담당자의 업무과중 및 비합리적인 업무분장
(5) 학교폭력사건 처리 전문성 부족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문화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에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문화와 관련해 물어본 결과, '학생·교사·학부모가 상호협력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적 학교문화'(33.3%)를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학생 인성 중시의 학교문화'(26.1%), '학생 인권 존중의 학교문화'(13.7%), '가정 및 관련 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권장되는 학교문화'(12.4%), '교사의 권위 및 전문성 중시의 학교문화'(9.8%),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의 학교문화'(4.2%), '기타'(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18〉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문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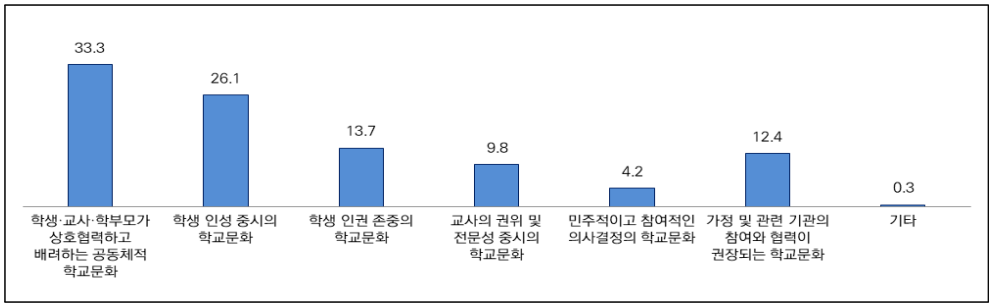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은 학생집단에 비해 '학생 인권 존중의 학교문화'의 응답 비율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chi^2$=44.294, p<0.001).

**〈표 Ⅳ-150〉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문화 (1/2)**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
| 전 체 | 학부모 및 관계자 | (306) | 33.3 | 26.1 | 13.7 | 9.8 |
| | 학생 | (474) | 29.3 | 26.2 | 23.4 | 3.8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30.2 | 26.0 | 17.7 | 12.5 |
| | 일반 학부모 | (169) | 35.5 | 27.2 | 10.1 | 7.7 |
| | 관계자 | (41) | 31.7 | 22.0 | 19.5 | 12.2 |

D7. 학교폭력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학교문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학생·교사·학부모가 상호협력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적 학교문화
(2) 학생 인성 중시의 학교문화
(3) 학생 인권 존중의 학교문화
(4) 교사의 권위 및 전문성 중시의 학교문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151〉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문화 (2/2)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5) | (6) | (7) | 통계량 |
|---|---|---|---|---|---|---|
| 전 체 | 학부모 및 관계자 | (306) | 4.2 | 12.4 | 0.3 | $\chi^2$=44.294, p=0.000 |
| | 학생 | (474) | 7.4 | 5.7 | 4.2 |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3.1 | 9.4 | 1.0 | $\chi^2$=10.788, p=0.547 |
| | 일반 학부모 | (169) | 5.3 | 14.2 | 0.0 | |
| | 관계자 | (41) | 2.4 | 12.2 | 0.0 | |

D7. 학교폭력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학교문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의 학교문화
(6) 가정 및 관련 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권장되는 학교문화
(7) 기타

### (4) 학교폭력 예방정책 중요도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에게 학교폭력 예방정책의 중요도와 관련해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4.28점)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정서, 행동 상의 문제 학생을 위한 전문상담인력 확대'(4.25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4.18점), '학생과의 소통 및 공감능력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4.11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및 대안교실 확대'(4.00점),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인 제도 확대'(3.97점),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보급'(3.95점),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활동 활성화'(3.8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및 대안교실 확대'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학생보다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Ⅳ-119〉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예방 정책 중요도

(단위 : 5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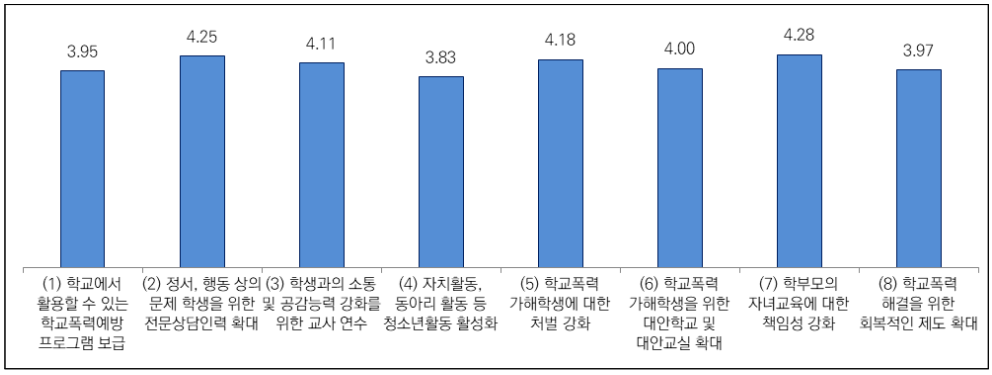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의 특성별로 학교폭력 예방 정책 중요도를 비교해 본 결과, 일반학부모는 '정서, 행동 상의 문제 학생을 위한 전문상담인력 확대'(4.36점, F=3.427, p<0.05)와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인 제도 확대'(4.07점 F=3.165, p<0.05)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Ⅳ-152〉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예방 정책 중요도 (1/2)

(단위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
| 전 체 | 학부모 및 관계자 | (306) | 3.95 | 4.25 | 4.11 | 3.83 |
| | 학생 | (474) | 3.26 | 3.92 | 3.74 | 3.40 |
| | 통계량 | - | F=97.577, p=0.000 | F=24.267, p=0.000 | F=26.960, p=0.000 | F=36.312, p=0.000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3.95 | 4.13 | 4.10 | 3.81 |
| | 일반 학부모 | (169) | 3.98 | 4.36 | 4.17 | 3.81 |
| | 관계자 | (41) | 3.80 | 4.10 | 3.88 | 3.93 |
| | 통계량 | - | F=0.903, p=0.406 | F=3.427, p=0.034 | F=2.022, p=0.134 | F=0.330, p=0.719 |

D8.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 과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보급
(2) 정서, 행동 상의 문제 학생을 위한 전문상담인력 확대
(3) 학생과의 소통 및 공감능력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
(4)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활동 활성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153〉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예방 정책 중요도 (2/2)

(단위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5) | (6) | (7) | (8) |
|---|---|---|---|---|---|---|
| 전 체 | 학부모 및 관계자 | (306) | 4.18 | 4.00 | 4.28 | 3.97 |
| | 학생 | (474) | 4.44 | 3.88 | 4.03 | 3.27 |
| | 통계량 | - | F=17.107, p=0.000 | F=2.385, p=0.123 | F=12.886, p=0.000 | F=81.843, p=0.000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4.05 | 3.97 | 4.17 | 3.81 |
| | 일반 학부모 | (169) | 4.24 | 4.08 | 4.37 | 4.07 |
| | 관계자 | (41) | 4.27 | 3.73 | 4.17 | 3.90 |
| | 통계량 | - | F=1.759, p=0.174 | F=2.510, p=0.083 | F=2.694, p=0.069 | F=3.165, p=0.044 |

D8.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 과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5)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
(6)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및 대안교실 확대
(7)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
(8)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인 제도 확대

### (5) 학교폭력 처리절차에 대한 인식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에게 학교폭력 처리절차와 관련해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현재 학교폭력 해결절차 내에서 학생간 화해 등 관계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 어렵다'(3.96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재 자치위원회 처분이 약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적 기능을 하지 못한다'(3.92점), '현재 자치위원회 처분이 처벌에만 치우쳐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처분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3.84점), '현재 학교폭력의 개념과 범위가 너무 넓어 학생 간 우발적인 싸움 등의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3.76점), '자치위원회 처분 수위와 관계없이 처분내용을 생기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현재 학교폭력해결절차가 담임교사나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축소하여 주요한 사안처리담당자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다', '폭력의 종류와 관계없이 학교폭력이 있는 경우 자치위원회를 열도록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각 3.71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자치위원회 처분 결과를 졸업 시 삭제해 주는 지침은 바람직하다'(2.7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Ⅳ-120〉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처리절차 인식**

(단위 : 5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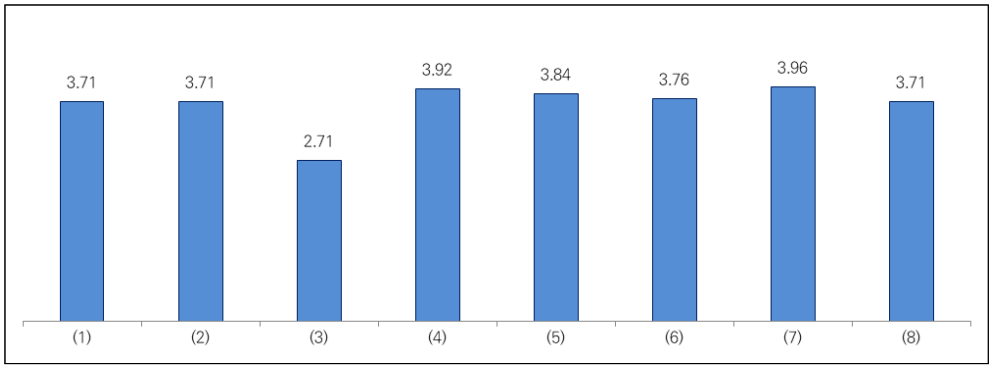


(1) 폭력의 종류와 관계없이 학교폭력이 있는 경우 자치위원회를 열도록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2) 자치위원회 처분 수위와 관계없이 처분내용을 생기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3)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자치위원회 처분결과를 졸업시 삭제해주는 지침은 바람직하다.
(4) 현재 자치위원회 처분이 약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적 기능을 하지 못한다.
(5) 현재 자치위원회 처분이 처벌에만 치우쳐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처분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6) 현재 학교폭력의 개념과 범위가 너무 넓어 학생 간 우발적인 싸움 등의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7) 현재 학교폭력해결절차 내에서 학생간 화해 등 관계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 어렵다.
(8) 현재 학교폭력해결절차가 담임교사나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축소하여 주요한 사안처리담당자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응답자의 특성별 학교폭력 처리절차 인식을 비교해 본 결과, 일반 학부모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자치위원회 처분결과를 졸업시 삭제해 주는 지침은 바람직하다'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Ⅳ-154〉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처리절차 인식 (1/2)**

(단위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
| 전 체 | | (306) | 3.71 | 3.71 | 2.71 | 3.92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3.54 | 3.59 | 2.56 | 3.64 |
| | 일반 학부모 | (169) | 3.86 | 3.86 | 2.78 | 4.15 |
| | 관계자 | (41) | 3.46 | 3.37 | 2.76 | 3.68 |
| | 통계량 | - | F=4.550, p=0.011 | F=4.827, p=0.009 | F=1.002, p=0.368 | F=11.138, p=0.000 |

D9. 현재 학교폭력 절차에 대한 평가에 대해 문항을 읽고 동의하는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보기에 표시해 주십시오.

(1) 폭력의 종류와 관계없이 학교폭력이 있는 경우 자치위원회를 열도록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2) 자치위원회 처분 수위와 관계없이 처분내용을 생기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3)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자치위원회 처분결과를 졸업시 삭제해주는 지침은 바람직하다
(4) 현재 자치위원회 처분이 약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적 기능을 하지 못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155〉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처리절차 인식 (2/2)

(단위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5) | (6) | (7) | (8) |
|---|---|---|---|---|---|---|
| 전 체 | | (306) | 3.84 | 3.76 | 3.96 | 3.71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3.64 | 3.73 | 3.73 | 3.57 |
| | 일반 학부모 | (169) | 4.04 | 3.91 | 4.11 | 3.85 |
| | 관계자 | (41) | 3.51 | 3.22 | 3.88 | 3.44 |
| | 통계량 | - | F=9.069, p=0.000 | F=11.738, p=0.000 | F=7.500, p=0.001 | F=4.533, p=0.011 |

D9. 현재 학교폭력 절차에 대한 평가에 대해 문항을 읽고 동의하는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보기에 표시해 주십시오.

(5) 현재 자치위원회 처분이 처벌에만 치우쳐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처분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6) 현재 학교폭력의 개념과 범위가 너무 넓어 학생 간 우발적인 싸움 등의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7) 현재 학교폭력해결절차 내에서 학생 간 화해 등 관계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 어렵다.
(8) 현재 학교폭력해결절차가 담임교사나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축소하여 주요한 사안처리담당자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다.

### (6) 학교폭력 처리원칙의 우선순위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은 학교폭력 처리원칙의 우선순위로 '피해학생의 정서적 안정감과 회복(치유)'(48.7%)을 가장 답했다. 다음으로 '가해학생의 잘못 인식과 진정한 사과 기회 제공'(36.9%),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이 원하는 해결방식의 파악',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각 23.5%),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및 파악'(18.0%),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화해와 관계회복'(17.0%), '사건 해결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주도적 참여'(13.7%), '사안처리의 공정성 확보'(11.8%), '상호수용 가능한 피해배상 계획의 협상'(6.9%)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Ⅳ-121〉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처리원칙 우선순위

(단위 : %, 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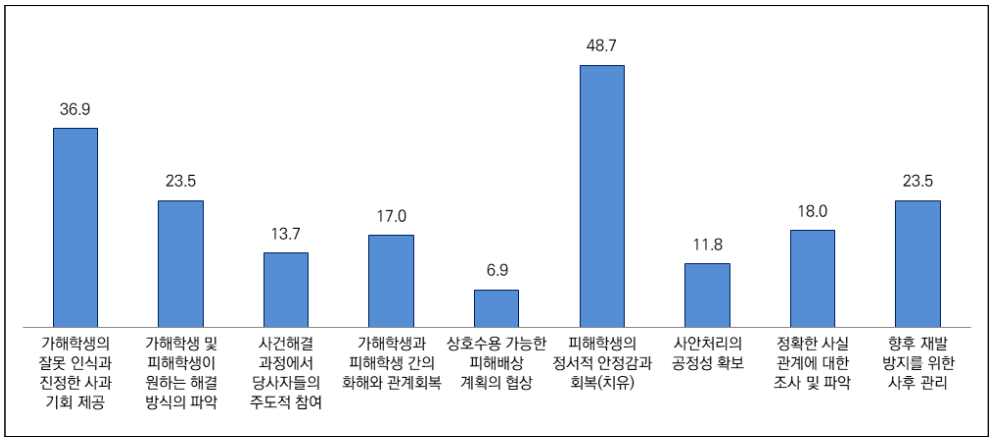


〈표 Ⅳ-156〉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처리원칙 우선순위(2순위 중복응답) (1/2)

(단위 : %, 1+2순위)

| 구분 | | 사례수 | 가해학생의 잘못 인식과 진정한 사과 기회 제공 | 가해학생 및 피해 학생이 원하는 해결방식의 파악 | 사건해결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주도적 참여 |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화해와 관계회복 | 상호수용 가능한 피해배상 계획의 협상 |
|---|---|---|---|---|---|---|---|
| 전 체 | | (306) | 36.9 | 23.5 | 13.7 | 17.0 | 6.9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31.3 | 27.1 | 16.7 | 16.7 | 10.4 |
| | 일반 학부모 | (169) | 37.9 | 23.7 | 12.4 | 15.4 | 5.3 |
| | 관계자 | (41) | 46.3 | 14.6 | 12.2 | 24.4 | 4.9 |

D10. 학교폭력의 처리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1, 2순위를 선택해주세요. (1+2순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157〉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처리원칙 우선순위(2순위 중복응답) (2/2)

(단위 : %, 1+2순위)

| 구분 | | 사례수 | 피해학생의 정서적 안정감과 회복(치유) | 사안처리의 공정성 확보 | 정확한 시실관계에 대한 조사 및 파악 |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
|---|---|---|---|---|---|---|
| 전 체 | | (306) | 48.7 | 11.8 | 18.0 | 23.5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52.1 | 9.4 | 11.5 | 25.0 |
| | 일반 학부모 | (169) | 46.2 | 11.8 | 22.5 | 24.9 |
| | 관계자 | (41) | 51.2 | 17.1 | 14.6 | 14.6 |

D10. 학교폭력의 처리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1, 2순위를 선택해주세요. (1+2순위)

### (7) 당사자간 화해절차의 필요도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 중 당사자간 화해절차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8.4%로 나타났으며, '필요없다'는 응답비율은 21.6%로 나타났다.

〈그림 Ⅳ-122〉 [학부모 및 관계자] 당사자 간 화해절차 필요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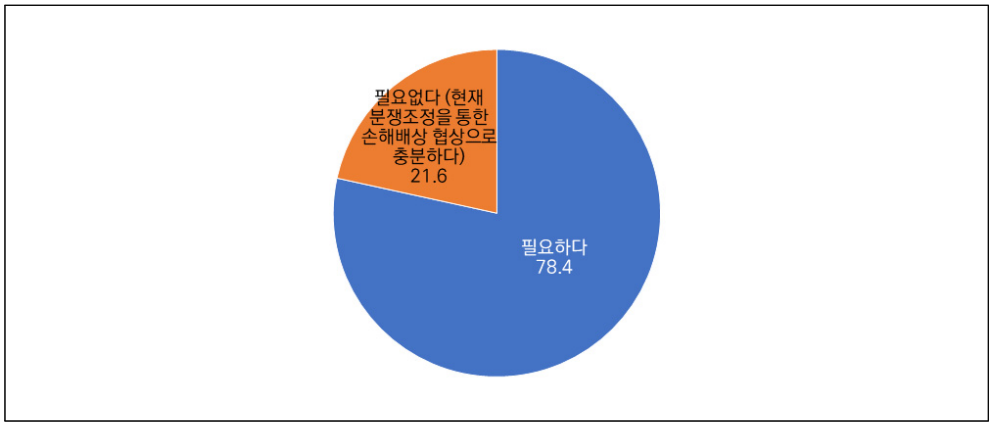


집단유형별($\chi^2$=16.136, p<0.001)로 '관계자'집단(87.8%)이 가장 높았고, '일반 학부모'(84.0%), '피해학생 학부모'(64.6%)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158〉 [학부모 및 관계자] 당사자간 화해절차 필요도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필요하다 | 필요없다 (현재 분쟁조정을 통한 손해배상협상으로 충분하다) | 통계량 |
|---|---|---|---|---|---|
| 전 체 | | (306) | 78.4 | 21.6 | -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64.6 | 35.4 | $x^2$=16.136, p=0.000 |
| | 일반 학부모 | (169) | 84.0 | 16.0 | |
| | 관계자 | (41) | 87.8 | 12.2 | |

D11. 자치위원회 처리에 있어서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 부모) 간의 대화를 통한 화해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8) 당사자간 화해절차의 필요이유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은 당사자간 화해절차가 필요하다고 본 이유로 '가해학생의 책임인식과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하다'(59.2%)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다음으로 '학생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40.4%), '기타'(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23〉 [학부모 및 관계자] 당사자 간 화해절차 필요 이유

(Base:화해절차 필요 응답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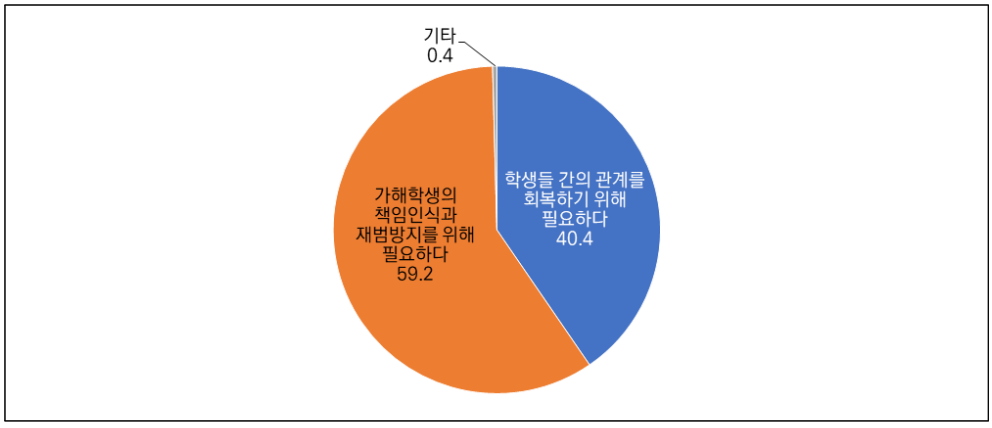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의 유형별로는 당사자간 화해절차 필요 이유에 대한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159〉 [학부모 및 관계자] 당사자간 화해절차 필요 이유

(Base:화해절차 필요 응답자,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학생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 | 가해학생의 책임인식과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 기타 | 통계량 |
|---|---|---|---|---|---|---|
| 전 체 | | (240) | 40.4 | 59.2 | 0.4 | -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62) | 38.7 | 61.3 | 0.0 | $x^2$=6.307, p=0.177 |
| | 일반 학부모 | (142) | 36.6 | 62.7 | 0.7 | |
| | 관계자 | (36) | 58.3 | 41.7 | 0.0 | |

D11-1.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9) 당사자간 화해시 자치위원회 처분반영 정도

당사자간 화해시 자치위원회의 처분반영정도와 관련해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이 가장 많이 답한 것은 '학교폭력 처분수준을 완화한다'(35.0%)였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처분을 내리되, 처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30.1%), '반영되면 안 된다'(26.1%), '자치위원회 절차를 종결한다'(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24〉 [학부모 및 관계자] 당사자 간 화해 시 자치위원회 반영 정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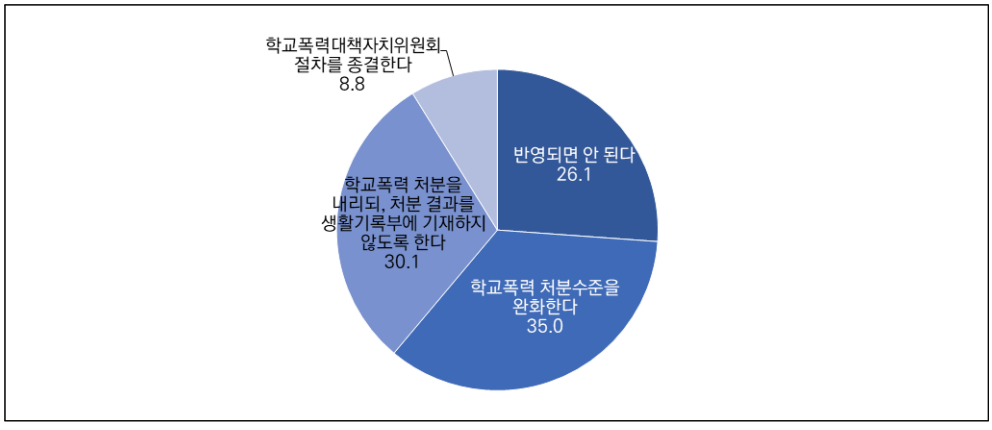


집단유형별($x^2$=15.776, p<0.05)로 피해학생 학부모는 '학교폭력 처분을 내리되, 처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41.7%), 일반학부모는 '학교폭력 처

분수준을 완화한다'(36.1%), 관계자집단은 '학교폭력 처분수준을 완화한다'(48.8%)를 많이 답했다.

**〈표 Ⅳ-160〉 [학부모 및 관계자] 당사자간 화해 시 자치위원회 반영 정도**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통계량 |
|---|---|---|---|---|---|---|---|
| 전 체 | | (306) | 26.1 | 35.0 | 30.1 | 8.8 | -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22.9 | 27.1 | 41.7 | 8.3 | $\chi^2$=15.776, p=0.015 |
| | 일반 학부모 | (169) | 27.2 | 36.1 | 25.4 | 11.2 | |
| | 관계자 | (41) | 29.3 | 48.8 | 22.0 | 0.0 | |

D12.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화해가 된 경우, 그 결과가 자치위원회 절차 진행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반영되면 안 된다 (2) 학교폭력 처분수준을 완화한다
(3) 학교폭력 처분을 내리되, 처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4) 자치위원회 절차를 종결한다

### (10) 자치위원회 역할에 대한 만족도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이 자치위원회의 역할 만족도에 대해 '적절하게 해결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4%,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0.8%,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76.8%로 나타났다.

**〈그림 Ⅳ-125〉 [학부모 및 관계자] 자치위원회 역할 만족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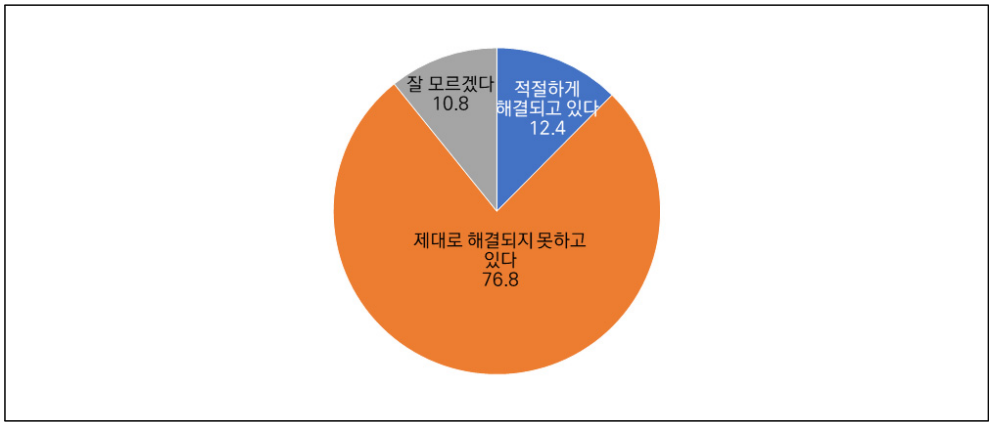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의 유형별로는 자치위원회 만족도에 대한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161〉 [학부모 및 관계자] 자치위원회 역할 만족도**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적절하게 해결되고 있다 |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 잘 모르겠다 | 통계량 |
|---|---|---|---|---|---|---|
| 전 체 | | (306) | 12.4 | 76.8 | 10.8 | -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7.3 | 79.2 | 13.5 | $x^2$=4.498, p=0.343 |
| | 일반 학부모 | (169) | 14.2 | 75.7 | 10.1 | |
| | 관계자 | (41) | 17.1 | 75.6 | 7.3 | |

D14. 현재 자치위원회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1) 경미한 학교폭력사건의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방안에 관한 인식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이 경미한 학교폭력사건의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방안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2.2%,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57.8%로 나타났다.

**〈그림 Ⅳ-126〉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 자체해결 인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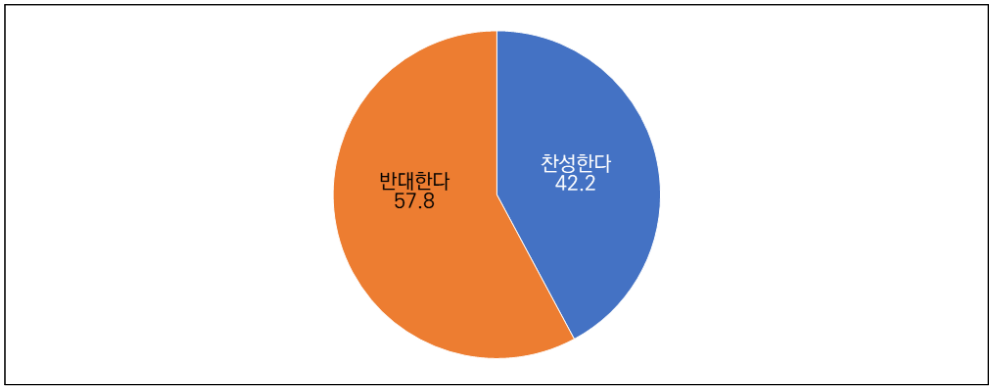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의 유형별로는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방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162〉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인식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찬성한다 | 반대한다 | 통계량 |
|---|---|---|---|---|---|
| 전 체 | 학부모 및 관계자 | (306) | 42.2 | 57.8 | $x^2$=0.034, p=0.853 |
| | 학생 | (474) | 42.8 | 57.2 |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34.4 | 65.6 | $x^2$=5.726, p=0.057 |
| | 일반 학부모 | (169) | 43.2 | 56.8 | |
| | 관계자 | (41) | 56.1 | 43.9 | |

D15.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담임교사나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2) 경미한 학교폭력사건의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방안 찬성이유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 중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방안에 찬성한 경우, 그 이유로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처벌보다는 교육적 선도와 해결이 필요'(48.8%)하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자치위원회 진행에 따른 피·가해학생과 보호자 사이의 갈등 확대 방지' (45.0%), '자치위원회 행정업무 감소로 교사 본연의 학생교육이 수행'(5.4%), '기타'(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27〉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찬성 이유

(Base: 자체해결 찬성 응답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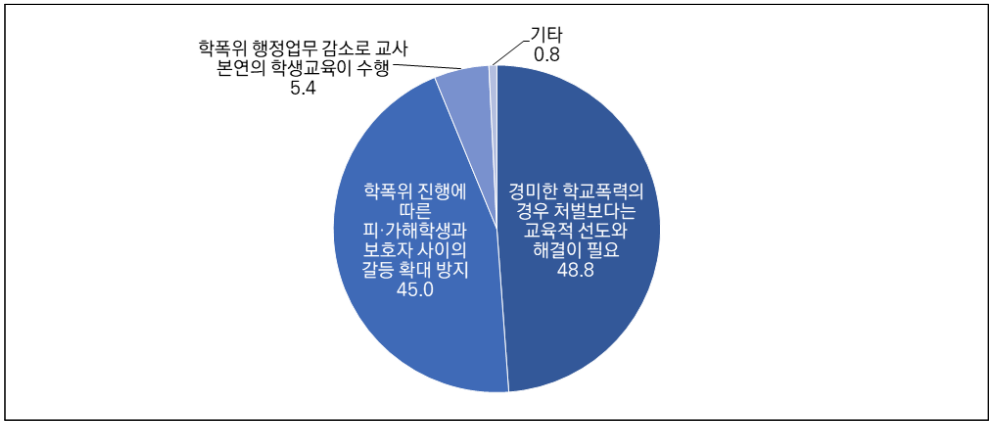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163〉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찬성 이유

(Base: 자체해결 찬성 응답자,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통계량 |
|---|---|---|---|---|---|---|---|
| 전 체 | 학부모 및 관계자 | (129) | 48.8 | 45.0 | 5.4 | 0.8 | $x^2$=7.204, p=0.066 |
| | 학생 | (203) | 41.9 | 42.4 | 12.3 | 3.4 |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33) | 48.5 | 36.4 | 12.1 | 3.0 | $x^2$=7.582, p=0.270 |
| | 일반 학부모 | (73) | 47.9 | 49.3 | 2.7 | 0.0 | |
| | 관계자 | (23) | 52.2 | 43.5 | 4.3 | 0.0 | |

D15-1.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학교 자체해결(담임교사나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처벌보다는 교육적 선도와 해결이 필요
(2) 자치위원회 진행에 따른 피·가해학생과 보호자 사이의 갈등 확대 방지
(3) 자치위원회 행정업무 감소로 교사 본연의 학생교육이 수행
(4) 기타

## (13)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의 폭력유형 기준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이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의 폭력유형 기준으로 가장 많이 답한 것은 '단순싸움(말싸움)'(41.1%)이었다. 다음으로 '헛소문·뒷말'(32.6%), '따돌림'(15.5%), '폭행'(9.3%), '상해'(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28〉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기준

(Base: 자체해결 찬성 응답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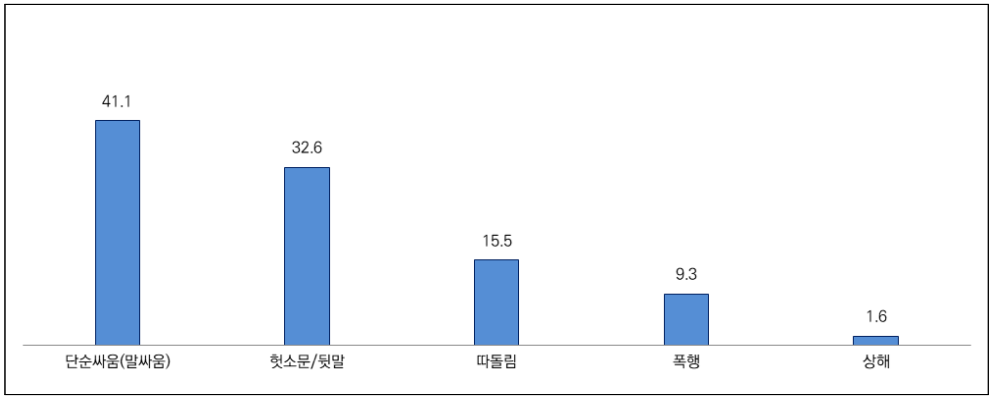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의 유형별로는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에 대한 기준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표 Ⅳ-164〉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기준

(Base: 자체해결 찬성 응답자,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단순 싸움 (말싸움) | 헛소문/ 뒷말 | 따돌림 | 폭행 | 상해 | 기타 | 통계량 |
|---|---|---|---|---|---|---|---|---|---|
| 전 체 | 학부모 및 관계자 | (129) | 41.1 | 32.6 | 15.5 | 9.3 | 1.6 | 0.0 | $\chi^2$=4.776, p=0.444 |
| | 학생 | (203) | 38.9 | 26.1 | 17.7 | 13.8 | 2.0 | 1.5 | |
| 집단 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33) | 33.3 | 30.3 | 30.3 | 6.1 | 0.0 | 0.0 | $\chi^2$=13.074, p=0.109 |
| | 일반 학부모 | (73) | 41.1 | 38.4 | 8.2 | 9.6 | 2.7 | 0.0 | |
| | 관계자 | (23) | 52.2 | 17.4 | 17.4 | 13.0 | 0.0 | 0.0 | |

D15-2. 학교 자체해결(담임교사나 학교장의 재량종결)을 원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14) 경미한 학교폭력사건의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의 조건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은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의 조건으로 '교사로서 판단하기에 대등한 당사자 간의 싸움으로 생활지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경우'(28.7%)를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피해학생 또는 부모가 자치위원회 절차를 원하지 않는 경우'(21.7%), '사안이 학교폭력 판단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16.3%),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14.0%), '학교폭력으로 분류되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화해와 관계회복이 이루어진 경우'(13.2%),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29〉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

(Base: 자체해결 찬성 응답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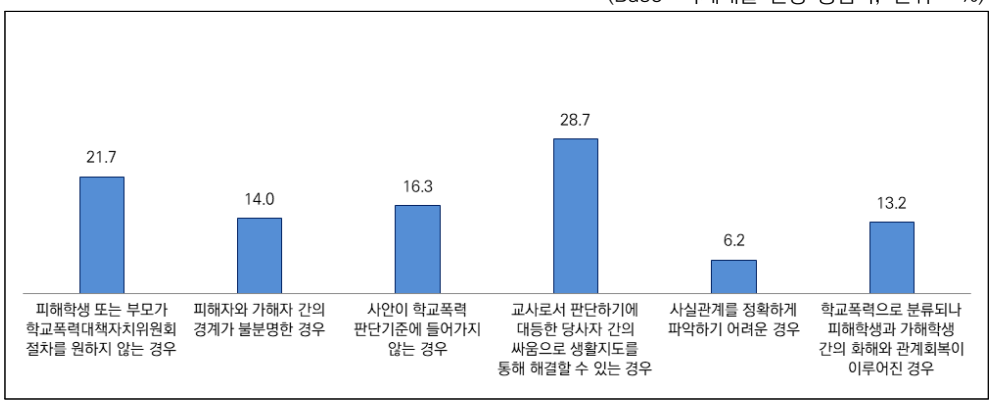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학생집단에서 '피해학생 또는 부모가 자치위원회 절차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의 경우 '교사로서 판단하기에 대등한 당사자 간의 싸움으로 생활지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경우'의 응답비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x^2$=23.053, p<0.001).

**〈표 Ⅳ-165〉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 (1/2)**

(Base: 자체해결 찬성 응답자,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
| 전 체 | 학부모 및 관계자 | (129) | 21.7 | 14.0 | 16.3 | 28.7 |
| | 학생 | (203) | 33.5 | 16.3 | 13.8 | 10.8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33) | 18.2 | 21.2 | 12.1 | 30.3 |
| | 일반 학부모 | (73) | 21.9 | 12.3 | 12.3 | 31.5 |
| | 관계자 | (23) | 26.1 | 8.7 | 34.8 | 17.4 |

D15-3. 어떤 사안인 경우 자치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학교 자체해결(담임교사나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하시길 원하십니까?

(1) 피해학생 또는 부모가 자치위원회 절차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3) 사안이 학교폭력 판단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4) 교사로서 판단하기에 대등한 당사자 간의 싸움으로 생활지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경우

**〈표 Ⅳ-166〉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 (2/2)**

(Base: 자체해결 찬성 응답자,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5) | (6) | (7) | 통계량 |
|---|---|---|---|---|---|---|
| 전 체 | 학부모 및 관계자 | (129) | 6.2 | 13.2 | 0.0 | $x^2$=23.053, p=0.001 |
| | 학생 | (203) | 13.3 | 11.8 | 0.5 |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33) | 6.1 | 12.1 | 0.0 | $x^2$=11.327, p=0.333 |
| | 일반 학부모 | (73) | 8.2 | 13.7 | 0.0 | |
| | 관계자 | (23) | 0.0 | 13.0 | 0.0 | |

D15-3. 어떤 사안인 경우 자치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학교 자체해결(담임교사나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하시길 원하십니까?

(5)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6) 학교폭력으로 분류되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화해와 관계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7) 기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15)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방안의 반대 이유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 중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방안을 반대한 경우, 그 이유로 '학교나 가해학생 측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할 위험'(67.2%)을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모든 학교폭력은 경미하지 않은 폭력으로 보고 대처'(17.5%), '경미한 학교폭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14.7%), '기타'(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30〉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반대 이유**

(Base: 자체해결 반대 응답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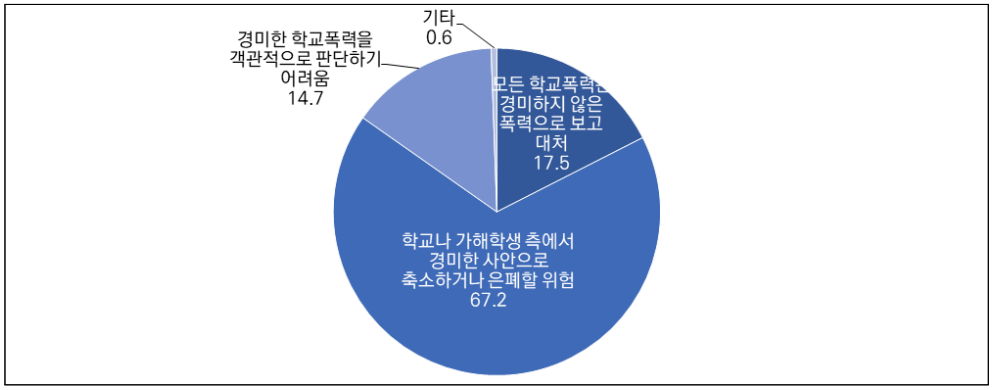


**〈표 Ⅳ-167〉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반대 이유**

(Base: 자체해결 반대 응답자,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통계량 |
|---|---|---|---|---|---|---|---|
| 전 체 | 학부모 및 관계자 | (177) | 17.5 | 67.2 | 14.7 | 0.6 | $\chi^2$=5.208, p=0.157 |
| | 학생 | (271) | 14.8 | 70.5 | 11.4 | 3.3 |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63) | 14.3 | 61.9 | 22.2 | 1.6 | $\chi^2$=12.247, p=0.057 |
| | 일반 학부모 | (96) | 22.9 | 66.7 | 10.4 | 0.0 | |
| | 관계자 | (18) | 0.0 | 88.9 | 11.1 | 0.0 | |

D15-4.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담임교사나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모든 학교폭력은 경미하지 않은 폭력으로 보고 대처
(2) 학교나 가해학생 측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할 위험
(3) 경미한 학교폭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4) 기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16) 경미한 학교폭력사건의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방안의 우려 사항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이 경미한 학교폭력사건의 자체해결방안과 관련한 우려사항으로 가장 많이 답한 것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우려'(33.7%)였다. 다음으로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에 대한 우려'(15.0%), '가해학생의 잘못 인식과 진정한 반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우려'(13.7%),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 짓기 어려워 자치위원회 처리가 적합하지 않음'(10.5%), '피해학생 부모들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재발방지를 위해 비효과적이라는 우려'(각 9.2%), '가해학생 부모들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6.5%), '없다'(1.0%), '향후 재심에 대한 우려', '기타'(각 0.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에 비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우려'의 응답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chi^2$=46.111, p<0.001).

**〈그림 Ⅳ-131〉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우려 사항**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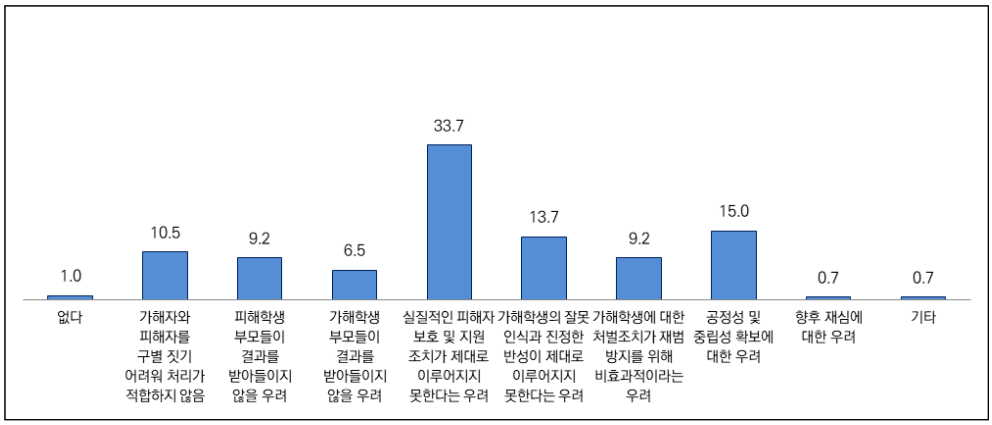


관계자집단에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우려'(46.3%)에 대한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chi^2$=38.113, p<0.0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표 Ⅳ-168〉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우려 사항 (1/2)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5) |
|---|---|---|---|---|---|---|---|
| 전 체 | 학부모 및 관계자 | (306) | 1.0 | 10.5 | 9.2 | 6.5 | 33.7 |
| | 학생 | (474) | 6.3 | 5.3 | 6.8 | 7.2 | 24.9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2.1 | 6.3 | 10.4 | 14.6 | 34.4 |
| | 일반 학부모 | (169) | 0.0 | 13.0 | 10.1 | 3.6 | 30.2 |
| | 관계자 | (41) | 2.4 | 9.8 | 2.4 | 0.0 | 46.3 |

D16. 자치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학교 자체해결(담임교사나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시 우려 점은 무엇입니까?

(1) 없다
(2)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 짓기 어려워 자치위원회 처리가 적합하지 않음
(3) 피해학생 부모들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
(4) 가해학생 부모들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
(5)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우려

### 〈표 Ⅳ-169〉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우려 사항 (2/2)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6) | (7) | (8) | (9) | (10) | 통계량 |
|---|---|---|---|---|---|---|---|---|
| 전 체 | 학부모 및 관계자 | (306) | 13.7 | 9.2 | 15.0 | 0.7 | 0.7 | $\chi^2$=46.111, p=0.000 |
| | 학생 | (474) | 20.7 | 15.4 | 9.5 | 2.3 | 1.7 |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9.4 | 9.4 | 10.4 | 2.1 | 1.0 | $\chi^2$=38.113, p=0.004 |
| | 일반 학부모 | (169) | 14.2 | 9.5 | 18.9 | 0.0 | 0.6 | |
| | 관계자 | (41) | 22.0 | 7.3 | 9.8 | 0.0 | 0.0 | |

D16. 자치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학교 자체해결(담임교사나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시 우려 점은 무엇입니까?

(6) 가해학생의 잘못 인식과 진정한 반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우려
(7)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재발방지를 위해 비효과적이라는 우려
(8)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에 대한 우려
(9) 향후 재심에 대한 우려
(10) 기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17) 가해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삭제에 대한 인식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은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생기부 기재 삭제와 관련해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52.9%)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일부조치만 졸업 시 즉시 삭제한다'(30.4%), '졸업 이전에 삭제한다'(10.5%), '조치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4.9%), '기타'(1.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32〉 [학부모 및 관계자] 학생 선도조치 기록 인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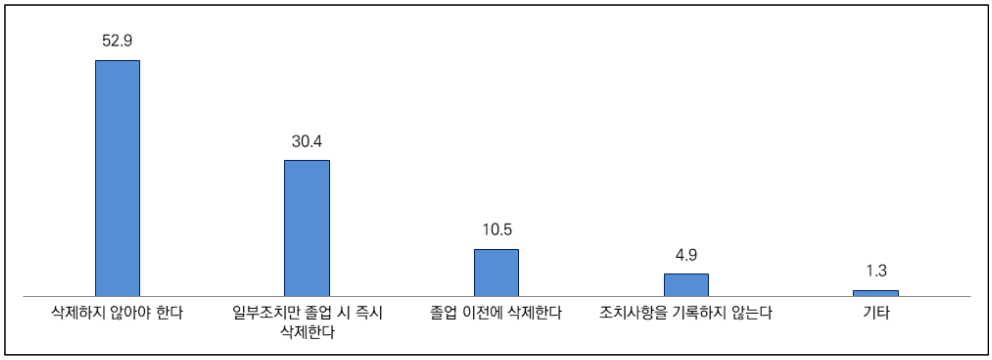


학생집단과 비교해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의 응답비율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chi^2$=41.777, p<0.001). 일반 학부모집단에서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62.1%)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chi^2$=30.070, p<0.001).

**〈표 Ⅳ-170〉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인식 (1/2)**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 | 일부조치만 졸업 시 즉시 삭제한다 | 졸업 이전에 삭제한다 |
|---|---|---|---|---|---|
| 전 체 | 학부모 및 관계자 | (306) | 52.9 | 30.4 | 10.5 |
| | 학생 | (474) | 73.8 | 17.5 | 3.4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41.7 | 28.1 | 19.8 |
| | 일반 학부모 | (169) | 62.1 | 29.6 | 5.9 |
| | 관계자 | (41) | 41.5 | 39.0 | 7.3 |

D17. 현재는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졸업 시나 일정 기간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조치 기록을 어떻게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171〉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인식 (2/2)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조치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 기타 | 통계량 |
|---|---|---|---|---|---|
| 전 체 | 학부모 및 관계자 | (306) | 4.9 | 1.3 | $\chi^2$=41.777, p=0.000 |
| | 학생 | (474) | 3.8 | 1.5 |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9.4 | 1.0 | $\chi^2$=30.070, p=0.000 |
| | 일반 학부모 | (169) | 1.2 | 1.2 | |
| | 관계자 | (41) | 9.8 | 2.4 | |

D17. 현재는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졸업 시나 일정 기간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조치 기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18) 가해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유지 이유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 중 가해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삭제를 반대한 경우, 그 이유로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 효과가 약화'(61.7%)를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미기재시 가해학생들의 반성을 이끌어내기 어려움'(29.0%), '피해학생 보호 효과가 줄어듦'(8.6%), '기타'(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33〉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유지 이유

(Base: 선도조치 기록유지 응답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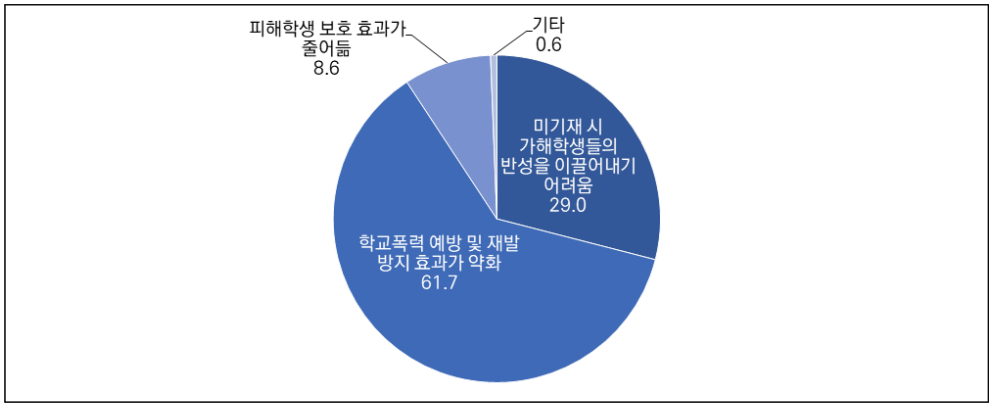


학생집단에 비해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 효과가 약화'의 응답비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chi^2$=16.872, p<0.00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172〉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유지 이유

(Base: 선도조치 기록유지 응답자,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미기재 시 가해학생들의 반성을 이끌어내기 어려움 |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 효과가 약화 | 피해학생 보호 효과가 줄어듦 | 기타 | 통계량 |
|---|---|---|---|---|---|---|---|
| 전 체 | 학부모 및 관계자 | (162) | 29.0 | 61.7 | 8.6 | 0.6 | $x^2$=16.872, p=0.001 |
| | 학생 | (350) | 45.4 | 43.7 | 8.3 | 2.6 |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40) | 22.5 | 65.0 | 12.5 | 0.0 | $x^2$=2.505, p=0.868 |
| | 일반 학부모 | (105) | 30.5 | 61.0 | 7.6 | 1.0 | |
| | 관계자 | (17) | 35.3 | 58.8 | 5.9 | 0.0 | |

D17-1. 삭제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9) 가해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삭제 찬성 이유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 중 가해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삭제를 찬성하는 경우, 그 이유로 '가해학생이 반성한 경우에도 낙인효과가 남는 것을 방지'(64.5%)할 수 있음에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미기재시 교사가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가능성' (26.9%), '기타'(5.4%), '가해학생 반발에 따른 가·피해학생 간 법적 다툼 발생을 완화'(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34〉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삭제 이유

(Base: 선도조치 기록삭제 응답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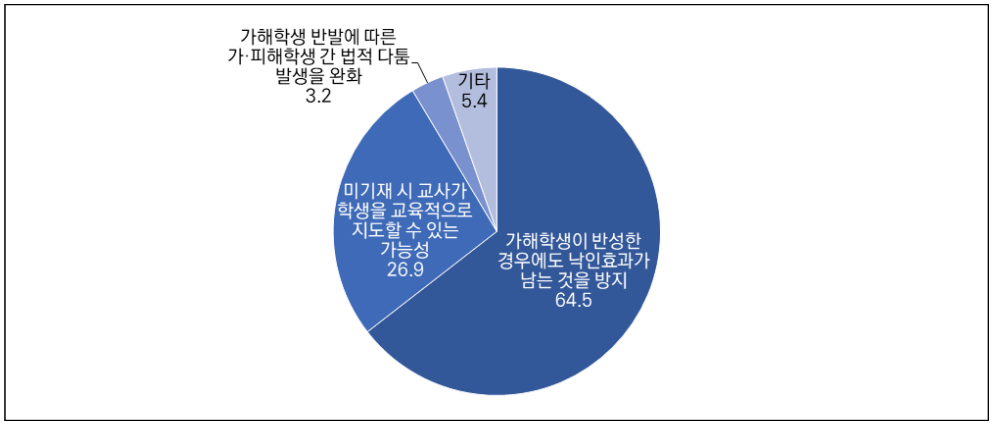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의 유형별로 가해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삭제에 대한 이유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Ⅳ-173〉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삭제 이유**

(Base: 선도조치 기록삭제 응답자,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통계량 |
|---|---|---|---|---|---|---|---|
| 전 체 | 학부모 및 관계자 | (93) | 64.5 | 26.9 | 3.2 | 5.4 | $x^2$=4.658, p=0.199 |
| | 학생 | (83) | 71.1 | 16.9 | 8.4 | 3.6 |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27) | 55.6 | 29.6 | 7.4 | 7.4 | $x^2$=5.139, p=0.526 |
| | 일반 학부모 | (50) | 64.0 | 30.0 | 2.0 | 4.0 | |
| | 관계자 | (16) | 81.3 | 12.5 | 0.0 | 6.3 | |

D17-2. 삭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가해학생이 반성한 경우에도 낙인효과가 남는 것을 방지
(2) 미기재 시 교사가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가능성
(3) 가해학생 반발에 따른 가·피해학생 간 법적 다툼 발생을 완화
(4) 기타

## (20)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의 도움정도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에게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의 도움정도를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전학'(3.85점)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3.65점), '피해학생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3.55점), '학급교체'(3.51점), '출석정지'(3.49점), '사회봉사'(2.98점), '학교에서의 봉사'(2.92점),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8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석정지'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학생보다 평균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Ⅳ-135〉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도움정도**

(단위 : 5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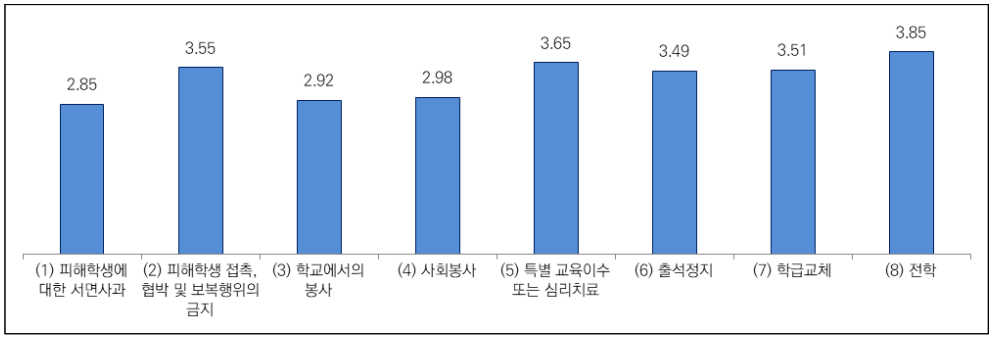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집단유형별로 비교한 결과, 일반학부모는 '피해학생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3.74점, F=5.884, p<0.01), '학교에서의 봉사'(3.11점, F=4.667, p<0.01), '사회봉사'(3.12점, F=3.199, p<0.05)에서 유의미하게 도움정도를 높게 응답했다.

**〈표 Ⅳ-174〉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도움정도 (1/2)**

(단위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
| 전 체 | 학부모 및 관계자 | (306) | 2.85 | 3.55 | 2.92 | 2.98 |
| | 학생 | (474) | 2.68 | 3.80 | 2.38 | 2.61 |
| | 통계량 | - | F=4.187, p=0.041 | F=9.563, p=0.002 | F=38.624, p=0.000 | F=18.198, p=0.000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2.63 | 3.33 | 2.65 | 2.77 |
| | 일반 학부모 | (169) | 2.98 | 3.74 | 3.11 | 3.12 |
| | 관계자 | (41) | 2.85 | 3.29 | 2.83 | 2.90 |
| | 통계량 | - | F=2.742, p=0.066 | F=5.884, p=0.003 | F=4.667, p=0.010 | F=3.199, p=0.042 |

D18. 다음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선도·교육 조치입니다. 다음 방법들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표 Ⅳ-175〉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도움정도 (2/2)**

(단위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5) | (6) | (7) | (8) |
|---|---|---|---|---|---|---|
| 전 체 | 학부모 및 관계자 | (306) | 3.65 | 3.49 | 3.51 | 3.85 |
| | 학생 | (474) | 3.17 | 3.52 | 3.27 | 4.05 |
| | 통계량 | - | F=32.253, p=0.000 | F=0.176, p=0.675 | F=6.941, p=0.009 | F=6.080, p=0.014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3.55 | 3.41 | 3.38 | 3.70 |
| | 일반 학부모 | (169) | 3.76 | 3.50 | 3.51 | 3.93 |
| | 관계자 | (41) | 3.39 | 3.61 | 3.83 | 3.90 |
| | 통계량 | - | F=2.687, p=0.070 | F=0.543, p=0.582 | F=2.136, p=0.120 | F=1.382, p=0.253 |

D18. 다음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선도·교육 조치입니다. 다음 방법들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5)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21) 가해학생 일부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유보에 대한 인식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 중 가해학생 선도조치 중 일부를 단계별로 기재유보하는 방안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66.0%였다.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은 23.5%,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10.5%였다. 5점 만점에 3.61점으로 나타나 학생집단과 비교할 때 가해학생 일부 선도조치의 생기부 기재 유보 방안이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F=8.464, p<0.01).

**〈그림 Ⅳ-136〉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학생 일부 선도조치 기재 유보 인식**

(단위 : %, 5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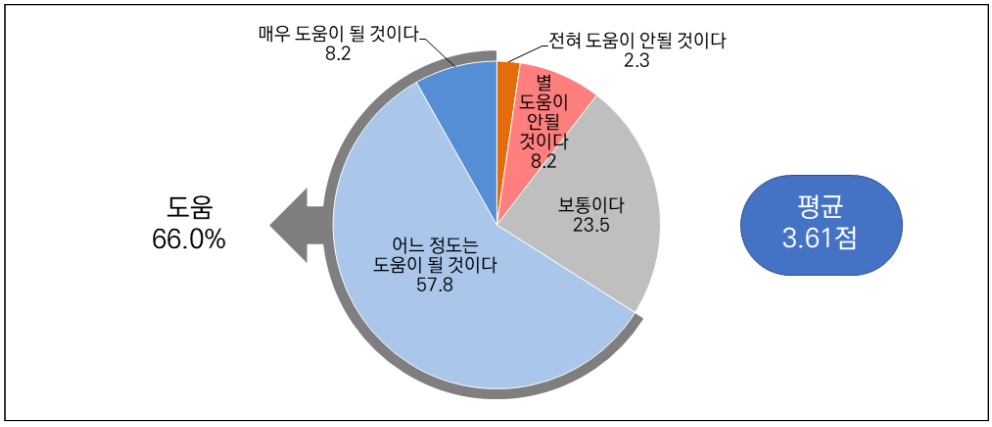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의 유형별로는 가해학생 일부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유보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176〉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학생 일부 선도조치 기재 유보 인식**

(단위 :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비도움 | 보통 | 도움 | 평균 | 통계량 |
|---|---|---|---|---|---|---|---|
| 전 체 | 학부모 및 관계자 | (306) | 10.5 | 23.5 | 66.0 | 3.61 | F=8.464, p=0.004 |
| | 학생 | (474) | 12.9 | 33.8 | 53.4 | 3.43 |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8.3 | 33.3 | 58.3 | 3.54 | F=0.972, p=0.379 |
| | 일반 학부모 | (169) | 11.8 | 15.4 | 72.8 | 3.67 | |
| | 관계자 | (41) | 9.8 | 34.1 | 56.1 | 3.54 | |

D19.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선도·교육 조치 중 1호~3호는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는 대신, 아래와 같은 3단계 안전장치를 적용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방안이 학교폭력의 처리과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22)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도움정도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의 도움정도를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4.06점)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심리상담 및 조언'(3.92점), '그밖의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3.84점), '일시 보호'(3.79점), '학급교체'(3.5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의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학생집단보다 평균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Ⅳ-137〉 [학부모 및 관계자] 피해학생 보호조치 도움정도**

(단위 : 5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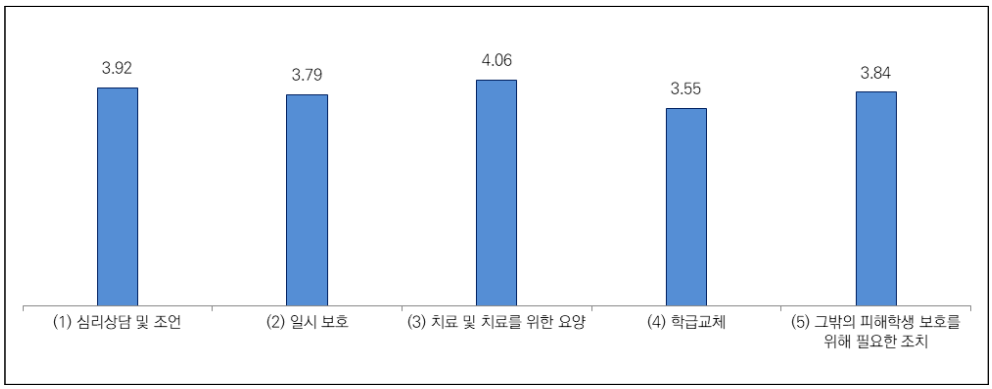


관계자집단은 '심리상담 및 조언'(4.00점, F=3.111, p<0.05)의 도움정도를 유의미하게 높게 답했다. 일반 학부모는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4.36점, F=3.427, p<0.05)과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인 제도 확대'(4.20점, F=5.468, p<0.01)의 도움정도를 유의미하게 높게 응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177〉 [학부모 및 관계자] 피해학생 보호조치 도움정도

(단위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 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그밖의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
|---|---|---|---|---|---|---|---|
| 전 체 | 학부모 및 관계자 | (306) | 3.92 | 3.79 | 4.06 | 3.55 | 3.84 |
| | 학생 | (474) | 3.60 | 3.47 | 3.68 | 3.20 | 3.88 |
| | 통계량 | - | F=21.596, p=0.000 | F=19.371, p=0.000 | F=30.407, p=0.000 | F=17.977, p=0.000 | F=0.301, p=0.584 |
| 집단 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3.75 | 3.72 | 3.82 | 3.44 | 3.70 |
| | 일반 학부모 | (169) | 3.99 | 3.86 | 4.20 | 3.60 | 3.91 |
| | 관계자 | (41) | 4.00 | 3.71 | 4.07 | 3.61 | 3.90 |
| | 통계량 | - | F=3.111, p=0.046 | F=0.898, p=0.409 | F=5.468, p=0.005 | F=0.764, p=0.467 | F=1.706, p=0.183 |

D20. 다음은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에게 취해지는 보호조치입니다. 다음 방법들이 피해학생의 보호와 안정을 취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23) 화해·관계회복 조정역할의 수행 주체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은 화해·관계회복 조정역할을 수행할 주체로 '중재전문기관 및 외부 전문가'(50.0%)를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선생님'(14.7%), '자치위원회'(12.7%), '학부모'(8.2%), '교육청·교육부'(6.5%), '학생'(4.6%), '필요없다'(2.9%), '기타'(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38〉 [학부모 및 관계자] 화해/관계회복 조정 역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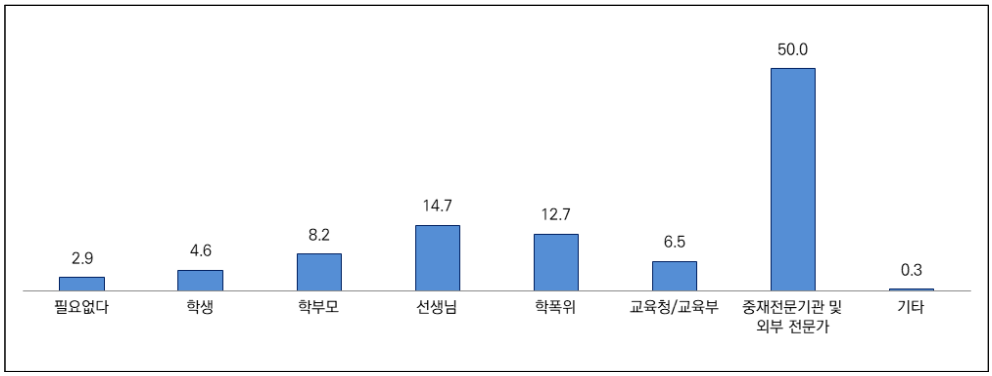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학생집단에 비해 '중재전문기관 및 외부 전문가'의 응답비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x^2$=149.026, p<0.001).

**〈표 Ⅳ-178〉 [학부모 및 관계자] 화해·관계회복 조정역할 (1/2)**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필요없다 | 학생 | 학부모 | 선생님 | 자치위원회 |
|---|---|---|---|---|---|---|---|
| 전 체 | 학부모 및 관계자 | (306) | 2.9 | 4.6 | 8.2 | 14.7 | 12.7 |
| | 학생 | (474) | 18.1 | 24.9 | 5.5 | 15.4 | 9.3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4.2 | 4.2 | 5.2 | 11.5 | 15.6 |
| | 일반 학부모 | (169) | 3.0 | 3.6 | 9.5 | 16.6 | 12.4 |
| | 관계자 | (41) | 0.0 | 9.8 | 9.8 | 14.6 | 7.3 |

D22. 학교폭력으로 또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화해 및 관계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화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24) 분쟁해결 조정역할의 수행 주체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은 분쟁해결의 조정역할을 수행할 주체로 '중재전문기관 및 외부 전문가'(60.5%)를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자치위원회'(11.8%), '교육청/교육부' (11.4%), '선생님'(7.5%), '학부모'(6.9%), '필요없다'(1.3%), '기타'(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179〉 [학부모 및 관계자] 화해/관계회복 조정 역할 (2/2)**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교육청/교육부 | 중재전문기관 및 외부 전문가 | 기타 | 평균 |
|---|---|---|---|---|---|---|
| 전 체 | 학부모 및 관계자 | (306) | 6.5 | 50.0 | 0.3 | $x^2$=149.026, p=0.000 |
| | 학생 | (474) | 5.1 | 19.0 | 2.7 |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7.3 | 52.1 | 0.0 | $x^2$=15.584, p=0.339 |
| | 일반 학부모 | (169) | 4.1 | 50.3 | 0.6 | |
| | 관계자 | (41) | 14.6 | 43.9 | 0.0 | |

D22. 학교폭력으로 또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화해 및 관계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화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림 Ⅳ-139〉 [학부모 및 관계자] 분쟁해결 조정 역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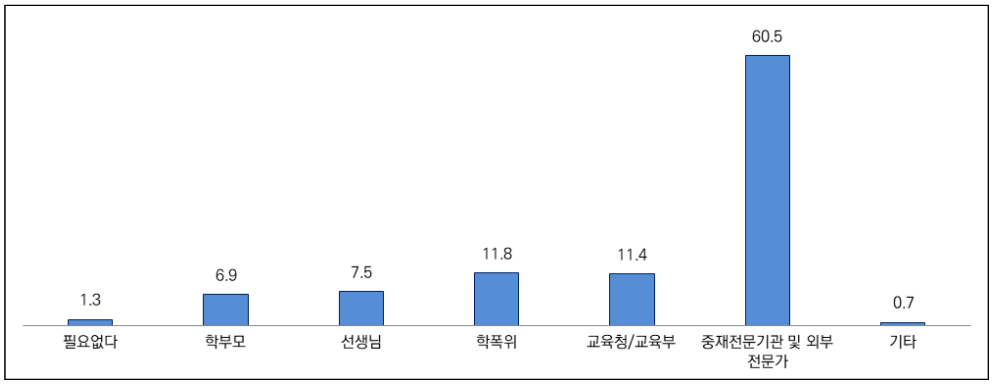


학생집단에 비해 '중재전문기관 및 외부 전문가'의 응답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chi^2$=45.327, p<0.001).

〈표 Ⅳ-180〉 [학부모 및 관계자] 분쟁해결 조정 역할 (1/2)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필요없다 | 학부모 | 선생님 | 자치위원회 |
|---|---|---|---|---|---|---|
| 전 체 | 학부모 및 관계자 | (306) | 1.3 | 6.9 | 7.5 | 11.8 |
| | 학생 | (474) | 5.3 | 9.9 | 9.7 | 17.7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2.1 | 5.2 | 8.3 | 12.5 |
| | 일반 학부모 | (169) | 0.6 | 8.3 | 7.1 | 11.8 |
| | 관계자 | (41) | 2.4 | 4.9 | 7.3 | 9.8 |

D23. 학교폭력으로 법적 소송 및 치료비 요구 등이 생길 경우 분쟁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181〉 [학부모 및 관계자] 분쟁해결 조정 역할 (2/2)**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교육청/교육부 | 중재 전문기관 및 외부 전문가 | 기타 | 통계량 |
|---|---|---|---|---|---|---|
| 전 체 | 학부모 및 관계자 | (306) | 11.4 | 60.5 | 0.7 | $x^2$=45.327, p=0.000 |
| | 학생 | (474) | 18.8 | 36.9 | 1.7 |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14.6 | 57.3 | 0.0 | $x^2$=14.336, p=0.280 |
| | 일반 학부모 | (169) | 7.1 | 64.5 | 0.6 | |
| | 관계자 | (41) | 22.0 | 51.2 | 2.4 | |

D23. 학교폭력으로 법적 소송 및 치료비 요구 등이 생길 경우 분쟁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25) 학교폭력 전문상담기관의 필요성

학교폭력 전문상담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학부모 및 관계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4.8%, '필요 없다'고 응답한 비율 5.2%로 나타났다.

**〈그림 Ⅳ-140〉 [학부모 및 관계자] 전문 상담기관 필요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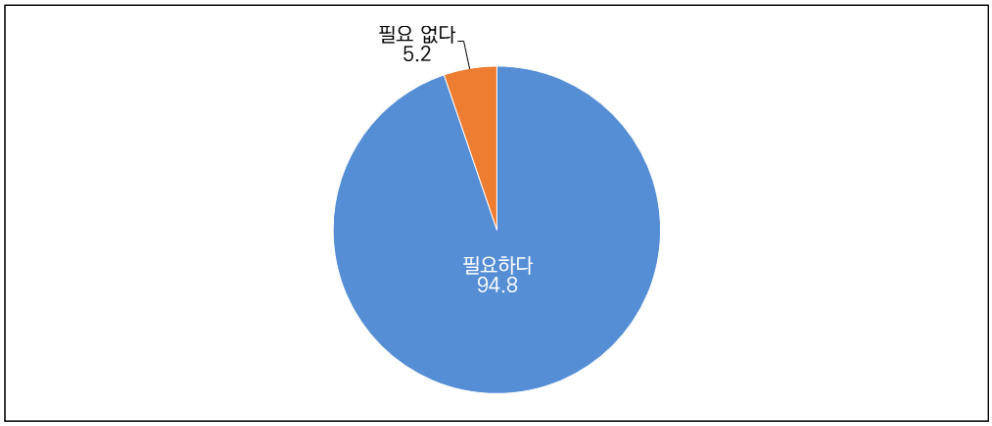


학생집단에 비해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chi^2$=4.304, p<0.05). 집단유형별로 '일반 학부모'(98.8%)집단에서 필요하다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관계자'(97.6%), '피해학생 학부모'(8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chi^2$=19.613, p<0.001).

**〈표 Ⅳ-182〉 [학부모 및 관계자] 전문 상담기관 필요도**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필요하다 | 필요 없다 | 통계량 |
|---|---|---|---|---|---|
| 전 체 | 학부모 및 관계자 | (306) | 94.8 | 5.2 | $\chi^2$=4.304, p=0.038 |
| | 학생 | (474) | 90.7 | 9.3 |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86.5 | 13.5 | $\chi^2$=19.613, p=0.000 |
| | 일반 학부모 | (169) | 98.8 | 1.2 | |
| | 관계자 | (41) | 97.6 | 2.4 | |

D24. 학교폭력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26) 손해배상갈등 중재역할의 필요성

손해배상갈등의 중재역할 필요성과 관련해 학부모 및 관계자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94.4%, '필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6%로 나타났다.

**〈그림 Ⅳ-141〉 [학부모 및 관계자] 손해배상갈등 중재역할 필요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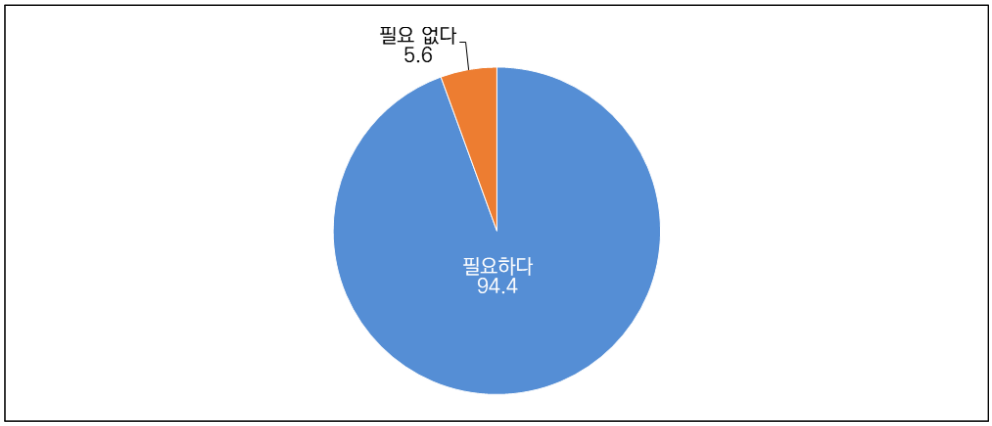


학생집단에 비해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chi^2$=9.550, p<0.01). '일반 학부모'집단(98.2%)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관계자'(97.6%), '피해학생 학부모'(8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chi^2$=17.031, p<0.001).

**〈표 Ⅳ-183〉 [학부모 및 관계자] 손배갈등 중재역할 필요도**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필요하다 | 필요 없다 | 통계량 |
|---|---|---|---|---|---|
| 전 체 | 학부모 및 관계자 | (306) | 94.4 | 5.6 | $\chi^2$=9.550, p=0.002 |
| | 학생 | (474) | 87.8 | 12.2 |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86.5 | 13.5 | $\chi^2$=17.031, p=0.000 |
| | 일반 학부모 | (169) | 98.2 | 1.8 | |
| | 관계자 | (41) | 97.6 | 2.4 | |

D25. 학교폭력 발생 시 손해배상(치료비, 금전적)갈등 또는 분쟁이 생겼을 경우 다른 사람이 중재(화해)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27)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인지 여부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학부모 및 관계자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3.5%로 나타났다.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56.5%였다.

**〈그림 Ⅳ-142〉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안전공제회 인지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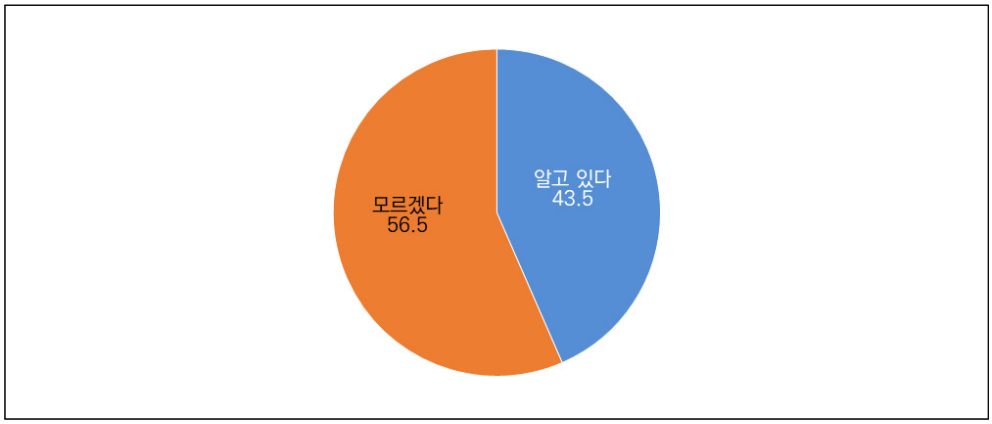


학생집단에 비해 '알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x^2$=32.387, p<0.001). '관계자'집단(80.5%)에서 알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일반 학부모'(37.9%), '피해학생 학부모'(3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x^2$=26.413, p<0.001).

**〈표 Ⅳ-184〉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안전공제회 인지 여부**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알고 있다 | 모르겠다 | 통계량 |
|---|---|---|---|---|---|
| 전 체 | 학부모 및 관계자 | (306) | 43.5 | 56.5 | $x^2$=32.387, p=0.000 |
| | 학생 | (474) | 24.1 | 75.9 |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37.5 | 62.5 | $x^2$=26.413, p=0.000 |
| | 일반 학부모 | (169) | 37.9 | 62.1 | |
| | 관계자 | (41) | 80.5 | 19.5 | |

D26.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를 선지원 받을 수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28)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에 대한 인지 여부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이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5.1%였다.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54.9%로 나타났다.

**〈그림 Ⅳ-143〉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인지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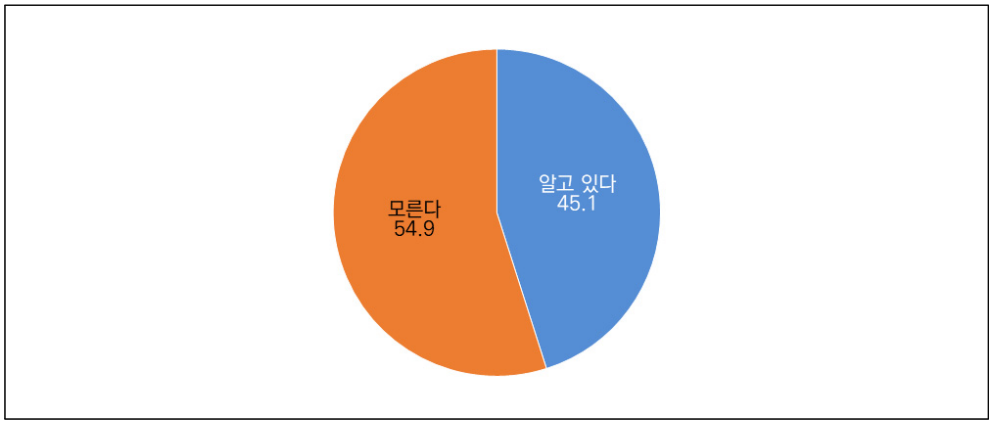


관계자집단(90.2%)에서 인지율이 가장 높았고, 피해학생 학부모(40.6%), 일반 학부모(3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chi^2$=39.355, p<0.001).

**〈표 Ⅳ-185〉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인지 여부**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알고 있다 | 모른다 | 통계량 |
|---|---|---|---|---|---|
| 전 체 | | (306) | 45.1 | 54.9 | -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40.6 | 59.4 | $\chi^2$=39.355, p=0.000 |
| | 일반 학부모 | (169) | 36.7 | 63.3 | |
| | 관계자 | (41) | 90.2 | 9.8 | |

D27.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 중 서면사과 외의 조치를 받은 경우 가해학생의 학부모 또한 특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29)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의 이행도에 대한 인식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에게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라고 질문한 결과,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24.5%로 나타났다. '아니다'라고 답한 비율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75.5%로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의 이행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그림 Ⅳ-144〉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이행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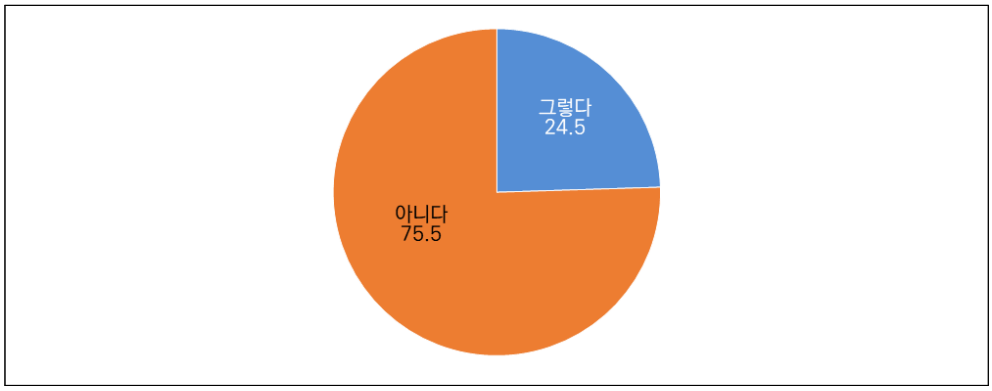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이행도와 관련해 관계자집단(36.6%)에서 긍정적인 평가비율이 가장 높았고, 일반 학부모(28.4%), 피해학생 학부모(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chi^2$=12.099, p<0.01).

**〈표 Ⅳ-186〉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이행도**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그렇다 | 아니다 | 통계량 |
|---|---|---|---|---|---|
| 전 체 | | (306) | 24.5 | 75.5 | -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12.5 | 87.5 | $\chi^2$=12.099, p=0.002 |
| | 일반 학부모 | (169) | 28.4 | 71.6 | |
| | 관계자 | (41) | 36.6 | 63.4 | |

D30. 학교폭력 발생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30)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의 미흡 이유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이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가 미흡하다고 답한 경우, 그 이유로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29.9%)를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학부모가 거부하거나 민원을 야기하여'(24.2%), '상담 치료·특별교육 기관이 부족해서'(12.6%), '상담 치료·특별교육 전문가가 부족해서'(12.1%), '가해학생 선도·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육조치가 구체적이 않고 모호하여'(9.5%), '학생이 거부해서'(6.9%), '학교장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45〉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미흡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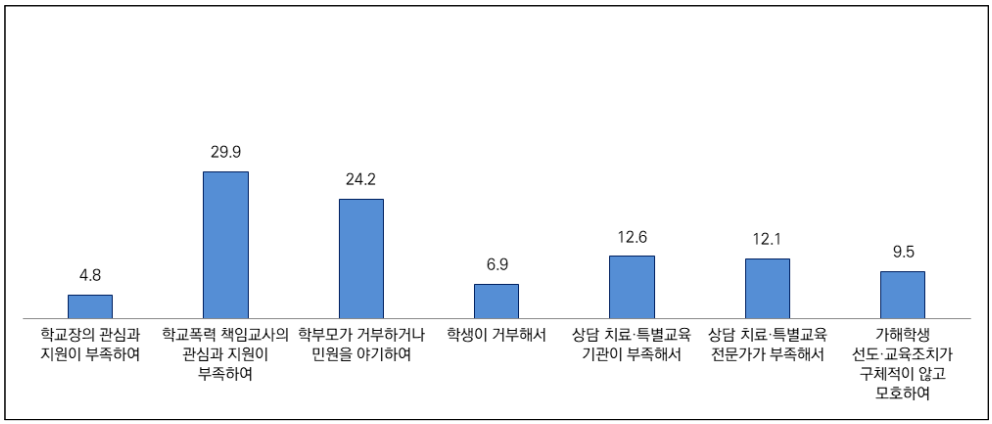


피해학생 학부모는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관심과 지원 부족'(32.1%), 일반 학부모는 '학부모의 거부 또는 민원 야기'(24.8%), 관계자는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관심과 지원 부족'(50.0%)을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미흡이유로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chi^2$ = 57.185, p<0.001).

**〈표 Ⅳ-187〉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미흡 이유 (1/2)**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
| 전 체 | | (231) | 4.8 | 29.9 | 24.2 | 6.9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84) | 0.0 | 32.1 | 23.8 | 2.4 |
| | 일반 학부모 | (121) | 5.0 | 24.0 | 24.8 | 11.6 |
| | 관계자 | (26) | 19.2 | 50.0 | 23.1 | 0.0 |

D30-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 학교장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2)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3) 학부모가 거부하거나 민원을 야기하여
(4) 학생이 거부해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188〉 [학부모 및 관계자]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미흡 이유 (2/2)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5) | (6) | (7) | 통계량 |
|---|---|---|---|---|---|---|
| 전 체 | | (231) | 12.6 | 12.1 | 9.5 | -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84) | 20.2 | 20.2 | 1.2 | $x^2$=57.185, p=0.000 |
| | 일반 학부모 | (121) | 9.1 | 9.1 | 16.5 | |
| | 관계자 | (26) | 3.8 | 0.0 | 3.8 | |

D30-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5) 상담 치료·특별교육 기관이 부족해서
(6) 상담 치료·특별교육 전문가가 부족해서
(7)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가 구체적이 않고 모호하여

## (31) 학교폭력 처리과정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에게 학교폭력 처리과정의 중요도를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비밀보장'(4.44점)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학생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객관성 있는 사안처리'(4.34점), '자치위원회 위원의 중립성 유지'(4.33점), '정확한 사안조사 과정'(4.30점), '가해, 피해학생 한쪽의 요구에 편향되지 않는 공정한 조치'(4.29점), '자치위원회 진행 시 학생의 입장을 배려한 발언이나 질문'(4.23점), '자치위원회의 시의적절한 개최'(4.2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46〉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처리과정 중요도

(단위 : 5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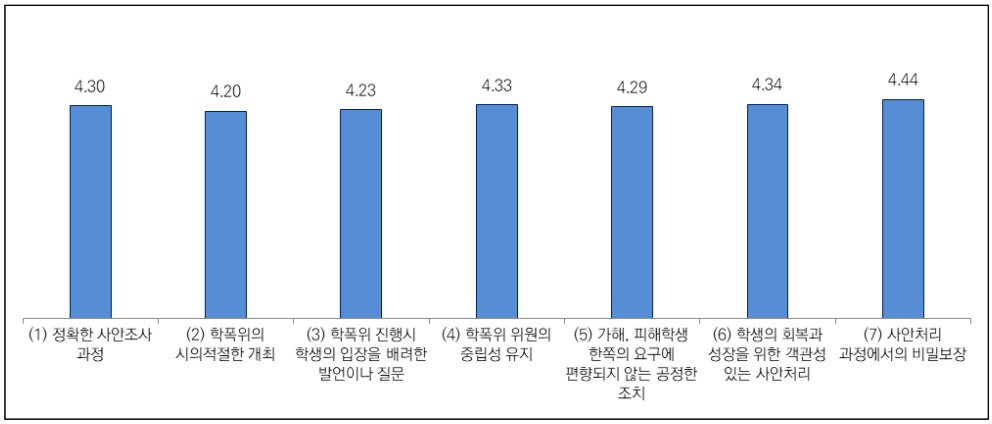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응답자의 특성별 처리과정 중요도를 비교해 본 결과, 일반 학부모는 '자치위원회 진행 시 학생의 입장을 배려한 발언이나 질문'(4.37점, F=5.610, p<0.01)에서, 관계자집단은 '정확한 사안조사 과정'(4.44점, F=5.071, p<0.01)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답했다.

**〈표 Ⅳ-189〉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처리과정 중요도 (1/2)**

(단위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
| 전 체 | | (306) | 4.30 | 4.20 | 4.23 | 4.33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4.13 | 4.22 | 4.05 | 4.22 |
| | 일반 학부모 | (169) | 4.37 | 4.22 | 4.37 | 4.40 |
| | 관계자 | (41) | 4.44 | 4.02 | 4.07 | 4.32 |
| | 통계량 | - | F=5.071, p=0.007 | F=1.211, p=0.299 | F=5.610, p=0.004 | F=1.574, p=0.209 |

D31. 학교별로 수행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과정과 관련해 각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해당하는 곳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확한 사안조사 과정
(2) 자치위원회의 시의적절한 개최
(3) 자치위원회 진행시 학생의 입장을 배려한 발언이나 질문
(4) 자치위원회 위원의 중립성 유지

**〈표 Ⅳ-190〉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처리과정 중요도 (2/2)**

(단위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5) | (6) | (7) |
|---|---|---|---|---|---|
| 전 체 | | (306) | 4.29 | 4.34 | 4.44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4.14 | 4.26 | 4.38 |
| | 일반 학부모 | (169) | 4.38 | 4.37 | 4.50 |
| | 관계자 | (41) | 4.29 | 4.37 | 4.37 |
| | 통계량 | - | F=2.725, p=0.067 | F=0.694, p=0.500 | F=1.015, p=0.364 |

D31. 학교별로 수행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과정과 관련해 각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해당하는 곳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가해, 피해학생 한쪽의 요구에 편향되지 않는 공정한 조치
(6) 학생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객관성 있는 사안처리
(7)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비밀보장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32) 학교폭력 처리과정에 대한 만족도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에게 학교폭력 처리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정확한 사안조사 과정'(3.40점)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자치위원회의 시의적절한 개최'(3.37점), '자치위원회 위원의 중립성 유지', '학생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객관성 있는 사안처리',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비밀보장'(각 3.21점), '자치위원회진행시 학생의 입장을 배려한 발언이나 질문'(3.18점), '가해, 피해학생 한쪽의 요구에 편향되지 않는 공정한 조치'(3.1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47〉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처리과정 만족도**

(단위 : 5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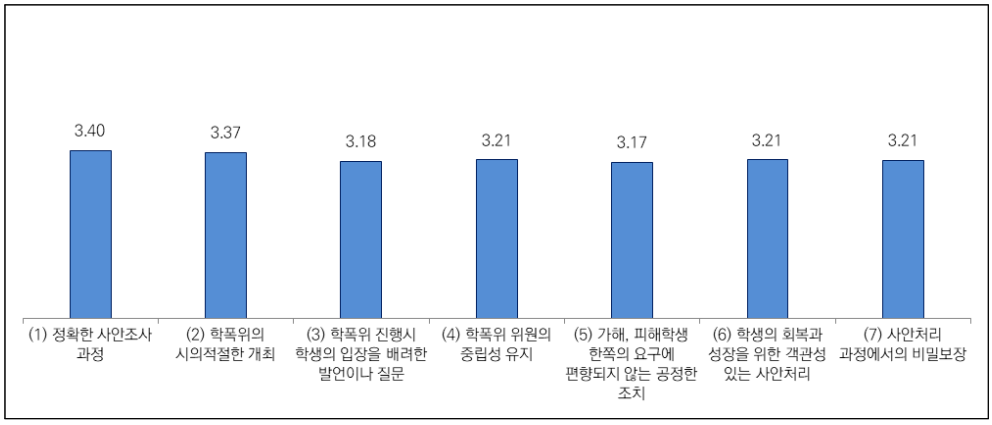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별 학교폭력 처리과정 만족도를 비교해 본 결과, 일반 학부모는 '자치위원회 진행시 학생의 입장을 배려한 발언이나 질문'(3.35점, $F=5.044$, $p<0.01$)에서, 관계자집단은 '자치위원회 위원의 중립성 유지장'(3.37점, $F=3.511$, $p<0.05$), '학생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객관성 있는 사안처리'(3.34점, $F=3.692$, $p<0.05$),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비밀보장'(3.32점, $F=3.529$, $p<0.05$)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만족도를 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191〉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처리과정 만족도 (1/2)**

(단위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
| 전 체 | | (306) | 3.40 | 3.37 | 3.18 | 3.21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3.22 | 3.24 | 2.93 | 2.98 |
| | 일반 학부모 | (169) | 3.48 | 3.44 | 3.35 | 3.30 |
| | 관계자 | (41) | 3.51 | 3.37 | 3.07 | 3.37 |
| | 통계량 | - | F=2.552, p=0.080 | F=1.368, p=0.256 | F=5.044, p=0.007 | F=3.511, p=0.031 |

D31. 학교별로 수행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과정과 관련해 각 항목들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 정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해당하는 곳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확한 사안조사 과정
(2) 자치위원회의 시의적절한 개최
(3) 자치위원회 진행시 학생의 입장을 배려한 발언이나 질문
(4) 자치위원회 위원의 중립성 유지장

**〈표 Ⅳ-192〉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처리과정 만족도 (2/2)**

(단위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5) | (6) | (7) |
|---|---|---|---|---|---|
| 전 체 | | (306) | 3.17 | 3.21 | 3.21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2.96 | 2.98 | 2.98 |
| | 일반 학부모 | (169) | 3.27 | 3.31 | 3.31 |
| | 관계자 | (41) | 3.24 | 3.34 | 3.32 |
| | 통계량 | - | F=2.933, p=0.055 | F=3.692, p=0.026 | F=3.529, p=0.031 |

D31. 학교별로 수행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과정과 관련해 각 항목들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 정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해당하는 곳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가해, 피해학생 한쪽의 요구에 편향되지 않는 공정한 조치
(6) 학생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객관성 있는 사안처리
(7)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비밀보장

## (33) 학교폭력 처리과정 개선방안의 필요도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에게 학교폭력 처리과정의 개선방안 필요도를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명확한 역할 정립'(4.21점)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지원'(4.18점), '자치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법적, 심리적 안전 보장'(4.16점), '사안에 관련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 '사법적 절차를 따르는 현행 사안처리과정의 개선'(각 4.15점), '사안처리 과정에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응하는 교사의 공감적 마인드 및 상담기술'(4.12점), '가해학생 조치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및 연계지원'(4.11점), '학부모 특별교육 조치이행에 대한 탄력성 있는 운영', '사안처리에 따른 행정업무를 담당할 교사보조 인력지원'(각 4.07점), '(16) 교육지원청의 단위학교 컨설팅 및 지원'(4.06점), '일관된 해석이 가능한 정확한 사안처리 매뉴얼'(4.05점), '담임교사의 상담자적 역할'(3.98점), '전문가가 시행하는 가해, 피해학생들의 사과와 용서의 자리마련' (3.92점), '사안처리 기록 및 보고에 따른 서류의 간소화'(3.88점), '처리절차 상의 실수에 대한 책임교사의 법적 책임 경감'(3.86점), '조치이후 관련 학생들간의 갈등해결모임 개최'(3.7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48〉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처리과정 개선방안 필요도**

(단위 : 5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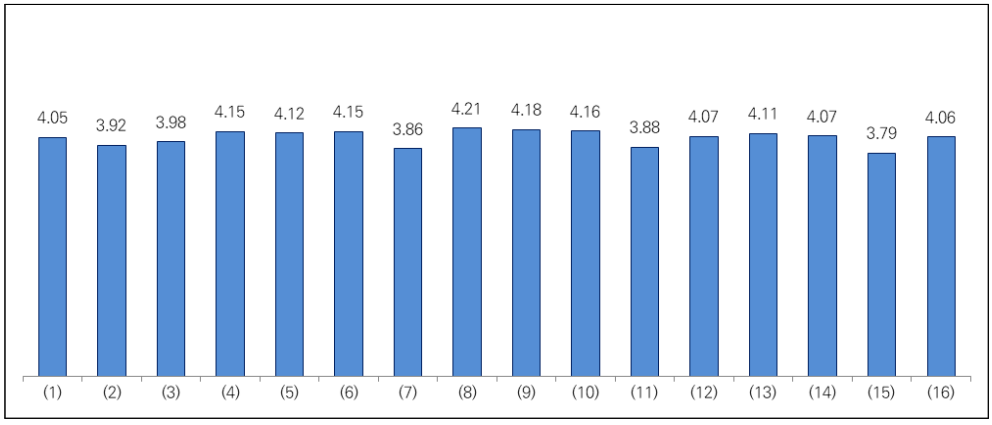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별 학교폭력 처리과정 개선방안 필요도를 비교해 본 결과, 일반 학부모는 '담임교사의 상담자적 역할'(4.08점, F=3.150, p<0.05), '사안에 관련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4.25점, F=4.349, p<0.05), '자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법적, 심리적 안전 보장'(4.27점, F=3.556, p<0.05), '가해학생 조치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및 연계지원'(4.21점, F=3.030, p<0.05), '학부모 특별교육 조치이행에 대한 탄력성 있는 운영'(4.17점, F=3.587, p<0.05)에서 관계자는 '일관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해석이 가능한 정확한 사안처리 매뉴얼'(4.17점, F=5.956, p<0.01)의 필요도를 유의미하게 높게 답했다.

**〈표 Ⅳ-193〉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처리과정 개선방안 필요도 (1/4)**

(단위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
| 전 체 | | (306) | 4.05 | 3.92 | 3.98 | 4.15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3.85 | 3.88 | 3.79 | 3.96 |
| | 일반 학부모 | (169) | 4.14 | 3.92 | 4.08 | 4.25 |
| | 관계자 | (41) | 4.15 | 4.02 | 3.98 | 4.15 |
| | 통계량 | - | F=5.956, p=0.003 | F=0.376, p=0.687 | F=3.150, p=0.044 | F=4.349, p=0.014 |

D32. 학교폭력 사안처리과정에서의 개선방안과 관련해 다음 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해당하는 곳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관된 해석이 가능한 정확한 사안처리 매뉴얼
(2) 전문가가 시행하는 가해, 피해학생들의 사과와 용서의 자리 마련
(3) 담임교사의 상담자적 역할
(4) 사안에 관련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

**〈표 Ⅳ-194〉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처리과정 개선방안 필요도 (2/4)**

(단위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5) | (6) | (7) | (8) |
|---|---|---|---|---|---|---|
| 전 체 | | (306) | 4.12 | 4.15 | 3.86 | 4.21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4.11 | 4.05 | 3.78 | 4.08 |
| | 일반 학부모 | (169) | 4.15 | 4.24 | 3.95 | 4.28 |
| | 관계자 | (41) | 4.02 | 4.00 | 3.68 | 4.20 |
| | 통계량 | - | F=0.396, p=0.674 | F=2.543, p=0.080 | F=1.783, p=0.170 | F=1.698, p=0.185 |

D32. 학교폭력 사안처리과정에서의 개선방안과 관련해 다음 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해당하는 곳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안처리 과정에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응하는 교사의 공감적 마인드 및 상담기술
(6) 사법적 절차를 따르는 현행 사안처리과정의 개선
(7) 처리절차 상의 실수에 대한 책임교사의 법적 책임 경감
(8)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명확한 역할 정립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195〉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처리과정 개선방안 필요도 (3/4)**

(단위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9) | (10) | (11) | (12) |
|---|---|---|---|---|---|---|
| 전 체 | | (306) | 4.18 | 4.16 | 3.88 | 4.07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4.15 | 4.04 | 3.78 | 4.07 |
| | 일반 학부모 | (169) | 4.24 | 4.27 | 3.95 | 4.09 |
| | 관계자 | (41) | 4.05 | 3.98 | 3.85 | 3.95 |
| | 통계량 | - | F=1.027, p=0.359 | F=3.556, p=0.030 | F=1.031, p=0.358 | F=0.420, p=0.657 |

D32. 학교폭력 사안처리과정에서의 개선방안과 관련해 다음 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해당하는 곳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지원
(10) 자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법적, 심리적 안전 보장
(11) 사안처리 기록 및 보고에 따른 서류의 간소화
(12) 사안처리에 따른 행정업무를 담당할 교사보조 인력지원

**〈표 Ⅳ-196〉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처리과정 개선방안 필요도 (4/4)**

(단위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13) | (14) | (15) | (16) |
|---|---|---|---|---|---|---|
| 전 체 | | (306) | 4.11 | 4.07 | 3.79 | 4.06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4.05 | 4.00 | 3.78 | 4.02 |
| | 일반 학부모 | (169) | 4.21 | 4.17 | 3.79 | 4.07 |
| | 관계자 | (41) | 3.85 | 3.83 | 3.80 | 4.07 |
| | 통계량 | - | F=3.030, p=0.050 | F=3.587, p=0.029 | F=0.008, p=0.992 | F=0.127, p=0.881 |

D32. 학교폭력 사안처리과정에서의 개선방안과 관련해 다음 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해당하는 곳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가해학생 조치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및 연계지원
(14) 학부모 특별교육 조치이행에 대한 탄력성 있는 운영
(15) 조치이후 관련 학생들간의 갈등해결모임 개회
(16) 교육지원청의 단위학교 컨설팅 및 지원

### (34)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한 만족도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에게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학교내 CCTV 설치확대 및 CCTV 모니터링'(3.67점)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확대'(3.65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학교생활기록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부 기재'(3.63점),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확대 및 학교지원 강화'(3.61점), 'Wee 프로젝트 확대'(3.57점), '체육, 스포츠 활동 확대'(3.54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강화'(각 3.53점),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3.51점), '교원의 상담, 생활지도 강화'(3.49점), '학교별 전문상담인력 확대배치 및 전문화'(3.47점), '학생 자치활동 확대'(3.46점), '배움터지킴이 등 학교내 학생보호인력 배치'(3.4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Wee 프로젝트 확대', '체육, 스포츠 활동 확대',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생 자치활동 확대'에서 학생보다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Ⅳ-149〉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예방대책 만족도**

(단위 : 5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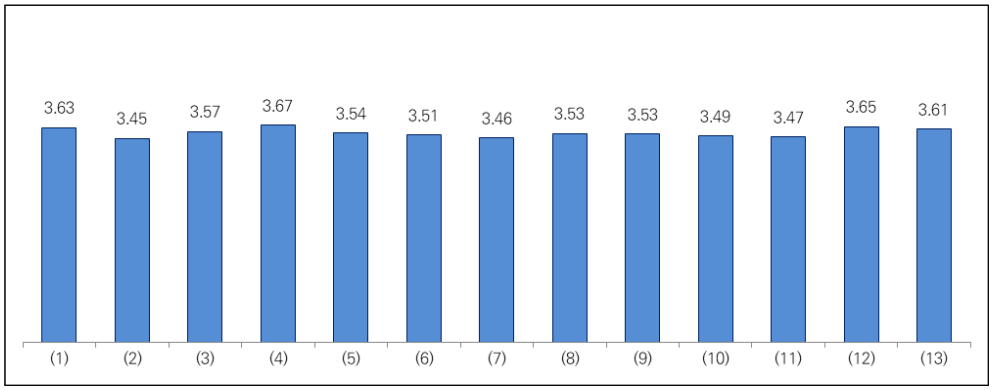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별 학교폭력 예방대책 만족도를 비교해 본 결과, 일반 학부모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3.76점, F=3.086, p<0.05), '배움터지킴이 등 학교내 학생보호인력 배치'(3.62점, F=6.478, p<0.01), 'Wee 프로젝트 확대'(3.69점, F=3.772, p<0.05), '학교내 CCTV 설치확대 및 CCTV 모니터링'(3.81점, F=3.334, p<0.05), '체육, 스포츠 활동 확대'(3.72점, F=7.060, p<0.001), '학생 자치활동 확대'(3.59점, F=3.377, p<0.05),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강화'(3.69점, F=4.527, p<0.05), '교원의 상담, 생활지도 강화'(3.64점, F=4.245, p<0.05),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확대 및 학교지원 강화'(3.75점, F=3.607, p<0.05)의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높게 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표 Ⅳ-197〉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예방대책 만족도 (1/3)

(단위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1) | (2) | (3) | (4) | (5) |
|---|---|---|---|---|---|---|---|
| 전 체 | 학부모 및 관계자 | (306) | 3.63 | 3.45 | 3.57 | 3.67 | 3.54 |
| | 학생 | (474) | 3.70 | 3.33 | 3.33 | 3.75 | 3.21 |
| | 통계량 | - | F=0.846, p=0.358 | F=2.219, p=0.137 | F=10.233, p=0.001 | F=0.920, p=0.338 | F=18.453, p=0.000 |
| 집단 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3.49 | 3.33 | 3.50 | 3.47 | 3.35 |
| | 일반 학부모 | (169) | 3.76 | 3.62 | 3.69 | 3.81 | 3.72 |
| | 관계자 | (41) | 3.46 | 3.02 | 3.24 | 3.59 | 3.27 |
| | 통계량 | - | F=3.086, p=0.047 | F=6.478, p=0.002 | F=3.772, p=0.024 | F=3.334, p=0.037 | F=7.060, p=0.001 |

D33. 다음의 각 대책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2) 배움터지킴이 등 학교내 학생보호인력 배치
(3) Wee 프로젝트 확대
(4) 학교내 CCTV 설치확대 및 CCTV 모니터링
(5) 체육, 스포츠 활동 확대

### 〈표 Ⅳ-198〉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예방대책 만족도 (2/3)

(단위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6) | (7) | (8) | (9) |
|---|---|---|---|---|---|---|
| 전 체 | 학부모 및 관계자 | (306) | 3.51 | 3.46 | 3.53 | 3.53 |
| | 학생 | (474) | 3.17 | 3.21 | 3.87 | 3.72 |
| | 통계량 | - | F=18.001, p=0.000 | F=9.741, p=0.002 | F=14.498, p=0.000 | F=4.495, p=0.034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3.44 | 3.31 | 3.32 | 3.23 |
| | 일반 학부모 | (169) | 3.58 | 3.59 | 3.67 | 3.69 |
| | 관계자 | (41) | 3.39 | 3.24 | 3.44 | 3.56 |
| | 통계량 | - | F=0.960, p=0.384 | F=3.377, p=0.035 | F=2.825, p=0.061 | F=4.527, p=0.012 |

D33. 다음의 각 대책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7) 학생 자치활동 확대
(8)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9)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Ⅳ-199〉 [학부모 및 관계자] 학교폭력 예방대책 만족도 (3/3)

(단위 : 5점만점)

| 구분 | | 사례수 | (10) | (11) | (12) | (13) |
|---|---|---|---|---|---|---|
| 전 체 | 학부모 및 관계자 | (306) | 3.49 | 3.47 | 3.65 | 3.61 |
| | 학생 | (474) | 3.54 | 3.58 | 3.70 | 3.61 |
| | 통계량 | - | F=0.328, p=0.567 | F=1.787, p=0.182 | F=0.298, p=0.585 | F=0.000, p=0.998 |
| 집단유형별 | 피해학생 학부모 | (96) | 3.29 | 3.34 | 3.53 | 3.47 |
| | 일반 학부모 | (169) | 3.64 | 3.56 | 3.75 | 3.75 |
| | 관계자 | (41) | 3.34 | 3.41 | 3.54 | 3.34 |
| | 통계량 | - | F=4.245, p=0.015 | F=1.201, p=0.302 | F=1.841, p=0.160 | F=3.607, p=0.028 |

D33. 다음의 각 대책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 교원의 상담, 생활지도 강화
(11) 학교별 전문상담인력 확대배치 및 전문화
(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확대
(13)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확대 및 학교지원 강화

# 6. 요약 및 시사점

## 1) 조사응답결과 현황

학교폭력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에 응답한 응답자는 총 780명이었다. 학생은 474명이었고, 부모 및 관계자는 406명이었다. 학생응답자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경험학생 7.2%(34명), 가해경험학생 13명(2.7%), 가해와 피해경험 모두가 있는 학생 4.9%(23명), 학교폭력경험이 없는 학생 85.2%(404명)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응답자 중 여학생은 56.5%, 남학생은 43.5%로 나타났다. 학교급 구성을 보면 중학교 30.4%, 고등학생학교 69.6%로 나타났다. 부모 및 관계자의 경우, 피해학생 학부모 31.4%(96명), 일반 학부모 55.2%(196명), 관계자 13.4%(41명)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2) 학생집단의 학교폭력 및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인식

### (1) 학생폭력 피해학생

#### 가.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도움요청과 유용도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 57명 중 73.7%가 피해경험이 고통스럽다고 대답했으며, 68.4%는 학교폭력 피해로 등교를 기피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학교폭력 피해로 자해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45.6%로 나타났다. 피해경험이 있는 여학생 중 52.6%가 자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66.7%는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자살시도를 경험한 학생비율도 47.4%로 나타나 학교폭력의 피해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경우 도움을 요청한 경험은 82.5%로 나타났고 주로 학교선생님이 도움요청의 대상인 것으로 답했다(36.3%). 부모님(31.6%), 친구(22.8%), 청소년상담실(19.3%), 학교폭력전문기관(8.8%)의 순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답했다. 도움을 요청한 경우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0.4%로 낮게 나타났다. 피해학생의 절반 이상이 피해경험을 최소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 나. 학교폭력 피해 후 받은 조치

학교폭력 피해 후 받은 조치로는 '학교 선생님께 도움과 위로를 받았다'(28.1%)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해학생에게 사과를 받았다'(22.8%), '부모님께 도움과 위로를 받았다'(19.3%), 가해학생에게 물질적인 보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았다', '병원치료 혹 심리 상담을 받았다',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았다'(각 8.8%)의 순이었고,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28.1%)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하지만 피해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후 이루어진 조치가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비율은 24.6%에 불과하였다.

#### 다. 학교폭력 신고 후 가해학생 및 주변학생의 변화

학교폭력 신고 후 가해학생 태도 및 반응으로 '폭력은 멈추었지만 반성과 사과는 하지 않았다'(56.1%)의 경우가 과반을 넘었다. 다음으로 '신고 이후에도 학교폭력을 멈추지 않았다'(21.1%),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했다'(14.0%), '신고 이후 더 심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하게 학교폭력을 가했다'(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학교폭력 신고만으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근본적인 학교폭력의 해결을 경험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가해학생의 반성과 사과를 받은 비율은 14%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신고 후 주변학생 반응과 관련해 피해학생들은 '주변 학생들이 가해학생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에 5점 만점에 3.39점의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 '주변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3.12점), '주변 학생들은 피해학생을 위로하며 도와주려 했다'(2.81점), '주변 학생들이 가해학생이 잘못했다고 말하며 가해학생을 나무라는 태도를 보였다'(2.53점)의 순이었다. 학교신고의 영향만으로 주변학생이 가해학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 라. 자치위원회 참여경험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 사안조사과정의 경험과 관련해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사안조사 과정 중 피해학생(부모)으로서 충분하게 사안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2.95점), '사안조사 과정 중 피해학생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적이 있다' (2.75점), '사안조사 과정 중 피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 (3.25점) 등으로 답했다. 충분한 사안조사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피해학생의 인권침해요소가 여전히 존재함을 의미한다.

자치위원회 개최과정의 경험과 관련해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자치위원회 개최 과정 중 피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 (2.86점), '자치위원회 개최 과정 중 피해학생 및 학부모로서 적정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보장되었다' (2.84점), '자치위원회 개최 과정 중 피해학생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적이 있다' (2.79점) 등으로 답했다. 피해학생들은 인권침해, 개인정보 누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으나, 의견진술의 기회 또한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인식하였다.

자치위원회 조치결과와 관련해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자치위원회 조치결과 중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일반학생(목격학생)은 적정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2.63점), '자치위원회 조치·결과 중 가해학생에 대해 내린 조치에 만족한다' (2.51점), '자치위원회 조치·결과 중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해학생이 잘 이행했다고 생각한다' (2.47점)으로 답했다. '자치위원회 조치·결과 중 가해학생이 불복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불편하였거나 불안하였다'가 3.21점으로 가장 높았다.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자치위원회 조치 및 결과와 관련해 가해학생의 불복시 불안감을 느끼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가해학생에 내린 조치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 조치를 잘 이행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마. 자치위원회 결과에 대한 불복조치 경험

자치위원회가 내린 결과에 가해학생이 불복하여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한 경험을 가진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10.5%였다. 반면 자치위원회 결과에 대해 피해학생이 불복하여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한 경우는 5.3%로 나타났다.

자치위원회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를 안내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비율은 14.0%로 나타났다. 다수의 피해학생들은 불복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학생의 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낮은 이유가 결과에 대한 승복 이외에 불복절차의 안내 불충분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가해학생을 형사고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였고, 가해학생을 민사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로 나타났다.

### 바. 학교폭력 사후처리과정에 대한 경험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경험한 학교폭력 사후처리 과정과 관련해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치료 및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요양비용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가 (3.14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가해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소장작성이나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쉬운 편이다' (2.84점), '가해학생이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 피해학생으로서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나 절차 참여가 충분히 보장된다' (2.82점), '치료 및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받는 요양비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2.72점)의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사후처리과정에서 요양비용,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정보취득, 불복과정에서의 진술기회 및 참여보장 등과 관련해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2) 학생폭력 가해학생

#### 가.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대한 인식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 '후회한다'(25.0%)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피해학생에게 미안하다'(22.2%), '부끄럽다'(16.7%), '난 잘못하지 않았다'(13.9%), '아무 생각 없다'(11.1%), '내 행동이 지나쳤다', '기타'(각 5.6%) 등의 순이었다.

#### 나. 학교폭력 가해로 받은 조치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 가해 후 받은 조치는 '피해학생에게 사과했다'(44.4%)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 선생님이 아셔서 꾸지람을 듣거나 벌을 받았다'(33.3%),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았다', '부모님께 꾸지람을 들었다'(각 19.4%),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선도 조치를 받았다'(13.9%), '피해학생에게 물질적인 보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했다'(11.1%), '경찰서에 신고되어 조사 및 법적 처벌을 받았다'(8.3%) 등의 순이었다.

선도·교육 조치가 학교폭력을 멈추고 반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38.9%였으며, 보통은 38.9%, 도움되지 않았다는 22.2%로 나타났고, 5점만점 기준 평균 3.1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도·교육 조치 후 인식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반성했다'(47.2%)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16.7%), '조치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했다'(13.9%), '피해학생에게 보복하고 싶었다'(11.1%), '이번에는 운이 나빴다고생각했다'(8.3%), '기타'(2.8%) 등의 순이었다. 선도·교육조치 후 행동이 '변화'했다는 응답은 47.2%, '보통'은 36.1%, '변하지 않았다'는 16.7%였고, 5점만점 평균은 3.39점으로 나타났다.

선도·교육 조치 불복 시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에 대해 '알고 있다'는 30.6%, '모른다'는 69.4%로 나타났다. 선도·교육 조치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한 경험이 '있다'는 18.2%, '없다'는 81.8%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불복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경험이 '있다'는 11.1%, '없다'는 88.9%인 것으로 나타났다.

#### 다. 자치위원회의 경험에 대한 인식

자치위원회 경험은 '자치위원회 조치·결과 중 가해학생인 나에게 내린 조치를 잘 이행했다고 생각한다'(3.03점)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치위원회 조치·결과 중 가해학생인 나에게 내린 조치에 만족한다'(2.97점), '자치위원회 조치·결과 중 가해학생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대한 조치가 일반학생(목격학생)은 적정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편이다'(2.94점), '사안조사 과정 중 가해학생인 나의 인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2.81점), '사안조사 과정 중 가해학생으로서 충분하게 사안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2.67점), '자치위원회 개최 과정 중 가해학생인 나의 인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 '자치위원회 개최 과정 중 가해학생으로서 적정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보장되었다'(각 2.56점), '사안조사 과정 중 가해학생인 나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적이 있다', '자치위원회 조치·결과 중 피해학생이 불복하는 경우 가해학생의 입장에서 불편하였거나 불안하였다'(각 2.50점), '자치위원회개최 과정 중 가해학생인 나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적이 있다'(2.42점) 등의 순이었다.

### (3) 일반학생

#### 가. 학교폭력 목격경험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해·피해경험이 없는 일반학생집단의 경우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7.7%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들은 '피해학생이 안타깝다'(53.6%)는 답을 가장 많이 했고, 다음으로 '화가 난다'(41.1%), '도와줄 수 없어 속상하다'(40.2%), '무섭다'(30.4%), '우울하다'(9.8%) 등의 반응을 보였다.

#### 나. 학교폭력 목격 후 취한 행동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해·피해경험이 없는 일반학생집단이 가장 많이 취한 행동은 학교폭력 목격 후 '피해학생을 돕거나 위로했다'(31.3%)는 행동이었다. 다음으로 '선생님께 알렸다', '모른척했다'(각 30.4%), '직접 말렸다'(14.3%), '부모님께 알렸다'(11.6%), '경찰에 신고했다'(8.0%), '상담센터에 알렸다'(0.9%) 등의 순이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지만 외면한 일반학생들의 경우, 외면한 이유로 '같이 피해를 당할까봐'(29.4%)를 가장 많이 택했다. 다음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23.5%),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서', '도와줘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각 14.7%), '관심이 없어서'(11.8%), '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5.9%) 등의 순으로 답했다.

학교폭력 목격한 후 일반학생들이 취한 대응으로 '117 또는 경찰에 신고한다'(37.9%)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담임선생님에게 알린다'(28.2%), '어떤 방법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20.5%), '부모님께 알린다'(6.9%), '학교에 알린다'(5.0%), '친구나 선배에게 말한다'(1.5%) 등의 순이었다. 학교폭력에 대해 어떠한 방법도 효과가 없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0명 중 2명에 달하는 결과는 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3) 부모 및 관계자의 학교폭력 및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인식

#### (1) 피해학생 부모

##### 가. 학교폭력의 고통정도

학교폭력 피해학생 부모들 중 73.7%는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로 고통스러워했다고 답했다. 또한 54.2%는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으로 자녀가 자해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학교폭력의 영향으로 자녀가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6.7%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폭력의 피해로 자녀가 자살을 시도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4.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절반 이상이 자해와 자살을 생각하는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고 있고, 1/3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상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나. 학교폭력에 따른 도움요청 경험

학교폭력 피해학생 부모들 중 84.4%는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자녀가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학교 선생님께 도움을 청했다'(39.6%), '자녀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18.8%), '학교폭력전문기관(예:학교폭력피해자전담기관)에 도움을 청했다'(13.5%), '청소년 상담실(예:Wee센터)에 도움을 청했다'(11.5%), '117에 신고하여 도움을 청했다', '학교폭력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했다'(각 2.1%)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15.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 선생님과 학교친구들에게 우선적인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기관이나 상담실, 경찰관 등 학교 외부로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 시 자녀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33.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20.0%), '야단맞을 것 같아서',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가해자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보복 당할 것 같아서'(각 13.3%), '일이 커질 것 같아서'(6.7%)의 순으로 답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부모들은 자녀가 요청한 도움이 학교폭력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8%에 불과하였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27.2%로 나타났다. 자녀의 도움요청이 유용하지 못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다. 학교폭력 피해 후 받은 조치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 피해 후 자녀에게 이루어진 조치로 피해학생 부모들은 '학교 선생님께 도움과 위로를 받았다'(31.3%)를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가해학생에게 사과를 받았다'(25.0%), '부모님께 도움과 위로를 받았다'(20.8%), '병원 치료 혹 심리 상담을 받았다'(15.6%), '가해학생에게 물질적인 보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았다'(7.3%),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았다'(5.2%)의 순이었고,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24.0%)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학교폭력 피해 후 가해학생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비율이 25%에 불과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24%로 높게 나타난 결과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 라. 자치위원회로부터 받은 보호조치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 피해학생 부모들은 자녀가 받은 보호조치로 '1호 심리상담 및 조언'(80.0%)이 가장 많았다고 답했고, 다음으로 '2호 일시 보호'(20.0%)의 순으로 답했다.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 후 이루어진 조치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32.3%에 불과했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36.5%로 나타났다. 또한 자치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비율은 27.1%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피해학생 부모들 대부분이 자치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불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치위원회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피해학생 부모들은 그 이유로 '자녀한테 학교폭력을 가한 아이에 대한 벌이 너무 가벼워서'(42.9%)를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학교 선생님이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한 것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서'(38.6%), '자녀한테 학교폭력을 가한 아이한테서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해서'(28.6%), '자녀가 힘들어 하는데 선생님이 자녀에게 상담을 잘 안 해주어서'(14.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마. 학교폭력 신고 후 가해학생 및 주변학생의 변화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 신고 후 가해학생 태도·반응과 관련해 피해학생 부모들은 '폭력은 멈추었지만 반성과 사과는 하지 않았다'(50.0%)를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신고 이후에도 학교폭력을 멈추지 않았다'(24.0%),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했다'(19.8%), '신고 이후 더 심하게 학교폭력을 가했다'(6.3%) 등의 순으로 답했다. 피해학생과 유사하게 가해학생의 반성과 사과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에 못 미쳤으며, 학교폭력의 근원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인식이 큼을 보여준다.

학교폭력 신고 후 주변학생의 반응과 관련해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피해학생 부모들은 '주변 학생들은 가해학생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에 대해 3.31점으로 가장 높게 답했다. 다음으로 '주변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3.21점, '주변 학생들은 피해학생을 위로하며 도와주려 했다' 2.78점, '주변 학생들이 가해학생이 잘못했다고 말하며 가해학생을 나무라는 태도를 보였다' 2.56점의 순으로 답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부모들은 주변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 피해학생에 대한 위로와 도움을 주기 보다는 별다른 변화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바. 자치위원회의 경험에 대한 인식

자치위원회 경험과 관련해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자치위원회 조치·결과 중 가해학생이 불복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불편하였거나 불안하였다'(3.63점)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사안조사 과정 중 피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3.45점), '자치위원회 개최 과정 중 피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3.34점), '사안조사 과정 중 피해학생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적이 있다'(3.26점), '자치위원회 개최 과정 중 피해학생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적이 있다'(3.22점)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자치위원회 경험과 관련해 피해학생 부모들은 가해학생의 불복에 대한 불안감, 인권침해, 개인정보 누출 등의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사안조사 과정 중 피해학생(부모)으로서 충분하게 사안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2.96점), '자치위원회 개최 과정 중 피해학생 및 학부모로서 적정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보장되었다'(2.95점), '자치위원회 조치·결과 중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일반학생(목격학생)은 적정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편이다'(2.73점), '자치위원회 조치·결과 중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해학생이 잘 이행했다고 생각한다'(2.60점), '자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조치·결과 중 가해학생에 대해 내린 조치에 만족한다'(2.49점) 등의 응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학생 부모들은 대부분 자치위원회 경험과 관련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 사. 자치위원회 결과에 대한 불복조치 경험

자치위원회 결과에 대해 가해학생이 불복하여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피해학생 부모는 10.4%로 나타났다. 또 자치위원회 결과에 대해 피해학생이 불복하여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한 경우가 있다는 응답은 8.3%로 나타났다.

자치위원회 결과에 대해 피해학생이 불복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피해학생 부모는 24.0%로 나타났다. 피해학생의 응답률 14%보다는 높았지만, 피해학생 부모 중 대부분은 자치위원회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하핵생 부모 중 가해학생을 형사고소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3%였다. 가해학생을 형사고소한 이유로는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 조치 이후에도 사과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71.4%)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자치위원회 조치가 지나치게 경미하였기 때문에'(28.6%)의 순으로 답했다. 피해학생 부모 중 가해학생을 민사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5.2%로 나타났다.

## (2) 학교폭력 사후처리 과정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 사후처리 과정과 관련해 5점 척도로 물은 결과, '치료 및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요양비용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가 3.4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해학생이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 피해학생으로서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나 절차 참여가 충분히 보장된다' 2.82점, '치료 및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받는 요양비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2.65점, '가해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소장작성이나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쉬운 편이다' 2.61점의 순으로 답하였다. 피해학생 부모들은 대부분 학교폭력사건의 사후처리과정에서 제대로 된 의견진술기회나 절차참여가 보장되지 못하며, 요양비용의 제공,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정보 취득 등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학교폭력 이후 다른 학교나 기관으로 옮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피해학생 부모는 21.9%였고, '옮기지는 않았지만, 고민했었다'는 비율은 이보다 많은 39.6%로 나타났다. 피해학생 부모 중 절반 이상이 전학을 결정하거나 고민했다는 비율은 학교폭력의 사후처리 과정에 대한 불만족과 불안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4)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

### (1) 학생집단

#### 가. 학교폭력예방법과 자치위원회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예방법과 자치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5.1%였다. 학생들 중 '모르겠다'는 비율도 24.9%로 나타나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의 내실강화와 인식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학교폭력예방법 및 자치위원회를 알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그 필요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필요하다'(96.9%)고 응답했다. 또 학교폭력예방법 및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7%로 나타났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비율은 12.4%로 나타났다.

#### 나. 경미한 학교폭력문제의 학교 자체해결 방안에 대한 인식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42.8%, '반대한다'는 응답은 57.2%로 나타났다.

경미한 학교폭력문제의 학교 자체해결에 찬성하는 학생들은 그 이유로 '자치위원회 진행에 따른 피·가해학생과 보호자 사이의 갈등 확대 방지'(42.4%)를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처벌보다는 교육적 선도와 해결이 필요'(41.9%), '자치위원회 행정업무 감소로 교사 본연의 학생교육이 수행'(12.3%), '기타'(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자체해결 할 수 있다고 보는 사안으로는 '피해학생 또는 부모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절차를 원하지 않는 경우'(33.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16.3%), '사안이 학교폭력 판단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13.8%),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13.3%), '학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교폭력으로 분류되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화해와 관계회복이 이루어진 경우'(11.8%), '교사로서 판단하기에 대등한 당사자 간의 싸움으로 생활지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경우'(10.8%)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미한 학교폭력문제의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방안을 반대한 학생들은 그 이유로 '학교나 가해학생 측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할 위험'(70.5%)을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모든 학교폭력은 경미하지 않은 폭력으로 보고 대처'(14.8%), '경미한 학교폭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11.4%) 등의 순으로 답했다.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방안을 반대하는 학생들은 우려되는 사항으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우려'(24.9%)를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가해학생의 잘못 인식과 진정한 반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우려'(20.7%),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조치가 재범방지를 위해 비효과적이라는 우려'(15.4%),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에 대한 우려'(9.5%), '가해학생 부모들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7.2%), '피해학생 부모들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6.8%), '없다'(6.3%),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 짓기 어려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리가 적합하지 않음'(5.3%), '향후 재심에 대한 우려'(2.3%) 등의 순으로 답했다.

### 다. 가해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삭제 방안에 관한 인식

가해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의 졸업 및 일정기간 후 삭제 방안에 대해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73.8%)는 응답이 많았다. 다음으로 '일부 조치만 졸업 시 즉시 삭제한다'(17.5%), '조치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3.8%), '졸업 이전에 삭제한다'(3.4%), '기타'(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를 삭제하는 데 반대한 학생들은 그 이유로는 '미기재시 가해학생들의 반성을 이끌어내기 어려움'(45.4%)을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 효과가 약화'(43.7%), '피해학생 보호 효과가 줄어듦'(8.3%) 등의 순으로 답했다.

반면 가해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를 삭제하는 데 찬성한 학생들은 그 이유로 '가해학생이 반성한 경우에도 낙인효과가 남는 것을 방지'(71.1%)하는 것을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미기재시 교사가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가능성'(16.9%), '가해학생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반발에 따른 가·피해학생 간 법적 다툼 발생을 완화'(8.4%) 등의 순으로 답했다.

### 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조치의 유용성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의 유용성에 대해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전학'(4.05점)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피해학생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3.80점), '출석정지'(3.52점), '학급교체'(3.27점),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3.17점),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68점), '사회봉사'(2.61점), '학교에서의 봉사'(2.3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도·교육조치의 강도가 높을수록 유용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마. 가해학생 일부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유보 방안에 대한 인식

가해학생 일부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유보 방안에 대해 '도움이 될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53.4%였고, '보통' 33.8%, '도움 되지 않는다'는 12.9%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절반 정도만이 이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 바.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유용성

피해학생에게 제공되는 보호조치의 유용성에 대해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3.68점), '심리상담 및 조언'(3.60점), '일시 보호'(3.47점), '학급교체'(3.20점), '그 밖의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3.88점)으로 나타났다. 학생집단은 피해학생에게 제공되는 보호조치에 대해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치라 인식하고 있었다.

### 사. 자진신고·피해신고 기간운영의 인지여부

학생들은 학교폭력 자진신고·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34.2%, '모르겠다'는 응답은 65.8%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2/3에 가까운 비율은 학교폭력 자진신고·피해신고 기간을 모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제도를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자진신고·피해신고기간 운영의 유용성과 관련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0.1%에 불과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아. 화해·관계회복 조정역할 수행주체

학교폭력으로 또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화해 및 관계회복을 조정하는 역할의 수행주체로 가장 많이 선택된 대상은 '학생'(24.9%)이었다. 다음으로 '중재전문기관 및 외부 전문가'(19.0%), 선생님'(15.4%), '자치위원회'(9.3%), '학부모'(5.5%), '교육청·교육부'(5.1%) 등의 순이었다. '필요없다'는 응답도 18.1%로 나타났다. 학생집단은 화해 및 관계회복을 위해 학생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비율이 가장 많음을 보여준다.

### 자. 법적 소송 및 치료비 요구 등의 분쟁해결 조정역할의 수행주체

학교폭력으로 인한 법적 소송 및 치료비 요구 등의 분쟁해결 조정역할을 수행할 주체로는 '중재전문기관 및 외부 전문가'(36.9%)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교육청·교육부'(18.8%), '자치위원회'(17.7%), '학부모'(9.9%), '선생님'(9.7%)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필요없다'는 응답은 5.3%로 나타났다.

### 차. 학교폭력 전문상담기관, 손해배상 중재자,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학교폭력 전문상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7%로 나타났으며, '필요 없다'는 9.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과 관련해 손해배상 갈등의 중재역할을 수행할 제 3자의 필요도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87.8%로 나타났다. 또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를 선지원해주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24.1%로 낮게 나타났다.

### 카. Wee클래스에 대한 인식

Wee클래스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은 92.4%로 높았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이용해본 적 있다'는 응답은 35.9%, '알고 있지만, 이용해 본 적은 없다'는 56.5%, '모른다'는 7.6%인 것으로 나타났다. Wee클래스에서 이용한 프로그램으로는 '진로 및 학업 상담'(60.0%)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14.1%), '기타'(12.4%), '멘토, 멘티 프로그램'(11.2%),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타.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만족도

학교폭력 예방대책 만족도를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3.87점)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학교내 CCTV 설치확대 및 CCTV 모니터링'(3.75점),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강화'(3.72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확대'(각 3.70점),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확대 및 학교지원 강화'(3.61점), '학교별 전문상담인력 확대배치 및 전문화'(3.58점), '교원의 상담, 생활지도 강화'(3.54점), '배움터지킴이 등 학교내 학생보호인력 배치', 'Wee 프로젝트 확대'(각 3.33점), '학생 자치활동 확대', '체육, 스포츠 활동 확대'(각 3.21점),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3.1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부모 및 관계자집단

### 가. 학교의 학교폭력 해결능력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의 자율적 해결능력에 대해 동의한 응답비율은 22.2%로 낮게 나타났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5.3%, '아니다'는 응답은 42.5%로 높았다. 응답자 유형별로 학교의 자체해결능력에 대해 동의한 비율은 '일반 학부모'(22.5%)가 가장 높았고, '관계자'(22.0%), '피해학생 학부모'(2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학교폭력 해결능력이 미흡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 '학교폭력사건 처리 전문성 부족'(52.6%)을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학교 평가에 대한 부담'(24.6%), '특정 학생에 대한 우호적· 부정적 평가(선호·편견)'(15.8%), '학부모 등의 민원', '담당자의 업무과중 및 비합리적인 업무분장'(각 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모든 유형에서 '학교폭력사건 처리 전문성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문화 및 예방정책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문화로 가장 많이 답한 항목은 '학생·교사·학부모가 상호협력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적 학교문화'(33.3%)였다. 다음으로 '학생 인성 중시의 학교문화'(26.1%), '학생 인권 존중의 학교문화'(13.7%), '가정 및 관련 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권장되는 학교문화'(12.4%), '교사의 권위 및 전문성 중시의 학교문화'(9.8%),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의 학교문화'(4.2%)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학교폭력 예방정책의 중요도를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4.28점)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정서, 행동 상의 문제 학생을 위한 전문상담인력 확대'(4.25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4.18점), '학생과의 소통 및 공감능력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4.11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및 대안교실 확대'(4.00점),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인 제도 확대'(3.97점),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보급'(3.95점),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활동 활성화'(3.8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학생 학부모와 일반학부모는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4.17점),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4.37점)를 중요하다고 답했고, 관계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4.27점)를 가장 높게 답했다.

### 다. 학교폭력 처리절차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 처리절차에 대해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현재 학교폭력 해결절차 내에서 학생 간 화해 등 관계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 어렵다'(3.96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재 자치위원회 처분이 약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적 기능을 하지 못한다'(3.92점), '현재 자치위원회 처분이 처벌에만 치우쳐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처분의 역할을 하지 못 한다'(3.84점), '현재 학교폭력의 개념과 범위가 너무 넓어 학생 간 우발적인 싸움 등의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3.76점), '자치위원회 처분 수위와 관계없이 처분내용을 생기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현재 학교폭력 해결절차가 담임교사나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축소하여 주요한 사안처리담당자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다', '폭력의 종류와 관계없이 학교폭력이 있는 경우 자치위원회를 열도록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각 3.71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자치위원회 처분 결과를 졸업 시 삭제해 주는 지침은 바람직하다'(2.7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라. 학교폭력 처리원칙의 우선순위에 관한 인식

학교폭력 처리원칙의 우선순위(1+2순위)로 '피해학생의 정서적 안정감과 회복(치유)'(48.7%)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가해학생의 잘못 인식과 진정한 사과 기회 제공'(36.9%),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이 원하는 해결방식의 파악',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각 23.5%),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및 파악'(18.0%), '가해학생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과 피해학생 간의 화해와 관계회복'(17.0%), '사건 해결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주도적 참여'(13.7%), '사안처리의 공정성 확보'(11.8%), '상호수용 가능한 피해배상 계획의 협상'(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마. 당사자 간 화해절차의 필요도

당사자 간 화해절차 필요도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78.4%로 나타났다. 관계자 집단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비율이 87.8%로 가장 높았고, '일반 학부모'(84.0%), '피해학생 학부모'(6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당사자간 화해절차가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 '가해학생의 책임인식과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하다'(59.2%)를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학생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40.4%)를 많이 답했다. 모든 유형에서 '가해학생의 책임인식과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가 높게 나타났다.

당사자간 화해시 자치위원회 처분반영 정도와 관련해 '학교폭력 처분수준을 완화한다'(35.0%)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처분을 내리되, 처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30.1%), '반영되면 안 된다'(26.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절차를 종결한다'(8.8%)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학생 학부모는 '학교폭력 처분을 내리되, 처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41.7%), 일반 학부모는 '학교폭력 처분수준을 완화한다'(36.1%), 관계자는 '학교폭력 처분수준을 완화한다'(48.8%)를 많이 답했다.

### 바. 자치위원회의 해결역량에 대한 인식

자치위원회의 해결역량과 '적절하게 해결하고 있다'는 응답은 12.4%, '잘 모르겠다' 10.8%,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76.8%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문제해결 역량에 대해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관계자'(17.1%)가 자치위원회 해결역량에 대해 '적절하게 해결되고 있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고, 다음으로 '일반 학부모'(14.2%), '피해학생 학부모'(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사. 경미한 학교폭력문제의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방안에 대한 인식

경미한 학교폭력문제의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42.2%, '반대한다'는 응답은 57.8%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학생 학부모는 '반대한다'(65.6%)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일반 학부모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56.8%, 관계자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56.1%로 높게 나타났다.

경미한 학교폭력문제의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방안을 찬성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처벌보다는 교육적 선도와 해결이 필요'(48.8%)를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자치위원회 진행에 따른 피·가해학생과 보호자 사이의 갈등 확대 방지'(45.0%), '자치위원회 행정업무 감소로 교사 본연의 학생교육이 수행'(5.4%) 등의 순으로 답했다.

학교가 자체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교사로서 판단하기에 대등한 당사자 간의 싸움으로 생활지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경우'(28.7%)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피해학생 또는 부모가 자치위원회 절차를 원하지 않는 경우'(21.7%), '사안이 학교폭력 판단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16.3%),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14.0%), '학교폭력으로 분류되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화해와 관계회복이 이루어진 경우'(13.2%),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학생 학부모과 일반 학부모는 '교사로서 판단하기에 대등한 당사자 간의 싸움으로 생활지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경우'를 각각 30.3%, 31.5%로 가장 많이 답했다. 관계자는 '사안이 학교폭력 판단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34.8%)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자체해결 방안을 반대한 사람들은 반대이유는 '학교나 가해학생 측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할 위험'(67.2%)을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모든 학교폭력은 경미하지 않은 폭력으로 보고 대처'(17.5%), '경미한 학교폭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움'(14.7%) 등의 순으로 답했다. 모든 응답자 유형에서 '학교나 가해학생 측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할 위험'을 가장 많이 답하였다.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방안에 대해 우려하는 사항과 관련해 물어본 결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우려'(33.7%)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에 대한 우려'(15.0%), '가해학생의 잘못 인식과 진정한 반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우려'(13.7%),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 짓기 어려워 자치위원회 처리가 적합하지 않음'(10.5%), '피해학생 부모들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조치가 재범방지를 위해 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효과적이라는 우려'(각 9.2%), '가해학생 부모들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응답자 유형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우려'를 가장 많이 답했다.

### 아. 가해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삭제 방안에 대한 인식

가해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삭제 방안에 대해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52.9%)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일부조치만 졸업 시 즉시 삭제한다'(30.4%), '졸업 이전에 삭제한다'(10.5%), '조치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응답자 유형에서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해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삭제를 반대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 효과가 약화'(61.7%)를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미기재시 가해학생들의 반성을 이끌어내기 어려움'(29.0%), '피해학생 보호 효과가 줄어듦'(8.6%)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응답자 유형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 효과가 약화'를 가장 많이 답했다.

가해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삭제를 찬성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 '가해학생이 반성한 경우에도 낙인효과가 남는 것을 방지'(64.5%)에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미기재시 교사가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가능성'(26.9%), '기타'(5.4%), '가해학생 반발에 따른 가·피해학생 간 법적 다툼 발생을 완화'(3.2%) 등의 순으로 답했다.

모든 응답자 유형은 '가해학생이 반성한 경우에도 낙인효과가 남는 것을 방지'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답했다.

### 자.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도움정도에 대한 인식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도움정도도는 '전학'(3.85점)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3.65점), '피해학생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3.55점), '학급교체'(3.51점), '출석정지'(3.49점), '사회봉사'(2.98점), '학교에서의 봉사'(2.92점),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8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차. 가해학생 일부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유보 방안에 대한 인식

가해학생 일부 선도조치 기재 유보 방안에 대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6.0%, '보통'은 23.5%,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0.5%로 나타났다. '일반 학부모' (72.8%)가 가장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높았고, 다음으로 '피해학생 학부모'(58.3%), '관계자'(5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카.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유용성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유용성을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4.06점)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심리상담 및 조언'(3.92점), '그밖의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3.84점), '일시 보호'(3.79점), '학급교체'(3.5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응답자 유형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이 높게 나타났다.

### 타. 화해·관계회복 조정역할의 수행주체

화해·관계회복 조정역할을 수행할 주체로는 '중재전문기관 및 외부 전문가'(50.0%)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다음으로 '선생님'(14.7%), '자치위원회'(12.7%), '학부모'(8.2%), '교육청·교육부'(6.5%), '학생'(4.6%), '필요없다'(2.9%), '기타'(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응답자 유형에서 '중재전문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파. 법적 소송 및 치료비 요구 등의 분쟁해결 조정역할 수행주체

법적 소송 및 치료비 요구 등의 분쟁해결 조정역할을 수행할 주체로 '중재전문기관 및 외부 전문가'(60.5%)를 가장 많이 답하였다. 다음으로 '자치위원회'(11.8%), '교육청·교육부'(11.4%), '선생님'(7.5%), '학부모'(6.9%), '필요 없다'(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응답자 유형에서 '중재전문기관 및 외부전문가'를 가장 많이 답했다.

### 하. 학교폭력 전문상담기관, 손해배상 중재자,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인식 및 필요도

학교폭력 전문상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4.8%, '필요 없다'는 응답은 5.2%로 나타났다. '일반 학부모'(98.8%)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관계자'(97.6%), '피해학생 학부모'(8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의 갈등이 있을 경우, 중재역할을 수행할 제 3자의 필요도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94.4%로 높았다. '일반 학부모'(98.2%)의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관계자'(97.6%), '피해학생 학부모'(8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43.5%, '모르겠다'는 56.5%로 나타났다. '관계자'(80.5%)가 학교안전공제회를 알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일반 학부모'(37.9%), '피해학생 학부모'(3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갸. 가해학생 학부모특별교육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에 관한 인식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45.1%, '모른다'는 응답은 54.9%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90.2%)의 알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피해학생 학부모'(40.6%), '일반 학부모'(3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4.5%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가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선도·교육조치가 제대로 이행된다고 응답비율은 '관계자'(36.6%)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반 학부모'(28.4%), '피해학생 학부모'(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가 미흡하다고 답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29.9%)를 가장 많이 답하였다. 다음으로 '학부모가 거부하거나 민원을 야기하여'(24.2%), '상담 치료·특별교육 기관이 부족해서'(12.6%), '상담 치료·특별교육 전문가가 부족해서'(12.1%),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가 구체적이 않고 모호하여'(9.5%), '학생이 거부해서'(6.9%), '학교장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학생 학부모는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관심과 지원 부족'(32.1%)을 가장 많이 답했고, 일반 학부모는 '학부모의 거부 또는 민원 야기'(24.8%), 관계자는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관심과 지원 부족'(50.0%) 등의 응답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냐. 학교폭력 처리과정 중요도 및 만족도

학교폭력 처리과정의 중요도와 관련해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비밀보장'(4.44점)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학생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객관성 있는 사안처리'(4.34점), '자치위원회 위원의 중립성 유지'(4.33점), '정확한 사안조사 과정' (4.30점), '가해, 피해학생 한쪽의 요구에 편향되지 않는 공정한 조치'(4.29점), '자치위원회 진행 시 학생의 입장을 배려한 발언이나 질문'(4.23점), '자치위원회의 시의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적절한 개최'(4.2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학생 학부모와 일반부모는 '사안 처리과정에서의 비밀보장'을 가장 높게 답하였고, 관계자는 '정확한 사안조사 과정'(4.44점)이 학교폭력 처리과정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학교폭력 처리과정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해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정확한 사안조사 과정'(3.40점)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자치위원회의 시의적절한 개최'(3.37점), '자치위원회 위원의 중립성 유지', '학생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객관성 있는 사안처리',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비밀보장'(각 3.21점), '자치위원회 진행시 학생의 입장을 배려한 발언이나 질문'(3.18점), '가해, 피해학생 한쪽의 요구에 편향되지 않는 공정한 조치'(3.1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다. 학교폭력 처리과정의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도

학교폭력 처리과정의 개선방안 필요도와 관련해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명확한 역할 정립'(4.21점)이 가장 높았다.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지원'(4.18점), '자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법적, 심리적 안전 보장'(4.16점), '사안에 관련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 '사법적 절차를 따르는 현행 사안처리과정의 개선'(각 4.15점), '사안처리 과정에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응하는 교사의 공감적 마인드 및 상담기술'(4.12점), '가해학생 조치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및 연계지원'(4.11점), '학부모 특별교육 조치이행에 대한 탄력성 있는 운영', '사안처리에 따른 행정업무를 담당할 교사보조 인력지원'(각 4.07점), '교육지원청의 단위학교 컨설팅 및 지원'(4.06점), '일관된 해석이 가능한 정확한 사안처리 매뉴얼'(4.05점), '담임교사의 상담자적 역할'(3.98점), '전문가가 시행하는 가해, 피해학생들의 사과와 용서의 자리 마련'(3.92점), '사안처리 기록 및 보고에 따른 서류의 간소화'(3.88점), '처리절차 상의 실수에 대한 책임교사의 법적 책임 경감'(3.86점), '조치 이후 관련 학생간의 갈등해결모임 개최'(3.7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학생 학부모는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지원'을 가장 많이 답하였다. 일반 학부모와 관계자는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명확한 역할 정립'을 가장 많이 답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5)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인식조사에 기반한 시사점

#### (1) 자치위원회의 해결역량에 대한 불신해소방안 필요

조사결과 학부모 및 관계자집단이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학교의 자율적 해결능력에 동의한 비율은 22.2%로 낮았다. 이는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중립성, 역할 등에 대한 회의와 불명확함이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와 관련해 향후 교육지원청에 이관·설치되는 심의위원회의 학부모 위원 비중을 현행 '절반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추고,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비중을 늘린 개정법안의 내용은 이러한 우려를 일정정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향후 학교폭력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통한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2) 경미한 학교폭력사건의 자체해결 방안에 대한 우려 불식을 위한 명확한 지침 필요

경미한 학교폭력사건의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방안에 대해서 학생(57.2%), 학부모 및 관계자(57.8%) 모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다. 주요한 반대사유는 학교나 가해학생 측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축소·은폐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었다. 이는 학교의 자체해결역량에 대한 강한 불신과 연결되는 결과라 보여진다.

향후 가해학생의 입장에서는 교육지원청 산하에 설치·운영되는 심의위원회로 이관하기 전 자체해결을 강하게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의 도입초기 학교현장에서의 혼란과 갈등이 일정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해 자체해결을 추진할 경우, 피해학생의 동의절차와 형식, 자체 해결사안의 명료한 기준설정, 처리절차의 구체적인 지침을 조속히 개발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

#### (3)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의 보존·삭제와 관련된 개선 방안의 신중한 검토 필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삭제에 대해 학생(73.8%)과 학부모 및 관계자(52.9%) 중 절반이 넘는 비율이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일부 조치의 졸업시 삭제'에 대해 학부모 및 관계자의 동의 비율이 다소 높은 점은 차이를 보였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이러한 조사결과는 현재 학생, 학부모 및 관계자 집단 대부분이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생기부 기재가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에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학교현장에서 가해학생의 선도와 변화가 선도조치의 생기부 기재 이외의 방법을 통해서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보여진다.

다만 '일부 조치의 삭제'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도 적지 않음을 고려해, 학교폭력 당사자와 전체 구성원이 합의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명료한 기준과 적용방식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진다.

### (4) 가해학생 일부 선도조치 기재 유보 방안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노력 필요

가해학생의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삭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의견이 존재한다. 하지만 단계별·사안별로 선도조치 1~3호의 기재를 유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학생(53.4%)과 학부모 및 관계자(66.0%)에서 과반이 넘고 있었다.

이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무조건적인 선도조치 기재보다는 학생간 화해와 관계회복을 통해 학교폭력사건을 처리하기를 희망하는 입장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피해학생 부모의 58.3%도 단계별 선도조치 기재 유보방안이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다만, 전문성과 중립성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가 부족한 현재의 자치위원회 운영구조에서는 1~3호 조치결정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유보 결정을 받으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일부 존재하는 점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해학생 일부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유보의 조속한 정착과 수용을 위해서는 향후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중립성, 투명성, 전문성을 통해 학교폭력 당사자 및 구성원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 (5)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전문기관의 필요

학부모 및 관계자 중 78.4%는 학교폭력사건 당사자간의 화해절차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간 화해와 관계회복, 분쟁조정의 역할을 수행할 주체로는 중재전문기관 및 외부전문가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50.0%). 특히 법적 소송 및 치료비 요구 등 분쟁해결의 조정역할을 수행할 주체로는 학부모 및 관계자 중 60%가 중재전문기관 및 외부전문가를 꼽았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효율적인 화해·분쟁조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폭력사건 처리의 단계별로 화해·분쟁조정의 방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폭력사건처리 초기부터 중재전문기관에서 파견된 외부전문가의 도움과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권역별로 중재전문기관의 위탁·선정을 통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학교현장에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는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이경상·김승혜, 2018). 아울러 학교장, 교감, 학교폭력 담당교사 등 학교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화해·분쟁조정 지침안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학교현장에서의 조기개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V

# 심층면접 결과분석

1. 조사 개요
2. 심층면접 결과 분석
3. 요약 및 시사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1. 조사 개요

## 1) 조사 목적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에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심도 깊은 논의 및 의견 반영을 위해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 학생, 학부모, 학교종사자, 학교폭력 업무담당 공무원, 현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 2) 조사 내용

학교폭력의 정의 및 범위,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학교폭력예방법 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학교폭력사건 처리과정에서의 관련 당사자들 간의 분쟁조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및 해결방안,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환경조성을 위한 방안, 피해학생 보호조치, 피해학생과 가해해학생의 재심 및 불복절차 문제, 학교폭력예방교육,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 등과 관련된 개정 이전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 처리절차와 과정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2019년 8월 2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나타난 변화와 개정법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 3) 조사 대상자

심층면접 대상자들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진술하기를 꺼려 조사는 대부분 일대일 심층면접으로 진행되었고 학교폭력 피·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 각 3명(6명), 학교폭력 관련 NGO 대표 및 업무담당자, 위탁교육기관과 Wee센터 등의 현장전문가(10명), 피해학생 학부모 7명, 가해학생 학부모 3명(10명),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장학관, 장학사, 학교폭력담당 변호사, 경찰관(SPO) 등 업무담당 공무원(10명), 교사 6명,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2명과 전문가 위원 2명 등의 학교종사자(10명)로 이 중 5명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 4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면담자에게 조사 목적을 설명하고 승낙하는 경우 면담 내용이 녹취되는 것과 익명으로 처리될 것을 안내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Ⅴ-1〉 심층면접 조사 대상자 특성

| 분 류 | 인원 | 직업 / 직위 | 성별 | 구분 |
|---|---|---|---|---|
| 피해·가해 학생 (A) | 6명 | • 고등학생 | 여 | A1 |
| | | • 고등학생 | 여 | A2 |
| | | • 중학생 | 여 | A3 |
| | | • 고등학생 | 남 | A4 |
| | | • 중학생 | 여 | A5 |
| | | • 고등학생 | 남 | A6 |
| 피해·가해 학생 학부모 (B) | 10명 | • 중학생 학부모 | 남 | B1 |
| | | • 고등학생 학부모 | 남 | B2 |
| | | • 고등학생 학부모 | 남 | B3 |
| | | • 중학생 학부모 | 남 | B4 |
| | | • 중학생 학부모 | 남 | B5 |
| | | • 고등학생 학부모 | 여 | B6 |
| | | • 중학생 학부모 | 여 | B7 |
| | | • 중학생 학부모 | 여 | B8 |
| | | • 중학생 학부모 | 여 | B9 |
| | | • 고등학생 학부모 | 여 | B10 |
| 현장전문가 (C) | 10명 | • 청소년심리상담사, 범죄상담사 | 여 | C1 |
| | | • 학교폭력 관련 NGO 사무국장 | 여 | C2 |
| | | • 위탁교육시설 부장교사 | 여 | C3 |
| | | • 위탁교육시설 상담교사 | 여 | C4 |
| | | • 위탁교육시설 교사 | 여 | C5 |
| | | • Wee센터 전문상담교사 | 여 | C6 |
| | | • Wee센터 전문상담사 | 여 | C7 |
| | | • 청소년 성폭력 관련 NGO 대표 | 남 | C8 |
| | | • 학부모 관련 NGO 회장 | 여 | C9 |
| | | • 청소년 성과 인권 관련 NGO 대표 | 남 | C10 |
| 업무담당공무원 (D) | 10명 | • 교육청 장학관 | 남 | D1 |
| | | • 교육청 학교폭력담당 변호사 | 남 | D2 |
| | |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담당 변호사 | 여 | D3 |
| | |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담당 변호사 | 여 | D4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분 류 | 인원 | 직업 / 직위 | 성별 | 구분 |
|---|---|---|---|---|
| | |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담당 장학사 | 남 | D5 |
| | |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담당 변호사 | 여 | D6 |
| | | • 교육청 학교폭력담당 변호사 | 여 | D7 |
| | | • 교육청 학교폭력담당 변호사 | 남 | D8 |
| | | •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변호사 | 남 | D9 |
| | | • 지방경찰청 경위 / SPO | 여 | D10 |
| 학교종사자 (E) | 10명 | ▶ 교사 | | |
| | | • 중학교 교사 | 남 | E1 |
| | | • 중학교 교사 | 남 | E2 |
| | | • 중학교 교사 | 여 | E3 |
| | | • 고등학교 교사 | 남 | E4 |
| | | • 중학교 교사 / 변호사 | 남 | E5 |
| | | • 중학교 교사 | 남 | E6 |
| | |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 | |
| | | • 학부모위원 / 변호사 | 여 | E7 |
| | | • 학부모위원 / 법학 교수 | 남 | E8 |
| | |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가위원 | | |
| | | • 전문가위원 / 변호사 | 여 | E9 |
| | | • 전문가위원 / 변호사 | 여 | E10 |
| 합 계 | 46명 | | | |

## 2. 심층면접 결과 분석

### 1) 개정 전 학교폭력 사건처리 절차 및 과정 현황

지금까지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고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피해사실을 주장하며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117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 학교에 통보가 된 경우에는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했다. 그 외에도 개최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지금까지 학교폭력사건의 주요 처리절차였다.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면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화해나 중재 등 여러 가지 교육적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가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학교폭력을 은폐, 축소하거나 화해를 종용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하여 학교폭력사안은 자치위원회 개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이나 행정심판과 각종 소송 제기와 민원 등의 다양한 절차를 거치면서, 그 과정에서 교육이나 화해는 사라지고 상처와 징계만 남게 되었다.

그동안 지적되던 여러 가지 문제점 중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의 현저한 증가로 학교 업무 부담이 증가했고, 자치위원회의 전문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며, 학교폭력사건 처리의 교육적 기능은 축소되고 처벌기능만 부각되는 등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 8월 2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자치위원회 개최로 가해학생에게 선도조치가 하나라도 내려지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이 두려워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상황에 진정한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만약 가해학생으로 인정돼 자치위원회의 선도조치를 받더라도 재심을 시작으로 학교와 기나긴 법적 다툼까지 감수하면서라도 조치 이행과 생기부 기록에서 벗어나려는 상황이 이어졌다.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면 학교와 교사는 민원이나 행정 업무에 시달렸고, 심지어 자치위원회 이후에 재심, 행정심판, 여러 가지 소송까지 제기되면 학교가 분쟁의 당사자가 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개정법에는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로 이관하여 처리하게 되어 교육지원청이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고 학교는 기존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다음에서는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심층면접을 통해 나온 의견들을 주제별로 정리해 보았다.

### (1) 학교폭력의 정의 및 개념의 모호성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과 더불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선도·교육 절차와 징계·처벌 절차가 같이 진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학교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치료와 회복, 교육적 조치를 담당해야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의 구체적 범위가 동법의 학교폭력의 정의 및 법의 목표에서 확실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사실상 징계 절차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사건의 처리 방법과 선도 조치 등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선도와 교육적 절차라고 하지만, 법원에서는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조치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만큼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징계절차라고 한다.

> "교육부와 교육청은 자치위원회를 학생 선도와 교육적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자치위원회를 징계절차로 보아 징계절차에서 요구되는 절차들이 다 적용되고 사실 너무 남용되고 있어요. 교육적 절차라고 본다면 이렇게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조치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될만큼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거든요. 지금 조그만 거 하나만 걸려도 다 자치위원회로 가고 서면사과가 사실 징계로서는 약하지만 생기부에 올라가고 가해학생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니까… 자치위원회가 주는 인식이나 어감이 우리 일반 학부모들 사이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자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으면 우리 아이가 잘못해서 혼났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도록 절차를 만들고 해야 하는데 개정법의 심의위원회는 오히려 이런 징계적인 측면이 더욱 부각되는 기구일 것으로 예상 됩니다."(D8)

>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갈등부터 폭력까지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해보려면 교사가 주도해서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학생의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가해 학생과 학부모와 함께 노력하는 과정이 있어야 해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바로 분리하고 자치위원회에 회부해서 가해학생을 징계한 후 그 조치를 생기부에 적도록 하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라면 가해학생은 진정한 사과를 하는 것보다 우선 자신을 방어하는데 집중하고 심지어 상대의 다른 허점을 찾아 공격하려고 하는 현상이 생기는 게 당연하겠죠. 지금까지 학교폭력 처리절차에서 사안이 교육적으로 해결되기는커녕, 학교와 학생, 학부모 사이의 갈등이 더 심화되는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돼요."(D9)

>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공식처럼 학폭신고, 경찰서 신고, 교육청 민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공식화 되어있는 것 같아요. 사건 처리절차가 인권 친화적이고 징계절차가 아닌 회복적 절차가 되어야 이런 단계들이 줄어들텐데…, 어쨌든 지금은 징계절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응심리로 가해나 피해자 측에서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죠."(D8)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나. 자치적 해결 능력 및 전문성과 일관성 부족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하지 말고 자치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자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어느 조치를 내릴 것인가를 논쟁하는 장이 되고, 학교는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전문적 해결 능력과 일관적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학부모 위원이 대다수인 자치위원회가 무슨 전문성을 가지겠느냐, 변호사와 경찰이 참석하지 않는 자치위원회 결과는 믿을 수 없다며 자치위원회 구성에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학부모 위원들은 결국 학교 측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반면에 학부모 위원들은 학교가 사건을 축소, 은폐하지 않도록 하고, 가해학생에게 과도한 징계가 내려지거나 또 다른 형태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 자치위원회에 참석해보면 부모의 입장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양측의 처지나 평상시의 행동을 잘 알고 계시기도 하고 당시 입장에 대해 잘 공감하시더라고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다 보니 외부에서 들어가는 위원들이 모르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E10)

> "자치위원회가 강화된 것은 학교폭력을 섣불리 무마하거나 은폐, 축소하지 말고 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말 그대로 '자치적'으로 해결하라는 제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보다는, 법령에 정해진 다음 조치 중 무엇을 내릴 것인가의 논쟁으로 변질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각 학교마다의 전문성이라는 게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는 것부터 일관된 조치를 결정하는 것까지 일선에서는 어려움이 많았고, 이에 대한 시비도 많을 수밖에 없었죠."(E4)

## (2) 자치위원회

### 가. 학교폭력의 기, 승, 전, 결 모두 자치위원회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도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신고를 하게 되면 반드시 사건의 경·중을 따질 필요도 없이 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까지 거치다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지나치게 증가하여 업무가 과중하게 되었다.

학교에서도 사안이 발생하면 자치위원회를 거쳐야 오히려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경험이 쌓이면서 점차로 사건만 발생하면 자치위원회를 통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 "자치위원회라는 것이 하여튼 이상한 제도예요. 이번에 노래방 사건에서도 뉴스를 보니까 '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육당국 자치위원회 넘기기로 해'라고 나오던데, 자치위원회가 무슨 교육적 절차인가요? 징계 절차죠. 학교가 불만인 것이 서울 학생이 방학에 충청도 가서 사건 일으키면 충청도 가서 회의하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피해자가 학생이기만 하면 시간 불문, 장소불문, 지구에 있기만 하면 자치위원회를 여는 거죠. 실제로 해외 연수 가서 맞고 오는 사건도 있고 별의별 경우가 다 있어요. 해외연수 갔다가 한국학생들끼리 싸우면 학폭 사안이 되거든요. 학습활동에서 생긴 사건이면 양반인데 교육활동과 관계없는 것도 다 피해자가 학생신분이기만 하면…, 심지어 개인적으로 휴가 갔다가 생긴 사건도 학폭이고 성인남자가 여중생, 여고생이랑 만남앱 같은 것으로 해도 다 학교폭력에 포함돼요. 가해자를 처벌하지는 못하지만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학교폭력예방법에 있는 심리상담 이라든가 치료라든가 하는 것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결국 교육부나 교육청이 사건을 무마하는 약방의 감초로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학교가 뭐했냐?', '피해학생 보호를 왜 안했냐?' 라는 비난을 받게 될까봐 '우리는 자치위원회로 처리했다'라는 책임회피 용도로 쓰여 지는 것 같아요."(D8)

### 나. 자치위원회의 필수적 개최

학교폭력이라고 의심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한다. 학교폭력 목격자는 이를 학교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이는 학교장에게 통보되며, 통보받은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에 통보하고(법 제20조), 통보받은 자치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해야하기 때문이다(법 제13조).

교실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갈등까지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되고, 일단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자치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하는 법체계에서는 자치위원회 업무가 과중될 수 밖에 없다.

### 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의 의무화

일단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면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해학생에게 선도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2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치위원회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나 2012년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다(법 제17조제1항, 제6항).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당사자끼리 진정한 화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해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만나게 해서 대화를 주선해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치위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회가 개최되면 선도조치를 내려 생기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하면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사건과 관련된 분쟁을 교육적 관점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 제18조는 사실 별 소용이 없어지죠. 소년법은 소년부 판사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심리 자체를 개시하지 않을 수도 있고(소년법 제19조), 경미하지 않은 비행행위라고 판단해서 심리를 개시한 사안이더라도 보호처분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소년법 제29조). 이런 소년법 규정과 비교해 보더라도 자치위원회가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무조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는 거죠."(D9)

### 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 징계 절차규범의 속성과 이행에 관한 전문성 부족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불복 절차의 대상이고 사안 처리절차의 운영방향이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인 조치보다는 징계 절차 규범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의 확보가 필요하지만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해 사안처리 절차와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익침해가 발생한다고 한다.

- ○ 학교폭력사건의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유도신문이나 모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되는 문제
- ○ 목격학생들의 진술서를 받기 위해 학급단위로 여러 차례 수업시간,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면서 학습권 등을 침해하게 되는 문제
- ○ 자치위원회에서 조치 결정시까지 개최사전통지, 적정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 자치위원회 결과 통지 등 절차 준수와 위반에 대한 문제
- ○ 가해 학생에 대한 자치위원회 결정과 집행정지와 관련한 문제
- ○ 개인의 법익에 관련된 강제력을 가진 처분을 다루는 절차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정보의 제공 등이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그리고 학부모에게 보장되지 않고, 학교가 학교폭력사안 처리과정에서의 정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 및 불복 절차를 통한 공정성 실현에 대한 문제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부모에게 자치위원회 사안과 처리절차 및 불복방법에 대한 안내가 정확하지 않아 가해학생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불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의 학폭 가해자든 피해자든 발생을 했을 때 대부분 학폭에 대한 개념조차 안 서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잘 몰라요. 사건이 발생한 걸 알았을 때는 무척 당혹스럽죠. 담당선생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선생님이 학폭에 대해 잘 아신다고 믿고 시작하는데 막상 경험을 해보니 미흡한 점도 많고 절차든 뭐든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같은 학교에서 몇 년간 학폭을 담당하셨다는데 그렇게 모를 수가 있나 생각이 들만큼요.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는 안내를 해주셨지만 그 안내가 잘못된 건지 아닌지를 나중에야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화해의 시도는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였어요. 처음 선생님을 면담을 했을 때 그 쪽 부모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법적으로 안 된다며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접촉을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아예 화해라든가 그런 건 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말이 되나요? 화해는 시도도 못 해보고, 잠깐 눈 깜빡하는 사이에 조치가 끝나더라고요."(B8)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생활부장선생님께서 아이 엄마에게 연락을 하셔서 처음에는 아이엄마가 선생님을 뵙고 왔어요. 다녀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 아이엄마는 상황 인지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생활부장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거 별거 아니래, 그냥 신경 안 써도 된대' 하더라고요. 피해를 입었다는 애가 학교폭력이라고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아닐 수가 있는지 저는 그게 의문인 거예요. 그래서 생활부장선생님께 다시 면담요청을 했죠. 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이틀 전에 선생님을 만나 그 신고내용을 전해 듣고 '혹시 그것을 주변 친구들은 알고 있는지?, 목격학생 조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더니 '제 생각을 아실 필요는 없고 애들이 작성한 거 읽어보세요. 잘 끝날 거예요' 하셨어요.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는지, 만일 조치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쭤봤더니 '행정심판이나 소송 같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재심도 할 수 있는데 아! 가해자니까 할 수가 없네요' 하면서 번복을 하시더라고요"(B8)

"서면사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서면사과는 별거 아니니까 그냥 하세요.' 학교에서 그렇게 얘길 하는데 서면사과 역시 어쨌든 가해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알아보니까 가해자는 재심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학교를 찾아가서 '다시 알려 달라. 회의록도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제서야 '내가 잘 못 알고 있었다' 고 하시더라고요. 가이드북을 보여주면서 '사립학교는 이렇게 합니다'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하려니까 변호사 비용이 압박으로 다가오고, 법으로 했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있는지 고민이 된 거죠. 그래서 일단 법률구조상담을 하면서 받은 서류를 다시 훑어본 거예요."(B8)

학교가 학교폭력사안 처리과정에서의 정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 및 불복 절차를 통한 공정성 실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련자 진술 자료나 자치위원회 회의록, 목격자 진술서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런 자료를 학교에서 원래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송이 진행되면서 어차피 법원에서 학교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 하게 되고, 그런 경우 학교는 제출해야 돼요. 이렇게 제출된 자료는 상대편에게 반박할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상대방이 보게 되지요."(D3)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피해학생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가해학생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모르잖아요. 보통은 학교에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지만 학교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알려주어야 할지 말아야할지 고민하게 되죠. 그런 경우 법원에서 '사실조회'라고 하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소송이 제기되었으니 그 학교의 누구누구 인적사항을 보내라고 공문을 보내면, 어떤 학교는 보내고 어떤 학교는 보내지 않고, 이런 것도 기준이 없어요. 이럴 때 피해자 측에서는 오히려 학교가 가해자를 감싸고 있다면서 불만을 갖기도 하죠. 학교가 뭐만 하면 어느 한 쪽에서는 절차상의 하자라고 하고, 만약에 주소를 알려주면 가해학생 쪽에서는 개인정보법 위반이다 뭐다 하니까 학교는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려고 하게 돼요. 우리는 그냥 모르겠다 협조하지 않겠다 하면서 뭐 하나도 쉽게 주지 않으려고 하고, 방어적이 되지요."(D8)

### 마. 자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조치의 공정성과 일관성

자치위원회 심의를 사법적 기능에 맞춘다면 공정성과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며, 교육지원청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이유도 공정성과 일관성을 위해서라고 한다.

"학교폭력사건을 심의기구 운영을 '사법적 기능'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슷한 사안인데 위원회마다 다른 수위로 선도조치가 내려지면 그 대상자는 다른 사례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 일관되고 공정한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조정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 산하에 설치하자고 주장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어요."(D9)

### 바. 절차상 하자

절차상 하자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 대부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하는데 이 때 교육청에서는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경우 하자 치유 이후 자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조치할 수 있으니 절차를 보완해서 다시 조치하라고 답변한다고 한다.

하자 치유 이후 자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는 일반적으로 다시 개최 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관련학생의 요청으로 다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관련 학생이 졸업을 하여 조치를 다시 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도 있어 다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반 정도라고 한다.

"재심이나 행정심판의 상당수는 학생에게 얼마나 교육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내려 해결했는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보다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판단해서 결과가 번복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행정절차를 얼마나 실수 없이 정확히 처리했느냐가 자치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리죠. 심지어는 담임교사나 학폭 담당 교사의 실수나 허물을 확대해서 인신공격을 하기도 하고, 헌신적으로 지도한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 되는 경우도 봤어요. 여러 가지 민원이나 소송을 비롯해서 정말 다양한 방식의 위협으로 피해·가해 학생이나 학부모는 학교나 선생님을 상대로 분풀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치위원회를 파행으로 가도록 해서까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는 시도도 갈수록 진화하는 것 같아요."(E4)

"절차상 하자로 자치위원회 조치가 취소되면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대부분 문의를 해 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면서요. 교육청에서는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경우 절차 보완해서 자치위원회 다시 개최해서 조치하라고 답을 해주죠. 보통 반반인데 하자 치유 후에 다시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학교는 다시 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요. 행정소송법상으로는 기속력에 반하지 않으므로 다시 할 수 있다고 규정[120]되어 있어요."(D8)

"법원에서 학교장의 조치가 취소되는 절차상의 하자도 있고,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 교육부, 교육청 지침에 어긋나 학교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하자가 있죠. 법원이 인정하는 절차상의 하자는 제일 빈번한 것이 자치위원을 구성할 때 학부모위원 위촉과정에서의 절차하자가 있고, 또 하나가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것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지적하는 것은 학교폭력이 신고 된 이후 14일 이내 자치위원회 개최해야 하는데 그 날짜를 어겼다든지 전담부서에서 조사할 때 학생한테 강압적으로 했다 등등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들이 인정되면 학교에 처분을 하게 되죠."(D8)

### 사. 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

자치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되어있다고 한다.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2010년의 판례[121]도 있었는데 2011년에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법이 개정됐어요(법 제21조제3항). 개인정보법[122]에 따라 이름,

120)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121) 대판 2010 두 2913.
122) 개인정보법 제2조(정의)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주민번호 같은 것 말고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누군지 특정할만한 정보까지 포함해서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또 공개 대상 회의록은 학교가 보유하는 전체 회의록이고 2011년 법 개정 이전 회의록도 포함돼요."(E3)

### 아. 학부모위원

'자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동법 제13조는 "….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가) 학부모위원에 대한 부정적 견해

학부모위원들은 자신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이고, 자녀의 친구들일 수도 있는 피·가해학생과 동네 이웃인 피·가해 학생 부모님과의 연계성 사이에서 사건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내리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가 증가하는 것 역시 학부모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자치위원회의 처분 결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가 낮은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자치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교사들도 학부모위원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객관적 판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면 자치위원회 전문성이 전문가 중심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어요. 학부모위원이 사건 당사자 학부모와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비밀엄수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아 피의사실이 공포되는 등의 부작용도 있고, '엄마의 마음'으로 사안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다른 전문가위원들도 학부모위원 이상으로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자치위원회에 참석해서 심의도 하고 조치도 내리고 하거든요. 학부모 위원은 자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능력이 있는 전문가위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D10)

"학부모 위원들은 자신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이고, 자녀의 친구들일 수도 있고 동네 이웃인 부모님과의 연계성 사이에서 사건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내리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학부모들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자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신뢰하기도 어렵고 비밀엄수의무를 지키지 않아 학부형들 사이에 사건과 관련한 소문이 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선도조치라고 하지만 결국 징계인데, 가해행위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워하는 가해학생과 보호자들이 학부형이 과반수인 자치위원회에서 내리는 조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재심가고 행정심판 하거나 소송까지 가게 되는 사건이 많은 것 같아요."(A4)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나) 학부모위원에 대한 긍정적 견해

반대로 자치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들이 피해·가해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학교의 사정까지 감안하여 적극적이고 치열하게 심의에 임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진심어린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적 해결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한다고 한다.

"학교에 있는 자치위원회에 비전문가인 학부모들이 과반수를 차지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싸잡아 얘기하기에는 모순이 있어요. 학교상황도 알고, 관련 학생과 학부모도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 그런지 실제로 자치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제일 치열하게 고민하는 분들이 학부모위원들이셨거든요. 저는 학부모위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E10)

"결국엔 학교에서 제출한 사안조사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는 아이를 알아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아이를 몰라요. 사실 가해학생이 우발적으로 욱해서 이렇게 한 건지 워낙 폭력성향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아이인지 학교는 알거든요."(C2)

### 다) 학부모위원과 학부모위원의 자녀의 성비 반영 제안

학부모위원의 성별과 학부모위원 자녀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있었다.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지금은 학부모 위원이 반인데, 다 엄마들로 구성되고 아빠들은 거의 오지 않아요. 저만 아빠예요. 그런데 이 분들이 다 그 학교 학부모이신데 자기 아이가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아들 어머니는 남학생인 가해학생의 행동에 너그러우신 편이고 딸 가진 어머니는 가해학생의 행동을 과장해서 받아들이면서 침소봉대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과 자녀의 성비도 일정 정도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정법에서 학부모위원을 1/3로 줄인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해요. 변호사나 의사 이런 분들이나 화해나 중재를 전문적으로 배운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아요."(E8)

## 자.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절차상 하자

자치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지 않고 위촉하는 등 학부모위원 구성의 절차 위반으로 인해 자치위원회의 조치가 취소되는 등 절차상의 하자를 근거로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제기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자치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야 하는데 직접 선출과정 없이 구성된 위원이 포함된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 외에 절차상 하자로 문제되는 것들이 자치위원회 결정시까지 개최사전통지의무 위반, 자치위원회에서 적정한 의견진술의 기회 보장 위반, 자치위원회 결과통지 같이 절차 위반에 대한 것들이 주로 문제되고 있어요. 자치위원회에서 내린 조치가 학생에게 얼마나 교육적이고 적절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복잡한 행절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판단해서 자치위원회의 조치가 취소되는 결과가 종종 발생합니다."(D5)

### 차. 자치위원회 위원 대상 소송제기

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어떤 논의를 했기에 이런 조치가 나왔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 보고 절차상 빈틈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위원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위원들에 대한 신분안전보장 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요즘은 자치위원회원들한테도 소송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한 절차적 적법성도 소송 건이지만 자치위원회원들이 어떤 논의를 했기에 이렇게 심한 조치가 나왔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차상 빈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자치위원회 교사위원이나 학부모위원들이 누군지 아니까 민사소송을 걸고 넘어져버리는데 위원들에 대한 신분안전보장 조치가 법에서는 빠져있거든요. 신분보호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누가 자치위원회 위원을 하려고 하겠어요. 개정법에서는 학교에 전담기구만 있는데 거기에 아마 심의기능이 탑재되어 있을텐데…. 위원에 대한 보호장치도 빈약하고 내가 회의에서 한 말로 송사에 얽힐 수 있다고 하면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E1)

### 카. 자치위원회와 초등 1, 2, 3학년들의 학교폭력 사건

초등 저학년은 교육이라는 개념보다 보육이라는 개념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현실에서 중·고등학생과 동일하게 법을 적용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측면에서는 초등 저학년 시기가 가장 중요한 만큼 피해학생 보호와 예방의 기능도 함께 포함하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제외하면 예방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게 되기에 반대한다는 등 찬반의 의견이 분분하다.

심지어 유치원에서도 자치위원회와 같은 처리기구가 필요하다며 설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한다.

"사실상 취치는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거예요. 오히려 유치원에서도 자치위원회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를 도입하자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절차라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주는 것인데 자치위원회를 거치고 나면 일단 사건은 종결되거든요. '기든 아니든 딱 끝내고 억울하면 소송을 제기해라' 그럴 수 있으니까요. 유치원에서도 '성추행을 했네', '아니네' 이런 사건이 엄청 많고 여기서는 학폭 같은 절차가 없는데다 심지어 유치원은 형사도 안 되잖아요. 주구장창 유치원을 상대로 '인정해라', '쟤 내보내라', 하며 싸우고 있는 거죠. 유치원도 "우리도 자치위원회를 만들어 달라" 오히려 이런 분들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초등 저학년도 유치부랑 마찬가지로 성사안이라고 분류될 사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 공식처럼 학폭신고가 들어오면 "성, 지속, 집단"이 한 세트예요. 아이들끼리 놀다보면 어디를 치기도 하고 했을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성추행을 했다', '어쨌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죠."(D8)

### 타. 자치위원회 외부 전문가위원 수당 지급 제안

자치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감을 가질 만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해줄 것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으나 개정법의 심의위원회에서는 전문가와 학부모위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제가 위원으로 있는 자치위원회에 다른 변호사도 한 분 계신데 솔직히 변호사 입장에서 저야 학폭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거의 반나절이 걸리는 자치위원회에 무급으로 온다는 건… 정말 변호사의 봉사활동에 의존하는 것도 교육청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교통비도 안 나오는데 개인 사명감에만 의지를 하는 거죠."(E10)

"자치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 위원에게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어요. 규정에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어디서는 해당이 된다고 하고 어디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급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치위원회가 길어지면 자정이 넘어가요. 밥도 안주거든요. 관련 예산이 마련되어서 '책임감을 가질만한 수당' 정도는 지급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D10)

## (3) 학교폭력사건의 교육적 해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서 문제 발생을 '0'으로 만들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상적인 논의는 탁상공론으로 취급되기 쉽다.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치국가에서는 법률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그래서 강화된 것이 학교폭력예방법이다. 분명히 그 촉발 원인이 됐던 집단적, 지속적, 조직적 괴롭힘이나 속칭 일진들에게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데에는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효과가 있으면 부작용도 있다.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인 학생들의 만성적인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주지 못했다. 또한 인간관계를 위한 사회적 기술이나 갈등 해결 능력을 키워주지는 못한 채, 자치위원회를 통한 억제에 의존했다. 법에 의한 처벌 없이는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겠지만, 교육적인 방법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위축됐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오히려 기계적인 행정절차와 처분과정으로 인해 학교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 측면도 적지 않다. 그래서 생긴 문제 역시 법령상의 조치로 해결하려다가 끝없는 민원과 소송 시비를 낳고,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고통받았다. 따라서 시급한 개정이 필요했다.[123]

### 가. 보복, 재발 방지 및 피해 치유와 관계 개선을 위한 진심어린 사과 장치 미흡

학교폭력예방법의 제정 목적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이라고 동 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이나 재발 방지 및 피해치유와 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적 해결의 기회 부여와 시간 확보 및 구체적 방법 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 "학교폭력제도 자체가 지금 피해학생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고하면 가해학생과의 분리, 피해학생 보호 등 이런 것들에 치중하다 보니까 사실 화해를 시키려면 서로 만나게 해서 시간을 주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분리와 화해, 어떻게 이것을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D8)

> "이게 접촉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초기에 사과를 진심 어리게 받아야 하는데. 사안을 계속 들여다보면 피해학생 쪽에서는 '진심어린 사과'라는 말을 많이 해요. 진심어린 사과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과했지만, 자기 아이들이 처분 받을 걸 다 받으면 진심어린 사과를 할 수 없다. 이미 사안은 끝났으니까. 골은 계속 깊어져 가는 거고. 진심어린 사과를 할 타이밍이 자치위원회로 가기 전이잖아요. 거기로 가고 나면 진심어린 사과를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치위원회 가기 전에 중요한 거고, 교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를 만들기를 어려워하는 형편이니 이런 단계가 없어지는 거죠."(E7)

> "자치위원회로 올라가면 서로 이미 감정들은 상할 만큼 다 상해서 진심어린 사과는 불가능해요. 초기에 화해나 조정이 잘 되면 서로 감정 상하고 억울한 상황을 면할 수 있을텐데 참 안타

123) 왕건환(2019),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통과를 맞이하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방향성 점검-", 지금 서울교육, 2019년 9월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까워요. 저희한테 상담이 들어왔던 사건인데 피해학생 부모님이 초반에 너무 강하게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 아이들의 분위기가 '가해자가 더 불쌍하다'는 식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결국 피해학생 부모님이 학급 전체 상담 요청하고 자치위원회를 취소하는 식이 됐는데, 그러면 피해학생의 억울한 감정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서 염려가 되더라고요. 초기에 가해, 피해학생 상담이 제대로만 이루어져도 가해학생이 자기가 뭘 잘못했고 어떻게 사과하면 되는지 알게 되면서 자치위원회까지 가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를 키워서 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초기에 진화를 잘 하면 좋겠다 싶어요."(C10)

심지어 자신의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 것을 알게 된 보호자들이 외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게 되면 초반부터 절대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와 그대로 실천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피해학생 보호자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그런데…'라고 해요. 가해학생 보호자가 '우리 아이가 잘못하긴 했어요. 그런데…'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자기 아이만 잘못한 게 아니라면서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사건이 발생하고 변호사나 행정사를 만나 상담하고 오신 부모님들은 '사과를 하게 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 모르니까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까지 해요."(C2)

학교나 교사가 학생을 책임지고 교육적인 해결을 시도할만하다는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교사가 학생 간 폭력사건에 권위와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화해시키고 중재역할을 할 기회를 갖기는 어려웠다고 한다.

"제 생각에는 학폭사건의 교육적 해결이 가능하려면 해결 과정에서 보호자를 제외시켜야 해요. 보호자를 배제시키고 학교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화해시키고 중재시켜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호자가 개입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척 아이러니한데 학교의 얘기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학교는 항상 그래요, 특히 초등학교는. 학교에서 애들끼리는 잘 논다고 하는데 학부모는 애가 집에만 오면 죽으려고 하고 죽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집에 와서는 매일 학교 가기 싫다고 한다는데, 학교에서 보면 그 아이와 잘 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학교폭력이 결국은 학교를 불신해서 생긴 제도잖아요. 학교는 크든 작든 화해시키고, 어떤지 물어보면서 앞으로 잘 지내라며 끝내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고, 그게 결국 은폐 축소라고 비난받게 되는 거고요. 교육적인 해결을 시도해보려면 부모님은 멀찍이 물러나 있고 학교가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화해시키고 중재역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거죠.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D8)

그러다 보니 학교, 학생, 학부모 모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오랜 시간 힘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기울였지만 결국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에게 교육적이지도 않으면서 소모전이기만 한 것은 아닌지 무척 고민이 되었다고 한다.

> "'이렇게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면 누가 만족을 하는 거지?' 피해학생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는지 가해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했는지를 생각해 봤는데 둘 다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학교폭력관련 행정소송 이런 것을 하면서 제 일이 피해자 쪽 이야기를 제가 대신해서 하는 거잖아요. 학교 처분이 정당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요. 처음에는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사건들을 점점 더 많이 다루게 되면서 아! 이건 모두에게 상처이겠구나. 패소를 하게 되면 피해학생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낙심을 하게 될 것이며, 가해학생인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법원도 내 손을 들어줬다 이런 심리적인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얻게 될텐데... 학교폭력예방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계속 고민을 하게 됐어요."(D6)

변호사, 의사, 심리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객관성관 전문성을 갖춘 제3자가 사건 초기에 개입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법에 가장 가까운 해결책을 찾아 조정하고 중재하며 화해와 합의를 도출하는 단계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고 공정한 초기 대응에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제안도 있었다.

> "초기 단계를 학교 밖 제3자에게 맡기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부모를 다 만나서 어떤 해결이 가장 적절할지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이 단계를 맡아주는 거죠. 재정이 허락한다면 변호사, 심리전문가와 의사도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좋고요. 실제로 이런 업무는 교사들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도우려다가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오히려 학교 내에서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제3자가 초기 단계에 핸들링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의견을 내더라도 신뢰가 있고 학교관계자가 아니면 훨씬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안심이 될 거예요. 초반부터 아예 접촉을 못하게 하니 가해학생 쪽에서는 사과를 하고 싶고 일을 커지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큰데 만날 수도 없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자치위원회로 올리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선정된 전문가그룹이 전담기구 조사를 다 취합을 해서 초기 검토도 하고, 이런 경우는 학생이 진정 원하는 게 뭔지 의사도 확인해서 데이터로 남겨놓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E7)

### 나. 자치위원회의 역할은 처벌이 아니라 교육과 선도가 목적

> "자치위원회 역할은 처벌이 아니라 교육과 선도가 목적이잖아요.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없어야 하고, 위원들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다독여주면서 얘기를 들어주어야 하는 게 역할이예요. 피해학생이랑 부모님도 놀라고 억울하겠지만 가해학생 부모님들도 그런 맘이 있거든요. '놀랐겠다, 속상하겠다, 억울하겠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다, 하고 싶은 얘기 해봐라' 하면서 피해학생의 상처를 들여다봐주면서 가해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청소년은 아직 다 성숙하지 않은 단계라서 문제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바로 법적인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교육적인 해결을 먼저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처벌단계에 가서도 개선의 여지를 보인다면 교육적인 방법으로 종결짓는 게 맞죠."(D10)

### 다. 가해학생의 자치위원회 불참은 또 한 번의 교육적 기회 상실

피해와 가해학생 간 분쟁 조정과 화해를 통해 서로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교육적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양측 학부모 사이에 견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자치위원회가 개최될 수 밖에 없다.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서로의 진술이 대립되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진술 기회이면서 그동안 피해학생이 겪었던 힘든 점을 들어주며 회복을 위한 방법을 찾는 자리이다.

특히 가해학생이 참석하게 되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게 되며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스스로 느끼고 반성하며 다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학부모가 자치위원회 학생 참석을 만류하여 그 기회마저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같은 상황이라도 두 학생의 기억이 엇갈리거나 자기에게 유리한대로 해석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 이예요. 피해학생은 출석하지 않았는데, 가해학생은 자신의 행동을 거짓말로 포장하고, 심지어 장난이었다는 식으로 변명하면 위원들은 가해학생 말을 믿게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가해학생은 출석하지 않았는데 피해학생이 힘들었고 상처받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기 심지어 피해 상황을 과장하는 경우 가해학생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했더라도 얼굴을 맞대고 표정과 목소리를 통해 위원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면 위원들이 진심을 알아줄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저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E10)

"가해학생 학부모 중에는 자기 아이가 자치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아이가 충격을 받게 될까 염려된다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자치위원회에 참석해서 여러 위원들이 계시는 분위기에서 긴장도 하고 해주시는 말씀도 듣고 하는 중에 배우는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회마저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D6)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라. 학교폭력의 근원적 이유 분석 필요 : 가해학생의 폭력성 원인 분석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은 학교폭력사건의 근원적 이유를 알아내는 것에서 시작한다. 즉 가해학생의 폭력성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야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가능해진다고 한다.

어떤 문제나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폭력을 사용하는 습관을 바꾸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한다.

> "학교폭력의 근원적인 이유는 가정환경, 선생님과의 교감 부족 그리고 범죄예방의 체계적인 교육 미흡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문제점에 나타난 공통적인 사항이 '대화부족'이죠. '대화는 기술이 아니라 습관'이고 마찬가지로 '폭력도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화로 풀어나가려는 습관이 구축돼 있지 않다보니 철모르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엔 막무가내로 주먹을 먼저 쓰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민주적인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범을 보여야하고, 대화를 통해 아이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주어야 해요. 학교에서도 폭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교육을 통해 '피해자의 고통'과 '가해자에게 따르는 책임'을 확실하게 깨우쳐주어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사들과의 소통창구가 개선돼야 해요."(C1)

### 마. 용서를 구하는 용기, 용서해 줄 수 있는 용기

용서를 구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굴복하거나 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학생들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궁색한 변명부터 늘어놓는 어른들이 사는 우리 사회에는 용서를 구하는 용기와 용서해 줄 수 있는 용기가 꼭 필요한 덕목이라며 어른들부터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다.

>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에 화해와 용서가 이뤄지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의 가해학생들이 용서를 구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굴복하거나 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궁색한 변명부터 늘어놓는 우리 사회 어른들의 풍토를 자연스럽게 배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다만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용기'를 아이들이 배워야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런 용기는 비단 학생들끼리의 일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 전체에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해요."(C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바. 학교(교사)에 대한 신뢰 회복이 전제

학교폭력사건의 교육적 해결을 시도하려면 자치위원회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학교(교사)를 믿고 맡겨주면서 학부모는 지켜봐주어야 하는데 신뢰도 기다림도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 섣불리 화해를 권유하게 되면 화해 강요에,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 한다는 비난이 두려워 결국 자치위원회를 해결책으로 삼게 된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자치위원회나 전담기구에 학부모를 포함하도록 한 것이 학교를 믿지 못해서라며 진행과정에서의 번거로움을 호소하는데 사실 절차의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학생과 관련한 모든 사건들을 다 자치위원회로 밀어 넣다 보니 정말 어중이 떠중이 다 자치위원회로 오게 되고, 억울하다고 느끼는 일이 발생되면 이걸 문제 삼으면서 절차상의 하자나 이런 것들을 다 주장하게 되면서 자치위원회가 난장판이 된 거죠.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학교를 믿어주면서 '정말 선생님이 잘 지도해서 해결해 볼 테니까 학교에 좀 맡겨주고 부모님들은 좀 지켜봐주십시오' 라는 것이 통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 상황인거죠. 이것이 되려면 자치위원회를 없애고 학교의 지도에 맡기고 그래도 안 된다면 형사절차로 가서 처리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같은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것은 화해를 시키고 어떤 것은 징계를 한다 이렇게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D8)

"부모님들이 사소한 것 까지 예민하게 신경을 쓰다 보니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왜 부모 없이 내 아이에게 진술서를 쓰게 하냐?', '보호자 동행해야 한다', '학생들끼리 사과하도록 하는 것도 교사가 부모의 동의를 먼저 구하고 해야 한다' 등등. 어느 정도까지는 교권의 재량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공식화해서 학부모들이 문제를 삼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자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아도 생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고 교사에게 서로 사과를 시켜도 되겠다고 판단할 권한이 있다고 할 때에는 사과를 교육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과는 폭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으면 생기부에 기재된다고 하면 절대 진심어린 사과는 불가능할 거니까요."(E10)

"저도 일을 하다보면 학부모를 많이 만나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담임선생님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불신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피해학생 얘기를 듣고 내용을 확인이라도 하면 가해학생 부모는 '우리 아이를 나쁘게 낙인 찍는다'고 문제 삼고, 중립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피해학생 측에서는 '방관이다'라고 비난하니까요. 대부분의 교사들은 양쪽 학생 모두에 대해 감정이 있는 건 절대 아닌데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겠죠. 저는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불편한 상황들을 너무 교사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선생님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면 되는데 바로 학교장이나 교육청을 찾는 분들도 있고, 너무 자기 아이 말만 믿고 비이성적으로 대처하시는 경우도 많았어요.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먼저 '선생님은 만날 필요도 없다'는 내용이 공유되기도 하고요."(E1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우리 아이랑 문제가 있던 아이 부모 모두 교수라던가? 아무튼 그 아이가 우리 애한테 '우리 아파트 팔면 니네 아파트 10채도 살 수 있어'라는 말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학부모들 사이에 힘의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부모도 있고 권력이나 재력이 있는 학부모도 있고. 반대로 아이를 방치하거나 사건이 방관하는 학부모들이 있는데, 학교에 민원을 많이 넣고 목소리가 큰 쪽으로 기울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힘 있고 목소리가 큰 쪽 얘기를 듣기 마련이니까요. 그런 학부모를 상대방으로 만난 입장에는 '나는 힘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학교가 나를 무시해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무서워서건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건 학교는 저 쪽이랑 한 패구나' 라고 예상하던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았고요."(B5)

### 사. 화해·중재가 어려운 이유

화해나 중재를 시도해서 교사 앞에서는 화해하는 것처럼 보여도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화해를 강요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 성향이나 사안의 종류마다 적절한 화해나 중재 역량을 갖추기는 어렵다보니 처음에 시도했던 의도와는 달리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강남 쪽 중학교에 인권수업을 갔었는데 강의가 끝나고 교무부장선생님께서 상의할 게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학폭사건 때문이었는데 체육시간에 학생 둘이 서로 치고 받고 싸운 경미한 사건인데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서로 사과하라고 시키셨대요. 그날 저녁 피해학생 학부모가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왜 내 동의도 받지 않고 사과로 끝내려고 했느냐?'며 학교를 상대로 학폭사건을 은폐시켰다고 소송을 걸었대요. 그러니까 가해학생도 또 소송을 제기하고요. 교사가 경미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섣불리 사과를 시켰다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와 난감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학생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시켜서 사과는 했지만 찜찜했을 수도 있고, 부모 입장에서는 화해를 강요당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우선은 뭘 하든 사전에 통지를 꼭 하고 해야 한다면서 진술서 쓰는 것도 '몇 시에 하겠다, 입회 원하시면 오시라'고 해야 한대요."(C9)

"여학생들 사이에 따돌림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학생이 너무 힘들다면서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했대요. 선생님은 가해학생 여럿과 피해학생을 모두 한 방에 모아 두고 서로 대화로 잘 해결하라고 하시며 나가셨는데 그 자리에서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네가 고자질 한 거냐?'며 2차가해가 일어나 일이 커진 거죠. 선생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도 해결이 안 되고 역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가해학생 수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쏠려서 피해학생에게 오히려 '네가 사과하는 게 낫겠다' 하는 분도 있고요."(E10)

"사건이 신고된 후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분쟁조정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런 기술이 부족한 경우 분쟁조정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양쪽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의 의견을 통역하듯 전해주고 협상기술을 전문적으로 습득한 사람이 개입해야 해요."(D1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아. 교육적 해결을 위한 법제 정비, 예산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의 매뉴얼이나 사건처리절차가이드도 화해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학교 현장에서 화해시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사들에 대한 교육도 확대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도 요구되며, 유능한 전문상담교사를 꾸준히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한다.

>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생활지도 경험이 풍부한 학폭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 장학관, 학교담당경찰관 이런 분들을 체계적으로 훈련해서 학교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학교에 찾아가 긴밀하게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 급선무예요."(E4)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단', '학교폭력 전담 공익법무관' 또는 '학교폭력 화해·증재 상담원' 등 학교폭력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제 정비와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학교폭력 관련학생과 보호자에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여 초기단계에 만족스러운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 "교육청에서 근무할 때 변호사, 경찰, 장학관, 장학사, 교장, 교감으로 구성된 '사안지원단'이 사안이 심각하고 학교의 요청이 있을 때 개입해서 지원을 했었어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소위 기술자, 전문가들이 감정적으로 엮이지 않으면서 수사기법을 활용해서 사안조사도 하고 상담도 했어요. 경찰관은 자살, 테러, 인질사건 관련해서 교육을 이수하기 때문에 분쟁조정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어요. 학교에서 지원단 요청 수요가 많았는데 자치위원회 관련 문서에 지원단 컨설팅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전문가 컨설팅을 근거로~'라고 삽입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중략) 전문가들이 컨설팅 과정에서 학교의 사안처리에 대한 문제점이랑 자치위원회 절차하자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관련학생 학부모 중 한명이 정보공개를 요청하면서 컨설팅 보고서를 증거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거기서 승소하면서 자치위원회 조치가 취소됐어요. 이 사건 이후로 학교에서 '사안지원단'의 컨설팅을 조금 꺼리게 됐죠."(D10)

> "학교폭력 전담 공익법무관 같은 직제를 마련하여 피해학생과 그 가족에게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법률 상담을 통해 가해행위 방어와 피해 회복에 어느 방법이 최선인지 충분히 판단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E8)

### 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연간 상시적 교육활동으로

학교폭력 예방의 방향이 처벌 중심이 아닌 관계 회복을 통한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강당이나 교실에서 영상을 통한 전체 교육이나 학교폭력 정의와 처벌에 대한 안내 교육 수준에서 나아가 학교폭력 예방과 관계 회복에 필요한 역량 중심으로 예방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학교에서 특별행사나 특강식의 일회성 행사가 아닌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연간 상시적인 교육활동으로 학교폭력 예방 역량과 회복적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고안과 적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반응하여 교사들 스스로 자체 연구와 연수를 통해 학생들끼리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단계별로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활용하기도 한다.

> "이 책[124]에서 제안하는 것은 학생들끼리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단계별로 해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 책의 핵심인데…, '사람과 교육 연구소'의 전문가들과 함께 집필했어요. 애들은 하루에 수도 없이 싸우고, 놀리고, 치고 도망가고, 장난치고, 기분 나빠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종일 있기 때문에 현재 법률상으로 다 학교폭력으로 전담기구에서 심의해야 하는 사건들이거든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생활하다가 열 받으면 호흡조절하면서 감정 조절하고, 기분 나쁜 것들을 서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서로 화내고 욕하는 거니까 표현하는 법과 사과하는 법을 계속 교육하는 거죠. 선생님께 이르기 전에 자기들끼리 서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일 때는 선생님께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교육하는 거예요."(E4)

### (4) 학교폭력 피해학생

#### 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학생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함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만큼이나 학교폭력예방법으로 보호해야 할 피해학생의 범위가 너무 넓어 폭력을 가한 상대방이 성인, 학교 밖 청소년 등 학생이 아닌 사람에 의한 가해도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국내를 벗어나 국외에서 발생한 사건은 물론 교육활동과 관계없는 사건까지 포함되며, 가정폭력이나 미성년 성매매의 피해자까지 이 법에서 정하는 보호대상이 되어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라도 피해학생 참석 없이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피해학생의 범위가 너무 넓어 일정 범위로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다.

---

124) 왕건환, 김성환, 박재원, 이상우, 정유진(2019), 「학교폭력으로부터 학교를 구하라」, 에듀니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학생은 폭력의 상대방이 성인, 청소년 여부를 불문하고 본 법의 적용을 받게 돼요. 학생이 아닌 사람의 폭행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도 학교의 보호조치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학생이든 학생이 아니든 어떤 상대방에게라도 폭력 등을 가한 학생 역시 가해학생의 선도조치를 받게 되는 거죠."(E6)

"학교가 불만을 갖는 것이 서울 학생이 방학에 충청도 가서 사건 일으키면 충청도 가서 회의하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피해자가 학생이기만 하면 시간 불문, 장소불문, 지구에 있기만 하면 자치위원회를 여는 거죠. 실제로 해외 연수 가서 맞고 오는 사건도 있고 별의별 경우가 다 있어요. 해외연수 갔다가 한국 학생들끼리 싸우면 학폭사안이 되거든요. 학습활동에서 생긴 사건이면 양반인데 교육활동과 관계없는 것도 다 학생신분이기만 하면 해당돼요. 심지어 개인적으로 휴가 갔다가 생긴 사건도 학폭이고 성인남자가 여중생, 여고생이랑 만남앱 같은 것으로 만나 문제가 생겨도 다 학교폭력에 포함돼요. 성매수자인 성인을 이 법으로 처벌하지는 못하지만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학교폭력예방법상에 있는 심리상담이라든가 치료는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D8)

"학교폭력은 가해자가 누구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라고 되어 있어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에도 학생 보호를 위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어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어머니랑 같이 사는 학생인데 어머니가 평소 폭력적이신 데다 그 날은 아이에게 칼을 휘둘러서 아이가 위험했던 사건을 따로 살고 있는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학교에도 같이 신고를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학폭을 축소·은폐했다'라는 비난을 받게 되니 사안조사도 하고 피해자보호조치도 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피해자보호조치는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긴 한데… 피해자 자체가 그 문제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보호조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것이라서 학교폭력예방법의 범위가 조금 수정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D6)

"여학교 앞 서점에서 주인아저씨가 여고생의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듯이 만졌다고 학생이 선생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학교는 그 여학생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고 그 아버지는 서점에 가서 주인을 때리고 기물파손을 했어요. 서점 주인은 '내가 그런 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학교로 쫓아오시고 그랬던 사건이 있었어요. 학교폭력의 정의 규정이 너무 열려있다 보니 그런 불만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1차적으로 회의록, 사안조사 이런 것들을 다 받으면 경찰들이 그 자료를 다 달라고 해요. 그런데 '애들이 어딜 만졌네, 어쩌네' 이런 사건을 자치위원회에서 처분을 내리려면 사실 경찰에서 수사한 것을 받아 볼 수 있어야 학교에서도 뭔가 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학교로 절대 안 알려줘요. 오히려 최근 몇 개월 전에 서울시경찰청 본청에서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학교에 발설하거나 내용을 알려주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하니 앞으로는 더 어려울 거라고 해요."(D6)

"옥상이나 노래방 같은 데서 집단구타 하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학교 밖에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이런 사건에서 교사는 절대 목격자가 될 수 없는 사건인데 이런 사건은 차라리 경찰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학교폭력의 범위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경찰로 넘길 수 있도록요. 그렇다고 교사들한테 사법권이나 경찰과 같은 권한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미있는 건 경찰이 사건을 맡게 되면 오히려 화해나 합의로 넘어가는 가능성이 더 커지더라는 거죠."(E2)

### 나. 피해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피해학생

피해학생이 피해상황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파악하여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스쿨미투 사건의 '성평등 지원팀'처럼 불안감이 높은 피해학생의 경우 옆에서 진술을 도울 수 있는 지원팀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아이들에게 약간의 '기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피해자이면서도 상대방에게 눌리거나 상대방은 부모가 있는데 보통 당한 친구들이 부모의 지지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당하고 마는 거죠. 본인이 억울한지도 모르고.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지지자나 옹호자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그게 조금도 없더라고요. 지금 스쿨미투에서 교육청 '성평등 지원팀'이 나가서 같이 조사를 하고 진술을 듣고 하잖아요. 피해를 입은 친구들이 제대로 피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정말 신뢰를 주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조사를 해주면 자치위원회나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자체해결이 정말 원만하게 될텐데 그런 도움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C10)

"입소 결정은 추천서와 신청서를 받고 심리검사와 면접 결과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요. 피·가해 복합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보호자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받지 않습니다. 간혹 빠른 시간 내에 가해행위자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거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입소를 시키기도 해요. 본인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그루밍 폭력처럼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때는 학교에서 그 학생을 적극적으로 빼온 경우도 있었어요. 피해학생하고 보호자한테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구제한 사례였어요."(C3)

"10살 미만인 성범죄 가해자였는데 관계 애착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 액팅이 성으로 나타나거든요. 내면에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게 좋아요. (중략) 가정법원에서 미성년 성범죄를 판단할 때 죄질로 하지 않고 주변의 자원을 보고 판단을 해요. 애가 이 행동을 멈출 수 있게 주변에서 도와주면서 지지해줄 어른들이 많으면 그냥 명령으로 끝나고 주변 자원이 없으면 경미해도 소년법으로 가는데 학교폭력 가해학생도 그런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아요. 아이가 폭력적인 행동을 멈출 수 있게 도와 줄 주변 자원이 있는지 확인해서요. 물리적으로 부모가 존재한다는 것보다 아이의 문제점을 알고 변화를 위해 도울 준비가 되어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겠죠."(C8)

KOR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다. 학교(교사)와 학부모의 존중과 배려가 피해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을 신고한 후 사건처리과정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 피해학생이 계속 학교생활을 잘 할 수도 있고,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날 수도 있다고 한다. 가해학생 앞에서 "너만 힘드니? 00(가해학생)이도 힘들어"라는 말을 듣게 되었거나 "벌써 학기 초부터 귀찮은 일이 일어났다. 너무 귀찮다"며 교사들끼리 하시는 대화를 들은 피해학생들은 결국 학교를 떠났다. 귀찮은 사건이 생겼으니 빨리 끝내버리기를 원하시는 듯 사과받기를 강요하는 교사의 뜻에 그래도 따르려고 했지만 가해학생에게서 받은 사과는 틀에 박힌 세 줄짜리 형식적인 문장에 실망하고, 부모님의 권유로 자치위원회 개최 기회마저 상실한 그 학생 역시 학교를 떠났다고 한다.

"학교폭력 신고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그 아이들한테 멍에를 씌우려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피해학생이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해서 다시 교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신고하는 거죠."(C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나 생기부 기재에 대해서 교사들과 학생들이 정 반대 입장을 보이는 건 교사들이 학생들만큼 학교폭력을 민감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학교폭력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학교폭력이 과거의 '신체적 폭력'에서 '관계적 폭력'으로 바뀌고 있어요. 온라인에서는 '사이버 폭력'이나 '사이버 따돌림' 오프라인에서는 '따돌림', '왕따'를 당하는 거죠.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교묘하게 따돌리는데 피해학생이 느끼는 고통은 자해나 자살 충동이 일어날 정도로 학교생활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죠."(C5)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바로 '피해자'에 대한 배려아닐까요?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학생 중에선 내성적이거나 마음이 약해서 별다른 대처도 하지 못한 채 계속 당하기만 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또 그런 성향의 아이들을 타겟으로 삼기도 하고요. 학교폭력이 드러나면 가해학생보다 피해학생들이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데 혹시 학교에서 사태확산을 우려해 대충 무마시키려고 하거나 부모들끼리의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이건 정말 아이를 두 번 죽이는 일이 되는거죠."(C1)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학교폭력 사건이 있었고 자치위원회도 열렸었어요. 가해학생하고 같은 반이었는데 학교 다니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어느 날 조회시간에 담임선생님께 '선생님 저 솔직히 학교 나오기가 너무 싫고, 쟤랑 한 교실에 있는 것도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담임선생님께서 '너만 힘드냐?'며 저 괴롭혔던 애 이름을 말하면서 '너만 힘든 거 아니고 00이도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치위원회 열리고 두 달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선생님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울면서 '제가 쟤랑 싸운 건 맞지만 저는 적어도 걔한테 부모님 욕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지는 않았고 나는 걔 때문에 멍도 든 데다 지금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 하고 끝내시더라고요."(A1)

"전형적인 선생님들의 생각대로 애들 싸움이라며 쉽게 여기시고 그냥 책상 모아놓고 저랑 가해한 애들 3명을 모아놓고 마주 앉게 한 다음 선생님이 앞에 서서 사과하라고 시키셨는데, 저는 약간 두려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더니 선생님이 토닥이면서 빨리 사과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 때가 방과 후 시간이었고 '니가 빨리 사과를 받아야 끝나지'하셔서 할 수 없이 받았어요. 그 친구는 약간 '나는 다른 친구랑 놀아도 되지만, 너는 나랑만 놀아야 돼' 이런 주의라서 그때도 저랑 싸운 이유가 걔가 다른 애랑 먼저 놀고 있어서, 저는 이미 걔한테 몇 번 당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다른 애랑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걔가 다른 친구를 시켜서 저를 방구석에 밀어 놓고 제 앞에 3명이 서서 '너 왜 다른 애랑 노냐?'고 하길래 그 때는 제가 뭣도 몰랐으니까 미안하다고 계속 반복했는데 그때 진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선생님한테 말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바로 그날 제 사정도 자세히 안 들어주시고 바로 방과 후에 책상을 저하고 그 애들을 나란히 앉힌 다음에 3명한테 사과를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정말 마지못해서 사과를 하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래도 이번 일을 통해서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그 날 밤 열시쯤부터 카톡으로 장문의 메시지가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저를 탓하는 내용이라서 빨리 이 일을 끝내고 싶어서 제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걔가 저희 집 바로 앞에 살았거든요. 저한테 '지금 나와라'고 하는데 솔직히 밤이잖아요. 늦은 시간인데 나오라고 해서 제가 못나가겠다니까 걔가 욕을 하면서 빨리 나오라고 해서 결국 나갔어요. 저한테 '내가 뭘 했다고 니가 그렇게 힘들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니 행동이나 똑바로 하라'고 하더니 가 버리더라고요. 그 다음날 학교에서 만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저한테 같이 다니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계속 같이 다닐 줄 알았는데 그 때부터는 저를 본격적으로 따돌리면서 괴롭혔어요."(A3)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그렇게 하지만 학교폭력을 막상 당하면 누구한테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친구한테 말하면 친구는 방관자가 될 뿐이고, 부모님한테 말하면 부모님이 학교에 연락을 하겠죠. 학교가 알면 그 가해학생들에게 벌을 주게 돼요. 그러면 가해학생들은 다시 저한테 보복을 하게 돼요. 보복으로 더 강한 폭력을 당하게 되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는 게 어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학교에 말해도 달라지지 않고, 누구한테 말을 해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A1)

"누가 학교폭력을 당하면,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 피해학생 위주로 해결해야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가해학생 위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이런 일이 생긴 게 귀찮아서 빨리 끝내려고 가해자 애들한테 억지로 사과를 시키고, 저희는 그 눈치를 다 보면서 억지 사과를 받았다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막 은따, 은근히 따돌리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장문의 메시지가 와요. '너 괜찮은 거 아니었냐?', '왜 갑자기 피해자인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척 하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게 돼요. 제 느낌으로 학교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 그냥 사과의 형식으로 빨리 끝내버리고 그러는 것 같고 '우리 학교에서는 절대 학교폭력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되니까 빨리 끝내버리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마는 것 같아요."(A2)

"선생님께 처음부터 다 말씀을 드리고 증거물로 카톡 대화까지 보여드렸어요. 걔가 밤늦게까지 자기 음성메시지로 욕설을 계속 했거든요. 제가 상처가 너무 깊어서 자치위원회를 꼭 열고 싶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선생님이 말리셨어요, 그래도 제가 계속 자치위원회를 열고 싶고,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자치위원회가 열리려면 양쪽 부모님이 모두 오셔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오시고 걔네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저랑 걔랑 그렇게 부모님들 오신 상태에서 얘기를 나눴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걔도 아직 철이 덜 든 상태고, 앞길도 창창한데 좀 용서를 하고 넘어가자'고 하시면서 '그 아이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번 일이 커지면 부모님께서도 계속 학교에 나오셔야 하니까 사과 받고 넘어가자면서 저를 말리셨어요. 저는 그때 사과를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중략) 제가 그 일 이후로 학교 다니기가 많이 어려워서 며칠 동안 계속 결석을 했는데 바로 옆 반 친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들 사이에 소문이 돌고 돌아서 걔가 가해자가 아니고 제가 가해자로 소문이 나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애들도 신경이 좀 많이 쓰이고 해서 학교 나가기가 어려웠어요. 사실 더 힘들었던 건 학폭담당 선생님께서 우리 교실에 오셨는데 저를 의자에 앉혀두고 선생님끼리 작게 얘기한다고 하셨지만 제가 다 들을 수 있는 크기로 담임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벌써 학기 초부터 귀찮은 일이 일어났다'며 '너무 귀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 충격을 먹어서 그 이후로 학교를 안 나가다가 결국 제가 선생님께 '자퇴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엄마가 선생님께 자퇴는 진짜 시켜주지 말라고 부탁을 하셨는지 자퇴를 못하게 말리셔서 위클래스랑 위센터를 소개받아 계속 상담을 다니다가 해맑음센터를 알게 돼서 여기로 왔어요."(A2)

### 라.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 가해학생과의 분리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피해가 크고 위급하다면 학교에서는 심리상담이나 일시보호 등 필요한 긴급조치를 해서 피해학생을 먼저 보호하도록 되어있는데 사건 발생 시 필요한 즉각적인 접근 금지 조치를 해주지 못해 자치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해 학생과 같은 반, 같은 공간에 일정 기간 있게 되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 가해학생 대한 긴급조치로 서면사과, 접촉금지, 협박금지, 보복금지, 교내봉사, 심리치료 외에 피해학생과의 즉각적인 분리를 위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해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가해가 확정되지 않았고 설사 가해학생이더라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 또는 "학습권 침해"라면서 동의해주지 않아 출석정지 긴급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가해학생과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도 할 수 없이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상으로는 그것을 지원해주고 보호해주는 장치가 굉장히 미흡했다고 생각되거든요. 분리조치라든지 일시보호는 되지만 자치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급을 완전히 분리시켜줄 것을 호소하는 경우 만족시켜주기도 어렵고 자치위원회에서 그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의 의견대로 분리되기가 어려웠어요."(D3)

"가해학생이 무서워서 피해학생이 결석해야하는 상황일 때, 학교폭력사건 발생으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분리되기를 원하는 경우 사안조사 단계에서부터 분리 가능한 제도가 마련되어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긴급조치로 자치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학교장이 가해학생 출석정지를 시키려고 해도 그것조차 조건이 까다로워요. 자치위원회 추인을 받아야 하고. 정말 심한 학교폭력이 아니고는 '가해학생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 '사건이 아직 조사 중이라서 부모님들 반발이 심하다' 등의 이유로 이 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아 오히려 피해학생이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 가해학생에게 전학처분이 내려져도 하루아침에 가게 되는 게 아니라 가해학생은 계속 등교를 하게 되고, 또 재심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계속해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가해학생을 다른 반에 가서 수업을 받게 한다든지 하는 제도라도 있어야 하는 거죠. 쉽게 설명 드리면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뺨을 맞거나 묻지 마 폭행을 당했을 때 또는 집에 있다가 강도를 당했을 때 그런 범죄자와 한 순간도 얼굴을 마주 보고 싶지 않지 않은 게 당연하고 너무 끔찍하고…, 그런데 단지 아이들 싸움이라고 해서 이 아이한테는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고 그 짧은 인생에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한 때는 내 친구였던 아이에게 그런 폭력을 당했다면 길거리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묻지 마 폭행을 당한 경험보다 더 끔찍한 일일 수 있는데 그 친구랑 하루 종일 한 교실에서 하루 8시간을 같이 지내야 한다는 거죠. 그 친구가 웃고 떠들고 밥 먹고 하는 것도 다 보고 그래야 하는데 피해학생에게 그것을 '다 견뎌내라', '네가 약해서 그것을 못 버티는 거 아니냐?'고 하기에는 피해학생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E10)

객관적 기준이 없이 긴급조치가 이루어져 강하게 요구하는 쪽의 요구를 들어주는 학교에 상대측이 반발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객관적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한다.

"그게 기준이 문제예요. 긴급조치라는 것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높으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분리를 하거나 가해자 조치를 빨리 들어가기 위해 하는 것인데, 딱 어떤 기준 자체가 없으니 가해자 측에서는 반발하게 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긴급조치를 하게 되는 게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드러누우면 그냥 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애를 인질로 잡아놓고 안보내면서 '내가 쟤 때문에 무서워서 학교에 못가겠다' 이러면 학교에서는 긴급조치 뭐 하나 하고, 이러니까 공신력이 없어지는 거죠."(D8)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가해학생에게 전학조치가 내려져도 실제 전학수속이 끝날 때까지 학교에 계속 출석하는 가해학생과 학급도 분리되지 않은 채 지내는 경우도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전학조치와 함께 수속 기간 동안 출석정지나 등교를 하더라도 가해학생을 위클래스에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위클래스에서 별도로 마련된 프로그램이나 학습방법이 없는 채 우두커니 앉아있게 하는 경우도 있어 가해학생 보호자의 항의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전학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이행시까지 출석정지를 같이 내린 학교를 상대로 학습권 침해라며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옳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판례[125]도 있다.

>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를 받았는데 수속이 끝날 때까지 학급분리가 되지 않아 피해학생이 결석을 하거나 불안하게 지내하는 것을 염려해서 실제로 일선 자치위원회에서는 전학조치 외에 이행시까지 출석정지를 같이 내린다든지 공간을 분리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전학 갈 때까지 출석정지를 하라니까 학습권 침해라며 가해학생 보호자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학교 입장에 손을 들어줬어요.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필요에 따라서 출석정지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해 줬죠. 헌법재판까지 갔던 사건인데 법원에서도 그렇고 헌재에서도 피해자 편을 들어준 거예요. 큰 사건은 아니었는데 가해자 부모가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가신 거죠."(E10)

### 마. 피해학생 출석 인정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피해학생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더라도 출석인정을 해주는 방법을 활동하기도 하는데, 일부에서는 그 제도의 남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 "제 생각에는 출석 인정이 오히려 지금 너무 남용되고 있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건

125)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40, 14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유형이 매우 다양한 점,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조치는 피해학생의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피해학생의 상태, 학교폭력의 심각성 등에 따라 구체적·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점,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선도·교육을 통해 더 이상의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않다록 예방하고 학업을 마친 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학교폭력의 사안이 심각해 가해학생에게 전학·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피해학생과 격리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KOR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중에 2년 넘게 출석인정을 하고 졸업한 건도 있었어요. 기준이 없다보니 법에는 학교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기준제한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애를 학교에 안 보내는 거예요. 몇 달을.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D8)

### 바. 피해학생의 자발적 전학

피해학생이 자치위원회에서의 해결도 원치 않고 전학을 원하는 경우 가족 전체가 무리하게 이사를 하거나 불법 전입신고를 통해 전학수속을 밟지 않고 전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서 피해학생이나 그 가족이 2중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피해학생측에서 자치위원회도 열지 않고 전학이라도 해서 빨리 학교를 떠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을 '교육환경변화'라고 해서 현재 마련되어 있는 제도 안에서 학교장이 교육장이나 교육감에게 추천만하면 쉽게 전학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학교는 그것조차 보수적으로 절대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학생이나 학부모가 전입신고나 이사까지 해서 전학을 가야 해서 그런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사는 안하고 전입신고만 하고 전학을 하는 경우는 불법이 되어버려서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전학을 가고 싶다고 해도 불법 전입신고를 하거나 이사를 가게 되는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형제들도 있고 그럴 텐데… 피해학생인 아이를 둔 것도 속상한 일인데 그 아이 전학 때문에 온 가족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E10)

"피해학생이 학폭도 싫고 그냥 전학을 가겠다고 결심해도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전학을 가야할 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주소 이전이 되어야 합법적인 전학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전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피해학생 보호조치 중 전학권고 조항이 있었어요. 그 조항이 2012년 개정으로 삭제가 됐는데 그 이유가 학교가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가해학생 선도보다는 피해학생을 전학 보내고 사건을 무마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항이 삭제되었어도 피해학생이 원할 경우 전학요청이 가능합니다. 제16조제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근거로 교장선생님이 피해학생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거든요. 교장이 '교육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피해학생의 전학을 추천하면 이사하거나 불법 주소이전을 하지 않고도 전학갈 수 있는 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어요."(D8)

### 사. 따돌림 피해학생과 급식시간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 시선에 훨씬 민감해요. 따돌림 당하는 학생 증상 중 하나가 바로 급식을 먹지 않는 것이에요. 따돌림을 당하면 지금까지 같이 급식을 먹던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지 못하게 되고, 이미 학생들 사이에 무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에 다른 무리에 끼기도 어렵죠. 같이 먹자고 말하기엔 자존심도 당하고 혹시 같이 밥 먹자고 말 꺼냈다가 자기가 따돌림 당하는 것이 알려질 까봐 더더욱 말하지 못한다고 해요. 어른들은 '까짓것 혼자 먹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어린 학생들한테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굶는 걸 택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에게 얘기해서 도시락을 싸오기도 하는데 다들 급식실로 가는데 혼자서 교실에 남아 도시락을 먹는 것도 어려운 일인 거죠. 나중에는 결국 등교 거부라는 최후의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D8)

### 아. 장애학생의 경우

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의 징계조치를 판단하는 적용기준에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가 가중사유로서 적용되며(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제5호),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특수교육 및 장애인 전문 상담 또는 장애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제2항).

이런 가중사유는 피해학생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은폐나 축소의 우려를 낳기도 하며 실제 발생하기도 한다.

> "은폐까지는 아니었는데,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사안이었을 때 위원 중 한 분이 교장선생님을 굉장히 걱정하면서 그 피해학생한테 성추행했던 사실을 알고 있는 학부모위원들에게 엄청 입단속을 당부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피해사실 중에 성추행 부분은 심의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도 못했죠. 왜냐하면 장애가 있는 학생을 학교에 맡기는 엄마 입장에서는 학교에 그냥 빚진 듯이 다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다음에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를 잘 해주겠다고 하기만 하면 그냥 뜻을 굽힐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E7)

장애를 가진 학생이 특수학교에 분리되어 교육받지 않고 일반학교에서 비장애학생과 함께 생활하는 통합교육이 확대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 12월에 발표한 조사[126]에 따르면 통합교육을 하는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한 비율은 36.7%나 되었다고 한다. 2018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전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1.3%이었던 것과 단순 비교하더라도 발생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었다.[127]

126) 국가인권위원회(2014), 「2014년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통합교육 현장의 교육권 침해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127) 노윤호(2019),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의 모든 것」, 시공사, p. 166.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반대로 장애학생이 공격적인 성향이나 충동성 억제 부족 성향을 가진 경우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 되거나 의도치 않게 성추행 가해학생이 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친근감의 표현으로 하는 신체 접촉이 상대방에게는 원치 않는 접촉이 되는 경우, 사춘기에 접어든 장애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보이거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128]

"마냥 장애로 인한 특이행동이니 상대방 학생들이게 이해해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 된 장애학생 부모님들은 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사안조사 단계에서부터 특수교육 전문가가 참여를 요청하셔서 '장애로 인한 특이행동의 발현'이라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또 자치위원회 이후에도 재발방지를 위해서 공격적인 성향에 대한 심리치료나 의료적인 접근이라든지, 성에 호기심을 보일 때 회피하지 않고 곧바로 개입해서 지도해 준다든지, 성적 욕구에 대한 적절한 해소방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해 주셔야 해요. 이 부분이 교정되지 않고 반복되게 되면 안타깝지만 그 학생은 고립될 수밖에 없거든요."(E10)

"통합학급이라고 해도 장애 아이들 소원이 비장애 아이들과 친구가 되는 건데 성적인 놀이를 할 때만 친구를 시켜주거든요. 야동을 보고 자위행위를 하는데 그게 신기하니까 만만한 아이인 장애 아이한테 시키는 거죠. 그 아이는 친구들이 자길 보고 웃어주니까 그게 좋아서 시키는 대로 하면서 그게 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중학교에서도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것을 본 여학생 있거나 하면 더 크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에게 모두 교육이 필요해요. 그 학생이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면 누군가 바로 손 붙잡고 화장실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규칙을 정해서 그걸 모두 함께 기억하고 다 같이 지키는 거죠. 장애 아이들이 조숙해서 성적인 행동을 하는 건 아니고 발달은 같은데 일반 아이들은 그걸 공공장소에서는 제어를 하는 거죠. 그런 건 반복학습이 중요한 데 그 아이의 특성을 다들 이해해야 해요."(C8)

"장애학생의 특성을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포함시켜서 실시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다운증후군을 가진 학생이 여학생 가슴을 만졌다고 신고된 학폭사건에서 성사안이라면서 전학 조치가 나왔던 사건이 있었어요. 장애 3급이면 사실 경계성 장애인데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이 없으니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전학이라는 조치를 내려 결국은 학교에서 치워버리듯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폭탄돌리기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D10)

128) 노윤호(2019), 위의 책, p.17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자.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위탁교육시설 사례 : 해맑음센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다른 일반학교로의 전학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출석이 인정되고 학력평가는 본교에서 받으며 졸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위탁교육시설이 있다. 현재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가 운영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만을 위한 전국 단위의 기숙형 위탁교육시설이다.

> "해맑음센터는 2013년 7월에 설립되었고 (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기숙형 전담학교예요. 전국에 하나밖에 없고 전국17개 시도에서 학생들이 와야 하니 교통이 편리한 대전지역에 폐교를 찾아 설립됐어요. 예산은 교육부 특별교무금 지원을 받고 있어 불안정하며, 국가에 큰 문제라도 발생하게 되면 지급이 지연되는 실정이예요. '교육감은 이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보니 권고사항일 뿐 강제사항도 아니고 전국 피해학생이 대상인 학교라고 해서 모든 지자체가 자기 시·도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2013년부터 2년간 대전교육청, 3년간 충남교육청, 2018년에는 세종교육청 2019년 올 해는 충북교육청 산하로 떠돌고 있어요. '우리 관내 학생들만 있는 곳도 아닌데 왜 우리 교육청에서 일을 해야 해?'라고 생각하시는 가봐요. 예산을 내려주니까 관리업무를 하는 거고 나머지 일은 학교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17개 시·도 교육청에 매년 위탁교육시설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는 거예요. 몇몇 교육청은 지정시부터 폐지시까지로 공문을 내려 일을 좀 덜어주는데 서너군데 빼고 나머지 10여군데는 매년 90~100페이지짜리 위탁교육시설지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돼요. 그래야 학생들이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매년 되풀이되는 신청서 제출 업무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C3)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여러 전문기관들이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한 페이지에 표로 안내되어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되어 처리절차와 과정을 알아보고 배워가며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 피해학생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피해학생 관련 시설 및 이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 "학교폭력은 내 아이가 당하지 않을 때는 관심이 없다가 내 아이 문제가 되면 그 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예요.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한 페이지에 해맑음센터가 소개되어 있긴 하지만 학교에서 안내를 받았다는 학부모님들은 한 분도 안계셨어요. '피해학생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의무사항으로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출석일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곳으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피해학생이 등교를 거부하면서 자치위원회가 열리거나 열리지 않거나 관계없이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게임이나 하면서 지내다가 가족들과도 갈등의 최고조로 당한 상황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동안 체험학습 신청도 하고 여러 방법을 써보다가 늦게서야 알고 오신 부모님들이 '여기를 미리 알았더라면 출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걱정도 하지 않고 아이랑 실갱이도 안했을텐데…'라며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C3)

"어머님들이 위로상담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학교폭력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하루아침에 자기 혼자 세상 밖으로 내몰린 기분이었다면서, 믿을 것은 남편밖에 없고, 절차 안내를 해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고, 모든 절차를 자기가 다 알아봐서 대처해야 되고, 피해학생이 가야할 곳 아무도 안내해주지 않으니 본인들은 벽에 부딪힌 느낌인데 아무도 대신해서 움직여주지 않고 변호사 섭외부터 학교에서 진행되는 절차도 모두 어머님들이 알아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하셨어요."(C4)

학교폭력은 "저것도 학교폭력인가?" 라고 제3자에게 보여지는 일도 피해학생이 겪는 고통이나 후유증은 굉장히 크고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최근 학교폭력의 트렌드를 묻는 질문에 피해학생의 자해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2013년과 지금 특히 올해를 비교해보면 자해성향이 높은 학생들이 부쩍 늘었어요. 날카로운 것으로 팔과 허벅지를 그은 상처가 남아 있어요. 더운데 팔토시를 하고 다녀서 내려 보라고 하니 상처가 팔 전체에 다 있는 거예요. 가로세로로 상처를 내서 바둑판같은 흉터가 나 있는 애도 있어요. 자해를 하는 동안은 안 좋은 기분이나 생각에서 잠시라도 벗어나는 것 같아서 하지만 막상 하고 나면 후회가 된다고 해요. 해맑음센터에 오기 전에는 자해를 더 많이 했었는데 여기 와서는 횟수가 줄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아이들과 하루 종일 같이 지내면서 생활을 온전히 같이 하기 때문에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약 먹는 시간을 잘 지켜서 저녁 약, 자기 전에 먹는 약…, 제 시간에 먹지 않으면 급격히 감정에 변화가 생기면서 또 자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상담선생님) 약을 보관하고 있다가 시간에 맞춰 복용 지도를 해요. 한꺼번에 다 먹어버리면 안 되는 약도 있으니까요. 자해성향이 그 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스스로 제어하기는 힘든 상황인 아이도 있어요. 부모님도 알고 계시고요."(C5)

피해학생이 위탁교육시설에 속해 있더라도 학력인정을 위해서는 본교의 중간과 기말시험에 응시하여 성적처리를 받아야 한다. 학년별로 나뉘지도 않고, 본교의 과목대로 수업을 듣고 있지 못하는데 학교와 친구들이 두려워 가지 못하는 본교에 가서 꼴찌를 할 게 분명한 시험을 치르러 가는 방법 외에 교육적인 대안을 찾아주기를 제안하였다.

피해학생 위탁교육시설 외에도 청소년보호시설이나 소년원에 있는 학생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법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부분이어서 어렵겠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같은 의견이라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해맑음센터를 다녀도 중간시험이랑 기말시험을 보러 원래 다니던 학교에 가야해요. 여기는 3과목만 수업을 하고 그것도 학년 구분 없이 모두 함께 수업을 듣거든요.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진도를 따라가려면 인터넷강의 이런걸 들어야 하는데 쉽지 않아요. 시험 봐도 꼴찌할거라 창피한데 사실 학교에 가는 것도 무섭고 아이들이랑 마주칠까봐 걱정도 돼서 어느 때는 시험보다 말고 아프다고 하고선 집으로 돌아간 적도 있었어요."(A2)

"법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청소년보호센터든 소년원이든 원래 다니던 학교로 시험을 보러 가야돼요. 해맑음센터도 마찬가지죠. 성적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처리가 되도록 규정이 있어요. 리포트로 대체한다든지 그런 평가의 유연성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소년원에 있던 아이가 학교로 와서 시험을 볼 때 교도관도 있어야 하고 선생님도 감독관으로 배치되도록 공문으로 전달이 돼요."(E2)

위탁교육시설에서는 피해학생이 본교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하는데 여기에는 본교의 교사와 친구 그리고 보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담임교사와 SNS를 통해서라도 자주 연락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복귀하는 시기가 빨라지고 적응도 성공적이며, 교사와 학생 사이 연결을 위해 노력하는 보호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한다.

"학가협이나 해맑음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였어요. 정확한 기준은 해맑음에 물어봐야겠지만, 그래도 60~70프로는 되는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복귀율이 좀 달라요. 아이가 돌아가면 보통 새학년, 새학기를 맞춰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본교 선생님들이 힘들더라도 정기적으로 상담도 해주시고 배려심이나 이해심이 있는 아이들을 몇 명 붙여줘서 도우미 역할을 하게 하면 아이들이 확실히 잘 적응을 해요. 그동안 또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느끼는 부담감도 낮춰주고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신대요. '지난번보다 괜찮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실수들을 하신대요. 무심코. 그리고 해맑음 다녀왔으니까 다 끝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기 다녀왔는데 왜 또 그래?' 이렇게 실수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것만 잘 넘어가면 아이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어요."(C2)

"학생도 담임 선생님과 적극적으로 연락을 했어야 하지만 여기 있던 아이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보러 본교로 가야할 때 담임 선생님께 시험범위를 좀 여쭤보라고 권해도 아이들이 선생님과 연락하는 것을 주저해요. 시험범위도 모르고 워낙 공부도 안했었다면서 신경 쓰지 않는 아이들도 있지만, 부모님들이라도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서 역할을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한부모 가정이나 생업이 바쁜 부모님들도 계셔서 그런 역할을 해주기 어려운 경우도 있죠. 아버지는 직장일로 바쁘시고 외국 출장이 많으셔서 학생은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학생처럼 그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런 역할을 해주시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C4)

특히 위탁 학생의 본교 선생님이 위탁교육시설을 방문하여 학생과 상담을 하는 경우 굉장히 효과가 좋고 본교에 돌아갔을 때 몇 명의 또래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교사가 돕는 경우 정착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한다.

위탁교육시설을 방문하여 학생 상담을 실시하는 교사에게 승진 가산점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학교로 돌아갔을 때 몇 명의 또래 아이들이 이 친구와 잘 지낼 수 있도록 초기 정착을 도와주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경상북도 영주에서 한 학생이 해맑음센터로 왔었는데 '위탁교 방문의 날' 같이 행사를 하는 날도 아니었는데 담임 선생님과 상담 선생님이 함께 그 학생을 찾아와주신 거예요. 경기도교육청에는 '위탁교육시설 방문의 날'이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까지 본교 선생님 방문은 이게 전부예요. 군대에서도 누군가 면회를 오지 않으면 관심사병으로 분류하는데 부모님도 오시지만 선생님이 와주시면 아이들한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교사들 진급할 때 필요하다는 가산점을 학교폭력 피해학생들 위탁교육시설 방문하셔서 학생 상담해주시는 선생님들께 드린다면 제도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C3)

### 차.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비용의 부담 및 지원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6항에서는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데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공제회에서 피해자에게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하고 구상권 행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상비율이 40%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잖아도 어느 국회의원이 구상권 행사에 대해 질의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 줄 정도일 만큼 가정형편이 좋지 않거나 심지어 가해학생 부모와 연락이 안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또 다른 경우는 아예 줄 생각도 없어 신경도 쓰지 않거나 '끝까지 소송을 해서라도 못주겠다. 가해학생이 오히려 억울하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때 회수를 못한 금액이 몇 천 만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걸 받으려고 소송을 하는게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끝까지 열심히 하기도 힘들죠. 50만 원 받겠다고 200만 원 들여 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요."(D2)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카. 따돌림

학교폭력이 과거의 '신체적 폭력'에서 '관계적 폭력'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따돌림'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제1~2호).

가해자는 여럿이고 피해자는 한명이라 피해 입증도 어렵고 해결도 어렵지만 초·중·고를 망라하고 남녀를 불문하는 학교폭력이 따돌림이다.

한참 교우관계에 예민하고 친구가 중요한 나이에 가해 학생들은 피해학생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교묘하게 따돌리며 괴롭힌다. 피해자는 자해나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힘들어하지만 겉에서 보기엔 잘 드러나지 않는 폭력이다.

심지어 가해학생들 중에는 피해학생에게 '피해자다움'을 내세우며 항변하는 상황도 나타난다고 한다.

> "따돌림을 해요. 여학생들이 피해자 일기라든지 아이들의 뉘앙스라든지로 피해학생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신고해서 자치위원회가 열린다는 소문이 나면 돌아가면서 피해학생한테 말을 한번씩 걸어줘요. 계속 따돌리다가 한번 아는 척 해주고 또 따돌리다가 한번 말 걸어주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안 받으려고 애들이 꼼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 눈에도 애들이 피해학생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다 보이는데 달리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해학생들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피해학생이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나는 놀기 싫어서', '우리가 얘랑 안 친했을 뿐인데 왜?' 라고 해요. 때로는 성폭력 사건에서의 '피해자다움' 논리처럼 따돌림 사안에서도 '피해자다움'을 얘기하면서 '너도 나 밀쳤잖아', '너도 내가 친구랑 뭐 하려고 하는데 방해했잖아'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기도 해서 애들 사이에서도 어른들 사회의 축소판이 그대로 보여 지는 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고 있어요. 이번 개정 사유가 학교업무경감과 교육적 해결이라면서 다르게 접근하면 이런 사안들도 교육적으로 지도가 가능하다고 하니 지켜보려고 해요."(D6)

따돌림은 여러명의 가해자 안에 주동자가 있어서 다음엔 누구를 어떻게 따돌릴지를 설계하고 지시하는데 그 무리 중에서도 번갈아가며 따돌림을 겪기도 하지만 다음에 자기 차례가 되어 지금 피해학생처럼 따돌림 받을 것이 두려워 주동자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가해자 무리를 형성하기도 한다.

가해학생이 여럿이다 보니 미리 서로 말을 맞추어 놓으면 피해학생이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이 되어 이중의 피해를 겪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따돌림을 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동안 가장 힘든 것이 급식시간이고, 무리지어 다니던 아이들과 같이 점심식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급식을 거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따돌림 사건 중에는 집단이 가해자가 되는데 신고가 들어와도 공부 잘하고 빽있는 애들은 빠지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애들만 뒤집어썼다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럿이 같이 했는데 나만 6호 받고 나머지 애들은 3호 받았는데 정작 주동자는 빠졌다면서요."(B4)

"학교폭력도 젠더처럼 권력관계를 잘 파악해야 하는데 학교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C8)

"여학생들 사이에 따돌림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학생이 너무 힘들다면서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했대요. 선생님은 가해학생 여럿과 피해학생을 모두 한 방에 모아 두고 서로 대화로 잘 해결하라고 하시며 나가셨는데 그 자리에서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네가 고자질 한 거냐?'며 2차가해가 일어나 일이 커진 거죠. 선생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도 해결이 안 되고 역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가해학생 수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쏠려서 오히려 피해학생에게 '네가 사과하는게 맞겠다' 하는 분도 계셨어요."(E10)

"잘 지내던 친구들한테 갑자기 따돌림을 당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점심식사 시간이었대요. 특히 여학생들은 초반에 무리가 정해지는데 그 무리에서 빠지게 되면 다른 곳에 끼어들어가기 어렵거든요. 우리 아이가 어느 그룹이랑 친하게 지냈는지 반의 다른 친구들이 다 알고 있는데 급식실에서 따로 앉아 먹는 걸 보게 되면, 다들 알게 되는 거죠. 쟤 요즘 왕따구나 이렇게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자기가 왕따 당한다는 게 소문이 나면 그 다음엔 완전히 고립되기 때문에 아예 급식실에 가지 않고 점심을 굶었다고 하는 얘기를 한참 지나서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저한테 말을 안 해서 몰랐었거든요. 그 후로는 도시락을 싸서 보내기도 했는데 다들 급식실로 내려가고 혼자 교실에 남아 도시락 먹는 것도 어려워하더라고요. 교실에 또 다른 왕따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왕따는 왕따를 싫어해서 절대 어울리지 않는 거라면서요."(A5)

"사이가 괜찮을 때는 욕이나 신체적 접촉이 장난이나 놀이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관계가 소원해지면 욕이나 가벼운 신체 접촉, 눈초리도 다 상처가 돼요. 물타기가 진행되는 관계에서 가해와 피해에 대한 책임행위가 서로에게 있는 거지만 그 중에서도 멘탈이 약한 아이들은 더 빨리 무너지고 피해를 크게 입는 거죠. 이번엔 제 아이가 가해자로 신고됐지만 제 아이가 피해자일 때 지금 신고한 애도 함께 괴롭혔었거든요. 아이가 '학폭으로 신고하면 학교를 그만 두겠다'고 해서 맞신고는 못했는데 어느 날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이가 엉엉 우는 거예요. 자기도 저렇게 청소도구함에 점심시간 내내 갇혀있었던 적이 있었다면서요. 따돌리기만 하는 줄 알았지 사물함에 손소독제 뿌려 책이랑 체육복 다 젖게 하고 청소도구함에까지 가둬놓았던 건 저한테 말을 안해서 몰랐었거든요."(A5)

"제가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학교에서 간사였던 학생지도부장이 피해학생한테 선입견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있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8명이 1명을 따돌린 사건이었는데 가해학생들이 전교 1,2등으로 공부도 잘하고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이었어요. 가해학생들끼리는 이미 말을 맞춘 상태였고, 번갈아 가면서 한명씩 따돌리는 '물타기'를 하는 상태였어요. 제가 '가해자에 대한 선도조치는 없더라도 특별교육 이수는 하도록 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가해학생한테 선도조치 없이 특별교육 이수를 명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하려면 절차를 알아봐야 한다'면서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학부모위원들도 학교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 '가해학생 8명한테 학교가 공격을 받는 것보다 피해학생 1명을 상대하는 게 낫다'는 발언도 공공연하게 하시면서요. 오전 9시부터 시작했던 회의가 점심도 거른 채 오후 3시가 다 되도록 계속됐는데 저는 3시에 강의 잡힌게 있어서 조금 먼저 나왔거든요. 나중에 회의 결과를 받아보니 가해학생들은 '조치 없음'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없이 종결 됐더라고요. 나중에 피해학생은 이사까지 하면서 전학을 갔는데 원통하고 분한 마음이 가득한데다 자존감 회복이 안 되니 결국 학교를 자퇴하고 말았어요. 유사한 다른 따돌림 사건에서는 학교의 대처가 정말 훌륭해서 피해학생이 원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피해학생의 자존감이 너무 떨어진 상태여서 아이가 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았던 사건도 있었어요.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달라서 갈등이 깊어졌던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D10)

### 타.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제1~3호).사이버 따돌림과 같은 사이버 폭력은 학교폭력 사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라고 한다.

"사이버 폭력은 주로 특정 학생한테 모욕적인 발언이나 욕설을 단톡방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사생활이나 허위사실을 SNS, 카카오톡 같은 수단으로 여러명에게 퍼뜨리는 행동,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조롱 글,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을 유포하는 형태의 폭력이예요. 피해학생한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나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도 사이버 폭력에 해당돼요.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이유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학교폭력은 교실이나 학교를 벗어나 집으로 돌아오면 피할 수 있지만 사이버 폭력은 벗어날 방법이 없거든요. 같은 학교 학생들은 몰론 얼굴도 모르는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공격에 가담하기도 해요."(E10)

사이버 따돌림을 포함한 사이버 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증거로 활용하는 것 중 하나가 카카오톡 대화,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 채팅방 캡처 화면이라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고 한다. 사안조사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분명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었음에도 카톡 대화방을 나와 버리거나, 탈퇴해서 보관하고 있지 않을 때라고 한다.

사이버 폭력이 이루어지 것을 보며 대책 없이 홧김에 앱을 지우거나 단체대화방에서 빠져 나오지 말고 필요한 내용을 모두 캡쳐한 후 방을 나오거나 해당 채팅방을 보지 않으면서 계속 그 방에 남아있는 것이 증거 수집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129]

### (5) 학교폭력 가해학생

#### 가. 가해학생 선도조치 효과성 제고 요소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전에는 학교폭력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는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과 목격학생을 대상으로 사안조사를 한 뒤 서류를 작성하고 위원들을 소집하여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다.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선도조치를 내리고 생기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선도조치는 징계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어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스스로 다짐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가해학생이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안조사단계부터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조치에 이르기까지 계속 문제가 되는 학습권의 보장이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는 없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폭력성의 치료와 학습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학교폭력사건 처리의 완성이라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다시 교실에서 만나 함께 생활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가) 가해학생의 폭력성 치료

"'청소년 범죄의 70%는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심리조사 결과 선천적으로 의지력이나 자제력이 약한 학생들도 더러 나타나지만, 절반 이상은 부모의 이혼이나 아버지의 폭력 등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어릴 때부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자라왔고, 그 상처를 제 때 치료하지 못해 '시한폭탄'처럼 변한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그들에 대한 심리검사(PAI)와 심도 깊은 면담을 통해 성격과 성장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폭력원인을 찾아 치료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나서서 도와주어야 해요."(C1)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면 초기단계에 가해학생의 근본적인 원인분석이 이루어져야 해요. 학

129) https://blog.naver.com/aprillaw/221281725448(검색일 2019. 12. 2).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교폭력으로 입건 된 학생들을 보면 단독범행은 거의 없어요. 열에 아홉은 또래끼리 몰려다니며 폭력을 행사한 경우이거든요. 청소년들의 이런 '집단심리'가 우려되는 건 혼자서는 폭력을 자제하다가도 여럿이 모이기만 하면 그 자제력이 쉽게 무너진다는 거죠. 가해 학생들을 상담해보면 특히 우유부단하거나 의지력이 약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옆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컨트롤 해줄 수 있는 방편이 꼭 필요해요"(C1)

#### 나) 가해학생의 학습권 보호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를 받았는데 수속이 끝날 때까지 학급분리가 되지 않아 피해학생이 결석을 하거나 불안하게 지내하는 것을 염려해서 실제로 일선 자치위원회에서는 전학조치 외에 이행시까지 출석정지를 같이 내린다든지 공간을 분리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전학 갈 때까지 출석정지를 하라니까 학습권 침해라며 가해학생 보호자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학교 입장에 손을 들어줬어요.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필요에 따라서 출석정지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해줬죠. 헌법재판까지 갔던 사건인데 법원에서도 그렇고 헌재에서도 피해자 편을 들어준 거예요. 큰 사건은 아니었는데 가해자 부모가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가신 거죠."(E10)

"전학을 갈 때까지 가·피해 학생을 분리시키려면 위클래스를 활용하면 좋은데 역량이 부족하긴 하죠. 그래도 실무에서는 가해학생을 위클래스로 보낸대요. 그런데 하루 종일 아무 것도 안하고 우두커니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은 또 그런 상황을 가지고 문제 삼으시죠."(E10)

### 나. 선도조치의 실효성

#### 가)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5호 조치는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가해학생의 폭력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치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려지는 조치이다.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내려지며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특별교육은 Wee센터, Wee클래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만 이수가 가능하다.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느라 결석하게 되는 경우 학교장의 판단으로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학생의 심리치료와 달리 가해학생의 폭력성을 위한 심리치료는 가해학생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래서인지 5호 조치로 특별교육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가해학생도 자신의 폭력성을 유발시키는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싶은데 가해학생에게는 그런 조치나 가해자를 위한 해맑음 센터는 없어요. 가해학생이면서 다른 측면에서 피해자인 학생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져야 근본적인 재발방지가 되는건데… 가해학생에게는 무료로 자신의 폭력성을 치료할 곳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위센터로는 턱없이 부족한데 가해학생에게는 국가에서 돈을 안 쓰려고 해요. 폭력성이 재발되는 어느 지점에 대한 치료가 없으니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 또 때리게 되고, 어차피 그러고 나면 학교에서 수업 안 듣고 사회봉사 4일 갔다 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피해자 보호도 필요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응보적인 조치가 많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는 부족하죠."(E1)

"5호 조치에 특별심리치료가 있으면 가해학생이 심리치료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자비 부담이고 지원금은 없죠. 가해학생도 폭력성향의 원인을 알아내서 그 치료를 해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과 예산이 가해학생을 징계하고 분리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폭력성을 치료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어야 상급학교에도 진학하고, 기본 학력을 갖추고 사회에 나가야 더 큰 가해자가 되지 않거든요."(C9)

### 나)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1호 서면사과와 9호 퇴학 외에 2호부터 8호까지의 조치가 내려지면 의무적으로 부수적 성격의 특별교육이 가해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부과된다(법 제17조제3항, 제9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없어요. 학교위에서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이수하라고 하지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특별교육 이수를 하려는 맘이 있어도 근무시간에 나올 수도 없으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치위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드러울 수가 없죠."(E1)

"가해학생 보호자들이 직장 출근이나 생업을 이유로 주말을 이용한 특별교육이나 상담 시간을 문의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현재 저희 센터는 주말 프로그램으르 운영하지는 않지만 주말에도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는 센터가 있기는 해요."(C6)

"상담은 자발성이 성공 여부의 90%를 좌우하거든요. 그런데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들은 벌 받으러 왔다고 생각하면서 Wee센터를 방문하는 거죠. '마음 열기'가 중요한데 고민을 털어놓기는커녕 마음을 꽉 닫고 앉아 교육에 임하다보니 교육 성과로서의 발전이나 성장이 어려워지는 거죠. 찌푸린 얼굴로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시간이나 때우다 가야지"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호자 특별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가정생활과 자녀양육에 교육을 받으며 느낀 점을 적용해보는 부모는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C7)

"월 1회 가해학생 학부모 대상 특별교육시간을 결정해서 공지하면 학교에서 대상자한테 일정을 안내하고, 가해학생 보호자가 센터로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해요. 특별교육 신청할 때부터 벌써 화가 나셔서 기분 나쁜 목소리로 불쾌하게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학교폭력사건의 내용이나 선도 조치 관련해서는 저희는 아무런 통지도 받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시간을 챙기셔야 하는데 간혹 몇 시간 받으셔야 하는지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오기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싫으셨는데 막상 듣다보니 도움 된다면서 실제 조치된 시간보다 더 오래 듣고 가시는 분들은 다행인데 간혹 시간을 부족하게 듣고 가셨다가 다시 채우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센터는 월 1회 5시간을 오후 시간대에 실시하는데 만일 10시간 이수하셔야 하는 분들은 센터 두 곳을 방문해서 채우셔야 하는 거죠."(C7)

"상담이랑 교육은 전혀 다른 분야이거든요. 상담 전공자들로 구성된 Wee센터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학교폭력 사건 내용의 경중을 등급별로 구분해서 하드코어의 경우 상담과 교육을 분리하여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 중, 하 이렇게 등급을 구분해서 상급은 상담과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하급은 부모교육을 실시하든지 하는 거죠. 상담은 자발성이 중요하기도 하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보호자와 자녀의 문제를 보호자 본인과 자녀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거니까 '부모특별교육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C6)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을 제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가해학생 어머니도 억울한 부분은 모두 다 가지고 계셔요. 너무 신기하게도. 강의하다 보면 '교육청 문제 있다, 자치위원회도 문제가 있다'며 집단 성토대회가 열리는 상황이 연출될 정도로 가해학생 학부모 입장은 정말 또 다르더라고요. 그게 극명해요."(D6)

### 다) 가해학생의 전학 : '폭탄 돌리기'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전학'은 이미 교사들 사이에서 '폭탄 돌리기'라고 불려요. 왜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뇌관이 제거되지 않은 폭탄을 옆 사람한테 떠넘긴다고 해서 폭탄이 터지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안고 있는 심리적 환경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강제전학을 시키는 것은 폭탄 뇌관을 제거하지 않고 옆 사람에게 폭탄을 떠 넘기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예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맞아요. 그런데 가해학생을 강제전학 시켰을 때 그 아이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나 사회에 대한 불만은 더 커지지 않겠어요? 결국은 그 불만과 분노를 그 다음 상대에게 쏟아내겠죠."(C1)

### 라) 학교 수가 많지 않은 지역의 강제전학

"지방 같은 경우 관내에 학교가 몇 개 없는데 가해학생을 강제전학 시켰는데 새로 간 학교에서 또 사고를 쳐서 돌고 돌아서 다시 그 학교로 돌아온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가 몇 개 없다보니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또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C2)

"중학생이 초등학교 여학생의 주요 부위를 만졌다며 성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이었는데 피해학생 학부모는 가해학생의 전학조치를 원했어요. 그런데 중학교가 그 지역에 하나밖에 없어서 전학시킬 수도 없었어요. 그 후로도 피해학생이 길거리에서 가해학생과 자주 마주치는데 불안하니 조치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하는데 작은 동네에서 피해학생이 다니는 슈퍼, 교회, 도로 쪽으로 다니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E2)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다. 형사처벌의 두려움

#### 가) 자치위원회와 형사고소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학교폭력으로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선도조치를 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피해학생 보호자가 형사고소를 하거나 성사안 같은 경우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에 신고를 하면서 형사고소까지 함께 하는 수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한다.

"요즘엔 사건을 맡아보면 자치위원회와 형사고소가 거의 세트예요. 자치위원회로 가는 경우 대부분 관련학생 사이에 화해되지 않아 가게 되는 거잖아요. 서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고, 자치위원회 결과가 나왔는데 맘에 들지 않으면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자치위원회와 형사고소가 거의 세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바에 경찰에서 하지 학교에서 왜하냐?'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죠. 사실 학교에서 하자는 것은 교육적으로 하자는 건데. 또 가해학생 입장에서도 똑같은 것을 학교에서도 정말 징그럽게 했더니 또 경찰에서도 나오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죽을죄를 졌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D8)

#### 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형사고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법적 안정성 침해 문제

"일반 사건과 다르게 학교폭력 사건은 공소시효 개념이 없어요.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이것이 굉장히 불안할 수 있는데 관련 판례도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는 중학교 때 있던 사건을 고등학교에서 징계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례와, 고등학생이었는데 입학하기 전 예비소집일인 2월에 애를 때렸는데 입학하고 나서 징계를 했죠. 입학 전 행위를 가지고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가 있어요. 물론 둘 다 하급심인데, 교육부 지침으로는 '학생신분이기만 하면 그 전 학교에서 있었던 사건도 다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안내하고 있죠."(D8)

"학교폭력으로 다룰 수 있는 시간적인 한계선을 그을 필요는 있는데 국민 대부분의 법 감정이 가해학생이라고 하면 무조건 '지옥까지도 쫓아가서 징계를 해라'라는 입장이거든요. 어쨌든 공소시효라는 게 가해자를 유리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화성 연쇄살인사건도 '공소시효라는 것이 왜 있냐?' 라며 불만들이 많은데 '학폭에 공소시효를 도입하자' 그런 말은 꺼내지도 못하죠."(D8)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다) 통고제도

최근 들어 학교폭력 사건이 심각해지자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분쟁조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상 학교장 통고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가해학생들에게서 학교폭력의 징후가 발견되면 조기에 법원에서 관여하여 경찰, 검찰 수사단계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고 간편하게 사건을 해결하면서도 범죄경력조회나 수사 자료가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하고 선진적인 제도가 통고제도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법원을 중심으로 통고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홍보하고 있다.[130]

> "학교폭력 처분이 현재 1호~9호까지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되었으면 하는 게 바로 '통고'제도예요. 중하다고 판단되는 가해학생한테 8호 강제전학, 9호 퇴학 처분하기 전에 선도기회를 한번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게 통고 제도라고 봐요. 통고는 현재 보호관찰소의 장이나 학교장 등이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원에 선도교육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할 수 제도인데 실제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는 1% 채 되지 않아요. 통고는 수사기관을 거치지도 않고 법원에 직접 위탁판결을 맡기는 거라 전과도 남지 않고 사법처분의 효과를 받으면서 선도교육의 기회도 줄 수 있는 제도예요. 사실 학교에서는 이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 법무부에서 안내문도 내고 하는데 '교장이 학생을 법원에 고발한다'는 비난이 두려워 부담을 느껴서인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고 봐야죠.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1호~10호로 늘리면서, 7호쯤에 통고처분을 집어넣어서 반드시 할 수 있게 제도화 하는 것이 가해학생의 재비행 방지에 도움이 되고 1호~10호로 늘리되, 7호쯤에 통고처분을 집어넣어서 반드시 할 수 있게 제도화 하는 것이 재비행 방지에 도움도 되고 길게 봐서는 가해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C1)

> "현재도 학교장 통고제도라고 해서 학교장이 재량으로 법원에 요청해서 선도교육 조치를 취해달라고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사실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건 아니지만 학부모가 난리를 칠 수도 있고 잘 모르면 교장이 학생을 법원에 신고했다고 오해를 받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니까요."(E10)

그러나 소년심판규칙에는 통고의 방식만 있고 학교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이 없어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서 아주 작은 사안도 각종 위원회를 거쳐서 회의록을 남기라고 하면서 통고와 같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상세한 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30) 김용수(2019)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소년법과 통고제도", 「현재의 소년법과 통고제도가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가?」 자료집, 참교육연구소·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따돌림사회연구모임, 2019.9.20., 12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문제라고 지적한다. 통고제도를 활성화하려면 학교폭력예방법이나 각종 학교 관련 규정에 통고제도 활용에 대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131]

### 라. 신고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방어하도록 하는 문제 : 통지의무 위반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이 신고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가해학생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통지의무 위반이라고 한다.

> "통지의무 위반은 처분사유를 알려주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학교가 대개 잘 모르는 것이 피해학생이 신고한 내용을 가해학생에게 알려주는 것을 비밀누설이라고 생각해요. 비밀누설죄로 교사들이 처벌받고 하는 경우는 제3자에 대한 비밀누설을 얘기하는 거고, 가해학생에게는 자신이 무슨 사유로 신고가 되었는지는 알려주고 그것에 대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죠. 신고 내용을 모르면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방어를 할 수 없게 되니까요."(D8)

> "모든 학교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가해학생을 조사하면서 신고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그 동안에 있었던 일을 생각나는 대로 모두 써라'고 하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경우도 있고 피해학생은 아무 말도 안한 사건을 가해학생 본인이 잘못한 것 같아 적었다는데 그건으로 자치위원회를 또 열더라고요. 신고된 내용에 대해 제대로 해명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E10)

### 마. 사안조사, 자치위원회에 변호인 동석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조사를 할 때 부모나 변호인을 동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자치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참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한다. 교육적 절차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보호자나 변호인의 입회가 불필요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변호인이 같이 참석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거나 주장하는 논점을 명확하게 전달해주어 사안 판단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 "사안처리 가이드북이나 사례집에 가해학생을 조사할 때 부모나 변호인 동석을 요청하거나 동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에 대해 '안된다'가 아니라 '할 의무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국가인권위원회에 많이 제기되는 문제인데 '미성년인 아이를 나한테 통지도 없이 보호자를 동석하지 않고 따로 조사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 경우

131) 정수희(2019) "현재의 소년법과 통고제도가 학교폭력 해결에 이바지하는가?", 「현재의 소년법과 통고제도가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가?」 자료집, 참교육연구소·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따돌림사회연구모임, 2019.9.20., 27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것이 형사절차라면 위법하죠. 그런데 교육적 절차로 보기 때문에 허용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아이가 쓴 것이 어느 종류의 소송에 언제까지 이용될지 모르는 서면이고 사안조사 초기에 인정하는 것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지만요. 이것이야 말로 자치위원회 제도의 애매모호하고 이중적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학교는 교육적 절차이므로 보호자 동의 없이 교사의 권한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진짜 민·형사에서 엄청난 효과로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처음부터 딱 보호자 동의하에 작성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그것이 학교에서 할 일이 아니죠."(D8)

"요즘은 약간 분위기가 바뀐 게, 옛날에는 자치위원회 절차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을 학교에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트집 잡고 그러니까요. 요새는 오히려 변호사 선임해서 오라는 학교도 있었어요. 학부모는 오만가지 얘기를 다 하는데 아무래도 변호사는 정리해서 걸러 가지고 쟁점을 명확하게 해주니까요."(D8)

"자치위원회에 실제로 들어가 보면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9명이 어떤 사안을 심의하는 데 어느 학생이 들어와서 어눌하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자기 항변을 충분히 못하는구나 이렇게 되는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주변인들의 진술까지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 가려지게 돼요. 보통 가리기 어려운 것은 왕따처럼 뭔가 딱히 증거가 없는 것들이고, 아이가 분명히 맞아서 어디가 부러지거나 피가 나고 주변에서 목격한 애들이 있는 학폭사안들은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명확하니까 변호사 대동하고 들어와 봐야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에서는 정말 위원들이 가·피해학생들 얘기 다 들어보고 심사숙고를 해요. 다른 어느 재판에서 그렇게 모든 의견을 다 들어주겠나 싶을 정도로요."(D5)

"여기는 아이를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가해학생도 반성하고 학교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적 차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라서 아이 자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지 변호사가 쓴 '어떤 아이의 행위가 형법상 뭐가 되니까 이 아이는 이렇게 되어야 하고' 등등 법률전문가의 가공된 의견을 듣자는게 아니예요. 그것 보다는 아이들이 직접 하는 얘기를 듣고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에 변호사의 동석을 제한하는 것이었던 것이지 일괄적으로 제한하거나 광범위하게 허용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D6)

### (6) 자치위원회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

#### 가. 재심

피해학생 측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가 미흡하다고 여겨질 경우 이전 법에서는 피해학생측은 바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재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은 재심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비로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전학 또는 퇴학처분에 한해서 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심과 별도로 또는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처분에 대해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다.

즉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처분의 이의제도가 상이함으로 인해 여러 혼란이 있었고, 심지어 같은 사안임에도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나 개정법에서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심제도는 폐지되었다.

### 가) 재심기구 이원화 및 재심사유의 제한

피해학생은 피·가해학생이 받은 모든 조치에 대해 시·도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학생은 전학(8호) 또는 퇴학(9호) 조치에 대해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재심을 담당하는 기구가 이원화 되어 있다.

재심기관이 이원화 되어 있어 관련 학생 간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모두 재심을 청구할 경우 모순된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가해학생은 전학 또는 퇴학 조치에 대해서만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재심 대상이 되지 않는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 "솔직히 말씀드리면 00시 재심위원회를 우스갯소리로 부모님들 사이에서 '5분 재심'이라고 한대요. 부모님은 애써 자료 준비해서 서면제출하고 그거를 좀 봐달라고 하는 건데 한건 당 5분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련 학생이 제출한 자료랑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까지 총 3건의 자료를 5분 안에 본다고 하면 그걸로 어떻게 판단을 하냐는 거죠. 사전에 재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재심 올리기 일주일 전에 심의자료 제본해서 위원들께 보낸다고 하는데 한 달에 1회 개최되어 하루만에 30건 정도 처리되는 자료들을 어떻게 다 읽어 보고 판단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고 해요. 그래도 어느 지역은 자치위원회처럼 관련학생 참석시켜 들어본다고 해요. 근데 유독 사건이 많은 00지역은 서면원칙이라면서 출석도 못하게 하고, 출석 요청 신청서도 내봤는데 위원들의 의결에 의해서 거부됐어요. 위원들이 판단해서 출석이 필요하다고 하는 소수의 건은 관련학생 참석하도록 해서 심의한다고 하더라고요. 겨우 몇 건. 제가 맡았던 사건도 몇 건 구술심리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어요. 그것도 문자로 통보가 와요."(E1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나) 가해학생 '조치 없음' 결정에 대한 피해학생의 재심신청 가능

학교폭력예방법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조치들을 규정하면서 '조치 없음'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조치 없음' 결정을 내린 경우, 피해학생이 이에 불복해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조치 없음' 결정에 대해서도 피해학생은 지역위원회에 재심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한다.

> "법제처에서는 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취지가 피해학생을 보호하려는 것인데 만약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없음' 결정에 대해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서면사과' 보다도 가벼운 '조치 없음'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된다면서 '조치 없음' 결정에 대해서도 피해학생은 지역위원회에 재심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어요."(D8)

### 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심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었다.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의 경우 사립학교는 행정청이 아니므로 교장이 내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행정청의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즉 사립고등학교 교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었다.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청구서, 보충서면, 답변서, 반박서면 등의 서면 공방이 이어지고 이후 심리기일이 지정돼요.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대체로 서면심리를 주로 해요.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할 수 있어요. 구술심리를 원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대체로 불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학교폭력관련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구술심리신청에 대해 대부분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하게 되죠. 사안 조사할 때 서로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못했던 정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황이라든지 현재 겪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어려움 또는 학교폭력 이후의 상황들을 직접 위원들 앞에서 설명함으로써 공감을 얻고 정황을 이해시키는 경우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구술심리신청이 허가되면 심리기일에 출석해서 직접 행심위에서 사안과 관련된 사항들을 소명하게 되고, 이 때 반드시 출석통지서를 지참하도록 되어 있어요. 출석 전에 서면공방에서 주장에 미흡한 점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는 사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였는지, 위원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점이 무엇이었는지 정리를 해서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죠."(D9)

### 가) 행정소송보다 행정심판 시간이 더 걸림

"사실 행정심판의 장점 중 하나가 빨리 진행 되는 거였어요. 행정심판은 2-3개월이면 되는데 법원은 최소 6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경기도 서울은 행정심판이 소송을 추월해 버렸어요. 법원보다 시간이 더 많이 더 걸려요. 그리고 법원은 기일 열리는 게 예측이 돼요. 그걸 알면서도 행정심판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00펜션에서 00고학생들 가스누출로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6개월이 더 지연됐어요. 왜 아직 안 열리냐고 문의를 하면 이 사고가 나서 인력이 모두 그 쪽으로 가서 일을 하느라 그렇다고 해요. 교육청은 정말 인력도 부족하고 외부 일이 개입이 되면 그 일이 먼저 처리되어야 하니까 더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E10)

### 나) 판단 근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하지 않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학교에서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료를 공개해요. 법원에서도 자료를 공개하게 끔 해요. 공개 안하면 불리하게 판결을 내리니까요. 그런데 행정심판은 학교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강제하지도 않고 달라고도 안하더라고요.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자료를 볼 수가 없으니까요. 저희가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는 다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심판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이상한 건 별다른 답변도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써놔요. 그래서 행정심판하면서 '이건 이기겠구나. 학교도 별다른 반박을 안 하네' 했는데 그냥 지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면서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행정심판을 불신하게 됐죠."(E10)

### 다) 행정심판 신청시 선도조치 집행정지 병행 신청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는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병과할 수 있고,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보호자도 별도의 특별교육기간을 정해서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해요. 이런 선도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은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는데, 행정심판이 보통 60일 정도가 소요되고 사안이 복잡하면 더 오래 걸리기도 하거든요.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선도 조치가 집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건데 행정심판에서 이의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실익이 없게 되잖아요. 선도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동시에 선도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병행해서 신청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최종적인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행정심판 재결 전까지 선도 조치 집행을 유보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행정지 결정 후 피해학생에 대한 2차 피해나 피해학생 보호에 문제가 생긴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집행정지결정이 취소될 수는 있어요."(D9)

### 라) 사립학교 재학생의 행정심판

전에는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행 법령이나 판례에 의하면 사립학교 재학생과 학교와의 관계는 사법관계에 해당하여 사립학교는 행정청으로 볼 수 없어 사립학교 재학생은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사립학교 재학생은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학교법인을 상대로 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어떤 재판부는 '사립학교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이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시킨 경우도 있었고, 어느 법원은 '초·중등교육법상 사립학교에 징계권한을 위임한 것이므로 행정기관의 위임을 받은 행정관계이다'라며 행정법원으로 이송시켜 행정법원에서 다루도록 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사립학교 재학생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한다는 문제는 하급심에서 나뉘는데, 어떤 재판부는 '사립학교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이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시킨 경우도 있었고, 어느 법원은 '초·중등교육법상 사립학교에 징계권한을 위임한 것이므로 행정기관의 위임을 받은 행정관계이다'라며 행정법원으로 이송시켜 행정법원에서 다루도록 한 경우도 있었어요. 대법원까지 간 경우는 없고 고등법원에서 정리를 한 판례[132]가 있는데, 여전히 어떤 분은 민사소송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행정소송으로 진행한 경우도 있어요. 내년부터는 이런 논란 자체가 없어지게 되겠죠."(E10)

"그것은 판례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완전히 단일화가 됐죠. 기존에는 사립학교는 행정심판을 안 받아줬었는데 몇 년 전부터 법원에서 의무교육과정인 초, 중은 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른 징계조치가 행정소송 사안이 된다면서 민사로 제기된 것을 행정법원으로 이송을 많이 시켰어요. 몇 년 전부터,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사립학교도 행정심판을 받아주기도 했고요. 이번 개정을 통해 심의위원회로 가면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거죠. 그것도 2018년 가이드북 나올 때 사립도 행정심판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그 내용을 넣자고 제안 했었는데 아직도 확실하게 안 되고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D8)

개정법에서는 처분권자가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행정청의 행위가 되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의무교육기관인 초·중등학교와 고등학교에 관계없이 조치

132)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7나22439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판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법에서는 각급학교에 설치되어 있던 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능을 이관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하여 선도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요. 특히 이에 따른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하고, 교육장이 내린 선도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함께 규정하고 있어 이 문제는 행정심판으로 단일화하는 것으로 해결되었어요. 개정법은 2020년 3월 1일자로 시행 예정이니까 당분간은 현행 재심과 행정심판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D9)

### 다. 국가인권위원회로의 진정 등의 민원 및 각종 소송 제기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가해 학생은 방어적으로 대응하면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며 갈등이 증폭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상의 가해자에 대한 조치나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조정 제도는 그런 관점에서 이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가지는 징계 감정 해결과 손해배상을 위하여 많은 경우 사법처리 절차와 학교폭력예방법 상의 절차가 중복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 학생의 조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보충적 법률(제5조)이므로 이 법에 따른 조치만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며. 이 법에 의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행하여진 후 다시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처벌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지만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 및 절차의 이중 진행이라는 면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심리적인 어려움은 물론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될 수 있다.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공식처럼 학폭신고, 경찰서 신고, 교육청 민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공식화 되어있는 것 같아요. 사건 처리절차가 인권 친화적이고 징계절차가 아닌 회복적 절차가 되어야 이런 단계들이 줄어들텐데…, 어쨌든 지금은 징계절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응심리로 가해나 피해자 측에서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죠."(D8)

"우리나라는 너무 절차가 많은 것 같아요. 불복은 소송이 맞는데 우리나라는 민원 절차가 너무 많고 복잡해서 직속 기관에 하는 민원, 국가인권위원회 민원,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감사청구, 청와대 국민청원…, 너무 절차가 다양하고 민원의 천국인 것 같아요. 과거의 너무 일방적인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금 당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D8)

이중 삼중의 추가적인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운영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절차적 문제들이 행정적으로 사법적으로 표준화되고 통합될 필요가 있으므로 교육부가 처리 단계별, 사안별로 정리하여 지침으로 내려 줄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건 좀 민감한 이야기인데 학교폭력예방법 운영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절차적 문제들이 행정적으로 사법적으로 표준화되고 통합이 되려면 교육부가 지침으로 딱 뭔가를 내려 줘야 하는데 교육부가 그런 것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법원판결이면 따르겠지만 하급심은 따르기 어렵다면서 교육부 입장은 종전대로 라며 변화를 주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공무원들이라 확 바뀌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D8)

### (7) 학교(교사)

#### 가.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어려움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2012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신설된 직책이다.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는 학교폭력 관련 법령의 잦은 개정과 처리과정의 복잡성, 관련 학부모의 민원 등으로 아무도 맡지 않으려고 하는 대표적인 기피직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초임교사나 새로 전근해 온 교사에게 맡겨지고 연임하는 경우도 줄어들었다고 한다.

"교사는 수업도 하루에 4-5시간, 조례·종례시간, 생활지도 이게 이 학생 하나뿐만 아니라 학생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아픈 구석부터 여러 가지 문제에 사건사고까지 다 있어요. 근데 학폭사건이 두세건 터지면 다른 일을 못해요. 수업도 못하고 행정업무만 하다보면 일주일 이상 가요. 그럼 스트레스도 엄청나고 담임도 그 책임을 못 벗어나니까 진짜 힘들죠."(E2)

신고 후 14일 이내에 교육청에서 배부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이나 '평화로운 학교를 위한 사안처리 Q&A'를 참고하여 엄격한 행정절차를 하자 없이 적용하면서 학교폭력사건을 처리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사이에 회복적 접근이나 화해, 중재를 시도하라는 것은 현실적인 기대를 넘는 무리한 수준의 요구라고 한다.

"신고부터 자치위원회 개최까지 14일 최장으로 더하기 7일해서 21일이면 여유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학업중단학생 숙려기간을 1주에서 7주까지 주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든요. 근데 중요한 자치위원회를 14일밖에 안 주면, 2주 안에 열라고 하니까 가해자 피해자 조사하고, 보호자 확인서 받고, 전담기관 심의 받고 교육청에 보고까지 하려면 선생님은 그 기간 내내 서류작업만 하는 거죠. 담임이나 교사로서의 역할을 대부분 할 수가 없는 거예요."(E2)

> "자치위원회 가기 전 전담기구가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 보셨던 분들이 아니다보니 학생에게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교사가 '너 여기 와서 앉아. 진술서 써야 해' 해서 진술서를 쓰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나는 강압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말이 되거나 심지어 송사에 휘말리기도 해요. 학교에서 호소를 하는 것은 전담기구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어디까지 증거를 확보하고 조사해야 하는지 그 선을 알 수가 없고, 본업은 가르치는 교사인데 수업과 조사를 병행하기가 너무 힘이 든다는 호소를 많이 하셨어요."(D3)

학생의 학습권 등 인권을 존중하면서 사안조사를 하느라 시간적 제약과 방법상의 한계에 대한 어려움도 많다고 한다.

> "학생 인권을 강조하다보면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를 할 때 학교폭력 전담교사들이 관련 학생을 불러다 놓고 진술서를 쓰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반감을 표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요. '미성년자인데 부모의 동의 없이 조사를 진행해도 되는 거냐?'면서 그것이 학생 인권을 침해라며 항의하시는 경우도 많고, 학생들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러다보니 충분한 얘기를 들을 수도 없는데다가 자투리 시간에 조사를 하려고 해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빨리 하고 학원에 가야 하는데 왜 별 것도 아닌 일로 부르냐?' 라는 식의 문제가 있어요."(E4)

> "학폭이 터지면 다른 학생들도 피해를 보는 거죠. 진술서를 쓰려면 일단 상담을 해야 하잖아요. 학생과 상담하려면 별도의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수업 시간에 학생은 수업권이 있어서 안되고, 제가 들어가야 하는 수업시간도 안되고 그러다보면 쉬는 시간에 10분 내려와서 교무실에서 잠깐 상담하고 올려 보내는 걸 반복해야 해요. 아니면 방과 후에 해야 하는데 수업 끝나고 내려오라고 하면 아이는 그냥 집에 가요. 조사가 또 늦어지는 거죠. 학폭은 학폭이고, 자기는 지금 약속이 있어서 친구랑 나간다고 해요."(E1)

교육청 학폭 담당자도 순환보직이라 길어야 1년 근무하고 자꾸 변경되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며, 전형적인 장학 업무가 아니다보니 선호하지 않는다고 한다.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변호사에게 처리 절차나 방법에 대한 문의도 많이 하지만 학폭을 담당했던 전·현직 교사들 약 1,500명이 모여 있는 단체대화방[133]이나 인터넷카페[134]에서 어려움에 닥치거나 궁금한 것이 있을 때마다 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간 구애 없이 질문을 올리면 서로 답을 해주는 식으로 자신의 일처럼 도우며 머리를 모아 함께 사안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 "주변에서 학폭 사안에 대한 문의를 받다보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주변에서 왈가왈부 말이 많아요. 한 가지 사안에 다양한 변수가 있고 심지어 여러 학교가 맞물린 사안들은 어쩔 줄을 몰라요. 매뉴얼이 있어도 이해도 안 되고 적용은 더 어렵고요. 이렇게 잘 모르는 상황애서는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방법으로나 해결이 가능할 뿐 매뉴얼은 그냥 매뉴얼 덩어리라는 거죠.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피해자 학교에서 함께 하는 건지 가해와 피해학교에서 각각 따로 하는건지 이런 것부터 묻기 시작해서 사소한 것까지 모두 다 물어봐요. 신고 들어온지 14일 이내에 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그 기간 내에 사안 조사조차 촉박하다는 거죠. 그 사이에 회복적 접근이든 화해나 중재 그런 게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E1)

교사가 피해·가해학생을 너무 잘 알고 있어 오히려 객관적 조사나 판단이 더 어려운 면도 있고, 사안의 객관적 판단에 필수적인 목격학생의 진술을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진술을 받더라도 항의하는 경우가 많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 "선생님들 같은 경우 어떤 면에서는 가·피해 학생 모두를 너무 잘 알아서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온정주의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둘 모두를 잘 알긴 하는데 두 입장이 다 이해가 된다면 어떻게 판단을 내리겠어요?"(E2)

> "학교에서 사안처리가 어렵다고 하는 것 중 하나가 목격학생 보호자가 진술서 작성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건 없어요. 학교폭력실태조사를 얼마든지 하잖아요. 주변에서 목격했을 아이들한테 익명으로 조사하면 되는데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목격학생 진술을 받아내지 못하는 거죠. 익명으로 조사한 목격 진술이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쓰여 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급한 나머지 관련학생 학부모가 목격학생을 쫓아가 그 상황을 얘기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나중에 그 학생 부모님이 아시면 엄청 항의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양쪽이 어차피 다 같은 동네이니까 엮이고 싶지 않은 거죠. 문 밖에 나가면 다 볼 얼굴들인데 입장이 난처할 테니까요."(E10)

또한 복잡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일처리를 하다가 건너뛰거나 실수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 내에서도 갈등이 생기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133) https://open.kakao.com/o/gQQJavt
134) https://m.cafe.naver.com/ket2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어요. 전담기구가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임의적으로 전담기구에서 위임을 했다면서 생활부장 선생님이 진술서를 대신 받아주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소송으로 가서 이런 부분이 다투어지게 된 거예요. 전담기구에서 담당교사가 진술서를 받지 않고 다른 선생님 앞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그 선생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제기되고 선생님들끼리도 서로 책임소재 다투며 말이 나뉘고 의견이 갈라지다가 나중에 교장, 교감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여러 가지 언짢은 일이 생겼던 적이 있었어요."(D3)

### 나. 학폭전담인력 채용 제안

학교폭력 전담교사는 수업이나 담임을 맡지 않게 해주거나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폭력 전담교육행정직 채용을 제안하였다.

"저는 솔직히 학폭 전담은 수업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육행정직이 학폭 책임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행정실 직원들이나 선생님이 아니고 법을 아는 분이 학교폭력책임 직원으로 채용되어 시범학교로 돌려 봐야죠. 교사가 선도위원회 급은 할 수 있다는 건데 학교폭력은 선도위원회를 넘어서는 거죠. 근데 일부 시민단체나 일부에서는 교사가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학폭 책임교사라는게 보고서 작성부터 처분까지 행정절차에 올인하는 구조잖아요."(E1)

"지난 번 국회토론회에서도 '초등 1, 2, 3학년은 자치위원회에서 제외하자'는 것 외에 다른 주제가 '조사를 좀 전문인력이 해라'라는 것이었어요. 학교선생님들이 조사할 때 중립적이기 어렵거든요. (중략) 상피제도라든가 기피제도처럼 조사를 제 3자가 하는 것이 좋겠지만 거기에서 징계냐, 교육적 지도냐를 논할 때 교육적 지도라면 담임선생님이나 학폭담당 교사가 하는 것이 맞고, 징계라면 제 3자가 하는 것이 맞겠지요. 학폭처리제도라는 것이 '교육이냐 징계냐 처벌이냐'라는 갈림길에서 '이럴 때는 교육이다', '저럴 때는 징계다' 라면서 자꾸 모순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D8)

"개정법에서 아쉬운 점이 교육지원청으로 심의위원회를 이관한 게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건데, 사안조사는 계속 학교에서 하고 교육지원청에 인력풀을 배치해서 심의만 한다는 거잖아요. 민간조사원 자격증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경찰관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지원을 하신대요. 그런 분들한테 일자리도 제공하고 변호사도 활용해서 사안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화해나 중재 전문가도 그 때 개입했으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결국 사안조사를 학교에서 한다는건 교사의 업무를 대폭 줄여주는 것도 아닐 것 같아요."(E10)

"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설치가 되더라도 사안조사는 여전히 학교가 담당합니다. 교육지원청은 관련학생 측의 주장이 상반되면 학교의 의견에 보다 비중을 두어 고려할 수밖에 없으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로 학교의 입장이 매우 중요해 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보내는 문서의 문구 하나도 신중하게 기재하여야 할 것이고, 관련학생 측은 서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기재해 달라고 학교를 압박할 수도 있지요.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학교의 사안조사 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되면 해당 학생 측이 학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면 교육적 기능은 퇴색하고, 재판·징계위원회로의 성격이 강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변호사를 대동하여 자치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일반화될 것이고, 학교폭력의 특성상 일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다른 한쪽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맞대응하게 되겠죠."(D8)

### 다. 학교폭력 유공교원 가산점 제도 변경 제안[135]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제11항에서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당 교원 40%에게 부여된다.

학교에서는 학폭책임교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져 초임교사, 기간제교사 또는 전입교사에게 떠넘겨지며, 학폭책임교사와 학교폭력이 일어난 학급의 담임교사들의 병가와 휴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승진체제를 바꿔야 해요. 평교사가 그냥 순환보직제, 승진제도로 하니까 학생하고 상관없는 점수로 승진하니까. 결론적으로 교사가 열정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촘촘하게 교사들이 소송 당사자가 되지 않게 해야 하는 선생님들이 소송이 들어갔을 때는 학교에서 TFT팀이 만들어져서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근데 방치한다는 거죠. 신규교사, 복직교사 심지어 기간제 교사까지 모두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을 거절할 수 없는 힘없는 교사들이 맡는다는 거죠. 절대 연임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절차를 어기죠. 근데 잠깐 어긴 것 가지고 소송을 하니까 무효소송을 많이 해버리니까 질질 끄는 거죠."(E1)

"매년 11월만 되면 전국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에 기여한 교원에게 부여되는 승진 가산점으로 몸살을 앓아요. 학폭 발생 건수와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40% 교원에게 부여하는 제도라서 오히려 교사들 사이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니 교육감 표창으로 주든

135) 학교당 교원 40%에게 부여되는 학교폭력 유공교원 가산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항에서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제3항4호 및 제4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상담, 학교폭력 발생 점검 및 실태조사, 학교폭력 대응 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해 1년간 실적 전체를 하나의 실적으로 보아 산정하며, 해당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지 차라리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해요. 학년도 단위로 가산점이 한 번에 0.1점이라는 건 승진을 앞둔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큰 점수거든요. 비슷한 점수대에 있는 대상자 중에 학폭 점수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승진을 포기하는 꼴이 되는 거죠. 물론 가산점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긴 해요. 학교폭력 예방활동, 학교폭력 발견, 상담활동, 학교폭력 대응 조치, 특수공적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우스운 건 정작 책임교사와 학폭 업무 담당부장은 가산점을 거부하거나 받지 않는데, 학폭 일은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이 가산점을 신청해서 받는다는 게 문제인거죠."(E1)

"가산점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게 문제에요. 학폭 가산점을 받을 정도로 애를 쓰지는 않은 사람들이 받고 열심히 한 사람들은 오히려 튕겨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기여도가 확실한 책임교사, 생활지도부장 이 정도만 줘야 해요. 별 사람들이 다 가산점을 받겠다고 '나는 이 걸 했네, 저 걸 했네' 하면서 학폭 업무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이 0.1점이라도 챙기려고 신청을 해요. 그런 꼴을 보다 보면 저는 승진할 생각도 없지만 신청하고 싶다는 생각도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다들 그만큼 점수를 받으면 사실 받으나 마나에요. 40퍼센트나 준다는 거는 내가 받으려고 애를 썼나, 안 썼나의 차이일 뿐인 거지요. 교사가 100명이면 40명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 업무만 늘어난 거죠. 어차피 학교가 교육 입시에 중속됐듯이 교사는 승진에 많이 종속이 됐거든요. 요즘 승진 기피파들도 많이 생겼지만 여전히 승진에 목매는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꼴이니 별로 좋은 제도가 아닌 거죠."(E4)

## 2)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후 학교폭력 사건처리 절차

### (1)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이 2019년 8월 2일 국회에서 가결되어 부칙[136]에 따라 개정

136) 부 칙 〈법률 제16441호, 2019. 8.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학교장의 자체해결)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치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① 2020년 3월 1일 전에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자치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자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항은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은 학생의 졸업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4조(재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학교의 장으로부터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2에 따라 재심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조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만 2019년 9월 1일부터 먼저 시행되고 있다.

### (2) 개정 배경

#### 가. 학교폭력사건의 현저한 증가로 인한 학교 업무부담 증가

2013년 약 1,700~1,800여 건이던 학교폭력이 2017년 약 31,000여 건으로 증가하여 담당 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에도 자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어 담당 교원 및 학교장의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이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 "학교에서 학폭사건을 처리하는 것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건 선생님 업무 부담이 가장 많다는 것이었어요. 자치위원회 한번 하려면 작성하는 서류만 해도.. 몇십가지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상담도 해야 하니까요. 또 자치위원회까지 마쳤는데 그러고 나면 불복절차에 가서 행정심판도 하고 재심도 해야 하고 소송도 해야 해서 선생님인데 학폭업무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다보니 본업인 수업 준비도 제대로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 자치위원회를 진행 하다보면 아이들간의 화해를 한다던지 이런 절차도 없이 교내에서 그 둘을 분리를 시켜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너무 아쉽고 학교 역량으로는 어렵다는 것이었어요."(D2)

> "학교폭력이 신고 되면 교사가 경찰이 되었다가 자치위원회에서는 법원역할도 해주시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마지막으로 변호사 역할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런 이유로 교육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선생님들이 고유 업무만 수행하시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과 소통하시며 겪게 되는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선생님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들이 심각한 문제였죠."(D6)

> "개정이 되면 자치위원회라는게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니까 사실적인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들죠. 학교에서 조치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이 크거든요. 그 부담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하는 거니까 하고 부담 덜고 이행만 하는 대신 불복절차도 교육장이 직접 처분하는 걸로 바뀌니까요. 처분권자인 교육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니까 지원청에서 한번 결정을 하면 그 뒤로 학교에서는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D2)

#### 나. 자치위원회의 전문성과 일관성 부족

학부모위원들이 자치위원회 정원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도록 한 것에 대해 학교를 믿지 못해 학부모위원들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부정적 견해와 비밀엄수의무에 대한 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반 우려는 물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 "'학부모 위원이 대다수인 자치위원회가 무슨 전문성을 가지겠느냐', '변호사와 경찰이 참석하지 않는 자치위원회 결과는 믿을 수 없다'며 자치위원회 구성에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학부모 위원들은 결국 학교 측 의견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반면에 학부모 위원들은 학교가 사건을 축소, 은폐하지 않도록 하고, 가해학생에게 과도한 징계가 내려지거나 또 다른 형태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 자치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양측의 처지나 평상시의 행동을 잘 알고 계시기도 하고 당시 입장에 대해 공감을 잘 하시더라고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다 보니 외부에서 들어가는 위원들이 모르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E10)

> "학부모들이 자치위원회에 들어오다 보니 전문성도 없고 일관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었고요. 아이들의 투닥거림이 학부모들의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교육적인 지도라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어요."(D6)

학교폭력을 은폐, 축소하지 말고 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자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어느 조치를 내릴 것인가를 논쟁하는 장이 되고, 학교는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전문적 해결 능력과 일관적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자치위원회가 강화된 것은 학교폭력을 섣불리 무마하거나 은폐, 축소하지 말고 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말 그대로 '자치적'으로 해결하라는 제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보다는, 법령에 정해진 다음 조치 중 무엇을 내릴 것인가의 논쟁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각 학교마다의 전문성이라는 게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는 것부터 일관된 조치를 결정하는 것까지 일선에서는 어려움이 많았고, 이에 대한 시비도 많을 수밖에 없었죠."(E4)

자치위원회 심의를 사법적 기능에 맞춘다면 공정성과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며 교육지원청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한 이유도 이 공정성과 일관성 때문이라고 한다.

> "학교폭력사건을 심의기구 운영을 '사법적 기능'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슷한 사인인데 위원회마다 다른 수위로 선도조치가 내려지면 그 대상자는 다른 사례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면서 이의를 제기하는게 당연하잖아요.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 일관되고 공정한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조정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 산하에 설치하자고 주장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어요."(D9)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러나 학부모위원들의 전문성이 과소평가되고 있으며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 "학교와 관련된 분들 교감선생님이나 교사들이 말씀하실 때는 객관적 사실보다는 오히려 심증이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많은 것 같고 학부모위원들께서는 위원회 도중에 학부모위원들끼리 말씀을 많이 나누시는데 위원장인 저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안 판단이나 관련학생들의 평소 학교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인 거죠. '이 아이가 사실 이렇잖아요. 선생님들하고도 이전에도 이 아이가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미 어느 정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스토리를 다 알고계시고 서로 의사소통이 되시는데 그게 사건 파악과 실효성 있는 조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쳐요. 학부모위원들의 전문성을 한꺼번에 깎아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해요."(E9)

### 다. 교육적 기능은 축소되고 처벌 기능만 부각됨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사건의 처리 방법과 선도조치 등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선도와 교육적 절차라고 하지만, 법원에서는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조치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만큼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의 사실상 징계절차라고 한다.

> "교육부와 교육청은 자치위원회를 학생 선도와 교육적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자치위원회를 징계절차로 보아 징계절차에서 요구되는 절차들이 다 적용되고 있어요. 교육적 절차라고 본다면 이렇게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조치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될 만큼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거든요. 개정법의 심의위원회는 이런 징계적인 측면이 더욱 부각되는 기구일 것으로 예상 됩니다."(D8)

> "학폭이라는 것이 하여튼 이상한 제도예요. 이번에 노래방 사건에서도 뉴스를 보니까 '교육당국 자치위원회 넘기기로 해'라고 나오던데, 자치위원회가 무슨 교육적 절차인가요? 징계절차죠. 결국 교육부나 교육청은 자치위원회를 시끄러워질 수 있는 사건을 무마하는 약방의 감초로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학교가 뭐했냐?', '피해학생 보호를 왜 안했냐?' 라는 비난을 받게 될까봐 '우리는 자치위원회로 처리했다'라는 책임회피 용도로 쓰여지는 것 같아요."(D8)

개정법에 따라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될 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느끼는 학교만의 특수성이 반영되던 부분들이 배제되면서 예방법으로서의 취지가 더욱 사라지고 준사법기구처럼 가해학생을 징계하는 것에만 초점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맞추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 "자치위원회가 절차상 하자 때문에 지역위원회로 와서 철두철미하게 절차들을 챙겨서 각 학생들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개정되었는데 관계회복측면에서 보았을 때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이관한다고 이것이 과연 해결될 문제인지 거기에 대한 조명은 법령에 없지 않나 생각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느끼는 학교의 특수성같은 부분들을 아마 지역청에서는 다 배제할 것이라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더 크고, 예방법의 취지가 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가면서 더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준사법기구처럼 가해학생을 징계하는 것에만 포커싱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요.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문제라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D6)

개정법에서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해결하는 경우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재차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참여하는 각종 관계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교육부에서 화해조정기구를 구성하라고 해서 구성을 했어요. 학폭사건 처리절차 전반적인 과정에서 투입을 해서 화해도 시켜보고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도라는게 생겼으니까 그것도 어떤 여유를 둬서 할 수 있도록요. 공식 명칭으로는 '관계 회복 조정 기구'인데 외부 전문가 집단을 뽑을 예정이고 당연히 그 중심에는 '좋은교사운동'이라고 해서 교사가 있어요. 지역교육청 단위로 해서 이미 양성 심화단계로 들어간 중부교육청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인력 수요가 꽤 많이 필요하니까 지역교육청의 그룹 단위로는 매칭이 되어야지 단위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사안으로 전문가 좀 보내주세요 하고 전문가 요청이 오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나가게 되는 거죠. 쌍방의 의견을 들어주면서 전문적으로 화해의 스킬을 제공하는 거죠."(D2)

그럼에도 개정법을 통해 심의위원회로 가기 전에 관계회복조정기구를 통해 화해와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한계로 인해 부족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자체적인 연구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

> "일단 학폭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는 감정적 대치상황으로 가게 되죠. 자치위원회 가기 전에 화해나 관계회복을 하려면 서로 얼굴을 봐야 하는데 법에는 화해나 관계회복에 대한 강제조항이 빠져있으니까 시행령이나 지침에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교장은 그 조항을 근거로 지침이나 그런 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에서 최소 횟수 제한을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양쪽이 만나서 얼굴 보는 최소한의 장을 마련해야 하는 거죠. 지금은 아예 하나도 없거든요. 보통 쌍방이 카톡 몇 번, 전화 한 두 번하고 법적다툼까지 가게 되니까요.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지침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중간 고리가 빠져있어서 시행령에 그 내용이 들어가도록 제안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가이드북이랑 지침에 조금 더 보완해서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D2)

"자치위원회가 절차상 하자 때문에 지역위원회로 와서 철두철미하게 절차들을 챙겨서 각 학생들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개정되었는데 관계회복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이관한다고 이것이 과연 해결될 문제인지 거기에 대한 조명은 법령에 없지 않나 생각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느끼는 학교의 특수성 같은 부분들을 아마 교육지원청에서는 다 배제할 것이라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더 크고, 예방법의 취지가 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가면서 더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준사법기구처럼 가해학생을 징계하는 것에만 포커싱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요.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문제라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D6)

### (3) 주요 개정 내용

#### 가.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로 자치위원회의 기능 이관

##### 가) 심의위원회 설치 의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교육청)에 심의위원회를 두어 이전법의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모두 이관하도록 개정하였다(법 제12조제1항).

"학교폭력사건을 심의기구 운영을 '사법적 기능'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슷한 사안인데 위원회마다 다른 수위로 선도조치가 내려지면 그 대상자는 다른 사례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 일관되고 공정한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조정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창 산하에 설치하자고 주장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어요."(D9)

"자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변경해서 교육청으로 이전하면 학교에서는 큰 부담을 덜게 되겠지만 교육청에서 학교가 겪었던 인력, 시간, 장소, 위원회 구성, 결과 통지, 의사록 작성, 속기사 등 모든 절차를 어떻게 주관할지.. 학교와 똑같은 문제를 그대로 다시 고민하게 될 거에요. 하지만 학교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고 공정하게 판단할거라고 기대되는 독립적인 제3의 기관에서 판단하게 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돼요."(D3)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개정법 시행령과 정책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부분들이라고 한다.

"심의위원회를 위한 전담인력, 사무실, 회의실, 대기실 두 군데(가해, 피해) 이런 것들도 마련해야 하고 시간 맞추어 오게 하고 서로 마주치지 않게 동선 정리하고 대기하도록 맞추는 것이랑 어려운 일들이 막상 진행하다 보면 소소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학생이랑 보호자들이 지원청으로 가야 하잖아요. 학습권 침해 문제도 있고 심의하다 사안관련해서 전담기구에 묻고 싶은 것이 있을텐데 그러려면 담당교사도 수업 빼고 참석해야할 일도 있을텐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폭업무하시는 변호사님들 중에도 반대하시는 분이 있었고 교사들도 제가 알기론 반대했다던데, 교원단체에서 많이 주장한 거여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 지켜봐야죠. 그리고 저희는 도심권이라 괜찮지만 소관 지역이 넓은 지원청이나 섬 같은 지역은 시외버스나 배타고 나와야 하거든요."(C2)

심의위원회는 10인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 포함)에 소속된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3조제1항).

"10인 이상 50인 이하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 안에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소위원회를 둘 거예요. 그런 다음 '소위원회 의견을 전체 심의위원회의 의견으로 생각 한다'는 규정을 넣어서 처리할 예정이거든요.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하라는 규정 딱 하나만 개정법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모두 지침으로 풀어야 하는데…, (중략) 소위원회 안에 최소 변호사 한, 두 명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걸 강제할 방법은 없어요. 교육청에서는 변호사를 최소 20~30퍼센트 정도 넣으실 예정인 것 같아요. 지금 변호사시장이 포화이기도 하고 관심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많이 지원해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심의위원회 위원을 직업으로 하실 분들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해요. 한번 참석을 하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수당을 지급할 예정인데 심의위원회를 아침, 저녁으로 매일 개최하는 교육청이 많을 거거든요. 이게 수당이 적지 않은 거예요. 이 외에도 교통비는 따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꽤 많잖아요."(D7)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그 조치가 타당한지 기각/인용으로 판단하는 징계조정위원회나 행정심판과 달리 9가지 조치 중 가해학생에게 적합한 조치를 내리는 것은 법률전문가보다 해당 학교의 학부모나 교사들이 갖는 강점이 있다고 한다.

"학부모님들이 갖는 강점들이 있어요. 특히 그 학교 해당 교원이 갖는 엄청난 강점이 있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아이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징계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각/인용, 행정심판도 기각/인용 이예요. 이런 조치가 타당한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9가지 조치 중에서 뭐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을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그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그게 타당한지 판단하는 건 수월한데 여러 개 조치 중에 이 아이에게 맞는 걸 선택하는 것은 어려워서 '이걸 과연 법률전문가들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학교폭력은 법리 다툼이 큰 것도 아니고요."(D7)

"자치위원회에서는 한 건에 대해 오랫동안 심의하는데…, 재심기구 심의처럼 '5분 재심'이 지원청 심의위원회로 그대로 옮겨갈까봐 염려가 돼요. 자치위원회로 가면 학부모위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판단을 하세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이 학생들에 대해 잘 모르시잖아요. 가해학생이 소년재판에 가면 엄청 반성하는 척해요. 이 학생들이 교육지원청 가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거죠. 관련 학생의 본질을 보고 전반적으로 판단할 때 학교처럼 아이들에 대한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서면작성을 잘 하거나 증거 수집을 체계적으로 잘 한쪽에 유리한 법적 판단만을 하게 될 우려가 있어요."(E10)

개정법 시행 당시에도 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항은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학부모위원은 해당 학생이 졸업하면 학부모위원자격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게 되어있으나 부칙에 의해 학생이 졸업 후에도 학부모위원의 자격이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2020년 3월 1일 이전에 신고 된 사안은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2020년 4~5월까지는 자치위원회가 존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나) 심의위원회의 조치 불복

개정법에 따라 2020년 3월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기 전까지 피해학생은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가해학생은 전학이나 퇴학에 한해 서울시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청구하도록 이전 법에 규정된 대로 계속 운영되며, 2020년 3월 이후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로 심판을 신청하기 된다.

이전 법에서 재심 기관 이원화로 지적되던 문제들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으나 행정심판위원회로 오는 사건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며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비상입니다. 우리는 학교폭력 부서여서 정보라도 많이 아는데 거기는 아예 다른 부서인데다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여서 '뭔가가 우리한테 온다더라'는 상황이예요. 교육부에서 관련 부서랑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교육부에서 학교폭력예방 4차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2015년부터 2019까지 끝났고, 2020부터 2024년까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거기에 저도 사안처리와 관련된 파트에 참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 계획 안에 실제로는 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재심제도가 사라지니까 행정심판 위원회에 학교폭력 전문가를 넣는 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 넣어놨는데 실제 교육부에서는 '그 부서와의 협조는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경우에도 거의 80퍼센트가 제가 알기로는 행정심판 중에서 10건 중에 8건이 학교폭력 사안이에요. 그냥 저희가 행정심판위원회를 학교폭력행정심판위원회로 부를 정도에요. 월등히 많아요. 그 안에도 학교폭력 전문가가 있어야지. 예전에 보면 변호사님들이 많고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변호사님들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셔서 실제로 들어오신 분들이 엉뚱한 판단을 하기도 하십니다."(D7)

"지원청 심의위원회 불복은 교육청 본청 행정심판위원회로 가게 돼요. 행정심판위원회는 본청에만 있거든요. 지금도 본청 행심위 사건의 대부분 거의 7~80%를 학교폭력사건이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재심까지 행정심판위원회로 오게 되는 거죠. 행정심판이 1년에 3~400건 정도이고 두 군데 재심도 1년에 3~400건 정도인데 이 사건들이 모두 행정심판위원회로 오게 되면 이번 개정으로 각 교육지원청과 행심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거죠."(D8)

"개정법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기 전까지 피해학생은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가해학생은 전학이나 퇴학에 한해 서울시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청구하도록 현행법에 규정된 대로 계속 운영이 될 거예요.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기구는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가 되는 거고요. 개정법 시행 전에 학교장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사건은 계속 재심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심기구도 내년 상반기 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D6)

### 다) 학생소청심사위원회 신설 제안

이전 법에서 '재심 이원화'로 발생하던 문제들이 개정을 통해 재심이 없어지고 행정심판으로 통합되면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업무 폭주가 예상된다고 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교육청에만 있으므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불복은 교육청 본청 행정심판위원회로 가게 되는데, 현재도 본청 행심위 사건의 7~80%를 학교폭력사건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건이 더 많아질 것이 우려된다고 한다.

현재 교원의 경우 특별행정심판기구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학생소청심사위원회'를 두어 학교폭력사건 재심은 행정심판과 합쳐서 학교폭력관련 심판의 전문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기구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전에 재심 이원화라며 문제되던 것이 개정법에서는 재심이 없어지고, 행정심판으로 통합되면서 행정심판위원회도 업무가 폭주할거라고 예상돼요. 이원화 됐던 재심의 문제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미 2017년에 '학교폭력 제도 개선안'으로 발표됐던 것을 교육부에서 2018년에 받아 추진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교육청이 제안했던 것은 교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이 특별행정심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학생소청심사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두어 학교폭력사건 재심은 행정심판과 합쳐서 별도의 기구에서 시행하자고 제안했는데, 교육부가 별도의 기구를 만들기 부담스럽고 하니까 행정심판으로 통합시킨 거죠. 과연 얼마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전문적으로..처리를 할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처럼 특별행정심판기구로 운영하면 일반 행정심판과는 달리 교원만의 특수성이 고려되고 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어요. 행정심판위원회는 보통 서울의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리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결과가 3개월 정도면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학교폭력은 특수성이 있으니까 일반 행정심판과는 달리 이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D8)

"지금은 학교폭력사건도 일반 행정심판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지만 학교폭력 분야가 따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건수가 많아요. 학폭사건 그게 별건가 하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건수가 어마어마해요. 실제 행정심판위원회도 매년 폭발적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환경, 위생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걸 뛰어넘어서 학교폭력이 쭉쭉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년을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교육부에서 그런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서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학교폭력관련 부서만이 아니라 관련 기관과 그런 논의를 포괄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될 거거든요. 따로따로 놀아도 안 되고요. 사립학교의 경우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으로 가능하다고 안내를 드리고 있었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받아줘서 행정심판도 가능하다고 보는 재판부도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원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립 구별 없이 모두 일원화가 되는 구조여서 그 것까지 합치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행정심판이 더 수월하니까 부모님들이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민사소송은 부모님 입장에서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선택을 못하셨거든요. 그런데 행정심판으로 가는 건 돈도 안 들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대충 몇 줄 적으시면 접수가 되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그래서 행정심판 건수는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빨리 생활기록부 기재가 완화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경미한 조치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더 고려를 해볼테니까요."(D7)

### 나.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에도 자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어 담당 교원 및 학교장의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이 곤란하던 것을 개정법에서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4가지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동의나 피해학생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자체적으로 종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는 심의위원회에서 분쟁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기존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의 다양한 갈등을 법적절차를 통해 무조건 처벌중심으로 다루다 보니 오히려 제대로 된 처벌보다는 피해자·가해자 모두에게 상처를 안기는 결과만 가져왔었죠. 부족하나마 학교가 교육적 관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D9)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심의하도록 하며, 2020년 3월 1일부터는 전담기구 전체구성원 중 학부모를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 "과거에도 '학교장 종결제'라는 것이 가능했었어요. 법령에는 근거가 없었지만 '사안처리가이드북'에 제 3자의 오인신고였다거나, 학교폭력 의심사안이었는데 확인해 보니 학교폭력이 아니었거나, 재산상 신체상 피해가 없고 즉시 즉각 복구되었다면 학교장 종결제로 사안을 마무리 했었죠. 그 때는 학부모님들 맘이 바뀌어 학교폭력으로 다시 신고를 하면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 규정하는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객관적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D6)

이전의 학교장 종결제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어 보고를 위한 정해진 서식이 없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쓰다가 교육청에 보고할 때 그 양식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는 교육부에서 제작 보급한 양식으로 보고하도록 한다고 한다.

>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도 자체는 마련이 잘 된 것 같아요. 피해학생 부모님들 중에서도 자치위원회 자체는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심어린 사과다'라고 많이 하시는데, 그 분들한테 학교장자체종결제도가 있다고 안내드리면 관심 있어 하시고 그렇게 해결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이 제도를 잘 활용만 하면 회복적 방안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돼요."(E10)

### 가) 자체해결이 가능한 객관적 요건

경미한 학교폭력일 것을 전제로 하여 다음 4가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1.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지속성이 없고
4.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나) 경미한 학교폭력 판단 기준

4가지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였지만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한다.

> "교육청으로 문의가 들어오는 사안 중에 4가지 객관적 요건을 충족했지만 경미한 학교폭력으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로 볼 수 없는 사건일 때 예를 들면, 골절이 있었다거나 피해학생이 많이 다쳐 사실상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문의가 많아요. 사실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판단은 학교에서 우선 해주셔야 하고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4가지 요건이 충족되는지 봐주셔야 해요. 지금은 시행 초기이므로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면 어느 정도 사안에 대해 경미한 학교폭력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의 개념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D6)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학교장들은 '4가지 요건도 충족하고 피해학생측도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해결을 하는 게 의무인가?'라는 질문을 하셔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 두 가지 요건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이라 부르는데요. 그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는 것은 의무인지 선택인지를 여쭤보시는 경우, 이게 고차원적으로 하시는 질문이에요. 그 4가지 요건이 애매한 게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강간사건이거든요. 4가지 요건 만족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진단서 제출하지 않고 금품갈취도 아니고 재산상 피해 회복도 아니고 지속적이지도 않고 보복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객관적 요건 만족하고요 그런 성사안의 경우는 피해학생 측 의견이 완전히 상반돼요. 그냥 묻어버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반이고 아예 강력하게 처벌하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반이에요. 이 건을 아예 수면 위로 올리고 싶지 않은 부모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화장실에서 일어난 너무나 심각한 강간사건인데 자체해결로 그냥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D7)

### (가)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요건 중에 진단서 전치 2주 이상이라는 부분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전에는 2주 정도만 진단서 발급이 되어도 이걸 상해라고 보아 공소장에도 상해라고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3년 사이에 "2주의 상해 진단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이건 상해라고 볼 수 없다"는 요지로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오면서 이 기간의 진단서의 증거능력은 조금 믿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렇다보니 최근 검찰이나 경찰 추세가 2주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어울려 놀다 보면 서로 부딪힐 수도 있고 특히 학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종일 반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상호작용이 늘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E9)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범위를 조금 넓혀서 진단서 2주 이렇게 딱 법으로 정하지 말고 당사자들끼리도 물론 신체 손상이 많으면 치료비라든지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그건 쌍방이 충분히 합의하고 다른 요건이 맞으면 학교에서 자체해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또 선례가 되긴 해요. '저런 경우는 왜 빼주면서 우리한테는 자치위원회 가라고 하느냐' 그런 민원이 생기긴 합니다. 자체종결을 꺼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왜 우리는 그렇게 처리 안 해주냐면서 민원이 들어오죠."(E6)

"2주 이상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라는 것은 발급이 아니라 제출을 기준으로 판단도록 되어있어요. 자치위원회 심의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자체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피해학생 측에서 진단서를 제출했다가 다시 회수하고 싶다고 해도 철회할 수 없고, 이런 경우 자치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D6)

"경미한 사안의 객관적 기준을 전치 2주 이상이라고 정해둔 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가해학생이 의자를 들어 여학생 머리를 내리쳐서 이마가 찢어져 꿰맨 사건이 있었어요. 여학생 이마에 상처 난 곳이 보조개처럼 파였는데 병원에서는 진단서를 일주일밖에 떼줄 수 없다는 거예요. 실밥 봅을 때까지의 기간이라면서요. 처음엔 급하니까 정형외과에 가서 꿰맸는데 오랜 기간 계속 흉터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건이 경미한 사건인가요?"(E10)

"객관적 기준에서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라는 기준이 좀 마음에 걸려요. 그 정도는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진단서 기준이 아니라 좀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 사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커터칼로 위협한 경우 실제로 신체를 다친 건 없지만 피해학생이나 주변에서 목격한 학생들이 느꼈을 두려움이나 후유증은 주먹으로 한 대 맞고 피를 흘리거나 뼈가 부러지는 것보다 클 수 있거든요."(E7)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이 좌우되는 건 전적으로 피해학생 부모에게 달린 거라고 봐요. 둘이 싸우다가 한 명이 욕을 하니까 상대 학생이 '왜 욕을 하냐?'면서 코를 때렸어요. 코를 맞은 학생은 또 다시 뺨을 때리고요. 근데 코 맞은 애가 크게 맞아 코뼈가 부러져서 전치 3주가 나왔는데 자치위원회를 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많이 다쳤지만 자치위원회로 가면 쌍방폭행으로 될텐데 '우리 애는 특목고를 가야해서 쌍방폭행으로 생기부 기재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다쳐도 부모가 원치 않으면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그만 이예요."(E10)

"자체해결이라는 것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는데 그러면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등 다른 건 왜 안 되는지 근거를 요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의료법상 진단서에 한정 된다'고 보고 있어요. 다른 진료의뢰서, 소견서 등을 내면서 이런 걸로 갈음해 달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잔단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한테 불이익한 경우가 없는 게 '어차피 동의하지 않으면 자체해결은 불가능한 것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라면서 설득시키고 있어요."(D7)

(나)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여기서 재산상 피해라고 하는 것은 금품갈취에 의한 재산상 피해를 의미한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법을 개정할 때 예상했던 것은 '금품 갈취에 의한 재산상 피해'였는데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재산상 피해라는 것은 아이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느꼈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걸 재산상 피해라고 보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재산상 피해라는 게 그야말로 금품갈취였어요. (중략) 그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기준을 어디까지 볼 것인 것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자체해결이 법제화되면서 가장 강력한 효과가 '원칙적으로 자치위원회를 다시 소집할 수 없다'는 기준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하더라도 피해학생측이 언제라도 변심하면 언제라도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자체해결로 끝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치위원회는 개최 불가능하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안내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만, '전담기구에서 확인되지 않은 상태가 밝혀졌거나 재산상 피해복구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를 저희는 금품갈취라 생각해서 재산상 피해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피해학생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 병원비 다 대준다고 해서 사인을 했는데 지금 병원비를 주고 있지 않다. 이건 번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학교와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D7)

(다) 지속성이 없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지속적, 보복성, 이런 것들이 사실 학교 내에서 판단하는 게 어렵죠. 개정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할 때 그 4가지 요건을 법에 규정하면서 먼저 일부 의견을 수렴 했었고 개정된 이후에 그걸 어떻게 유권해석으로 풀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회의를 공식적으로 3-4차례 했던 것 같아요. 그 때 지속성에 대해서 너무나 애매하기 때문에 저희가 날 수로 볼 건지 횟수로 볼 건지 예를 들어 같은 학생들 간에만 볼 건지 그 외의 범위로 확대해서 볼 건지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오히려 디테일하게 나갈수록 학교의 판단이 제한된다고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안은 재량입니다. 재량이고요. 그렇게 맡긴 이유는 그 이전에도 자치위원회원에서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치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기본 판단 조서라는 게 있었는데 심각성, 지속성 그런 항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속성도 기준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리만큼 질의가 없었어요. 알아서 다 0점부터 4점까지 알아서 다 판단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충분히 학교에서 그동안의 역량을 바탕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고 보게 된 거에요. 그래서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했고 실제로 개정법 관련 연수를 8월, 9월 초에 많이 했는데 그 때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지속성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 질문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D7)

"피해가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반복성이 높을 때 그것을 경미한 사건으로 보는 게 맞는지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중한 게 반복적이면 모르는데, 경한 게 반복적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하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주 장난꾸러기 사춘기 남자애들이 피해학생을 툭툭 건드리는 건데 경하다고 볼 수 있는 행위지만 지속적이면 경미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염려가 돼요."(E7)

### 다)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서면 확인 동의를 받아 내부결재를 받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도 학교가 먼저 나서서 자체해결을 제안하거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수 있으므로 지양하라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한다.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 및 보호자 서면 확인 동의를 받아 학교장 자체해결 내부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때 1. 전담기구 사안조사 보고서, 2. 심의결과서, 3. 서면동의서를 첨부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자치위원회에 보고하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면 돼요.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할 때 사안처리 가이드북에는 서면, 유선, 문자 모두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마지막으로는 서면통지서를 반드시 보내주시도록 권장하고 있어요."(D6)

"현재 2019년 9월 이전에 신고 접수된 사안을 기준으로 피해학생 의사 확인 시기에 대해서는 전담기구 심의 이전에 해야 하느냐 심의 후에 해야 하느냐의 요건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으로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어요. 사안처리가이드북에 나와있는 처리 흐름도를 보시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친 후 서면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선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도 학교가 먼저 앞서나가서 자체해결을 제안하거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지양하라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예요.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것으로 비춰질까봐 그러겠죠."(D6)

4가지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에 동의를 한 경우 자체해결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하여 법적으로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 보호자가 동의서에 서명하는 순간인지 학교장 결재를 받는 시점인지 아니면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는 순간인지에 대한 것인데 이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동의를 번복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객관적 요건은 만족을 하고 보호자가 처음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자체해결이 되었다는게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법적으로 논의할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호자가 서명을 하는 순간 자체해결로 볼 것인지, 학교장이 결재하는 순간 완성되는 것으로 볼 건인지에 아니면 이후에 자치위원회 보고하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법에. 그 순간 마무리 되는 건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보호자들이 오늘은 동의했는데 학교장이 결재를 하기 전에 번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자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억울하신 거죠. 그러면 학교는 아 동의서에 사인을 했으니까 끝이라고 이렇게 안내하고 싶어 하고요. 부모님은 무슨 소리냐 법에도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라고 했고 학교장 결재도 안났는데…, 나는 번복하고 자치위원회에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D7)

### 라) 객관적 요건을 갖춘 사안은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이 의무인지 여부

"굉장히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요건 네 가지를 갖추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학교장 자체해결이 학교장의 의무인지 선택인지 묻는 교장선생님이 계셨어요. 앞으로는 이 것도 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이든 자치위원회든 다 학교에서 해결되는 구조이지만 내년 3월 1일부터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문제이거든요. 학교장의 선택인지 의무인지는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와 직결되는 문제에요. 그래서 그 해석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장의 의무'라고 해석해서 교육청으로 오는 심의를 최소화 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요. 교육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교육부 연구관님은 '기본적으로 선택권을 주는 게 맞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문구 자체가 '할 수 있다' 여서 제가 보기엔 '권한을 준다'라고 생각했는데 연구관님은 '선택권을 준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업무 담당자님의 의견에 따라서 선택이라고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아마 내년에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4가지 객관적 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 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체해결 하지 않고 심의위원회로 올리는 구조가 될 거거든요."(D7)

### 마)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으로 종결했던 사건의 심의위원회 개최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다.

그러나 가해학생 측에서 피해학생에게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자체해결 사안으로 종결된 후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안조사 당시에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가해사실이 발견되었다면 자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에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를 보면 사안조사를 적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사안조사 내용을 충분히 적고 서명을 받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어서 거기에 적힌 내용과 틀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내용이 더 생기는 거라면 그건 별도의 건으로 접수해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내용이 틀렸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한대 맞은 줄 알고 동의서에 서명을 해줬는데 나중에 수사결과를 보니 1대가 아니라 열 몇 대더라. 그래서 나는 용서해 줄 수가 없다.' 그렇게 1대라고 적힌 사안조사 내용이 틀린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서명하고 나서 나는 우리 아이가 그런 정도의 진단이 나올지 몰랐는데 나중에 봤더니 한 8주가 나왔다. 이게 이제 새로운 사실이니까 다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 달라. 그럴 때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자체는 변함은 없잖아요. 학교폭력 내용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이후의 본인이 판단했던 거잖아요. '나는 진단이 2~3주밖에 안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8주가 나왔다' 이런 거니까요. 그런 거는 새로운 사실로 보지 않아서, 틀린 내용으로 보지 않아서 안 된다고 안내를 하고 있어요."(D7)

### 바)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학교폭력사건을 은폐·축소한 경우

개정법에 따르면 피해 학생·학부모가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에 동의하는 경우 전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기구의 심의를 거쳐 문서로 동의의사를 확인한 후 학교장의 결재를 받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도록 하여 여러 단계의 안전을 위한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도 도입으로 교육적 해결이라는 명목 등으로 학교폭력 사건의 은폐·축소 시도가 확인된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칙'을 함께 개정하여 학교폭력 축소·은폐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를 국공립학교 교원 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가중 징계 근거를 신설하였다.

"학폭 사건이 벌어지면 대다수 학교에서 피해학생은 뒷전인 경우도 많아요.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아직도 '가해학생 인권 보호' 운운하면서 사안을 은폐·축소하려고 하는 학교도 꽤 있더라고요."(C2)

### 사)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건은 학교안전공제회 지급 대상이 아님

현재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의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의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한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요구하는 첫 번째가 피해학생 보호조치이고 두 번째가 구상권을 행사할 가해학생인데 긴급조치가 내려진 경우는 피해학생에게 선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재산상 피해란 금전적 피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품갈취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후에 자치위원회 재소집과 관련된 부분이 쟁점이 되는데 피해학생 부모님들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치료비용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학교장자체해결로 이미 끝났는데…'라며 억울해하시는 거예요. 만일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내려졌다면 그 보호조치에 근거해서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용이 지급 되거든요. 그런데 피해학생 보호자는 가해학생 측에서 치료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약속만 믿고 동의서에 사인을 했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이 됐어요. 그런 경우 피해학생이 치료비를 청구하면 안전공제회는 지급 거절 통보를 하거든요. 안전공제회에서도 지급이 안 되고 가해학생도 주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소송밖에 없는 거예요."(D7)

"가장 문제되는 것은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따른 안전공제회의 선지급과 관련된 거예요. 그 비용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보호자가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각 시도교육청 장학사님은 교육청에 공식적인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긴급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안전공제회 선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거죠. 지금 법에는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D7)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자치위원회 개최 전에 긴급조치를 내린 경우에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끝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해학생 조치를 내린 경우에 자체해결로 끝냈다면 이것을 취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자치위원회 올리지도 않으니까요. 이런 경우 학교장이 직권 취소라고 공문을 만듭니다. 피해학생 긴급조치의 경우에는 어차피 징계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면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피해학생 측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보호조치를 받았었으니까 자체해결로 끝났다 하더라도 안전공제회에서 지급이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요. 그런데 안전공제회에서 요구하는 첫 번째가 피해학생 보호조치이고, 두 번째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정된 가해학생입니다."(D7)

#### 아)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현황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2019년 9월부터 시행된 후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비율을 교육부에서 파악해 보았더니 예상보다 많은 비율이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되었다고 한다.

"9월부터 개정법이 적용된 이후 교육부에서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취합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높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비공식적으로 55퍼센트 됩니다. 꽤 많이 처리가 되고 있고 다들 예상보다 높다는 의견이고 지난번 회의 갔을 때 들어보니 다른 지역도 꽤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예상은 30-40%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50-60%입니다. 지금은 어차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이나 자치위원회 결과에 따른 조치나 모두 학교장이 해야 하는 건이니까 학교장님들이 아 오케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니까 심의위원회로 올리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예상보다 높습니다."(D7)

### 다. 전담기구

#### 가) 구성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 3월 1일부터는 전담기구 전체구성원 중 학부모를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사건의 사안조사와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부모위원에게 사안조사와 관련한 역할을 준 것은 아니라고 한다.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함) 등으로 구성'되어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상설기구예요."(D6)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상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은 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개정법에서는 직접 선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은 선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처럼 위촉하는 것이 가능해요."(D6)

"전담기구가 교사들로만 구성되던 것이 학부모도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되었죠. 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하고 조사는 전담기구에서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해요.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으로 처리할 지 말 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치위원회 역할처럼 학부모가 포함된 전담기구를 꾸리게 된 것 같고, 어떤 식으로 현실화될지 아직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예상하기로는 사안조사는 선생님들께서 지금처럼 하시고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할거냐 말거냐 판단할 때는 학부모님들 불러서 전담기구가 회의를 하지 않을까하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E10)

"전담기구가 그동안에는 조사를 담당했었고, 옛날로 치면 생활지도부 라든가 생기부가 공식적인 전담기구가 되었는데, 이번에 법 개정하면서 학부모가 포함된 것은 학부모에게 조사하라는 역할을 준 것은 아니고 전담기구에 종결권이 주어졌는데 학교가 마음대로 종결을 시키면 부담이니까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인사를 두자는 목적일 텐데.. 그것도 굳이 필요할까 싶어요."(D8)

또한 이전 법에서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은 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 선발 과정에서의 절차의 하자로 자주 지적되던 것이 개정법에서는 직접 선출이 아니라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절차상 하자로 문제되던 많은 부분이 사라지게 되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상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은 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개정법에서는 직접 선출이 아니라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처럼 위촉하는 것이 가능해요."(D6)

### 나) 기능

학교폭력사건의 사안조사는 전담기구에서 실시하며, 전담기구의 학부모위원은 사안조사에 참가하지 않는다.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는 관련학생 양쪽의 주장이 상반되면 학교의 의견에 보다 비중을 두어 고려할 수밖에 없으므로 학교의 입장이 매우 중요해 질 것이며,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보내는 문서의 문구 하나까지도 신중하게 기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기구에서 사안조사를 일단 진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이 때 경미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되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한다.
- 4가지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동의를 받아서 종결할 수 있다.
- 전담기구는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사안조사와 심의를 통해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여부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7일 이내로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연기할 수 있다.
- 이 때 교육청 보고는 필요 없고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면 충분하다.
- 전담기구 심의 결과 4가지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거나 경미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되지 않으면 개정법 이전과 같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개정법에서 아쉬운 점이 교육지원청으로 심의위원회를 이관한 게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건데, 사안조사는 계속 학교에서 하고 교육지원청에 인력풀을 배치해서 심의만 한다는 거잖아요. 민간조사원 자격증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수가 경찰 활동 하다가 은퇴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하신대요. 그런 분들한테 일자리도 제공하고 변호사도 활용해서 사안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화해나 중재 전문가도 그 때 개입했으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결국 사안조사를 학교에서 한다는 건 교사의 업무를 대폭 줄여주는 것도 아닐 것 같아요."(E10)
"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더라도 사안조사는 여전히 학교가 담당합니다. 교육지원청은 관련학생 측의 주장이 상반되면 학교의 의견에 보다 비중을 두어 고려할 수밖에 없으므로 학교의 입장이 매우 중요해 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보내는 문서의 문구 하나도 신중하게 기재하여야 할 것이고, 관련학생 측은 서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기재해 달라고 학교를 압박할 수도 있지요.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학교의 사안조사 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되면 해당 학생 측이 학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교육지원청에서 자치위원회가 개최된다면 교육적 기능은 퇴색하고, 재판·징계위원회로의 성격이 강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변호사를 대동하여 자치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일반화될 것이고, 학교폭력의 특성상 일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다른 한쪽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맞대응하게 되겠죠."(D8)

### (4) 가해학생 선도조치 생활기록부 기재

자치위원회의 징계적 효과와 가해학생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해 가해학생과 학부모는 책임을 인정하기 보다는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부인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는 데 주력하게 되면서, 책임을 인정하고 조치를 이행하는 선도와 교육의 과정을 경험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 "친구끼리 장난 한 번 잘못 치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돼서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학교 분위기를 많이 바꿔놨어요. 변호사들이 학교에 드나들고, 내용증명우편이 학교로 오는 일이 허다해요. 학폭책임교사들은 내가 선생님인지 경찰인지 모르겠다고 하시고, 심지어 직접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E5)

교육부는 지난 1월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과 지난 8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후속조치로 11월 21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인 1~3호를 대상으로는 처음 1회에 한해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이 포함되어있다. 가해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생기부기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완화하여,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 간 관계회복이 촉진될 수 있도록 내년 3월부터는 가해학생이 서면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교내봉사(3호) 조치를 받은 뒤 이를 이행하면 1회에 한해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게 된다.

다만 추가로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조치를 받게 되면 기재를 유보했던 이전 조치까지 포함해 생기부에 기재한다. 생기부 기재 유보조치의 유효기간은 같은 학교급 내로 정했고, 초등학생은 중·고등학생과 형평성을 고려해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는 완전히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1, 2, 3호 기재를 1회에 한하여 유보한다는 조치를 시행하긴 할 것 같아요. 자치위원회 100건 중에 1호를 받는 애들이 60~70% 되는데 생기부 기재를 안 하면 피해학생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속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 하죠. 불만이 많거든요."(D1)

학교폭력사안 처리절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거나, 낙인 등 이중적 처벌 효과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근거 규정이 합헌으로 판단[137]하여 위헌 논

137)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중 비교적 경미하다고 할 수 있는 서면사과, 보복금지, 교내봉사, 학급교체 등의 조치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경미한 조치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도록 하는 것은 과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도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절차에 따라 충분히 소명의 기회가 부여된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고, 비록 경중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일단 학교폭력이 인정되어 학교폭력예방법에 열거된 조치를 받은 것이라면, 아서 보았던 학교생활기록부에의 기제 및 보존의 필요성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란은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학교폭력에서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생기부에 기재하는 근거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가 아닌 교육부훈령에 의한 것으로 자치위원회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가 증가하는 요소이자 교육적 해결의 전제인 진심어린 사과를 막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 "많은 분들이 잘 못 알고 계신데 심지어 선생님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게 법령에 근거한 의무사항이 아니예요. 교육부 훈령[138]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관심 없는 국회의원들이 학교폭력예방법을 잘 못 만든 거다, 태생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하지만, 사실은 그 법이 이렇게 학교에서 마음껏 활개를 칠 수 있도록 힘을 준 곳이 바로 교육부라는 거죠."(E5)

> "2012년에 가해학생 조치를 생기부에 기재하는 지침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139]된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했어요. 교사는 부모를 제외하고는 학생들과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교사가 생기부를 보고 학생을 파악한다고 생각하세요? 경력이 있는 분들은 '한 번 척 보기만 해도 어떤 아이인지 안다'고도 하시지만, 교사는 학생과 함께 대화하고 눈 맞추고 부대끼면서 아이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나와 있듯이 '과거의 기록을 보고 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하라'는 의미가 무엇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설마 교사가 생기부 기록에 따른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하라는 뜻은 아닐텐데요. 생기부가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학생이 정말 작은 실수 한 번을 하는 것만으로도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이 교육적인 것일까요? 엄벌주의를 택하면 바로 효과가 있는 것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신뢰와 에너지를 잃기까지 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죠."(E5)

생기부 기재가 학교폭력사건 처리 과정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고, 상급학교 진학에 생기부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 "학폭 사건이 벌어지면 대다수 학교에서 피해학생은 뒷전인 경우도 많아요. 저희가 상담하다보면 아직도 '가해학생 인권 보호' 운운하면서 사안을 은폐·축소하려고 하는 학교도 꽤 있더라고요. 피해학생 학부모들은 생기부 기재가 꼭 필요하다고들 하시죠. 저희는 세미나나 토론회 가

---

서는 다르지 않다. 그리고 기재된 조치사항의 종류를 보면 문제 된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 역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단지 조치사항이 기재되고 보존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지나친 제재라고 보기는 어렵다(2016. 4. 28. 2012헌마630 결정).

138)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80호].

139) 2012년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기획소송으로 진행했던 2016. 4. 28. 헌법재판소 선고 2012헌마630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면 피해학생 학부모들을 대표해서 '현재 수준이 무슨 '엄벌주의'냐. 생기부 기재를 않고 처분을 완화하자는 것은 학교와 교육청이 학폭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 벌을 받거나 책임을 지는 건 상식이잖아요.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거나 학생이라는 이유로 '엄벌주의'는 안 된다며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C2)

"피해학생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자살하거나 사망사건인 경우 생기부 기재 자체도 남지 않는다고 하면 힘들 거예요."(E2)

"요즘엔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들 대학에 가는 것 같지만 아직도 대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한테는 학폭 조치가 생기부에 적히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걔네들은 '그냥 알아서 하세요~'하죠. 거기다 취업에 대한 생각도 없으니까요. 상위권 대학을 가는 애들은 소수잖아요. 걔네들한테는 생기부 기재가 큰 문제가 되고 하나의 꼬리표가 되는 거죠."(E1)

"차이가 많죠. 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선 학부모 총회를 하면 강당이 꽉 찼어요. 지금 학교는 한 반에 3~4명도 안 와요. 그만큼 이쪽 학부모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바쁘고 힘든 거예요. 학교가 좀 알아서 아이들을 맡아줬으면 하죠. 이전 학교에선 자사고·특목고 가는 학생이 한 반에 5명이 넘었어요. 특성화고는 한 명도 안 가요. 여긴 자사고·특목고 가는 수가 전교에서 10명 정도 될까. 일반고 아니면 특성화고죠. 저는 교육 얘기하면서, 현실을 모른 척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경제력 차이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E5)

생기부 기재 1회 유보가 오히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1~3호 처분은 생기부 기재를 유보한다고 하면 4호 이상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들은 처분을 3호 이하로 낮추려고 할 거고, 반대로 피해학생 쪽에서는 1~3호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들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요구해서 아마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줄어들기는커녕 굉장히 더 증가할 걸요?"(E6)

"작년 말에 개정안 논의하면서 1, 2, 3호 조치는 학교에서 하고 그 이상 처분은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던 안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소송이 증가할 수 있다고 염려했었어요. 그 이유는 1, 2, 3호 처분으로 받고 싶어 하는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오히려 교육청으로 오는 사건들은 소송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던 거죠."(D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3호에 대한 생기부 기재를 유보하는 방안에 대해 저는 찬성하지 않아요. 기재를 하려면 다 하고 아니면 아예 안하든지 해야죠. 1~3호 조치를 받는 가해학생을 보고 왜 저런 조치밖에 안 받느냐면서 불복하는 피해학생도 있을 것이고 가해학생들은 1~3을 받으려고 발버둥을 칠 것 같아요."(E10)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가해학생에 대한 1~3호 조치 기재 유보를 환영하는 입장도 있었고, 1호 서면사과를 '친구관계 회복프로그램 참석' 등으로 변경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자치위원회 조치를 생기부에 기재하는게 자치위원회를 무서워하도록 하는 효과는 있다고 봐요. 9호까지 처분이 있지만 대부분 1, 2, 3, 5호 처분을 주로 하시더라고요. 1호 서면사과는 사실 별로 효과도 없고 억지로 강요된 사과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나 서로한테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차라리 1호를 '친구관계 회복 프로그램 참석'같은 조치로 바꾸면 어떨까요?"(D10)

자치위원회를 그대로 학교에 두면서 생기부 기재 유보를 함께 실시하는 과도기적 방법을 먼저 사용해 보고 효과가 없을 때 교육지원청으로 심의위원회를 이관하는 단계별 추진을 시도해보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급작스럽고 대대적인 변화를 아쉬워하는 견해도 있었다.

"지금 학교의 부담이 자치위원회를 너무 의무적으로 개최해야하고, 자치위원회 개최해서 서면사과라도 하나 나오면 무조건 생기부에 기재되니까 학부모들은 어떻게든 자치위원회에 가지 않으려고 극렬하게 저항을 하는 구조거든요. (중략) 오히려 자치위원회는 학교에 그대로 두면서 1, 2, 3호까지는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학교에서 조금 융통성 있게 제도를 운영하면서 교육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해보는 거죠. 중하지 않은 사안들은 다 3호 이내로 조치가 내려질 것이니까요. 1, 2, 3호 조치까지는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제기하는 소송도 줄고 다른 변화도 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너무 급박하게 학폭 축소와 심의위원회 이관까지 같이 해버리니까 그 효과를 종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D8)

학생의 생활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자료인 생기부에 자치위원회 조치를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자치위원회 개최와 생기부 기재가 교육적 해결을 가로막으며 복수심 해결이나 협박의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 고민스럽다는 의견도 있었다.

"생기부의 본래 목적은 그 학생이 어떻게 생활했는가를 기록하는 자료니까 생기부에 조치 내용을 기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생기부가 입시에 활용되다 보니 주객이 전도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확실히 생기부 기재 때문에 애들이 조심하는 경향은 있어요. 반면에 충분히 교육적으로 지도하면서 해결될 수 있는 학폭 사안도 '저 친구한테 생기부로 낙인찍고, 내가 힘들었던 만큼 고통 받게 할거야' 라며 복수심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건을 볼 때는 과연 생기부 기재가 얼마나 교육적으로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도 하죠."(D6)

"생기부 기재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아요. 주는 효과도 크고, 적어도 기재가 되면 대학입시에 확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실히 영향을 주더라고요. 저는 기재하는 것 자체는 동의하는데 다만 저희가 학교폭력 개념이 워낙 넓어서 불순하고 악의적인 의도로 신고해서 조치결정을 받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1호 서면사과 조치의 경우 너무나 경미한 사안인데도 나오고 1호라도 있으면 생기부에 기재되어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경미한 조치는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D7)

## 3. 요약 및 시사점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실태를 위한 심층면접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1) 피해학생

#### (1)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학생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함

학교폭력예방법으로 보호해야 할 피해학생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학교 밖은 물론 국내를 벗어나 국외에서 발생한 사건은 물론 교육활동과 관계없는 사건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이나 미성년 성매매의 피해자까지 이 법에서 정하는 보호대상이 되어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도 피해학생 참석 없이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도 있어 범위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한다.

#### (2) 피해학생의 자발적 전학

피해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워 전학을 요청하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근거로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장 추천 전학이 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 제73조제6항, 제89조제5항). "학교장 추천 전학"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전학에 대한 추천권은 교장선생님에게 있고 피해학생이 이사를 하거나 불법 전입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전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학교장 추천 전학을 원하는 피해학생 측에서는 담당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등 학교 관리자와 함께 전학을 필요로 하는 학생의 현재 상황에 대한 긴밀한 상담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140]

140) https://blog.naver.com/legista16/221706511045(검색일 2019. 12. 2).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3) 따돌림 피해학생과 급식

학교폭력 중에서도 따돌림은 피해학생에게 급식시간을 특히 어렵게 만든다. 따돌림을 당하면 지금까지 같이 식사를 하던 무리에서 벗어나 이미 학생들 사이에 형성된 다른 무리에 쉽사리 끼어들기도 어렵다. 어른들은 '까짓것 혼자 먹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친구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얘기하여 곤란한 일이 생기는 대신 차라리 굶는 걸 택한다고 한다. 엄마에게 얘기해서 도시락을 싸오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버티기 어렵고 결국 등교 거부라는 최후의 선택을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 (4) 피해학생에게 장애가 있거나 공격 성향 등을 가진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를 가진 학생이 특수학교에 분리되어 교육받지 않고 일반학교에서 비장애 학생과 함께 생활하는 통합교육이 확대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 12월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통합교육을 하는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한 비율은 36.7%나 되었다고 한다. 2018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전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1.3%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발생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의 징계조치를 판단하는 적용기준에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가 가중사유로서 적용되는데(법 시행령 제19조제5호), 이런 가중 사유는 피해학생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은폐나 축소의 우려를 낳기도 한다.

반대로 장애학생이 공격적인 성향이나 충동성 억제 부족 성향을 가진 경우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 되거나 의도치 않게 성추행 가해학생이 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친근감의 표현으로 하는 신체 접촉이 상대방에게는 원치 않는 접촉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장애학생 부모님들은 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사안조사 단계에서부터 특수교육 전문가가 참여를 요청하여 '장애로 인한 특이행동의 발현'이라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5)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다른 일반학교로의 전학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일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때 출석이 인정되고 학력평가는 본교에서 받으며 졸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위탁교육시설이 있다.

위탁교육시설에서는 피해학생이 본교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담임교사와 SNS를 통해서라도 자주 연락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복귀하는 시기가 빨라지고 적응도 성공적이며, 교사와 학생 사이 연결을 위해 노력하는 보호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한다.

특히 위탁 학생의 본교 선생님이 위탁교육시설을 방문하여 학생과 상담을 하는 경우 굉장히 효과가 좋고 본교에 돌아갔을 때 몇 명의 또래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교사가 돕는 경우 정착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한다.

전담기구에서 피해학생 관련 시설 및 이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하도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것과 위탁교육시설을 방문하여 학생 상담을 실시하는 본교 교사에게 학교폭력 가산점 부여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 (6) 학교안전공제회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비용의 부담 및 지원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6항에서는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데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의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요구하는 첫 번째가 피해학생 보호조치이고 두 번째가 구상권을 행사할 가해학생인데 긴급조치가 내려진 경우는 피해학생에게 선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이 있었다.

### 2) 가해학생

#### (1)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5호 조치는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가해학생의 폭력의 근본적 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인에 대한 치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내려지며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피해학생의 심리치료와 달리 가해학생의 폭력성을 위한 심리치료는 가해학생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래서인지 5호 조치로 특별교육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가해학생의 폭력성을 유발시키는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한 조치나 가해자를 위한 위탁교육시설은 없다. 가해학생에게도 비용 부담 없이 폭력성을 치료하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해학생의 폭력성 치료를 위한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 (2)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1호 서면사과와 9호 퇴학 이외에 2호부터 8호까지의 조치가 내려지면 의무적으로 부수적 성격의 특별교육이 가해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부과된다(법 제17조제3항, 제9항).

현재 주말에도 가해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하는 센터가 소수 있기는 하지만 직장이나 생업에 지장 받지 않고 주말이나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주말이나 평일 저녁시간대의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는 센터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 (3) 자치위원회와 형사고소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학교폭력으로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선도조치를 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피해학생 보호자가 형사고소를 하거나 성사안같은 경우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에 신고를 하면서 자치위원회와 형사고소까지 함께 진행되는 수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한다.

자치위원회의 조치를 받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가해학생은 언제든지 형사고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하는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 (4) 피해학생의 신고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방어하도록 하는 문제 : 통지의무 위반

가해학생에게 자신이 무슨 사유로 신고가 되었는지는 피해학생이 신고한 내용을 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려주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통지의무 위반이라고 한다. 제3자에 대한 비밀누설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 (4) 사안조사, 자치위원회에 변호인 동석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조사를 할 때 부모나 변호인을 동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자치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참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한다.

교육적 절차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경찰이나 사법기관에서의 조사가 아니므로 보호자나 변호인의 입회가 불필요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변호인이 같이 참석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거나 주장하는 논점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어 사안 판단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 (6) 행정소송보다 행정심판 시간이 더 걸림

행정심판의 장점 중 하나가 진행이 빠르다는 것인데, 행정심판은 2-3개월, 소송은 최소 6개월이 걸리던 것이 지금 서울은 행정심판이 소송을 추월해서 법원보다 시간이 더 많이 더 걸린다고 한다. 그리고 법원은 기일 열리는 게 예측이 되는데 교육청은 관내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등의 외부적 요건이 개입되면 인력도 부족한 데다 그 일이 먼저 처리되어야 하니까 더 시간이 걸리게 된다고 한다.

### (7)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하지 않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학교에서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료를 공개하고, 법원에서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판결을 내리면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한다. 그런데 행정심판은 학교에서 자료를 제출하지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자료 제출을 강제하지도 않는다. 또한 답변도 천편일률적이어서 행정심판하면서 '이건 이기겠구나. 학교도 별다른 반박을 안 하네'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면서 졌다고 한다.

### (8) 사립학교 재학생의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행 법령이나 판례에 의하면 사립학교 재학생과 학교와의 관계는 사법관계에 해당하여 사립학교는 행정청으로 볼 수 없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어 사립학교 재학생은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사립학교 재학생은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학교법인을 상대로 조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어떤 재판부는 '사립학교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이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시킨 경우도 있었고, 어느 법원은 '초·중등교육법상 사립학교에 징계권한을 위임한 것이므로 행정기관의 위임을 받은 행정관계이다'라며 행정법원으로 이송시켜 행정법원에서 다루도록 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개정법에서는 처분권자가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행정청의 행위가 되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의무교육기관인 초·중등학교와 고등학교에 관계없이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 (9) 국가인권위원회로의 진정 등의 민원 및 각종 소송 제기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가해 학생은 방어적으로 대응하면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며 갈등이 증폭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상의 가해자에 대한 조치나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조정 제도는 그런 관점에서 이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가지는 징계 감정 해결과 손해배상을 위하여 많은 경우 사법처리 절차와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절차가 중복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3) 학교(교사)

#### (1)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어려움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2012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신설된 직책이었다.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는 학교폭력 관련 법령의 잦은 개정과 처리과정의 복잡성, 관련 학부모의 민원 등으로 아무도 맡지 않으려고 하는 대표적인 기피직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초임교사나 새로 전근해 온 교사에게 맡겨지고 연임하는 경우도 줄어들었다고 한다.

신고 후 14일 이내에 교육청에서 배부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이나 '평화로운 학교를 위한 사안처리 Q&A'를 참고하여 엄격한 행정절차를 하자 없이 적용하면서 학교폭력사건을 처리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사이에 회복적 접근이나 화해, 중재를 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도하라는 것은 현실적인 수준의 기대가 아니라고 한다.

교육청 학폭 담당자도 순환보직이라 길어야 1년 근무하고 자꾸 변경되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며, 전형적인 장학 업무가 아니다보니 선호하지 않는다고 한다.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변호사에게 처리 절차나 방법에 대한 문의도 많이 하지만 학폭을 담당했던 전·현직 교사들 약 1,500명이 모여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어려움에 닥치거나 궁금한 것이 있을 때마다 시간 구애 없이 질문을 올리면 서로 답을 해주는 식으로 자신의 일처럼 도우며 머리를 모아 함께 사안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 (2) 학교폭력 유공교원 가산점 제도 변경 제안[141]

학교에서는 학폭책임교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져 초임교사, 기간제교사 또는 전입교사에게 떠넘겨지며 학폭책임교사와 학교폭력사건이 일어난 학급의 담임교사들의 병가와 휴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제11항에서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당 교원 40%에게 부여된다.

가산점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학교폭력 예방활동, 학교폭력 발견, 상담활동, 학교폭력 대응 조치, 특수공적 등이 포함되는데 학폭 가산점을 받을 정도로 애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받고 열심히 한 사람들은 오히려 받지 못하거나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

학교폭력사건 발생 건수와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40% 교원에게 부여하는 제도라서 오히려 교사들 사이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므로 책임교사, 생활지도부장으로 범위를 제한하든지 교육감 표창으로 주고 차라리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

141) 학교당 교원 40%에게 부여되는 학교폭력 유공교원 가산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항에서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제3항 4호 및 제4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상담, 학교폭력 발생 점검 및 실태조사, 학교폭력 대응 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해 1년간 실적 전체를 하나의 실적으로 보아 산정하며, 해당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4) 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1) 개정의 의의

기존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 내의 다양한 갈등을 자치위원회의 필수적 개최와 조치 부과라는 법적절차를 통해 무조건 처벌중심으로 다루다 보니 교육적 해결이 개입될 여지가 없이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가 교육적 관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시도해 보는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의 권한을 법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한다.

#### (2) 심의위원회 설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교육청)에 심의위원회를 두어 이전법의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모두 이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자치위원회의 기능이 교육지원청의 자치위원회로 모두 이관된다고 하여 학교의 업무 부담이나 학교폭력예방법의 징계적 요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 (3)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개정 이전에도 '학교장 종결제'라는 것이 가능했다고 한다. 법령에는 근거가 없었지만 '사안처리가이드북'에 제3자의 오인신고였다거나, 학교폭력 의심사안이었는데 확인해보니 학교폭력이 아니었거나, 재산상 신체상 피해가 없고 즉시 즉각 복구되었다면 학교장 종결제로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었는데 차이점은 학부모님들 맘이 바뀌어 학교폭력으로 다시 신고를 하면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 규정하는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은 객관적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4가지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였지만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하는 것이 교장의 의무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한다.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도를 도입하면서 교육적 해결이라는 명목 등으로 학교폭력 사건의 은폐·축소 시도가 확인된 경우 학교폭력 축소·은폐 교원에 대해 정해진 징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기준보다 한단계 높여 가중 징계 근거를 신설하였다.

### (4) 경미한 학교폭력 판단 기준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에서 재산상 피해라고 하는 것은 금품갈취에 의한 재산상 피해를 의미하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전치 2주의 기준에 대해 "2주의 상해 진단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이건 상해라고 볼 수 없다"는 요지로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오면서 이 기간의 진단서의 증거능력은 조금 믿기 어렵다는 의견들도 있고 피해는 중하게 발생했으나 진단서로 발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한다.

4가지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에 동의를 한 경우 자체해결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하여 법적으로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 보호자가 동의서에 서명하는 순간인지 학교장 결재를 받는 시점인지 아니면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는 순간인지에 대한 것인데 이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동의를 번복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 5) 가해학생 선도조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육부는 지난 1월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과 지난 8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후속조치로 11월 21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인 1~3호를 대상으로는 처음 1회에 한해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이 포함되어있다. 가해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완화하여,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관계회복이 촉진될 수 있도록 내년 3월부터는 가해학생이 서면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교내봉사(3호) 조치를 받은 뒤 이를 이행하면 1회에 한해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게 된다.

생기부 기재가 학교폭력사건 처리 과정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고, 상급학교 진학에 생기부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그러나 학교폭력에서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생기부에 기재하는 근거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가 아닌 교육부훈령에 의한 것으로 자치위원회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가 증가하는 요소이자 교육적 해결의 전제인 진심어린 사과를 막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생기부 기재 1회 유보가 오히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1~3호 조치 기재 유보를 환영하는 입장도 있었고, 1호 서면사과를 '친구관계 회복프로그램 참석' 등으로 변경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자치위원회를 그대로 학교에 두면서 생기부 기재 유보를 함께 실시하는 과도기적 방법을 먼저 사용해 보고 효과가 없을 때 교육지원청으로 심의위원회를 이관하는 단계별 추진을 시도해보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급작스럽고 대대적인 변화를 아쉬워하는 견해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신뢰 구축 방안 마련
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을 위한 명확한 기준 등 마련 필요
3.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에 대한 행정심판 일원화에 대한 정보제공
4.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의 보존·삭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
5. 전담기구의 위원의 전문성 강화
6. 학교폭력 관련 문서의 관리 강화
7.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8.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등을 위한 전문시스템 구축
9. 학교폭력에 대한 회복적 사법 시스템 구축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신뢰 구축 방안 마련

### 1) 현황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치위원회 개최과정에 대해 피해학생에게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자치위원회 개최 과정 중 피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 2.86점, '자치위원회 개최 과정 중 피해학생 및 학부모로서 적정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보장되었다' 2.84점, '자치위원회 개최 과정 중 피해학생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적이 있다' 2.79점 등으로 나타나 피해학생들은 인권침해, 개인정보 누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으나, 의견진술의 기회 또한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자치위원회 조치·결과와 관련해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자치위원회 조치결과 중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일반학생(목격학생)은 적정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2.63점, '자치위원회 조치·결과 중 가해학생에 대해 내린 조치에 만족한다' 2.51점, '자치위원회 조치·결과 중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해학생이 잘 이행했다고 생각한다' 2.47점으로 답했다. '자치위원회 조치·결과 중 가해학생이 불복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불편하였거나 불안하였다'가 3.21점으로 가장 높았다.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자치위원회 조치·결과와 관련해 가해학생의 불복시 불안감을 느끼며 가해학생에 내린 조치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 조치를 잘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해학생들도 자치위원회 경험은 '자치위원회 조치·결과 중 가해학생인 나에게 내린 조치를 잘 이행했다고 생각한다'(3.03점)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치위원회 조치·결과 중 가해학생인 나에게 내린 조치에 만족한다'(2.97점), '자치위원회 조치·결과 중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일반학생(목격학생)은 적정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편이다'(2.94점), '사안조사 과정 중 가해학생인 나의 인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2.81점), '사안조사 과정 중 가해학생으로서 충분하게 사안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2.67점), '자치위원회 개최 과정 중 가해학생인 나의 인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 '자치위원회 개최 과정 중 가해학생으로서 적정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보장되었다'(각 2.56점), '사안조사 과정 중 가해학생인 나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적이 있다', '자치위원회 조치·결과 중 피해학생이 불복하는 경우 가해학생의 입장에서 불편하였거나 불안하였다'(각 2.50점), '자치위원회 개최 과정 중 가해학생인 나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적이 있다'(2.42점) 등의 순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2) 개선방안

### (1) 심의위원회의 안착을 위한 노력 필요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해결능력에 동의한 비율은 22.2%로 낮았다. 이는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중립성, 역할 등에 대한 회의와 불명확함이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두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이 위원회에는 학부모위원이 현행 '절반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추고,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비중을 늘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우려를 일정 정도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그럼에도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에 대해 학교폭력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2)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의무화 필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위원들 구성을 변호사 등 전문가 등으로 강화되기는 할 것이나 학부모가 3분의 1이상이므로 이들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이러한 점이 강화되기는 하겠으나 여전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입법 예고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제14조의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해당 시·구 조례로 정한 기관이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군·구의 청소년보호업무담당국장 또는 과장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업무 또는 생활지도 업무 담당국장 또는 과장
2. 교육전문직원 또는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3.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4. 판사·검사·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5.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자격이 있는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8.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9.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10.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중에 변호사, 검사, 학교폭력문제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등이 있으나 이 중에는 학생의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이 있으므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역량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는 위원에 대한 학교폭력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에 의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현장에서는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시 자발적으로 학부모들이 나서지 않아서 사전에 섭외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학군에서는 전문직 학부모의 비율이 높아 학부모 위원도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많은 분들이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 시간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필수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즉 일정한 필수의무교육을 이수한 학부모의 경우에만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위원교육은 기본과정, 심화과정, 전문가 과정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심도있게 하고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중심으로 심의를 실습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처벌이 아닌 학생중심으로 사안발생 원인을 찾고 관련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과 의혹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심의위원들이 “모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실제 학교폭력 사안과 같은 절차 및 역할로 직접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방법이 효율적이고 실제로 심의위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들의 교육이나 전문성 강화에 좋을 것이다.

###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경비지원 및 상설화 필요

심의위원회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경비를 지급하는 등 예산확보 및 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교육지원청에 할당되는 학교폭력 사건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피해학생 재심)와 같이 진행될 것이 매우 염려된다. 사건이 많은 서울, 경기도의 경우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천편일률적인 결정문을 접하게 되며, 또한 내부에서도 1건에 10분 내외라고 하니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자치위원회보다도 못한 형식적인 위원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을 경계하여야 한다. 이를 방지하고 각 사건에 대해 심도 있는 판단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 및 상설화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 3) 법제 정비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제 정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행 | 개선안 |
|---|---|
|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br>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br>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br>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br>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br>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br>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br>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br>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br>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br>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현행 | 개선안 |
|---|---|
|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br>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br>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br>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9. 8. 20.〉<br>④ 신설<br>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2019. 8. 20.〉 |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br>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br>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br>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9. 8. 20.〉<br>④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은 매년 2회이상 학교폭력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2019. 8. 20.〉 |

## 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을 위한 명확한 기준 등 마련 필요

### 1) 현황

설문조사결과 학생들은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42.8%, '반대한다'는 응답은 57.2%로 나타났다.

경미한 학교폭력문제의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에 찬성하는 학생들은 그 이유로 '자치위원회 진행에 따른 피·가해학생과 보호자 사이의 갈등 확대 방지'(42.4%)를 들었으며, 학교자체 해결사안으로는 '피해학생 또는 부모가 자치위원회 절차를 원하지 않는 경우'(33.5%)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16.3%), '사안이 학교폭력 판단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13.8%),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13.3%), '학교폭력으로 분류되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화해와 관계회복이 이루어진 경우'(11.8%), '교사로서 판단하기에 대등한 당사자 간의 싸움으로 생활지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경우'(10.8%)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미한 학교폭력문제의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방안을 반대한 학생들은 그 이유로 '학교나 가해학생 측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할 위험'(70.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모든 학교폭력은 경미하지 않은 폭력으로 보고 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처'(14.8%), '경미한 학교폭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11.4%)의 순으로 답했다. 이유로는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우려'(24.9%)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해학생의 잘못 인식과 진정한 반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우려'(20.7%),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조치가 재범방지를 위해 비효과적이라는 우려'(15.4%),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에 대한 우려'(9.5%), '가해학생 부모들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7.2%) 등의 순이다.

학부모 및 업무관계자들은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의 자율적 해결능력에 대해 동의한 응답비율은 22.2%로 낮게 나타났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5.3%, '아니다'는 응답은 42.5%로 높았다. 응답자 유형별로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능력에 대해 동의한 비율은 '일반 학부모'(22.5%)가 가장 높았고, '관계자'(22.0%), '피해학생 학부모'(2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학교폭력 해결능력이 미흡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 '학교폭력사건 처리 전문성 부족'(52.6%)에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학교 평가에 대한 부담'(24.6%), '특정 학생에 대한 우호적·부정적 평가(선호·편견)'(15.8%), '학부모 등의 민원', '담당자의 업무과중 및 비합리적인 업무분장'(각 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모든 유형에서 '학교폭력사건 처리 전문성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당사자 간 화해절차 필요도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78.4%로 나타났다. 관계자집단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비율이 87.8%로 가장 높았고, '일반 학부모'(84.0%), '피해학생 학부모'(6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당사자간 화해절차가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 '가해학생의 책임인식과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하다'(59.2%)에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학생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40.4%)이다. 모든 유형에서 '가해학생의 책임인식과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당사자간 화해시 자치위원회 처분반영 정도와 관련해 '학교폭력 처분수준을 완화한다'(35.0%)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처분을 내리되, 처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30.1%), '반영되면 안 된다'(26.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절차를 종결한다'(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학생 학부모는 '학교폭력 처분을 내리되, 처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41.7%), 일반 학부모는 '학교폭력 처분수준을 완화한다'(36.1%), 관계자는 '학교폭력 처분수준을 완화한다'(48.8%)에 많이 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2) 개선방안

### (1)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을 위한 기준 구체화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제13조의2에서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는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이다.

이 경우에도 학교장은 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②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현황 실태조사 결과처럼 이에 대한 불신은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피해학생의 동의절차와 형식, 자체 해결사안의 명료한 기준과 처리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조속히 개발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자체해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되거나 이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4가지 조건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때'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학생들간의 장난으로 한 것이 학교폭력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고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하며 또한 피·가해학생들 간에는 화해를 하고 지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부모들 간의 싸움으로 변해가는 경향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폭력은 초등학교에서는 대부분 지속적인 경우가 많으며 명확한 증거가 없는 따돌림의 경우는 지속적이지 않은 사건이 없는데 사실상 자체해결인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1의2항에서는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따돌림을 규정하면서 그 요건 중 하나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규정은 "따돌림"의 경우는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 할 수 없는 경우라고 명확히 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장 자체해결제도를 시행할 때, ① 경미함을 판단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피해학생 측이 되어야 하며, ② 피해학생의 동의가 전제된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도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하며, ③ 동의서의 양식 마련이 필요하며, 동의서에는 재발 발생 시 해당 사건을 포함하여 자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할 필요가 있으며, ④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학교자체해결제도 기준 외에도 양 측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자치위원회를 원치 않을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제도 활용에 대한 예외 규정 마련이 필요하며, ⑤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도에 대해 모르는 학부모들이 여전히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 (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을 위해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새롭게 도입된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원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학교급이나 학교폭력 유형 등을 고려한 맞춤형 찾아가는 학교폭력 역량강화를 위해 연수나 워크숍 등을 시행하고 학교의 상담역량강화를 위해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의 상담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시행하며 상호간 역할 분담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3)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을 위한 적극적 홍보 및 모니터링 실시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및 각 학교의 장은 학교자체 해결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체해결제의 남용을 위해 부적절한 학교의 대응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 학교운영 특성상 주의의무가 강조되는 학교의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또한 현재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해 학교폭력이 축소되거나 은폐되지 않도록 하고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을 통해 학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3) 법제 정비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기준은 매우 구체적인 기준제시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내용 규정이 필요하다

| 현행 | 개선안 |
|---|---|
|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br>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br>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br>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br>3. 신설<br><br>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br>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br>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br>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br>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br>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본조신설 2019. 8. 20.] |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br>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br>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br>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br>3. 신체·정신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br>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br>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br>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br>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br>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br>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본조신설 2019. 8. 20.]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3.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에 대한 행정심판 일원화에 대한 정보제공

### 1) 현황

자치위원회가 내린 결과에 가해학생이 불복하여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한 경험을 가진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10.5%였다. 반면 자치위원회 결과에 대해 피해학생이 불복하여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한 경우는 5.3%로 나타났다.

자치위원회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를 안내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비율은 14.0%로 나타났다. 다수의 피해학생들은 불복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학생의 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낮은 이유가 결과에 대한 승복 이외에 불복절차의 안내가 불충분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가해학생을 형사고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였고, 가해학생을 민사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로 나타났다. 자치위원회 결과에 대해 가해학생이 불복하여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피해학생 부모는 10.4%로 나타났다. 또 자치위원회 결과에 대해 피해학생이 불복하여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한 경우가 있다는 응답은 8.3%로 나타났다.

자치위원회 조치에 대해 피해학생이 불복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피해학생 부모는 24.0%로 나타났다. 피해학생의 응답률 14%보다는 높았지만, 피해학생 부모 중 대부분은 자치위원회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학생 부모 중 가해학생을 형사고소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3%였다. 가해학생을 형사고소한 이유로는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 조치 이후에도 사과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71.4%)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자치위원회 조치가 지나치게 경미하였기 때문에'(28.6%) 등의 순으로 답했다. 피해학생 부모 중 가해학생을 민사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5.2%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2) 개선방안

#### (1) 학교폭력 행정심판절차 일원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

기존에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의 재심기관이 지역위원회와 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재심기관을 최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대한 개정으로 재심제도가 일원화되어, 피·가해학생 모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그동안 학교폭력 재심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재심결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었다. 이는 학교에서의 조치의 형평성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각 학교에서의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결과에 형평성 등 불만을 가지고 재심을 하는데 재심절차의 이원화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최근 개정으로 재심절차가 폐지되고 당연한 결과로서 행정심판절차가 일원화된 것은 다행이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피·가해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이러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사실 실태조사에 의하면 피·가해학생과 학부모들이 불복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최근 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행정심판 기간 3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내용 규정

행정심판절차 일원화에 따라 행정심판에 많은 사건이 접수될 텐데 이에 따른 행정력이나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심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에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심판절차의 일원화로 인해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려면 행정심판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심판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 행정력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행정심판 결정기간이 길어지면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력, 행정력, 예산, 공간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 3) 법제 정비

행정심판을 일원화함에 따라 이 기간이 길어지면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현재도 서울, 경기의 경우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행정심판 청구시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고 이에 따른 인력지원 및 예산지원 등을 행할 필요가 있다. 행정심판에 많은 사건이 접수될 것이 예상되는 바, 결정기간이 길어지면 피해학생이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심판을 결정하도록 일부 개정될 필요 있다.

| 현행 | 개선안 |
|---|---|
|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br>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br>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br>④ 신설<br>④ 삭제 〈2019. 8. 20.〉<br>⑤ 삭제 〈2019. 8. 20.〉<br>⑥ 삭제 〈2019. 8. 20.〉<br>[본조신설 2012. 1. 26.]<br>[제목개정 2019. 8. 20.] |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br>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br>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다만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2019. 8. 20.〉<br>④ 학교폭력사건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br>④ -⑥ 생략 |

## 4.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의 보존·삭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

### 1) 현황

실태조사 결과 가해학생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의 졸업 및 일정기간 후 삭제방안에 대해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73.8%)는 응답이 많았다. 다음으로 '일부 조치만 졸업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시 즉시 삭제한다'(17.5%), '조치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3.8%), '졸업 이전에 삭제한다'(3.4%), '기타'(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 선도조치 기재를 삭제하는 데 반대한 학생들은 그 이유로는 '미기재시 가해학생들의 반성을 이끌어내기 어려움'(45.4%)을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 효과가 약화'(43.7%), '피해학생 보호 효과가 줄어듦'(8.3%) 등의 순으로 답했다.

반면 학생 선도조치 기재를 삭제하는 데 찬성한 학생들은 그 이유로 '가해학생이 반성한 경우에도 낙인효과가 남는 것을 방지'(71.1%)하는 것을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미기재시 교사가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가능성'(16.9%), '가해학생 반발에 따른 가·피해학생 간 법적 다툼 발생을 완화'(8.4%) 등의 순으로 답했다.

또한 가해학생의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 삭제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견은 존재하지만, 단계별·사안별로 선도조치 1~3호의 기재를 유보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학생(53.4%)과 학부모 및 관계자(66.0%)에서 과반이 넘는다.

## 2) 개선방안

### (1) 생활기록부 기재유보 범위 확대 필요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대상자 대부분은 현재의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가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에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가해학생의 선도와 변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조치는 가해학생의 생기부 기재로 인해 재심청구도 많이 발생하는 등 그리고 학교가 처벌이 아닌 교육적, 회복적 역할을 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피해학생들은 생활기록부 기재를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으므로 이러한 개정에 대해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서로 불만을 줄이면서 시행해 나가야 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일부 조치의 삭제'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도 적지 않음을 고려해, 학교폭력 당사자와 전체 구성원이 합의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명료한 기준과 적용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생각되는데, 이번 개정 법률에서도 기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가해학생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며 재발방지 약속이 된다면,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를 시킬 것인가 결정을 하기 전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대해 입법예고 된 내용을 보면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내용에서 동 조항 제1항제2호 학적사항을 기재시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 및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는 그 내용을 기재하고, 제1항제3호 출결사항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사항에 따른 것일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고 제1항제6호에 의하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 학교폭력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그리고 제7호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도 적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제21조제2항에 의하면 학교폭력으로 인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등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가해학생이 동일 학교급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초등학생의 경우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생기부에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해당 학생이 동일 학교급에서(초등학생의 경우 3년 내)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적지 않은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7호인 학급교체가 생기부 기재 유보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본다.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 하에서도 7호인 학급교체의 경우에 졸업직후에 삭제할 수 있도록 시행한 적이 있다. 한편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기준으로 0~4점까지 점수를 주는데. 가해학생 조치 1~3호 조치의 경우, 3호 조치가 최대 6점에 해당하며, 7호인 학급교체의 경우 13~15점에 해당하는데 1~3호 조치와 함께 7호 조치가 기재유보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학급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체 조치가 학교내 조치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 법 시행령에서 생기부 기재유보에 제7호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1호부터 9호까지 경한 조치부터 중한 조치 순으로 규정을 한 것이며, 각각의 조치가 나름대로 가해학생의 선도 및 징계와 관련하여 의마가 있는 조치임에도 1, 2, 3호 조치를 받기만 하면 모두 경미한 학교폭력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생기부 기재유보가 되는 조치를 받지 못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생기부 기재 유보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조치로 처분을 변경(행정심판) 또는 취소(행정심판, 행정소송)하기 위한 불복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 (2) 단계별 선도조치 기재 유보 방안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심의위의 역할 중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의 1~3호의 기재를 유보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학생(53.4%)과 학부모 및 관계자(66.0%)에서 과반이 넘게 나타났으므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무조건적인 선도조치 기재보다는 학생간 화해와 관계회복을 통한 학교폭력사건 처리를 희망하는 의견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피해학생 부모의 58.3%도 단계별 선도조치 기재 유보 방안이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한 결과도 이를 반영해 주고 있다.

사실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기 전의 자치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가 부족한 운영구조에서는 1~3호 조치 결정을 통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유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에 설치되고 위원회 구성이 보다 많은 전문가로 구성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우려는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즉 가해학생 조치 중 1-3호 조치는 1회에 한해 생기부에 기재를 유보하되 재학기간 중에 추가적인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는 이전에 기재 유보 된 조치도 함께 생기부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시행령 예고 내용에 의하면 생기부 기재 유보 조치의 유효기간은 동일 학교급 내로 하되 초등학생의 경우는 중고등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치일로부터 3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계별 선도조치 기재 유보의 조속한 정착과 수용을 위해서는 향후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할 심의위원회가 중립성, 투명성, 전문성과 관련해 학교폭력 당사자 및 구성원의 신뢰를 얻는 일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3) 법제 정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서 학교폭력 선도조치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유보하는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현행 | 개정안 |
|---|---|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br>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br>① 생략<br>② 제1항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가해학생이 동일 학교급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초등학교의 경우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적지 않는다.<br>③-⑥ 생략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br>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br>① 생략<br>② 제1항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제7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가해학생이 동일 학교급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초등학교의 경우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제7호의 조치사항을 적지 않는다.<br>③-⑥ 생략 |

## 5. 전담기구의 위원의 전문성 강화

### 1) 현황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처리과정 중요도에서 학부모와 업무관계자는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비밀보장'(4.44점)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학생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객관성 있는 사안처리'(4.34점), '자치위원회 위원의 중립성 유지'(4.33점), '정확한 사안조사 과정'(4.30점), '가해, 피해학생 한쪽의 요구에 편향되지 않는 공정한 조치'(4.29점), '자치위원회 진행 시 학생의 입장을 배려한 발언이나 질문'(4.23점), '자치위원회의 시의적절한 개최'(4.2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학생 학부모와 일반부모는 '사안처리과정에서의 비밀보장'을 가장 높게 답하였고, 관계자는 '정확한 사안조사 과정'(4.44점)이 학교폭력 처리과정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또한 학교폭력 처리과정의 개선방안 필요도와 관련해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명확한 역할 정립'(4.21점)이 가장 높았다.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지원'(4.18점), '자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법적, 심리적 안전 보장'(4.16점), '사안에 관련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 '사법적 절차를 따르는 현행 사안처리과정의 개선'(각 4.15점), '사안처리 과정에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응하는 교사의 공감적 마인드 및 상담기술'(4.12점), '가해학생 조치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및 연계지원'(4.11점), '학부모 특별교육 조치이행에 대한 탄력성 있는 운영', '사안처리에 따른 행정업무를 담당할 교사보조 인력지원'(각 4.07점), '교육지원청의 단위학교 컨설팅 및 지원'(4.06점), '일관된 해석이 가능한 정확한 사안처리 매뉴얼'(4.05점), '담임교사의 상담자적 역할'(3.98점), '전문가가 시행하는 가해, 피해학생들의 사과와 용서의 자리 마련'(3.92점), '사안처리 기록 및 보고에 따른 서류의 간소화'(3.88점), '처리절차 상의 실수에 대한 책임교사의 법적 책임 경감'(3.86점), '조치이후 관련 학생간의 갈등해결모임 개최'(3.7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개선방안

### (1) 전담기구 구성원에 학교폭력 전문가 포함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에 따르면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이 피해사실 및 가해사실 여부를 확인하게끔 되어 있으나, 실제 학교에서는 소속교원(책임교사) 1명이 모든 피해사실과 가해사실 확인 및 조사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책임교사의 열정과 성실성에 따라 사실관계 파악이 크게 달라진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개선 필요성이 가장 크게 요구된다. 더불어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에 보면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여부의 여부(경미한 사안인지 여부)를 전담기구가 심의하고, 그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그리고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의 학부모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전담기구가 심의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자치위원회와 달리 사안의 경중을 판단할 때 보다 전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학교폭력담당경찰관 및 변호사)가 구성원에서 제외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며, 최소한 1명의 전문가는 포함할 수 있도록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2) 전담기구 구성원인 학부모의 전문성 강화

전담기구가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됨으로써 개정 전의 자치위원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담기구의 구성원의 전문역량강화는 매우 필요하다. 왜냐하면 개정 전의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학부모의 비전문성이 문제점으로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담기구 구성원의 학부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이해교육,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 사건 처리절차, 회복적 사법 등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을 필수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이수해야 구성원의 자격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전담기구 구성원들도 자신들의 시간을 내어 전담기구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경비가 지원되어야 하므로 예산을 책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가 내지 전문교사 양성이 필요하며, 과목교사 또는 학교보안관처럼 각 학교별 상주하는 학교폭력 전담 교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학교폭력 전담교사 양성이 어렵다면 교육지원청에 전문가 풀을 마련하여 학교폭력 발생 학교에 전문가를 투입하여 전담기구의 공정성, 전문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법제 정비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전담기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따라서 전담기구 구성원에 학교폭력담당경찰관, 변호사 등 전문가 등이 적어도 1명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현행 | 개정안 |
|---|---|
|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
|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
|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현행 | 개정안 |
| --- | --- |
|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 말한다), 학부모, 학교폭력 전문가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

## 6. 학교폭력 관련 문서의 관리 강화

### 1) 현황

학교폭력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해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정확한 사안조사 과정'(3.40점)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자치위원회의 시의적절한 개최'(3.37점), '자치위원회 위원의 중립성 유지', '학생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객관성 있는 사안처리',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비밀보장'(각 3.21점), '자치위원회 진행시 학생의 입장을 배려한 발언이나 질문'(3.18점), '가해, 피해학생 한쪽의 요구에 편향되지 않는 공정한 조치'(3.1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학생들은 자치위원회가 내린 결과에 가해학생이 불복하여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한 경험을 가진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10.5%였다. 반면 자치위원회 결과에 대해 피해학생이 불복하여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한 경우는 5.3%로 나타났다.

### 2) 개선방안

#### (1) 학교폭력 관련 문서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와 심의에 중요한 자료인 관련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공정한 처리 도모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률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등에 전담기구의 조사기록을 보존하고 조사결과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등이 작성한 진술서는 전담기구 사안조사에서 생성되는 자료이므로 회의록에 포함되어 관리되는 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료는 아니므로 이를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학교폭력예방법이 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경기고등학교 사건인 대법원 판례(2010. 6. 10. 선고, 2010두2913)에서도 문제 되었던 근거 법률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일선 학교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에서 수사나 재판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그 요청하는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원법상 법령준수의무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어떤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위와 같은 수사나 재판상 학교폭력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문서를 제출할 수 있게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이므로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회의록에 대한 정밀하고 세밀한 작성과 보관이 필요하며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상 자치위원회 회의록은 대부분 요약, 생략 되어 있고 심지어 왜곡하여 기술된 경우도 있으며,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록의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한 건당 1 내지 1.5페이지에 불과하다거나 심지어 어떤 지역은 일괄 비공개 처리가 되어 회의록 확보가 불가능 한 경우도 있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처럼 운영되지 않게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비롯한 문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자료 분실 및 파기 등의 사건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학교장에게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에 관해 확인한 사항을 기록 보전하고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학교폭력 관련 문서의 체계적인 관리 소홀이나 분실로 인한 소모적인 분쟁 방지, 공정한 처리도모 등을 고려할 때 문서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규정을 상세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3) 법제 정비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교폭력 진술서, 회의록 등은 관련문서 등은 해당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학교폭력에 대한 자료의 기록 및 보존에 대한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현행 | 개정안 |
|---|---|
|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③ 생략<br>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신설 2019. 8. 20.〉<br>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br>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 5. 8., 2012. 3. 21., 2019. 8. 20.〉<br>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2. 3. 21., 2019. 8. 20.〉<br>⑧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br>⑨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③ 생략<br>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가해 및 피해 사실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록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br>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br>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 5. 8., 2012. 3. 21., 2019. 8. 20.〉<br>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2. 3. 21., 2019. 8. 20.〉<br>⑧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br>⑨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7.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 1) 현황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 57명 중 73.7%가 '피해경험이 고통스럽다'고 대답했으며, 68.4%는 '학교폭력 피해로 등교를 기피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학교폭력 피해로 자해경험이 있다' 응답자는 45.6%로 나타났다. 피해경험이 있는 여학생 중 52.6%가 자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66.7%는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자살시도를 경험한 학생비율도 47.4%로 나타나 학교폭력의 피해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학교폭력 사안조사과정의 경험과 관련해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사안조사 과정 중 피해학생(부모)으로서 충분하게 사안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2.95점), '사안조사 과정 중 피해학생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적이 있다'(2.75점), '사안조사 과정 중 피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3.25점) 등으로 답했다. 충분한 사안조사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피해학생의 인권침해요소가 여전히 존재함을 의미한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자치위원회 개최과정의 경험과 관련해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자치위원회 개최 과정 중 피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2.86점), '자치위원회 개최 과정 중 피해학생 및 학부모로서 적정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보장되었다'(2.84점), '자치위원회 개최 과정 중 피해학생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적이 있다'(2.79점) 등으로 답했다. 피해학생들은 인권침해, 개인정보 누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으나, 의견진술의 기회 또한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인식하였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자치위원회 조치결과와 관련해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자치위원회 조치결과 중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일반학생(목격학생)은 적정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편이다'(2.63점), '자치위원회 조치·결과 중 가해학생에 대해 내린 조치에 만족한다'(2.51점), '자치위원회 조치·결과 중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해학생이 잘 이행했다고 생각한다'(2.47점)으로 답했다. '자치위원회 조치·결과 중 가해학생이 불복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불편하였거나 불안하였다'가 3.21점으로 가장 높았다.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자치위원회 조치 및 결과와 관련해 가해학생의 불복시 불안감을 느끼며 가해학생에 내린 조치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 조치를 잘 이행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2) 개선방안

### (1) 피해학생에 대한 초기상담 활성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초기상담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피해학생 전문지원 및 상담, 사후관리 등을 위한 Wee클래스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폭력 2차 피해 및 보복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책을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신체적, 정서적 회복과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학교와 집 등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내 상담 시 학교폭력에 대해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지역의 Wee센터, 병원형 Wee센터, Wee닥터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상담을 필요로 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초기상담을 활성화 및 교내 상담 시 학교폭력에 대해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Wee센터 등에 대한 역할의 확대뿐만 아니라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한 분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Wee센터나 Wee클래스가 학교부적응, 위기청소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경우 심리적 특성상 이들과 분리하여 보호 및 치유를 위한 회복적 접근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2) 피해학생 2차 피해 예방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지속적인 상담 및 관리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 및 학급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강화가 필요하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반인 경우 담임 및 교과교사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에게도 학교폭력 피해 이후 징후를 관찰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다각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전담기관 중 일시보호 기관을 확대하고 학교 안에 피해학생이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학습권이 보장될 있는 방안도 마련하다. 현재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인 해맑음센터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여 피해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 회복과 안정을 회복하도록 다면적이고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수준이 아니라 심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진행 시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피해학생 회복을 위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지원 기관 안내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의 안내뿐만 아니라 단위 학교별 피해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정보제공에 대한 의무사항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3) 피해학생 치유 및 지원 확대

피해학생의 치유 및 지원을 위해 현재 안전공제회 등 선치료비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보상 수준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는 안전공제회에 대해 '알고 있다'는 43.5%, '모르겠다'는 56.5%로 모르겠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폭력 발생시 안전공제회 등에 대한 정보 등도 제공이 되어야 하며 공제회 지급대상범위를 피해로 발생하는 치료비 외에 부대비용도 포함하도록 하고 학교폭력 발생시 피해학생 부모들도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므로 이들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지원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치료비 지급기한을 현행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지급상한액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피해 경험은 피해학생들에게 일생동안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 지급기한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 (4) 피·가해학생을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피해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률자문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피해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여건에 따라 장·단기적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을 확충하고 피해유형 및 필요한 지원 특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화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력을 통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 상황별, 상태별 전문적이고 신속한 개입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도교육청, 지역의 민간단체간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정보접근성을 보장하여 피해학생과 그 가족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항상 정책을 수립할 때 피·가해학생 및 피·가해가족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정책에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정부, 지자체, 교육청, 민간단체,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및 학부모가 함께 논의하는 모니터링 및 소통을 위한 체계가 형성되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것이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정기적으로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및 그 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 도입도 필요하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피·가해학생 측, 심의위원,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의견을 청취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8.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등을 위한 전문시스템 구축

### 1) 현황

실태조사 결과 학생들은 학교폭력 전문상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7%로 나타났으며, '필요 없다'는 9.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과 관련해 손해배상 갈등의 중재역할을 수행할 제 3자의 필요도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87.8%로 나타났다. 또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를 선지원해주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24.1%로 낮게 나타났다.

업무담당자들은 화해·관계회복 조정역할을 수행할 주체로는 '중재전문기관 및 외부전문가'(50.0%)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다음으로 '선생님'(14.7%), '자치위원회'(12.7%), '학부모'(8.2%), '교육청·교육부'(6.5%), '학생'(4.6%), '필요없다'(2.9%), '기타'(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응답자 유형에서 '중재전문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법적 소송 및 치료비 요구 등의 분쟁해결 조정역할을 수행할 주체로 '중재전문기관 및 외부 전문가'(60.5%)를 가장 많이 답하였다. 다음으로 '자치위원회'(11.8%), '교육청·교육부'(11.4%), '선생님'(7.5%), '학부모'(6.9%), '필요없다'(1.3%)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응답자 유형에서 '중재전문기관 및 외부전문가'를 가장 많이 답했다.

### 2) 개선방안

#### (1)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전문기관 설치

효율적인 화해·분쟁조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폭력 사건처리의 단계별로 화해·분쟁조정의 방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초기부터 중재전문기관에서 파견된 외부전문가의 도움과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현행법에서 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에 설치되고 여기서 학교폭력사안을 다루면서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많은 사안을 심의위원회가 다룰 경우 심의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형식적으로 심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교와 심의위원회 사이에 학교폭력 화해나 분쟁조정을 위한 전문기관이 설치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학생들의 90.7%가 업무담당자들도 50% 이상이 중재기관이 필요성을 주장했고 특히 법적 소송이나 치료비 요구 등의 분쟁해결 등을 위해서는 중재전문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0%를 넘어선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폭력 피·가해학생들이 받는 조치가 학부모의 경제력으로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적인 기관으로 화해나 분쟁조정 전문기관 설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에 의하면 동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심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위원회의 의결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고 있다. 또한 소위원회의 위원은 5-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이 1/3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심의위원회의 일을 분산하기 위한 것이므로 권역별로 중재전문기관의 위탁·선정을 통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학교현장에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는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학교장, 교감, 학교폭력 담당교사 등 학교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화해·분쟁조정지침 안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학교현장에서의 조기개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2) 전담교원의 전문성 강화 필요

학교폭력사건 발생시 학교 내에서 공정한 업무분장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교원이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업무가 복잡하고 힘든 데다 초임 교사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업무담당 교원들의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한 기회를 확대하여 학교업무 담당 전 집중 연수를 시행하고, 학교폭력 전담교원 워크숍이나 학습공동체 형성 등을 통해 전담교원에 대한 역량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학교폭력 전담교원의 수업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시수 등을 경감시키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교육청 등은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 9. 학교폭력에 대한 회복적 사법 시스템 구축

### 1) 현황

설문조사 결과 학교폭력 처리원칙의 우선순위(1+2순위)로 '피해학생의 정서적 안정감과 회복(치유)'(48.7%)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가해학생의 잘못 인식과 진정한 사과 기회 제공'(36.9%),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이 원하는 해결방식의 파악',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각 23.5%),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및 파악'(18.0%),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화해와 관계회복'(17.0%), '사건 해결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주도적 참여'(13.7%), '사안처리의 공정성 확보'(11.8%), '상호수용 가능한 피해배상 계획의 협상'(6.9%) 등의 순이다.

당사자 간 화해절차 필요도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78.4%로 나타났다. 관계자 집단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비율이 87.8%로 가장 높았고, '일반 학부모'(84.0%), '피해학생 학부모'(64.6%) 등의 순이다. 당사자간 화해절차가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 '가해학생의 책임인식과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하다'(59.2%)에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학생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40.4%)이다. 모든 유형에서 '가해학생의 책임인식과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가 높게 나타났다.

### 2) 개선방안

#### (1) 학교폭력사안을 처벌보다는 교육차원에서 해결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대체로 응보적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만큼 가해학생에게도 '징계'라는 피해를 주어 균형을 맞추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피해학생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했고, 가해학생에게 본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에도 부족했다.

이러한 사안처리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가해학생의 관계회복을 전제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학교장 자체해결이 법제화되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일반 형사법과는 달리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더 나아가 두 학생의 갈등을 조정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었으므로 늦었지만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관계회복이 전제되지 않는 한 재발방지라는 피해학생의 안전은 담보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회복적 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학교폭력이 범죄라는 지금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교폭력을 미성숙한 학생 간의 갈등에서 기인한 관계적 문제(bullying)와 범죄(School violence)로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 불링은 관계회복으로 접근하고, 범죄는 형사처벌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금 선진국은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에게 형벌권을 행사한다는 응보적 사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사회가 중심이 되는 회복적 사법으로 옮겨가고 있다.

회복적 사법에서 가정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이고 피해자가 당당하게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신체적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했다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비행(학교폭력)으로부터 회복적 사법이 중요한 이유는 가해자는 사과를 하고 피해자는 사과를 받는 것이 당연한 환경에서 성장시키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런 행동습관들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 (2) 회복적 사법적 차원에서의 해결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회복적 갈등해결'은 학교폭력 사안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이 사안이 관련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명확히 파악한 후 피해학생에게는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고 가해학생에게는 본인의 잘못을 직면하고 책임지도록 하여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진행자가 필요하다. 이에 교육부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개발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2019. 12.경(예정) 단위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우선 회복적 사법센터(법무부 산하기관)를 개설하여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보다 민간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기관으로 운영·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유사한 프로그램의 운영 관행을 고려할 때 관이 주도하게 되면 실적 압박으로 인해 피해자 의사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우선하여 무리하게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회복적 사법센터의 구성원으로 가해자의 심리상태와 환경, 자책감과 반성의 정도, 피해자의 입장에 대한 사고 과정 등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경제적인 부담에 따른 문제가 있을 경우(가해자, 피해자 모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줄 수 있는 지자체 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 직원들의 참여도 필요하다. 가해학생이 진심어린 사과를 피해학생에게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전문가의 도움 역시 중요하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2018년부터 각 교육지원청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조정자문단을 운영하여 단위학교의 갈등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더해지면 학교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평화로운 갈등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피해와 관계를 회복할 힘이 길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분명한 것은 피해학생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는 것을 기본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함께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마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의 회복을 돕는 회복적 사법제도를 적용한 처리절차를 보완·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참고문헌

고은주·장영숙·김고은(2019),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와의 상관관계 메타분석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제19권 제3호, 한국보육학회.

교육부(2018),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교육부(2018), 『2018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2016),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의 분쟁 완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2018), 『2018 아동인권 현장모니터링 -학교폭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2018),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교원의 교원활동보호를 위한 법 개정토론회」.

금명자·오혜영·조은경·백현주·신주연(2017), 『청소년상담연구117-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연계체제 구축 방안』, 청소년상담연구.

김성태(2015),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고찰-법적용 실제에 있어서의 문제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6권 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세원(2018), “청소년기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이 초기 성인기 발달 결과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통권 제54호,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김승환·박현호(2019), “학교폭력의 양성 변화에 따른 처리절차 개선방안 연구”, 『경찰학논총』 제14권 제2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김영진·길태영(2017), “학교폭력의 현실과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은석·장미수(2019), “학교폭력 사안처리 유형화 및 영향요인: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제20권 제1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김이경·한유경·김성기(201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문화 개선방안연구』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김정연(2017), “판결 및 불복절차 사례를 통해 본 학교폭력예방법의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하영·양재영·이상민(2018), “학교폭력예방 수업을 통한 예비교사들의 학교폭력 인식 변화”,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7권 제2호, 한국체육과학회.

노윤호(2019),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의 모든 것』, 시공사.

박숙영(2017), 『좋은교사 교육정책포럼』, 좋은교사운동 회복적생활센터.

박헌국(2018), “학교폭력 예방대책 운영현황과 연계체제 분석”, 『한국경찰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경찰연구학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박현정(2019),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의 법적 성격에 관한 소고”, 『행정법연구』 제57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서울특별시교육청(2018), 『평화로운 학교를 위한 사안처리 Q&A』.

서울특별시교육청(2018),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서울특별시교육청(2018), 『학교폭력 사안처리 활동 사례집-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 활동을 중심으로』.

신강숙(2014), “행정심판 사례를 통하여 본 학교폭력예방법 고찰”, 『강원법학』 제41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신강숙(2017), “행정심판 사례를 통하여 본 학교폭력예방법 고찰”, 『강원법학』 제41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신윤미·장형윤·이제정(2015, 『학교폭력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아주대학교 국립공주병원.

왕건환·김성환·박재원·이상우·정유진(2019), 『학교폭력으로부터 학교를 구하라』, 에듀니티.

유순덕(2018),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경찰연구학회.

윤은경(20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소고”, 『강원법학』 제46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이경상·김승혜(2018),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간 효율적 화해·분쟁조정을 위한 연구”, 『블루노트 이슈&정책』 제 102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근영·박숙영·윤소민·최보라(2018),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대응방향 및 실천과제』 경기도교육연구원.

이미영·장은진(2015),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험한 학교폭력 맥락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28권 제3호, 한국심리학회.

이승현·정제영·강태훈·김무영(2014),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의 효과성 분석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완희(2018),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종단적 메커니즘 연구: 가해와 피해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제20권 제1호, 한국경찰학회.

이현정(2017), “학교폭력 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기준 고시」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8권 제3호, 미국헌법학회.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2019), 「학교폭력 현황 및 처리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임재연(2017), “학생이 경험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관련 교사 역량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지』 제14권 제2호, 한국심리학회.

임재연(2019), “화해 진행자가 경험한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의 화해와 회복의 요인에 관한 합의적 질적연구”, 『교육심리연구』, 한국교육심리학회.

장다혜·김정연·강지명·설경옥(2016), 『공동체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와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안(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응혁·최대현(2019), “학교폭력 대응에 있어서 경찰개입 개선방안”, 『경찰학논총』 제14권 제1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장혜진(20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서면사과 처분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서울고등법원 2015.2.6. 선고 2014카기589 판결을 중심으로-”, 『법과정책』 제23권 제2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장혜진(20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향에 대한 소고”, 『입법과정책』 제10권 제2호, 국회입법조사처.

전영주·아영아·이경희(2014), 『학교폭력예방 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정관희·조아미(2019), “행정심판 사례를 통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갈등분석:초등학교 사례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26권 제4호, 한국청소년학회.

정도철·박효정·김현진·김진구(2017), 『초등학생 학교폭력 실태와 대응 방안』한국교육개발원.

정세영·김성기·김화영(2016),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정책평가연구(IV)』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조성규(20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의 법적 문제”, 『행정법연구』 제56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조영일(2013),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26권 제2호, 한국심리학회.

최혜란(2019), “교육연극을 활용한 학교폭력 수업 사례 분석-생활지도와 인성 수업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제41권 제5호, 한국문화융합학회.

푸른나무청예단(2018), 『2017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연구』 푸른나무청예단.

푸른나무청예단(2019), 『2018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연구』 푸른나무청예단.

학교폭력예방연구소(2016), 『학교폭력 실태 종단연구(Ⅳ)』.

학교폭력예방연구소(2016),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정책 평가 연구(Ⅳ)』.

학교폭력예방연구소(2017), 『학교폭력 실태 종단연구(V)』.

학교폭력예방연구소(2017),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정책 평가 연구(V)』.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학교폭력예방연구소(2019),「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외(20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15년, 어떻게 개정해야 할 것인가?",「학교폭력예방법 개정관련 열린 포럼」.

한유경·이희숙·김성식·이윤희(2016), "학교폭력 경험 양상의 변동 실태 및 영향요인 분석",『아시아교육연구』제17권 제1호, 아시아교육연구.

한유경·김성식·이희숙·이윤희(2015),『학교폭력 심층실태분석 및 종단연구(III)』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한유경·김성식·이희숙·이윤희(2016),『학교폭력 실태 종단연구(IV)』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한유경·김성식·이희숙·이윤희·이주연(2014),『학교폭력 심층실태분석 및 종단연구(II)』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한유경·김성식·이희숙·황혜영(2017),『학교폭력 실태 종단연구(V)』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한유경·서경혜·김성식·박주형·이주연(2013),『학교폭력 심층실태분석 및 종단연구(II)』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한재경(2018),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 처리절차에 관한 고찰",『공공사회연구』제8권 제1호, 공공사회연구.

홍선영·구혜경(2017),『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 기능제고 및 활성화 방안』부산여성가족개발원.

김상진, "日 학교서 '이지메' 1년 새 10만 건 늘어… 자살, 30년 내 최다", 2017.10.27., https://news.joins.com/article/22056946, (최종방문일 2019. 8.13.)

Florida Department of Education, Florida Safe and Drug-Free Schools Program: State Report for 2009~2010.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Indicators of School Crime and Safety: 2017. 32·33. https://nces.ed.gov/pubs2018/2018036.pdf (최종방문일 2019. 8. 13.).

NYSED.gov, "The Dignity for all Students Act", http://www.p12.nysed.gov/dignityact(최종방문일2019. 8.13)

The Hanin Herald Korean Newspaper, 11. 12., 2018.

文部科學省, https://www.mext.go.jp/a_menu/shotou/seitoshidou/07020609.htm#a0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부록

부록1. 학생 설문조사지
부록2. 피해학생 학부모 설문조사지
부록3. 일반 학부모 및 관계자 설문조사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 부록1. 학생 설문조사지

#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에 대한 인식조사'

# - 조사표 (A. 학생통합)-

2019. 8.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작성일 : 2019년 월 일

| ID | | | | | | - | |
|---|---|---|---|---|---|---|---|

#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에 대한 인식조사 (A)

안녕하세요? 먼저 바쁜 가운데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연구용역을 위탁받아 학교폭력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인권적, 법적, 교육적, 회복적 측면에서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법제 및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학교폭력 및 학교폭력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물어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의 결과는 학교폭력예방 등을 위한 법제 및 처리절차 가이드를 마련하는 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순수한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본 설문지에 대한 응답에는 맞고 틀림이 없으므로 평소 여러분의 평소 생각대로 편안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답이 더욱 귀중하고 가치 있는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읽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주관기관<br>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실사기관 | (주)네오알앤에스<br>담당 : OOO 대리 02-0000-0000 |
|---|---|---|---|
| 조사원 | | 검수원 | 입력원 |

## A 일반사항

**A1** 다음 사항 중 해당하는 곳을 V표시로 체크해주십시오.

| | | | | | | | | |
|---|---|---|---|---|---|---|---|---|
| A1 성별 | ① 남 | | | ② 여 | | | | |
| A2 학년 | ① 중학교 1학년 | | ② 중학교 2학년 | | ③ 중학교 3학년 | | | |
| | ④ 고등학교 1학년 | | ⑤ 고등학교 2학년 | | | | | |
| A3 학교유형 | [ 고등학교 재학생 대상 ▶ ] | ① 일반고 | | ② 전문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등) | | | | |
| A4 가족유형 | ① 양부모가족 (아버지, 어머니 모두와 함께 사는 경우) | | | ② 한부모가족 (아버지, 어머니 중 한명과 함께 사는 경우) | | | | |
| | ③ 조손가정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는 경우) | | | ④ 3세대 가정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경우) | | | | |
| | ⑤ 소년소녀가정 | | | ⑥ 다문화 가정 | | | | |
| | ⑦ 새터민 가정 | | | ⑧ 기타( ) | | | | |
| A5 거주지역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⑥ 대전 | ⑦ 울산 | ⑧ 경기 | ⑨ 강원 |
| | ⑩ 충남 | ⑪ 충북 | ⑫ 전남 | ⑬ 전북 | ⑭ 경남 | ⑮ 경북 | ⑯ 제주 | ⑰ 세종 | |
| A6 나의 공부 수준 | ① 매우 못 한다 | ② 못하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잘 하는 편이다 | ⑤ 매우 잘 한다 | | |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B 학교폭력 인식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몸에 상처가 나게 하는 것),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을 지배하여 자유를 침해하는 것), **명예훼손·모욕**(욕하기, 나쁜 소문내기, 놀리기, 별명 부르기), **공갈**(폭행, 협박을 통해 겁을 주고, 이익을 취득하는 것),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B1** 다음 문장을 읽고 각각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과 가까운 번호에 표시해주십시오.

| 구분 | 학교폭력이다 | 학교폭력이 아니다 | 잘 모르겠다 |
|---|---|---|---|
| (1) 욕을 하거나 별명을 부르며 놀린다. | ① | ② | ③ |
| (2) 놀이나 게임을 하는 중에 때리거나 괴롭힌다. | ① | ② | ③ |
| (3) 하기 싫은데 억지로 선후배 신고식과 졸업식 뒤풀이를 한다. | ① | ② | ③ |
| (4) 말을 듣게 하려고 무섭게 겁을 준다 | ① | ② | ③ |
| (5) 상대방이 먼저 때리거나 욕을 해서 나도 때리고 욕한다 | ① | ② | ③ |
| (6) 친구가 싫어하는데 심부름을 시킨다 | ① | ② | ③ |
| (7)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놀린다 | ① | ② | ③ |

**B2** 다음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① 친구를 때리거나 다치게 함
② 돈이나 물건 등을 가져가거나 빼앗음
③ 친구가 싫다고 하는 데 심한 장난을 치며 괴롭힘
④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따돌림
⑤ 욕을 하거나 나쁜 소문을 냄
⑥ 말을 듣게 하려고 무섭게 겁을 줌
⑦ 친구가 싫어하는데 심부름을 시킴
⑧ 좁은 곳이나 특정 공간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함
⑨ 싫은데도 옷을 벗기거나 내 몸을 만지려하는 등 성(性)적으로 괴롭힘
⑩ 사이버(인터넷, 휴대폰 등)에서 욕을 하거나 사진, 영상을 올려 괴롭힘

**B3** 여러분의 주변에서 학교폭력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 발생하지 않는다 | 가끔·간혹 발생한다 | 자주·빈번하게 발생한다 |
|---|---|---|---|
| ① | ② | ③ | ④ |

**B4** 여러분은 학교폭력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까?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심각하지 않다 | 보통이다 | 심각하다 | 매우 심각하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B5**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피해학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② 가해학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③ 교사·학교의 무관심 때문에
④ 학업스트레스·입시 위주 교육 때문에
⑤ 부모 등 가정 문제 때문에
⑥ 폭력적인 문화 매체 때문에
⑦ 기타 (　　)

**B6**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스트레스 때문에
② 장난
③ 오해와 갈등
④ 친구나 선배 등이 시켜서
⑤ 보복
⑥ 화가 나서
⑦ 피해학생이 잘못해서
⑧ 이유 없음

**B7**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 가장 잘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그냥 참으면 해결된다
② 말로 하지 말라고 한다
③ 친구와 방법을 의논한다
④ 함께 싸운다
⑤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알린다
⑥ 선생님이나 학교에 알린다
⑦ 상대방을 피하거나 이사 또는 전학을 간다
⑧ 경찰서에 신고한다
⑨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humanrights.go.kr KOR 국가인권위원회

**B8** 현재 학교에 '일진회'와 같은 폭력 서클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B9** '폭력서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없어져야 하며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②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고 분위기를 흐린다
③ 나와 상관없다
④ 폭력서클 학생은 생각보다 괜찮고 평범하다
⑤ 폭력서클은 멋있고 나도 속하고 싶다

## C 학교폭력 피해 및 조치

**C1** 다음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피해경험이 있다면 해당되는 곳에 V표기해 주세요

| 구분 | 아니다 | 그렇다 |
|---|---|---|
| (1) 다른 학생에게 맞은 적이 있다 | ① | ② |
| (2) 돈이나 물건을 뺏긴 적이 있다 | ① | ② |
| (3) 협박이나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 | ① | ② |
| (4)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 | ① | ② |
| (5) 괴롭힘(지나치게 괴로운 장난)을 당한 적이 있다 | ① | ② |
| (6)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 ① | ② |
| (7) 강요, 강제심부름(셔틀)을 당한 적이 있다 | ① | ② |
| (8) 사이버폭력(인터넷, 휴대폰, SNS 등에서 욕설, 동영상 촬영 및 유포)을 당한 적이 있다 | ① | ② |
| (9) 성적인 놀림과 접촉을 당한 경험이 있다 | ① | ② |

**C2** 다음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해경험이 있다면 해당되는 곳에 V표기해 주세요

| 구분 | 아니다 | 그렇다 |
|---|---|---|
| (1) 다른 학생을 때린 적이 있다 | ① | ② |
| (2) 다른 학생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다 | ① | ② |
| (3) 다른 학생에게 협박이나 위협을 한 적이 있다 | ① | ② |
| (4) 다른 학생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 ① | ② |
| (5) 다른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힌(지나치게 괴로운 장난) 적이 있다 | ① | ② |
| (6) 다른 학생을 집단적으로 따돌린 적이 있다 | ① | ② |
| (7) 다른 학생에게 강요, 강제심부름(셔틀)을 시킨 적이 있다 | ① | ② |
| (8) 다른 학생에게 성사이버폭력(인터넷, 휴대폰, SNS 등에서 욕설, 동영상 촬영 및 유포)을 가한 적이 있다 | ① | ② |
| (9) 다른 학생에게 성적인 놀림과 접촉을 한 경험이 있다 | ① | ② |

**C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통한 문제해결을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까?

① 학교폭력 가해자로 경험해본 적이 있다 [☞ CB1로 이동]
② 학교폭력 피해자로 경험해본 적이 있다 [☞ CA1로 이동]
③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로 둘 다 경험해본 적이 있다 [☞ CA1, CB1로 이동]
④ 경험해본 적이 없다 [☞ CC1로 이동]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C 학교폭력 피해 및 조치 (피해학생 : C3문항에서 ②, ③을 선택한 경우만 응답)

**C4**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10점에 가까울수록 더욱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 | | 고통스럽지 않다 | | 보통이다 | | 고통스럽다 | | 매우 고통스럽다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C5**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C6**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 구분 | 없다 | 일 년에 1~2번 | 한 달에 1~2번 | 일주일에 1~2번 | 하루에 1번 이상 |
|---|---|---|---|---|---|
| (1)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자해*를 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죽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자살을 시도해본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자해 : 스스로 자기 몸을 다치게 하는 행위

**C7** 자해·자살 생각·자살 시도 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① 부모님을 생각한다
② 내 편이 있다고 생각한다
③ 관심·이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④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
⑤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한다
⑥ 기타 (　　)

**C8**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 [☞ C8-1로 이동]
② 부모님께 도움을 청했다
③ 학교 선생님께 도움을 청했다
④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⑤ 학교폭력전문기관(예:학교폭력피해자전담기관)에 도움을 청했다
⑥ 청소년 상담실(예:Wee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⑦ 117에 신고하여 도움을 청했다
⑧ 학교폭력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했다
— [☞ C8-2로 이동]

**C8-1** (CA5에서 ①을 선택한 응답자만)
피해를 당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② 야단맞을 것 같아서
③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④ 일이 커질 것 같아서
⑤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⑥ 가해자로부터 보복당할 것 같아서
⑦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할지 몰라서

**C8-2** (C8에서 ②, ③, ④, ⑤, ⑥, ⑦, ⑧을 선택한 응답자만)
요청한 도움 방법이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 도움이 안 되었다 | 보통이다 | 도움이 되었다 | 매우 도움이 되었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C9**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후 다음 중 어떠한 조치를 받았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② 가해 학생에게 사과를 받았다
③ 부모님께 도움과 위로를 받았다
④ 학교 선생님께 도움과 위로를 받았다
⑤ 가해 학생에게 물질적인 보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았다
⑥ 병원 치료 혹 심리 상담을 받았다
⑦ 학폭위에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았다 [☞ CA6-1로 이동]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C9-1** (C9에서 ⑦을 선택한 응답자만)
**학폭위에서 받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무엇입니까?**

①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학교폭력으로 받은 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② 2호 일시 보호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 상담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③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생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출석하지 않고 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4호 학급교체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길 수 있다)
⑤ 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그 밖에 의료기관, 법률 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C10** **여러분이 받은 조치가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 도움이 안 되었다 | 보통이다 | 도움이 되었다 | 매우 도움이 되었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C12** **학교폭력 피해에서 벗어났습니까?**

① 아직도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 [☞ CA9로 이동]
② 학교폭력 피해에서 벗어났다 [☞ CA8-1로 이동]

**C12-1** (C12에서 ②을 선택한 응답자만)
**학교폭력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부터 최대 3개까지 선택해주세요.**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① 부모님께 알려 도움을 받았다
② 학교 선생님께 알려 도움을 받았다
③ 학교폭력 전담기구 및 학폭위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았다
④ 친구들에게 알려 도움을 받았다
⑤ 학교폭력 전문기관이나 청소년상담실에서 도움을 받았다
⑥ 117, 학교폭력전담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았다
⑦ 혼자 힘으로 해결했다
⑧ 환경이 바뀌었다 (졸업, 진급, 전학 등)

**C13** **학교폭력 사건 신고 후 가해학생의 태도나 반응은 어땠습니까?**

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했다
② 폭력은 멈추었지만 반성과 사과는 하지 않았다
③ 신고 이후에도 학교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④ 신고 이후 더 심하게 학교폭력을 가했다

**C14** **학교폭력 사건 신고 후에 경험한 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 구분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주변 학생들이 가해학생이 잘못했다고 말하며 가해학생을 나무라는 태도를 보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주변 학생들은 가해학생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주변 학생들은 피해학생인 나를 위로하며 도와주려 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주변 학생들이 피해학생인 나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C15** **학교폭력 사안조사 과정 및 학폭위 개최 및 조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 구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학교폭력 사안조사 과정 | (1) 피해학생으로서 충분하게 사안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2) 피해학생인 나의 인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3) 피해학생인 나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학폭위* 개최 과정 | (4) 피해학생인 나의 인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5) 피해학생인 나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6) 피해학생으로서 적정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보장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학폭위 조치/결과 | (7) 가해학생에 대해 내린 조치에 만족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8)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해학생이 잘 이행했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9) 가해학생이 불복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불편하였거나 불안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10)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일반학생(목격학생)은 적정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학폭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C16** 가해학생이 학폭위가 내린 조치에 불복해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C17** 피해학생으로서 학폭위가 내린 조치에 불복해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C18** 피해학생으로서 학폭위가 내린 조치에 불복했을 때 할 수 있는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관해 안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C19** 피해학생으로서 가해학생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① 있다 [☞ C19-1로 이동] ② 없다 [☞ C20로 이동] ③ 잘 모르겠다 [☞ C20로 이동]

**C19-1** (CA15에서 ①을 선택한 응답자만)
가해학생에 대해 형사고소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조치가 지나치게 경미하였기 때문에
② 가해학생이 학폭위 조치 이후에도 사과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③ 치료비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④ 기타 ( )

**C20** 피해학생으로서 가해학생에 대해서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C21**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사후처리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 구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 가해학생이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 피해학생으로서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나 절차 참여가 충분히 보장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 가해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소장작성이나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쉬운편이다 (가해학생, 보호자 인적사항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 치료 및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요양비용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치료 및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받는 요양비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C22** 학교폭력사건을 경험한 후, 다니던 학교에서 다른 학교나 기관으로 옮긴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옮기지는 않았지만, 고민했었다

## C 학교폭력 피해 및 조치 (가해학생 : C3문항에서 ①, ③을 선택한 경우만 응답)

**C23** 여러분이 다른 학생에게 한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난 잘못하지 않았다 ② 내 행동이 지나쳤다 ③ 피해학생에게 미안하다
④ 부끄럽다 ⑤ 후회한다 ⑥ 아무 생각 없다
⑦ 기타 ( )

**C24** 학교폭력을 행한 후에 다음 중 어떤 조치를 받았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았다 ② 피해학생에게 사과했다
③ 부모님께 꾸지람을 들었다 ④ 학교 선생님이 아셔서 꾸지람을 듣거나 벌을 받았다
⑤ 피해학생에게 물질적인 보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했다 ⑥ 경찰서에 신고되어 조사 및 법적 처벌을 받았다
⑦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받았다 [☞ C24-1로 이동]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C24-1** (C24에서 ⑦을 선택한 응답자만)
**학폭위에서 받은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는 무엇입니까?**

①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한다)
②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피해학생이나 신고 및 고발학생에 대한 의도적인 보복이나 접촉을 금지한다)
③ 3호 학교에서의 봉사
(학교 내 봉사를 통해 반성의 기회로 삼는다)
④ 4호 사회 봉사
(사회 내 봉사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반성하는 기회로 삼는다)
⑤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⑥ 6호 출석정지
(학교에 일시적으로 출석하지 못함으로써 반성의 기회로 삼는다)
⑦ 7호 학급교체
(격리하기 위하여 다른 학급으로 옮긴다)
⑧ 8호 전학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도록 한다)
⑨ 9호 퇴학
(학생을 선도 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취한다)

**C25** **여러분이 받은 선도·교육 조치가 학교폭력을 멈추고 반성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 도움이 안 되었다 | 보통이다 | 도움이 되었다 | 매우 도움이 되었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C26** **학폭위의 선도·교육 조치를 받고 나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습니까?**

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반성했다
②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③ 피해학생에게 보복하고 싶었다
④ 조치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했다
⑤ 이번에는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다
⑥ 기타 (　　)

**C27** **학폭위의 선도·교육 조치를 받고 나서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 전혀 변화가 없었다 | 별로 변화가 없었다 | 보통이다 |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다 | 큰 변화가 있었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C28**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 학교에서 교육내용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안내가 있었습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C29** **학폭위의 선도·교육 조치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재심절차, 행정심판, 소송 등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 C29-1로 이동]
② 모른다 [☞ C30으로 이동]

**C29-1** (C29에서 ①을 선택한 응답자만)
**재심절차를 알고 있다면, 재심절차를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C30** **학폭위의 선도·교육 조치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재심절차, 행정심판, 소송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C31** **학교폭력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① 학교폭력을 계속하고 있다 [☞ C32로 이동]
② 학교폭력을 그만두었다 [☞ C31-1로 이동]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C31-1** (C31에서 ②을 선택한 응답자만)
**학교폭력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스스로 나쁜 행동임을 알게 되어서
② 부모님에게 꾸지람을 듣거나 교육을 받아서
③ 학교 선생님에게 꾸지람을 듣거나 교육을 받아서
④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아서
⑤ 경찰서에 신고 되어서
⑥ 함께 학교폭력을 했던 친구를 멀리해서
⑦ 학교폭력 교육을 받고 생각이 바뀌어서
⑧ 피해 친구와 떨어져 지내서(학급교체, 접촉금지, 출석정지 등)
⑨ 환경이 바뀌어서 (전학, 졸업 등)

**C32** **학교폭력 사안조사 과정 및 학폭위 개최 및 조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 구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학교폭력 사안조사 과정 | (1) 가해학생으로서 충분하게 사안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2) 가해학생인 나의 인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3) 가해학생인 나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학폭위* 개최 과정 | (4) 가해학생인 나의 인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5) 가해학생인 나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6) 가해학생으로서 적정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보장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학폭위 조치/결과 | (7) 가해학생인 나에게 내린 조치에 만족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8) 가해학생인 나에게 내린 조치를 잘 이행했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9) 피해학생이 불복하는 경우 가해학생의 입장에서 불편하였거나 불안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10)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일반학생(목격학생)은 적정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학폭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C 학교폭력 피해 및 조치 (일반학생 : C3문항에서 ④을 선택한 경우만 응답)

**C33**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C33-1로 이동]
② 없다 [☞ C34로 이동]

**C33-1** (C33-1에서 ①을 선택한 응답자만)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들었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들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별 느낌 없다
② 무섭다
③ 화가 난다
④ 우울하다
⑤ 피해학생이 안타깝다
⑥ 도와줄 수 없어 속상하다
⑦ 기타 ( )

**C33-2** (C33-1에서 ①을 선택한 응답자만)
**학교폭력을 목격한 다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부모님께 알렸다
② 선생님께 알렸다
③ 경찰에 신고했다
④ 상담센터에 알렸다
⑤ 직접 말렸다
⑥ 피해학생을 돕거나 위로했다
⑦ 모른척 했다 [☞ C33-3으로 이동]

**C33-3** (C33-2에서 ⑦을 선택한 응답자만)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모른 척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같이 피해를 당할까봐
②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서
③ 관심이 없어서
④ 도와줘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⑥ 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C34**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보고 모르는 척 하는 것도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학교폭력이다
② 학교폭력이 아니다
③ 잘 모르겠다

**C35** **학교폭력 목격 시 다음 중 어떤 행동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담임선생님에게 알린다
② 학교에 알린다(학교 홈페이지, 신고함, 문자, 이메일 등)
③ 117 또는 경찰에 신고한다
④ 부모님께 알린다
⑤ 친구나 선배에게 말한다
⑥ 어떤 방법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D 학교폭력 예방

**D6**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D6-1로 이동] ② 없다 [☞ D7로 이동]

**D6-1** (D6에서 ①을 선택한 응답자만)
받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유형별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 구분 | 전혀 효과 없음 | 효과 없음 | 보통이다 | 효과적이다 | 매우 효과적이다 |
|---|---|---|---|---|---|
| (1) 학급단위의 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학년별 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강당에 모여서 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방송을 통한 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가정통신문 자료배포 | ① | ② | ③ | ④ | ⑤ |

**D7** 학교폭력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학교문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생·교사·학부모가 상호협력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적 학교문화 ② 학생 인성 중시의 학교문화
③ 학생 인권 존중의 학교문화 ④ 교사의 권위 및 전문성 중시의 학교문화
⑤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의 학교문화 ⑥ 가정 및 관련 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권장되는 학교문화
⑦ 기타 ( )

**D8**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 과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번호에 ✓하여 주십시오.

| 구분 | 전혀 중요하지 않음 | 중요하지 않음 | 보통 | 중요함 | 매우 중요함 |
|---|---|---|---|---|---|
| (1)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보급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정서, 행동 상의 문제 학생을 위한 전문상담인력 확대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학생과의 소통 및 공감능력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활동 활성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학교출석정지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및 대안교실 확대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학부모 소환제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인 제도 확대(또래조정, 화해권고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D13** 학교폭력 예방 법률 및 학폭위를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 D13-1로 이동] ② 모르겠다 [☞ D15로 이동]

**D13-1** (D13에서 ①을 선택한 응답자만)
학교폭력 예방 법률 및 학폭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없다

**D13-2** (D13에서 ①을 선택한 응답자만)
학교폭력 예방 법률 및 학폭위가 학교폭력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도움이 되지 않았다 | 보통이다 | 도움이 되었다 | 매우 도움이 되었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D15** 현재는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이라 하더라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담임교사나 학교장의 재량종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 D15-1로 이동] ② 반대한다 [☞ D15-4로 이동]

**D15-1** (D15에서 ①를 선택한 응답자만)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고 학교 자체해결(담임교사나 학교장의 재량종결)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처벌보다는 교육적 선도와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② 자치위원회 진행에 따라 피·가해학생과 그 보호자 사이의 갈등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자치위원회 행정업무 감소로 교사 본연의 학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④ 기타 ( )

9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D15-2** (D15에서 ①를 선택한 응답자만)
**학교 자체해결(담임교사나 학교장의 재량종결)을 원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단순싸움(말싸움) ② 헛소문/뒷말 ③ 따돌림
④ 폭행 ⑤ 상해 ⑥ 기타 ( )

**D15-3** (D15에서 ①를 선택한 응답자만)
**어떤 사안인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학교 자체해결(담임교사나 학교장의 재량종결)하시길 원하십니까?**

① 피해학생 또는 부모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절차를 원하지 않는 경우
②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③ 사안이 학교폭력 판단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④ 현행 학교폭력 개념이 너무 넓어서 학교폭력으로 분류되나 교사로서 판단하기에 대등한 당사자 간의 싸움으로 생활지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경우
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⑥ 학교폭력으로 분류되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화해와 관계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⑦ 기타 ( )

**D15-4** (D15에서 ②를 선택한 응답자만)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고 학교 자체해결(담임교사나 학교장의 재량종결)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모든 학교폭력은 경미하지 않은 폭력으로 보고 대처해야하기 때문이다.
② 학교나 가해학생 측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③ 경미한 학교폭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④ 기타 ( )

**D1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학교 자체해결(담임교사나 학교장의 재량종결) 시 우려 점은 무엇입니까?**

① 없다
②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 짓기 어려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리가 적합하지 않음
③ 피해학생 부모들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
④ 가해학생 부모들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
⑤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우려
⑥ 가해학생의 잘못 인식과 진정한 반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우려
⑦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조치가 재범방지를 위해 비효과적이라는 우려
⑧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에 대한 우려
⑨ 향후 재심에 대한 우려
⑩ 기타 ( )

**D17** **현재는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졸업 시나 일정 기간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조치 기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①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 — [☞ D17-1로 이동]
② 일부조치만 졸업 시 즉시 삭제한다
③ 졸업 이전에 삭제한다
④ 조치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 [☞ D17-2로 이동]
⑤ 기타 ( )

**D17-1** (D17에서 ①를 선택한 응답자만)
**삭제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미기재 시 가해학생들의 반성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②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 효과가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③ 피해학생 보호 효과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④ 기타 ( )

**D17-2** (D17에서 ②를 선택한 응답자만)
**삭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가해학생이 반성한 경우에도 낙인효과가 남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미기재 시 교사가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③ 가해학생 반발에 따른 가·피해학생 간 법적 다툼 발생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④ 기타 (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D18** 다음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선도·교육 조치입니다. 다음 방법들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구분 |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조금 도움이 된다 | 매우 도움이 된다 |
|---|---|---|---|---|---|
|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피해학생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학교에서의 봉사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사회봉사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출석정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학급교체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전학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퇴학 | ① | ② | ③ | ④ | ⑤ |

**D19**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선도·교육 조치 중 1호~3호는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는 대신, 아래와 같은 3단계 안전장치를 적용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방안이 학교폭력의 처리과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1단계: 1-3호 조치의 경우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에 한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한다.
2단계: 2회 이상 1-3호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조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이전 조치를 포함하여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3단계: 학교폭력 재발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을 유도하기 위해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내 개인상담을 포함하고 인성교육감성교육 등으로 특별교육을 구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활용을 추진한다.

| 전혀 도움이 안될 것이다 | 별 도움이 안될 것이다 | 보통이다 |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이다 |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D20** 다음은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에게 취해지는 보호조치입니다. 다음 방법들이 피해학생의 보호와 안정을 취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구분 |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조금 도움이 된다 | 매우 도움이 된다 |
|---|---|---|---|---|---|
| (1) 심리상담 및 조언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일시 보호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학급교체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그밖의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 ① | ② | ③ | ④ | ⑤ |

**D21**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 D21-1로 이동] ② 모르겠다 [☞ D22로 이동]

**D21-1**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이 학교폭력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도움이 되지 않았다 | 보통이다 | 도움이 되었다 | 매우 도움이 되었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D22** 학교폭력으로 또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화해 및 관계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화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① 필요없다 ② 학생 ③ 학부모
④ 선생님 ⑤ 학폭위 ⑥ 교육청/교육부
⑦ 중재전문기관 및 외부 전문가 ⑧ 기타 ( )

**D23** 학교폭력으로 법적 소송 및 치료비 요구 등이 생길 경우 분쟁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① 필요없다 ② 학부모 ③ 선생님 ④ 학폭위
⑤ 교육청/교육부 ⑥ 중재전문기관 및 외부 전문가 ⑥ 기타 ( )

1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D24** 학교폭력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 없다

**D25** 학교폭력 발생 시 손해배상(치료비, 금전적)갈등 또는 분쟁이 생겼을 경우 다른 사람이 중재(화해)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 없다

**D26**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를 선지원 받을 수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겠다

**D28** 학교에서 운영하는 Wee클래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고 이용해본 적 있다 [☞ D28-1로 이동] ② 알고 있지만, 이용해본 적은 없다 [☞ D29로 이동]
① 모른다 [☞ D29로 이동]

**D28-1** (D28에서 ①를 선택한 응답자만)
Wee클래스를 알게 된 경로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선생님 ② 학교전담경찰관 ③ 가족 ④ 친구 ⑤ 기타 ( )

**D28-2** (D28에서 ①를 선택한 응답자만)
Wee클래스에서 이용한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①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② 진로 및 학업 상담 ③ 멘토, 멘티 프로그램
④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⑤ 기타

**D29**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Wee클래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D3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으로 다양한 대책들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의 각 대책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관련한 만족도를 해당하는 곳에 V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
|---|---|---|---|---|---|
| (1)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배움터지킴이 등 학교내 학생보호인력 배치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Wee 프로젝트(Wee 클래스, Wee 센터, Wee스쿨, 가정형 Wee센터 등) 확대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학교내 CCTV 설치확대 및 CCTV 모니터링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체육, 스포츠 활동 확대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연극, 뮤지컬 관람, 연극, 역할극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학생 자치활동 확대(또래상담, 또래조정, 학생자치법정)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강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교원의 상담, 생활지도 강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학교별 전문상담인력 확대배치 및 전문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확대 | ① | ② | ③ | ④ | ⑤ |
| (13)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확대 및 학교지원 강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설문에 응답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 ※ 부록2. 피해학생 학부모 설문조사지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에 대한 인식조사'**

**- 조사표(B. 피해경험 학부모) -**

2019. 8.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작성일 : 2019년 월 일

| ID | | | | | | - | |
|---|---|---|---|---|---|---|---|

#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에 대한 인식조사 (D)

안녕하세요? 먼저 바쁜 가운데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연구용역을 위탁받아 학교폭력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인권적, 법적, 교육적, 회복적 측면에서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법제 및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학교폭력 및 학교폭력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물어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의 결과는 학교폭력예방 등을 위한 법제 및 처리절차 가이드를 마련하는 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순수한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본 설문지에 대한 응답에는 맞고 틀림이 없으므로 평소 여러분의 평소 생각대로 편안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답이 더욱 귀중하고 가치 있는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읽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주관기관<br>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실사기관 | (주)네오알앤에스<br>담당 : OOO 대리 02-0000-0000 |
|---|---|---|---|
| 조사원 | | 검수원 | 입력원 |

## A 일반사항

**A 다음 사항 중 해당하는 곳을 V표시로 체크해주십시오.**

| | | | | | | | | |
|---|---|---|---|---|---|---|---|---|
| A1 성별 | ① 남 | | | ② 여 | | | | |
| A7 학생과의 관계 | ① 아버지 | ② 어머니 | | ③ 할아버지 | | ④ 할머니 | | |
| | ⑤ 삼촌/외삼촌 | ⑥ 고모/이모 | | ⑦ 기타( ) | | | | |
| A4 가족유형 | ① 양부모가족 (아버지, 어머니 모두와 함께 사는 경우) | | | ② 한부모가족 (아버지, 어머니 중 한명과 함께 사는 경우) | | | | |
| | ③ 조손가정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는 경우) | | | ④ 3세대 가정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경우) | | | | |
| | ⑤ 소년소녀가정 | | | ⑥ 다문화 가정 | | | | |
| | ⑦ 새터민 가정 | | | ⑧ 기타( ) | | | | |
| A5 거주지역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⑥ 대전 | ⑦ 울산 | ⑧ 경기 | ⑨ 강원 |
| | ⑩ 충남 | ⑪ 충북 | ⑫ 전남 | ⑬ 전북 | ⑭ 경남 | ⑮ 경북 | ⑯ 제주 | ⑰ 세종 | |
| A8 가정경제 수준 | ① 매우 어렵다 | ② 조금 어렵다 | ③ 보통이다 | ④ 잘 사는 편이다 | ⑤ 매우 잘 산다 | | |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B 학교폭력 인식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몸에 상처가 나게 하는 것),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을 지배하여 자유를 침해하는 것), **명예훼손·모욕**(욕하기, 나쁜 소문내기, 놀리기, 별명 부르기), **공갈**(폭행, 협박을 통해 겁을 주고, 이익을 취득하는 것),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B3** 현재 학교폭력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 발생하지 않는다 | 가끔·간혹 발생한다 | 자주·빈번하게 발생한다 |
|---|---|---|---|
| ① | ② | ③ | ④ |

**B4** 학교폭력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까?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심각하지 않다 | 보통이다 | 심각하다 | 매우 심각하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B5**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피해학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② 가해학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③ 교사·학교의 무관심 때문에
④ 학업스트레스·입시 위주 교육 때문에
⑤ 부모 등 가정 문제 때문에
⑥ 폭력적인 문화 매체 때문에
⑦ 기타 (　　)

**B6**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스트레스 때문에
② 장난
③ 오해와 갈등
④ 친구나 선배 등이 시켜서
⑤ 보복
⑥ 화가 나서
⑦ 피해학생이 잘못해서
⑧ 이유 없음

**B7**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 피해학생으로서 대처하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그냥 참으면 해결된다
② 말로 하지 말라고 한다
③ 친구와 방법을 의논한다
④ 함께 싸운다
⑤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알린다
⑥ 선생님이나 학교에 알린다
⑦ 상대방을 피하거나 이사 또는 전학을 간다
⑧ 경찰서에 신고한다
⑨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B2** 다음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① 친구를 때리거나 다치게 함
② 돈이나 물건 등을 가져가거나 빼앗음
③ 친구가 싫다고 하는 데 심한 장난을 치며 괴롭힘
④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따돌림
⑤ 욕을 하거나 나쁜 소문을 냄
⑥ 말을 듣게 하려고 무섭게 겁을 줌
⑦ 친구가 싫어하는데 심부름을 시킴
⑧ 좁은 곳이나 특정 공간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함
⑨ 싫은데도 옷을 벗기거나 내 몸을 만지려하는 등 성(性)적으로 괴롭힘
⑩ 사이버(인터넷, 휴대폰 등)에서 욕을 하거나 사진, 영상을 올려 괴롭힘

**B8** 현재 학교에 '일진회'와 같은 폭력 서클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B9** '폭력서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없어져야 하며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②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고 분위기를 흐린다
③ 나와 상관없다
④ 폭력서클 학생은 생각보다 괜찮고 평범하다
⑤ 폭력서클을 멋있다고 생각해 가입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B1** 다음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러분의 생각과 가까운 번호에 표시해주십시오.

| 구분 | 학교폭력이다 | 학교폭력이 아니다 | 잘 모르겠다 |
|---|---|---|---|
| (1) 욕을 하거나 별명을 부르며 놀린다. | ① | ② | ③ |
| (2) 놀이나 게임을 하는 중에 때리거나 괴롭힌다. | ① | ② | ③ |
| (3) 하기 싫은데 억지로 선후배 신고식과 졸업식 뒤풀이를 한다. | ① | ② | ③ |
| (4) 말을 듣게 하려고 무섭게 겁을 준다 | ① | ② | ③ |
| (5) 상대방이 먼저 때리거나 욕을 해서 나도 때리고 욕한다 | ① | ② | ③ |
| (6) 친구가 싫어하는데 심부름을 시킨다 | ① | ② | ③ |
| (7)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놀린다 | ① | ② | ③ |

## C 학교폭력 피해 및 조치

현재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청소년들이 직접 만나 용서와 화해를 돕기 위한 **'대화모임(회복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해자 대화모임(회복조정)'은 **갈등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사건으로 인해 가졌던 느낌과 경험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음으로써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대화의 진행은 전문적으로 훈련된 제3자(조정자)**가 맡기 때문에 피해자, 가해자가 단 둘이 잇게 되거나 말다툼이 일어날 걱정은 없습니다. 필요하면 보호자도 동석하게 됩니다.

**D1** 귀하께서는 기회가 되면 이 '대화모임(회복조정)'에 자녀를 참여시킬 의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 전혀 참여시킬 의향이 없다 | 별로 참여시킬 의향이 없다 | 그저 그렇다 | 약간 참여시킬 의향이 있다 | 반드시 참여시킬 것이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D1-1로 이동] | | [☞ D1-2로 이동] | |

**D1-1** (D1에서 ①, ②를 선택한 응답자만)
**대화모임(회복조정)에 자녀를 참여시키고 싶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자녀에게 비난받을 것 같기 때문에
② 문제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③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④ 학교폭력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아서
⑤ 기타 (　　)

**D1-2** (D1에서 ④, ⑤를 선택한 응답자만)
**대화모임(회복조정)'에 자녀를 참여시키고 싶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피·가해 학생으로서의 기분과 감정을 표현하게 하고 싶어서
② 피·가해 학생들의 친구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싶어서
③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④ 가해학생이 학교에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⑤ 학교가 아닌 제3자가 개입되면 객관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서
⑥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보기 위해
⑦ 기타 (　　)

**D2** 만약 '대화모임(회복조정)'을 개최한다면 누가 이 모임을 이끌었으면 좋겠습니까?

① 담임교사
② 선생님 중 수업을 하지 않는 교사
③ 외부 전문가
④ 또래친구
⑤ 기타 (　　)

**D3** 자녀가 다니는 반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잘 되었습니까?

| 구분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자녀의 반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담임선생님이 즉시 알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학교폭력의 발생 후, 담임선생님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등의 관련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이 일어난 원인을 공정하게 조사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학교폭력의 발생 후, 학교(학교폭력전담기구)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등의 관련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이 일어난 원인을 공정하게 조사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D4**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학교에 신고 된 후 학교(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의 조사는 얼마나 빨리 이루어졌습니까?

① 1~3일 이내
② 4~6일 이내
③ 7~9일 이내
④ 10일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C4**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자녀는 얼마나 고통스러워 했습니까? (10점에 가까울수록 더욱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 | | 고통스럽지 않다 | | 보통이다 | | 고통스럽다 | | 매우 고통스럽다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C6**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귀하의 자녀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 구분 | | 없다 | 일 년에 1~2번 | 한 달에 1~2번 | 일주일에 1~2번 | 하루에 1번 이상 |
|---|---|---|---|---|---|---|
| (1) |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자해(스스로 자기 몸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죽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자살을 시도해본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C8**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후 귀하의 자녀는 주위에 어떠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 [☞ C8-1로 이동]
② 부모에게 도움을 청했다
③ 학교 선생님께 도움을 청했다
④ 자녀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⑤ 학교폭력전문기관(예:학교폭력피해자전담기관)에 도움을 청했다
⑥ 청소년 상담실(예:Wee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⑦ 117에 신고하여 도움을 청했다
⑧ 학교폭력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했다
— [☞ C8-2로 이동]

**C8-1** (C8에서 ①을 선택한 응답자만)
**피해를 당해도 자녀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② 야단맞을 것 같아서
③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④ 일이 커질 것 같아서
⑤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⑥ 가해자로부터 보복당할 것 같아서
⑦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할지 몰라서

**C8-2** (C8에서 ②, ③, ④, ⑤, ⑥, ⑦, ⑧을 선택한 응답자만)
**귀하의 자녀가 요청한 도움 방법이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 도움이 안 되었다 | 보통이다 | 도움이 되었다 | 매우 도움이 되었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C9**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후 귀하의 자녀는 어떠한 조치를 받았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② 가해 학생에게 사과를 받았다
③ 주변의 부모님께 도움과 위로를 받았다
④ 학교 선생님께 도움과 위로를 받았다
⑤ 가해 학생에게 물질적인 보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았다
⑥ 병원 치료 혹 심리 상담을 받았다
⑦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았다 [☞ C9-1로 이동]

**C9-1** (C9에서 ⑦을 선택한 응답자만)
**자치위원회에서 받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무엇입니까?**

①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학교폭력으로 받은 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② 2호 일시 보호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 상담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③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생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출석하지 않고 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4호 학급교체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길 수 있다)
⑤ 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그 밖에 의료기관, 법률 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C10** 귀하의 자녀가 받은 조치가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 도움이 안 되었다 | 보통이다 | 도움이 되었다 | 매우 도움이 되었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C1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① 그렇다 [☞ C13로 이동] ② 아니다 [☞ C11-1로 이동]

**C11-1** (C11에서 ②을 선택한 응답자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 응답 가능)

① 학교 선생님이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한 것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서
② 자녀한테 학교폭력을 가한 아이에 대한 벌이 너무 가벼워서
③ 자녀한테 학교폭력을 가한 아이한테서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해서
④ 자녀가 힘들어 하는데 선생님이 자녀에게 상담을 잘 안 해주어서
⑤ 기타 ( )

**C13** 학교폭력 사건 신고 후 가해학생의 태도나 반응은 어땠습니까?

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했다 ② 폭력은 멈추었지만 반성과 사과는 하지 않았다
③ 신고 이후에도 학교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④ 신고 이후 더 심하게 학교폭력을 가했다

**C14** 학교폭력 사건 신고 후에 경험한 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 구분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주변 학생들이 가해학생이 잘못했다고 말하며 가해학생을 나무라는 태도를 보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주변 학생들은 가해학생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주변 학생들은 피해학생인 자녀를 위로하며 도와주려 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주변 학생들이 피해학생인 자녀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C15** 학교폭력 사안조사 과정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개최 및 조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 구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학교폭력 사안조사 과정 | (1) 피해학생의 부모로서 충분하게 사안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2) 피해학생인 자녀의 인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3) 피해학생인 자녀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학폭위* 개최 과정 | (4) 피해학생인 자녀의 인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5) 피해학생인 자녀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6) 피해학생과 학부모로서 적정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보장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학폭위 조치/결과 | (7) 가해학생에 대해 내린 조치에 만족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8)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해학생이 잘 이행했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9) 가해학생이 불복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불만하였거나 불안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10)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일반학생(목격학생)은 적정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학폭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C16** 가해학생이 학폭위가 내린 조치에 불복해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C17** 피해학생의 부모로서 학폭위가 내린 조치에 불복해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C18** 피해학생의 부모로서 학폭위가 내린 조치에 불복했을 때 할 수 있는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관해 안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C19** 피해학생 및 학부모로서 가해학생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① 있다 [☞ C19-1로 이동] ② 없다 [☞ C20로 이동]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C19-1** (C19에서 ①을 선택한 응답자만)
**가해학생에 대해 형사고소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조치가 지나치게 경미하였기 때문에
② 가해학생이 학폭위 조치 이후에도 사과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③ 치료비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④ 기타 (  )

**C20** **피해학생 및 학부모로서 가해학생에 대해서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C21**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사후처리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 구분 |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 가해학생이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 피해학생으로서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나 절차 참여가 충분히 보장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 가해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소장작성이나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쉬운편이다 (가해학생, 보호자 인적사항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 치료 및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요양비용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치료 및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받는 요양비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C22** **학교폭력사건을 경험한 후, 자녀는 다니던 학교에서 다른 학교나 기관으로 옮긴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옮기지는 않았지만, 고민했었다

## D 학교폭력 예방

**D5** **현재 학교는 학교폭력 발생시, 사건을 공정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위기개입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D5-1로 이동] [☞ D9로 이동]

**D5-1** (D5에서 ①을 선택한 응답자만)
**사건을 공정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학교 평가에 대한 부담
② 학부모 등의 민원
③ 특정 학생에 대한 우호적/ 부정적 평가(선호/편견)
④ 담당자의 업무과중 및 비합리적인 업무분장
⑤ 학교폭력사건 처리 전문성 부족

**D9** **현재 학교폭력 절차에 대한 평가에 대해 문항을 읽고 동의하는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보기에 표시해주십시오.**

| 구분 |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 폭력의 종류와 관계없이 학교폭력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도록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수위와 관계없이 처분내용을 생기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결과를 졸업시 삭제해주는 지침은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현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이 억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적 기능을 하지 못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 현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이 처벌에만 치우쳐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처분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 현재 학교폭력의 개념과 범위가 너무 넓어 학생 간 우발적인 싸움 등의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 현재 학교폭력해결절차 내에서 학생 간 화해 등 관계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 어렵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 현재 학교폭력해결절차가 담임교사나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축소하여 주요한 사안처리담당자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D10** 학교폭력의 처리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1, 2순위를 선택해주세요.

| 1순위 | | 2순위 | |
|---|---|---|---|

① 가해학생의 잘못 인식과 진정한 사과 기회 제공
②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이 원하는 해결방식의 파악
③ 사건해결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주도적 참여
④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화해와 관계회복
⑤ 상호수용 가능한 피해배상 계획의 협상
⑥ 피해학생의 정서적 안정감과 회복(치유)
⑦ 사안처리의 공정성 확보
⑧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및 파악
⑨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D1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리에 있어서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 부모) 간의 대화를 통한 화해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 D11-1로 이동]
② 필요없다 (현재 분쟁조정을 통한 손해배상협상으로 충분하다) [☞ D12로 이동]

**D11-1** (D11에서 ①을 선택한 응답자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학생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
② 가해학생의 책임인식과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③ 기타 (　　)

**D12**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화해가 된 경우, 그 결과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절차 진행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반영되면 안 된다
② 학교폭력 처분수준을 완화한다
③ 학교폭력 처분을 내리되, 처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④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절차를 종결한다

**D14** 현재 학폭위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절하게 해결되고 있다
②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③ 잘 모르겠다

**D15** 현재는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이라 하더라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담임교사나 학교장의 재량종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 D15-1로 이동]
② 반대한다 [☞ D15-4로 이동]

**D15-1** (D15에서 ①를 선택한 응답자만)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고 학교 자체해결(담임교사나 학교장의 재량종결)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처벌보다는 교육적 선도와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② 자치위원회 진행에 따라 피·가해학생과 그 보호자 사이의 갈등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자치위원회 행정업무 감소로 교사 본연의 학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④ 기타 (　　)

**D15-2** (D15에서 ①를 선택한 응답자만)
학교 자체해결(담임교사나 학교장의 재량종결)을 원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단순싸움(말싸움)
② 헛소문/뒷말
③ 따돌림
④ 폭행
⑤ 상해
⑥ 기타 (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D15-3** (D15에서 ①를 선택한 응답자만)
**어떤 사안인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학교 자체해결(담임교사나 학교장의 재량종결)하시길 원하십니까?**

① 피해학생 또는 부모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절차를 원하지 않는 경우
②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③ 사안이 학교폭력 판단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④ 현행 학교폭력 개념이 너무 넓어서 학교폭력으로 분류되나 교사로서 판단하기에 대등한 당사자 간의 싸움으로 생활지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경우
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⑥ 학교폭력으로 분류되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화해와 관계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⑦ 기타 (  )

**D15-4** (D15에서 ②를 선택한 응답자만)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고 학교 자체해결(담임교사나 학교장의 재량종결)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모든 학교폭력은 경미하지 않은 폭력으로 보고 대처해야하기 때문이다.
② 학교나 가해학생 측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③ 경미한 학교폭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④ 기타 (  )

**D1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학교 자체해결(담임교사나 학교장의 재량종결) 시 우려 점은 무엇입니까?**

① 없다
②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 짓기 어려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리가 적합하지 않음
③ 피해학생 부모들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
④ 가해학생 부모들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
⑤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우려
⑥ 가해학생의 잘못 인식과 진정한 반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우려
⑦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조치가 재범방지를 위해 비효과적이라는 우려
⑧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에 대한 우려
⑨ 향후 재심에 대한 우려
⑩ 기타 (  )

**D17** **현재는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졸업 시나 일정 기간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조치 기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①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 — [☞ D17-1로 이동]
② 일부조치만 졸업 시 즉시 삭제한다
③ 졸업 이전에 삭제한다
④ 조치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⑤ 기타 (  ) — [☞ D17-2로 이동]

**D17-1** (D17에서 ①를 선택한 응답자만)
**삭제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미기재 시 가해학생들의 반성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②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 효과가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③ 피해학생 보호 효과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④ 기타 (  )

**D17-2** (D17에서 ②를 선택한 응답자만)
**삭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가해학생이 반성한 경우에도 낙인효과가 남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미기재 시 교사가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③ 가해학생 반발에 따른 가·피해학생 간 법적 다툼 발생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④ 기타 (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D18** 다음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선도·교육 조치입니다. 다음 방법들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구분 |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조금 도움이 된다 | 매우 도움이 된다 |
|---|---|---|---|---|---|
|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피해학생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학교에서의 봉사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사회봉사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출석정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학급교체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전학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퇴학 | ① | ② | ③ | ④ | ⑤ |

**D19**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선도·교육 조치 중 1호~3호는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는 대신, 아래와 같은 3단계 안전장치를 적용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방안이 학교폭력의 처리과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1단계: 1-3호 조치의 경우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에 한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한다.
2단계: 2회 이상 1-3호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조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이전 조치를 포함하여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3단계: 학교폭력 재발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을 유도하기 위해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내 개인상담을 포함하고 인성교육감성교육 등으로 특별교육을 구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활용을 추진한다.

| 전혀 도움이 안될 것이다 | 별 도움이 안될 것이다 | 보통이다 |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이다 |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D22** 학교폭력으로 또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화해 및 관계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화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① 필요없다 ② 학생 ③ 학부모 ④ 선생님
⑤ 학폭위 ⑥ 교육청/교육부 ⑦ 중재전문기관 및 외부 전문가 ⑧ 기타 ( )

**D23** 학교폭력으로 법적 소송 및 치료비 요구 등이 생길 경우 분쟁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① 필요없다 ② 학부모 ③ 선생님 ④ 학폭위
⑤ 교육청/교육부 ⑥ 중재전문기관 ⑦ 기타 ( )

**D24** 학교폭력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 없다

**D25** 학교폭력 발생 시 손해배상(치료비, 금전적)갈등 또는 분쟁이 생겼을 경우 다른 사람이 중재(화해)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 없다

**D26**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를 선지원 받을 수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겠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D27**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 중 서면사과 외의 조치를 받은 경우 가해학생의 학부모 또한 특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D20** 다음은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에게 취해지는 보호조치입니다. 다음 방법들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구분 |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조금 도움이 된다 | 매우 도움이 된다 |
|---|---|---|---|---|---|
| (1) 심리상담 및 조언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일시 보호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학급교체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그밖의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 ① | ② | ③ | ④ | ⑤ |

**D30** 학교폭력 발생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 D30-1로 이동]　　② 아니다 [☞ D7로 이동]

**D30-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학교장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②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③ 학부모가 거부하거나 민원을 야기하여　　④ 학생이 거부해서
⑤ 상담 치료·특별교육 기관이 부족해서　　⑥ 상담 치료·특별교육 전문가가 부족해서
⑦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가 구체적이 않고 모호하여　　⑧ 기타 (　　)

**D7** 학교폭력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학교문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생·교사·학부모가 상호협력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적 학교문화
② 학생 인성 중시의 학교문화
③ 학생 인권 존중의 학교문화
④ 교사의 권위 및 전문성 중시의 학교문화
⑤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의 학교문화
⑥ 가정 및 관련 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권장되는 학교문화
⑦ 기타 (　　)

**D8**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 과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번호에 ✓하여 주십시오.

| 구분 | 전혀 중요하지 않음 | 중요하지 않음 | 보통 | 중요함 | 매우 중요함 |
|---|---|---|---|---|---|
| (1)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보급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정서, 행동 상의 문제 학생을 위한 전문상담인력 확대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학생과의 소통 및 공감능력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활동 활성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학교출석정지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및 대안교실 확대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학부모 소환제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인 제도 확대(또래조정, 화해권고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D31** 학교별로 수행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과정과 관련해 각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행되고 있는 정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해당하는 곳에 V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중요도 | | | | | 이행 만족도 | | | | |
|---|---|---|---|---|---|---|---|---|---|---|
| | 전혀 중요하지 않음 | 중요하지 않음 | 보통 | 중요함 | 매우 중요함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
| (1) 정확한 사안조사 과정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학폭위의 시의적절한 개최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학폭위 진행시 학생의 입장을 배려한 발언이나 질문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학폭위 위원의 중립성 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가해, 피해학생 한쪽의 요구에 편향되지 않는 공정한 조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학생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객관성 있는 사안처리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비밀보장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D32** 학교폭력 사안처리과정에서의 개선방안과 관련해 다음 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해당하는 곳에 V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혀 불필요하다 | 불필요하다 | 보통이다 | 필요한 편이다 | 매우 필요하다 |
|---|---|---|---|---|---|
| (1) 일관된 해석이 가능한 정확한 사안처리 매뉴얼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전문가가 시행하는 가해, 피해학생들의 사과와 용서의 자리 마련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담임교사의 상담자적 역할(학생, 학부모에 대한 공감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사안에 관련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사안처리 과정에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응하는 교사의 공감적 마인드 및 상담기술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사법적 절차를 따르는 현행 사안처리과정의 개선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처리절차 상의 실수에 대한 책임교사의 법적 책임 경감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각 학폭위 위원들(교사, 학부모, 경찰 등)의 명확한 역할 정립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학폭위 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학폭위 위원들에 대한 법적, 심리적 안전 보장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사안처리 기록 및 보고에 따른 서류의 간소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사안처리에 따른 행정업무를 담당할 교사보조 인력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 (13) 가해학생 조치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및 연계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 (14) 학부모 특별교육 조치이행에 대한 탄력성 있는 운영 | ① | ② | ③ | ④ | ⑤ |
| (15) 조치이후 관련 학생들간의 갈등해결모임 개최 | ① | ② | ③ | ④ | ⑤ |
| (16) 교육지원청의 단위학교 컨설팅 및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D3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으로 다양한 대책들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의 각 대책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관련한 만족도를 해당하는 곳에 V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
|---|---|---|---|---|---|
| (1)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① | ② | ② | ④ | ⑤ |
| (2) 배움터지킴이 등 학교내 학생보호인력 배치 | ① | ② | ② | ④ | ⑤ |
| (3) Wee 프로젝트(Wee 클래스, Wee 센터, Wee스쿨, 가정형 Wee센터 등) 확대 | ① | ② | ② | ④ | ⑤ |
| (4) 학교내 CCTV 설치확대 및 CCTV 모니터링 | ① | ② | ② | ④ | ⑤ |
| (5) 체육, 스포츠 활동 확대 | ① | ② | ② | ④ | ⑤ |
| (6)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연극, 뮤지컬 관람, 연극, 역할극 등) | ① | ② | ② | ④ | ⑤ |
| (7) 학생 자치활동 확대(또래상담, 또래조정, 학생자치법정) | ① | ② | ② | ④ | ⑤ |
| (8)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 ① | ② | ② | ④ | ⑤ |
| (9)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강화 | ① | ② | ② | ④ | ⑤ |
| (10) 교원의 상담, 생활지도 강화 | ① | ② | ② | ④ | ⑤ |
| (11) 학교별 전문상담인력 확대배치 및 전문화 | ① | ② | ② | ④ | ⑤ |
| (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확대 | ① | ② | ② | ④ | ⑤ |
| (13)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확대 및 학교지원 강화 | ① | ② | ② | ④ | ⑤ |

**-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설문에 응답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 부록3. 일반 학부모 및 관계자 설문조사지

#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에 대한 인식조사'
## - 조사표(C. 학부모 및 관련담당자) -

2019. 8.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작성일 : 2019년 월 일

| ID | | | | | | - | |
|---|---|---|---|---|---|---|---|

#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에 대한 인식조사 (E)

안녕하세요? 먼저 바쁜 가운데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연구용역을 위탁받아 학교폭력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인권적, 법적, 교육적, 회복적 측면에서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법제 및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학교폭력 및 학교폭력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물어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의 결과는 학교폭력예방 등을 위한 법제 및 처리절차 가이드를 마련하는 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순수한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본 설문지에 대한 응답에는 맞고 틀림이 없으므로 평소 여러분의 평소 생각대로 편안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답이 더욱 귀중하고 가치 있는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읽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주관기관<br>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실사기관 | (주)네오알앤에스<br>담당 : OOO 대리 02-0000-0000 |
|---|---|---|---|
| 조사원 | | 검수원 | 입력원 |

## A 일반사항

**A 다음 사항 중 해당하는 곳을 V표시로 체크해주십시오.**

| | |
|---|---|
| A1 성별 | ① 남 ② 여 |
| A9 나이 | (현재 나이) 만 세 |
| A10 직업 | ① 교사 ② 교육청 공무원 ③ 사회복지사/상담사 ④ 학부모 |
| A11 경력 | [☞ 교사, 교육청 공무원, 사회복지사/상담사만 응답 ] 년 개월 |
| A12 학교폭력 자치위원 관여경험 | ① 위원으로 직접 경험 ② 위원이 아닌 간접 경험 ③ 관여 경험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B 학교폭력 인식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몸에 상처가 나게 하는 것),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을 지배하여 자유를 침해하는 것), **명예훼손·모욕**(욕하기, 나쁜 소문내기, 놀리기, 별명 부르기), **공갈**(폭행, 협박을 통해 겁을 주고, 이익을 취득하는 것),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B3** 현재 학교폭력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 발생하지 않는다 | 가끔·간혹 발생한다 | 자주·빈번하게 발생한다 |
|---|---|---|---|
| ① | ② | ③ | ④ |

**B4** 학교폭력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까?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심각하지 않다 | 보통이다 | 심각하다 | 매우 심각하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B5**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피해학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② 가해학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③ 교사·학교의 무관심 때문에
④ 학업스트레스·입시 위주 교육 때문에
⑤ 부모 등 가정 문제 때문에
⑥ 폭력적인 문화 매체 때문에
⑦ 기타 (　　)

**B6**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스트레스 때문에
② 장난
③ 오해와 갈등
④ 친구나 선배 등이 시켜서
⑤ 보복
⑥ 화가 나서
⑦ 피해학생이 잘못해서
⑧ 이유 없음

**B7**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 피해학생으로서 대처하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그냥 참으면 해결된다
② 말로 하지 말라고 한다
③ 친구와 방법을 의논한다
④ 함께 싸운다
⑤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알린다
⑥ 선생님이나 학교에 알린다
⑦ 상대방을 피하거나 이사 또는 전학을 간다
⑧ 경찰서에 신고한다
⑨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B2** 다음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① 친구를 때리거나 다치게 함
② 돈이나 물건 등을 가져가거나 빼앗음
③ 친구가 싫다고 하는 데 심한 장난을 치며 괴롭힘
④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따돌림
⑤ 욕을 하거나 나쁜 소문을 냄
⑥ 말을 듣게 하려고 무섭게 겁을 줌
⑦ 친구가 싫어하는데 심부름을 시킴
⑧ 좁은 곳이나 특정 공간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함
⑨ 싫은데도 옷을 벗기거나 내 몸을 만지려하는 등 성(性)적으로 괴롭힘
⑩ 사이버(인터넷, 휴대폰 등)에서 욕을 하거나 사진, 영상을 올려 괴롭힘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B8** 현재 학교에 '일진회'와 같은 폭력 서클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B9** '폭력서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없어져야 하며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②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고 분위기를 흐린다
③ 내 자녀(또는 학생)과 상관없다
④ 폭력서클 학생은 생각보다 괜찮고 평범하다
⑤ 폭력서클을 멋있다고 생각해 가입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다

**B1** 다음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러분의 생각과 가까운 번호에 표시해주십시오.

| 구분 | 학교폭력이다 | 학교폭력이 아니다 | 잘 모르겠다 |
|---|---|---|---|
| (1) 욕을 하거나 별명을 부르며 놀린다. | ① | ② | ③ |
| (2) 놀이나 게임을 하는 중에 때리거나 괴롭힌다. | ① | ② | ③ |
| (3) 하기 싫은데 억지로 선후배 신고식과 졸업식 뒤풀이를 한다. | ① | ② | ③ |
| (4) 말을 듣게 하려고 무섭게 겁을 준다 | ① | ② | ③ |
| (5) 상대방이 먼저 때리거나 욕을 해서 나도 때리고 욕한다 | ① | ② | ③ |
| (6) 친구가 싫어하는데 심부름을 시킨다 | ① | ② | ③ |
| (7)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놀린다 | ① | ② | ③ |

## D 학교폭력 예방

**D5** 현재 학교는 학교폭력 발생시, 사건을 공정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위기개입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D5-1로 이동] [☞ D9로 이동]

**D5-1** (D5에서 ①을 선택한 응답자만)
사건을 공정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학교 평가에 대한 부담
② 학부모 등의 민원
③ 특정 학생에 대한 우호적/ 부정적 평가(선호/편견)
④ 담당자의 업무과중 및 비합리적인 업무분장
⑤ 학교폭력사건 처리 전문성 부족

**D9** 현재 학교폭력 절차에 대한 평가에 대해 문항을 읽고 동의하는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보기에 표시해주십시오.

| 구분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폭력의 종류와 관계없이 학교폭력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도록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수위와 관계없이 처분내용을 생기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결과를 졸업시 삭제해주는 지침은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현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이 약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적 기능을 하지 못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현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이 처벌에만 치우쳐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처분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현재 학교폭력의 개념과 범위가 너무 넓어 학생 간 우발적인 싸움 등의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현재 학교폭력해결절차 내에서 학생 간 화해 등 관계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 어렵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현재 학교폭력해결절차가 담임교사나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축소하여 주요한 사안처리담당자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D10** 학교폭력의 처리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1, 2순위를 선택해주세요.

| 1순위 | | 2순위 | |
|---|---|---|---|

① 가해학생의 잘못 인식과 진정한 사과 기회 제공
②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이 원하는 해결방식의 파악
③ 사건해결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주도적 참여
④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화해와 관계회복
⑤ 상호수용 가능한 피해배상 계획의 협상
⑥ 피해학생의 정서적 안정감과 회복(치유)
⑦ 사안처리의 공정성 확보
⑧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및 파악
⑨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D1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리에 있어서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 부모) 간의 대화를 통한 화해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 D11-1로 이동]
② 필요없다 (현재 분쟁조정을 통한 손해배상협상으로 충분하다) [☞ D12로 이동]

**D11-1** (C11에서 ①을 선택한 응답자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학생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
② 가해학생의 책임인식과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③ 기타 (　　)

**D12**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화해가 된 경우, 그 결과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절차 진행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반영되면 안 된다
② 학교폭력 처분수준을 완화한다
③ 학교폭력 처분을 내리되, 처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④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절차를 종결한다

**D14** 현재 학폭위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절하게 해결되고 있다
②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③ 잘 모르겠다

**D15** 현재는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이라 하더라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담임교사나 학교장의 재량종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 D15-1로 이동]
② 반대한다 [☞ D15-4로 이동]

**D15-1** (D15에서 ①를 선택한 응답자만)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고 학교 자체해결(담임교사나 학교장의 재량종결)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처벌보다는 교육적 선도와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② 자치위원회 진행에 따라 피·가해학생과 그 보호자 사이의 갈등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자치위원회 행정업무 감소로 교사 본연의 학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④ 기타 (　　)

**D15-2** (D15에서 ①를 선택한 응답자만)
학교 자체해결(담임교사나 학교장의 재량종결)을 원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단순싸움(말싸움)
② 헛소문/뒷말
③ 따돌림
④ 폭행
⑤ 상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D15-3** (D15에서 ①를 선택한 응답자만)
**어떤 사안인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학교 자체해결(담임교사나 학교장의 재량종결)하시길 원하십니까?**

① 피해학생 또는 부모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절차를 원하지 않는 경우
②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③ 사안이 학교폭력 판단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④ 현행 학교폭력 개념이 너무 넓어서 학교폭력으로 분류되나 교사로서 판단하기에 대등한 당사자 간의 싸움으로 생활지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경우
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⑥ 학교폭력으로 분류되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화해와 관계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⑦ 기타 (  )

**D15-4** (D15에서 ②를 선택한 응답자만)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고 학교 자체해결(담임교사나 학교장의 재량종결)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모든 학교폭력은 경미하지 않은 폭력으로 보고 대처해야하기 때문이다.
② 학교나 가해학생 측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③ 경미한 학교폭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④ 기타 (  )

**D1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학교 자체해결(담임교사나 학교장의 재량종결) 시 우려 점은 무엇입니까?**

① 없다
②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 짓기 어려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리가 적합하지 않음
③ 피해학생 부모들의 불신에 대한 우려
④ 가해학생 부모들의 불신에 대한 우려
⑤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우려
⑥ 가해학생의 잘못 인식과 진정한 반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우려
⑦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조치가 재범방지를 위해 비효과적이라는 우려
⑧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에 대한 우려
⑨ 향후 재심에 대한 우려
⑩ 기타 (  )

**D17** **현재는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졸업 시나 일정 기간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조치 기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①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 — [☞ D17-1로 이동]
② 일부조치만 졸업 시 즉시 삭제한다
③ 졸업 이전에 삭제한다
④ 조치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 [☞ D17-2로 이동]
⑤ 기타 (  )

**D17-1** (D17에서 ①를 선택한 응답자만)
**삭제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미기재 시 가해학생들의 반성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②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 효과가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③ 피해학생 보호 효과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④ 기타 (  )

**D17-2** (D17에서 ②를 선택한 응답자만)
**삭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가해학생이 반성한 경우에도 낙인효과가 남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미기재 시 교사가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③ 가해학생 반발에 따른 가·피해학생 간 법적 다툼 발생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④ 기타 (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D18** 다음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선도·교육 조치입니다. 다음 방법들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구분 |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조금 도움이 된다 | 매우 도움이 된다 |
|---|---|---|---|---|---|
|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피해학생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학교에서의 봉사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사회봉사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출석정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학급교체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전학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퇴학 | ① | ② | ③ | ④ | ⑤ |

**D19**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선도·교육 조치 중 1호~3호는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는 대신, 아래와 같은 3단계 안전장치를 적용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방안이 학교폭력의 처리과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1단계: 1-3호 조치의 경우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에 한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한다.
2단계: 2회 이상 1-3호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조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이전 조치를 포함하여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3단계: 학교폭력 재발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을 유도하기 위해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내 개인상담을 포함하고 인성교육감성교육 등으로 특별교육을 구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활용을 추진한다.

| 전혀 도움이 안될 것이다 | 별 도움이 안될 것이다 | 보통이다 |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이다 |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D22** 학교폭력으로 또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화해 및 관계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화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① 필요없다 ② 학생 ③ 학부모 ④ 선생님
⑤ 학폭위 ⑥ 교육청/교육부 ⑦ 중재전문기관 및 외부 전문가 ⑧ 기타 ( )

**D23** 학교폭력으로 법적 소송 및 치료비 요구 등이 생길 경우 분쟁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① 필요없다 ② 학부모 ③ 선생님 ④ 학폭위
⑤ 교육청/교육부 ⑥ 중재전문기관 ⑦ 기타 ( )

**D24** 학교폭력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 없다

**D25** 학교폭력 발생 시 손해배상(치료비, 금전적)갈등 또는 분쟁이 생겼을 경우 다른 사람이 중재(화해)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 없다

**D26**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를 선지원 받을 수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겠다

6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D27**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 중 서면사과 외의 조치를 받은 경우 가해학생의 학부모 또한 특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D20** 다음은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에게 취해지는 보호조치입니다. 다음 방법들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구분 |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조금 도움이 된다 | 매우 도움이 된다 |
|---|---|---|---|---|---|
| (1) 심리상담 및 조언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일시 보호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학급교체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그밖의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 ① | ② | ③ | ④ | ⑤ |

**D30** 학교폭력 발생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 D30-1로 이동]　　② 아니다 [☞ D7로 이동]

**D30-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학교장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②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③ 학부모가 거부하거나 민원을 야기하여　　④ 학생이 거부해서
⑤ 상담 치료·특별교육 기관이 부족해서　　⑥ 상담 치료·특별교육 전문가가 부족해서
⑦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가 구체적이 않고 모호하여　　⑧ 기타 (　　)

**D7** 학교폭력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학교문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생·교사·학부모가 상호협력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적 학교문화
② 학생 인성 중시의 학교문화
③ 학생 인권 존중의 학교문화
④ 교사의 권위 및 전문성 중시의 학교문화
⑤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의 학교문화
⑥ 가정 및 관련 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권장되는 학교문화
⑦ 기타 (　　)

**D8**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 과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번호에 ✓하여 주십시오.

| 구분 | 전혀 중요하지 않음 | 중요하지 않음 | 보통 | 중요함 | 매우 중요함 |
|---|---|---|---|---|---|
| (1)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보급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정서, 행동 상의 문제 학생을 위한 전문상담인력 확대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학생과의 소통 및 공감능력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활동 활성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학교출석정지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및 대안교실 확대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학부모 소환제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인 제도 확대(또래조정, 화해권고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D31** 학교별로 수행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과정과 관련해 각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행되고 있는 정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해당하는 곳에 V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중요도 | | | | | 이행 만족도 | | | | |
|---|---|---|---|---|---|---|---|---|---|---|
| | 전혀 중요하지 않음 | 중요하지 않음 | 보통 | 중요함 | 매우 중요함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
| (1) 정확한 사안조사 과정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학폭위의 시의적절한 개최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학폭위 진행시 학생의 입장을 배려한 발언이나 질문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학폭위 위원의 중립성 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가해, 피해학생 한쪽의 요구에 편향되지 않는 공정한 조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학생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객관성 있는 사안처리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비밀보장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D32** 학교폭력 사안처리과정에서의 개선방안과 관련해 다음 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해당하는 곳에 V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혀 불필요하다 | 불필요하다 | 보통이다 | 필요한 편이다 | 매우 필요하다 |
|---|---|---|---|---|---|
| (1) 일관된 해석이 가능한 정확한 사안처리 매뉴얼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전문가가 시행하는 가해, 피해학생들의 사과와 용서의 자리 마련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담임교사의 상담자적 역할(학생, 학부모에 대한 공감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사안에 관련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사안처리 과정에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응하는 교사의 공감적 마인드 및 상담기술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사법적 절차를 따르는 현행 사안처리과정의 개선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처리절차 상의 실수에 대한 책임교사의 법적 책임 경감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각 학폭위 위원들(교사, 학부모, 경찰 등)의 명확한 역할 정립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학폭위 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학폭위 위원들에 대한 법적, 심리적 안전 보장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사안처리 기록 및 보고에 따른 서류의 간소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사안처리에 따른 행정업무를 담당할 교사보조 인력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 (13) 가해학생 조치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및 연계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 (14) 학부모 특별교육 조치이행에 대한 탄력성 있는 운영 | ① | ② | ③ | ④ | ⑤ |
| (15) 조치이후 관련 하갱들간의 갈등해결모임 개최 | ① | ② | ③ | ④ | ⑤ |
| (16) 교육지원청의 단위학교 컨설팅 및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D3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으로 다양한 대책들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의 각 대책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관련한 만족도를 해당하는 곳에 V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
|---|---|---|---|---|---|
| (1)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① | ② | ② | ④ | ⑤ |
| (2) 배움터지킴이 등 학교내 학생보호인력 배치 | ① | ② | ② | ④ | ⑤ |
| (3) Wee 프로젝트(Wee 클래스, Wee 센터, Wee스쿨, 가정형 Wee센터 등) 확대 | ① | ② | ② | ④ | ⑤ |
| (4) 학교내 CCTV 설치확대 및 CCTV 모니터링 | ① | ② | ② | ④ | ⑤ |
| (5) 체육, 스포츠 활동 확대 | ① | ② | ② | ④ | ⑤ |
| (6)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연극, 뮤지컬 관람, 연극, 역할극 등) | ① | ② | ② | ④ | ⑤ |
| (7) 학생 자치활동 확대(또래상담, 또래조정, 학생자치법정) | ① | ② | ② | ④ | ⑤ |
| (8)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 ① | ② | ② | ④ | ⑤ |
| (9)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강화 | ① | ② | ② | ④ | ⑤ |
| (10) 교원의 상담, 생활지도 강화 | ① | ② | ② | ④ | ⑤ |
| (11) 학교별 전문상담인력 확대배치 및 전문화 | ① | ② | ② | ④ | ⑤ |
| (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확대 | ① | ② | ② | ④ | ⑤ |
| (13)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확대 및 학교지원 강화 | ① | ② | ② | ④ | ⑤ |

**-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설문에 응답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실태조사**

| 인쇄일 | 2019년 12월 10일
| 발행일 | 2019년 12월 11일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전 화 | 02-2125-9841
| F A X | 02-2125-0918
| E-mail | research@humanrights.go.kr
| 제 작 | 경성문화사 02-786-2999(代)

ISBN: 978-89-6114-725-5 93370 비매품